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조선의 명재상 횡성인 고흥산

유재춘 · 이흥권 · 한성주



횡성문화원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발 간 사

횡성읍 정암3리 웃정암 넘어가는 오솔길 한적한 시골 언덕에는 앞으로 다정히 붙어있는 부부고분 2기가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묘를 고판서 묘라고 부르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다 간 사람인지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이렇듯 삶의 터전인 향토 곳곳에는 선대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가치 있거나 귀중한 흔적들이 묻혀있으나 무관심 속에 잊혀지거나 인멸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진, 당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의미 있게 살다 간 역사적 큰 인물을 재조명 하려는 시도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몫이라 하겠다. 다행히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콘텐츠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위민 행정을 펼치던 조선시대 명재상 횡성인 고흥산의 삶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집필하여 주신 강원대학교 유재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향토교육 자료로 활용 뿐 아니라 전국적 역사인물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2018년 1월

횡성문화원장 박순업



서 문

??

2018년 1월

저자 유재춘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

I. 고흥산의 가계와 출사 / 7

1. 고흥산의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 7
2. 고흥산의 出仕 / 12

II. 고흥산의 관련 생활과 활동 / 14

1. 성종 및 연산군대 / 14
 - 1) 지평현감(砥平縣監) / 14
 - 2) 함경도(咸鏡道) 도사(都事)와 종사관(從事官) / 15
 - 3)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 19
 - 4) 광흥창수(廣興倉守)와 함경도 재과전 / 30
 - 5)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의 재임명 / 33
 - 6) 함경도(咸鏡道) 경차관(敬差官) / 36
 - 7)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 39
 - 8) 함경도(咸鏡道) 종사관(從事官) 재과전 / 42
 - 9) 군사감정(軍資監正),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와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 48
 - 10) 해주목사(海州牧使) / 53
 - 11) 함경북도(咸鏡北道) · 함경남도(咸鏡南道) 절도사(節度使) / 56

2. 중종대 전반기 / 59

- 1) 중종반정(中宗反正)과 특진관(特進官) / 59
- 2) 함경도(咸鏡道) 관찰사(觀察使) / 65
- 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형조 참판(刑曹 參判) / 85
- 4) 형조 판서(刑曹 判書) 및 특진관(特進官) / 88
- 5)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 / 101
- 6) 전운사(轉運使) / 109
- 7)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과 호조 판서(戶曹 判書) / 111
- 8)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과 공조 판서(工曹 判書) / 113
- 9) 호조 판서(戶曹 判書),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
사옹원 제조(司饗院 提調), 특진관(特進官) / 114

3. 중종대 후반기 / 121

- 1) 병조 판서(兵曹 判書) 및 특진관(特進官) / 121
- 2)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과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 / 130
- 3) 호조 판서(戶曹 判書) 및 사헌부 대사헌 재임명 / 132
- 4) 호조 판서(戶曹 判書) 재임명과 특진관(特進官) / 138
- 5) 병조 판서(兵曹 判書), 특진관(特進官), 평안도 순변사(平安道 巡邊使) / 148
- 6)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사복시(司僕寺) 제조(提調),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 / 166
- 7) 호조 판서(戶曹 判書),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 특진관(特進官),
순변사(巡邊使), 비변사(備邊司) 제조(提調) 및 당상(堂上) / 170
- 8)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
봉상시 제조(奉常寺 提調),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186

Ⅲ. 기묘사화와 고행산 / 192

Ⅳ. 고행산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 200

Ⅴ. 고행산 관련 설화 및 일화 / 212

- 고관서와 도깨비전설(생운리) / 212
- 솟을묘 전설 / 214
- 고행산과 강릉 대관령길 / 215
- 고행산과 김양진의 술 마시기 시합 / 216
- 술을 즐긴 신용개와 고행산 이야기 / 217
- 고행산과 죽궁 개발 / 219

Ⅵ. 고행산 관련 유적 / 221

1. 고행산묘(高荊山墓) / 221
 - 전(傳) 고행산신도비(高荊山神道碑) 귀부(龜趺) / 227
2. 횡성고씨묘(橫城高氏墓) / 229

Ⅶ. 고행산 관련 사료 / 232

Ⅷ. 고행산 연표 / 508

【참고문헌】 / 530

I. 고흥산의 가계와 출사

1. 고흥산의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고형산(高荊山)의 자는 정숙(靜叔), 호는 하계(荷溪)이며, 시호는 익평(翼平)이다.¹⁾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에 의하면, 고흥산은 시조 고을나(高乙那)로부터 18세손이다.²⁾ 고흥산은 횡성고씨(橫城高氏)로도 알려졌는데,³⁾ 횡성고씨는 한때 고인비(高仁庇)를 파조(派祖)로 하여 제주고씨(濟州高氏)에서 분파하였다가 현재는 본관을 제주로 단일화하여 제주고씨 화전군파(花田君派)라고 하고 있다.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를 보면, 횡성고씨를 이루었던 고인비는 고을나의 11세손이며, 1256년(고려 고종 43)에 태어나서 문과에 급제하였고, 병부시랑(兵部侍郎)과 금오위(金吾衛) 상장군(上將軍)에 올랐으며, 고려 충렬왕 때 화전군(花田君)에 봉해졌다. 화전은 강원도 횡성군의 옛 이름이다. 제주고씨 화전군파는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 버덩말을 화전군파 시조 발상지로 여기고 있어 고인비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인비의 아버지 고계연(高季旻)은 일명 복송(福松)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간의대부(諫議大夫), 이부상서(吏部尙書),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하였으며, 백주군(白州君)에 봉해졌다. 백주는 지금의 황해남도 배천군의 고려시대 이름

1)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에는 고흥산의 자(字)가 정서(靜敍), 시호가 익장(益莊)으로 되어 있다.

2) 이하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 참조.

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횡성고씨(橫城高氏)의 시조가 병마사(兵馬使)를 지낸 고희(高休)라고 되어 있고, 참판(參判)에 추증된 고희경(高用卿; 고흥산의 증조부)이 한 파(派)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희경의 증손이 고흥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증보문헌비고』 권51, 제계고 12, 부록 씨족 6, 고씨).

이다. 고계연의 부인은 연창군부인(延昌君夫人) 죽주박씨(竹州朴氏)로, 아버지는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박서(朴犀)이다.

고인비의 부인은 송악군부인(松岳君夫人) 개성왕씨(開城王氏)로, 아버지는 전서(典書) 왕익서(王益瑞)이다. 고인비의 부인 개성왕씨는 아들 고종규(高宗珪)가 시중(侍中)이 되었을 때 삼학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봉해졌다. 고인비의 아들 고종규는 1285년(충렬왕 11)에 태어나서 문과를 거친 후 이부상서,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을 지냈다.

따라서 횡성고씨는 고계연-고인비-고종규로 이어지면서 분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파되는 시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고려의 왕위가 고종-원종-충렬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고려의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고려가 몽골과 화의를 맺어 항쟁을 끝내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하여 소위 원간섭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고계연-고인비-고종규가 각각 백주군, 화전군에 봉해지고, 고종규가 시중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당시 이들이 무신정권을 끝내고, 개경으로 천도하며, 몽골과의 화의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제주고씨 화전군파는 고계연-고인비-고종규-고영(高英, 13세)-고천세(高天世, 14세)-고용경(高用卿, 15세)-고습(高襲, 16세)-고사민(高思敏, 17세)·고사준(高思俊)·고사신(高思信)-고항산(高恒山, 18세)·고형산으로 가계가 이어졌다.

고형산의 증조부 고용경은 1363년(공민왕 12)에 태어나서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검열(檢閱)과 전교부령(典校副令)을 역임했으며,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여 태조 태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장령(掌令), 집의(執義)의 관직에 있었으며 후에 병조참판(兵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조부 고습은 1381년(우왕 7) 8월 28일생으로 조선 태종 때 선무랑(宣務郎) 행금성현령(行錦城縣令) 겸권농단판관(兼勸農團判官)의 관직을 받았고, 후에 정이품(正二品)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고습은 1462년(세조 8) 12월 6일에 죽었는데, 팔십까지 살

았다. 고습의 부인은 횡성고씨로 묘가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제주고씨 화전군과 묘역에 있는데 솫을묘라 부르고 있다. 고습의 아들로는 고사민, 고사준, 고사신이 있었다.

고형산의 아버지 고사신은 1417년(태종 17) 3월 9일생으로 자는 성지(誠之)이다. 성종 대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 행계공랑(行啟功郎) 전악시주부(典嶽寺主簿)로 증직되었다. 1494년(성종 25)에 죽었는데, 79세였다. 노사신은 성품이 온유하고 청렴하고 깨끗했으며 지극히 너그러웠다고 한다. 평생 말과 얼굴빛에 기쁘거나 노여워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안으로 서로 친밀하여 탐실한 사람과 같았다. 안으로 성실하고 공손하여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며 노사신의 행동으로 화목하였고 종족 간에도 대립이나 차별이 없었다. 특히 사람을 대접함에도 물품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한가지 같았다. 후사(後嗣)에 있어서도 실제 공평하여 경사스러움을 기르고 계승함이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고사신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원주이씨(原州李氏)와의 사이에서 고향산(高恒山)과 고행산, 그리고 두 딸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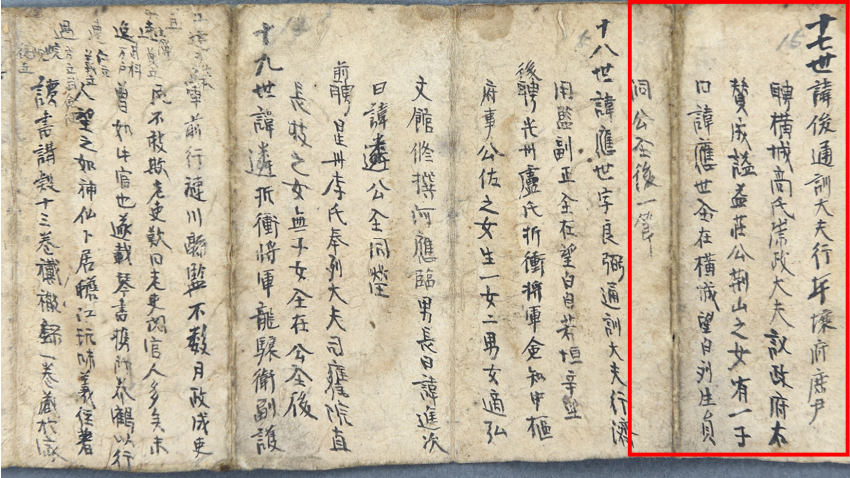
고형산은 1453년(단종 1) 5월 13일 생이며, 1528년(중종 23) 11월 20일에 죽었다. 부인 정경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고절(高節)과 세 명의 딸을 두었다. 아들 고절은 일명 지손(砥孫)으로 1479년(성종 10) 생이며, 혜민서주부(惠民署主簿)를 역임하였다. 고행산의 첫째 딸은 횡성인 조준(趙俊)과, 둘째 딸은 강릉인 김용려(金用礪)와, 셋째 딸은 여흥인 민만손(閔萬孫)과 각각 결혼하였다.

고형산이 딸이 조준(趙俊)과 결혼한 것은 조준의 손자인 조린(趙遴)의 묘갈명(墓碣銘)에서도 확인된다. 즉 조준-조응세(趙應世)-조린으로 가계가 이어져 오는데, 조린의 할머니 고씨(高氏)는 우찬성(右贊成)을 지낸 고행산의 따님이라고 써 놓았다.⁴⁾

횡성조씨(橫城趙氏) 가첩(家牒)에도 조준이 횡성고씨(橫城高氏)에게 장가들

4) 『愚伏集』 권18, 墓碣銘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趙公墓碣并書.

었는데,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익장공(益莊公) 고흥산의 딸이라고 써 놓았다.5)



〈횡성조씨(橫城趙氏) 가첩(家牒) 중 조준(趙俊) 부분〉

고형산의 시호(諡號)에 대해서 『제주고씨 화전군과 대동보』와 「횡성조씨 가첩」은 익장공(益莊公)이라고 하고 있으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흥산이 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찬성(贊成)이었으며 시호는 위열공(威烈公)이라고 하였고, 역대 명신의 시호에서도 고흥산이 위열(威烈)의 시호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다.6) 따라서 고흥산의 시호가 익장공 또는 위열공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형산의 아들 고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고흥산의 형 고힥산의 첫째 아들 고대후(高大後)로 고흥산의 가계를 잇게 하였다. 그리고 고대후 마저 후사가 없어 고힥산의 3자인 고광후(高廣後)의 5자 고

5) 「橫城趙氏 家牒」. 횡성조씨 가첩은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sm.kangwon.ac.kr/>) 참고. 『증보문헌비고』에는 고흥산의 시호가 위열공(威烈公)으로 되어 있다(『증보문헌비고』 권51, 帝系考 12, 附錄 氏族 6, 高氏, 橫城高氏).

6) 『증보문헌비고』 권51, 제계고 12, 부록 씨족 6, 高氏; 직관고 28, 시호 3, 역대 명신 시호 2, 威烈.

종길(高宗吉)로 가계를 이었지만, 사실상 고사신·고형산·고절 이후 직계는 절손되었다고 추측된다.⁷⁾

<p>月日... 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p>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p>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p>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p>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p>女 閔 萬 孫</p> <p>女 金 用 礪</p> <p>女 趙 俊</p>
--	--	--	--	--	--

<p>子 荆 山 賢</p> <p>子 瑞 元</p>	<p>子 大 後</p> <p>子 宗 吉</p>	<p>子 宗 吉</p> <p>子 宗 吉</p>
-----------------------------	---------------------------	---------------------------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 고형산 부분〉

한편 고구려(高句麗) 주몽(朱蒙)의 후손도 본관을 횡성고씨라 칭하고, 강원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어 횡성고씨의 시조가 둘로 기록되어 혼돈되고 있다. 현재의 횡성고씨는 보장왕(寶藏王)의 둘째 아들 고인승(高仁勝)을 증시조로 하여 그 후 20세손인 고휴(高休)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역임하면서 횡성에 근거하였고, 이후 고태지(高泰之)·고윤온(高允溫) 등으로 세계가 이어져 온다고 하고 있다.⁸⁾ 『횡성고씨세보(橫城高氏世譜)』에 의하면, 횡성에 정착했던 고휴에게는 아들 고태지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제주인(濟州人) 고습(高襲)과 결혼하여 고사민·고사준·고사신을 낳았고, 고산신이 고향산·고형산을 낳았다고 하여, 고향산을 횡성고씨의 외손(外孫)으로 기록하였다.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p>女 高 襲</p> <p>子 高 思 敏</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思 俊</p> <p>子 高 恒 山</p>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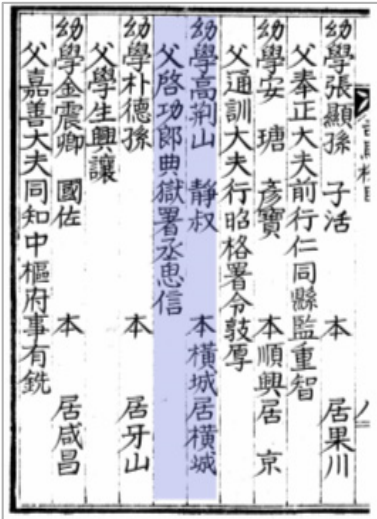
〈『횡성고씨세보(橫城高氏世譜)』 중 고향산 부분〉

7)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에는 고절의 아들로 고서원(高瑞元)이 쓰여 있다. 그리고 서원·수형(壽亨)·응국(應國)·덕겸(德謙)·척(陟)·영준(英俊)으로 이어지지만 관련 내용이 없고 이름만 나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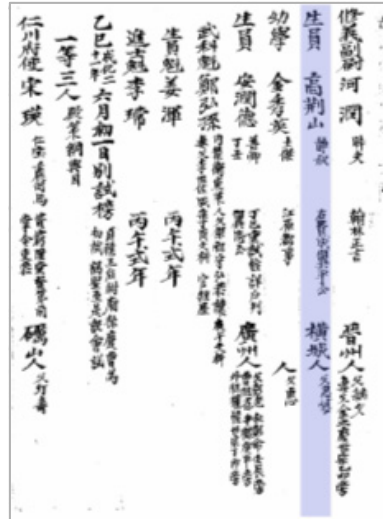
8) 『횡성고씨세보(橫城高氏世譜)』.

2. 고흥산의 出仕

고형산(高荊山)은 1480년(성종 11)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에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성화16년 경자 3월 초3일 사마방목(成化十六年 庚子 三月初三日 司馬榜目)」⁹⁾에는 고흥산이 생원시에 응시하여 3등 25위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마방목에는 유학(幼學) 고흥산의 자는 정숙(靜叔), 본관은 횡성(橫城),¹⁰⁾ 거주지는 횡성이며, 아버지는 계공랑(啟功郎) 전옥서승(典獄署丞) 고사신(高思信)으로 되어 있다.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중 고흥산 관련 내용〉



〈『국조방목(國朝榜目)』〉

9)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세촌선생실기(細村先生實紀)』, 국립중앙도서관[한고초57 - 가618](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10) 현재 고흥산의 본관은 제주이다. 횡성고씨의 시조는 고인비(高人庇)인데, 횡성고씨는 현재 본관을 제주로 단일화하여 제주고씨 화천군파(花田君派)라고 하고 있다.

이후 고흥산은 3년 뒤인, 1483년(성종 14)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는데, 병과(丙科) 21위를 차지하였다. 『국조방목(國朝榜目)』¹¹⁾에는 생원 고흥산의 자는 정숙이고, 횡성인(橫城人)이며, 아버지는 고사신으로 되어 있다. 고흥산의 관직은 우찬성(右贊成)까지 이르렀고, 시호로 익평(翼平)을 받았기 때문에 익평공(翼平公)이라 적어 놓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횡성현(橫城縣)의 인물로 고흥산이 기록되어 있다. 고흥산이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으며, 성품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軍)의 병사(兵事)와 금전 및 양곡을 관리하는 직임(職任)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므로,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고 되어 있다.¹²⁾ 즉 고흥산은 병조와 호조의 일에 있어 매우 뛰어난 활약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고흥산의 과거 급제 이후 관료 생활과 활동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11) 『국조방목(國朝榜目)』,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6, 橫城縣 人物.

Ⅱ. 고흥산의 관련 생활과 활동

1. 성종 및 연산군대

1) 지평현감(砥平縣監)

고형산은 1483년(성종 14)에 출사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관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494년(성종 25)년 지평현감(砥平縣監)이었다.¹³⁾ 지평현은 오늘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지제면·양동면·청운면·단월명 일대에 있었으며, 현감은 조선시대 현의 수령으로 종6품의 관직이었다. 조선시대 지방관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역임해야 했으므로 고흥산은 11년 동안 주로 중앙과 지방의 하급 관료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평현감으로 나가 있던 고흥산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경기도에 속한 지방 수령들 중 선정(善政)을 베푼 부사(府使)와 현감(縣監)을 성종에게 아뢰는 때 언급되었다. 즉 고흥산은 지평현감으로 ‘근휼민은 무요제폐(勤恤民隱, 務要除弊)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근휼민은, 무요제폐’는 ‘백성들의 괴로움(민생고)을 부지런히 구휼하였으며, 폐단을 제거하고 바로잡는데 힘썼다’라는 뜻이다.

성종은 고흥산 등의 선정을 듣고 ‘전례에 의하여 가자(加資)하는 것이 좋겠다[依例加資可也]’고 전교하였고,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고형산은 응당 승훈(承訓)을 제수해야 한다[高荊山應授承訓]’고 하여 성종의 재가를 받았다. 승훈은 승훈랑(承訓郎)을 말하며, 승훈랑은 정6품 하계(下階)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흥산은 지평현감으로 고을에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경기관찰사를 통해 성종에게까지 알려져 품계가 승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성종실록』 권287, 성종 25년 2월 20일 己卯.

2) 함경도(咸鏡道) 도사(都事)와 종사관(從事官)

고형산은 연산군이 즉위한 후 함경도 도사(都事)로 승진하였다고 보인다.¹⁴⁾ 조선시대 도사는 관찰사(觀察使)의 보좌관으로 파견한 종5품의 지방관이었으며 수령관(首領官)으로도 불렸다. 고형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경도 도사를 역임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고형산이 도사였을 때 이승건(李承健)이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해 가던 중 단천(端川) 마곡역(麻谷驛)에 도착하여 벽에 이종준(李宗準)¹⁵⁾이 써서 붙인 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詩)를 보고 시국을 개탄하는 뜻이 있다하여 그것을 뜯어다 알리려고 하자, 고형산이 도사로서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고 한다.¹⁶⁾ 결국 연산군은 이것을 보고 노하여 이종준뿐만 아니라 무풍정(茂豐正) 이충(李攄)¹⁷⁾ 여섯 부자를 죽였다고 되어 있다.¹⁸⁾ 이를 보면 고형산은 무오사화(戊午史禍, 1498년, 연산군 4)가 일어나기 전에 함경도 도사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은 1499년(연산군 5)에는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수군(三水郡)의 어면·감파·석모로(魚面·甘坡·石毛老)에 축성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¹⁹⁾ 삼수군의 어면·감파·석모로에 축성을 한 것은 여진족의 침입과 관련이

-
- 14) 고형산이 함경도 도사(都事)를 역임했음은 『연산군일기』와 『중종실록』에서 확인된다(『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6일 辛巳; 『중종실록』 중종 13년 4월 8일 丙子).
- 15)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몰려서 함경도 부령(富寧)으로 귀양가는 도중에 단천군(端川郡) 마곡역(麻谷驛)을 지나다가, 송나라 이사중(李師中)이 바른말 하다 귀양가는 당개(唐介)를 송별하면서 지은 시[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詩)] 한 수를 써놓고 갔는데,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李承健)이 이는 나라를 비방하고 왕을 기롱한 것이라고 조정에 고하였다. 마침내 연산군은 그가 원망하는 뜻을 가졌다 하여 서울로 압송하였고, 국문을 받던 도중 죽었다.
- 16)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8일 丙子.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李承健)이 단천군(端川郡) 마곡역(麻谷驛)에 붙어 있는 시를 아뢴 것은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다(『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11월 11일 癸卯).
- 17) 무풍정(茂豐正) 이충(李攄)은 태종(太宗)의 아들인 온녕군(溫寧君)의 손자이며, 우산군(牛山君) 이중(李鍾)의 차남으로,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유배(流配)되었다가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효수형을 받았다. 우산군 이중 및 형 용성군(龍城君) 이원(李援), 아우 한산도정(韓山都正) 이정(李挺), 화원도정(花原都正) 이간(李揆), 금천도정(錦川都正) 이변(李抃), 청양도정(靑陽都正) 이건(李健) 모두 김종직(金宗直)의 문하(門下)에서 배웠기 때문에 7부자가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 18)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8일 丙子.

있었다. 1499년(연산군 5) 4월에는 야인 20여 기(騎)가 삼수군을 침입하여 거민 7명을 살해하고 남녀 33인과 우마(牛馬) 10여 마리를 약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⁰⁾ 또 다음달인 5월에도 삼수군의 감파리(甘坡里)에 여진족(彼賊) 50여기가 침입하여 남녀 4명과 소 2마리를 약탈해 갔다.²¹⁾ 그리고 같은 날에도 삼수경내를 침범하여 변민(邊民) 7명을 사로잡으므로, 조선군이 소선(小船)을 타고 추격하다가 배가 뒤집혀 4인이 익사하기도 하였다.²²⁾

결국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침입을 받는 등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조선에서는 재상들의 논의를 거쳐 그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우의정(右議政) 성준(成俊)을 서정(西征)의 주장(主將)으로, 좌찬성(左贊成) 이극균(李克均)을 부장(副將)으로 임명하였는데,²³⁾ 주장으로 임명된 성준은 사복시정(司僕寺正) 민효증(閔孝曾)·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 성희안(成希顔)·집의(執義) 유순정(柳順汀)·사간(司諫) 안운덕(安潤德)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게 해 줄 것과 군병(軍兵) 2만, 내금위(內禁衛) 70명, 겸사복(兼司僕) 20명, 우림위(羽林衛) 10명을 영솔하게 해 줄 것, 사복(司僕) 전마(戰馬)를 미리 선택하고, 군기시(軍器寺)는 총통군(銃筒軍)을 선택하여 연습해 줄 것을 청하여 승인을 받았다.²⁴⁾

그러나 홍문관(弘文館)은 농사가 풍년이 들지 못하는데다가 기근(飢饉)까지 심하고, 오랑캐 지역은 몹시 춥고 도로가 험난하여 익숙하지 못한 조선의 군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서정의 결정에 반대하였다.²⁵⁾ 마침내 1500년(연산군 6) 1월 조정의 중신들도 정벌의 소문이 돌아 여진인들이 다 숨어버려 정토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과 오히려 군수와 문자의 낭비를 초래하며 인민을 피폐하게 만들뿐이라며 정벌의 중지를 주장하면서 서정은 중지되었다.²⁶⁾

19) 『연산군일기』 권34, 연산군 5년 8월 7일 甲午.

20) 『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4월 3일 壬辰.

21) 『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5월 9일 戊辰.

22) 『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5월 9일 戊辰.

23) 『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5월 9일 戊辰.

24) 『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5월 12일 辛未. 연산군대 논의된 西征에 대해서는 河內良弘, 『明代女眞史の研究』,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西征の議』, 同朋舎出版, 1992, 666~669쪽 참고.

25) 김순남,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2009, 152쪽.

26) 김순남, 위의 논문, 2009, 153쪽.

그러나 서정에 대한 논의는 다른 한편으로 관방대비책의 일환으로 장성수축(長城修築)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삼수의 순변사(巡邊使)로 임명되었던 변종인(卞宗仁)이 돌아와 삼수군의 산천과 적로의 형세, 거민의 호수에 대한 도면을 올리고, 이어서 어면에 신보(新堡), 즉 새로운 군보(軍堡)를 설치하기를 청하였다.²⁷⁾ 이에 서정 전에 우선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면·감파·석모로에 보(堡)를 설치하고, 어면창(魚面倉)이 있는 어면에는 만호(萬戶)를, 감파·석모로에는 권관(權管)을 배치하여 방어하게 하였다.²⁸⁾

더불어 축성사제조(築城司提調) 이계동(李季叟)이 함경도 어면(魚面)·갈파(袞坡)에 급히 성을 쌓아 적의 화란을 막을 것을 주장하였고, 농사철이 바빠 백성을 부릴 수 없으니, 우선 목책(木柵)이라도 설치할 것을 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다.²⁹⁾ 그리고 서정도원수(西征都元帥) 성준과 부원수 이계동(李季叟)은 종사관 고흥산을 보내 어면·감파·석모로에 축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준과 이계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감파·석모로의 축성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게 된다. 즉 어면은 강내(江內)에 있어 축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감파·석모로는 거민이 30호에 불과하고 또 강외(江外)에 있다는 점,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들이 모두 들에 나가 있다가 만약 적변을 만나게 되면 보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양리(兩里)의 거민들을 어차피 삼수 본진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 남도 군사로 하여금 또 감파·석모로 2보에 수자리 살도록 하여 괴로움을 겹치게 함은 불가한 일이라는 점을 열거하면서, 고흥산으로 하여금 감파·석모로의 설치에 대한 편부를 다시 살피도록 청하였다.³⁰⁾

그 후의 고흥산이 감파·석모로의 설치 편부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동지사(同知事) 이승건(李承健)이 1500년(연산군 6)에 ‘함경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남북(南北) 방수(防戍)의 폐단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지난해(1499년, 연산군 5)에 새로 어면보(魚面

27) 卞宗仁이 巡邊使로 임명된 것은 1499년(연산군 5) 5월 12일이었으며, 돌아와 復命한 것은 그 해 7월 13일이었다(『연산군일기』 권33, 연산군 5년 5월 12일 辛未; 『연산군일기』 권34, 연산군 5년 7월 13일 辛未).

28) 『연산군일기』 권34, 연산군 5년 7월 24일 壬午.

29)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1일 乙酉.

30) 『연산군일기』 권34, 연산군 5년 8월 7일 甲午.

堡)를 설치하고 삼수군(三水郡)에서 어떤보까지 새 길을 개통하였다'는 말에서 어떤보는 1499년(연산군 5)에 새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리고 1530년(중종 25)에 증수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어떤보에 대해 어떤강변에 있는 신축한 석성(石城)이고 병마만호(兵馬萬戶) 1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에 대한 축성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감파보(甘坡堡·감파농보[甘坡農堡])에 대해서는 정덕(正德) 무인년(1518년, 중종 13)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1499년(연산군 5)에는 어떤보만 축성하고, 감파보·석모로보 축성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³³⁾

결국 1499년(연산군 5)에 고행산으로 하여금 어떤보를 축성하게 한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감파보·석모로보의 설치에 대해서는 적당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고행산이 감파보·석모로보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 두 보에 대한 설치를 정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31) 『연산군일기』 권39, 연산군 6년 10월 5일 丙戌 1번째 기사. 이때 동지사(同知事) 이승건(李承健)은 삼수군과 어떤보까지 5개의 큰 계(嶺)를 넘어야 하는데, 높고 험준하여 발을 붙이기가 어려우므로 군사들이 말을 타거나 짐을 싣고 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대개 적고, 어떤보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거주하는 백성들이 전연 생활할 수 없으므로 삼수군 백성들이 보(堡)를 옛날의 후주(厚州)로 옮기기를 원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행산과 더불어 그 땅을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삼수 사람들의 등장(等狀, 等訴)에 의거하여 다시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서 보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9, 三水郡 關防 魚面堡.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9, 三水郡 關防 甘坡農堡. 감파보(甘坡堡)는 어떤보(魚面堡)에서 서북쪽으로 20리 되는 곳에 있었고, 깊은 골짜기 속에 있어서 하지(夏至)가 되어야 비로소 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鶴峯全集』 鶴峯逸稿 제1권 詩).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은 1579년(선조 12) 어떤보의 뒷산을 넘어 강가의 자갈길 곁으로 해서 가지곡(茄之谷)의 적로(賊路)를 지나 감파보에 도착하였는데, 감파보는 남쪽으로 가파른 고개를 의지해 있고, 북쪽으로는 강물에 임해 있었다고 한다. 감파보가 만첩 산 깊은 골짜기 속에 있으며, 남쪽 고개가 몹시 높기 때문에 겨울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늦봄이나 되어야 겨우 해가 보인다고 하고, 보 안의 군사는 겨우 10여 명뿐이었다고 기록하였다(『鶴峯全集』 鶴峯逸稿 제3권 北征日錄). 1528년(중종 23)감파보는 함경남도병마절도사의 군관을 파견하여 관리하다가 병조와 비변사의 건의로 병조에서 뽑아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고(『중종실록』 권60, 중종 23년 2월 2일 甲辰), 1594년(선조 27)에는 여진족의 침입으로 함락되었다(『선조실록』 권50, 선조 27년 4월 4일 壬子). 이후 감파보는 폐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보이는 삼수군(三水郡)과 어면(魚面)〉³⁴⁾

결국 감파보·석모로보의 보 설치와 축성은 정지되었더라도 어면보의 축성과 관련해서는 고흥산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그가 어면보의 축성에 대한 일을 잘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흥산은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이 되었다.

3)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헌부(司憲府)는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冤抑)을 풀어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³⁵⁾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백관에 대한 탄핵 감찰과 일반 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고형산은 1500년(연산군 6) 1월 20일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임명되었다.³⁶⁾ 『경국대전』에는 사헌부에 대사헌(大司憲) 1명(종2품), 집의(執義) 1명(종3품), 장령(掌令) 2명(정4품), 지평(持平) 2명(정5품), 감찰(監察) 24명(정6품)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35) 『경국대전』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司憲府.

36)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0일 乙亥.

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³⁷⁾ 따라서 정4품직인 장령은 사실상 사헌부의 핵심 관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직무가 막중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대부분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直拜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및 지방에서의 행정 실무를 두루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고흥산 역시 중앙과 지방에서의 행정 실무를 두루 거쳤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경연(經筵) 왕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홍문관 관원과 의정부 대신 또는 뛰어난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경연 후에는 국정 현안이 제기되어 신하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종은 20여 년 동안 경연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성종 역시 25년의 재위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경연에 참석하였으며, 초년에는 하루에 3번씩 경연을 열었다. 특히 성종 때에는 ‘경연정치(經筵政治)’라 불릴만큼 대신과 대간이 왕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문제를 협의하는 하였다.

연산군은 경연을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초기에는 성종 때의 경연을 계승하려 하였고, 사헌부 장령이 된 고흥산 역시 경연에 참여하여 국정 및 시무에 관한 여러 건의를 하였다. 『연산군일기』를 보면 고흥산은 사헌부 장령이 된지 6일 만에 경연에 참여한 성종에게 함경도의 변방 안정책과 역로의 폐단에 관련된 사항을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고흥산은 함경도에 이주시킨 사민(徙民)들에게 준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신이 일찍이 함경도 都事가 되었는데, 변방에 옮긴 인민들을 보니 지극히 영락 쇠진했습니다. 국가에서 백성을 북도로 옮길 때에는 밭갈이할 땅을 골라서 주고서 3년을 한하여 復戶와 면세를 하여 주니, 위무 구휼하는 도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이 거개가 위무 구휼하여 주지 않으며, 주었다는 전토도 유명무실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니 무엇으로 살 밑천을 삼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감사로 하여금 밭갈이할 만한 전토를 선택하여 주게 하옵소서.”³⁸⁾

37)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司憲府.
 38)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6일 辛巳.

고형산은 함경도 도사(都事)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관찰사, 즉 감사의 보좌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함경도의 변방 안정책과 관련된 폐해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때에는 함경도에 6진(鎭)을 설치하고 조선의 영역을 두만강 유역까지 실질적으로 확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6진을 방어하기 위해 성보(城堡)를 쌓은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6진 지역으로 옮기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여 왔다. 고형산은 이렇게 변방에 옮긴 백성들에게는 발갈이할 땅을 골라서 주고 3년을 한하여 각 부역 등의 일을 면제하거나 조세 등의 세금 또한 면제하였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구휼하는 도가 지극하였던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함경도 도사로 활동하면서 함경도 변방에 옮겨진 백성들을 보니 매우 영락 쇠진하였는데, 이것은 수령들의 대개가 위무하고 구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었다는 전토 역시 유명무실하여 이익을 얻지 못해 살아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6진 지역에 옮긴 백성들에 대한 토지 지급과 백성들에 대한 안정책이 세대가 지나고 수령들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역할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고형산은 백성들에게 전토를 지급하는 것을 수령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수령을 지휘·감독·통솔하는 관찰사, 즉 감사에게 맡겨 실질적으로 발갈이 할 수 있는 전토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주청한 것이다.

앞서 고형산은 지평현감으로 ‘근휼민은 무요제폐(勤恤民隱, 務要除弊)’, 즉 ‘백성들의 괴로움(민생고)을 부지런히 구휼하였으며, 폐단을 제거하고 바로잡는데 힘썼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고형산은 사헌부 장령이 되었어도 함경도에서 자신이 직접 본 백성들의 괴로움과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의 이러한 주청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고형산의 의견에 대해 영사(領事) 성준(成俊)은 변방에 옮긴 사람들이 安接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이 위무 구휼하지 않는데서 오는 것이니 장령, 즉 고형산이 아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감사는 여러 가지 일을 총결(總決)하기 때문에 감사가 친히 전토를 선택하여 백성들에 주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성준은

옛 법을 거듭 밝히고 수령을 타일러서[申飭]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고흥산은 “만일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서 백성들에게 준 전토가 혹시라도 이름만 그 수효를 채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을 즉시 파출(罷黜)케 명한다면 거의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아뢰었다. 고흥산은 현실적으로 감사의 업무가 많아 6진 지역에 옮겨온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선의 수령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조사하여 명목상으로 백성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어 있는 폐단을 바로잡도록 건의한 것이다. 고흥산의 이러한 건의는 작게는 6진 지역의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이며, 크게는 백성들을 안집(安集)시켜 변경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고형산의 또 다른 건의는 역로의 폐단과 그 폐단을 바로잡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고흥산이 함경도 도사였을 때 감사와 함께 아뢰었던 적이 있었다. 고흥산이 지적한 역로의 폐단과 개선책은 각각 두 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신이 함경도에 있으면서 驛路의 폐단을 보았는데, 洪原에서 端川까지가 南道가 되고, 吉城에서 明川까지가 북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高山·居山·輸城 등의 3대 驛이 있습니다. 남도 兵使는 北靑으로 本營을 삼는데, 만일 三水·甲山에 賊變이 있어도 시기에 맞추어 달려가 구원합니다. 그런데 북청에서 갑산까지가 3백 30리요, 그 사이에는 濟人館·鍾浦·熊耳·虛川 등의 역이 있고, 갑산에서 삼수까지가 2백 10리인데, 그 사이에는 積生驛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들은 큰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역에 말이 겨우 2~3 필밖에 없습니다. 병사의 행차에는 軍官·伴人 등 허다한 사람들이 있으니, 말 짐바리가 반드시 많은지라 부득이 남도의 驛馬를 뽑아 가지고 가는데, 다만 기한에 맞추려고 달리느라 죽는 말이 자못 많으니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제인관·적생 등 역에는 큰길의 예에 의하여 馬匹을 많이 세우고 郵吏를 더 두어서, 남도 거산 등 역의 폐해를 제거 하여야 합니다.

곧은 길의 驛驛에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 野人이나 대소 使客이 왕래할 때에 진상하는 물품의 수송 등으로 마필을 쉴 때가 없습니다. 또 고산 역의 폐단으로 말하면, 본영을 咸興으로 하고 安邊 등의 관아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모두 함흥에 바쳐서 서울에 이르게 하는데, 그 왕래에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 나르고 부족하면 혹 소마리로 실어 나르며, 소가 부족하면 남녀가 지고 이고 하여도 지탱하지 못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각역에는 대·중·소에 따라 마필이 원래부터 정하여진 수가 있으며, 이보다 앞서 그 말 수에 따라서 位田을 주고 公須田의 日守역시 수를 채워 주기 때문에 역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년, 量田할 때에는 〈역이 있는 곳을〉 길의 대·중·소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 마필의 有無만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역로가 날이 갈수록 더욱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에, 병조에서 역로를 회복하는 계책을 아뢰었는데, 함경도의 곧은 길은 큰길의 준례대로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법은 이러하지 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이 전에 監司와 함께 본도의 역로를 회복시킬 계책을 아뢰었는데, 청하읍건대 곧 그대로 시행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의 位田과 公須田 및 日守는 그 〈역로의〉 대·중·소에 따라 수에 준하여 주고, 역리가 희소한 곳은 역시各司의 奴婢로 충당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⁹⁾

첫 번째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함경북도 삼수·갑산으로 가는 역로의 폐단과 개선책이었다.



〈「지승(地乘)」에 보이는 제인관(濟仁館)⁴⁰⁾

39)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6일辛巳.

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가운데 네모칸이 제인관(濟人館)이다. 제인관 아래로는 북청이, 위로는 삼수와 갑산이 표시되어 있다.

함경도는 홍원에서 단천까지 남도로, 길성에서 명천까지 북도로 나누어 각각 방어책임자인 병사(兵使)를 파견하여 함경남도병사(咸鏡南道兵使), 함경북도병사(咸鏡北道兵使)를 두었다. 남도병사가 주재하면서 본영(本營)으로 삼았던 곳이 북청이었고, 북도병사가 주재하면서 본영으로 삼은 곳은 종성진(鍾城鎭)의 행영(行營)이었다. 남·북도 병사 모두 변방 방어의 책임자로서 소속 진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있으면 군병을 이끌고 구원해야만 했다. 삼수와 갑산은 함경북도에 속해 있었지만, 북도병사가 머무르는 행영과는 거리상 멀었기 때문에 남도병사 또한 북도병사에게 미루지 않고 달려가서 구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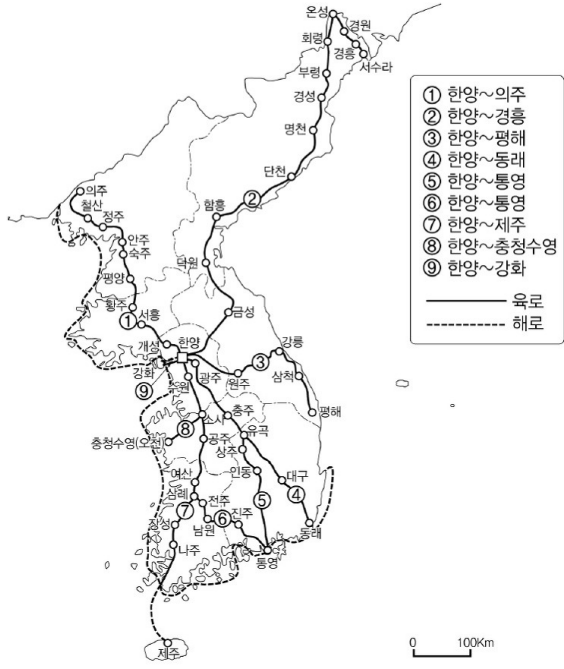
그런데 앞 사료의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고형산의 언급처럼 남도병사가 주둔하는 북청에서 갑산까지가 3백 30리, 또 갑산에서 삼수까지가 2백 10리여서 이 거리 역시 상당히 멀었다. 북청에서 삼수까지는 5백 40리나 되었다. 그리고 북청-삼수-갑산 사이에는 중간에 역이 있었는데, 북청-제인관-종포-웅이-허천-갑산-적생역-삼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제인관, 종포, 웅이, 허천, 적생역은 소로(小路)에 위치하고 있어서 작은 역에 해당되어 한 역에 말이 겨우 2~3필만 배정된 것에 있었다. 즉 남도병사가 갑산과 삼수를 구원하기 위해 시급히 달려가면서 군관과 반인 등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기 및 군수품 등을 싣고 가는데, 소로에 위치한 이들 역에 배정된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남도의 역마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일에 맞추어 가면서 지쳐 죽는 말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고형산은 제인관과 적생역 등의 역은 대로(大路)의 예에 의하여 마필(馬匹)을 많이 두고 역참의 아전이라 할 수 있는 우리(郵吏)를 더 두어서 함경남도 북청에서 삼수·갑산으로 가는 산 길에 소재하는 역의 폐단을 없앨 것을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경도에서 서울로 오는 직로(直路)의 폐단과 개선책이었다.

『중종실록』를 보면, 고형산은 직로의 우역(郵驛)에도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 전기부터 조선에서는 북방의 여진족의 회유하여 내조(來朝)를 우대하고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는 수직정책(授職政策)을 실시하여 왔다.



〈조선시대 교통로〉⁴¹⁾ ※ 지도 재작성 요망

여진인들은 조선의 회유정책에 응해 조선에 물품을 진상하고 내조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과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에 내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진인들 중에서도 대소(大小) 추장(酋長)에 해당하거나 추장이 파견한 사인(使人) 또는 사객(使客)들로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선조 때까지 여진인들의 내조 횟수는 1천여 회 이상이었고, 조선에 내조하여 관직을 받은 수직여진인(受職女眞人)들도 1천여 명 가까이 되었다.

또 여진인들은 조선에 직접 내조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토산물을 가져와서 조선에 진상(進上)이라는 이름으로 바치면, 조선에서는 진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었다. 따라서 고흥산의 언급처럼 여진인과 그 대소(大小) 사객(使客)이 왕래하는 경우나 또는 여진인들의 진상(進上) 물품의 수송으로 6

41) 이 중 ② 한양~경흥의 역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함흥 이남의 길이 '直路', 즉 高山道이다.

진 지역에서부터 한양으로 가는 역로에 있던 역은 마필이 거의 쉴 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구나 고행산이 지척한 고산역(高山驛)은 중6품의 찰방(察訪)이 파견된 13개의 속역(屬驛)을 거느린 찰방역(察訪驛)이었으며, 소위 안변(安邊) - 덕원(德源) - 문천(文川) - 고원(高原) - 영흥(永興) - 정평(定平) - 함흥(咸興)으로 이어지는 고산도(高山道)의 중심역이라 할 수 있었다. 고산도에 속한 역은 안변의 남산(南山) · 삭안(朔安) · 화등(火燈) · 봉룡(奉龍), 덕원의 철관(鐵關), 문천의 양기(良驥), 고원의 통달(通達) · 애수(隘守), 영흥의 화원(和原), 정평의 주천(酒泉) · 봉대(蓬臺), 함흥의 평원(平原) · 덕산(德山) 등 13개 역이었다.

결국 함경도는 함흥을 본영으로 하기 때문에 북쪽의 6진 지역에서의 진상물 뿐만 아니라 남쪽의 안변 등에서의 진상 물품 역시 모두 함흥에 바쳐졌다가 서울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산역을 중심으로 한 고산도, 즉 고행산이 말한 소위 ‘직로(直路)’의 폐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 폐해란 ‘직로’를 왕래하면서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 나르고, 부족하면 혹 소로, 소가 부족하면 남녀가 지고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이마저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백성들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고행산은 ‘직로’인 고산도의 폐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병조에서 역로에서 회복하는 계책을 올렸던 바, 함경도의 직로는 곧 대로의 준례대로 대우하기로 한 것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각 역의 중요성과 크기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어서 대 · 중 · 소로에 지급하는 마필의 수, 그리고 마필의 수에 따른 전토인 위전(位田), 그리고 역의 경비 조달을 위한 토지인 공수전(公需田), 관(館) · 역(驛)에 분속되어 잡역에 종사하는 아전의 하나인 日守의 숫자 등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고행산은 함경도의 직로를 대로의 준례대로 대우하기로 한 것을 지켜 위전과 공수전, 일수를 대로의 준례대로 지급하고, 역리가 희소한 것은各司의 노비로 충당하여 배정하도록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행산이 함경도 도사로써 관찰사와 함께 함경도의 역로를 회복시킬 계책으로 아뢰었던 것이었다.

연산군은 고행산의 주청을 듣고 병조로 하여금 節目을 상고하여 본 후 처리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병조에서는 며칠 뒤에 해당 절목을 상고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병조판서 이계동(李季叟)과 참관 권건(權健)은 함경도 역로의 죄잔 피폐가 매우 심하므로 예전에 대로의 준례로 대우한 것처럼 역의 위전을 더 줄 것을 청하였고, 우의정 성준 역시 역로가 과연 죄잔 피폐하므로 병조의 청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고, 연산군이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함경도의 역로에 위전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⁴²⁾ 따라서 고형산은 지방관으로서 백성들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 관직인 사헌부 장령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바로 연산군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함경도 역로의 폐단을 설명하고 바로 잡으려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같은 날 경연 때 고형산은 사헌부 장령으로서 홍백경(洪伯慶)의 범행이 지극히 중하니 그 죄를 깊이 다스릴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홍백경의 아버지는 의빈(儀賓)⁴³⁾ 당양군(唐陽君) 홍상(洪常)이고, 어머니는 성종의 누이 명숙공주(明肅公主)였다. 홍백경이 성종조(成宗朝)의 시녀(侍女) 복비(福非)를 간음하고 자신의 첩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어 사헌부에서 그 죄가 장 1백에 해당되고 고신(告身)을 다 거둔 다음 먼 곳에 부처(付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산군은 홍백경이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벌하지 않고 속(贖)을 바치게 하였다.⁴⁴⁾ 속을 바치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연산군이 홍백경의 죄를 속을 바치는 것으로 정하자 사헌부에서는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며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논쟁하여 왔다.

특히 사헌부에서는 시녀가 아니고 일이 있어 궁중에 들어갔던 여인이라도 차마 첩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복비는 성종조의 시녀로 6년간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헌부에서는 홍백경의 죄가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고형산이 홍백경의 죄를 깊이 다스리도록 청한 것은 사헌부 장령이 된지 며칠 지나지

42)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1일 乙酉.

43) 부마도위(駙馬都尉)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을 통틀어 의빈(儀賓)이라 하였다.

44)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14일 己巳; 21일 丙子.

45)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1일 丙子.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헌부 장령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면모와 그의 강직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형산은 사복시(司僕寺)의 말과 관련된 폐단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이 죽으면 守守은 赦가 있기 전임을 막론하고 罷黜됩니다. 다만 兼司僕도 사냥할 때 사복시 말을 타며, 여러 사람들도 사냥 그물을 말에 싣고 나가는데, 한번 먼 곳으로 나가면 혹 20일까지 되어서야 돌아오매, 그만 〈말이〉 여위고 지쳐 병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 죄책을 받지 않고 유독 나누어 기른 각 관아 수령만을 죄 준다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청하옵건대 금후로는 각 고을에 말을 먹이고 기르는 데 조심하지 않아서 죽게 한다든가, 사복시에서 병든 말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⁴⁶⁾

사복시는 조선시대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을 관리하고 국가의 말을 사육하는 마구간과 목장을 관리하던 관청이었다. 그런데 사복시가 관리하던 말은 각 고을의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 관아에서 관리하던 말이 죽으면 수령은 물간사전(勿揀赦前)으로 파직되었다. 물간사전이란, 후일 사면(赦免)이 있어도 사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령에게만 너무 중하게 적용되었다.⁴⁷⁾

고형산은 정예기병 친위군이라 할 수 있는 겸사복(兼司僕)도 사냥을 할 때 사복시의 말을 타고, 여러 사람들도 사냥 그물을 말에 싣고 나가는데, 한 번 먼 곳으로 가면 20여 일이 되어서야 돌아오므로 말이 여위고 지쳐 병이 생기는데, 말을 사용한 사람들은 죄를 받지 않고 유독 말을 나누어 기른 각 관아 수령만을 죄 준다는 것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형산은 이제부터 각 고을에서 말을 먹이고 기르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죽게 한다든가, 사복시에서도 병든 말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고형산의 주장은 말을 단순히 관리하고 기르는 수령들뿐만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여 병들게 한 사복시의 책임도 물어야

46)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6일 庚寅.

47)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6월 6일 戊子.

한다는 것으로 일면 타당하고 논리적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연산군은 고흥산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 여러 재상들과 의논하라고 하였지만, 3일이 지난 뒤에는 “고형산이 사복시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좃을 수 없다. 예전 말에 법이 쇠털 같대法如牛毛⁴⁸⁾고 하였으니 어찌 가볍게 옛 법을 고치겠는가?”라고 전교하여 고흥산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⁴⁹⁾

사실 고흥산이 사복시의 말과 관련된 폐단과 그 개선책을 말한 것은 연산군의 과도한 사냥으로 인한 것이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사냥을 자주 나갔으며, 심지어는 ‘나도 사냥을 하고 싶대予亦欲打圍’라고 하면서 9월 이후 4번의 사냥을 하겠다고 전교한 바도 있었다.⁵⁰⁾ 그러나 ‘가을과 겨울은 모두가 전하의 사냥놀이 하시는 날이 되고 말 것’⁵¹⁾이라는 대사간(大司諫) 정석견(鄭錫堅)의 말처럼 거듭된 사냥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즐기기 위해 도성을 기준으로 30리 내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연산군의 사냥에 대해 대신들과 대간 등의 신료들은 사냥을 중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연산군의 사냥은 그치지 않았고, 고흥산이 사헌부 장령이 된 1500년(연산군 6)에도 연산군은 거듭 사냥에 나섰다. 영의정(領議政) 한치형(韓致亨)이 연산군이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할 때 아직 벼농사를 대부분 수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하자, 연산군은 오히려 10월은 사냥할 시기로 백성들이 수확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과실이라며 사냥을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교한 바도 있었다.⁵²⁾

그런데 연산군의 사냥에는 수 만 명의 타위군(打圍軍)이 동원되었으며, 수 천의 군사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이렇듯 연산군의 과도한 사냥으로 사복시의 말이 지쳐 여위고 많은 말들이 병드는 등 그 폐해가 많았던 것이다.

48) 杜甫의 시에 ‘秦時嬴商鞅 法令如牛毛’라 하였는데, ‘秦나라 때에 商鞅을 임용하여, 법령이 쇠털처럼 치밀해졌다’는 뜻으로 ‘법이 쇠털 같대法如牛毛’는 것은 法令이 엄밀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49)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9일 壬辰.

50) 『연산군일기』 권27, 연산군 3년 9월 2일 庚子.

51) 『연산군일기』 권27, 연산군 3년 9월 11일 己酉.

52) 『연산군일기』 권39, 연산군 6년 10월 1일 壬午.

따라서 고흥산이 사복시에서 사용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은 어쩌면 연산군의 과도한 사냥에 대한 폐해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과 같다. 결국 고흥산은 사냥을 정지하라는 대신들과 신료들의 요청을 거둬 묵살하는 연산군에 대해 말을 기르며 관리한 수령들은 죄가 없다고, 그 책임은 사냥을 자주 실시하는 연산군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복시의 말을 동원하여 사냥에 나선 연산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인 셈이다.

결국 연산군은 고흥산의 숨은 의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산군은 재상들과 의논하라는 말을 어기고 며칠 뒤 직접 옛 법을 운운하며, 고흥산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형산은 사복시의 말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연산군이 조종조(祖宗朝)의 고사(古事)로써 시행해 온 윤대(輪對)를 오랫동안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온당하지 못하다며 윤대를 행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⁵³⁾ 윤대는 조선시대, 각 관청의 郎官이 매월 세 차례씩 윤번으로 임금을 뵈고 직무에 관하여 아뢰던 일로써 문관은 六品 이상, 무관은 4품 이상의 관원이 다섯 명 내에서 차례로 하여 온 것이다. 연산군은 오랫동안 윤대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의미이다. 고흥산은 이에 연산군이 윤대를 시행하여 정사를 돌보도록 요청하였으나, 연산군은 고흥산의 청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王不答)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고흥산은 사복시의 말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동시에 윤대를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연산군의 과도한 사냥으로 인한 정무를 돌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광흥창수(廣興倉守)와 함경도 재파견

그렇지만 2개월 뒤인 1500년(연산군 6) 4월에는 고흥산의 관직이 광흥창수(廣興倉守)라고 기록되어 있다.⁵⁴⁾ 아마 고흥산이 사복시의 말에 대한 폐단을

53)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6일 庚寅.

54) 『연산군일기』 권37, 연산군 6년 4월 6일 己丑.

지적하고 운대를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한 의도를 연산군이 알게 되었고, 연산군은 강직하고 바른 언사를 하는 고흥산을 광흥창수라는 관직을 주어서 궁 밖으로 보내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광흥창(廣興倉)은 사록관(司錄館)·천록사(天祿司)·태창서(太倉署)·태창(太倉)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전시기에 걸쳐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와 관할 창고였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조운선(漕運船)이 집결하는 서울의 서강 연안 와우산(臥牛山) 기슭에 위치하였으며⁵⁵⁾, 관원으로 정4품인 수(守), 종6품인 주부(主簿), 종8품인 봉사(奉事), 정9품인 부봉사(副奉事)를 각 1인씩 두었다.⁵⁶⁾ 고흥산이 임명된 광흥창수는 광흥창의 책임자라 할 수 있으며, 광흥창은 주로 경기와 삼남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미를 쌓아두었다가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그 규모는 1년에 쌀 1만 9천석, 대두 1만 8천석을 보관할 정도의 대규모 창고였다.⁵⁷⁾



〈현재의 광흥창역과 와우산, 와우산 기슭의 광흥창터 표시석〉 ※ 표시석 사진 교체 요망

그렇지만 고흥산의 광흥창수 역임은 그리 오래되진 못하였다. 왜냐하면 고흥산의 광흥창수 관직이 나타나는 『연산군일기』의 기록은 바로 광흥창수 고흥산을 함경도 파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⁵⁸⁾

55) 광흥창은 현재 마포구 창전동 145번지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역 이름(광흥창)으로 남아 있다.

56) 조선 후기에 령(令)·직장(直長) 각 1인씩을 증원하여 창고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5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참조.

58) 『연산군일기』 권37, 연산군 6년 4월 6일 己丑.

野人이 함경도 惠山 등지에 들어와 살기를 청하므로, 鄭文炯·成俊·李克墩·李克均·李季叟·呂自新·權健·柳濱을 불러,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성준·정문형 등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여자인 역시 절도사였는데, 야인 金丹多茂 등 3~4인이 우리나라 성 밑에 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 등이 치계하였더니 조정 의논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지금 야인의 수가 매우 많으니 만일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후에는 반드시 억제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절도사 權仲愷가 역시 ‘야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삼 啓聞하였으니, 지금 비록 下書하여 물으신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전에 아뢴 내용으로 아될 것입니다. 청컨대 별도로 현명하고 유능한 朝士한 사람을 보내되, 임시로 軍管을 삼아 따로 절도사의 앞에 서서 야인들과 서로 면대하여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아보아 아뢰게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였는데 … 전교하기를, “저들이 만일 고집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종당에는 필경 부득이 허락하게 될 것이니, 지금 정승들이 아뢴 뜻대로 별도로 朝臣을 파견해 보내어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아본 후에 처리함이 가하다.”하였다. 성준 등이 아뢰기를, “廣興倉守 高荊山이 일찍이 그 도의 都事를 지내어 변방 사정을 잘 알므로 그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⁵⁹⁾

이를 보면, 1500년(연산군 6) 6월 야인(野人), 즉 여진인들의 일부가 함경도 惠山(惠山) 등지에 들어와 살기를 청원하였는데,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준·정문형 등은 예전 여진인 금단다 무 등이 조선의 성 밑에 살려던 것을 조정에서 불가하다고 한 전례를 들면서, 지금 함경도 惠산에 거주하려는 여진인들의 수가 매우 많으니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후에 억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절도사 권중개에게 다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 보아도 전과 같이 아될 것이 분명하므로 별도로 현명하고 유능한 조사(朝士), 즉 조신(朝臣) 한 사람을 보내어 여진인들과 대면하여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산군은 성준과 정문형 등의 뜻대로 별도로 조신을 파견하여 여진인들의 실정을 알아본 후에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성준은 당시 광흥창수였던 고흥산이

59) 『연산군일기』 권37, 연산군 6년 4월 6일 己丑.

예전에 함경도의 도사(都事)를 지내어 변방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추천하였으며, 성종의 재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고흥산은 예전에 함경도 도사로 함경도의 변방 사정을 잘 알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유능한 관료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이 여진인들의 혜산 이주 문제로 함경도로 파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연산군일기』에는 이후 여진인들의 혜산 이주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흥산이 언제 어떤 관직에 임명되어 파견되었는지, 또 실제로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시 조선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이 자주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진인들의 혜산 이주를 조선에서 쉽게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고흥산이 함경도에 파견되어서 여진인들과 대면하여 그 실정을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여진인들에 대한 이주를 허락하자고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5)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의 재임명

고형산은 1500년(연산군 6) 7월 3일 사헌부 장령으로 재임명되었다.⁶⁰⁾ 여진인들의 혜산 이주 문제로 고흥산의 파견이 논의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 사이 고흥산이 함경도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연산군일기』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하간 다시 사헌부 장령이 된 고흥산은 정언(正言) 심문순(沈順門)과 함께 장성(長城)을 쌓는 일이 불가하다고 논계(論啟)하였으나, 처음에는 연산군은 고흥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후에는 장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수의(收議), 즉 여론을 수합하겠다고 하였다.⁶¹⁾

조선에서는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압록강을 따라 장성을 쌓았는데, 평안도 만포(滿浦)에서 시작하여 창성(昌城)에서 그치고 있었다.⁶²⁾ 그런데 연

60)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7월 3일 乙卯.

61)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7월 6일 戊午.

62)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9일 甲子.

산군 때가 되면 이 장성이 거의 다 무너져서 적기(敵騎)가 단숨에 몰아 들어올 지경이었다. 더구나 여진족의 침입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병조(兵曹)가 연산군에게 양계장성도(兩界長城圖)를 가지고 가서 엠티를 수축하면 공은 적게 들고 이익은 크다⁶³⁾고 하자 평안도에 장성 쌓는 일에 대해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는 축성사제조(築城司提調)로 있던 성준(成俊)·이계동(李季叟)이 평안도의 장성을 하삼도(下三道)의 인민으로 하여금 지역을 나누어 주어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점점 수축하여 역사를 마치도록 하자고 건의하여 평안도의 장성 수축이 결정되었다.⁶⁴⁾

그러나 연산군과 재상들의 평안도 장성 수축 결정에 대해 사헌부의 대간 및 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은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평안도의 장성 수축은 하삼도의 인민을 동원하는 등 많은 민력(民力)이 동원되는 일이었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흥산 역시 백성들을 위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고흥산은 동청례(童淸禮)의 위장(衛將) 임명이 불가하다는 일과 대간과 정조(政曹)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였다.⁶⁵⁾ 동청례는 원래 아버지가 여진족 추장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였으며, 어머니는 조선인이었다. 동청례는 성종 때에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합격한 바 있었다.⁶⁶⁾ 연산군대 여진인들의 침입이 격화되자, 조선에서는 동청례를 1496년(연산군 2)과 1497년(연산군 3) 여진의 건주삼위(建州三衛)에 두 차례에 걸쳐 파견하기도 하였다.

동청례는 조선에 귀화했던 여진인으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왔는데, 동청례가 상언하여 관직을 요구하자 연산군과 대신들은 위장(衛將)의 관직을 주었다. 위장이란 오위장(五衛將)으로 오위(五衛)의 최고지휘관으로 종2품에 속하였으며, 각 위에 속하여 있는 병종(兵種)을 통괄하고 입직(入直)·행순(行巡) 및 시

63)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1월 20일 乙亥.

64)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10일 癸巳.

65)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7월 6일 戊午.

66) 연산군대 동청례(童淸禮)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성주,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만주연구』 14, 2012, 참고.

위(侍衛), 진법·훈련 등의 최고 지휘 및 통제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대간들은 위장의 임무는 금병(禁兵)을 관장하고 소속된 군관들의 평가들을 담당하므로 그 임무가 중하기 때문에 향화(向化)한 사람에게는 임명할 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청례의 위장 임명을 반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이전 통일신라나 고려보다도 더 확대된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있었다. 상피제란 같은 친족·외족·처족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함께 일을 할 수 없거나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관료제 사회를 지향한 조선은 상피제를 더욱 확대하여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 뿐만 아니라 법외(法外)에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의정부를 비롯한 병권을 전장(專掌)하는 군사기관과 법을 다스리는 청송관(聽訟官)과 고시관(考試官) 등 거의 모든 관직에 적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비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다.

고형산이 말한 정조(政曹)는 작게는 조선시대 문무관의 인사를 담당한 관청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지칭하며, 크게는 풍기와 언론을 관장하는 대간, 문헌과 역사기록을 관장하는 한림원·홍문관·춘추관 등을 포함하였다. 즉 정사와 관련된 중요한 관청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므로 같은 친족이 이러한 정조(政曹)에 있으면 제대로 된 감찰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사헌부의 대간과 정조(政曹)의 관원들은 서로 상피제를 적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연산군은 대간과 정조(政曹)의 상피제를 적용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형산 역시 다른 사헌부의 관리들처럼 연산군의 대간과 정조의 상피제 훼손에 대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후에도 고형산은 정언 심순문과 함께 장성을 쌓는 일이 불가함 점과 대간과 정조의 상피제 적용 폐지에 대해 거듭 연산군에게 논계한 것으로 나타난다.⁶⁷⁾ 고형산은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된지 불과 5일 사이에 장성 수축의 불가

67)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7월 8일 庚申.

한 점과 대간과 정조의 상피제에 폐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논계한 것이다. 고흥산이 사헌부 장령으로써의 역할을 매우 충실히 시행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사헌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는 인사 문제에 대한 서경(署經)이라는 것으로, 조선시대 사헌부의 서경은 5품 이하의 관원에 한정하였지만, 고위 관료 임명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비판을 할 수 있었다. 고흥산은 송여해(宋汝諧)가 성종이 승하한 말에 혼인한 일로 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용, 즉 다시 등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계하였고, 안진생(安晉生)은 나약한 사람임에도 평해군수(平海郡守)를 제수한 점, 채숙저(蔡叔渚)는 경력도 없어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데 김화현감(金化縣監)을 제수한 점, 이균(李鈞)은 부정(副正)을 제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승진한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함께 논계하기도 하였다.⁶⁸⁾ 그렇지만 연산군은 고흥산의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승(政丞)들에게 의논하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6) 함경도(咸鏡道) 경차관(敬差官)

1500년(연산군 6) 7월 3일 사헌부 장령으로 재임명되었던 고흥산은 4개월 뒤인, 11월 3일에는 함경도 경차관(敬差官)으로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 敬差官 高荊山과 南道節度使 權仲愷에게 下書하기를, “지난번 三水 지방의 魚面·神方仇非에 두 城堡를 설치한 것은 적군을 방어하기 편리하게 한 것이다. 지금 들건대 두 성보에서 經由하는 길이 매우 높고 험준하므로 남쪽 고을 軍卒들이 왕래하기가 곤란하여 폐해가 너무도 적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옛 厚州에 성보를 설치한다면 적군의 통로를 제압할 수가 있으므로 魚面堡와 神方仇非는 없어도 된다.’고 한다. 너희들은 감산부사 全五倫과 함께 급히 厚州에 가서 그 形勢와 利害를 살펴 보아 그 적의 통로가 많은지 적은지를 자세히 둘러 보며, 그 방어하

68) 『연산군일기』 권38, 연산군 6년 7월 8일 庚申.

기 편리하고 유익하기가 어떤이나 신방구비보다 나아 반드시 鎭을 이곳에 두고 저 두 성보를 없애야 한다면, 그 토지의 넓고 좁음과 밭은 몇 頃이나 만들 수 있고 사람은 몇 호나 거주할 수 있으며 土兵은 몇 사람이나 들여 보내야 하고 戍卒은 몇 명이나 두어야 할지 헤아려 보며, 삼수군 사람들이 또한 이사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만약 과연 진을 두게 된다면 어떤, 신방구비보가 없이 유독 이 한 진만으로도 要害地가 되어 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開錄하여 급보로 아뢰라.”하였다.⁶⁹⁾

조선시대 경차관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이었다. 연산군의 하서(下書)를 통해, 고흥산이 함경도 경차관에 임명되어 파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산군은 파견된 고흥산에게 어떤보와 신방구비보를 폐지하고 후주(厚州)에 보를 설치하는 편부를 급히 가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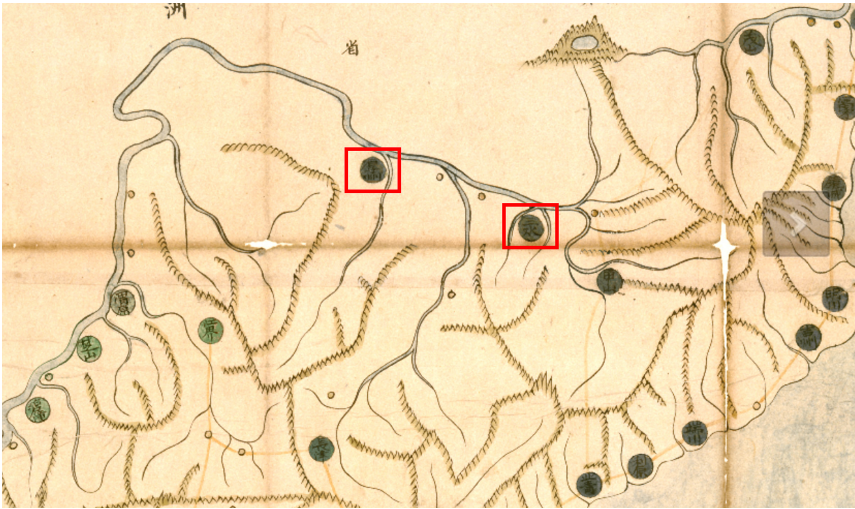
이러한 연산군의 지시가 있기 전인 1달 전에 동지사(同知事) 이승건(李承健)은 3년 동안의 함경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의 경험을 들면서 삼수군과 어떤보까지 5개의 큰 재(嶺)를 넘어야 하는 폐해를 지적한 바 있었다.⁷⁰⁾ 이승건은 5개의 큰 재가 높고 험준하여 밭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군사들이 말을 타거나 짐을 싣고 가면 생환자가 적을 정도이며, 어떤보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백성들이 생활할 수 없으므로 삼수군 백성들이 보(堡)를 옛날의 후주(厚州)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고흥산과 같이 후주의 땅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조정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근래 다시 삼수 사람들이 등소(等訴)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보를 옮기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보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고형산이 함경도 경차관으로 언제, 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된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다. 다만 이승건의 논의로 촉발된 어떤보의 폐지와 후주로의 이거 문제의 편부를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과 함경남도 절도사 권중개에게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9) 『연산군일기』 권39, 연산군 6년 11월 3일 癸丑.

70) 『연산군일기』 권39, 연산군 6년 10월 5일 丙戌.

그리고 그 조사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고흥산과 권중개에서 갑산부사(甲山府使) 전오륜(全五倫)과 함께 후주(厚州)로 가서 그 형세와 이해를 살펴보고, 적의 통로가 많고 적은지를 자세히 둘러보며, 방어하기 편리하고 유익하기가 어떤이나 신방구비보다 더 나은지를 살펴보게 한 것이다. 나아가 후주에 반드시 진(鎭)을 설치하여 두고 어떤이나 신방구비를 없애야 한다면, 그 토지의 넓고 좁음, 밭은 얼마나 만들수 있는지, 사람은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 토병(土兵)은 얼마나 들여 보내야 하는지, 수졸(戍卒)은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조사하게 하였다. 더하여 어떤·신방구비보 없이 후주 한 진만으로도 요해지가 되어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고 급보로 아뢰도록 하였다.



〈정구팔역도(靑丘八域圖)〉에 보이는 후주(厚州)와 삼수(三水)⁷¹⁾

이후 고흥산과 권중개의 보고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02년(연산군 8) 7월에도 심방구비보(心方仇非堡)와 어떤보 등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일과 심방구비보에 성을 쌓는 일 등에 평소부터 사무를 잘 알고 있는 종사관(從事官) 고

7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위의 네모칸이 厚州, 아래의 네모칸이 三水이다. 후주의 왼쪽 부분이 廢四郡 지역이다. 후주는 폐사군 지역 바로 옆이었다.

형산을 보내어 역사를 감독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⁷²⁾ 이를 통해 어떤과 심방구비(심방구비)를 폐지하고 후주에 진을 설치하는 문제는 보류되었고, 심방구비와 어떤보 등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심방구비보에 성을 쌓은 일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고형산은 1501년(연산군 7) 6월 23일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이 되었다.⁷³⁾ 사간원은 조선시대의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하던 관서로, 사헌부·홍문관과 함께 대간 또는 삼사(三司)로 통칭되었다. 사간원의 간쟁은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논박은 일반 정치에 대한 언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에 대해 임금의 결함을 지적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3품인 대사간(大司諫) 1명, 종4품인 사간 1명, 정5품인 헌납(獻納) 1명, 정6품인 정언(正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⁷⁴⁾ 따라서 고형산은 사간원의 두 번째 직위인 종삼품 사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은 사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헌부 대사헌 성현(成愷)과 함께 평안도의 장성 수축의 불가함을 상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⁷⁵⁾ 이 상소에서 고형산과 성현은 장성을 쌓은 일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시종(侍從)하는 신하들도 모두 불편함을 말하고 있고, 온 나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공의(公議), 즉 공론(公論)임을 역설하였다.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대신(大臣) 2~3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에는 장성을 축조한다면 거민이 편안히 살 수 있고, 서북(西北)

72) 『연산군일기』 권45, 연산군 8년 7월 17일 丁亥.

73) 『연산군일기』 권40, 연산군 7년 6월 23일 己亥. 고형산이 함경도 경차관의 관직이 나타났던 1500년(연산군 6) 11월 3일부터 사간원 사간이 된 1501년(연산군 7) 6월 23일까지 어떤 관직과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74)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諫院.

75) 『연산군일기』 권40, 연산군 7년 7월 5일 辛亥.

지방이 영구히 근심이 없을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즉 평안도는 군졸의 수효가 적어 평상시에도 읍(邑)과 진(鎭)에 여진족이 침입하더라도 능히 지킬 수 없는데, 장성을 쌓더라도 어느 사람으로써 국경 방비에 벌여 놓아서 진을 지키겠느냐며 장성 수축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성을 쌓는데 드는 인부가 17만 명이나 되며, 경기·평안·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5도(道)에서 토지 8결(結) 당 한 명의 인부를 낸다면 13만 4천 3백 23명이 되고, 10결 당 한 명을 내면 10만 3천 3백 27명, 15결 당 한 명을 내면 6만 8천 8백 84명, 20결 당 한 명을 내면 5만 1천 6백 65명이 되는데, 8도 인민을 다 찾아 모아도 그 수효를 다 채울 수 없다고 하였다. 8결이나 10결에 한 사람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야할 인부가 너무 많아서 집에는 남는 장정이 없어서 소농가(小農家)와 중농가(中農家), 대농가(大農家) 모두 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는 길이 매우 멀어 30일의 노정과 역사(役事)하는데 30일, 돌아오는데 30일까지 하면 총 3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이 무려 20여 두가 되며 한 명의 인부가 가면 집을 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배수(倍數)나 되어서 그 손해가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8결이나 10결로 인부를 내는 것을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지금 만약 시행한다면 7월에 양식을 준비하고 8월에 부역을 했어야 하는데, 묵은 곡식이 이미 떨어지고 햇곡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무엇으로 행장(行裝)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하였다. 인부가 2월에 들어가 삼사월에 부역을 하고 5월에 돌아오는 것도 농사를 완전히 그만두게 하고 경작과 파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북방은 날씨가 일찍 추워지고 추위가 더욱 혹독하므로 남방 사람들이 水土에 익숙치 않아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험난한 도로에 굶주림은 몸에 사무치고, 바람과 눈에 부딪쳐 손발이 얼어터질 것이니 백성들이 성을 쌓은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백성들이 장성을 쌓는 중에 오랑캐들이 틈을 엿보다가 갑자기 침입하더라도 한다면 작은 무기조차 갖지 않은 인부들이 무엇으로 오랑캐와 싸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것 역시 염려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지금 장성을 수축해야 한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역의 수고로움과 양식의 소비는 헤아리지 않고, 또한 시세의 쉽지 않음도 생각지 않고서 그저 ‘큰일을 이룩하려면 작은 폐단을 돌아볼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며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고흥산 등은 한 모퉁이의 근심을 풀고자 사방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근심치 않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작은 폐단이 되겠으며, 일으킬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를 수 없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고형산과 성현이 함께 올린 상소의 이러한 내용 등을 보면, 평안도의 장성 수축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들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한 면면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고흥산 등의 노력으로 연산군은 한 달 뒤인 1501년(연산군 7) 8월 대신들에게 장성 수축의 편부를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⁷⁶⁾ 이 의논에서도 대신들의 대부분은 장성 수축이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며 장성 수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극돈(李克墩)·이세좌(李世左) 등은 5가지의 불가함을 들어 요해처부터 점차 성을 쌓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극돈 등의 말한 5가지의 불가함이 앞서 살펴본 고흥산과 성현의 상소에서 지적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불가함은 비록 10월에 1명의 인부를 내더라도 2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20만 명의 인부를 부역시켜 수 백 리의 성을 쌓은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불가함은 남북의 노정이 왕복으로는 30일의 노정이며, 30일간 역사하면 백일이 넘고, 식량까지 운반하려면 실제로는 60만 명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역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미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생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금년과 내년에도 축성을 마치지 못하면 두 번의 역사(役事)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수십 만 군중을 연강의 위아래에 벌여 놓으면 여진족들이 몰해 엿보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연간의 소수 군졸로 곳곳마다 수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이극돈 등이 말한 장성 수축의 불가함 점이 앞서 고흥산의 상소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흥산은 단순히 백성들의 폐해만을 지

76)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8월 7일 壬子.

적하여 장성 수축을 반대한 것만이 아니라 토지 결수 당 인부를 내야 만 하는 문제, 왕복 노정의 문제 및 식량 문제, 축성 시기에 따른 농사 문제, 축성 시 여진족의 침입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 인식이 연산군을 비롯한 대신들에게도 공감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8) 함경도(咸鏡道) 종사관(從事官) 재파견

5개월 뒤인 1501년(연산군 7) 12월 26일,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은 연산군에게 부령(富寧)에 진영(鎭營)을 옮겨야 할 일을 고흥산을 보내어 살펴보게 조치하게 하도록 아뢰는 동시에 고흥산은 나랏일에 부지런히 일한 것이 다름 사람보다 감절이나 되므로 포상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연산군은 두 품계를 올려주도록 하였다.⁷⁷⁾ 당시 한치형은 영의정, 성준은 좌의정, 이극균은 우의정으로 바로 의정부(議政府)를 구성하는 삼정승(三政丞)이 모두 고흥산을 파견하자고 하면서 고흥산의 공로에 대한 포상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고흥산은 연산군과 조정의 대신들로부터 국사(國事)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2배 이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자신의 맡은 바 이상의 일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흥산은 예전에 함경도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여러 일들을 잘 처리해 온 결과, 북방의 축성 등과 관련되어 여러 차례 다시 북방에 파견되어 왔다. 즉 함경도와 평안도를 중흥하는 한편 조정에 돌아와서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이제 고흥산은 북방 지역의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북방의 여러 일과 관련해서는 당시 고흥산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왔고, 조정에서는 북방의 사무와 관련해서 고흥산을 가장 먼저 파견하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선 1501년(연산군 7) 윤7월 8일 좌의정 성준과 우의정 이극균은 『서북제번기(西北諸蕃記)』와 「서북지도(西北地圖)」를 찬술하여 진상하면서, 6진

77)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12월 26일 庚午. “韓致亨, 成俊, 李克均啓, 富寧移鎭事, 請遣高荊山, 使之措置, 且荊山勤勞國事, 倍於他人, 請加褒賞, 傳曰, 加二資”

중 하나였던 부령진(富寧鎭)이 배치된 곳이 매우 좁고 땅도 비옥하니 못하다고 지적하였다.⁷⁸⁾ 그리고 부령진의 서쪽으로 2식경의 거리에 한 군데 빈 땅이 있는데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이란 지명으로, 그 곳 지세가 넓고 토질이 비옥해서 함경남도로 쳐들어오는 여진족들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승파오달에 부령진을 옮겨 설치하고, 요충지인 별해(別害)와 신방구비(神方仇非)는 2년여에 걸쳐 성을 쌓자는 주장을 하여 연산군의 재가를 받은 바 있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뒤인 12월 21일 성준과 이극균은 부령진이 근년에 수해(水害)를 입어 주민들의 가옥과 전답이 거의 모두 떠내려가고 물에 빠졌으니 빨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부령진에서 서쪽으로 60여 리 떨어져 있는 정승파오달이 여진족들이 경유하는 곳이므로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기고, 무산보(茂山堡)를 양영만동(梁永萬洞)의 위로 옮긴다면 경성(鏡城) 이남은 방어하기가 수월하고, 부령 백성들도 소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길 것을 주장하여 연산군의 재가를 받았다.⁷⁹⁾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치형, 성준, 이극균의 삼정승은 5일 뒤인 1501년(연산군 7) 12월 26일에 고흥산의 부령으로의 파견과 그의 공로를 포상할 것을 연산군에게 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고흥산은 종사관(從事官)으로 다시 함경도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흥산의 임무는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기는 것의 편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함경도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 등의 여러 사무의 임무가 주어지고 있었다.

韓致亨 등이 또 당시의 폐단되는 점을 써서 아뢰기를, “... 함경도는 본래부터 관찰사의 衙前이 4백 명, 節度使의 北道衙前 6백 명, 南道衙前 4백 명을 두었는데, 이 숫자 외에도 預差衙前의 수효가 지나치게 많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從事官 高荊山으로 하여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함께 의논하여 예차 아전들은 영구히 없애버리되,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상의 분부를 받아서 행하게 하소서. 풍문으로 듣건대

78) 『연산군일기』 권40, 연산군 7년 윤7월 8일 甲申.

79)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12월 21일 乙丑.

‘鏡城의 住民은 8백여 戶인데 兵使의 아전이 3분의 2를 차지함으로써 관청에서 역사를 백성의 수효가 적어 모든 賓客의 招待를 아전을 시켜 供辦하게 하니, 그 아전들이 민간에 징수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하여 날로 곤궁해졌다고 합니다. 전일에 이미 이러한 폐단을 상세히 적어 啓達했는데, 지금 봉행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또한 高荊山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啓達하도록 하소서. …’ 하니, 그대로 쫓았다.⁸⁰⁾

영의정 한치형은 당시의 폐단되는 점을 연산군에게 아뢰면서, 함경도는 본래부터 관찰사의 아전(衙前) 4백 명, 절도의 북도아전(北道衙前) 6백 명, 남도아전(南道衙前) 4백 명을 두었는데, 이 숫자 외에도 예차아전(預差衙前)의 수효가 지나치게 많아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함경도는 관찰사가 1명,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1명,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1명이 파견되고 있었다. 이에 관찰사의 아전, 북도절도사의 아전, 남도절도사의 아전이 배치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차정된 아전인 예차아전까지 하면 그 수효가 1천 4백여 명이나 된 것이다. 결국 이 중 예차아전을 지금 내려가는 종사관 고흥산으로 하여금 관찰사와 절도사들에게 유사하여 함께 의논하여 예차아전들은 영구히 없애도록 하면서, 없애지 못하는 부득이한 일이라면 다시 임금의 분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른 일 역시 병사(兵使), 그 중에서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의 아전과 관련된 폐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경성의 주민은 8백여 호인데, 그 중 병사의 아전이 3분의 2를 차지함으로써 관청의 역사(役事)를 할 백성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성에 오는 모든 빈객(賓客)들의 뒷바라지를 아전들을 시켜 준비하게 하였는데, 다시 아전들은 민간에게 그 소용되는 물품들을 징수하였던 것이다. 영의정 한치형은 이러한 폐단을 이미 상세히 적어 아뢴 바 있었는데, 고흥산이 함경도로 내려가니 바로 이러한 폐단을 조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달(啓達)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80) 『연산군일기』 권42, 연산군 8년 1월 28일 辛丑.

또한 며칠 뒤에도 우의정 이극균은 단천(端川)의 쌍청구자(雙淸口子)⁸¹⁾는 요해지가 아닌데도 지키는 군사가 많다고 하니, 함경도에 간 고행산으로 하여금 남도절도사와 함께 편리한가를 살펴서 빨리 아뢰도록 할 것, 6진의 수졸(戍卒)이 1개월 만에 교대하게 되므로 갔다가 오는 사이에 매양 열흘이 지나 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 고행산으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교대하는 기간을 늦추어 수졸들을 휴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였다.⁸²⁾

이를 보면, 부령진의 정승파오달로의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고행산을 파견한 시점에 맞춰 함경도 북방 지역의 여러 폐단을 바로잡는 문제에 있어 북방의 경험이 풍부했던 고행산을 충분히 활용하려던 재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행산이 함경도에서 언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행산이 1502년(연산군 8) 5월 16일 고행산은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기는 것과 쌍청보(雙靑堡)를 금창기(金倉岐)로 물려 배치하는 일을 아뢴 것으로 보아 3~4개월 동안 함경도를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행산이 정승파오달은 땅이 좁고 전결(田結)이 너무 적어 큰 진(鎭)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창기는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지가 되므로 성보를 옮기는 것이 매우 적당하다고 아뢰자, 이에 대해 정승들의 의견을 수의(收議)하도록 하였다.⁸³⁾ 그리고 고행산의 구체적인 계본의 내용은 정승들의 의견 속에서 확인된다.

이때 고행산은 계본(啓本)과 지형(圖形)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윤필상(尹弼尙)·한치형(韓致亨)은 고행산의 계본과 도형으로써 본다면 고행산의 소견이 매우 마땅하고 합당하니, 고행산의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성준(成俊) 역시 고행산의 말을 들어보면, 정승파오달 근처는 쌓인 눈이 4월이 되어도 오히려 녹지 않고, 구맥(瞿麥)이나 경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다면 군사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우므로 큰 진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동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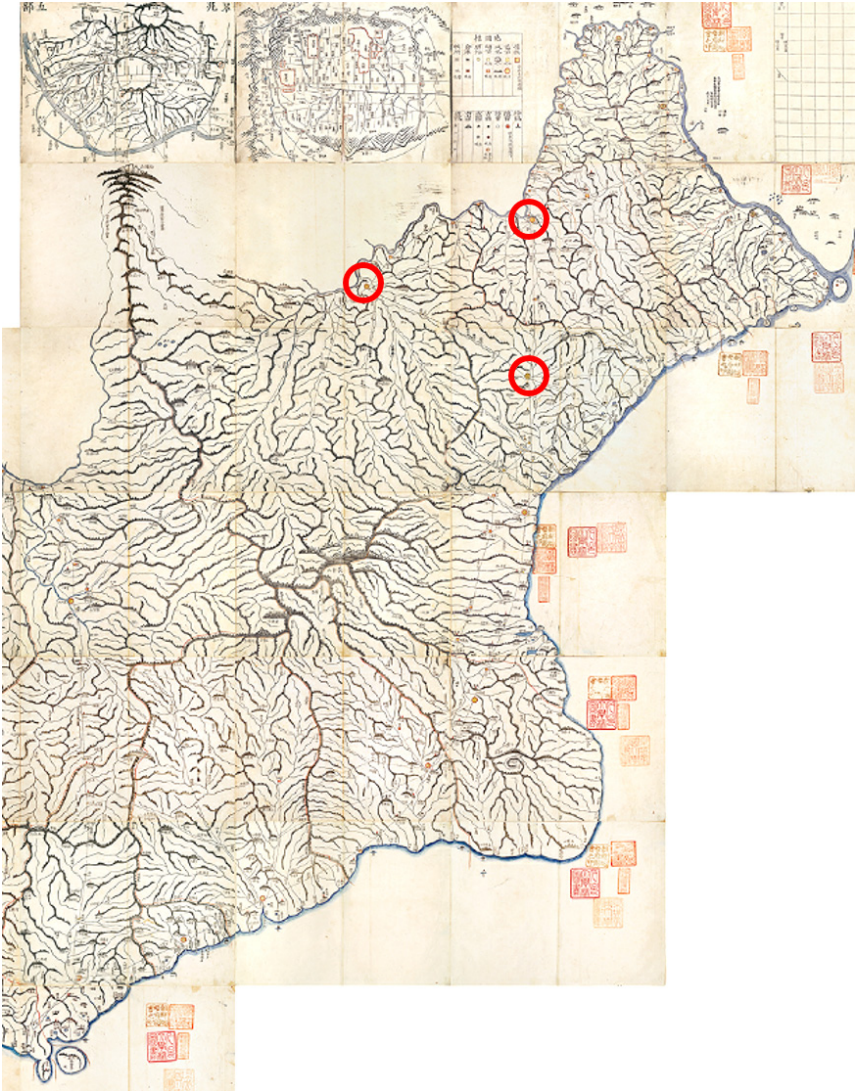
81) 구자(口子)는 관문(關門)으로, 쌍청구자(雙淸口子)는 북청(北靑)의 금창기(金倉岐) 안에 있었다.

82) 『연산군일기』 권42, 연산군 8년 2월 6일 己酉.

83) 『연산군일기』 권44, 연산군 8년 5월 16일 丁亥.

다만 성준은 고행산이 ‘무산보(茂山堡)를 양영만동(梁永萬洞)의 상단(上端)으로 옮기고, 풍산보(豐山堡)를 삼기(三岐)로 옮기며, 또 회령(會寧)의 토병(土兵)을 나누어다가 다시 하보을하진(下甫乙下鎭)을 설치한다면 부령과 회령의 백성들 경작하는 토지가 모두 내지(內地)에 있게 되고, 또 3진이 서로 연하게 되니 비록 적이 변이 있더라도 앞뒤에서 서로 구원하게 되어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과연 그렇다’고 하면서도, 다만 무산보와 풍산보의 군사와 백성의 수효가 적고, 회령의 군사도 또한 많은 수효를 덜어 낼 수가 없으니, 지금은 하삼도(下三道)에서 북도(北道)에 입거(入居)시키기로 정한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방어를 충실하게 하고, 쌍청보를 물려서 배치하는 일은 고행산의 계본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윤필상, 한치형, 성준 등은 고행산의 계본에 동조하였지만, 이극균(李克均)은 정승파오달로부터 남쪽으로 작은 재(小嶺)를 넘으면 평지에 진(鎭)을 설치할 만하며, 그곳의 제봉(祭峰) 앞쪽 1식 가량 떨어진 평원(平原)과 부령진 사이에 전지(田地)가 많이 있으니, 그곳이 자신이 말한 곳이라고 하면서, 고행산이 여기를 보지 않고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가을이 되면 다시 보내어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고, 쌍청보를 물려 배치하는 것 역시 추수하고 나뭇잎이 떨어진 뒤에 절도사가 무산 및 단천군수와 함께 진보를 설치할 만한 곳을 살펴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게 결국 이극균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이전하는 것과 쌍청보를 물려 배치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보이는 무산(茂山), 회령(會寧), 부령(富寧)⁸⁴⁾

8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오른쪽 위가 회령(會寧), 왼쪽 위가 무산(茂山), 아래쪽이 부령(富寧)이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나타난 무산(茂山)과 허수라천(虛修羅川)〉⁸⁵⁾

9) 군자감정(軍資監正),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와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고형산은 함경도로부터 돌아와서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⁸⁶⁾ 군자감(軍資監)은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 즉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관장했던 관청으로 호조(戶曹)에 예속되어 있었다. 군자감의 정(正)은 정3품 당하관(堂下官)으로 도제조(都提調, 정1품), 제조(提調, 정2품·종2품)에 이은 군자감의 세 번째 관직이었다. 군자감정이 된 고형산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군자감정으로 있으면서 경신년(1500년, 연산군 6)과 신유년(1501년, 연산군 7)에 함경도 축성과 관련된 문제로 나갔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던 중 당시 축성도체찰사(築城都體察使)로 있던 성준(成俊)과 이극균(李克均)은 1502년(연산군 8) 7월 17일, 함흥부(咸興府) 하란(何亂) 북쪽 삼수군(三

8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정승파오달(政丞坡吾達)은 무산(茂山)과 회령 사이의 부근으로 추정된다.

86) 『연산군일기』 권44, 연산군 8년 6월 22일 壬戌.

水郡)의 심방구비보(心方仇非堡)와 어면보(魚面堡) 등지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일, 심방구비보에 성을 쌓는 일, 단천군(端川郡) 쌍청보(雙淸堡)를 옮겨 설치하는 곳에 축성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의 일에 대해 평소부터 이곳의 사무를 잘 알고 있는 종사관(從事官) 고흥산을 보내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⁸⁷⁾

이를 보면 고흥산은 축성사(築城司)라는 관청의 종사관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축성사는 변경 방어 등 군비책의 하나로 설치되었던 관서로서 변경 지역의 축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던 임시기구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성종 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⁸⁸⁾ 성종 때에는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정부의 삼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상(院相)과 병조 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들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산군 때에는 여진족들의 침입이 격화되자 군비 강화책의 하나로 1504년(연산군 10)에 임시로 축성사(築城司)가 설치되었다. 연산군 때의 축성사에는 소위 이들 지변사재상들이 축성사의 관직을 겸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⁹⁾ 당시 좌의정 성준과 우의정 이극균 역시 축성사의 도체찰사의 관직을 겸하고 있었으며, 고흥산 역시 지변사재상은 아니었지만 축성사의 실무 종사관(從事官)으로 축성사의 관직을 겸직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같은 날, 성준과 이극균은 부령부를 정승파오달로 옮겨 설치하는 편부를 앞서서 고흥산에게 명하여 자세히 조사하라고 했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조사를 우선 정지하고, 먼저 5진과 무이보(撫夷堡)·유원보(柔遠堡) 등지에 보내어 두루 돌아다니면서 쇠잔하고 피폐한 형편을 조사하여 오도록 하자고 요청하여 연산군의 윤허를 받았다.⁹⁰⁾

87) 『연산군일기』 권45, 연산군 8년 7월 17일 丁亥.

88) 『성종실록』 권288, 성종 25년 3월 1일 庚寅.

89)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지변사재상들을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비변사(備邊司)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1517년(중종 12)에는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사(築城司)를 다시 설치하였고, 이어서 축성사를 비변사로 개칭하였다.

90) 『연산군일기』 권45, 연산군 8년 7월 17일 丁亥.

그런데 좌의정 성준과 우의정 이극균은 5일 뒤인 7월 21일에, 함경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때로 관원을 파견하기가 어려우니, 고행산을 보낼 때에 부령 부를 옮겨 배설하는 것의 편부를 아울러서 조사하도록 청하였다.⁹¹⁾ 그리고 이와 함께 고행산을 어사(御使)를 겸하게 하여 함경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수령들을 규찰케 하자고 건의하여 연산군의 승낙을 받았다. 성준과 이극균은 이전에 조정에서 함경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명하여 감영(監營)에 소속된 수효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뽑아서 군대의 정원에 보충하게 했는데, 감사와 병사가 혹시 지체하여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여전히 감사와 병사가 역사(役事)를 시키고 있으면 고행산에게 감사와 병사를 국문하게 하고,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수령이 이들을 데리고 역사를 회피하고 한가로이 놀고 있으면 그런 수령들에게 죄를 주자는 것으로써 함경도의 수령들은 대개 다 무인(武人)들이므로 반드시 법에 어긋난 일이 많을 것이니, 함경도로 가는 고행산에게 어사를 겸하게 하여 규찰케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7월 22일 고행산을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를 겸직하게 하였다.⁹²⁾ 사헌부의 역할이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이고, 사헌부의 집의(종3품)는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大司憲, 종2품) 바로 다음 가는 직위였다. 고행산은 어사로써 사헌부의 집의를 겸임하면서 함경도로 파견된 것이다.

고행산이 언제 함경도로 출발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행산은 축성사(築城司)의 종사관(從事官),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어사(御使)로서의 사헌부 집의(執義) 등을 겸직하면서 함경도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함경도에서 고행산은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기는 것에 대한 편부를 다시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행산의 보고에 따라 연산군은 부령진 문제를 다시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⁹³⁾ 고행산의 보고 내용은 대신들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윤필상(尹弼商)은 고행산이 아뢰는 내용을 보면, 진(鎭)을 설치할 곳은 토

91) 『연산군일기』 권45, 연산군 8년 7월 21일 辛卯.

92) 『연산군일기』 권45, 연산군 8년 7월 22일 壬辰.

93) 『연산군일기』 권47, 연산군 8년 11월 22일 辛卯.

지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이 익지 않을 곳이니 적당한 곳이 아닌 듯하다면서 고흥산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들과 함께 의논하여 좋은 점을 아뢰게 한 후 임금이 재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성준(成俊) 역시 고흥산의 계본(啓本)을 살펴보니, 진을 설치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할 것 같지만 계본에만 의거하여 의논을 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고흥산이 오는 것을 기다려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반면 이극균(李克均)은 자신이 오랫동안 적이 쳐들어오는 안팎의 길을 살펴 보았는데, 정승파오달은 참으로 요충지라고 하면서 부령 백성들은 옮기는 것을 싫어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할 것이니, 쉽사리 의논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극돈(李克墩)·한사문(韓斯文)·홍자아(洪自阿)·박의영(朴義榮)은 이극균이 아뢴 것과 고흥산의 계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승파오달은 진을 설치할 곳은 적이 쳐들어 오는 요충이므로 진을 설치하는데 적합할 듯하다고 하면서도 형세 상 네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새로 진을 설치하는 곳이 내지(內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 입거하는 1백 50호로는 능히 지탱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고흥산이 농사지를 수 있는 평탄하고 넓은 땅이 적고 또 모래와 돌이 섞여 있다고 하니,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흥산이 감히 자기 혼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곡을 심어서 시험하게 하자고 한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불가하다고 한 소견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지금 새 진을 설치할 곳은 강의 상류와 하류에 적이 쳐들어오는 길을 막기가 어렵고 또한 큰 강과 큰 산이 험준하게 가로 놓이지 않았으니 오래 지킬 수 없단 것이고, 네 번째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을 옮겨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분간 육진의 군사 수효가 충실해지고 농사가 계속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흥산은 축성사 종사관뿐만 아니라 함경도 경차관이었고, 특히 사헌부 집의로써 어사의 임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령을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함경도의 여러 폐단을 조사하고 감찰하였던 것 같다. 『연산군일기』에는 함경도에서의 고흥산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지만, 그는 함경

도 경차관으로서 여진인들에 금물(禁物)을 파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치계(馳啟)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함경도 敬差官 高荊山이 馳啓하기를, “서울의 興利하는 사람과 本道 백성들이, 禁物을 野人들에게 몰래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監司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다른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守令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赦免令 이진임을 가리지 말고 重罪로 논란함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좃았다.⁹⁴⁾

고형산은 함경도의 6진 지역을 돌아보고, 서울의 흥리(興利)하는 사람들과 함경도의 백성들이 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여진인들에 몰래 팔고 있는 것을 폐단을 보았던 것 같다. 당시 함경도 6진 지역에서는 여진과의 초피(貂皮)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다. 초피는 담비 가죽으로, 세종 때 6진을 설치한 이후 언제부터인가 6진 지역에 초피가 공물로 지정되었다.⁹⁵⁾ 그리고 초피 공물을 충당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조선에서 무역을 금지한 철물로 된 농기구와 가마솥, 농우(農牛), 말을 주고 여진과 초피를 교역하고 있었다. 더구나 초피의 값이 뛰어나 초피 1장과 소 1두를 바꾸는 형편이 되자 서울에서부터 흥리자(興利者), 즉 상업으로 이익을 꾀하는 장사꾼들이 북도(北道)에 구름처럼 모여서 철물과 소를 가지고 통사(通事)와 결탁하여 초피 사기를 그치지 않았고, 수령과 진장(鎭將)들도 백성들에게 착취하면서 북방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큰 폐단을 낳고 있었다.⁹⁶⁾

고형산은 바로 6진 지역의 이러한 폐단을 묵도한 것으로 감사(監司)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금물(禁物)로 여진과 초피 교역을 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한 자를 다른 사람이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고

94) 『연산군일기』 권47, 연산군 8년 12월 5일 癸卯.

95) 한성주,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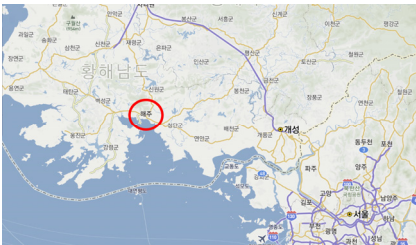
96)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 2월 2일 辛巳; 권57, 성종 6년 7월 14일 辛酉; 『연산군일기』 권 29, 연산군 4년 4월 17일 癸未; 『중종실록』 권6, 중종 3년 8월 16일 辛巳; 권21, 중종 9년 10월 25일 甲寅.

말한 사람에게 주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령(赦免令) 이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죄(重罪)로 논단함은 이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하였다.

10) 해주목사(海州牧使)

고형산이 언제 함경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음해인 1503년(연산군 9) 1월 4일, 해주목사(海州牧使)가 결원이 되자 이조(吏曹)에서 의망(擬望)을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조의 의망이란, 이조에서 해당 관직의 벼슬아치를 추천할 때 후보자 셋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통 삼망(三望)이라고 하며, 고형산은 이때 이조의 삼망 안의 추천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산군이 마침내 고형산을 낙점하여 어서(御書)를 내리면서 ‘이 뒤에 큰 임무를 맡기겠으니, 특별히 두 품계를 올려 체수한다고 하였다.’⁹⁷⁾ 해주목사는 정3품이며, 해주를 책임지는 지방관이라 할 수 있다.

연산군이 고형산에게 해주목사를 임명하면서 어서를 내려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고형산이 북방의 함경도·평안도에서의 공로와 조정에서의 공로가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해주(海州)의 위치와 「해동지도(海東地圖)」의 해주목(海州牧)〉⁹⁸⁾

97)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 1월 4일 壬申.

98) 「해동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참고.

그런데, 연산군은 다시 한번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하는 편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면서 해주목사로 있던 고흥산을 참여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503년(연산군 9) 1월 18일에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尹弼商), 좌의정 이극균(李克均), 우의정 유순(柳洵), 병조판서 이극돈(李克墩), 참판 한사문(韓斯文), 참의 홍자아(洪自阿), 참지 박의영(朴義榮), 해주목사(海州牧使) 고흥산(高荊山) 등을 모아서 부령진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한 것이다.⁹⁹⁾

… 고흥산이 의논드리기를, “부령진을 옮겨 배치할 곳을 신이 작년에 직접 가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政丞波吾達에는 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었습니다. 정승파오달로부터 紅濱의 下端인 泉坡에 이르는 1息 거리 안에는 地勢가 험착하여 진을 설치하는데 적당하지 않고, 천파로부터 흥빈·祭峰 앞에 이르러는 토지가 넓어 10여 리가 평탄하니, 만약 이 곳에 진을 설치하면 新營洞·李元亨洞·東草洞의 賊路와 虛通洞·崔達洞 등지의 적로를 막아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鎭을 설치할 곳에는 4월에도 쌓인 눈이 녹지 않고, 9월에는 얼음이 벌써 단단하게 얼므로, 신이 두 차례나 왕래하면서 솜옷을 겹쳐 입었으며, 추위가 本府보다 갑절이 더하여 오곡이 미처 익지 않은 듯했고, 게다가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건대, 중국에서는 방어하는 군졸들에게 의식을 관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만 적로가 긴요한가 않은가를 조사할 뿐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의 방어는 이와 달라서, 城內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머물면서 방어하고 자신들이 옷과 양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그들의 농사짓기와 방어하기에 양쪽이 다 편리한 곳을 살펴서 鎭을 설치한 후에라야 백성들이 生業에 편안하고, 방어 또한 튼튼할 것이오니,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 진을 옮기려고 하는 곳이 편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茂山堡에서 豐山堡에 이르는 40리와 풍산보에서 會寧鎭에 이르는 60리에, 그 사이에 防戍하는 곳이 전혀 없으며, 두 堡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땅과 다니는 길 이 모두 外地에 있으므로 적로가 가깝고 또 地勢도 험하지 않으며, 檢天 이하의 강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야인들이 연속해서 왕래하여, 작년 1년 동안에 두세 번이나 사람과 마소를 약탈해 갔으니, 梗化되는 조짐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만일 때를 지어 일어나서 도둑질을 한다면, 무인지경을 들어

99)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 1월 18일 丙戌.

오는 것 같이 장애될 것이 없으므로 變故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만약 무산보를 梁永萬洞과 東良洞과의 중앙에 옮기고, 풍산보를 三岐 근처에 옮기고 또 下車의 아랫 지방에 다시 옛날의 보루를 세우면, 세 보루의 거리가 20여 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首尾가 서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고에 응하기가 편리할 것이요, 두 보루에서 농사짓는 논밭이나 다니는 길이 모두 內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묵은 토지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토질이 또한 비옥하여 백성들 중에 옮겨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습니다.”하였다. … 100)

『연산군일기』 중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고흥산이 말한 바를 살펴보면, 우선 고흥산은 부령진을 옮겨 배치할 곳을 자신이 작년(1502년, 연산군 8)에 직접 가서 그 편부를 조사해 보았으나 정승파오달에는 진(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때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었다고 하고 있다. 정승파오달에 진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정승파오달 부근이 바로 지세가 험착하여 진을 설치하는데 적당하지 않은데 있었다. 그리고 흥빈·제봉 앞에 이르러 토지가 넓고 평탄한 곳도 진을 설치해서 적로(賊路)를 막기 만하지만, 이곳에도 4월에는 쌓인 눈이 녹지 않고 9월부터 얼음이 벌써 단단하게 얼기 때문에 고흥산도 두 차례나 왕래하면서 숨웃을 겹쳐 입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즉 추위가 지금있는 부령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오곡이 미처 익지 않은 듯했고, 게다가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방어는 성내(城內)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머물면서 방어하고 자신들이 옷과 양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농사짓기와 방어하기 편리한 곳을 살펴서 진을 설치해야 하는데, 자신의 소견으로는 정승파오달이 이러한 조건에 맞아서 편리한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흥산은 무산보에서 풍산보에 이르는 40리, 풍산보에서 회령진에 이르는 60리에는 방수(防戍)하는 곳이 전혀 없어 여진족들의 침입으로 피해를 받

100)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 1월 18일 丙戌.

고 있으므로, 만약 무산보를 양영만동과 동량동과의 중앙에 옮기고, 풍천보를 삼기 근처로 옮기고, 하거의 아랫 지방에 다시 옛날의 보루를 세우며, 세 곳의 거리가 불과 20여리에 지나지 않아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구제할 수 있고, 변고에 응하기 편리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소견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윤필상과 유순은 진을 옮기거나 설치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일로써 가볍게 고칠 수 없는데, 지금 이극균과 고흥산의 소견이 같지 않으므로 우선 다시 보낸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의 대체와 사무를 아는 대신을 보내어 직접 가서 편부를 살펴보고 다시 의논하여 재결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고형산과 소견이 달랐던 이극균은 고흥산이 말한 흥빈 등지의 토지가 모래와 돌임은 자신이 확실치 않지 못하고, 자신과 고흥산의 소견이 다르므로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이계동(李季叟)을 보내서 무산보와 보을하보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가서 조사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극돈·한사문·홍자야·박의영은 새 진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전일에 의논한 바이고, 지금 고흥산이 의논한 무산보와 풍산보를 옮기고, 보을하에 옛 보루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계획이 그럴 듯하다고 하면서 고흥산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다만 이 또한 제도를 고치는 큰 일이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편리 여부와 군사의 배치 수효를 다시 자세히 조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결국 논의의 결과는 이극균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1) 함경북도(咸鏡北道) · 함경남도(咸鏡南道) 절도사(節度使)

『연산군일기』에는 1503년(연산군 9) 1월 18일부터 1504년(연산군 10) 6월 2일까지 고흥산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504년(연산군 10) 6월 2일, 고흥산의 관직은 함경북도(咸鏡北道) 절도사(節度使)로 나오는데, 1년 5개월 여 동안 그의 행적은 미상이다. 아마도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함경도 등 북방을 자주 왕래한 경험과 함경도의 사무에 밝았던 고흥산을 함경북도 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함경북도 절도사는 곧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종2품의 무반직(武班職)이었으며, 절도사(節度使) 또는 병사(兵使)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면서 평시에 직접 또는 휘하의 우후(虞候)나 평사(評事) 등을 보내 도내를 순회하면서 지방군의 훈련, 무기 제작과 정비, 군사 시설 수축 등을 살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적 침입이나 내란·도적 등이 발생하는 유사시에는 지방 군사력을 동원하여 지휘하고 대처하였다.

병마절도사는 통상 관찰사(감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여 겸병사(兼兵使)라 하였고, 전임 병사는 단병사(單兵使)로 구분하여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인씩 두도록 하고 있었다. 즉 함경도는 도사는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였는데, 함경도는 방어상의 문제도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각각 병마절도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고형산은 함경도에 자주 파견되어 축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었고, 함경도 도사(都事)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의 사무에 능했으며, 여러 폐단을 바로잡는데 공헌하였기 때문에 보이지만, 종2품의 무반직인 병마절도사에 임명된 것으로 볼 때 고형산이 문무(文武)에 모두 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시 연산군은 함경북도 절도사 고형산에게 가선(嘉善)을 특가(特加)하라고 전교하였다¹⁰¹⁾. 즉 고형산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특례로 더하여 품계를 높여주라는 의미였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였다. 품계는 관직 세계의 위계(位階)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양자는 운영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行守法)을 실시했는데,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行)’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行職)’이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守)’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하였다.

101)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6월 2일 辛酉.

따라서 고흥산은 종2품 무반직의 병마절도사로 파견되었지만, 그의 문관으로써의 품계는 아직 종2품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연산군은 특가로 문반의 종2품 하계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의 품계를 주도록 한 것이다.

『연산군일기』에는 연산군이 특별히 가선의 품계를 주자, 고흥산은 전문(箋文)을 올려 은혜에 사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咸鏡北道節度使 高荊山이箋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다. 형산은 보잘것 없는 신분에서 일어나 힘써 배워서 급제하였으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王事に 마음을 다하고 官의 일에 임해서는 자기 집의 일처럼 하여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서, 모든 지낸 職任에 다 명망과 공적이 있었다. 여러 번 북녘의 구석진 고장에 奉使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므로 대신이 천거하여 南道節度使가 되었었는데, 이제 특별히 嘉善大夫로 높여져 북도로 옮겨 임명되었으므로 사례를 올린 것이다.¹⁰²⁾

『연산군일기』를 보면, 고흥산이 사례한 전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흥산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다. 이를 보면 고흥산은 북도절도사가 되기 전에 이미 남도절도사(南道節度使)를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흥산은 1503년(연산군 9) 1월 18일부터 1504년(연산군 10) 6월 2일 사이에 남도절도사로 임명된 바 있었고, 이제 북도절도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북도절도사로 옮기는 고흥산에게 연산군이 특별히 가선대부를 특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흥산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을 보면, 고흥산은 집안이 한미하였지만 힘써 배워 급제하였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나 나라를 위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관의 일에 임해서는 자기 집의 일처럼 하여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으며 모든 직업에 다 명망과 공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번 북비(北鄙), 즉 함경북도의 변두리 땅에 임무를 받들고 파견되어서 그 지방에 대한 일을 잘 알기 때문에 대신들이 천거하여 남도절도사가 되었고, 이번엔 가선대부로 높여서 북도로 옮겨서 임명된 것이라고 하

102)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6월 2일 辛酉. “咸鏡北道節度使高荊山上箋謝恩, 荊山起自寒微, 力學登第, 有幹局, 盡心王事, 莅官如家, 未嘗少懈, 凡所歷任, 皆有聲蹟, 累奉使北鄙, 詳知邊事, 大臣嘗薦爲南道節度使, 今特陞嘉善, 移授北道, 故上謝”

였다.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고흥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사신왈(史臣曰)’ 형식의 사신(史臣) 논평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대에 사신의 논평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당대에 이루어진 평가로 앞서 이미 고흥산에 대해 나랏일에 부지런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 된다¹⁰³⁾고 했던 평가를 받은 바 있었다. 이처럼 당대에 연산군 및 대신들, 그리고 관료들에게 있어 고흥산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일의 처리에 있어 명망과 공적이 있으며, 북방에 대한 공로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흥산은 함경북도 절도사가 되어서는 함경도 관찰사(감사)에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온 민효증(閔孝曾)에게 자신이 그린 함경남도의 행영(行營)의 형세를 주었고, 아울러 무산(茂山)·풍산(豊山)·혜산(惠山)·옥련(玉蓮) 등의 보(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과 제인(濟人)·종포(終浦) 두 역(驛) 사이에 참(站)을 설치하는 일들이 온편한가 하는 것을 부탁하여 연산군에게 아뢰게 하였다.¹⁰⁴⁾ 이것을 보면, 고흥산은 역시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서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을 이임할 때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중종대 전반기

1) 중종반정(中宗反正)과 특진관(特進官)

1506년 9월 2일 훈신계열인 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 등이 모의해 군자감부정 신윤무(辛允武), 군기시첨정 박영문(朴永文) 등과 함께 무사들을 모아 임사홍(任士洪)·신수근(愼守勤) 등을 제거한 다음 궁중에 들어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의 허락을 받아 학정(虐政)을 일삼던

103)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12월 26일 庚午.

104)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7월 23일 辛亥.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中宗)을 등극시켰다. 소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난 것이다.

중종반정에 참여한 정국공신(靖國功臣)에는 고흥산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고흥산이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종반정이 일어난 3개월 뒤인 12월 11일에 연산군의 죽음과 이를 명(明)나라에 알리는 문제를 두고 조정의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을 때 고흥산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아 고흥산은 비록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종이 새로 즉위했어도 관료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조정에 등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은 폐위되고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중종 1) 11월 6일 역질(疫疾)에 걸려 병사하였다.¹⁰⁵⁾ 중종은 연산군을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강화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그런데 공조참의(工曹參議) 유승조(柳崇祖)가 ‘폐주(廢主, 연산군)가 교동에 내쫓겨 죽었으니, 만약 상국(上國, 明)에서 와서 묻는다면, 미리 의논하여 대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차자(笏子)를 올렸다. 그리고 유승조는 연산군의 장례를 왕릉에 갖추는 의식을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며 명나라에 부고를 내서 시호를 청하자는 하였다¹⁰⁶⁾ 또한 유승조는 다시 이 문제를 대신 및 정신(廷臣) 중에 사체를 아는 이에게 의논하여 널리 중론을 들어보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종은 1506년(중종 1) 12월 11일, 6조의 참의(參議) 이상 및 홍문간(弘文館), 사헌부·사간원의 대간 전부와 서반(西班) 2품 이상을 빈청에 모이게 하여 유승조의 차자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¹⁰⁷⁾ 이때 빈청에 모여 의논한 사람들은 유순·박원종·송일·권균·민효증·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윤순·강훈·김준손·성세명·유자광·유순정·성희안·정미수·구수영·신준·박건·정광세·허집·반우형·유응룡·안윤덕·박영문·김봉·신용개·이점·홍자아·유빈·고형산·심광보·하한문·이운거·민상안·박의

105)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1월 8일 癸未.

106)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9일 癸丑.

107)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11일 乙卯.

영·이광·이세정·최인·송천희·조계상·이가신·이계맹·윤희손·성운조·김말문·김언평·강중진·송흙·신세호·박광영·박거린·성몽정·이세인·최속생·김세필·김철문·김안국·김내문 등이었다.

즉 당시 육조의 참의 이상,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삼사 관원 전부, 무반직의 2품 이상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며, 관직은 쓰여 있지 않지만 고형산 역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고형산은 정광세 등과 다음과 같은 의논을 하여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

鄭光世·許輯·潘佑亨·柳應龍·安潤德·朴永文·金崙·申用漑·李坫·洪自阿·柳濱·高荊山·沈光輔·河漢文·李芸秬·閔祥安·朴義榮·李宏·李世貞·崔潏·宋千喜·曹繼商·李可臣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君이 되었으니, 喪葬 의식에 王禮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辭位承襲’으로써 사연을 만들어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나 賜賻弔祭하는 天使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服制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하였다.¹⁰⁸⁾

고형산 등은 연산군이 폐왕(廢王)이 되었으며, 종사에 죄를 얻어 호칭이 군(君)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상장례에 있어 왕례(王禮)를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연산군의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서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세 상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미 명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사위승습(辭位承襲)’, 즉 연산군이 스스로 임금에서 사양하여 물러나며, 중중이 임금을 계승하여 잇는다고 사연을 만들어 명나라에 중중의 책봉(冊封)을 주청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중중반정이 일어난 직후 청사위사(請辭位使)·청승습사(請承襲使)를 전례를 상고하여 차출 과견하도록 결정하였고, 전판서(前判書) 김응기(金應箕)를 청사위사로 삼고, 전관찰사(前觀察使) 임유겸(任由謙)을 청승습사로 삼았다.¹⁰⁹⁾ 또한

108)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11일 乙卯.

명나라에서 조선의 ‘사위승습’에 대해 여러 일을 물을 것에 대비해서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사위사(辭位使)와 승습사(承襲使)를 파견까지 하였다.¹¹⁰⁾

결국 고흥산 등은 국가에서 이렇게 ‘사위승습’을 청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겠느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뜻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나 사부조제(賜賻弔祭), 즉 부의를 내리고 조의(弔儀)를 하러 오는 명나라의 사신이 오게 되면 국가에서 상례를 고쳐 다시 연산군을 왕으로 고쳐서 대접하겠느냐며 이 또한 사세 상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의논하였다. 결국 고흥산뿐만 아니라 많은 대신들도 유송조의 차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공조참의 유송조는 이 차자로 인해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에서 물러나게 되었다.¹¹¹⁾

그런데 이때 고흥산의 관직은 특진관(特進官)이었다. 유송조의 차자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가 있었던 2일 뒤인, 1506년(중종 1) 12월 13일에 특진관 고흥산이 조강(朝講)에서 신윤무(辛允武)가 새로 병사(兵使)로 파견되면서 원래 정해진 군관(軍官) 15인 외에 별도로 5인을 더 거느리고 가려고 하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¹¹²⁾ 특진관은 조선시대 경연(經筵)에 참시(參試)하여 왕의 고문에

109)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4일 庚辰.

110)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21일 丁酉. 사위사(辭位使)와 승습사(承襲使)가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다음과 같다.

1. 폐왕은 ‘전왕(前王)’이라 칭한다.
1. 만약 전하가 전왕의 모제(母弟)인가 여부를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전왕의 소재처를 물으면, 별궁에 있다고 대답한다.
1. 만약 전왕의 병 증세를 물으면, 어릴 때부터 풍현증(風眩症)이 있었는데, 세자가 죽은 뒤 애통과 상심이 정도를 지나쳐서 전의 증세가 다시 도져 심신이 안정되지 못하며, 공연히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혼미하고 현기증이 나며 방안에 깊이 거처하면서 창문도 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1. 만약 세자의 병 증세를 물으면, 창진(瘡疹)으로 요사(夭死)하였다고 대답한다.
1. 만약 전하가 왕비를 책봉했는가 여부를 물으면 전하가 잡져 때 부인이 병으로 죽었는데 아직 왕비를 들이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1. 만약 전하의 춘추를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강정왕(康靖王, 성종의 시호)의 아들이 몇이나고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전왕의 아들이 몇 사람이나고 물으면, 다만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대답한다.

111)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11일 乙卯.

112)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13일 丁巳.

응하던 관직으로 1486년(성종 17) 처음 설관(設官)되었다. 특진관은 문관·무관·음관(蔭官)을 막론하고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선임되었다. 따라서 고형산은 증중반정 후에도 2품 이상의 관직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朝講에 납시었다. … 特進官 高菑山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남북도 절도사가 되어 그 농사를 보았는데, 水旱의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무거운 부역에 피곤하여 농사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받은 바 官價를 償納하지 못하니, 各鎮 軍需가 이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신이 지난 9월에 遞任되어 올라가서 鏡城 本營 軍資의 곡식 남긴 수를 물으니, 겨우 천여 석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지금 兵使 辛允武가 갈 때 원래 정하여진 軍官 15員 외에 또 5원을 더 거느리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2월까지 行營에 留防할 때는 富寧 이북 6진이 번갈아 支供하고, 2월부터 수자리를 파한 이후, 본영에 유방할 때는 절도사·虞候·評事 및 軍官·審藥을 아울러 23원과 伴人·營吏·奴子 등 아울러 32인을 鏡城의 軍자로 지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진에는 都尉軍官이 있고 또 教授官이 있으며, 세 堡의 만호와 그 軍官 등도 또한 본진의 軍자로 지공합니다. 남이 있는 곡식으로 이들 사람을 지고 한다면 태반이 모자라서, 부득이 남도의 軍사가 모두 북도에 가서 유방하니, 이는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그가 啓請한 軍官 5원은 帶率하지 말게 하여 비용을 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신이 築城從事官이 되었을 때 남도의 三水 등처 各堡를 일시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방어의 중요성은 피차가 하나같은데 다른 堡는 각각 權管 및 軍官 2원을 설치하였고, 別害堡에는 軍官 2원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그 보의 土兵 원수는 30여 호이고, 軍官 4원의 從者도 또한 많으니, 청컨대 다른 예에 의하여 2원을 감해서 경비를 더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본도에 사는 사람은 軍관에 임명하지 않은 법’은 《大典》에 실려 있는데, 지난 갑자년에 비로소 본도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戍卒은 모두 軍관이 본래 알거나 친척붙이가 되는 사람이므로 鎮將이 軍관으로 하여금 摘奸하게 해도 능히 檢察하지 못합니다. 軍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호와 僉使도 또한 본도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그 管下 軍졸도 모두 본래 알거나 일가붙이여서 능히 檢査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戍卒의 청을 좇아 몰래 돌려보내기도 하니 방어가 허술합니다. 이는 傳聞한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본 것입니다. 금후로는 兩界의 첨사·만호 및 各鎮·보의 軍관은 《大典》에 의하여 본도 사람을 임명하지 말기를 청합니다.”하였다.¹¹³⁾

113) 『증중실록』 권1, 증중 1년 12월 13일 丁巳.

고형산은 함경남·북도 절도사(병마절도사)를 지냈던 경험을 들면서, 수한(水旱)의 재앙, 백성들의 무거운 부역, 흉년으로 인한 관채(官債)를 미납 등을 열거하고 이에 따라 각진(各鎭)의 군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 자신이 지난 9월에 체임(遞任)되었다고 하고 있어, 중종반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함경북도 절도사로 재직하다가, 반정 이후 교체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형산은 결국 현재 남아있는 곡식으로도 기존의 군관들과 반인·영리 등의 지공(支供)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 병사로 가는 신윤무가 정해진 군관 이외에 5명의 군관을 더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백성들의 부담을 생각하고 함경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형산은 자신이 축성종사관(築成從事官)이 되었을 때 함경남도 삼수(三水) 등처의 각 보(堡)를 일시에 새로 설치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별해보(別害堡)에는 다른 보와는 다르게 군관이 2원이 더 많으니, 이를 줄여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함경도에 사는 사람은 군관에 임명하지 않는 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다고 하면서 갑자년인 1504년(연산군 10)에 함경도 사람으로 군관을 임명하기 시작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즉 일종의 상피제를 어긴 것으로, 상피제를 어긴 폐단을 고형산이 친히 본 바를 아뢰고, 그 시정을 청하였다. 고형산이 본 폐단은, 방어 수졸은 모두 군관이 본래 알거나 친척이 되는 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정을 발견해도 능히 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군관뿐만 아니라 만호(萬戶)와 첨사(僉使)도 함경도 사람으로 임명해버려서 그 관하 군졸 역시 능히 검찰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방어하는 수졸들의 청을 받아 몰려 돌려보내 방어가 허술해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형산은 금후 함경도와 평안도의 첨사·만호 및 각 진·보의 군관은 원래의 법대로 각각 그 도의 사람은 임명하지 말기를 청한 것이다.

2) 함경도(咸鏡道) 관찰사(觀察使)

1507년(중종 2) 윤1월 30일, 고흥산은 함경도(咸鏡道) 관찰사(觀察使)로 임명되었다.¹¹⁴⁾ 관찰사는 종2품의 문관직으로서 도(道)마다 1명씩 두었으며,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軒) 등의 별칭이 있으며,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도의 장관으로서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 중종반정 후 결국 고흥산을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한 것은 역시 그가 그동안 함경도에서 도사(都事), 축성종사관(築成從事官), 경차관(敬差官), 함경남·북도 절도사 등을 역임하며 함경도 지역의 행정·군사 전문가로써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은 함경도 무산보가 전도가 원래부터 척박하였는데, 당시 또 물에 침손되어 모두 모래 땅이 되어 거주민이 한 이랑도 같아 먹을 만한 곳이 없어 구제할 대책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¹¹⁵⁾ 이에 무산보에서 서북쪽으로 10여리 되는 곳에 있는 양영만동(梁永萬洞)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살 만하므로 무산보를 양영만동으로 옮기고, 풍산보(豐山堡) 역시 그 앞 고개로 옮기며, 회령(會寧)의 하보을하(下甫乙下) 땅에 또 하나의 보를 설치하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건치(建置)하는 연혁은 중요한 일이니 관찰사와 절도사가 가을이 되면 그 편부를 살펴보고 치계하도록 고흥산이 내려갈 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였다. 이를 보면, 고흥산을 함경도 관찰사로 파견하면서 진보의 이전과 설치에 대한 여부를 다시 논의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함경도 관찰사로 파견된 고흥산은 우선 각처에 창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편리하게 할 것을 아뢰어 중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¹¹⁶⁾ 고흥산은 각처에 창고를 설치하자고 한 것은 경흥부(慶興府)의 무이보(撫夷堡), 안변부(安邊府)의 고산역(高山驛), 북청부(北靑府)의 제인관(濟仁館), 길성현(吉城縣)의 영동역(嶺東驛) 등이 본읍(本邑)과 거리가 너무 멀어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갈 때

114)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윤1월 30일 甲戌.

115)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2월 28일 壬寅.

116) 『중종실록』 권3, 중종 2년 8월 1일 壬申.

나 전세(田稅)를 들일 때가 되면 밤을 새며 왕래하게 되니 백성들의 피해와 도적맞을 것이 염려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흥산은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감해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¹¹⁷⁾ 내수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노비 등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리는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 붙는 한 해의 이자이다. 내수사는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내수사전(內需司田)과 다수의 외거노비를 비롯해 염분(鹽盆)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왕실 세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기도 하여 성종 때에는 내수사 혁파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는 내수사의 토지 검병과 노비 침탈이 더욱 심해졌음은 물론이었다.

특히 내수사가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이자를 받아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심지어는 고리대를 받고 있기도 하였다. 결국 왕실을 위한 재정 기관이 백성들을 침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함경도 관찰사였던 고흥산은 백성들을 위해 내수사의 장리를 감해줄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고흥산이 내수사 장리를 감해 줄 것을 청하자 대신들과 대간들의 일부는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거나 심지어 내수사 자체를 혁파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백성들을 위한 왕실이 재산을 가지고, 또 그 재산으로 백성들을 침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함경도 관찰사였던 고흥산은 변방의 사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 당시 함경북도 절도사였던 신윤무(辛允武)와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일을 잘 조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¹¹⁸⁾ 그렇지만 고흥산은 함경도의 농사가 그르쳤다는 이유로 춘·하등(春·夏等)의 포핍(褒貶)을 물려서 정하기를 청하여 간원(諫院)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¹¹⁹⁾ 포핍은 포는 포상, 핍은 핍하라는 뜻으로 관리들의 근무 성적 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흥산은 중종의 언급처럼, 한 도(道)의 출척(黜陟)을 맡은 관원으로써 흉년이 든 상황에서 백성들을 힘써 구제할 관리

117) 『중종실록』 권4, 중종 2년 11월 15일 甲寅.

118)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2월 23일 辛卯.

119) 『중종실록』 권6, 중종 3년 6월 18일 甲申

들의 포핍 때문에 백성들의 구제에 소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따라서 관리들에 대한 포핍을 정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추성(秋成), 즉 가을에 곡식이 익은 다음으로 등제(等第)하여 미루자고 청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원들은 흉년에도 포핍을 다 그만두지 않았는데, 고흥산의 청원은 대체(大體)에 어긋나므로, 고흥산을 추고(推考)하고, 빨리 등제하도록 아뢰었다. 결국 증중은 함경도 관찰사였던 고흥산에게 하서(下書)하여 '전에 경(卿)의 계청에 따라 춘·하등의 전최(殿最)¹²⁰를 이미 추성 뒤에 등제하게 하였으나, 포핍의 시기가 뚜렷이 법령에 있으므로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으니 빨리 등제하여 계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을 보면 증중은 고흥산의 계청대로 처음에는 포핍의 시기를 가을로 미루었다가 간원들의 비판 때문에 다시 포핍을 빨리 시행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관찰사의 임기는 통상 2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중은 특별히 승정원에 전교하여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은 치민(治民)과 방어(防禦)를 매우 잘한다고 하니,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더라도 유임시키고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권장하고자 하니, 전례가 있으면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였다.¹²¹ 승정원에서는 고흥산의 선정(善政)에 대해서는 신 등도 또한 들었다면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종윤(李從允)을 유임시키면서 당표리(唐表裏)¹²²를 하사한 예를 들었고, 이와 같이 권장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회계(回啓)하였다. 이에 증중은 고흥산을 함경도 관찰사로 유임시키고, 당표리를 하사하도록 전교하였다.

한편 고흥산은 회령(會寧) 밑에 있던 보을하(浦乙下)의 옛 보를 다시 복설하는 것과 무산보(茂山堡)와 풍산보(豐山堡) 두 개의 보를 옮겨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실의 전말을 써서 장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³

120) 포핍(褒貶)에서 최상을 맞으면 최(最)가 되고, 꼴찌가 되면 전(殿)이 되었다. 포핍은 전최(殿最)라고도 불렸으며, 관리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121) 『증중실록』 권7, 증중 3년 11월 2일 丙申.

122) 중국에서 만든 옷의 길감과 안감이다. 임금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사은(恩賜)의 물품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123) 『증중실록』 권7, 증중 3년 12월 10일 癸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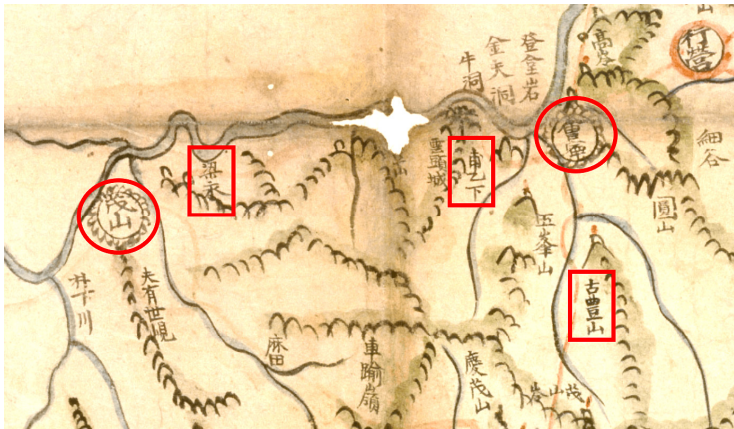
“... 신이 該曹의 受教를 보건대, 신의 아뢰 바의 뜻을 아시고, 또 조정에서도 이미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아서 지난해에 새로운 堡基를 審定한 후에, 兩堡의 백성들이 스스로 장차 살아나갈 도리를 알고 옮길 뜻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양 臣行하면 신에게 말하기를, ‘堡壘를 설치하여 防戍하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兩堡를 설치한 지역은 연달은 水災로 인하여 모두 水損되어서 寸土·尺地라도 경작을 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20여 리나 되는 지역에 出耕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지키느라 왕래하는데 늦게 나가고 일찍 돌아오게 되니, 어찌 스스로 耕種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수확의 이익이 이 때문에 충실치 못하므로 드디어 생업을 잃고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반이 넘으니, 지금 이를 移設하지 아니하면 수년이 못 되어 失守하게 될 것이다.’합니다. 신이 이 말에 따라 그 형세를 보건대, 과연 백성의 말과 같습니다. 受教한 후로 지금 2년이 되었는데, 다시는 살피지 않으시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이 주야로 헤아려 보아도 오늘들의 거조는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 없고, 백성의 노력을 가볍게 쓸 수도 없는 것이며, 또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여 변경의 토지를 개척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賊路를 차단하여 藩屏을 공고히 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작도 하고 防戍도 하면서 民業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고형산의 장계를 보면, 이미 지난해인 1507년(중종 2)에 보을하보의 옛 보를 다시 설치하는 것과 무산보를 옮겨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堡)의 터를 심정한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의 이러한 조치들로 백성들은 보를 옮길 뜻이 더욱 간절해진 상황에서, 관찰사인 고형산이 매양 신행(臣行)할 때마다 보루를 설치하여 방수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지금 연달은 수해 때문에 경작을 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20여 리나 되는 지역까지 나가 농사짓고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왕래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하소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반이 넘기 때문에 진을 옮기지 않으면 수년이 못되어 방어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고형산은 백성들의 말에 따라 그 형세를 살피봤는데, 과연 백성들의 말과 같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을 다시 복설하고 옮기는 문제는 벌써 2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다시 살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 없고, 백성들의 노력을 가볍게 쓸 수도 없는 것이며, 또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

하여 변경의 토지를 개척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즉 옛 보를 다시 설치하고 옮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여 변방을 공고히 지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경작도 하고 방수도 하면서 민업(民業)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세종 때 6진을 설치했던 일을 상고하여 보을하 옛 보의 복설과 무산보와 풍산보 이설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고흥산은 세종이 회령진(會寧鎭)을 알목하(幹木河)에 설치하고, 그 남쪽 20리 지역에 보을하보(甫乙下堡)를 두어 회령진을 구원하고 돕는 원진(援鎭)으로 삼은 것은 그 계획인 참으로 핵심적인 것으로 이를 고칠 바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세조 때에 이르러서 일부 대신들이 의논하여 보을하보를 혁파하고 풍산(豐山)의 내지로 축소 배설하여 마침내 조종(祖宗)께서 개척한 땅이 여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풍산과 무산 두 보(堡) 사이에는 단지 자그마한 산 하나로 막혀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여진인들이 사냥과 방목하는 곳이 되어서 피아의 경계도 없이 서로 왕래하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다고 하였다. 이윽고 연산군대에 두 보의 사람과 가족을 여진인들이 몇 번씩 잡아다 죽였으니 보을하보를 폐지한 것은 적로(賊路)를 피하고자 한 것이 도리어 적의 침범을 받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팔도지도(八道地圖)에 나오는 무산(茂山), 양영(梁永), 보을하(甫乙下), 회령(會寧), 고흥산(古豐山)〉²⁴⁾

또한 무산보·풍산보 등을 이설하는 것과 보을하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백성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옮겨 설치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대의(大義)와 두 가지 큰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선조(先祖)의 옛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 대의이고, 적로의 요충을 배제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익이며, 경작과 방수의 양편을 얻게 됨은 두 번째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행산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고행산은 자신이 아뢴 바를 참작하여, 만약 조정의 의논에 합치하면 내년 봄 이후에 대신을 골라 보내어 다시 옮길 보(堡)의 땅을 살피고 편부를 마련하여 시급히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던 것이다.

고행산의 의견에 따라 병조에서는 중중에게 각 군보(軍堡)의 이설에 관하여 대신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아뢰게 되었고, 중중은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을 파견하도록 명하였다.¹²⁵⁾ 그러나 좌의정 박원종(朴元宗)이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자 중중은 송일(宋軼)을 순변사(巡邊使)로 삼았다.¹²⁶⁾

송일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대사간(大司諫) 유세침(柳世琛)이 바로 농사철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중신(重臣)의 행차가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어찌 폐해가 없겠느냐며 대신 파견에 반대를 표명하였다.¹²⁷⁾ 이에 집의(執義) 박광영(朴光榮)은 풍산(豐山)·무산(茂山) 등 군보(軍堡)를 옮기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로 대신을 보내어 살펴야 할 것이지만,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는 고행산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지금 고행산이 절도사와 의논하여 조치한다면, 대신이 가본다 해도 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중중은 변방을 순찰하는 일은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신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자가 있으므로 순변사의 파견을 정지하였다.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는 고행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집의 박광영의 언급에서 당시 조정 대신 및 관료들이 고행산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12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125)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1월 5일 戊戌.

126)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1월 7일 庚子.

127)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1월 18일 辛亥.

있다. 오랜 함경도로의 파견으로 인해 역시 함경도의 치민(治民)과 방어(防禦)에 대해서는 고흥산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함경도에 대신을 파견하여 진을 옮기는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사간 유세침이 대신 파견을 반대했던 같은 날, 유순(柳洵)·박원정(朴元宗)·유순정(柳順汀) 등은 보(堡)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고흥산이 아뢰는 것을 보면 조속히 옮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속히 대신을 보내어 편부를 살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 것이다.¹²⁸⁾ 그리고 변방의 일이 중요한데, 약간의 왕래하는 폐단을 어찌 따지겠냐며, 대신을 보내 함경도 감사인 고흥산과 절도사와 같이 그 편부를 심사하여 계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유순·박원종·유순정 등의 의논에 대해 사헌부(司憲府)는 역시 대신 파견을 반대하고 있었다. 사헌부는 근래 함경도의 잔폐(殘弊)가 매우 심하고, 흉년이 들어 대신의 행차가 마땅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사헌부의 주장은 이것만은 아니었다. 사헌부는 고흥산이 함경도에 오랫동안 가 있어 거의 10년이 되었으며, 변방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어 그 사정이나 형편을 아는 것에 반드시 착오가 없을 것이어서 비록 송일을 보낸다고 해도 고흥산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흥산 등의 서장(書狀)을 변방의 일을 아는 대신에게 모여 연구 검토하게 하고, 조정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헌부에서는 고흥산 역시 박원종에게 ‘함경도는 바야흐로 눈에 막혀 있는데 3월 그믐께라야 눈이 다 녹을 것이니 송일의 행차를 마침 그때 하게 되면 농사에 자못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대신의 파견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이후 사헌부에서는 함경도에 대신 파견을 정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청하였지만, 특진관(特進官) 홍경주(洪景舟), 참찬관(參贊官) 성몽정(成夢井) 등은 대신 파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였고,¹²⁹⁾ 마침내 송일(宋軼)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128)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1월 18일 辛亥.

129)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1월 24일 丁巳.

파견되었다.¹³⁰⁾ 체찰사로 파견된 송일은 파견된 지 1달이 조금 지난 뒤인, 1509년(중종 4) 3월 16일에 장계를 보냈는데,¹³¹⁾ 결론적으로는 고흥산의 의견과 같았다.

송일은 장계에서 보을하보의 복설과 풍산보·무산보 이설의 편부를 관찰사인 고흥산과 절도사와 함께 심의하였는데, 복설과 이설하는 것이 실로 경작과 방수에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무산보는 현재 경작할 만한 땅이 없으니 먼저 읍기고, 나머지 두 보는 가을에 축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무산보의 백성들이 失業한 것은 과연 고흥산이 아뢰 바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일은 고흥산과 함께 무산보·풍산보·보을하보를 지킬 군사 수효를 조정하였고, 방어에 관련한 계획을 함께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무산보(茂山堡)는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富寧鎭)에 속해 있으며, 부령부의 북쪽 18리에 있었다.¹³²⁾ 그러나 신증(新增)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부의 북쪽 40리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기록되었다. 돌로 쌓은 성의 둘레가 1천 7백 64척, 높이 15척이고, 성 안에 우물 1개가 있었다. 또한 ‘과거의 보(堡)는 토지가 박하고 또 적(敵)의 경계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정덕(正德) 기사(己巳)년에 이곳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라고 써 놓았다. 정덕 기사년은 1509년(중종 4)으로, 이것을 보면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고흥산의 건의에 따라 무산보를 옮겨 설치하였음이 확인된다.

130)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2월 2일 甲子.

131)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3월 16일 戊申.

1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50, 富寧都護府 關防 茂山堡.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나오는 부령부(富寧府:아래)와 폐무산(廢茂山:위)〉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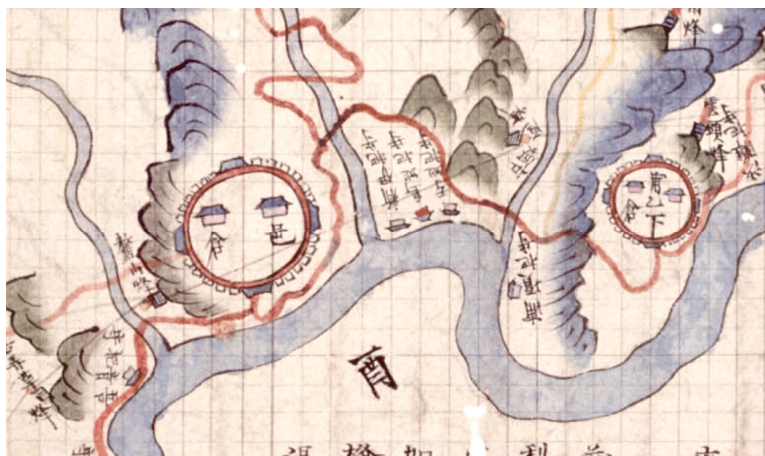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나오는 무산보(茂山堡)〉¹³⁴⁾

1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1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두만강 유역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풍산보에 대해서는 이후에 옮겼다는 기록을 찾아볼 순 없다. 그렇지만 보을하보(浦乙下堡)는 무산보를 옮기는 같은 해인 1509년(중종 4)에 복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을하보는 보을하진(浦乙下鎭)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회령부의 서쪽 25리에 있는데 둘로 쌓았다고 되어 있으며, 성의 둘레는 3천 6백 12척으로, 역시 정덕(正德) 기사년(己巳年)인 1509년(중종 4)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³⁵⁾ 『중종실록』에도 그 해에 병조(兵曹)에서 지금 보을하진을 새로 설치하는데 범죄자(犯罪者)를 입거시키고 강도(強盜)의 처자들을 아울러 들여보내도록 하여 변방 방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¹³⁶⁾고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을하진 역시 고형산의 건의와 송일의 파견 이후 보을하진이 1509년(중종 4)에 새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나오는 회령진(會寧鎭)과 보을하진(浦乙下鎭)」¹³⁷⁾

한편 함경도 관찰사였던 고형산은 병조(兵曹)에서 수교(受敎)한 ‘군적(軍籍)의 마련을 원액(元額)보다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수교란 조선시대 임금의 전교를 받은 각 관청이 그

1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50, 會寧都護府 關防 浦乙下鎭.

136)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2일 壬戌.

1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명령을 내려보낸 것으로, 고흥산은 임금의 전교가 잘못된 실정이 있으면 이를 알려 바로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 廢朝 때에 피폐한 고을의 백성들은 부역에 시달려, 다른 고을로 옮겨가 살고 혹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녀, 도내 각 고을의 현재 있는 인구의 수효는 전날의 案과는 너무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각 고을의 인구 다소를 상고하지 않고 전일의 안대로 충당하여 정한다면, 甲 고을에선 보인을 채우고(淮保)도 오히려 정원 외의 수(旅外)가 있을 것이나, 乙 고을에서는 元額이 모자라 戶首도 채우지 못할 것인데 수령들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여 그 수효를 헛들려 놓는다면, 현재 있는 자도 또한 支當할 수 없어 종당에는 반드시 守備를 못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군사란 精兵에 달린 것이지 수효가 많은 데 달린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마땅히 원액을 감하여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하여, 이름이 병적에 있는 자를 모두 적실하게 한다면 군사가 정해지게 되고 수비가 든든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원액은 곧 祖宗의 법이라 경솔하게 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전 원액에 구애받지 않고 각 고을의 현재 있는 인구의 수효에 따라, 가령 갑 고을의 軍額이 감소된 것을 을 고을에서 餘丁으로 수효를 증가시켜 충당하여 정한다면, 갑 고을의 군액은 비록 전보다 감소되나 을 고을의 군액은 지금보다 수효가 증가되어 본도의 군사가 축나지 않을 듯한데, 該曹로 하여금 가부를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는데, 書狀을 병조로 내려보냈다.¹³⁸⁾

고형산은 장계에서 먼저 함경도의 군사 수효를 자세히 밝혔는데, 군적(軍籍)에는 함경북도 9고을의 군사 갑사(甲士) 2천 4백 명, 기병(騎兵) 3천 2백 40여 명, 보병 1천 60여 명, 보인(保人)까지 계산하면 2만 3천 8백 70인이지만, 현재 있는 것은 8천 3백 13인, 감소된 것이 1만 5천 5백 50여 인이라고 하였다. 함경남도 13고을의 갑사는 1천 명, 기병은 3천 2백 88명, 보병 9백 36명, 보인까지 계산하면 1만 6천 7백 36인인데, 현재 있는 것은 1만 2천 3백 94인이고, 감소된 것이 4천 3백 42인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군적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과 실제의 인원이 다름을 먼저 지적한 것이다.

138)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3일 癸亥.

그리고 폐조(廢朝), 즉 연산군 때에 피폐한 고을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려서 다른 고을로 옮겨가 살고 혹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 함경도내 각 고을의 현재 인구 수효는 전날의 기록과 너무도 서로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각 고을의 인구 다소를 다시 상고하지 않고 전일의 안대로 충당하여 정한다면, 실제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령들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수효를 늘려 놓는 일들이 발생하여 군적에는 사람이 있지만 정작 지킬 사람이 없어 수비(守備)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고흥산은 군적에 올려 있는 수효를 실제 인구에 맞춰 개정하여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하여, 병적(兵籍)에 있는 자를 모두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한다면 군사의 수효가 제대로 정해지고 수비가 튼튼해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정해진 군적의 수를 옛 조종의 법이라 경솔히 감하거나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전에 정해진 수효에 구애받지 말고 각 고을의 현재 있는 인구의 수효에 따라 갑 고을의 군역이 감소된 것을 을 고을의 남는 것에서 수효를 증가시켜 충당하여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흥산은 결국 군역의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각 군에 정해진 군역의 수효가 실제와 맞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군역의 폐단은 조선 중기부터 만연해지기 시작하여 주지하 다시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군적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만, 실제 군사가 없는 일 벌어지기도 한 것이다. 고흥산이 관찰사로 있는 함경도 지역은 국방상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군역의 폐단을 직시하고, 고흥산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던 중 함경도 관찰사인 고흥산이 추분(秋分) 전에 법을 어기고 형벌을 집행하여 형조(刑曹)의 낭관(郎官)¹³⁹⁾은 고흥산에게 죄를 주라고 중종에게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전교를 내려 고흥산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였다.¹⁴⁰⁾

조선시대 사형은 교형(絞刑)과 참형(斬刑) 두 가지인데, 참형을 다시 대시참(待時斬)과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누었다. 십악(十惡)과 간도살인(奸盜殺

139) 조선 시대 각 관아의 당하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통상 六曹의 正郎과 佐郎을 합쳐서 부르던 말이다.

140)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4일 甲子.

人)이나 강상죄(綱常犯)을 제외한 잡송(雜訟)은 춘분(春分) 후에는 정지하고 추분 후에 재개하였으며, 사형의 집행 역시 춘분 후에 정지하고 추분 후에 재개하게 되어 있었다. 즉 사형 판결을 받아도 추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집행하는 것을 대시참이라고 하고,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부대시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사주전문자(私鑄錢文者)나 승야취당살인자(乘夜聚黨殺人者), 즉 돈이나 문서 위조범 또는 야간에 떼를 지어 사람을 죽인 자는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하는 부대시참이었지만, 사민도망자(徙民逃亡者)는 추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 대시참이었다.

세종 때 함경도에 6진을 설치한 후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종실록』에 고흥산이 어떤 죄인에 대해 추분 전에 형벌을 집행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사민 후 도망하였던 사민도망자나 도망군인 등을 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사민도망자 등은 추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함경도가 여진족과 접한 의 지역적 특성상 이주시킨 사민이 도망하거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고흥산이 추분 전에 형벌을 집행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변경 지역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509년(중종 4) 8월 28일 집의(執義) 권민수(權敏手)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서 단천(端川)으로 통하는 옛 길이 폐쇄되었지만, 길을 다시 개통하게 되면 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¹⁴¹⁾ 그러면서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가서 그 길의 편부를 보려고 하다가 허리와 다리가 시고 아파 못하였다며 변방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물어 보자고 주장하였다. 고흥산의 당시 나이가 57세가 되었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가 아플 수 있었겠지만, 삼수와 갑산 등지를 다니며 축성하고 보를 옮기는 일들을 해왔고, 폐단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고달픔을 없애려고 했던 고흥산이 몸이 아파서 삼수와 갑산에서 단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보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권민수의 언급은 고흥산도 가기 힘들만큼 길이 험하였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141)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28일 戊子.

권민수의 주장에 대해 결국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유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신용개(申用溉)·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坵)·박설(朴說) 등 대신들은 관찰사 및 함경남도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오랑캐 땅과의 거리, 개통과 폐쇄의 이해 및 당초 개통되었다가 중간에 막힌 연유를 같이 살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중종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¹⁴²⁾ 따라서 당시 조정에서도 함경도의 치민(治民), 축성, 교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오랫동안 함경도에 있었던 고행산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고행산은 또한 백성들을 함경도로 옮기는 사민(徙民)을 시행하여 입거(入居)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계청(啓請)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병조(兵曹)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보을하진(甫乙下鎭)에 대한 사민과 입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¹⁴³⁾ 고행산은 백성들의 사민과 입거를 조금 늦춰 다음해 가을에 옮길 것을 주장하였지만, 병조에서는 이것이 늦다하여 다음해 봄으로 청하였다.¹⁴⁴⁾

그러자 사헌부에서는 모든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고, 친히 본 것만 못한 것인데, 함경도 관찰사 고행산이 익히 변방 사정을 잘 알고 백성들의 지원에 따라 이해와 편리 여부를 깊이 헤아려 아뢰었으니, 고행산이 아뢴 대로 하기를 청하였다.¹⁴⁵⁾ 동지사(同知事) 김전(金詮) 역시 고행산은 변방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으로 병조에서 비록 멀리서 헤아려 보아도 고행산이 눈으로 본 것만은 못할 것이니, 고행산이 아뢴 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⁶⁾ 당시 헌납(獻納) 조방언(趙邦彦) 역시 마찬가지로, 고행산은 변방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으로, 어찌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아뢰었겠느냐며, 고행산의 주청대로 시행할 것을 중종에게 아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입거 하는 일은 병조에서 이미 의논한 것이므로 지금 중도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142)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29일 己丑.
 143)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8월 2일 壬戌.
 144)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2일 辛卯.
 145)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2일 辛卯.
 146)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3일 壬辰.

그리고는 영의정 유순·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이 의논한 끝에, 체찰사(體察使)였던 이손(李蓀)을 입거안접사(入居安接使)로 겸임할 것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함경도에 보내게 하여 지모가 있는 고흥산이 조치하도록 할 것을 증중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다.¹⁴⁷⁾

당초 고흥산이 새로 설치되는 진(鎭)에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다음해 가을에 들여보내자고 한 이유는 사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고흥산은 백성들을 이주시켜 한꺼번에 집을 짓는 등의 일과 성(城)을 쌓은 일을 함께 시키는 것은 거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¹⁴⁸⁾ 또한 함경도는 너무 멀어 만약 추수한 뒤에 들여보낸다면 중로에서 과세(過歲), 즉 설날을 넘게 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백성을 추위가 심한 땅에 몰아다 이주시키면 노약자를 얼게 죽게 할 폐단이 없지 않았다. 이에 고흥산은 성을 쌓은 역사와 같은 시기에 백성들의 이주를 함께 거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¹⁴⁹⁾

고형산이 함경도 관찰사가 된 것은 1507년(중종 2) 윤1월 30일이었는데, 조선 시대 통상적인 관찰사의 임기 2년을 훨씬 넘겨 그대로 관찰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관찰사의 임기가 만기가 된 상황에서 증중에게 서장(書狀)을 보내 자신의 병이 깊고 늙은 어미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함경도 관찰사로의 직임에 대해 사직을 청한 것 같다.¹⁵⁰⁾ 이에 증중은 함경도 관찰사를 교체하도록 명하였는데, 삼공(三公),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삼정승은 함께 고흥산은 변방 일을 잘 알고, 성 쌓은 일도 끝나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옮겨 변방을 채워야 하니 특별히 약을 내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도록 청하였다.

증중은 정승들이 고흥산을 그대로 두자고 하니 어떻게 처리할지 이조(吏曹)에 물었고, 이조에서는 변방 일이 긴급하고 중하며, 고흥산의 병은 중한 것이 아니니 약을 내려 조리하도록 하면 봄에도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고흥산을 그대로 함경도 관찰사로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증중은 고흥산에게 약을 지어 보내고 교체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도록 하였다.

147)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4일 癸巳.

148)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4일 癸巳.

149)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9월 5일 甲午.

150)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윤9월 27일 丙戌.

중종이 약을 지어 보내고 함경도 관찰사에 그대로 있게 하자, 고흥산은 중종에게 사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 고흥산은 자신이 함경도에 있는 지 12년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진실로 정상을 꾸며 직책을 사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병을 조리하고 아버이를 봉양하고 싶었다고 하였다.¹⁵¹⁾ 그렇지만 임금의 은혜가 내려 천금 같은 진귀한 약으로 풍습(風濕)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육척(六尺)의 쇠잔한 몸이 살아나는 큰 덕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더욱 충성과 부지런을 다하고 다시 마음과 지조와 절개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으며, 직위에 게으르지 않고 마땅히 사사로움을 뒤로 돌리고 공적인 것을 앞세우겠으며 마음에 태만함이 없이 집을 잊고 나라를 쫓겠다고 하였다.¹⁵²⁾

이후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고흥산은 남도 각 고을 고식을 두만강 유역의 5진으로 이송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을 청하기도 하였으며,¹⁵³⁾ 경흥진(慶興鎭) 첨사(僉使) 최삼준(崔三俊) 및 우후(虞候) 권연(權然)이 방어에 조심하지 않아 여진족이 여자 3인을 잡아간 것에 대해 사유를 갖춰서 치계(馳啓)하기도 하였다.¹⁵⁴⁾ 또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녹둔도(鹿屯島)가 비옥하다고 하면서 조산보(造山堡)를 녹둔도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에게 그 편부를 심사하도록 청하자 중종은 이를 허락하기도 하였다.¹⁵⁵⁾ 또한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순 없으나 함경도의 방물(方物)인 삼도자(三刀子)를 사슴뿔로 장식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고흥산이 감사로 있을 때 그 폐단을 아뢰어 늦쇠로 장식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⁵⁶⁾

그러던 중 1510년(중종 5) 소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났다. 삼포왜란은 경오년에 일어났으므로 ‘경오왜변(庚午倭變)’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이 대마도 및 일본에게 개항하였던 부산포·내이포·염포에 거주하였던 왜인(倭人)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조선에서는 무역을 위해 조선에 오는 왜인들을 통

151)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10월 20일 戊申.

152) 『중종실록』 권9, 중종 4년 10월 20일 戊申.

153) 『중종실록』 권10, 중종 4년 11월 13일 辛未.

154) 『중종실록』 권10, 중종 4년 12월 16일 癸卯.

155) 『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3월 5일 庚申.

156) 『중종실록』 권60, 중종 23년 2월 8일 庚戌.

제하기 위해 부산포·내이포·삼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였으나, 왜관에 머물면서 대마도(對馬島)로 돌아가지 않는 왜인들이 급증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중종 즉위 후부터 조선에서 왜인에 대한 통제와 거주 제한을 엄격히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왜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부산포를 공격하여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을 살해하고, 내이포(薺浦, 熊川)를 포위 공격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난 것이었다.¹⁵⁷⁾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 김수동(金壽童)은 여진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변을 일으킬까 염려되므로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을 아직 임임(仍任), 즉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냐며 중종에게 청하였다.¹⁵⁸⁾ 즉 고흥산이 북도의 사정을 잘 알고 여진인들도 또한 고흥산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고흥산은 북방에 오래 있었고, 또 몸에 병이 있으며,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한 벼슬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감사를 이미 차출하였다며 영의정 김수동의 청을 반대하였다.

삼포왜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대간(臺諫)들 역시 전 함경감사 고흥산이 오랫동안 그 지방을 맡아 적의 정상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맡겨서 북도를 편안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¹⁵⁹⁾ 이에 대해서도 중종은 고흥산은 병이 있어 이미 약을 보내었고, 비록 적의 정세를 잘 안다고는 하나 한 사람에게 오래도록 한 도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이 모두 나서 고흥산의 직책을 그대로 두자고 아뢰니, 고흥산을 그대로 함경도 관찰사로 두기로 명하였다. 이에 따라 고흥산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아 그 직임을 전과 같이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난다.¹⁶⁰⁾

삼포왜란이 일어나서 함경도 관찰사에 그대로 있게 된 고흥산은 왜구를 방비하는 방략을 치계하였다. 고흥산이 왜구를 방비하는 방략을 제시한 것은, 왜구

157) 삼포 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여 난은 평정되었지만, 이 난으로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선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참획되었다. 삼포는 폐쇄되어 대마도 및 일본과의 통교가 끊겼고, 이 상태는 1512년(중종 7)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국교를 다시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158)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8일 癸巳.

159)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11일 丙申.

160)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14일 己亥.

가 성행하던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왜구들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강원도를 넘어 함경도까지 침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함경도 관찰사 高荊山이 왜적을 방지하는 방략을 馳啓하였는데 그 대략에, “고적을 상고하여 보면 지나간 甲子 연간의 왜변 때에 安邊에서 歙谷까지 세 참 실[三息] 거리에 있는 壓戎·鐵原·和登·浪城浦 등처에 혹은 石城, 혹은 토성을 쌓아 방수하고, 烽火로 서로 準하여 변을 알리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철원 남쪽 1리 거리에 馬岩岫·壓戎串·浪城浦岫 등 세 곳의 丘陵이 바닷가로 뻗어들어가서 바다에 왕래하는 사람이 날날이 바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烟臺를 배설하여 밤이면 烽火를 들어 서로 알리고 낮밤으로 候望하여 변을 알리는 것이 편하고 마땅하니, 該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德源의 薪島·行島·連島, 安邊의 女島, 永興의 等島·末應島·大猪島 등처에 각 고을의 海採하는 사람 및 牧子 등 사는 사람이 심히 많아서, 만일 적변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화를 받을 것이니, 아울러 육지로 나와서 살게 하는 것이 심히 마땅합니다. 해채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왕래하고, 왜구가 침식할 때까지는 斥候하여 바라보고 반드시 令角 소리를 기다려서 출입하게 하소서. 1. 안변의 압융관에서 바라보면 北淸·洪原·咸興·定平·文川·德源·永興 등 고을의 地面을 환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通川郡 동북으로부터 50여 리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卵島가 있는데, 둘레가 2백여 리나 되고 해물이 많이 나서 해채하는 사람들이 항상 왕래하니 賊變이 두렵습니다. 이 섬에 올라가면 利城·端川·吉城 등 고을의 지면이 또한 바라보입니다. 만일 왜구가 여기에 의지하여 순풍을 기다려서 물을 건너오면 洪원 以北에 이를 수 있습니다. 洪원 이북의 길성 등 각 고을에, 함흥 以南 각 고을의 예에 따라 연대를 설치하고 수호군을 두어 후망候望하게 하소서.”하였다. ...161)

고형산은 고적(古跡)을 상고하여 갑자년, 즉 1384년(고려 우왕 10)의 왜변 때에 안변에서 흡곡 사이에 있는 압융·철원·화등·낭성포 등처에 석성 또는 토성을 쌓아 방수하고, 봉화로 서로 변을 알렸다고 하였다. 지금 다시 살펴보면 마암재·압융관·낭성포재 세 곳의 구렁이 바닷가로 뻗어 들어가 있어서 바다를 왕래하는 사람이 날날이 보이는 곳이므로 이곳에 연대를 설치하여 밤에는

161)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5월 21일 乙亥

봉화로 서로 알리고, 낮과 밤으로 멀리 내다보며 정찰하면서 변이 생기면 알리는 것이 편하고 마땅하므로 병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청한 것이다.

또 덕원부터 안변과 영흥에 있는 여러 섬들에는 미역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과 목장에서 말과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변이 일어나면 먼저 화를 받게 되므로 육지로 나와서 살게 하자고 하였다. 더불어 바다에서 미역이나 고기 잡을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왕래하게 하고, 왜구가 그칠 때까지는 척후(斥候)하여 바라보고 반드시 수각 소리를 기다려 출입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안변의 압읍관 역시 북청부터 영흥까지 고을의 지면을 훤히 볼 수 있고,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난도 역시 이성부터 길성까지의 고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에 연대를 설치하고 수호군을 두어 후망(候望)하도록 청하였다.

중종이 고행산의 방략을 대신들에 내려 의논하게 하자, 영의정 유순(柳詢)은 왜놈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반드시 강원도를 지나 함경도 지경에 이를 것이니 고행산의 방략대로 새 연대를 많이 설치하고 섬에 사는 백성들을 육지에 살게 하자고 하였다. 특히 고행산이 말한 마암·압읍·낭성 세 곳에 아뢰 바에 의하여 연대를 설치하고, 영각을 기다려서 출입하는 일과 강원도 통천군 난도의 방비 문제는 고행산의 계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중종의 윤허를 받았다.

고행산은 또 구황(救荒), 즉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행산이 제시한 구황하는 방략은 중국의 송나라 때의 사창법(社倉法)이었고, 당시 명나라의 오현(吳賢)이라는 사람이 삼하(三河)에 수령으로 가서 사창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조선과 함경도의 실정에 맞춰 변형시킨 것이었다.

함경도 관찰사 高荊山이 救荒하는 方略을 올렸다. “본도의 민속이 저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용의 소비를 절제하지 않으므로 민간에는 사채놀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만 흉년이 들면 사람이 모두 官倉에서 구제하기를 바라며, 또 이 도는 치우쳐 있어 길이 멀어서 다른 도에서 곡식을 옮기려 해도 바다나 육지로 수운하기가 모두 쉽지 않습니

다. 예전에 宋나라 때의 신하 朱熹가 社倉法을 시행하였는데, 孝宗이 좋게 여겨 그 법을 諸路에 내리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吳賢이 三河에 수령으로 나가서, 또한 사창법을 시행하여 社長·副長을 두어 錢穀을 맡게 하고, 社民으로 하여금 上半에는 銅錢 60文을 내고 下半에는 곡식 60斗를 내게 하여 社長의 집에 운반하였다가 작은 흉년이면 우선 賑貸法을 행하고, 큰 흉년이면 賑濟法을 행하여 반드시 償還하지는 않습니다. 평시에는 곡식 한 섬의 이자로 3斗를 내고, 돈 백 文에 이자 30文을 냅니다. 신은 청컨대 일체 三河의 제도를 따르되 그 저축하는 곡식은 백성에게서 거두지 말고 고을에서 公備하여 고을마다 많아도 4백 석을 넘기지 않고 적어도 3백 석보다 적지 않게 하고, 境內 4面に 각각 한 倉을 두어 평시에는 거두었다 흘렀다 하고, 흉년에는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고찰하게 하여 균일하게 賑貸하고, 가을에 수확하면 한 섬마다 이자 3두를 내고, 흉년이 들면 본전만 받아 이것으로 恒式을 삼으소서. 저축한 곡식이 많아서 받는 자가 많으면 출납이 번거로와져서 정(精)하지 못하니, 수량이 천 석에 이른 뒤에는 매 社에 나누어 각각 창고를 세워 받아다 먹는 자로 하여금 먼 길을 오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또 1년에 거두고 나눠주는 수량을 公簿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자와 본전의 늘고 준 량을 뒤에 상고할 수가 없어 奸僞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년 춘추에 거두고 나눠 주는 수량을 兩倉의 예에 의하여 모두 회계에 기록했다가 관찰사가 늘고 준 것을 상고하여 연말에 啓聞하여 간위를 막게 하소서.”하였다. 명하여 海司(該司)에 내리었는데, 호조에서 우리나라 민속이 중국과 같지 않아서 시행함에 불편이 있다 하여 일이 결국 행하여지지 않았다.¹⁶²⁾

고형산은 송나라 때의 주희가 사창법을 시행하였고, 지금 중국에서 오현이 삼하에서 사창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었다. 함경도 관찰사였던 고형산이 중국의 삼하에서 오현이 사창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고형산은 오현이 시행하고 있는 삼하에서의 사창법을 따르되 삼하 지역과는 다르게 그 저축하는 곡식은 백성에게서 거두지 말고 고을에서의 공적인 비용으로 하고, 고을마다 4백 석을 넘지 말고 적어도 3백 석보다는 많게 해서 고을의 4면에 각각 하나씩 창고를 두자고 하였다.

162)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7월 5일 己未.

그리고 평시에는 거두었다가 내보냈다가 하지만, 흉년에는 수령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고찰하게 하여 균일하게 진대(賑貸), 즉 백성들에게 꾸어주어 구제하고, 가을에 수확하면 한 섬마다 이자 3두를 내고, 흉년이 들면 본전만 받아 항식을 삼도록 주장하였다. 또한 1년에 거두고 나누어주는 수량을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여 간사한 행위를 방지하고, 모두 회계에 기록하였다가 관찰사가 늘고 준 것을 상고하도록 하여 간사한 행위를 막도록 주장하였다.

중종은 고흥산의 방략을 호조(戶曹)에 내렸는데, 호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속이 중국과 같지 않다며 시혜에 불편이 있다고 하여 결국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흥산이 사창법을 써서 백성들을 구황하지는 논의는 이후 사창제 부활이라는 논의의 시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사창(社倉)은 향촌 자체의 민간 빈민 구호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송나라 때의 사창법을 본받아 더욱 확대하였다. 조선은 초기부터 의창(義倉)을 두기도 하였지만, 의창에 쌓아둔 원곡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자 사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1418년(세종 10) 사창 설치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마침내 1451년(문종 1)에 사창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1461년(세조 7)에는 사창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창 원곡의 관리 소홀로 반대론이 재기되어 1470년(성종 1) 사창은 시행된 지 20여 년 만에 호조의 제의로 혁파되었다.

16세기는 토지 겸병에 따른 농민의 토지 이탈과 기아 현상의 심화로 농민에 대한 진휼 정책이 다시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의창의 환곡 기능의 상실이라는 상황에서 고흥산의 사창법 시행 주장은 사창제 부활 논의의 시초였던 것이다.

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형조 참판(刑曹 參判)

1510년(중종 5) 9월 3일 중종은 윤순(尹珣)을 함경도 관찰사로, 고흥산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¹⁶³⁾ 고흥산은 1507년(중종 2) 윤1월 30일

에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므로, 약 3년 8개월을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였던 것이다. 고흥산이 임명된 동지증추부사는 증추부(中樞府)의 종2품 관직이었다. 증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이었다.

그렇지만 1달 정도 뒤인, 동년 10월 12일 고흥산은 형조 판서(刑曹 參判)에 임명되었다.¹⁶⁴⁾ 형조는 6조 중의 하나로 추관(秋官) 또는 추조(秋曹)라고도 하였으며,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러 삼법사(三法司)로,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三省)이라고도 불렸다. 형조는 법률, 사송,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책임자는 정2품의 판서(判書)이고, 부책임자는 종2품의 참판이었다.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하였으며, 참판은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참판은 육조의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격이었으며, 각 조에 1명씩 모두 6명을 두었다.

고형산은 형조 참판으로 전반적인 국정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침 대사간(大司諫) 최숙생(崔淑生)을 비롯한 대간들이 여악(女樂)의 폐지를 주장하자, 중종은 정부·부원군·육조·한성부에 의논하게 하였는데,¹⁶⁵⁾ 고흥산 역시 이 논의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高荊山은 의논드리기를, “進豊모 때에 여악이 없을 수 없으니, 이제 만약 개혁하고 진풍정 때에 따로 다른 여악을 쓴다면 그 폐해가 기녀가 있을 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옛날에 기녀를 설치한 것은 成卒로서 아내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신이 오래도록 변방에 있으면서 將士들의 고통을 자세히 보았는데,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떠나서 아주 먼 지역에 와서 수자리하면서, 빠른 자도 일주년이 되어야 교대하고 오랜 자는 간혹 3~4년에 이릅니다. 나그네의 괴로움이 한둘이 아니건만 집을 잊고 굳게 지키는 것은 오로지 이것으로써 스스로 위로할 뿐인데, 하루아침에 혁폐하여 기녀가 각기 남편이 있게 되면, 혹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법을 어기면서 서로 관계하게 되어 작으면 그 肢體를 상하고 크면 그 생명을 해칠

163)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9월 3일 丙辰.
 164)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12일 乙未.
 165)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12일 乙未; 13일 丙申.

것이니, 한갓 風化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防禦가 이것으로 인하여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녀를 혁파하는 것이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다만 폐해를 더할 뿐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여악을 權宜에 따라 예대로 두되 서울에서는 다만 진풍정에만 사용하고 正殿에는 쓰지 않으며, 지방에서는 큰 고을에는 그대로 두고 殘邑에는 혁파하며, 또 금령을 세워서 옥정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便當할 것 같습니다.”하였다. …166)

고형산은 진풍정(進豊呈) 때 여악(女樂)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진풍정은 임금이나 왕후 등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올리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진풍정 때 지금의 여악을 폐지하고 다른 여악을 쓴다면 그 폐해가 기녀가 있을 때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여악은 창기(娼妓, 倡妓)·여기(女妓)·관기(官妓)·기악(妓樂)·기생(妓生)·여령(女伶)·여공인(女工人)·기(妓)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는데, 창기·여기·관기 등이 여악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들이 바로 여악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여악은 서울뿐 아니라 외방에도 두었으며, 외방에서는 중국 사신과 왜사(倭使)를 접대하기 위해 그들이 경유하는 고을과 군사들의 위로 및 야인 회유를 위해 변진(邊鎭)이 있는 고을에도 여기를 두었다. 여악은 회례연·양로연·사신연과 같은 공식적인 연향, 왕실의 소소한 연향, 변방 지역에서의 야인 회유와 군사를 위로하는 연향 등의 활동을 하였다.

고형산은 오랜 함경도 변방에서의 경험을 들면서, 하루아침에 여악을 폐지하면 변방에서의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옛날에 변방의 여악과 기녀를 설치한 것은 방비하는 수졸로서 아내 없는 자를 위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고형산은 오래도록 변방에 있으면서 부모와 처자들과 떨어진 장사(將士)들의 고통을 보았는데, 그들은 빠르면 일 년에서 늦게는 3~4년 동안 먼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여악을 폐지하면 풍습을 교화시키는 것에도 누가 될 뿐만 아니라 변방 지역에서는 방어가 소홀하게 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악과 기녀를 혁파하는 것이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166)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21일 甲辰.

오히려 피해를 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렇지만 고흥산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여악을 폐해를 줄이려고 하였다. 즉 임시적인 편의로써 임금과 왕후 등을 위한 진풍정에만 사용하고, 임금이 조회를 받고 정사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쓰지 않으며, 지방에서는 큰 고을에는 그대로 두고 잔읍(殘邑)에서는 혁파하고 금령을 세워 옥정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

결국 고흥산의 의견은 여악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었고, 당시 성희안(成希顔)의 의견과 같은 것이었다. 성희안 역시 여악이 정치에 손실이 있을 뿐 이익함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임금의 조회시나 정사를 처리하는 정전(正殿)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수를 또한 참작하여 감하며, 작은 고을의 기너는 전폐하지는 것이었다. 중종은 성희안의 논의를 따랐는데, 고흥산의 의견은 성희안의 의견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4) 형조 판서(刑曹 判書) 및 특진관(特進官)

1510년(중종 5) 10월 12일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던 고흥산은 불과 보름 뒤인 10월 27일에 형조 판서(刑曹 判書)로 임명되었다.¹⁶⁷⁾ 형조는 6조의 하나로, 이제 고흥산은 형조의 장관으로서 정2품의 판서가 된 것이다.

형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가동수금(家童囚禁)의 법이 『대전(大典)』과 『속록(續錄)』에 실려 있는데, 혹은 인정(人丁)을 가둔다고 하고, 혹은 그 대가(代價)를 징수한다고 하니 어느 것을 따를지 알지 못하겠다며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하나로 귀결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⁶⁸⁾ 『대전』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속록』은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말하며, 『대전속록』은 『경국대전』 이후 만들어진 법령을 수집하여 편찬한 법령집이었다. 『경국대전』 형전(刑典)에는 ‘공사(公事)를 위피(違避)한 자의 가동을 수금하되 3일을 넘지 못하며, 3일이 지나면 석방하고, 그 후 3일을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수금하지 못한다’라고

167)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27일 庚戌.

168)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5일 丁巳.

되어 있었다. 즉 ‘가동수금’은 원래 공사를 회피한 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그의 종을 수금하는 것이었는데, 『대전속록』에는 종을 수금하거나 또는 그 대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고형산은 형조 판서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의정 김수동은 만약 사람만을 가둔다면, 사람이 없는 자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폐해가 있다면서, 그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대가를 징수하거나 가동을 수금하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고형산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형산의 이러한 의견은 법률, 사송,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형조의 책임자인 판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때 고형산은 경연(經筵)에서의 특진관(特進官)도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종이 조강에 나왔을 때 고형산은 특진관으로써 참여하고 있었다. 특진관은 문관·무관·음관(蔭官)을 막론하고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선출되어 경연에 참시(參侍)하여 왕의 고문에 응하던 관직이었다. 당시 특진관이었던 고형산은 역시 함경도에서의 경험을 살려, 온성진(穩城鎭)의 사도(沙島)라는 섬은 초목이 무성하지 않아 말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사도의 말을 옮겨 홍원관(洪原串)에 방목하고, 변방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나누어 무산·풍산·보을하보에 들여 보내고 戍卒들을 쉬게 하자는 주청을 하였다.¹⁶⁹⁾

이후 고형산은 형조 판서와 특진관을 겸임하면서, 형조에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함경도의 방비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중종과 대신들이 빠짐없이 고형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형산은 형조판서로써 의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 널리 의견을 묻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연산군 때 李長吉이 궁중의 내인(內人)에게 붙어 벼슬을 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폐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장길의 아내가 상언(上言)하여 남편의 원통함을 호소하자 중종은 의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고형산은 대신들

169)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8일 庚申.

과 이 의논에 참여하여 이장길이 연산군 때 화(禍)를 면하고자 노비와 재산을 뇌물로 준 것이지, 벼슬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장길의 서용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¹⁷⁰⁾

또한 함경도의 성저야인(城底野人)이었던 망합(莽哈)이란 자가 조선 서울에 내조하지 않으려고 하자, 의정부의 삼정승 등도 고형산과 같이 의논하여 방비와 방어의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을 종종에 아뢰자, 종종의 허락을 받고 있었다.¹⁷¹⁾ 이것을 보면, 북방의 함경도의 방비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함경도에 파견되었던 고형산의 의견을 청취하려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형산도 북방에서의 경험을 살려 직접 함경도와 관련된 일을 아뢰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형조 판서 고형산 등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軍士는 본래 적고 방어하는 일은 긴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端川 이하의 南道에 隸屬된 郡縣의 當番 각색 군사들을, 겨울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북도에 赴防하게 하여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대저 얼음이 얼면 부방하는 일이 緊하고, 얼음이 풀어지면 일이 歇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방어하는 일이 험할 때에는 마땅히 解嚴해서 남도의 군사를 풀어 농업에 就業하게 하여 그 힘을 쉬게 했다가, 가을에 방어하는 일이 긴요하게 된 때에는 봄·여름에 풀어 주었던 군사들과 아울러 방어하게 한다면 公私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옳게 여기었다.¹⁷²⁾

당시 함경도는 남북도도 나뉘어져 남도의 군사들이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북방에도 파견되어 방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진족들은 강물이 어는 겨울철에 말을 달려 침입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함경도는 강에 얼음이 얼면 방비하는 일이 긴요해지고, 강물에 얼음이 풀리면 방비하는 일이 다소 쉬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고형산은 정승들과 상의하여 강물이 녹는 봄과 여름에는 마땅히 경계를 푸는 해엄(解嚴)을 실시하여 남도의 군사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일을 보게 하면서 쉬게 했다가 가을에 방어하는 일이 긴요하게 되면 다시

170)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15일 丁卯.

171)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2월 21일 癸卯.

172)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2월 26일 戊申.

방어하게 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특진관을 겸했던 고행산은 조강(朝講)에서 중종에게 사민(徙民)의 도망이 5명 이상 되는 고을을 치죄하는 법을 엄히 밝힐 것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⁷³⁾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 역시 고행산의 의견에 동조하여 도망한 자를 찾지 않는 수령들을 처벌하는 법을 엄하게 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형조 판서와 특진관으로 활동하던 고행산은 1511년(중종 6) 2월 11일에 계모의 나이가 79세나 되어 노쇠하였기 때문에 병이 잦는 것이 점점 더하고, 본인도 병이 있으니,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계모를 봉양하면서 병을 조섭하겠다고 사직을 청하였다.¹⁷⁴⁾ 중종은 고행산의 사직 요청에 대해 ‘경의 어머니가 있는 근처의 관찰사에 결원이 있으면 차견하겠다고 사직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면서 고행산의 사직을 만류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고행산을 강원도 관찰사로 내정한 것이며, 중종의 고행산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종의 고행산 사직 만류와 강원도 관찰사 내정은 사헌부의 비판과 탄핵을 야기했다.¹⁷⁵⁾ 사헌부에서는 형조 판서 고행산이 계모가 연로하므로 귀양(歸養), 즉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청했는데, 중종이 그 도(道)의 감사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제수하라는 전교를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사헌부는 감사의 임기 교체는 1년 이후에 있는데, 어떻게 미리 전교를 받을것냐며, 이러한 전교를 거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헌부는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고행산이 함경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고행산을 탄핵하기까지 이르렀다.

고행산은 전에 함경 감사로 있었을 때 사창(社倉)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었다. 사창이 헐려진 뒤에 고행산의 사창 설치 제안은 사창제 부활 논의의 시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때 고행산은 영중기(營重記)에 속해 있는 면포(綿布)·어염(漁鹽)·지물(紙物)·계돈(鷄豚) 등 물건으로 사창을 설치하려고 호조에 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조에서는 사창을 폐지한

173)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1월 26일 丁丑.

174)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11일 乙酉.

175)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18일 己亥.

지 벌써 오래되니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영증기란 관청과 창고에 보관된 물품과 군수품에 대한 회계 장부로, 고행산은 함경도 관아의 물품, 즉 공적인 물품으로 사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형조의 반대가 있자 고행산은 사창 설치 대신에 영증기에 있는 양곡으로 무역하여 이익을 남겨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여 무려 1만 8천여 석을 회계(會計)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이 회계 기록이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지금 각 고을 수령이 그 수량을 보충하려면 백성들에게 부세를 더 거두어야 하니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함경도 한 도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까지 되었으니 고행산이 허명(虛名)을 과장하여 기망(欺罔)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라고 고행산을 탄핵하였다.

중증은 사헌부의 비판과 탄핵에 대해, 조신(朝臣)으로서 아버지가 늙어 귀양(歸養)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근처 수령의 결원 있기를 기다려 차견하는 것이 예(例)이고, 고행산 같은 사람은 귀양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그 도의 감사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서 차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즉 조정의 대신이 아버지가 봉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근처 수령이나 감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는 것이었다. 또한 고행산이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니 해당 관청에 물어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중증실록』에는 이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이 실려 있다.

史臣은 논한다. 고행산의 본심은 더 많이 거두어들여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처사를 麤率하게 하여 도리어 휘방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弘羊·孔僅과 비견되어 취렴하는 신하로 지목되는 데까지 이르니, 당시 의논이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국사에 진심하는 자 이로부터 해이해지겠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掌令 安處誠이 힘써 주장하여 攻駁했다’하고, 혹은 ‘이때 문관 徐社가 鏡城判官이 되어 고행산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엮어 만들어 중상하였다’하였다. 徐社의 사람됨이 용심이 음험하여 남의 과실 말하기는 좋아하면서 자신의 처신은 조심하지 않으니, 식견 있는 이들이 허황한 사람이라 지목하였으며, 끝내는 時論에 용납되지 못하였다.¹⁷⁶⁾

즉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신의 논평은 고흥산의 본심은 더 많이 거두어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다만 고흥산의 처사가 추솔(麤率)하여 도리어 횡방을 당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추솔이란 거칠고 차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조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고흥산이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로 보충하는 것을 힘써 추진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횡방을 당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양·공근(177)에 비견되는 취렴한 신하로 지목되었다면 당시 의논이 ‘국사에 진심하는 자 이로부터 해이해지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에는 당시 사람들이 고흥산이 국사에 진심으로 매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흥산 같은 사람이 탄핵을 받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일이 고흥산에게 원한이 있었던 문관 서지(徐祉)가 경성 판관이 되어 고흥산을 엿어서 증상모략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신(史臣)은 서지가 용심이 음험하고 남의 과실 말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식견이 있는 이들은 허황된 사람이라 지목하였으며, 끝내 시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던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렇게 사헌부에서 고흥산에 대해 탄핵을 하자, 중종은 바로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세필(金世弼)에게 ‘고형산이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한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됨은 얼마이며 민간에 폐해가 됨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전교하였다.’¹⁷⁸⁾ 김세필은 고흥산이 영중(營中)에 있는 물품으로 사창(社倉)을 만들려 하여 반드시 저축이 있었을 것이므로 국가에 도움을 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민원을 일으켰다면 매우 그르다고 하면서 호조에서는 양곡의 수량만을 알 뿐이지 현실을 어찌 알겠느냐며 회계(回啓)하였다. 이에 중종은 폐해의 유무를 함경도에 치서(馳書)하여 묻고, 우선 양곡 바치는 것은 정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종은 민간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함경도에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중종이 함경도에 민간의 폐해를 조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간들의

176)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18일 己亥.

177) 홍양(弘羊)·공근(孔僅)은 모두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사람으로, 경제 관계 관직에 있으면서 이익에 대한 추구로 유명하여 취렴, 즉 거두어 모으는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178)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19일 庚子.

고형산 탄핵은 연이어서 계속되었는데, 대간들은 고형산의 강원도 관찰사 내정 뿐만 아니라 그를 형조 관서에서 교체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¹⁷⁹⁾ 고형산에 대한 대간들의 탄핵이 계속되자, 중종은 고형산이 허무(虛無)한 물건으로 백성들에게 양곡을 무역하였다면 매우 그릇된 일이겠지만, 한 방면의 소임을 맡아 나가서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였겠느냐며, 지금 우선 양곡 무역을 정지하였고, 함경도에 그 폐해 유무를 물어본 후에야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철저한 조사 후에 이 일을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¹⁸⁰⁾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은 영중기(營重記)에 붙인 물건을 각 고을 수령이 모두 스스로 쓰고 미처 충당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감사·병사가 교체되어 올 때에 그 유무를 물으면 수령들이 ‘있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수량으로 시행, 즉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⁸¹⁾ 유순정의 말에 따르면 고형산이 수령들에게 파악한 양곡의 양을 기록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뒤이어 유순정은 고형산의 일은 함경도에 공문을 보내어 그 허실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함경도는 군량이 크게 모자라 군용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함경도의 군관들이 적당히 양을 감하거나 혹은 스스로 양료(糧料)를 준비해왔다고 하였다. 유순정은 고형산은 본래 국사에 진력하는 사람이지만 양곡 무역의 결과 실제 차이가 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고형산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고형산은 백성을 무휼하는데 반드시 마음을 다했고, 국사에 반드시 힘을 다했다면서, 지금 함경도에 유시를 내려 그 허실을 물으셨으니, 과연 실제 수량과 같으면 전대로 기록하고, 만일 실제 수량이 아니라면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본심을 캐어본다면 끝내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이것으로 고형산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대간들의 고형산 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신들 중에서는 고형산의 성품과 그의 일화를 들며 그를 힘써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사

179)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0일 辛丑; 21일 壬寅; 25일 丙午; 27일 戊申; 29일 庚戌.

180)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6일 丁未.

181)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6일 丁未.

(領事) 성희안(成希顔)이었다. 인용된 『중종실록』의 내용이 다소 길지만 고흥산과 관련된 일화와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다

領事 成希顔이 아뢰기를, “... 고흥산의 한 일이 細碎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이 본래 근검한 데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일 李克均·成俊·李季全 등이 함경도에 가서 城堡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신이 종사관으로 掌務의 소임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 종사관을 보내어 그 형편을 보려하였는데,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尹璋이 가합하다 대답하였더니, 극균·성준 등이 본래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므로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천거하라’하기에 또 고흥산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때 두 정승이 ‘무엇으로 그가 합당함을 아는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의 천성이 근검 절실하니 이것이 취할 만하다’하니 ‘근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고형산이 전에 內瞻僉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먹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때가 한창 盛暑였습니니다. 고흥산이 전일 謹責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서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습니다. 이 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하였으며, 술 맛이 향그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하니, 성준 등이 말하기를 ‘능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다’하고, 드디어 加資하여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북도에 가서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혹 한식 경의 거리를 걷기도 하니,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이극균 등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걸치레만 하여 남의 毀譽를 두려워하는 자의 소위가 아니며, 지금 양곡을 무역할 일 또한 무리하게 만들어서 爵位를 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고흥산이 후에 司僕正이 되었을 적에寺 중에 말을 기르는 룡이 매우 많았지만 거의가 도둑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습니다. 고흥산이 그 폐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는데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의 크고 작음을 재어 노끈 두 끝에 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뽑아 비교해 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되었으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습니다. 이따므로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장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본성이 근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함경도 병사에 제수되었

다가, 갈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내어보냄을 가지고 어렵게 여겼 습니다. 신이 그 때 이조 관서로 있으면서 북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 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계청하여 차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는 일에 공이 많았습니다. 또 양곡을 무역한 일은 六籤의 군마가 다 지치고 양곡의 수량 이 매우 적어서, 군관·從事의 무리도 饋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신이 辛允武에게 물어보니 신윤무의 말이 ‘營重記에 붙인 물 건 중, 한 고을에 大口魚 1백 마리가 있으면 형산이 절반을 감하여 50마리 만을 취하였으며, 한 개의 값이 五斗(升)하는 것이면 형산이 감하여 3 ~4되를 받았으니, 반드시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聚斂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軍資를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한다면 가하겠지만, 終身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에 는 사람을 권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 성희안이 아뢰기를, “고형 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入居人에게 준 사실은 신도 들었습니다. 고형산 이, 營中에서 모든 公事의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分定하고서 收 束하여 櫃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말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 금 반 장의 종이도 흠치지 못하게 하니, 남은 종이가 많았습니다. 종이 한 卷의 값이 쌀 두 말이면 감액하여 한 말로 바꾸어 이것을 衙前 및 營人들 에게 주어서 소 90여 마리를 사고, 또 釜鼎을 사서 입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咸興府 앞길을 경유하는데, 형산이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거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 를 대접하고, 또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기를 ‘어느 곳인들 우리 임 금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물건은 공공하게 마련한 것이요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사 람이 한 돌이 아닌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면서 반드시 친 히 만나 보고 위로하니,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할 만한 일입니다.’하니, 안처성이 아뢰기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 것은, 모두가 헛된 과장으로 속여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입 니다.”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사람 대우하기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 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명예를 얻으려는 일이라 한다면 후에 국사를 하는 자 또한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182)

성희안은 우선 고형산과 관련된 일이 자질구레하게 논의되는 것은 결국 고형 산의 성품이 근검한데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고형산과 관련 된 일화를 소개하였다.

182)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9일 庚戌.

첫 번째 일화는 함경도에 성보(城堡)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고흥산을 천거하여 보낸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내섬첨정(內贍僉正)¹⁸³으로 근무할 때의 일화와 관련이 있었다. 당초 성희안은 종사관으로 윤장(尹璋)을 보낼려고 하였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극균과 성준이 윤장이 술을 좋아하여 큰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하므로 다시 고흥산을 천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극균과 성준 두 정신이 무엇으로 고흥산이 합당한가 물으니, 성희안은 고흥산의 천성이 근검 절실하니 이것으로 취할 만하다고 하였고, 다시 두 재상이 근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라고 묻자, 성희안이 고흥산이 내섬첨정으로 근무할 때의 일화를 들려준 것이었다.

고형산은 내섬첨정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술을 만드는 자가 훔쳐 먹고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죄 주기를 청하여 고흥산이 견책 당한바가 있었다. 이에 고흥산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에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다는 것이다. 고흥산의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였고, 술 맛이 향기로워졌다는 것이다. 성희안은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고흥산의 근검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일화를 들려주자 성준 등은 능히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는 드디어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사관으로 함경북도에 가서는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한 식 경의 거리를 걸기도 하니,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과 이극균 등도 고흥산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흥산이 사복시정(司僕寺正)¹⁸⁴이 되었을 때의 일화였다. 사복시에는 말을 기르는 룡이 매우 많았지만 거의가 도둑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

183) 내섬시(內贍寺)는 조선시대 여러 궁전에 대한 공상,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과 안주, 일 본인·여진인에게 주는 음식물과 직포 등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내섬첨정(內贍僉正)은 내섬시의 실무 책임자이며 종4품이었다.

184) 사복시(司僕寺)는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 수레 및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으로 실무의 책임자는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정3품 당하관이었다.

는데, 고흥산이 그 폐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다는 것이다. 고흥산은 말을 기르면서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의 크고 작음을 재어서 노끈 두 끝에 표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비교해 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하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강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고흥산의 본성이 근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고흥산이 함경도 병사에 제수되었다가 교체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또 내보냄을 어렵게 여겼을 때도 성희안이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특별히 계청하여 고흥산을 파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도 일에 있어 공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에 성희안은 고흥산은 걸치레만 하면서 남의 비방과 칭찬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소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양곡을 무역한 일도 무리하게 만들어서 작위를 노리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함경도의 육진은 군마가 다 지치고 양곡의 수량이 매우 적어서, 군관(軍官)·종사(從事)의 무리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책을 낸 것이라는 것이다. 성희안이 절도사를 지냈던 신윤무(辛允武)에게 물어보니, 신윤무는 고흥산이 영중기(營重記)에 있는 물건 중 한 고을에 대구어 1백 마리가 있으면 절반 만을 감하여 50여 마리만 취하였고, 한 개의 값이 조 5되하는 것이 있으면 감하여 3~4되를 받았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감히 취렴, 즉 백성들에게 거두어 모으는데 급급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군자를 보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성희안은 고흥산의 일을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하다면 가하겠지만 이것을 평생 동안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 사람을 권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성희안이 고흥산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그의 근면 검소함과 성품에 대해 말하고, 고흥산을 변명하였지만, 지평(持平) 안처성(安處誠)이 계속해서 고흥산을 비판하였다. 안처성은 고흥산이 취렴의 일을 열어 놓았다고 하고, 고흥산이 군사들에게 상을 주고 여진인들을 접대할 때 필요한 췌의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였다며 이것은 고흥산이 이름을 얻으려고 한 것이 분명한 것이며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함은 모리배와 같은 것이라 비판하였다.¹⁸⁵⁾

그러자 성희안은 고흥산과 관련된 세 번째 일화를 소개하였다. 고흥산과 관

런된 세 번째 일화는 그가 함경도 관찰사였을 때의 일이었다. 고흥산은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영중(營中)에서 쓰는 모든 공사(公事)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해서 수합하여 궤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맡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금 반 장의 종이도 흠치지 못하게 하여 종이를 많이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종이 한 권의 값이 쌀 두 말이면 감액하여 한 말로 바꾸고, 이렇게 바꾼 쌀을 아전(衙前) 및 영인(營人)들에게 주어서 다시 소 90여 마리를 샀으며, 또 가마솔 등을 사서 새로 입거(入居)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함흥부(咸興府) 앞길을 경유하는데 고흥산의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어느 곳인들 우리 임금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며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였다. 결국 고흥산이 준 물건은 나라의 재산을 아껴 마련한 공공의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들면서 반드시 친히 만나보고 위로하였다는 것이다. 성희안은 고흥산은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로, 이러한 성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성이 계속해서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 것은 모두 헛된 과장으로 속여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성희안은 마침내 사람을 대우하기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이것이 명예를 얻으려고 한 일이라면 후에 국사를 하는 자 또한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듯 유순정, 성희안 등이 고흥산에 대해 힘써 그 억울함을 역설하였지만, 대간들의 고흥산 논박은 계속되었다.¹⁸⁶⁾ 대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대간

185) 『중종실록』에는 안처성(安處誠)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이 실려 있는데, 안처성은 품성이 본래 정직하지 못하여 남이 옳다는 것을 그르다 하고 남이 나쁘다는 것을 좋다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특히 소박하고 우직하며 꾸밈이 없이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고흥산 같은 사람을 안처성은 ‘명예를 바라는 것’이라고 배격하였다 기록하였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7일 己巳). 이것을 보면 당시 고흥산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고흥산에 대한 탄핵과 비판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6)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3월 1일 辛亥; 3일 癸丑; 4일 甲寅; 5일 乙卯; 7일 丁巳; 8일 戊午; 12일 壬戌; 15일 乙丑; 17일 丁卯; 18일 戊辰

들의 역할이었으므로, 어쩌면 대간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중종 역시 대간들의 고행산 비판과 탄핵에 대해 윤택하지 않았는데, 결국 대간들은 곡식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한 일은 함경도에 물어서 알아본 뒤로 미루어두겠다며 고행산에 대한 비판과 탄핵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⁸⁷⁾

이렇게 형조 판서 고행산이 대간의 논박을 받는 동안 출사하지 않아 일의 적체가 많아지고 있었다.¹⁸⁸⁾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대신이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받으며, 그 결백이 밝혀지고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출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결국 중종은 형조 판서 고행산을 교체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⁸⁹⁾

마침내 당시 함경 감사 윤순(尹珣)은 서장을 보내 고행산이 양곡을 무역한 일은 수령이 보고한 것만 믿고 중기(重記)를 상고하지 않아 앞뒤가 서로 어긋난 것임을 밝혔다.¹⁹⁰⁾ 결국 고행산은 수령들의 보고를 믿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회계 기록이 맞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들은 고행산이 자세히 살피지 않음이 심하였다며 추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종은 대간들의 말을 윤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일단락된 후 고행산이 다시 국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종이 경외(京外)에 머물러 두게 한 왜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을 때 고행산 역시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있던 왜인들을 구류하여 두고 있었는데, 고행산은 삼포왜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왔던 왜인들을 오랫동안 구류하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또한 가볍게 구류한 왜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¹⁹¹⁾ 이에 화친을 청하러 오는 왜인 봉중(弼

187)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3월 20일 庚午.

188)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21일 庚子.

189)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21일 庚子.

190)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1일 庚戌. 즉 수령들이 쓸데없이 문서와 장부만 가지고 숫자를 과장해 놓았던 것이다(『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3월 12일 己未).

191)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5일 甲寅.

中)이 올라온 뒤에 그의 말을 들어보고 해당 관청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중종이 재량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하간 고흥산이 다시 이러한 국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함경도에서 무역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논박이 일단락되었음이 확인되어진다.

5)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

이후 『중종실록』에 고흥산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1511년(중종 6) 11월 19일로, 고흥산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한 것이다.¹⁹²⁾ 중종이 고흥산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한 것을 보면 고흥산에 대한 논박이 일단락된 것뿐만 아니라 고흥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이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형산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후 3개월 후인, 다음해 1512년(중종 7) 2월 19일에 강원도 내의 성을 쌓는 문제에 대해 치계(馳啟)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⁹³⁾ 고흥산은 이 치계에서, 강릉진(江陵鎭)·삼척진(三陟鎭)·동포(同浦, 삼척포(三陟浦))·울진포(蔚珍浦)·대포(大浦) 등 다섯 진포(鎭浦)의 성 쌓는 일은 이미 지난번의 수교(受敎)에 의해 유방정군(留防正兵) 및 당령선군(當領水軍)으로 하여금 돌을 주워 모으게 하였는데, 삼척진은 지난 경오년에 민호(民戶)에서 역군을 내어 쌓았고, 그 나머지 네 진포의 돌은 모은 상황을 직접 살펴보니 군인들이 쓰지 못하는 돌을 수만 채워 모아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보면 고흥산은 강원도 관찰사가 된 지 3개월 만에 강릉·삼척·울진·대포 등을 직접 돌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흥산은 이들 네 진포의 쓰지 못하는 돌에 대해 수령·첨사·만호들이 자기가 쌓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연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 수효만 떠벌려 놓았다고 하면서 이러다가는 백년이 되더라도 필연코 일이 이루어질 기한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중에서 모은 돌이 조금 많은 강릉성(江陵城)을 올 봄부터 시작하고 본 고을의 부사(府使)나 판관(判官)으로 체차사원(體差使員)을 정

192) 『중종실록』 권14, 중종 6년 11월 19일 乙丑.

193)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2월 19일 甲午.

하고 본진(本鎭)의 당번한 유방군사 및 삼척진의 유방군사로 쌓게 한 뒤 풍년을 기다렸다가 공역(功役)의 경중을 분간하여 적당하게 군사를 내어 쌓기를 끝내 자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각 포의 것도 이러한 예에 의해 각 첨사·만호가 들을 주워 모아 쌓도록 하고, 그 근간함과 태만함을 고찰해서 축성사목(築城事目)에 의해 권면 징계하도록 병조에서 명을 내려 처치하자고 하였다.

그 후 강원도의 축성과 관련된 문제는 고흥산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결실을 보았던 것 같다. 이후 병조에서 강원도는 함경도의 사정이 급박한 것 때문에 육지로 군량을 수송하고, 바야흐로 배를 만들고 있고, 고흥산이 감사가 되었을 때 강릉성의 기초를 이미 닦았으며, 장대석(牆臺石)과 돌 모으는 등의 일도 이미 거의 다 끝냈으므로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지 말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¹⁹⁴⁾

그리고 고흥산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지 6개월 후에는 강원도 내의 여러 폐단과 개선책에 대해 상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⁹⁵⁾ 고흥산의 상소를 보면, 그가 6개월 동안 강원도의 모든 군현을 돌아본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강원도 전체의 폐단을 비롯하여 각 군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고형산은 먼저 상소에서 전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글을 내려 군수(軍需)와 병기(兵器)의 중함을 효유하였다고 밝히고, 우선 강원도의 병기가 수선되지 못하고 군자(軍資)가 충실하지 못한 이유를 진달한 뒤에 각 고을의 폐단을 말씀드리겠으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시라고 하였다. 고흥산이 지적한 폐단과 개선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상도의 곡식을 특명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 옮겨 분치해달라는 것이었다. 강원도는 근년에 흉년이 들어 공사 간에 모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고을의 병적에 실려 있는 각 방면의 군사들이 겨우 2천 7백 18명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활을 당길 수 있는 군사는 별시위(別侍衛)뿐이며 정군(正軍)은 모두 몸이 나약하고 기세 역시 빈궁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군을 지원하는 보인

194)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13일 甲申.

195) 『중종실록』 권15, 중종 7년 5월 14일 丁巳.

(保人)은 더욱 가난하여 병졸이 정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관고(官庫)에 간직된 군기까지 태평으로 인해 녹슬어 버려, 자신이 주야로 걱정하여 보수하기를 재촉하지만 어교(魚膠)가 강원도의 소산이 아니라 공사 간에 장만하기 어려워 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영동 지방은 남쪽의 평해군(平海郡)부터 북쪽의 흡곡현(歙谷縣)까지 8백 53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9고을에 사는 백성이 4천 8백 8호, 전답은 5천 5백 52결, 금년 봄 등의 회계에 기록되어 군자별창(軍資別倉)에 있는 쌀은 1만 7천 3백 55석, 민간에 빌려 준 것이 1만 3천 2백 85석 10두,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은 2만 3천 3백 82석, 민간에 빌려준 것은 4만 6천 9백 11석 5두라고 하였다.

영서 지방은 남쪽의 정선군(旌善郡)에서부터 북쪽의 이천현(伊川縣)까지 8백 26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17고을에 사는 백성이 9천 4백 12호, 전답은 1만 6천 3백 32결, 양창(兩倉)에 현재 있는 쌀이 1만 5천 58석, 빌려 준 것이 6천 7백 89석 8두,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은 6만 4천 56석, 흩어져 있는 것이 5만 3천 3백 14석 6두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는 토지가 넓지 않은 것은 아닌데 민호와 전결(田結)이 이와 같이 적다고 하면서 창고에 남은 곡식 숫자가 날로 감축되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은 더욱 불어나니, 백성을 구제하고 군사 먹일 양식을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영동 지방은 한재·수재·풍재가 때 없이 발작하여 이묘(移苗)의 시기를 잃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풍년이 한 번이면 흉년은 열 번이나 되어 국가의 창고에는 쌓인 것이 적고 백성에게 빌려준 것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수(軍需)의 비축은 영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에 조치의 편부를 고로(古老)와 수군(水軍)에게 물으니, 40년 전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와 고성(高城)의 유점사(楡岾寺)를 중창할 때 중소맹선(中小孟船)으로 경상도의 미면(米麵)과 철물(鐵物)을 운반하여 쓰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므로, 옛날 수로가 지금의 수로인데, 지금도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고흥산은 경상도 미곡 2만여 석을 특명으로 조운(漕運)하여 강원도 연해, 즉 영동 9고을에 분치하기를 황해도의 미곡을 평안도의 각 고을에 운반하던

예와 같이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케 해달라고 청하였다.

둘째, 강원도 각 읍 정해진 공물과 관련된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고흥산은 물산(物産)은 성쇠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많이 나오는 토산물과 적게 나오는 토산물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읍의 소산이 아닌 것이 공물 대장인 공안(貢案)에 실려 있으니, 이는 상정(詳定)할 때 소산 여부를 상고하지 않고 분정한 것이 아니라 물산의 성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비록 흥왕하였으나 지금은 흥왕하지 못한데도 그대로 정하므로 백성들이 사서라도 바치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강원도의 각 읍에서 지금 나는 토산물을 다시 조사해 고쳐 정하여 바치기 편리하게 하여 그 폐단을 덜도록 청하였다.¹⁹⁶⁾

셋째, 재목과 판자를 바치는 폐단에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고흥산은 연산군 때에 수변(水邊) 근처에 있는 쓸 만한 재목은 다 작벌하여 하나도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공안에 실린 재목과 판자를 구해낼 만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궁벽한 골짜기에서 얻는다 해도 인력이 모자라 쉽게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강(京江)에서 사서 바치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혹 경강에서 무역해 바치는데도 그 가력이 관가(官價)에 비해 10배가 넘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귀후서(歸厚署)¹⁹⁷⁾가 가포(價布)를 백성에게 나눠 주고 판자 바치기를 독촉하고 있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다가 산 자가 먼저 병드는 현실이라며 판자를 무역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고흥산은 귀후서에 속한 노비에게 값을 주어 재목이 있는 곳에 보내어 백성들의 뜻에 따라 구매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둘 다 온전하게 하여 그 폐단을 덜도록 청하였다.

넷째, 기인(其人)¹⁹⁸⁾의 분정(分定)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고흥

196) 후에 영천군수(榮川郡守) 이면공(李勉兢)은 “고형산이 영동(嶺東) 감사로 나가서 토지가 척박하고 전답이 황폐되었다고 실상을 갖추어 아뢰어 기경(起耕·논밭을 감)에 따라 세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4월 14일 壬子; 『일성록(日省錄)』 정조 16년 4월 14일 壬子).

197) 귀후서(歸厚署)는 조선시대에 나라의 관곽(棺槨)을 만들고 장례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관청이었다.

198)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토호세력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

산은 각 읍에서 기인을 나누어 정할 때 읍의 향리(鄕吏)가 전성할 때였으면 많이 정하고, 읍이 쇠잔할 때였으면 적게 정하였는데,¹⁹⁹⁾ 그 뒤에 전성과 쇠잔이 바뀌어도 기인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해서 매년 다달이 정하여 보내면서 남아 있는 사람이 부족하도 지적하였다. 결국에는 도망친 서리를 찾아내어 채우거나, 도망간 자의 역가(役價)를 일가에 거두고 일가가 없으면 가까운 이웃에게서 거두므로, 일가와 이웃도 지탱하기 어려운 도망친다는 것이다. 이에 고흥산은 노비를 추쇄하는 예와 같이 식년(式年)을 정하고 각 도 각 읍의 현재 신역(身役)하는 향리의 다소를 점고한 다음 골고루 배정하여 그 폐단을 덜도록 청하였다.

다섯째, 대립과 그에 대한 값의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고흥산은 선상노비(選上奴婢)²⁰⁰⁾와 각 관청의 조예(皂隸)·나장(羅將), 사복시(司僕寺)의 여러 인원들은 스스로 번(番)을 서지 않고 서울 사람들이 대립(代立)하고 있으면서 그 값을 모두 거둔다고 지적하였다. 즉 각 관청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노비, 하인, 나졸 등이 서울 사람을 사서 대신 번을 세우며, 그 번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립의 값이 월리(月利)로 하면 번가(番價)가 무려 1필에 1필을 더 거두므로, 스스로 장만해 내지 못하면 그 일가와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거두기 때문에 일가와 이웃이 모두 도망쳐 열 집에 아홉 집이 비어 마을이 쓸쓸할 정도라고 하였다. 이렇게 함부로 거두는 법을 거둬 고치도록 통절히 징계하여 왔으나, 오히려 기탄없이 하다가 그 폐해가 극단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고흥산은 다시 별도의 법 조항을 만든 다음에 법으로 엄히 다스려 함부로 거두는 폐단을 없애도록 청하였다.

에 머물러 있게 한 제도이다. 조선 초기 기인(其人)의 역종(役種)은 고려 말과 같이 공사의 잡역 등이 있었는데, 그 뒤 기인역(其人役)도 변질되어 기인을 각 도에 나누어 정해 소목(燒木, 탄목(炭木))을 상공(上供)하게 하였다. 이것이 기인의 전업(專業)이 되어, 기인역이라 하면 으레 소목의 상공을 일컫게 되었다.

199) 1416년(태종 16) 기인의 수를 490인으로 책정하고, 매년 정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사역하되 네 번으로 나누어 번상(番上)시켰다. 1422년(세종 4)에는 기인수 490인 중 100인을 노자(奴子)로 대역(代役)하게 함으로써 그 수를 390인으로 줄였다. 1429년 향읍의 쇠잔과 성함에 따라 기인의 수를 다시 정하였는데, 경기는 향리 50인 중에서 2인, 경상·전라·충청·황해·강원 등에서는 30인에서 1인을 뽑도록 하였다.

200) 지방의 노비를 뽑아 서울의 관아에 보낸 것으로, 이러한 노비를 선상노비(選上奴婢)라고 하였다.

여섯째, 강원도 속현 아전의 설날 숙배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고흥산은 설날에 여러 읍의 우두머리 향리가 궐문 밖에 나가 숙배(肅拜)한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절이지만, 본현(本縣)에 부속된 고을인 속현(屬縣)도 모두 본읍(本邑)의 예에 올려 보낸다고 하면서 그 폐단을 지적하였다. 본현에 붙어있는 작은 속현의 경우 주민이 많아도 10여 호에 지나지 않고 향리 역시 3~4인에 지나지 않으며, 잔폐한 고을은 1호의 백성도 없고 1인의 아전도 없는 곳어 고을이라는 명목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읍의 아전으로 숫자를 채워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 예부(禮部)에 들이는 종이와 곡식 등의 물건을 모두 백성에게 받아 내어 마련하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고흥산은 강원도 여러 읍의 속현은 설날 숙배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여 그 폐단을 덜도록 청하였다.

일곱째, 강원도의 군현을 연혁과 건치를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고흥산은 흙곡(歙谷)은 너무 잔폐하여 모든 공물 및 진상 물품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 마치므로 그 형세를 보건대 40년이 못가서 반드시 폐기될 지경이라며, 백성이 다 흩어지기 전에 옛날 그대로 다시 통천에 붙여서 양 읍을 다 충실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또한 인제(麟蹄)와 낭천(狼川) 양읍이 피폐하기 때문에 양구현(楊口縣)을 혁파하고 둘로 나눠 서남쪽은 인제에 붙이고 동북쪽은 낭천에 붙이면 두 읍이 폐지되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고흥산은 군현의 연혁과 건치의 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하께서 널의 중의를 모아 임금께서 재결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고형산은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신이 열거한 폐단을 조정에서 널리 의견을 모아 없애지 않는 폐단이 없고, 고치지 않는 병통이 없게 하시면, 참으로 역역(力役)이 줄어 민력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민력이 넉넉하면 농사에 힘써 양식이 풍족할 것이요, 양식이 풍족하면 병기를 수선하여 사졸이 강할 것이요, 사졸이 강하면 백성이 신임하고 적에게 달려갈 것이니, 어찌 군수(軍需)의 부족과 병기가 수선되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결국 백성들에 대한 폐단을 줄여 민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군수와 병기를 잘 갖추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고형산이 상소한 백성들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자고 했던 사항이 모두 다 논

의가 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몇 가지는 폐단이 바로 잡아지기도 하였다. 『중종실록』에는 중종이 내년 설날부터는 각 도의 모든 고을에 소속된 옛 현리(縣吏)들은 진봉(進奉)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는데, 이것은 고흥산이 전에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그 폐단을 아뢰었으므로, 이런 분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¹⁾

이를 보면 고흥산이 지적한 폐단은 비단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지방에서의 만연한 폐단을 강원도의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흥산의 상소로 이러한 폐단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흥산이 지적한 것 중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조운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다. 특히 우의정 성희안은 경상도 관찰사 안당(安瑯)과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은 왕사(王事)에 힘을 다하고 사체를 갖추어 아는 사람들이니, 두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 하여 조운의 편부 여부를 친히 살펴보고, 같이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할 것과 경주(慶州) 이상의 여섯 고을의 군량이 3~4만 석은 될 수 있으니, 우선 이것을 조운하여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들여보내도록 청하여 중종의 윤허를 받기까지 하였다.²⁰²⁾

그런데 경상도에서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조운하여 곡식을 수송하는 고흥산의 제안은 더 나아가서 북도, 즉 함경도까지로 확대되어 논의되었다. 즉 우의정 성희안은 북도(北道)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사졸은 모두 부황이 났다고 하면서 사세가 위급하게 되면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식량 수송의 방책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지게 하면 줄지에 해내기 어렵다고 하였다.²⁰³⁾

그러면서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은 검소하고 착실한 사람이니 큰일이나 큰 논의도 족히 담당하여 결단할 수 있고, 전에도 전운사(轉運使)²⁰⁴⁾의 직에 있었으

201)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8일 己卯.

202)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23일 丙申.

203)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9일 辛亥.

204) 조선시대 세곡의 운반을 주관한 전운서(轉運署)의 관원이다.

니, 고행산의 본직(本職)을 같고 이와 관련된 직을 제수하여 식량을 수송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자고 주청한 것이다. 이에 중종은 성희안이 아뢰는 말이 매우 마땅하다면서 해당 관서로 하여금 다시 시행할 만한 계획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를 보면 고행산이 전에도 전운사로, 세곡의 운반을 주관하는 전운서(轉運署)의 책임자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조운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다. 1512년(중종 7) 6월 27일에 강원도 관찰사 고행산과 경상도 관찰사 안당은 함께 공동의 서장을 올려는데, 그 대략에 ‘전일 내린 분부에 따라 항해의 편부를 시험하려고 흥해(興海)에서부터 영해(寧海)까지 여러 날 배를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풍파를 만나게 되면 의지하여 정박할 섬이 없고, 또 선체가 작고 든든하지 못하여 조운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²⁰⁵⁾ 이 때 고행산은 안당과 같이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험한 때와 운순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4월에서 6월까지의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가 고요하여 조운할 수 있으나, 입추(立秋) 뒤에는 바람이 세어 조운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⁰⁶⁾

이 문제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자, 대신들은 지금 고행산 등이 아뢰는 것을 보면 조운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함경도 백성들은 조운이 아니고서는 살릴 도리라 없으니, 풍파가 험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였다. 마땅히 온갖 계획으로 조치하여 기어코 조운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있는 배들이 모두 조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 고행산을 시급히 올라오게 하여 해당 관서와 같이 의논하도록 주청하였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6월 26일 고행산은 서울로 들어왔으며, 27일에는 좌의정 유순정과 우의정 성희안이 고행산을 즉시 불러서 조운에 대한 일을 같이 의논하도록 중종에게 청하였고, 이에 대한 윤허를 받았다.²⁰⁷⁾

205)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7일 己巳.

206) 즉 조운할 수 있는 시기는 1년 중에 겨우 석 달에 불과했던 것이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8월 4일 乙巳).

207)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9일 辛未.

6) 전운사(轉運使)

서울로 들어온 고흥산은 전에 우의정 성희안의 주청에 따라 강원도 관찰사로 서 다시 전운사(轉運使)로 제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중종실록』에는 고흥산이 전운사로 임명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고흥산의 관직이 전운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운사는 조운사(漕運使)·전운어사(轉運御史)라고도 불렀는데, 세곡의 운반을 주관하는 전운서(轉運署)의 책임자였다.

전운사였던 고흥산은 바로 해운과 관련된 일을 살펴보고, 함경도로 전운하는 일은 단지 해운뿐인데, 해운으로 말하면 올해 안에 적당한 배를 만들 수 없고, 또 바다가 험악하므로 육지로 수송하여 점차 곡식을 들여보내는 안을 제시하였다.²⁰⁸⁾

즉 고흥산은 먼저 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함경도 창고에 있는 곡물을 계산하여 보았더니 58만 석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58만 석 곡식을 해마다 민간에 분산하여 주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여러 해 들었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하여 함경도의 창고가 거의 비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는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으나, 자신은 강원도 창고에 있는 곡식에 대해 단시 문서만 보았을 뿐 실지 수효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회양(淮陽)의 쌀 1천 9백 석을 안변(安邊)으로 옮기고, 금성(金城)의 쌀 1천 3백 석을 안변의 고산역(高山驛) 창고²⁰⁹⁾로 옮기며, 고성(高城)의 쌀 6백 석과 통천(通川)의 쌀 2백 석 및 흡곡(歙谷)의 쌀 50석을 안변의 학포현(鶴浦縣)으로 옮긴다면 점차 함경도 경계에 수송할 수 있다고 육지 수송으로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거리의 원근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회양의 곡식은 고산역을 지나 하룻밤 지나면 안변에 도달할 수 있고, 금성의 곡식은 은계역(銀溪驛)을 지나 하룻밤 지나면 고산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고성·통천·흡곡의 곡식도 하루나 이틀 밤이 지나면 학포에 도달하니, 두 차례로 나누어 수송하면 편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208)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2일 췌酉.

209) 고산역(高山驛) 창고는 고흥산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계문(啓聞)하여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2일 췌酉).

한편 고흥산은 함경도로의 곡식 수송을 반복하여 헤아려 생각해 보아도 부득이 육로로 운반해야겠다며 재차 증중에게 아뢴 모습이 확인된다.²¹⁰⁾ 고흥산은 함경도 백성이 근래 보리와 밀을 먹으며 겨우 연명하는데, 밀과 보리가 다하게 되면 굶어 죽을 것이 틀림없다면서 수로(水路)로 곡식을 운반하려면 내년 4~5월 무렵에야 수송하게 될 것 같아 곤란하다고 하였다. 경상좌도의 축성의 역사를 면제하고 수량을 계산하여 민정(民丁)을 징발하되 한 사람에게 쌀 한 섬 씩을 맡기면 큰 역사를 면하고 곡식을 운반하므로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육로로 운송하면 올 9월 무렵에는 곡식을 북쪽에 들여올 수 있어 죽게 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증중은 고흥산의 말이 매우 옳으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전교하게 되었다.

고형산이 함경도로의 곡식 수송을 육로로 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지만,²¹¹⁾ 전운사는 이자건(李自健)으로 교체되었다. 『중종실록』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고흥산이 계모의 상을 당해서였다고 되어 있다.²¹²⁾ 계모의 상을 당해 고향인 횡성(橫城)으로 돌아온 고흥산은 횡성에서 병을 얻었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는 증중에게 고흥산에게 약물(藥物)을 내리고 또 개소(開素)하도록 함이 어떻겠느냐며 아뢰었고, 증중에게서 가하다는 전교를 받았다. 개소는 소식(素食)하다가 육식(肉食)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육식을 금하고 소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정의 대신들이 상중(喪中)에 병을 얻으며 임금의 특명으로 개식을 하였다. 이것은 당시 대신들을 비롯한 조정의 신료들, 증중이 고흥산을 위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하다.

후에 『중종실록』에는 강원도 관찰사였던 고흥산을 전운사로 임명하여 경상

21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16일 丁亥.

211) 후에 고흥산은 ‘남방의 곡식을 옮겨 들어가고자 하였더니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에 신이 수로를 거치고자 시험하니, 과연 2만 5천여 석을 옮겨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16일 丙申). 이것을 보면 함경도로의 곡식 수송은 육로와 수로의 방법이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흥산은 함경도로 옮긴 2만 5천 석은 경상도에 비추한 곡식이었으며, 이것으로 함경도의 흉년을 구제하였음을 밝힌 바가 있었다(『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 庚戌).

212)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26일 丁酉.

도의 곡식을 함경도로 조운하게 하였는데, 그 방책에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로(一路)에 소요된 폐가 없었고, 군량도 넉넉하게 되고 결핍되는 걱정이 없어졌다는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다.²¹³⁾

7)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과 호조 판서(戶曹 判書)

3년 상을 마친 뒤, 1514년(중종 9) 9월 14일 고흥산은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으로 제수되었다.²¹⁴⁾ 한성부는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성을 관할하였으며, 담당 임무는 서울의 인구·시전·가옥·토지·사산·도로·교량·구거·포결·부채·투구·주순·검시 등의 관장이었다. 한성부는 형조·의금부와 함께 사법 기능을 행사하여 3법사의 하나로도 불렸으며, 한성부 판윤은 한성부를 책임지는 정2품의 최고 수장이었다.

그렇지만 고흥산의 한성부 판윤으로의 활동은 『중종실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성부 판윤에 임명받았던 고흥산은 불과 20여 일도 안 되어서 호조 판서(戶曹 判書)를 제수 받았던 것이다.²¹⁵⁾ 호조는 조선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고흥산은 장관격인 판서(정2품)로 호조의 최고 수장이 된 것이다. 이미 고흥산은 형조 판서를 지낸 적이 있으므로 그에게는 두 번째 장관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형산은 호조 판서로 호조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중종이 병조에 명하여 문신과 무신 중에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14명을 뽑게 했는데, 이 중에 선발되어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²¹⁶⁾ 즉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서계를 올려 북방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방 방비 계책을 올렸던 것이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첫째, 군수(軍需)를 대비하는 방편으로, 변방에서는 도사(都事)에게 명하여 관리들이 교대할 때 전후(前後)의 사람들이 창고에 저축되어

213)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7월 11일 丙子; 13일 戊寅.

214)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9월 14일 癸酉.

215)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일 庚寅.

216)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3일 壬寅.

있는 물품을 모두 내놓고 장부와 대조하여 일일이 검사하여 계문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후 해당 관청에서 모자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난 뒤 관리들이 교대하도록 하여야지만 간사한 술책이 행할 수 없게 되고 군국(軍國)의 수용이 헛되어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병기(兵器)의 단련과 관련된 것으로, 고흥산은 외방(外方) 각 고을의 군기는 그 도(道)의 감사로 하여금 친히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낱낱이 점고하게 하고, 그 수효를 자세히 알고 난 뒤에 보수할 기일을 정하여 잘 단련하게 하고, 경관(京官)을 뽑아 보내어 남김없이 검사하도록 하되, 혹 보수하는 일에 힘쓰지 않은 자에게는 군령으로 논죄하고 단련하는 일에 힘쓴 사람은 공을 헤아려 상을 주어 권장한다면, 병기가 잘 단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6진의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 고흥산은 문신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고 조행(操行)이 남보다 뛰어나고 인품(人品)과 기국(器局)이 알맞은 사람일 경우, 관직 품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말고 발탁하여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씻어버리고 역역(力役)을 관대히 하게 하면 민력이 여유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믿어서 적군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고흥산은 6진의 장수는 문신에게도 교차시켜 제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흥산은 수령을 제수할 때에는 청렴하고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진력할 사람을 정밀히 가려 뽑아서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의 징수를 절도 있게 하고 형옥(刑獄)의 송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평소부터 축적한 바탕이 있게 되면 어찌 군수의 넉넉하지 못함과 병기의 단련되지 못함을 걱정하겠느냐며 그 요령은 이른바 책임자를 얻는데 것에 있다고 하였다.

고형산의 변방 방비 계획 중 북도(北道) 6진의 장수를 문신으로 교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들이 의논한 결과 시행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해당 관사로 하여금 계획을 마련하여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²¹⁷⁾

217)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21일 庚戌. 이후에도 고흥산이 주장했던 문신 파견과 관련한 의논이 지속되었다(『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19일 辛丑).

한편 호조 판서 고흥산은 호조 참판 이유청(李惟淸)과 함께 한양에 있던 관아들이 소모한 잡물(雜物)이 미면(米麵)·잡곡(雜穀)이 모두 5만 7천 5백여 석, 사라(紗羅)·능단(綾段)이 모두 2백 50여 필, 포화(布貨)가 3만 4천 6백 40여필, 철(鐵)이 14만 1천 2백 90여근, 지지(紙地)가 5만 1백 70여 권이나 된다고 하면서, 전일 창고에 있는 물품을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했을 때 그 축낸 것을 징수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거나 꺼리지를 않아서 축낸 것이 이와 같이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임 관리들에게 모두 추징하도록 청하였다.²¹⁸⁾ 이것을 보면 고흥산은 국가의 저축을 마구 소비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종은 전임 관리들에게 추징한다면 삼공(三公)과 육경(六卿)도 모두 징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땅히 조정에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8)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과 공조 판서(工曹 判書)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1514년(중종 9) 11월 14일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임명되었다.²¹⁹⁾ 이미 고흥산은 사헌부 장령(掌令), 집의(執義)의 관직을 거쳤기 때문에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에 임명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간원은 중종에게 대사헌 고흥산은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교체하라고 아뢰어, 중종은 결국 대사헌을 교체하였다.²²⁰⁾ 『중종실록』에는 이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이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신은 논한다. 간원이 고흥산은 강직한 氣風이 없어서 사헌부의 長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文飾은 적지마는 氣局이 宏偉하고 心志가 堅直하며,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²²¹⁾

218)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25일 甲寅.

219)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14일 壬申.

220)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20일 戊寅.

221)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20일 戊寅.

즉, 간원이 대사헌의 교체를 아뢴 이유가 고흥산이 강직한 기품이 없어서 사헌부의 장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흥산은 사헌부 장령, 집의 등의 관직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다. 또한 사신의 논평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흥산은 외모는 비록 순박하지만, 진실하여 걸만 그럴듯하게 잘 꾸미는 것이 적고, 기품이 웅대하면서 심지가 굳고 바르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신의 논평을 보면 이는 당대의 평가로 사실상 대사헌의 직에 마땅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종은 고흥산을 사헌부 대사헌에서 교체하였지만, 곧이어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임명하였다.²²²⁾ 공조는 육조 중 하나로, 조선시대 산림·소택(沼澤)·공장(工匠)·건축·도요공(陶窯工)·야금(冶金) 등에 관한 일들을 관장하던 관서였다. 고흥산에게는 세 번째 장관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9) 호조 판서(戶曹判書),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특진관(特進官)

공조 판서로서 국정에 참여하던 고흥산은 공조 판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재임명되었다.²²³⁾ 고흥산은 이미 호조 판서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는 결국 중종의 재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흥산 본인으로서 네 번째 장관직이었다.

고형산은 호조 판서로서 함경도의 양곡 저장하는 계책으로 둔전(屯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건의하기도 하였으며,²²⁴⁾ 또 납속하고 은을 개게 해서 군수에 보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²⁵⁾ 또한 북계(北界)에서는 양곡을 바치고 면천·면역하는 것을 시행할 것, 회령진(會寧鎭) 등에 남방 백성 50여 호를 뽑

222)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2월 9일 丁酉.

223)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2월 27일 乙卯.

224)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4일 壬辰.

225)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14일 壬寅.

아 입거시킬 것, 관직(官職)·품질(品秩)이 높은 문신을 선택하여 보내서 변방 계획을 찬조하고 비위의 일을 검찰하게 할 것, 3백 필의 말을 주어 절도사로 하여금 무재(武才)가 있으나 말이 없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건의하였다.²²⁶⁾

이즈음 중종의 비였던 중궁(中宮) 윤씨(尹氏, 후의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가 승하하자,²²⁷⁾ 호조 판서 고흥산을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로 삼았다.²²⁸⁾ 국장도감(國葬都監)은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喪事)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이며, 제조(提調)는 그 관청을 주관하는 관직이었다. 국장도감의 소속 인원으로는 총호사(摠護使)로 지칭된 도제조 1인, 예조 판서·호조 판서·선공감 제조 등으로 임명하는 제조 4인, 3·4품의 도청(都廳) 2인, 4~6품의 낭청(郎廳) 6인, 감조관(監照官) 6인 등의 정규 관원이 소속되었다. 이에 고흥산은 호조 판서와 국장도감 제조를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서 국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중궁 윤씨의 상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여진인 망합(莽哈)이 조선에 내조하였다가, 그 아들 아질두(阿叱豆)가 당상관에 승진하지 못하였다고 공손하지 않게 말하고 광화문(光化門) 밖에 나가서는 통사(通事)를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었다.²²⁹⁾ 조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합에 대한 처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고흥산은 망합 부자를 외딴 섬에 가두도록 청하기도 하였다.²³⁰⁾

또 전라도 낙안군(樂安郡)에 사는 이막동(李莫同)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친어머니와 그 동생 및 조카딸 등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²³¹⁾ 고흥산은 이 사건을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고을을 혁파함이 가하다고 하면서 고을을 강호(降號)함이 마땅하다고 아뢰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모반이나 강상죄가 일어났던 군현의 명칭을 강등하여 악을 하는 자는 사형이 그

226)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8일 丙申.

227)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2일 己未.

228)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2일 己未.

229)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3일 辛卯.

230)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8일 乙丑. 이후에도 고흥산은 망합을 금부(禁府)에 가두고 남방의 외딴 섬에 가두어 거처하자고 하였다.(『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22일 庚戌).

231)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13일 辛丑.

자신의 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고을까지도 그 죄를 받게 하였다. 결국 중종은 교지를 내려 낙안군은 현(縣)으로 강등하였다.

그리고 고흥산은 국장도감 제조로써 장례의 길일과 대행 왕비(大行 王妃)²³²⁾의 시호(諡號)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²³³⁾ 그리고 고흥산은 백립(白笠)을 쓰는 문제 및 졸곡(卒哭)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²³⁴⁾ 이에 더해 고흥산은 산릉에 설치한 싸리 햇불과 임시로 지은 집 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고형산이 이르기를, “신이 山陵에 설치한 싸리 햇불과 假家를 보니 모두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경기 백성들이 供進한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집을 지은 나무로서 建築材가 될 만한 것은 繕工監에서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잡목은 禧陵의 땀나무로 사용하게 하고, 햇불감의 싸리묶음은 司宰監에 들여보내어 外貢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전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백성의 힘으로 만든 물건을 쓰고, 일이 끝난 뒤에는 조정의 卿大夫들이 사사로 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이 한 弊習을 이루고 있었는데, 고흥산이 홀로 그것을 크게 여겨 미리 처리하는 방법을 주청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근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리를 周密하게 하여 나라의 비용을 아끼고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미세한 일이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일이 많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牢實宰相이라 하였다.²³⁵⁾

고형산은 산릉에 설치한 싸리 햇불과 임시로 지은 집은 백성들이 바친 것으로, 건축재가 될 만한 것은 건축물의 신축, 수리 및 토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선공감에서 쓰게 하고, 나머지 잡목은 장경왕후 윤씨의 능인 희릉(禧陵)의 땀나무로, 햇불용 싸리 묶음은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塩)·소목(燒木)·거화(炬火) 등을 맡았던 사재감(司宰監)에 들여보내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을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중종의 허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32) 죽은 뒤 시호를 받기 전의 왕비를 이르던 말이다.

233)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3월 15일 壬申.

234)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윤4월 7일 甲子.

235)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윤4월 4일 辛酉.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신(史臣)의 논평이 실려 있음이 주목된다. 즉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신은 이전에 나라에서 큰 일이 있을 때 백성의 힘으로 만든 물건을 쓰고, 일이 끝난 뒤에는 조정의 경대부(卿大夫)들이 사사로이 청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조정의 대신들이 가져다 써왔다는 것이다. 결국 고형산은 백성들이 바친 물건들을 개인이 사사로이 쓰는 것을 막고 국가의 용도로 바꾼 셈이며, 이미 바친 물건을 국용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사신(史臣)은 더불어 고형산의 이러한 행동이 나라를 근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리를 주도면밀하게 하여 나라의 비용을 아끼고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미세한 일이지만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일이 많았고, 이에 세상 사람들이 뇌실재상(牢實宰相), 즉 굳고 착실한 재상이라고 평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당시 사헌부가 가옥의 제도를 어기고 참람하게 넓게 지은 집들을 지적하여 아뢰고 법에 의거하여 철거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즉시 윤택한 사실이 있었다.²³⁶⁾ 이에 대해 좌의정(左議政)이자 삼도감 총호사(三都監 總護使)였던 정광필(鄭光弼)은 제도를 어겨 철거해야 할 집의 총계가 2백 80채나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의 칸수도 40칸을 넘으니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2백 80채 모두를 헐어버린다면 인심의 소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제도를 크게 지나친 자만을 적발하여 철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중종실록』은 이때 모든 대신들의 모두 제도를 어기고 집을 넓게 지었는데, 오직 고형산과 안당(安瑯)만이 관계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형산과 안당은 함께 의논하기를 정광필은 정광필의 의논에 동의하여 지극히 심하게 제도를 어긴 자만 철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연이어서 사신(史臣)은 논평하기를, 고형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후에 안당이 집을 짓는데 돌 기둥을 사용하여 매우 굉장하였으니, 청렴하고 검소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기록하여 놓았다.

236)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윤4월 7일 甲子.

더불어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지금 나라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비용을 덜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²³⁷⁾ 이에 유순·정광필·김응기·호조 판서 고흥산·호조 참판 한형운(韓亨允)·호조 참의 이맥(李陌) 등이 국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17조를 의논하여 조목별로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³⁸⁾

또한 고흥산은 국정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흥산은 양인과 천인이 결혼하였을 때 그 자식이 모두 천인이 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동조하여 양인이 점차 줄어들고 군액(軍額)이 줄어드는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고²³⁹⁾, 연산군 때 편찬된 『후속록(後續錄)』²⁴⁰⁾을 쓰지 않는 문제 및 저화(楮貨)의 사용과 화폐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아 일어나는 폐단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²⁴¹⁾

또한 고흥산은 보병(步兵)이 돌아가면서 입번(立番)하는 문제, 도사·수령에게 사관(史官)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였다.²⁴²⁾ 그리고 악포(惡布)의 금지와 저화의 통용 문제, 직전(職田)의 전세(田稅) 폐단에 대한 문제,²⁴³⁾ 함경남북도의 인구를 쇠한하는 문제 및 하삼도(下三道)에서 회령(會寧)으로 입거시키는 문제²⁴⁴⁾ 등의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악포란 울이 가늘고 울의 수가 적은 포(布)로서 울이 2~3승밖에 되지 않았다. 악포의 문제가 불거지고, 저화의 통용 문제가 불거지자, 고흥산이 관장하던 호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화행용절목(楮貨行用節目)을 정하여, 중중으로부터 윤휴를 받기까지 하였다.²⁴⁵⁾

그리고 고흥산은 노비 소송과 관련된 문제,²⁴⁶⁾ 함경도에서의 공적(公糶) 미

237)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5월 8일 甲午.

238) 국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17조에 대해서는 『중종실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239)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6월 6일 辛酉.

240) 『대전속록(大典續錄)』 시행 후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후속록』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어 1502년(연산군 8) 『후속록』을 편찬하였다.

241)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6월 17일 壬申; 권23, 중종 10년 11월 9일 辛卯.

242)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6월 25일 庚辰.

243)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6월 25일 庚辰.

244)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21일 甲戌.

245)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9일 甲午.

246)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6월 25일 庚辰.

납 문제,²⁴⁷⁾ 여진족 망합(莽哈)의 동생 주장합(住張哈)이 보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비책,²⁴⁸⁾ 상소를 올린 담양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의 처벌 문제²⁴⁹⁾ 등에서도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박상은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가 폐출되었던 신씨(愼氏)를 세워 왕후 삼기를 청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박상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⁵⁰⁾ 고흥산은 박상의 상소는 광패하여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지만 박상에게 죄를 주면 언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제왕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로서 너그럽게 용납하여 버려두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었다.²⁵¹⁾ 『연려실기술』에도 당시 특진관(特進官)이던 고흥산이 박상 등을 죄줄 수 없다는 뜻을 힘써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²⁾

이때 고흥산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옹원 제조(司饗院 提調) 역시 겸임하고 있었다. 『중종실록』에는 고흥산이 사옹원 제조가 되어 진상(進上)과 천신(薦新)에 필요한 은구어(銀口魚)를 잡기 위해 도제조(都提調)와 상의하여 시험 삼아 어전(魚箭)을 설할 것을 건의하여 어전이 설치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²⁵³⁾

사옹원은 조선시대 왕의 식사나 궁중의 음식 공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으며, 실무직으로는 정(正) 1인, 첨정(僉正) 1인, 판관(判官) 1인, 주부(主簿) 1인, 직장(直長) 2인, 봉사 3인, 참봉 3인 등이고, 자문직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4인, 부제조 5인인데 1인은 승지가 겸임, 제거(提舉)·제검(提檢)을 합쳐 4인을 두고 있었다. 어전은 어살(漁箭)을 말하는 것으로, 고기잡이를 위하여 대나무나 버드나무들 엮어 물 속에 눌러 꽂은 목책(木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은구

247) 공적(公糶)은 춘궁기에 관곡(官穀)을 농민에게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쌀로, 이것을 조적(糶糶) 또는 환상(還上), 환곡(還穀)이라고 하였다. 고흥산은 민간에 흩어져 있는 공적이 함경도가 심하다고 하면서 빌려간 쌀을 값지 않는 사람을 육진(六鎊)으로 돌려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3일 戊子).

248)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7일 壬辰.

249)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8월 12일 丙寅; 24일 戊寅.

250)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8월 8일 壬戌; 乙丑.

251)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8월 12일 丙寅; 24일 戊寅.

252) 『연려실기술』 권지7, 中宗朝故事本末, 王妃愼氏遜位復位本末.

253)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27일 壬子.

어, 즉 은어(銀魚)가 임금에게 진상될 뿐만 아니라 종묘에 헛 것을 올릴 때도 사용되므로 사옹원 제조를 겸임하던 고흥산이 사옹원에서 직접 어살을 설치해 은어를 준비해 볼 것을 시험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²⁵⁴⁾

그러나 대사간(大司諫) 이행(李荇)은 고흥산의 어전(魚筭)에 대해 큰 물을 만나면 무너져 터질 것이 틀림없고, 무너지는 대로 다시 엮으면 민폐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국용만 생각하고 백성의 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므로 곧바로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중종은 이것은 시험하고자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미 엮은 것을 철회하는 것도 폐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한편 고흥산은 대사간 이행의 비판이 있자 피혐(避嫌), 즉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직을 하려 하였으나, 중종은 허락하지 않았다.²⁵⁵⁾

그리고 고흥산은 특진관(特進官) 역시 겸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특진관으로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동서적전(東西籍田)의 경작인(耕作人)과 관련된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기도 하였다.²⁵⁶⁾ 동서적전은 임금이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수확물을 국가의 제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전지(田地)로 동·서 두 곳에 있었다. 임금의 친경(親耕)은 행사에 그치고 적전 근처의 민전(民田) 10결(結)에서 농부 1인씩을 차출하여 3인이 적전 1결을 경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작인이 다 근처에 사는 자가 아니어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흥산은 국가의 제사에 쓰이는 수량을 헤아려 근처 사람을 시켜 경작하게 하여 폐단을 덜도록 건의하였던 것이다.

고흥산은 또 사헌부에서 제향(祭享)에 쓰는 봉상시(奉常寺)의 말쟁(말장(未醬))에 대해 폐단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사헌부에서는 말장을 전에는 봉상시의 관원이 친히 감독하여 써서 만들었는데, 요즘 봉상시의 제조(提調)가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말장을 스스로 장만해서 바치게 하도록 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의 규례대로 봉상시에서 친히 감독하여 만들도록 주장하였다.²⁵⁷⁾

254)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27일 壬子.

255)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27일 壬子.

256)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14일 丁卯.

257)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1월 2일 甲申.

이에 대해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말장의 일은 대간의 아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하였고, 자신도 전에 봉상부정(奉常副正)에 있을 때 그 정결하지 않은 폐단을 알고 있다고 아뢰었고, 마침내 중종은 말장을 예전대로 관원을 시켜 감독하여 만들되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였다.²⁵⁸⁾ 봉상시는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였으며, 부정(副正)은 정3품의 당하관이었다. 이를 통해 전에 고흥산이 봉상시부정(奉常寺 副正)의 관직도 역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²⁵⁹⁾

한편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 있으면서 둔전(屯田)을 마련하여 곡식을 생산하였음이 확인된다. 고흥산이 둔전을 마련한 곳은 평안도 안주(安州)와 황해도 인산(麟山)이었는데, 안주에서는 1만 5백여 석, 인산에서는 9천 석이었다.²⁶⁰⁾ 또한 평안도 강계(江界)의 둔전도 고흥산이 호조 판서였을 때 아뢰어서 설치한 것이었다.²⁶¹⁾

3. 중종대 후반기

1) 병조 판서(兵曹 判書) 및 특진관(特進官)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1516년(중종 11) 1월 25일에 병조 판서(兵曹 判書)가 되었다.²⁶²⁾ 고흥산 본인으로서는 다섯 번째 장관직이었다.

258)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1월 6일 戊子.

259) 고흥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상시 부정(奉常寺 副正)을 역임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봉상시 부정이 정3품 당하관이 관직이므로, 그가 함경도에서 돌아왔다가 절도사와 관찰사로 파견되기 전이라고 추측된다.

260)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 庚戌. 고흥산이 둔전을 시행한 시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다. 다만 고흥산은 자신이 호조 판서였을 때 이러한 둔전을 시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61)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5일 己亥. 당시 병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 재직할 때 강계(江界)의 둔전을 아뢰어 설치한 일을 거론하면서, 벌등포(伐登浦) 등처에도 농사지를 만한 빈 땅이 많으며 개간하면 둔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262)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25일 丁未.

이때 병조 판서였던 신용개(申用溉)가 병으로 사직하자, 중종은 병조 판서를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고흥산이 북방의 일을 잘 알므로, 호조(戶曹)가 중하기는 하지만 고흥산이 호조 판서의 직임에 오래 있었으니, 고흥산을 이조에서 주의(注擬)하도록 하였다. 주의(注擬)는 조선시대 관리를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를 전형하여 왕에게 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조는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주의하면서 경비(經費)의 일이 매우 중하며, 변방의 군수(軍需)가 지극히 적다면서 고흥산이 호조를 맡아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그 직임에 힘쓰니 빨리 갈지 말자는 것이 이조의 뜻이면서 조정의 의논이라고 하였다. 즉 호조의 일이 병조보다 중하니 고흥산을 병조로 옮겨 교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중종은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낙점(落點)하고는 “고형산이 직사(職事)에 부지런함을 내가 모르지는 않으나 고흥산이 당하관(堂下官)이던 때부터 여러 번 북방의 일을 맡아서 병사(兵事)에 익숙하므로 제수하는 것”이라고 전교하였다.²⁶³⁾

병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경연에서 중종이 춘당대(春塘臺)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할 때 참여하는 인원을 써서 아 되도록 청하기도 하였고,²⁶⁴⁾ 중종은 병조 판서인 고흥산에게 무관들도 학문에 힘쓸 것을 권면하도록 전교하기도 하였다.²⁶⁵⁾

고형산은 특진관을 계속 겸임하고 있었으며, 병조 판서이자 특진관으로 병조에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지방에서 군사들이 상번(上番) 부방(赴防)하는 일의 폐단,²⁶⁶⁾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처자를 가두는 폐단 및 체아직(遞兒職)의 감원 문제, 무신을 미리 선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²⁶⁷⁾

또 고흥산은 당시 무사를 선발할 때 육량전(六兩箭)²⁶⁸⁾을 쏘므로 해서 무사

263)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25일 丁未.

264)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6일 丁巳.

265)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8일 己未.

266)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21일 壬申.

267)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24일 乙亥.

268) 육량전(六兩箭)은 축의 무게가 여섯 냥인 화살로, 육량궁 또는 정량궁이라고 하는 대궁에 사용되었던 화살이다.

들이 팔뚝을 상하는 폐단을 지적하여, 이것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흥산은 옛 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 육량전의 원래 거리 80보가 아니라 20~30보 가량을 물려서 쏘게 하도록 아뢰었고, 중종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고흥산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²⁶⁹⁾ 또한 중종이 쓸 만한 무인(武人)을 추천하도록 하자, 통정(通政)으로 있는 사람 76~8인, 2품 이상으로 있는 사람 4~5인을 추천하였고, 관직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나이 젊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의 관사(觀射)를 청하기도 하였다.²⁷⁰⁾

그리고 고흥산은 또다시 여진족 망합(莽哈)의 동생 주장합(住張哈)이 조선에 순종하지 않아 발생하는 함경북도의 방비 문제,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회답할 내용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²⁷¹⁾ 더불어 고흥산은 함경도에 군량을 보급하는 문제와 악포를 저화로 바꾸어 주는 문제, 함경도의 군사 문제 및 입거(入居)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하였다.²⁷²⁾ 또 평안도 의주(義州)의 축성 문제와 입거인(入居人)들의 도망시 추쇄 문제, 함경도에서 어염(魚鹽)을 걷는 폐단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²⁷³⁾

한편 병조판서 고흥산은 중종에게 竹弓을 만들어 시험하여 바쳤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다.

兵曹判書 高荊山이 와서 竹弓을 바치고 아뢰기를, “이 활의 세기가 木弓보다 갑절이 되어, 살을 쏘면 80여 步를 지날 수 있으니, 우선 써 보아서 쓸 만하면, 모든 군사가 지니는 활 및 軍器寺의 활은 이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이 변방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 角弓 같으면 흠비[雨] 때에 쉽게 파손되나, 대[竹]는 흠비를 당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이 이미 시험하였으므로 와서 바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활을 보니 과연 좋다. 이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이것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 보게 하여, 쓸 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武庫에 저장하고, 또한 군사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라.”하였다.²⁷⁴⁾

269)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3월 8일 己丑.

270)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4월 17일 戊辰.

271)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4월 17일 戊辰.

272)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5월 16일 丙申.

273)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17일 丁酉.

274)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18일 戊戌.

즉 고흥산이 만든 죽궁이 목궁보다 활의 세기가 갑절이나 되어서 화살을 쏘면 80여 보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모든 군사가 지나는 활 및 군기시의 활을 자신이 만든 죽궁을 본떠서 만들도록 증중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고흥산이 죽궁을 만든 이유는 오랜 변방 생활에서 나온 경험이었던 바, 각궁은 비가 오면 쉽게 파손되었고, 대나무는 비가 와도 쉽게 파손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각궁은 언제나 습기를 피해야 하며, 이 때문에 관리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흥산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병조 판서의 직을 수행할 때 각궁을 만들어서 시험하였고, 각궁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형산이 만든 죽궁은 상당히 괜찮아서 증중은 직접 죽궁을 보고 과연 좋다고 하면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고흥산이 만든 죽궁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 보게 하고, 쓸 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군기고에 저장하는 한편 군사들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고흥산은 병조판서와 특진관을 겸임하면서 조선의 국방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 문제에 빠짐없이 폭넓게 관여하고 있었다. 연산군 때 죄를 입은 사람들을 방면하는 문제와 함경도의 공채(公債)를 백성들로부터 걷는 문제,²⁷⁵⁾ 불교 행사인 기신재(忌晨齋)와 국가에서 장리(長利)²⁷⁶⁾를 받는 것을 혁파하는 문제, 무인을 천거하여 쓰는 문제 및 입번·변상하는 군사들의 문제,²⁷⁷⁾ 함경도의 방비 및 곡식 수송, 둔전에 대한 문제,²⁷⁸⁾ 도둑질하다가 사로잡힌 여진인에 대한 처벌 문제,²⁷⁹⁾ 증중의 추향대제(秋享大祭) 친제(親祭) 문제,²⁸⁰⁾ 함경북도의 사천(私賤)을 함경남도의 공천(公賤)으로 바꾸는 문제²⁸¹⁾ 등에서 고흥산이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75)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5월 19일 己亥.

276) 예전에, 곡식이나 돈을 꾸어 주고 돌려받을 때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자로 받는 이자율이나 그런 이자율로 빌려주는 돈이나 곡식을 이르던 말이다.

277)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5월 27일 丁未.

278)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5월 30일 庚戌.

279)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6월 18일 戊辰.

280)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7월 5일 甲申.

281) 『증중실록』 권25, 증중 11년 7월 14일 癸巳.

또한 중종이 문신 중에서 변장을 차임하도록 추천하도록 하자, 병조 판서 고흥산이 이빈(李蘋), 유용근(柳庸謹), 이장곤(李長坤), 신변(申抃) 등을 추천하기도 하였다.²⁸²⁾ 또 중종이 강무장(講武場)의 긴요하지 않은 곳에 백성이 들어가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자, 고흥산은 백성들에게 농사짓기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백성들의 공채(公債)를 감해주는 문제에 대한 의논에서도, 죽은 자나 도망하여 그 일족이나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을 특별히 감해주도록 주장하였다.

고형산은 또 정로위(定虜衛)를 증원하기를 요청하여 번상군사(番上軍士)가 휴식할 수 있도록 청하여 중종의 윤허를 받기도 하였다.²⁸³⁾ 번상군사는 조선시대 서울의 방위를 위해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낸 군사를 말하는데, 삼포왜란 이후 예전에 없던 별부방군사(別赴防軍士)란 이름으로 조번(助番)²⁸⁴⁾하게 되면서 휴식할 틈이 없게 되었다. 정로위는 삼포왜란 후 신설된 병종(兵種)으로 지배신분층이라도 현직을 가지지 못한 부류인 한량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고흥산이 판서였을 때 서얼(庶孽)인 사람은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하였는데,²⁸⁵⁾ 이를 보면 고흥산은 일반 백성들보다 지배층의 군역을 통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흥산은 병조 판서였지만 항상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였고, 이것은 군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흥산은 수군(水軍)의 신역(身役)이 매우 과중한데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족(奉足)이 없으며, 큰 배인 대맹선(大猛船)과 중맹선(中猛船)은 배 하나에 타는 수군이 50여 명까지 되기 때문에 수군이 교대할 때가 없으니, 소맹선(小猛船)만 사용하여 수군들을 나누어 타게 하거나 쉬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⁸⁶⁾ 이 역시 고흥산이 백성들이 부담하는

282)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7월 25일 甲辰.

283)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8월 4일 癸丑.

284) 비번 군사가 상번 군사를 도와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인정에서 과루까지 도성 안에 사람의 통행을 감시하던 일을 말한다.

285) 중종은 정로위(定虜衛)에 서얼(庶孽)인 사람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과거불 사람은 반드시 정로위에 소속된 뒤에야 과거를 보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중종실록』 권63, 중종 23년 10월 28일 丙寅).

286)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17일 乙丑.

군역의 수고로움을 덜게 하려는 의도였음이 짐작된다.

그리고 고흥산은 평안도의 구황(救荒)과 둔전 문제, 경상·전라도의 수군(水軍) 도망 문제, 전라도에서 왜선을 수토(搜討)하는 문제²⁸⁷⁾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연에서 경상·전라 접경지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과 군졸을 휴식하게 할 방책을 제시하면서 대신들에게 물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²⁸⁸⁾

당시 요동에 있던 명(明)나라의 탕참(湯站) 지휘(指揮)가 오랑캐가 탕참에 입구하여 번고가 생기면 조선군이 와서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이 문제를 의정부와 병조에서 논의하여 사사로운 청을 받아들여 국경 밖으로 출병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왕에게 아뢰고 후 발병할 수 있다고 답변하도록 하였다.²⁸⁹⁾ 그러면서도 고흥산은 흑시라도 요동에서 중국 조정에 말을 해서 청병(請兵)을 해 온다면 부득이 군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²⁹⁰⁾

중종이 중국에서 청병을 해오면 정병을 정밀하게 뽑아 대비하도록 하자, 고흥산은 지난해 서울에서 시행한 가을 무과와 초시 및 별시에 있는 사람을 모두 뽑아야 하며, 평안도·황해도 군사는 물론 경기·충청의 군사 가운데서도 뽑아 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⁹¹⁾ 이후 중종은 의정부와 병조를 은밀히 불러 중국 명나라의 청병이 있으면 조병(調兵)하는 제반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²⁹²⁾

이후 고흥산은 생원과 진사 중 회강(會講)에 합격한 사람을 서용하는 문제, 수시로 어사(御使)를 파견하는 문제, 저화(楮貨)의 통용 문제²⁹³⁾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고, 노산군(魯山君: 端宗)과 연산군의 후손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

287)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8월 27일 丙子.

288)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1일 己卯. 경상도의 좌우수영(左右水營)을 옮기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뒷날 중신을 보내어 그 편부를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289)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1일 己卯.

290)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3일 辛卯.

291)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10일 戊子.

292)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13일 辛卯. 정승들과 고흥산 등은 조병(調兵)할 수효를 중사관 5명, 군관 4명, 군사 6천, 원군관(元軍官) 1백 명, 위장(衛將) 30명과 파진군(破陣軍) 30명 등으로 의논하였다. 이후 고흥산은 순변사(巡邊使) 유담년(柳聃年)과 평안도의 군량과 군사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아뢰기도 하였다(『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9월 25일 癸卯).

293)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0일 戊辰.

하게 하였을 때는 후손을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⁹⁴⁾

고형산은 또 풍속에 관계되는 일은 유향품관(留鄕品官)²⁹⁵⁾들도 죄를 주어 악을 징계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²⁹⁶⁾ 풍수지리나 음양 같은 것은 폐지해야 하지만 조종조부터 해왔고 『경국대전』에도 실려 있으니, 모두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⁹⁷⁾ 또 관례(冠禮)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⁹⁸⁾

그런데 병조 판서였던 고형산은 1516년(중종 11) 12월 25일 사직을 청하게 되었다.

병조 판서 高荊山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면서도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 하여 두세 차례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형산은 寒微한 가문에서 發身하였지만 변방 계책에 유능하여 오래 北方을 鎮守했는데, 오랑캐들이 다투어 자기 자식 이름을 ‘고형산’이라고 했었다. 사람됨이 학식은 없으나 처신이 간소하고 검박했으며,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 자못 많았다.²⁹⁹⁾

고형산이 사직을 청한 이유는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며, 병조 판서의 직임에 오래 있었다는 것으로, 이때 고형산의 나이는 환갑을 넘은 64세였다. 고형산은 두세 차례에 걸쳐 사직을 청하였지만, 중종은 윤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이에 대해 사신(史臣)의 논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신은 논평하기를, 고형산은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변방 계책에 유능하여 오랫동안 북방, 즉 함경도를 든든하게 지켜서 오랑캐들이 다투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형산’이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형산은 사람됨이 학식은 없었으나 처신이 간소하고 검소하였으며, 국가에 이익과 도움을 주는 일이 꽤 많았다는 것이다.

294)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2일 庚午; 29일 丁丑; 11월 19일 丙申.

295) 지방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전직의 품관들을 말한다.

296)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2일 庚午.

297)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9일 丁丑.

298)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1월 19일 丙申.

299) 『중종실록』 권27, 중종 11년 12월 25일 辛未.

중중으로부터 사직을 윤택받지 못한 고흥산은 계속 병조 판서의 직임에 있으면서 여러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고흥산은 중중이 세 번째 부인인 윤씨(尹氏, 후에 文定王后)를 맞아들이면서 친영(親迎)하는 문제,³⁰⁰⁾ 정난공신(定難功臣) 삭훈(削勳) 문제³⁰¹⁾ 등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중전이 된 윤씨(문정왕후)가 몸이 아파서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으로 피어(避御)하고 중중은 중전이 거처하는 곳에 유숙(留宿)한 적이 있었다.³⁰²⁾ 이때 고흥산은 병조 판서로서 중중과 중전의 이어(移御)하는 여러 절차를 다 알아서 관장해야 하는데도 뜬말을 칭탁하여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어하는 말을 듣고 침구(針灸)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말미를 얻어서 한 것으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³⁰³⁾

고형산은 또한 일식(日蝕)이 일어났을 때 중중과 함께 해가 다시 나오게 하는 구식례(救食禮)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³⁰⁴⁾ 온하위(溫下衛) 야인 금주성개(金主成介)가 여연(閔延) 건너편 미언천(未彥川)에 와서 사는 일로 함경도·평안도에 대한 방비책을 의논하기도 하였다.³⁰⁵⁾

고형산은 65세이던 1517년(중종 12) 6월 27일 다시 사직을 청하게 되었다. 『중종실록』에는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병으로 세 번 사직하였으나, 중중이 윤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대신이 변방의 일을 잘 안다고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⁰⁶⁾ 따라서 고흥산의 사직은 중중과 대신들에 의해 받

300) 고흥산은 중중이 직접 가서 부인을 맞이해 오는 친영(親迎)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9일 甲午; 4월 9일 甲寅; 『연려실기술』 별집 권지12, 正教典故 婚禮; 『증보문헌비고』 권73, 예고 20, 婚禮).

301)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26일 辛丑. 정난공신(定難功臣)은 1507년(중종 2) 이과(李鵬)의 옥사(獄事)를 처리하는데 공이 있었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이과는 중종반정 주체 세력인 정국공신(靖國功臣) 중심의 지배 체제에 불만을 품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얼 노영손(盧永孫)에 의해 모역으로 고변되었다. 이에 이과는 능지처참 당하고 그 연루자들은 귀양갔으며 노영손과 추국(推鞠)에 관계한 추관(推官) 등 21명이 정난공신이 되었다. 이후 대간(臺諫)의 계속되는 상계(上啓)로 노영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삭훈되었다.

302)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5월 13일 丁亥.

303)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5월 14일 戊子; 17일 辛卯.

304)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6월 1일 乙巳; 『國朝寶鑑』 권19, 중종조 2, 丁丑 12년.; 『書雲觀志』 권3, 故事.

305)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6월 8일 壬子.

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고흥산은 6개월 전에도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며 병조 판서의 직임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서 두세 번 사직을 청한 바가 있었다. 또 고흥산은 중종과 중전 윤씨가 이어할 때도 이미 말미를 얻어 침과 뜸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즈음 고흥산은 오랜 관직 생활과 격무 등으로 인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직이 불허되었지만, 고흥산은 다시 자신의 직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즉 병조 판서 고흥산은 만포(滿浦)는 심처(深處)의 여진인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그 정황을 탐문하는 일이 중한 곳이므로 문신(文臣) 가운데서 재간이 있는 사람을 자금을 따지지 말고 의망(擬望)하자고 하여 최세절(崔世節)·반석평(潘碩枰)·유옥(柳沃)을 추천하였다. 중종은 이 중 최세절을 낙점(落點)하고, 초삼자(超三資)라고 어서(御書)하였는데, 즉 최세절을 3자금을 건너 뛰어 제수하였다.³⁰⁷⁾

고형산은 또한 평안도·함경도에서 취재(取才)한 군사들이 시험을 거쳤음에도 관직을 얻지 못하여 서울에서 기다리는 폐단을 지적하고, 이들을 정로위(定虜衛)에 입적시켜 통제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⁰⁸⁾ 그리고 고흥산은 명(明)나라에 새로운 중전의 고명(誥命)을 청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³⁰⁹⁾ 중종이 묘현(廟見)과 절의(節義) 등의 일을 군신(君臣)에게 연방(延訪)하였을 때도 참여하였다.³¹⁰⁾

특히 고흥산은 중종이 의정부와 육조 장관 및 대관 홍문관을 명소(命召)하여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 등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을 때도 참여하여 대신들과 함께 여러 의논을 하였다.³¹¹⁾ 그리고

306)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6월 27일 辛未.

307)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6월 28일 壬申.

308)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6일 庚辰; 8월 3일 丙午.

309)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10일 甲申; 15일 己丑.

310)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5일 戊申. 연방(延訪)이란 임금의 여러 군신(群臣)을 맞이하여 정사에 관한 일을 보던 것을 말한다.

311)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9일 壬子; 『一蠹集』 권2, 附錄 褒贈祀典, 中宗大王 12년 丁丑 8월 10일·20일. 명소(命召)란 임금이 명패(命牌)로 신하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명패의 모양은 등골고, 일면에는 이를테면 ‘명소영의정(命召領議政)’이라 쓰고 그 옆에 연원일을 쓰며, 또 일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한다. 이것을 반분하여 우편(右片)은 부르고자 하는

고형산은 대신들과 함께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금은(金銀)을 몰래 가져가는 폐단을 지적하고, 그 방지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³¹²⁾ 또한 고형산은 연산군 때 귀양한 사람들을 방면하는 일,³¹³⁾ 난역(亂逆)에 연좌(緣坐)된 사람들은 풀어 주고 사면하는 일,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건(鄭鍵)이 병 때문에 마음대로 진(鎭)을 떠난 일, 평안도의 방비와 관련된 일 등에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³¹⁴⁾

2)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과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

병조 판서였던 고형산은 1517년(중종 12) 11월 19일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임명되었다.³¹⁵⁾ 고형산은 1514년(중종 9)에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되었다가 간원이 반대하여 며칠 만에 교체된 적이 있었는데, 중종은 고형산을 다시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한 것이다.

고형산의 사헌부 대사헌 임명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은 수원부사(水原府使)였던 이성언(李誠彦)이 올린 상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성언은 당시 대간들로부터 논박을 당했던 이행(李荇)³¹⁶⁾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로 말미암아 사헌부의 대간들은 이성언을, 사간원 정언(正言) 양팽손(梁彭孫)은 대간들을 비판하였다. 마침내 대신들은 양팽손을 교체할 것을 주장하였고, 홍문관은 대간들의 교체를 주장하여 사헌부의 대간들 전부가 교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종은 고형산을 사헌부의 장(長)인 대사헌으로 임명한 것이다.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된 고형산은 바로 다음날, 자신도 ‘이성언의 상소가

자에게 보내고 좌편은 궁중에 둔다.

312)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20일 癸亥.

313)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4일 丙子.

314)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5일 丁丑.

315)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19일 辛卯.

316) 이행(李荇)은 1517년(중종 12)에 대사헌이 되었으나,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 사류로부터 배척을 받아 첨지중추부사로 좌천되자 사직하고 충청도 면천에 내려갔다.

지나치기는 하지만 죄주기를 청하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전(前) 대간들과 생각이 같아서 후(後) 대간들과 생각이 맞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재질이 못나서 풍헌(風憲)의 장에 합당하지 않으니 사직시켜 달라고 청하였다.³¹⁷⁾ 그러나 중종은 논박 받은 대간은 재직할 수 없고, 신(新) 대간의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니 맞지 않으리라고 미리 생각할 수 없고, 경(卿:고형산)이 어찌 풍헌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며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형산은 네 번이나 사직을 청하였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형산의 예상대로 다음날, 신(후) 대간들은 대사헌 고형산은 대의(臺議), 즉 대간들의 의논과 맞지 않음으로 물러가서 중종의 명을 기다린다고 고형산의 교체를 요구하였다.³¹⁸⁾ 결국 중종은 고형산이 이미 대간들의 의논에 화합하지 않는다면 교체하는 것이 가하다고 함으로써 고형산의 사헌부 대사헌의 직임은 짧게 끝나게 되었다.

한편 이후 고형산은 관비(官婢)를 사첩(私妾), 즉 개인의 첩으로 삼은 일 때문에, 사헌부에서 고형산을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³¹⁹⁾ 중종은 이에 대해 소방(疏放), 즉 죄를 방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추고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고형산이 관비를 첩으로 삼은 일은 오래전의 일이었던 것 같다. 또 고형산의 성품으로 보아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관비를 아무 이유 없이 개인의 첩으로 삼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헌부는 소방(疏放)은 일시의 특은(特恩)이고 사면하는 예(例)가 아니라면 다시 고형산을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중종은 고형산의 일을 이미 대신들에게 물었다며,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뜻을 밝혔다.³²⁰⁾ 삼정승은 고형산의 일은 전에 이미 죄를 방면한 것으로 사헌부의 비판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아뢰었다.³²¹⁾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은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

317)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20일 壬辰.

318)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21일 癸巳.

319) 『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12월 12일 癸丑.

320) 『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12월 13일 甲寅.

321) 『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12월 15일 丙辰.

이후 고흥산은 1518년(중종 13) 1월 15일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에 제수되었다.³²²⁾ 좌참찬은 의정부의 정2품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었으며,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우참찬(右參贊)과 함께 삼정승을 보좌하면서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에 좌참찬에 제수된 고흥산은 중종의 능묘 친행(親行)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²³⁾

그런데 『중종실록』 중종 13년 2월 22일 기사를 보면, 고흥산은 이날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²⁴⁾ 고흥산이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자, 사헌부에서도 또다시 고흥산이 헌장(憲長)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체될 아뢰었고, 중종은 곧 고흥산의 교체를 명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종이 고흥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하려고 한 것을 보면, 중종은 고흥산이 사헌부 대사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만 젊은 대간들과 신진 사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고흥산은 행정 장관(長官)의 역할을 많이 수행한 고관(高官)이었기 때문에 사헌부 대사헌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3) 호조 판서(戶曹 判書) 및 사헌부 대사헌 재임명

사헌부 대사헌에서 교체된 고흥산은 1518년(중종 13)년 3월 11일에 호조 판서(戶曹 判書)가 되었다.³²⁵⁾ 그로서는 여섯 번째 장관직이었으며, 호조 판서는 세 번째였다. 고흥산이 호조 판서를 세 번째 역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호조의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는 것이고, 중종의 대단한 신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호조 판서로 임명된 고흥산은 역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왔다. 당시 중종이 종묘(宗廟)에 친제(親祭)하려 하였는데, 제사에 쓰는 소인 희우(犧牛)가 묘문(廟門)으로 들어오다가 죽자, 고흥산은 종묘대제(宗廟大祭)를 지내는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고,³²⁶⁾ 중국과의 무역 문제, 공신의 삭제

322) 『중종실록』 권31, 중종 13년 1월 15일 乙卯.

323)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2월 10일 己卯.

324)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2월 22일 辛卯.

325)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3월 11일 庚戌.

(削籍) 문제, 천거로 인재를 뽑는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³²⁷⁾ 또한 고흥산은 조선전기 최대의 왕실 외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³²⁸⁾ 종계변무란 명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李成桂)가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명나라에 주청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흥산의 호조 판서 직임은 두 달여 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1518년(중종 13) 5월 15일 중종이 고흥산을 다시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한 것이다.³²⁹⁾ 그런데 1518년 5월 15일에는 아주 큰 지진(地震)이 일어났었다. 그날 유시(酉時: 오후 5시~7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는데, 그 여세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한참만에야 가라앉았다.³³⁰⁾ 또한 소리가 성난 우레 소리처럼 커서 인마(人馬)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城堞)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고로(故老)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팔도(八道)가 다 마찬가지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³¹⁾

이렇게 큰 지진이 있자, 중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합사(合司)하여 광화문(光化門) 밖에 모여 중종을 면대하기를 청하였다.³³²⁾ 고흥산은 사헌부 대사헌으로, 사간원 대사간 공서린(孔瑞麟)과 함께 중종에게 백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지진의 원인에 대해 아뢰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후 중종은 재변에 응답하는 일은 진실로 인심에 있다고 하였고, 병조 판서와 호조 판서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326)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4일 壬申.

327)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25일 癸巳.

328)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7일 乙巳.

329)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5일 癸丑.

330) 초저녁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로 밤새도록 연달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한동안 여진(餘震)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6일 甲寅).

331)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5일 癸丑.

332)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5일 癸丑.

... 상이 이르기를, “地道는 본래 고요한 것인데 흔들렸으니 고요한 것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는 말은 옳다. 어제 대신을 만나서 물어보니, 혹 말하기를 ‘조정이 화목하면 만민이 화목하고, 민심이 화목하면 천지의 和氣가 응하는 것이다.’하니, 재변에 응답하는 일은 진실로 인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兵象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나는 柳耑年이 병조 판서를 맡을 만하다고 생각한다.”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文臣에는 高荊山·李長坤이 있고 武臣에는 유담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호조 판서의 직임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年少한 신하들이 財利를 俗務라 하여 말하지 않지마는 재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조의 직임이 가장 중한데, 고흥산을 대사헌으로 바꾼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미편한 줄로 압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兩司가 김극핍을 논하여 호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니 이 사람이 과연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극핍도 인물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조의 직임에는 고흥산만 갈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安瑒이 아뢰기를, “김극핍의 위인에 대해서는 신이 오랫동안 함께 벼슬을 하였거니와 그의 才器는 불가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所長이 있는 것이니, 호조의 직임은 반드시 고흥산처럼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다. ...333)

중종은 병상(兵象), 즉 군사에 관한 일도 걱정스러운 일이라면서 유담년(柳耑年)이 병조 판서를 맡을 만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정광필(鄭光弼)은 병조 판서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문신(文臣)에는 고흥산(高荊山)·이장곤(李長坤)이 있고, 무신(武臣)에는 유담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광필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호조 판서의 직임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인데, 나이가 적고 어린 신하들이 재리(財利)를 세속적인 업무라 하여 말하지 않지마는 재물과 이익은 근본이 되는 것으로, 고흥산을 호조 판서에서 사헌부 대사헌으로 바꾼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미편한 일이라고 하였다. 즉 정광필은 오늘날로 보면, 재정과 회계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고흥산이 호조 판서의 직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물론 고흥산은 변방의 일도 잘 알기 때문에 병조 판서의 직임도 잘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종이 또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에서 김극핍(金克愾)이 호조에 합당하

333)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7일 乙卯.

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며 김극필이 호조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며 묻자, 정광필은 김극필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호조의 직임에는 고흥산 같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안당(安塘) 역시 호조의 직임은 반드시 고흥산처럼 잘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역시 고흥산은 당시의 대신들과 관료들로부터 재정·회계에 있어서는 당대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큰 지진 같은 재변(災變)이 일어나자, 당시 병조 판서였던 장순손(張順孫)이 재상들의 집을 왕래하면서 ‘이러이러한 말과 일을 가지고 주상(主上)을 의혹시키면 사류(士類)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³³⁴⁾ 예조 판서였던 조계상(曹繼商) 역시 ‘임금이 예일을 사모하므로 소인들이 옛일을 끌어다가 그 뜻에 영합하니 허위가 풍조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³³⁵⁾

이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장순손과 조계상을 논박하자, 중종은 양사(兩司)의 장관이 친히 아뢰게 하여,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고흥산은 사간원 대사간 공서린(孔瑞麟)과 함께 장순손과 조계상을 비판하였다. 고흥산은 장순손이 음험한 마음을 가지고 사림들을 배척하고 모함하려고 하였고, 조계상은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켜 사군(士君子)을 배척하고 모함하려는 것이니, 둘 다 먼 곳으로 쫓아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³³⁶⁾ 이후에도 대사헌 고흥산과 대사간 공서린이 합사(合司)하여 장순손·조계상을 논박하였으며, 당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었던 조광조(趙光祖) 역시 장순손·조계상을 비판하였다.³³⁷⁾ 이를 보면, 고흥산은 사림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고흥산은 이 일이 있고, 1년 뒤에 일어나는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예측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중종실록』에는 고흥산은 상차(上筮), 즉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흥산은 장순손과 조계상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34)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6일 甲寅.

335)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7일 乙卯.

336)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7일 乙卯.

337)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9일 丁巳.

高荊山 등이 또 上筮하기를, “신 등이 듣건대 ‘그 형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그림자를 살펴야 한다.’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일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일이 이미 나타난 뒤에야 무엇을 다시 기다립니까? 이제 장순손과 조계상의 奸僻한 정상을 전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고서도 혹 단안을 내리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諍臣과 侍從이 연방 글을 올려 공격을 하니 그의 간흉한 정상은 이미 睿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하께서는 더욱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는 곧 전하께서 奸人들의 술책에 젓어든 지 오래되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날 말하는 이들을 조금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전에 분별하지 못하시고 또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간흉들이 근거를 잡고 임금은 고립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세히 아시면서도 進退를 어렵게 여기시고 잠잠한 채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곧 郭公이 멸망한 길’을 그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그대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 임금은 職事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명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을 구별해서 진퇴케 하는 것이 그 직사이니, 그 진퇴할 바를 알진대 마땅히 그 기미를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미가 보이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시다가 그들이 점점 불어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들 될 것입니까. 천길 제방의 독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흉물을 아주 멀리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어 틈을 보아 준동하여 그 술책을 부리게 되면, 전하께서 어찌 스스로 聖明을 보존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나라를 망치고 어지럽게 한 자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신 등이 늘 멀리서 끌어다가 비유하지 않고 매양 柳子光·任士洪의 일을 가지고 거듭 논변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와 여러 신하들이 다 함께 목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살필 일을 살피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에 경계하지 않으시며,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여 기미를 놓치게 되면, 兇謀는 더욱 방자하고 奸術은 날로 드러나서 그의 권세를 거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조만간에 禍亂이 일어나 조정의 신하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易》에서는 ‘豮豕之象’을 중히 여겼고, 《書經》에서는 ‘去邪之戒’를 신중히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흉물을 죄주는 법을 바로하십시오, 군자는 믿을 데가 있고 소인은 두려운 것이 있게 하소서.”하였다. ... 338)

338)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9일 丁巳. ‘곽공(郭公)이 멸망한 길’이란 선악(善惡)에 대한 판단력과 확신은 있어도 이를 능히 결단하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일을 말한다. 곽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고흥산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모함하려던 장순손과 조계상을 벌 주지 않는 중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고흥산은 장순손과 조계상이 간사하고 흉악한 정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종이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것은 ‘곧 전하께서 간인(奸人)들의 술책에 젖은지 지 오래되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가 아니냐고 하였다. 고흥산의 말은 곧 중종이 사람들을 실제 의심하고 있지 않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흥산은 이렇게 되면 임금의 고립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흥산은 임금의 직사(職事), 즉 직무와 관련된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명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을 구별해서 진퇴케 하는 것이 임금의 직사라고 하면서 기미가 보이는데도 결단을 하지 않다가 사악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들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천길 제방의 독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두 사람을 아주 멀리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그 틈을 보아 사악한 것이 준동하여 술책을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임금의 성명(聖明)을 어지럽힐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 무오사화(戊午史禍)를 일으킨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의 일을 가지고 거듭 논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일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을 중종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묵도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흥산은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않아 기미를 놓치게 되면 흉모(凶謀)는 더욱 방자하고 간술(奸術)은 날로 드러나서 권세를 거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조만간에 화란(禍亂)이 일어나 조정의 신하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냐고 하였다. 고흥산의 이 언급은 마치 1년 뒤에 일어나는 기묘사화를 예견한 것 같다.

이에 고흥산은 『주역(周易)』의 분시지상(獯豕之象)³³⁹⁾와 『서경(書經)』의 거

(郭)은 춘추 시대(春秋時代)의 나라 이름으로, 괘국(郭國)의 공작(公爵)인 괘공(郭公)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진퇴(進退)시키지 못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였다 한다.

339) 분시지상(獯豕之象)은 『주역(周易)』 대축괘(大畜卦) 육오(六五)의 효사(爻辭)인 ‘돼지의 어금니를 빼어 말리니 길하다[獯豕之牙吉]’에서 인용된 말로, 귀찮고 해로운 존재는 제거해 버려야 이롭다는 뜻으로 쓴 말이다.

사지계(去邪之戒)³⁴⁰를 인용하여, 귀찮고 해로운 존재는 제거해 버려야 이롭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되 주저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즉 중종이 용단을 내려 흉물들을 죄주는 법을 바로함으로써 군자는 믿을 데가 있고 소인은 두려운 것이 있게 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고형산의 상소에 대해 중종은 두 사람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어 쫓아낼 수 없다고 하였고, 고형산이 상소를 올린 날과 같은 날인 1518년(중종 13) 5월 19일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다시 임명하였다.³⁴¹⁾

4) 호조 판서(戶曹 判書) 재임명과 특진관(特進官)

1518년(중종 13) 5월 19일, 고형산은 다시 호조 판서가 되었는데, 그로서는 무려 일곱 번째 장관직이었고, 호조 판서만 네 번째였다. 이것은 고형산이 호조의 직무를 잘 수행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호조 판서가 된 고형산은 다시 국정 전반의 논의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다. 고형산은 지진이라는 재변 이후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고형산은 재변으로 인해 형조의 옥에 갇힌 죄인들을 모두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을 사정을 참작하여 선별하여 석방할 것, 지진은 병상(兵象)의 징조라고도 하니 변방 방비를 위해 사졸들을 휴양시키는 일을 미라 강구하고 조치할 것, 그리고 이와 같이 형벌을 신중히 하고 변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해도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³⁴²⁾

한편 중종은 영의정(領議政) 정광필(鄭光弼) 등과 함께 국정의 7가지 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고형산 역시 참여하였다.³⁴³⁾ 7가지 일이란 첫째, 각도(各道) 감사(監司)의 임기에 관한 것, 둘째, 교수(教授)와 훈도(訓導)를 선발하여 보내

340) 거사지계(去邪之戒)는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되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去邪勿疑]'에서 인용된 말로, 익(益)이 순(舜) 임금에게 진언(進言)한 내용이다.

341)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19일 丁巳.

342)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22일 庚申.

343)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28일 丙寅.

는 것, 셋째, 군액(軍額) 감축에 대한 일³⁴⁴), 넷째, 무본억말(務本抑末)³⁴⁵)에 대한 것, 다섯째, 각도의 공물(貢物)에 관한 것, 여섯째, 각도 군현(郡縣)의 연혁(沿革)에 관한 것, 일곱째, 각역(各驛)을 합병하는 일에 대한 편부였다.

고형산은 호조 판서였지만 대신들과 함께 중종의 명을 받아 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에 있는 의심스러운 죄수들을 분간하여 처리하는 일 및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으레 가선대부(嘉善大夫)인 사람으로 제수하는 일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기도 하였다.³⁴⁶

더불어 조선에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명(明)이성계(李成桂)의 가계를 바로잡아달라는 주청문서(奏請文書)를 작성하였는데, 고형산은 대신들과 함께 대궐 뜰에 모여서 문서의 필삭(筆削)³⁴⁷)할 부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³⁴⁸ 또한 함경도 6진에서 여진족 망합(莽哈)의 동생 주장합(住張哈)이 성 밑에 사는 오도리족(吾道里族) 1명을 쏘아 죽이고 7명을 사로잡아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기도 하였다.³⁴⁹ 그리고 고형산은 주장합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속고내(束古乃)가 압록강(鴨綠江) 안쪽 조선 땅에 들어와 사냥한 일과 관련한 문제 역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⁵⁰

고형산은 국가적인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인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마침내 대신들과 함께 중종에게 소격서 혁파를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⁵¹ 또한 고형산은 중종, 정광필, 조광조 등과 『대학(大學)』을 강론하면서 ‘임금의 인(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즉 고형산은 『대학』에서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머물고’는 표현을 해석

344) 군액(軍額)을 감축하고 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에도 논의되어 고형산이 참여하였다(『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8일 甲辰).

345) 무본 억말(務本抑末)은 본(本)을 힘쓰고 말(末)을 억제한다는 말이다. 본과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본은 농(農), 말은 상(商)의 뜻으로, 농업에 힘쓰고 상업을 억제하는 일을 말한다.

346)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6월 9일 丁丑.

347) 이미 써 놓은 글을 더 쓸 내용은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 버리는 것을 말한다.

348)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6월 16일 甲申.

349)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6월 18일 丙戌.

350)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8월 17일 甲申.

351)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8월 30일 丁酉.

하기를, ‘임금의 도는 만물을 내는 것을 주재하므로 인에 머물렀다 한 것이며, 도 각각 한 가지 일을 들어서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덕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요, 임금이 홀로 인을 행할 뿐이라는 말은 아니다’고 하였다.³⁵²⁾ 이를 보면 고흥산의 학식은 정광필, 조광조 등과 강론하고 임금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해석을 피력할 만큼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은 67세가 된 1519년(중종 14) 1월 2일에 사직을 청하게 된다. 고흥산은 호조의 일이 몹시 많아 하루 이틀만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이 많이 적체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근래 안질을 앓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건삼증(蹇澁症)이 심하여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귀도 먹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호조의 직을 맡은 지 전후 6년이나 되어 이제는 이 직에 있을 수 없다면서 사직을 두 번이나 청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³⁵³⁾ 고흥산이 여러 번 몸이 아파고, 그 직에 오래된 이유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중종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산은 특진관(特進官)도 계속 겸임하고 있으면서, 호조의 업무, 경연의 참여 등을 통해 국가의 대소사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평안도가 연 3년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평안도 관찰사인 신상(申鏞)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주장하였고,³⁵⁴⁾ 함경도에서 여진인들을 접대할 때 기악(伎樂)을 없애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³⁵⁵⁾ 또한 대신들과 빈청(賓廳)에 모여 중국 명나라에 종계변무와 관련된 주청사(奏請使)를 다시 보내는 일³⁵⁶⁾ 및 관리를 임명할 때의 선제(宣制), 문화(文化)·봉산(鳳山)·재령(載寧) 등의 고을의 읍을 이배(移排)하는 일, 평안병사(平

352)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9월 15일 壬子.

353)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1월 2일 丁酉.

354)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2월 7일 辛未.

355)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2월 7일 辛未. 고흥산은 함경도의 큰 진(鎭)에 여진인들이 조선을 향모(向慕)하여 오면, 이들을 음식과 기악(伎樂)으로 접대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여진인들이 조선의 큰 진에 와서 그 변화함을 보고 좋아하고 와서 먹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였다.

356) 종계변무(宗系辨誣)와 관련하여 주청사(奏請使)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 고흥산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다(『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4월 7일 庚午; 8일 辛未)

安兵使)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 영흥 판관(永興判官)을 혁파하는 일, 마전(麻田)·적성(積城)을 합병(合併)하는 일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³⁵⁷⁾

그런데 중종은 고흥산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옮겨 제수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삼정승(三政丞)들이 호조는 구황(救荒)하는 일이 긴급한데다가 국용(國用) 또한 고갈되었다고 하면서, 고흥산이 바야흐로 조치에 힘쓰고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으로 바꿔 제수하면 허소한 일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아뢰었다. 대신에 삼정승들은 이장곤(李長坤)이 변방의 일을 잘 안다면서 이장곤을 병조 판서에 합당하다며 추천하였고, 고흥산은 호조에 그대로 두기를 청하여, 중종이 삼정승의 의견을 따랐다.³⁵⁸⁾ 이에 1519년(중종 14) 4월 28일에 고흥산이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재임명되었다.³⁵⁹⁾

호조 판서에 재임명된 고흥산은 수군(水軍)을 4번(番)으로 나누는 문제, 경상도를 좌도·우도로 나누어 감사(監司) 두 사람을 두는 문제 등의 가부를 논의하기도 하였다.³⁶⁰⁾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조 판서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즉 영사(領事) 안당(安瑯)이 병조 판서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이장곤(李長坤)·이계맹(李繼孟)·고형산(高荊山) 두어 사람뿐인데, 고흥산은 호조 판서가 되었고, 호조는 사무가 제일 긴요하여 고흥산이 그 소임에 매우 합당하므로 변동할 수가 없으니, 만일 이계맹을 바꾼다면 부득이 이장곤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종은 과연 대신이 이장곤과 이계맹 두 사람을 추천하였으나 정부에 꺾임이 많기 때문에 이계맹으로 병조 판서로 삼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흥산이 양계

357)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3월 24일 丁巳.

358) 『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4월 28일 辛卯.

359) 『중종실록』을 보면 1519년(중종 14) 4월 28일 고흥산이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임명되고 있다(『중종실록』 권35, 중종 14년 4월 28일 辛卯).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을 다시 호조 판서로 임명한 것이 되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중종이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삼정승(三政丞)의 청으로 고흥산은 바로 다시 호조 판서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60)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1일 癸巳.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를 좌도와 우도로 각각 나누는 일은 고흥산의 참여하에 이후에도 재논의 되었다(『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19일 辛亥). 후에 병조는 고흥산이 수군(水軍)의 순찰을 2번에서 4번으로 나누었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11월 27일 己卯).

(兩界)의 사정을 아니 병조판서에 합당하고, 호조 판서는 이계맹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안당은 ‘고형산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하여 고형산을 병조판서보다는 호조 판서에 그대로 둘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³⁶¹⁾

이후 고형산은 신연(申淵)이 수원부사였을 때 강간죄를 화간(和奸)으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처벌 문제,³⁶²⁾ 여진인들이 몰래 압록강을 넘어 들어와 여연(閔延) 지방의 강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처리 문제,³⁶³⁾ 경기도의 수재(水災)가 심한 것에 대한 호조의 처리 방법과 양전(量田)의 시행 문제³⁶⁴⁾ 등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종자법(宗子法)과 치재(致齋)할 때의 복색(服色), 친림(親臨)하여 문병(問病)하고 청정(聽政)하는 것 및 『가례(家禮)』와 『오례의주(五禮儀註)』가 합치되게 하는 일 등의 의논에도 참여하였다.³⁶⁵⁾

또한 정몽주(鄭夢周)·이존오(李存吾)·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함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의논하였고,³⁶⁶⁾ 그리고 탈옥한 죄수를 잡은 사람에게 논상(論賞)하는 문제 및 품계가 더 올라갈 데가 없게 된 가평군수(加平郡守)에게 상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고형산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³⁶⁷⁾

고형산은 증중이 병가(兵家)의 방략(方略)을 함께 강론하는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증중은 진서(陣書)를 강론할 때 선전관(宣傳官)들이 모두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평소에 강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장곤(李長坤)·황형(黃衡)·안윤덕(安潤德)·고형산(高荊山)·유담년(柳聃年)·최한홍(崔漢洪)·정은부(鄭殷富)·이장생(李長生)·김석철(金錫哲) 등의 이름을 쓰며

361)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7일 己亥.

362)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30일 壬戌.

363)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6월 14일 丙子.

364)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11일 壬寅.

365)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17일 戊申.

366)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1일 壬戌.

367)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26일 丁亥. 당시 가평군수(加平郡守)는 이성희(李成禧)였는데, 이성희는 당시 자궁(資窮), 즉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데가 없게 되어 당하관(堂下官)으로서는 최상급에 이르렀다.(『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7월 14일 乙巳). 품계를 더 올려주게 되면 당상관(堂上官)이 되지만, 당상관은 가법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품계를 올려주는 대신에 별도의 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르기를, “오늘 병가(兵家)들의 방략(方略)을 강론하고 싶으니 즉시 불러라.”라고 하였다.³⁶⁸⁾ 고흥산의 진법(陣法) 강론은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도 있었으며,³⁶⁹⁾ 고흥산이 병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즈음 중국에 갔던 성절사(聖節使)의 호송군(護送軍)이 여진족 1천여 명과 마주쳐서 조선군 10여 명 및 말 30여 필이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⁷⁰⁾ 조선에서는 여진족을 요격하는 문제 및 사신의 호송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고흥산 역시 참여하여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였다.³⁷¹⁾

『중종실록』에는 1519년(중종 14) 10월 27일, 호조 판서였던 고흥산은 병 때문에 여러 번 사직을 아뢰었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고, 이에 고흥산이 구황(救荒)의 계책을 아뢰니, 중종이 인견하여 묻고 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흥산은 지난 1월 2일에도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고흥산은 중종반정을 일으켜 공신이 된 이른바 정국공신(靖國功臣)의 개정 문제가 불거지자, 공신 개정에 찬성하였으며, 중종에게 공신을 개정할 것을 청한 바가 있다.³⁷²⁾ 중종은 고흥산 등이 공신 개정을 청하자, 6조의 당상과 대신들이 다 임금 앞으로 나오도록 허가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신진 사류들은 정국공신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여 소위 공이 없는 반정공신의 개정과 4등 공신 50여 인은 모두 위훈삭제(僞勳削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중종은 정국공신의 개정과 위훈삭제에 대하여 반대를 거듭하였지만,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뿐만 아니라 정광필 및 고흥산 등의 대신들까지 정국공신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자, 마침내 2·3등 공신의 일부와 4등 공신 전원, 즉 전 정국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의 훈작을 삭탈하였다. 이에 정국공신의 개정과 위훈삭제를 단행한 시기는 1519년(중종 14) 11월 11일이었다.³⁷³⁾

368)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17일 戊寅.

369) 『중종실록』 권75, 중종 28년 6월 12일 癸未.

370)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28일 己丑.

371)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28일 己丑; 29일 丙寅.

372)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2일 壬辰.

그러나 조광조 등의 급진적인 개혁과 과격한 주장들은 훈구파의 강한 반발뿐만 아니라 중종의 의심과 염증(厭症)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중종은 조광조와 신진 사류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 등을 불러 이들을 척결하려 하였으나, 정광필(鄭光弼) 등의 만류로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이때가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사림과 훈구와의 갈등이 위훈삭제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다.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게 한 날이 바로 1519년(중종 14) 11월 15일이었는데, 이날 고흥산은 합문(閣門)³⁷⁴ 밖에 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전(金詮), 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 병조 참지 성운(成雲)과 함께 앉아 있었다.³⁷⁵

이때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 등이 승정원에서 숙직하다가 금중(禁中)이 소요하므로 나가서는 대신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공(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니, 이장곤 등이 “대내(大內)에서 표신(標信)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중종실록』에는 당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인용하여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홍경주·남곤·김전·정광필을 비밀히 불렀고, 이장곤·안당(安瑯)은 뒤에 도착하였는데, 조광조 등을 의금부의 옥에 잡아 가둘 것을 의논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는 논의에는 홍경주·남곤·김전·정광필·이장곤·안당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고흥산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고흥산도 홍경주·남곤·심정·김전 등과 같이 와 있었다가 정광필이 들어오자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고 시키셨으니 이것은 다 임금의 뜻이다.”고 하였다.³⁷⁶ 따라서 고흥산도 6조의 장관 중 하나인 호조 판서로 표신

373)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1일 辛丑.

374) 합문(閣門)은 보통 편전(便殿)의 앞문이라고 하지만, 궁궐에서 내외(內外)와 공사(公私)의 경계로 설정되는 문이다. 특히 내전과 외전 사이에 위치하는 편전 영역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례에 따라 외부의 문이 되기도 하고, 실내의 문이 되기도 한다. 합문은 의례가 선행될 때에는 주체가 되는 인물과 여타의 다른 인물들 사이에 경계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사와 경연 등의 실내 의식에서는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경계로 존재했다.

375)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5일 乙巳.

376)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 丙午.

을 받고 불러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기묘사화에 대한 개설적인 내용을 보면, 고형산이 홍경주·김전·남곤·이장곤·심정 등과 비밀리에 중종을 만나고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있다고 탄핵하였고, 왕은 훈구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고 있다.³⁷⁷⁾

마치 고형산이 홍경주·남곤 등과 기묘사화를 일으킨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고형산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아 정국공신(靖國功臣)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들로 주축이 된 훈구파라 하기에 적절치 않다. 오히려 과거를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계속 해왔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젊었을 때부터 사림에 우호적이었고, 노년에도 신진 사류들의 뜻에 따라 소격서 혁파, 공신 개정 및 위훈삭제에 찬성을 하여 왔다.

그리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의 김정(金淨) 전(傳)과 『기묘록속집(己卯錄續集)』 남곤(南袞) 전에는 홍경주 등이 김전(金詮)·고형산을 꺾어서 오게 하고 이장곤(李長坤)을 협박해 불렀다고 되어 있다.³⁷⁸⁾ 따라서 고형산은 중종의 신임을 받는 6조 장관 중 하나인 호조 판서로 이날 중종으로부터 표신을 받아 합문 앞에 나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조광조를 잡아 가둔 다음, 고형산은 정광필 등의 대신들과 함께 조광조 등의 죄를 아뢴 것으로 되어 있다.³⁷⁹⁾ 그러나 이전에 중종이 성운(成雲)에게 명하여 빨리 조광조를 추고(推考)하는 전지(傳旨)를 상주하여 올리라고 두세 번 재촉하였고, 금부(禁府)의 당상(堂上)들을 비현합(丕顯閣)³⁸⁰⁾에 불렀으며, 정광필·안

377) 이러한 내용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나오는데(『연려실기술』 권지 7, 中宗朝故事本末 己卯士禍), 현재 백과사전 등이 이러한 『연려실기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형산이 기묘사화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었던 것처럼 서술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378) 『己卯錄補遺』 卷上, 金淨傳; 『己卯錄續集』 禍媒 南袞傳.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이장곤(李長坤) 전(傳)에는 이장곤이 남곤과 함께 홍경주를 따라 들어가니, 꺾 공조 판서 김전·호조 판서 고형산이 이미 입궐하였다고 되어 있다(『己卯錄補遺』 卷上, 李長坤傳). 또한 이장곤의 행장에는 이장곤이 홍경주, 김전, 고형산을 따라 입궐하였다고 되어 있어(『大山集』 권49, 行狀, 右贊成琴軒李先生行狀), 각 기록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379)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5일 乙巳.

380) 비현합(丕顯閣)은 경복궁 동궁전인 자선당(資善堂) 동쪽에 있는 전각이다. 왕의 연거지소

당·김전·남곤·이장곤·홍숙(洪淑)·성운·채세영(蔡世英)·권예(權輓)·심사순(沈思順) 등이 입시(入侍)한 뒤에, 중종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고 전지의 초안을 잡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정광필 등의 대신들과 함께 이 추고 전지 초안을 의논하였는데, 이때 고흥산이 참여한 것이다.³⁸¹⁾ 이후 중종은 비현합에서 밤을 꼬박 세워 신하들과 나라의 일을 의논(視事)하였고, 정광필과 고흥산 등은 경연청(經筵廳)에 있었다.³⁸²⁾

중종은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둔 바로 다음날인 1519년(중종 14) 11월 16일 고흥산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제수하였다.³⁸³⁾ 중종은 기묘사화의 수습과 관련하여 고흥산에게 중앙과 지방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을 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광필은 고흥산은 너그럽고 듬직(厚重)하여 대사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사방에 흉년이 들었고, 경기도가 더욱 심한데 구황(救荒)에 관한 모든 일을 고흥산이 맡았으므로, 대사헌의 직임이 중하기 하지만 호조의 일도 중하니 고흥산을 다시 호조에 눌러 있게 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고흥산을 다시 호조 판서에 눌러 있게 하였다.³⁸⁴⁾

한편 『중종실록』에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이후, 그 전에 있었던 고흥산과 조광조의 일화가 집의(執義) 유관(柳灌)에 의해서 언급되어 기록되어 있다. 유관은 조광조의 교만하고 방종했던 일화로서 조광조가 대사헌으로 예궐(詣闕)할 때 형조 판서였던 고흥산이 길에서 앞서 갔는데, 조광조가 자기보다 앞서 가는 것을 노여워하여 서리(胥吏)를 시켜 고흥산에게 “어찌하여 나보다 앞서 가는가? 나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 뒤에 세우고 가니 매우 매물하다. 시종을 하는

(曠居之所)로 비현각(丕顯閣)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연과 야대(夜對) 장소로 활용되었다.

381) 이후 정광필은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정이 청하였다.’ 하셨으나,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 만약에 굳이 조정의 일을 그르쳤다고 한다면 임금께서 호오(好惡)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 등은 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죄주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이번 추고(推考) 전지(傳旨)는 인심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하여 아뢰입니다.”고 하여 대신들이 중종의 뜻으로 추고 전지를 만들었으나, 이것이 인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 丙午).

382)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 丙午.

383)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 丙午.

384)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 丙午.

아전을 가두고 판서에게 글을 보내 추문(推問)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직 그만두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일화를 종종에게 아뢰었다.³⁸⁵⁾ 또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조정암(趙靜庵) 전(傳)에는 조광조가 대사헌으로 아문(衙門)에 출사(出仕)하는 길에서 찬성(贊成) 고흥산을 만났는데,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으므로 조광조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다.³⁸⁶⁾

이러한 일화는 『기재잡기(寄齋雜記)』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도 실려 있다. 즉 조광조가 대사헌으로서 아문에 나가는데, 고흥산이 호조 판서로서 앞에 서서 조광조가 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느릿느릿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개 고흥산이 거드럼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조광조가 고흥산을 모시고 가던 아전을 잡아 가두었다가 하루 만에 놓아 주었는데, 조광조는 “고형산의 행동은 사대부가 길을 양보하는 미풍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니 참으로 잘못이다. 사헌부가 비록 풍속을 단속하는 것이나 고흥산도 대신이니, 내가 감히 단속할 사람이 아니다. 그 아전을 가둔 것이 지나친 것 같기에 곧 석방한 것이다.”고 하였고 되어 있다.³⁸⁷⁾

그러나 유관이 말한 고흥산과 조광조의 일화는 고흥산의 직접 언급이 아니고, 유관이 말한 간접적인 것이며, 조광조의 교만 방종한 죄를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일화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다. 특히 비록 대사헌이 사헌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종2품관이고, 6조의 판서는 정2품관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일화가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묘록보유』나 『기재잡기』에 실려 있는 일화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 종종 및 대신들과 함께 조광조 등의 처리 및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고흥산은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나서 가뭄과 서리·우박의 재변이 잇달아 있는 것도 인심의 불화와 위구(危懼) 때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³⁸⁸⁾

385)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2월 10일 庚午.

386) 『己卯錄補遺』 卷上, 趙靜庵傳.

387) 『寄齋雜記』 2, 歷朝舊聞 2 中宗; 『연려실기술』 권지7, 中宗朝故事本末 己卯禍源.

388)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2월 14일 甲戌.

5) 병조 판서(兵曹 判書), 특진관(特進官), 평안도 순변사(平安道 巡邊使)

중종은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옮겨 제수시키고자, “고형산이 병조에 매우 합당하지만 호조의 일이 긴급하여 고흥산이 아니면 불가하므로 어렵게 여겼으나, 고흥산을 오래도록 호조에 둘 수야 있겠느냐?”며 대신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고, 남곤(南袞)이 “임금께서 2품 가운데 사람을 헤아려보신다면 어찌 가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하면서 동의를 표하자 호조 판서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바꾸기로 정하였다.³⁸⁹⁾

그렇지만 간원(諫院)은 경기도·황해도·강원도 등을 구황(救荒)하는 일에 대하여 호조 판서 고흥산이 조치하는 있는 중인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종은 고흥산은 호조에 매우 합당한 사람이지만, 병조에 가당한 사람이 없으며,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간원들에 대답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520년(중종 15) 1월 17일, 고흥산에게 병조 판서(兵曹 判書)를 제수하였다.³⁹⁰⁾ 고흥산으로서는 여덟 번째 장관직이었으며, 병조 판서는 두 번째였다. 다시 병조 판서가 된 고흥산은 대신들과 함께 중종의 부름을 받고, 재변이 잇달아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소격서(昭格署)를 다시 세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격서에서 제사하는 일은 좌도(左道)요 비례(非禮)입니다.”라고 하여 소격서 복설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방하였다. 또 근래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는데, 성종조에 비해 축적된 숫자가 그 배(陪)가 되지만, 모두 명목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며, 호조에 있을 때 파악했던 국가 재정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변방의 무신(武臣)을 차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⁹¹⁾

이밖에 수군(水軍)의 번(番)을 나누는 일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지속되어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수준을 3번으로 나누되 경상도·전라도는 방어가 가장 긴급하고 군사가 부족하니 좌우

389)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17일 丙午.

390)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17일 丙午.

391)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21일 庚戌.

령(左右領)으로 나누는 결정에 동의하였다.³⁹²⁾

고형산은 여전히 특진관을 겸임하여 경연에 참여하였고, 경연 후에 벌어지는 국정 현안 문제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고형산은 평안도 및 각 도의 정로위(定虜衛)의 충당 문제, 평안도 의주(義州)의 축성 문제 등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³⁹³⁾ 또 여연(閔延)·무창(茂昌) 등지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여진인들을 추방하는 문제,³⁹⁴⁾ 군비(軍備)를 정제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는 문제,³⁹⁵⁾ 풍산(豐山)·불하(虜下)·무산(茂山) 등에 순변사(巡邊使)를 보내는 문제,³⁹⁶⁾ 선산부(善山府)로 귀양 갔다가 도망친 김식(金湜)을 체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³⁹⁷⁾

특히 김식은 도망하여 심정(沈貞)·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³⁹⁸⁾ 조정에 있는 재상(宰相), 이를테면 고형산(高荊山)·이장곤(李長坤)·유담년(柳聃年)·박영(朴英)에게 익명서로 된 격문을 전하여 그 마음을 경동(驚動)시킨 뒤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안팎에서 내용하는 모반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³⁹⁹⁾

이는 단순히 김식(金湜)과 관련하여 문초를 받던 이중(李中)의 말이고, 고형산이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통해 고형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중중은 오히려 김식의 무리들이 서울로 들어왔을 지 모른다면 고형산 등을 은밀히 궁으로 불러들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다.⁴⁰⁰⁾

392)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2월 13일 壬申.

393)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2월 25일 甲申.

394)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3월 18일 丙午; 권39, 중종 15년 4월 10일 丁卯.

395)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20일 丁丑.

396)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25일 壬午.

397)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26일 癸未.

398)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16일 癸酉.

399)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30일 丁亥. 이는 단순히 김식(金湜)의 말이고, 고형산이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통해 고형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김식은 결국 거창(居昌)의 산골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22일 己酉; 27일 甲寅).

400)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8일 乙未.

이후 고흥산은 기병(騎兵)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고, 지휘관이 도망할 경우 죄인의 가족 모두를 변경에 옮겨 살게 하여 징계시키는 것과 방어가긴요한 함경도 거산 찰방(居山 察訪)에는 무신(武臣)을 파견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⁴⁰¹⁾ 그리고 고흥산은 1520년(중종 15) 5월 26일, 나이가 68세였을 때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험을 받지 못하였다.⁴⁰²⁾

사직을 윤험받지 못한 고흥산은 계속해서 양계(兩界)의 군량(軍糧)과 군자(軍資)를 마련하는 문제,⁴⁰³⁾ 귀양 갔다가 도망한 사람들의 처리와 죄를 주는 문제,⁴⁰⁴⁾ 기마(騎馬)·복마(卜馬)를 장만하여 군영에서 기르는 문제,⁴⁰⁵⁾ 여악(女樂)을 다시 복설(復設)하는 것의 편부 문제 등의 논의에 참여하였다.⁴⁰⁶⁾

한편 입직(入直)한 군사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북을 잦은 간격으로 계속 치는 것을 첩고(疊鼓)라 하는데, 중종이 용복(戎服) 차림으로 사정문(思政門) 밖에 나아가 첩고(疊鼓)하였으나 위장(衛將)들이 각각 거느리고 온 군사 중에 갑주(甲冑)가 없는 군사가 많았다. 이에 고흥산이 “첩고는 요즈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는 것인데, 장수들이 다 몰랐다고 하니 그 죄는 따져야 합니다.”라고 그 죄를 물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⁴⁰⁷⁾

그러나 고흥산은 1520년(중종 15) 8월 25일, 다시 늙고 병들었다며 사직을 청하였으나 중종은 또 윤험하지 않았다.⁴⁰⁸⁾

한편 중종은 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우찬성 이계맹(李繼孟)·좌참찬 유담년(柳聃年)·예조 판서 권균(權鈞)·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참의(參議) 김호(金瑚)·첨지(僉知) 공서린(孔瑞麟)

401)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15일 壬寅.

402)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21일 戊申.

403)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26일 癸丑; 6월 4일 庚申.

404)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6월 5일 辛酉; 17일 癸酉.

405)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6월 16일 壬申.

406)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8월 11일 丙寅.

407)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6월 11일 丁卯. 후에 중종은 다시 이일을 거론하며 “전에 고흥산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종일 첩고를 쳤으나 장사들이 당황하여 몸들 바를 잃고 모여 설 장소를 몰랐으니, 이것은 비록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평시에 연습하지 않은 소치이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73, 중종 27년 9월 20일 乙丑).

408)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8월 25일 庚辰.

등을 명소(命召)하여 의주(義州)에서 성을 쌓는 일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김 전 : “의주의 城子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므로 보기에 매우 불가한데, 더구나 그곳은 중국의 경계이고 또 彼인이 경계를 잇대어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미루고 쌓지 않을 수 없으니 작은 폐단을 헤아리지 말고 쌓아야 합니다. 또 평안도의 올해 농사는 지금까지 손해를 입었다는 신보가 없거니와 올해에 쌓지 않으면 내년을 점치기 어려우니 결단코 그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兩界의 巡審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대신을 가려 보내어 가서 성을 쌓을 터를 보고 이어서 邊鎮의 虛實을 순심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을 쌓는 군사로 말하면, 당번 步卒과 두 營의 衛吏를 시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모자라면 또 煙戶軍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지위가 낮은 젊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신을 보내야 합니다.”

중 종 : “아뢰 뜻이 매우 마땅하다.”

의정부 : “고형산이 함경도의 형세를 환히 알거니와, 평안도의 형세도 알게 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을 보내면 민폐를 없앨 수 있고 功役도 성취될 것입니다.” ……

중 종 : “고형산을 보내야 하겠으나, 병조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버려둘 수 없으니, 나는三公 줄에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한다. …”

김 전 : “고형산은 兵事에 익숙하여 성을 쌓는 일도 일찍부터 아니,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조치를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공이 갈 수는 있겠으나 쌓기를 끝낼 때까지 머물러 기다릴 수 없으니, 신 등은 형산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 종 : “형산이 계속 머물러서 성을 쌓는 공역을 마치게 하려는가? 그러면 本職은 같아야 한다. 병조는 임무가 중하고 일이 번거롭고 바쁘므로 宰相 가운데에도 맡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겠으나 형산만 못하다. 나는 安潤德이 변방의 일을 맡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윤덕은 전에 평안도의 일을 살핀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을 보내려 한다.”

김 전 : “안윤덕이 할 만하나 고형산만 못하고 형산이 가더라도 본직을 갈 것은 없습니다. 병조의 일은 參判·參議가 있으니 사무를 보지 않게 버려두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중 종 : “본직을 갈지 않는다면 보낼 수 있다.”⁴⁰⁹⁾

409)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1일 丙午.

의주에 성을 쌓는 문제를 두고 중종과 영의정 김전 등의 대화를 보면, 김전은 지위가 낮은 젊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신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중종도 마땅하다는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의정부(議政府)에서는 고흥산이 함경도의 형세를 환희 알고 있고, 평안도의 형세도 알게 해야 할 것이며, 고흥산을 보내면 민폐를 없앨 수 있고, 공역(功役)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정부에서는 의주 성을 쌓는 일에 대신을 파견해야 하는데 바로 고흥산을 보내자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중종은 의정부의 말처럼 고흥산을 보내야 하겠으나, 병조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버려 둘 수 없으니, 삼공(三公)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전은 다시 고흥산이 병사(兵事)에 익숙하여 성을 쌓는 일도 일찍부터 고흥산이 아니면 조치를 잘할 수 있을 없을 것이라며, 삼공이 갈 수는 있겠으나 쌓기를 끝낼 때까지 머물러 기다릴 순 없으니 신 등은 고흥산을 보내야 한다고 다시 아뢰었다. 이에 중종이 고흥산이 계속 머물러서 성을 쌓는 공역을 마치게 하려냐고 되물었고, 만약 그러면 병조 판서의 본직(本職)을 갈아야 하는데, 병조는 임무가 중하고 일이 번거로우며 바쁘므로 재상(宰相) 가운데에도 말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고흥산만 못하다고 하면서 안윤덕(安潤德)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전은 안윤덕이 할 만하나 고흥산만 못하고, 고흥산이 가더라도 참관·참의가 있으니 병조의 사물을 보지 않게 버려두게까지 되지 않으므로 고흥산의 병조 판서 본직을 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병조 판서의 본직을 갈지 않는다면 고흥산을 보낼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중종과 영의정 김전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중종의 낮은 주장(畫講)에서 의주의 성 쌓는 문제를 다시 재론하자, 주장에 참여하였던 특진관 고흥산은 “신이 친히 가서 보고 그 형세에 따라 피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친히 의주에 가 볼 것을 청하였다.⁴¹⁰⁾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의주의 성 쌓은 문제가 논의되자, 여기에서도 고흥산은 자신이 친히 가서 보고 나서 어렵과 쉬운 것을 알

410)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1일 丙午.

수 있겠다며, 자신이 친히 의주에 가보겠다는 하였다.⁴¹¹⁾

결국 중종은 고흥산을 의주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고흥산에게 의복과 초피견(貂皮肩)⁴¹²⁾을 하사하였다.⁴¹³⁾ 대사헌(大司憲) 홍숙(洪淑)을 불러 고흥산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일렀다. 그렇지만 『중종실록』에는 홍숙이 중종의 부름을 받고 중종의 타이름을 받고도 고흥산의 파견과 의주에 성 쌓은 것을 중지하도록 다시 아뢰었다고 되어 있어서, 대간들은 의주에 성 쌓은 것을 반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⁴⁾

그러던 중 평안도 감사가 농사를 그르쳤다고 알려오면서, 중종은 고흥산의 의주 파견을 다시 대신들에 의논하게 하였고, 대사헌 홍숙도 다시 고흥산의 파견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⁴¹⁵⁾ 이러한 상황에서 삼공(三公)은 고흥산을 시켜 평안도 재해(災害)의 실상을 살피게 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거든 순변만 한 뒤에 올라오게 하고, 심하지 않거든 적당하게 백성들을 징발하여 의주 성을 다 쌓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¹⁶⁾

고형산은 평안도 감사가 농사를 그르쳤다고 치계(馳啟)하고, 대간도 의주 성 쌓기를 중지하라고 논계(論啟)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멈추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며, 어찌하면 좋을지 중종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중종은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경(卿)은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고흥산은 “신이 외방에 오래 있으면 본조(本曹:병조)의 일이 많이 허술해질 것이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지만, 중종은 “경의 본직은 갈 수 없다. 외방에 오래 있더라도 어찌 두세 달을 넘겠는가?”라고 하였다.⁴¹⁷⁾ 즉 고흥산은 자신이 의주에 파견되면 병조 판서의 직을 갈아달라고 하였지만, 중종은 병조 판서의 직을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411)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3일 戊申.

412) 초피견(貂披肩)은 담비 가죽을 대어 만든 피견(披肩)으로 목으로부터 어깨까지 걸쳐 덮어 입는 능형(陵形)의 피복을 말한다.

413)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4일 己酉.

414)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4일 己酉.

415)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5일 庚戌.

416)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5일 庚戌.

417)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6일 辛亥.

그리고는 중종은 바로 “성을 쌓은 일은 이미 그 도에 일러서 예비하게 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고, 당초에 오늘 보내려 하였는데 대간이 논집하므로 보내지 못하였으나 오늘 떠날 만하면 떠나도록 하라”고 하여, 고흥산이 빨리 평안도에 가도록 독려하였다.⁴¹⁸⁾ 하지만 고흥산의 파견을 정지하라는 대간들의 청은 계속되었고, 대간들은 고흥산의 파견을 고집한 대신들의 행위를 비판하기까지 하였다.⁴¹⁹⁾

이러한 과정 끝에 고흥산은 1520년(중종 15) 9월 7일에 평안도(平安道) 순변사(巡邊使)로 평안도에 파견되었다.⁴²⁰⁾ 중종은 순변사로 파견되는 고흥산에게 전송하는 잔치를 홍제원(弘濟院)에서 차려주기도 하였다.⁴²¹⁾ 그리고 함경도로 파견된 고흥산에게는 성을 쌓은 일과 관련하여 평안도 감사의 계본(啓本)이 도착하자, 그 계본을 베껴 보내고 역사에 동원되는 군인의 수가 적거든 역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민폐가 없도록 힘쓸 것과 감사는 고흥산과 함께 의논하여 살피게 하도록 하였다.⁴²²⁾

사실상 평안도 관찰사(감사)였던 허굉(許礮)과 순변사로 내려간 고흥산의 협력을 당부한 셈인데, 허굉의 서장(書狀)과 고흥산의 서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허굉은 의주에 성을 쌓은 문제 때문에 평안도의 폐해가 매우 염려된다고 하였고, 순변사였던 고흥산은 그 폐해가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⁴²³⁾

두 사람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지평(持平) 황사우(黃士佑)가 성 쌓은 문제를 정지하도록 아뢰자, 중종은 고흥산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은 고흥산은 대신이므

418)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7일 壬子.

419)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28일 癸丑; 29일 甲寅; 9월 6일 庚申.

420) 고흥산이 파견되기 전의 기사(記事)지만, 대간들이 고흥산이 내일 떠날 것이라고 하고 있다(『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9월 6일 庚申). 그리고 고흥산이 평안도(平安道) 순변사(巡邊使)였음이 확인된다(『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1월 13일 丁卯).

421) 원래는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하는 잔치를 차리려다가, 무과(武科) 시험 때문에 홍제원(弘濟院)에서 차려준 것이다(『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7월 7일 丙子).

422)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9월 21일 乙亥.

423)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9월 21일 乙亥; 27일 辛巳.

로, 이미 내려가서 그 일을 주관하므로 성취할 만하면 성취하고, 할 수 없으면 스스로 올라올 것이며, 갑자기 돌아오라고 명하면 일을 성취할 만하더라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유청은 고흥산은 어린 사람과는 다른데 평안도의 폐해가 심하다면 어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며 고흥산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였다.⁴²⁴⁾

이후 고흥산은 두 달여 만인 1520년(중종 15) 11월 13일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복명(復命)하였다.

平安道 巡邊使 高荊山이 復命하니, 思政殿에서 引見하고 이르기를, “義州의 城을 오래도록 쌓지 못했었는데 이제 쌓았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防禦의 상황은 어떤가?”하매, 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가서 보니, 돌이 15리 쯤에 있었으므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겨 監司로 하여금 役軍을 동원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곳 사람이 모두들 ‘우리 祖父 積부터 쌓으려고 했으나 쌓지 못했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겠는가?’하자, 감사·兵使는 모두 어렵게 여겼고 差使員 등도 역시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래도 쌓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마침 日氣가 따뜻하여 겨우 25일 만에 역사를 끝냈습니다. 역사를 잘 감독하지 않은 守令은 바로 泰川縣監 尹希祖·永萊縣令 李昌齡·寧邊判官 徐自通이었으며, 義州牧使 李 芾는 신의 뜻을 體念하여 힘을 다해 감독했습니다. 그리하여 江邊이 모두 튼튼하게 完備되어 함경도의 경우처럼 허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敵들이 노략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權管을 닦할 것이 아닌 것이,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마다 모두 堡를 설치하여 놓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형세가 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節度使 역시 이 폐단을 알고는 있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安州는 險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일 급박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믿을 만한 곳이므로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軍糧이 넉넉하지 못하니 깊이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土軍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堡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보첩 안의 거처하는 곳을 볼 것 같으면 벽에 흠을 바른 집이 없이 모두 하루만 묵어가는 곳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황해도 군사의番禺을 드물게 해주는 일에 관해서는 신이 독단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監司·兵使에게 문의했으나 그들의 의논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논을 하나로 결정하게 했으나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올라왔습니다. 또 土土鎭은 어떻게

424)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9월 27일 辛巳.

고쳐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五萬鎭은 상토진과의 거리가 30리인데 그 사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모두 이곳을 통하여 왕래하고 있으니 本城을 물려서 쌓고 民戶를 더 들여보낸다면 함경도와 聲勢가 서로 의지되어 반드시 상당한 형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신들과 이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소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성품이 순박 정직하고 勤儉하여 남의 비방을 감수하면서 나라 일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錢穀과 軍兵을 다스리는 재능이 더욱 뛰어났었다.⁴²⁵⁾

중종은 의주(義州)의 성을 오랫동안 쌓지 못했는데, 이제 쌓았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면서 고흥산을 치하하였고, 방어의 상황이 어떤지 고흥산에게 물어 보았다. 고흥산은 우선 의주성(義州城)을 쌓은 개요를 말하였는데, 고흥산은 돌이 의주에서 15리쯤에 있어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겨 감사(監司)로 하여금 역군(役軍)을 동원하여 역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곳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여기자, 감사·병사(兵事)·차사원(差使員) 등도 모두 어렵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산은 그래도 쌓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마침 일기가 따뜻하여 겨우 25일 만에 성을 쌓은 역사를 끝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역사를 잘 감독하지 않은 수령과 힘을 다해 감독한 수령들을 아뢰었고, 강변이 모두 튼튼하게 완비되어 함경도의 경우처럼 허술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⁴²⁶⁾

다음으로 고흥산은 방어의 상황과 관련된 일에 관해 아뢰었는데, 평안도 강변의 보(堡) 설치와 배치에 따른 방어 문제와 안주(安州)의 군량(軍糧)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토군(土軍)이 보첩(堡壘)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폐단, 황해도 군사(兵)의 번(番)의 문제, 상토진(上土鎭)과 오만진(五萬鎭)의 수리와 물려 쌓고 민호(民戶)를 더 들여보내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425)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1월 13일 丁卯.

426) 후에 장령(掌令) 어득강(魚得江)은 ‘전일에 고흥산이 감독하여 쌓을 때 역사 독촉이 엄하고 급했기 때문에 기초가 하나도 튼튼하게 되지 못하여 두어 달이 되지 않아 곧 무너졌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때에 분담하여 감독하던 수령들은 이미 파직되었는데, 고흥산만은 그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 丙辰). 당시 고흥산이 역사를 잘 감독하지 않은 수령(守令)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고흥산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면, 고흥산은 평안도 사람들과 감사 및 병사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주성을 쌓은 역사를 추진하였는데, 불과 25일 만에 쌓음으로써 백성들이 고통받는 폐단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의 군사와 방어에 관한 일들도 파악하여 돌아와 중종에게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아뢰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신(史臣)이 논평이 기록되어 있다. 즉 고흥산은 성품이 순박 정직하고 근검하여 남의 비방을 감수하면서도 나라 일에 힘을 다했고, 돈과 곡식, 군병(軍兵)을 다스리는 재능이 더욱 뛰어났다는 것이다. 즉 고흥산은 성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 있었어도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에 힘을 다했으며, 호조와 병조에 관한 일에 남들보다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안도 의주성(義州城)의 축성과 관련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만 4천 83척, 높이가 12척, 우물이 40군데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신증(新增) 부분에서 ‘금상(今上) 15년에 옛 성이 좁으므로 고흥산을 보내어 편부를 두루 살피게 하고 드디어 터를 닦고 고쳐 쌓았는데, 둘레가 2만 7천 5백 31척, 높이가 12척, 동서남북에 모두 문이 있고, 문에는 옹성(甕城)이 있으며, 성 안에 한 개의 못과 43개의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²⁷⁾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의주의 읍성(邑城)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6백 44보(步), 높이가 3장(丈)이고 옹성이 19개, 포루(砲樓)가 10개, 치첩(雉堞)이 23개이고, 4문이 있으며 안에 우물이 35곳, 못이 4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520년(중종 15)에 고흥산을 보내어 터를 닦고 고쳐서 쌓았는데, 동북쪽의 땅 모양은 높이 솟아 있고, 서남쪽은 낮고 평평하다고 기록하였다.⁴²⁸⁾ 따라서 고흥산이 1520년(중종 15) 의주성을 고쳐 쌓으면서 더 넓게 고쳐 쌓고, 동서남북에 모두 문을 내었으며, 옹성까지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53, 義州牧 城廓 州城.

428) 『증보문헌비고』 권30, 여지고 18, 관방 6 평안도 義州.



〈지승(地乘)〉에서 보이는 의주부(義州府)⁴²⁹⁾

평안도에서 돌아온 병조 판서 고흥산은 바로 사직을 청하였다. 사직이 이유는 자신이 병들었고, 또 병조 판서의 직책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었으나, 중종이 고흥산을 힘써 타이르며 사직을 윤택하지 않았다.⁴³⁰⁾

고형산은 또 평안도에서 돌아오면서 관방(關防)에 긴급하지 않은 진보(鎭堡)를 혁파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뢰었는데, 중종은 이 문제를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고흥산은 대신들이 의논할 때 이 의논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은 채 좌우의 의논만을 보고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³¹⁾

이즈음 고흥산은 이장길(李長吉)의 등용과 관련하여 사신(史臣)의 비판을 받아 『중종실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장길은 연산군 때 장녹수(張綠水)에게 빌붙었다는 이유로 서용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었는데, 이때 평안도(平安道) 우후(虞候)에 제수되었다.⁴³²⁾ 대간들은 이장길의 임명을 비판하였고,

4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430)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1월 16일 庚午.

431)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1월 21일 乙亥.

사신은 이때 이장길이 병조 판서 고흥산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부하자, 고흥산이 그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의 능력만을 취하여 평안도 우후에 의망(擬望)하였고, 마침내 제수되어서 당시 공론(公論)이 매우 격분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⁴³²⁾

그렇지만 이장길은 이미 전에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였고, 이장길의 아내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이에 중종이 의정부와 6조 대신들에게 이장길과 관련된 일을 의논하게 하여, 이장길이 장녹수에게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우 이장곤(李長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다.⁴³³⁾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평안도에 다녀온 고흥산은 이장길의 등용을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무신은 金粹潭·趙賢範인데 이미 내지의 수령으로 나가 있고 문신에는 礪頤杵·崔世節·金世準·李芑 등이 모두 武才가 있습니다. 이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무재가 쓰일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자못 武事に 관하여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대저 兩界의 軍務는 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임무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산천의 높고 낮음과 도로가 평탄하고 험함을 몸소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을 어찌 다른 사람을 시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건장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연습을 시키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모든 事業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구애 없이 단지 人器가 합당하다는 것만으로 不次擢用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이 근래 兩界에 갔을 때 비록 높은 데 올라가 관망해야 할 곳이 있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는 데야 어찌겠습니까? 李長吉은 무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의 才幹은 훌륭하여 현재로서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그가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 온 지 오래인데 근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소위를 살펴보니 計策이 참으로 뛰어났었습니다. 이제 대간이 그의 행실에 그릇된 점이 많다는 것으로 논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內人에게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

432)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1월 30일 甲申.

433)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일 乙酉.

434)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15일 丁卯;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6일 庚子.

한 것이 아니라 아우 長坤을 구제하고 家門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적에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았었습니다만, 公論이 저러하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길의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도 모두 애매하다 하니 그 인물을 廢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간이 아뢴 것을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하였다.⁴³⁵⁾

고형산이 이장군에 대해 말하기 전에, 종종은 평안도와 황해도 각 고을의 군사와 군기(軍器) 등을 예비하는 일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고형산은 힘을 다해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대응하는 것과는 그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모름지기 장수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군졸들이 우러러 볼 데가 있게 하고 모든 기무(幾務)를 위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형산은 현재 장수에 적당한 사람이 부족한 형편을 들고, 무신인 김수담(金粹潭)·조현범(趙賢範), 무재가 있는 문신인 반석평(潘碩枰)·최세절(崔世節)·김세준(金世濬)·이기(李芑) 등을 열거하면서도, 무신 당상(武臣 堂上)의 숫자가 적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⁴³⁶⁾ 양계(兩界)인 평안도와 함경도의 군사 업무는 노인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을 들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산천의 높고 낮음과 도로가 평탄하고 험함을 몸소 답습해야 하므로, 반드시 건장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연습을 시키고 모든 사업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형산은 이러한 사람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구애 없이 단지 사람의 됨됨이, 도량과 재량이 합당하면 습급의 차례를 밟지 않고 특별하게 벼슬에 등용하여도 무방하다는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신의 경험을 들었는데, 근래 양계에 갔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 관망해야 할 곳도 자신이 늙고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장길은 무예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의 재간(才幹)은 홀

435)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5일 己亥.

436) 종종은 고형산이 무신 당상(武臣 堂上)의 숫자가 적다고 한 문제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6일 庚子).

를하여 현재로선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이 근일 함께 다니면서 이장길의 소위를 보니 계책이 참으로 뛰어났다는 것이다. 고흥산은 이장길에 대한 공론은 비록 좋지 않지만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였고, 종종도 이장길의 일에 대해 대신들도 모두 애매하다고 하여 그를 폐기할 수 없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보면, 사신(史臣)이 이장길이 고흥산에게 아부하여 관직을 얻었다는 비판은 과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망(擬望)이란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은 임금이 하게 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장길에 행실에 대해서는 대신들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미 이장길의 상소와 이장길의 아내의 청원으로 가문과 동생인 이장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상황이었다. 결국 고흥산은 이장길의 재주와 능력을 평가하여 의주성을 쌓는데 써보았고⁴³⁷⁾, 평안도와 함경도의 험한 변방에서 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흥산은 인물의 능력에 따른 인사추천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⁴³⁸⁾

고형산은 69세가 된 1521년(중종 16) 1월에도 사직을 네 번이나 아뢰었으나, 종종은 고흥산의 사직을 윤택하지 않았다.⁴³⁹⁾ 이에 병조 판서 고흥산은 당령수군(當領水軍)⁴⁴⁰⁾을 산대(山臺)⁴⁴¹⁾의 역사에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관해 아뢰었고, 전례를 상고하여 산대의 역사에 동원할 당령수군의 숫자를 정하기도 하였다.⁴⁴²⁾

437) 이장길(李長吉)이 의주성(義州城)을 쌓을 때에 일을 잘 조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고흥산이 이장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재간을 시험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6일 庚子).

438) 종종은 이장길의 일은 그가 전일 상소를 올려 변명하였고, 그때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에게 수의하였더니, 모두 그가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우 이장곤(李長坤)을 구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하였다면서, 그의 서용(敍用) 문제를 의정부에 물어보도록 하였다(『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6일 庚子).

439)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1월 13일 丙寅.

440) 당령수군(當領水軍)은 번상(番上)의 차례가 되어 근무 중에 있는 수군(水軍)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하번(下番)한 수군은 하령수군(下領水軍)이라 하였다.

441) 산대놀음을 하기 위하여 넓은 길가나 빈터에 높이 대를 쌓아 마련한 임시 무대를 말한다.

442)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1월 13일 丙寅; 14일 丁卯.

한편 이즈음 사헌부는 병조 참의(兵曹 參議) 김호(金瑚)가 상관(上官)을 무시하고 낭관(郎官)을 불신하였다면 논박하였다. 그런데 사헌부는 대신들이 대간들의 논박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논박 받은 인물을 비호하고 억지로 구제하려 한다면서 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심하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사헌부는 대신들이 병조 판서인 고흥산을 사주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찬동하게 하였는데, 고흥산 역시 그들의 의논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대간의 말을 저지하기에 힘썼다며 이유청을 비롯한 대신들 및 고흥산까지 논박하였다.⁴⁴³⁾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은 이유청은 사직을 청하면서 김호에 대해서는 모두들 쓸만하다고 하고 또 열병(閱兵)할 때 그의 재기(才技)를 알았으며, 따라서 고흥산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의 인물 됴됨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을 뿐, 평소에 고흥산과 의논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⁴⁴⁴⁾ 따라서 앞의 사헌부가 고흥산에 대해 부화뇌동 운운한 것은 사헌부의 오해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고형산은 또한 흉년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상환곡(償還穀)을 지체 없이 힘써서 걷어 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고흥산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나라에는 반드시 곡식이 저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백성에게 나눠 준 환상곡(還上穀)을 독축해 받자는 것은 이를 다른 곳에 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토목공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⁴⁵⁾ 즉 백성들에게 나눠 줬던 곡식을 거둬들여 흉년이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쓸 국가의 용도를 저축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고흥산에 대해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고흥산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443)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5일 戊子.

444)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8일 辛卯.

445)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24일 丁未.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용모가 범상치 않아서 身長이 8~9척이고 배가 두어 아름다워 된다. 술은 서너 말을 충분히 마시지만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고, 마음가짐이 근검한데다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훌륭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政績을 쌓아 직분을 잘 수행한다는 칭송이 있었다. 또 그는 변방 산천에 대한 險夷와 도로의 通不通에 대해서도 두루 알고 있었다. 따라서 군량과 군대를 충분히 예비하고 변방을 삼가 굳게 지키자는 것이, 그가 내세우는 持論이었다.⁴⁴⁶⁾

사신은 고흥산에 대해 논평하기를, 그가 신장이 8~9척에 배가 두어 아름다워 나 되어서 용모가 범상치 않았다고 하였다. 또 술을 서너 말 충분히 마시지만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고, 마음가짐이 근검하였으며,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훌륭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직 기간 중 업적을 쌓아 직분을 잘 수행한다는 칭송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고흥산은 변방의 산천에 대한 험이와 도로의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량과 군대를 충분히 하여 예비함으로써 변방을 굳게 지키자는 것이 고흥산이 내세운 지론이었다고 하였다.

고형산의 술과 음식에 대한 일화가 『기재잡기(寄齋雜記)』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판서 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 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 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子和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삐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446)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24일 丁未.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 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들었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447)

고형산은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 분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선 『중종실록』에 고형산의 ‘배가 두어 아람이나 된다’는 것과 비슷하다. 또 고형산은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음을 알 수 있고, 주량은 한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호조에 있을 때의 일화를 적어 놓았는데, 모화관(慕華館)에서 이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술상을 차렸으나, 전송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차려놓은 술상의 안주를 두어 젓가락 먹었더니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셨더니 한 동이가 다 비워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녹사(錄事), 서리, 하인들도 마시게 하면서 반드시 대작하였는데, 이를 보아 고형산의 소탈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해 돌아갔다는 것이다.

1521년(중종 16) 1월 사직을 청했던 고형산은 두 달 뒤인 3월에도 늙고 병이 많아서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⁴⁴⁸⁾ 고형산은 다시 두 달 뒤인 5월에 노병(老病)으로 사직하였으나 역시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⁴⁴⁹⁾ 고형산이 이렇게 거듭 사직을 청한 것으로 볼 때, 이 즈음 고형산은 많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중종의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환(老患)이었던 것 같다.

447) 『寄齋雜記』 2, 歷朝舊聞 2, 中宗; 『연려실기술』 권지9, 中宗朝故事本末 中宗朝相臣.

448)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3월 26일 戊寅.

449)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5월 18일 己巳.

사직을 운허받지 못한 고행산은 국정 문제에 계속 참여하였는데, 당시 명나라에서 사신(使臣)과 칙서(勅書)을 보내 어린 화자(火者:고자)와 여자들을 요구하자, 화자와 여자를 뽑는 일 및 칙서에 회답하는 문제를 대신들과 논의하기도 하였다.⁴⁵⁰⁾ 또한 제주도에서 해상을 다니는 배가 왜적을 만나 7척이나 부서진 일과 관련하여 전라우도수사(全羅右道水使) 김양필(金良弼)과 달량만호(達梁萬戶) 정위(鄭偉)를 추고할 것과 병사(兵事)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임명하여 보낼 것을 아뢰어 운허를 받기도 하였다.⁴⁵¹⁾

고행산은 그해 6월 다시 사직을 청하였는데, 사직을 청한 이유가 『중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병조 판서 고행산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本職을 차지한 지 벌써 4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非違가 실로 많았습니다. 5~6개월 지나면 신의 나이 70이 다 됩니다. 重器에 흠을 남긴 후에 물러간다면 去就의 도에 어그러지고 사체에도 손실이 많으므로 감히 사퇴합니다.”하였으나 좃지 않았다.

고행산은 자신이 병조 판서 등에 있는 것이 벌써 43개월이라고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법에 어긋난 일이 많았다고 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6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나이가 70이 된다고 하여, 칠순 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나라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흠을 남긴 후에 물러나는 것은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체에도 손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종은 이러한 고행산의 계속된 사직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450)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5월 24일 乙亥; 26일 丁丑; 6월 2일 壬午.

451)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6월 13일 癸巳.

6)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사복시(司僕寺) 제조(提調),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

고형산의 거듭된 사직 요청을 윤택하지 않던 중종은 고형산이 사직을 청한 바로 그날 오히려 고형산에게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제수한다(1521년 6월 15일).⁴⁵²⁾ 우찬성은 의정부의 중1품의 관직으로, 의정부는 영·좌·우의정(정1품, 각 1인), 좌·우찬성(중1품, 각 1명), 좌·우참찬(정2품, 각 1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형산은 우찬성이 되자, “신이 조정에 있는 지 39년에 조금도 공적이 없는데 감히 본분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관작에 초탁(超擢)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만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이 외람되게 차서를 뛰어 임용되었으니 실로 황공함이 더할 뿐입니다. 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 물론(物論)이 있을 것이니 스스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감히 사직합니다.”라고 하여 다시 사직을 청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경이 조정에 있는 지 이미 오래이나 어찌 이상(貳相)⁴⁵³⁾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인기(人器)와 직차(職次)가 서로 합당하기 때문에 초천(超遷)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고 하여 사직을 윤택하지 않았다.⁴⁵⁴⁾

우찬성이 된 고형산은 국정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데 계속 참여하였다. 즉 명나라 사신에 대한 중종의 영위연(迎慰宴) 참석과 연기 문제,⁴⁵⁵⁾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도감(都監) 낭관(郎官)을 교체하는 문제,⁴⁵⁶⁾ 추자도(楸子島)에 왜구가 침몰하자 방어하는 사람을 죄주는 것과 왜구의 수도 문제,⁴⁵⁷⁾ 명나라 요동의 자문(咨文)의 내용에 회답하는 문제,⁴⁵⁸⁾ 명나라에 성절사(聖節使)를 파견하

452)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6월 15일 乙未.

453) 조선 시대 삼정승(三政丞) 다음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을 이르는 말이다.

454)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6월 15일 乙未.

455)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6월 20일 庚子. 이때 이조 판서(吏曹 判書) 홍경주(洪景舟)가 죽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는데, 명나라 사신에 대한 연락(宴樂)을 중종이 참석하여 예정대로 하는 것은 예절이 아니라며 연기하여 실시(6월 22일)하였다.

456)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6월 25일 乙巳.

457)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7월 8일 丁巳.

는 문제,⁴⁵⁹⁾ 명나라 사신이 요청한 도감 낭관을 승진시키는 문제,⁴⁶⁰⁾ 명나라 사신의 짐을 국경을 넘어서 수송하는 문제와 각 도에 재해로 농사에 피해를 입은 것을 조처하게 하는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⁴⁶¹⁾

고형산은 또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사복시 제조(司僕寺 提調)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증중에게 전라도·함경도에 말을 점검하는 점마경차관(點馬敬差官)을 파견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⁴⁶²⁾ 사복시 제조를 겸임하던 고형산은 목장(牧場)을 옮겨 설치하는 일로 충청도에 가게 되었는데, 김전(金詮)과 남곤(南袞)은 전라도의 조운선(漕運船)이 번번이 안흥량(安興梁)에서 전복된다고, 고형산이 가는 김에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개척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여 증중의 허락을 받았다.⁴⁶³⁾ 이에 증중은 고형산을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를 임명하여 겸임시키면서(1521년 8월 25일), 고형산에게 조운(漕運)의 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편부(便否)를 살펴보도록 하교를 내렸다.⁴⁶⁴⁾

三道體察使 고형산에게 하교하였다. “... 생각건대, 卿은 청렴 검소한 것으로 몸을 다스리고, 온화 상냥한 것으로 남을 접대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는 주도면밀하고, 局量은 너그럽고 크다. 나라를 내집같이 근심하여 충성되고 간절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부지런하고 勞苦함이 국가에 현저하다. 크고 작은 직임에 不器의 名聲이 있으며, 모나거나 둥근 일에도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간이 있다. 오랫동안 병조 판서의 직책을 맡아서는 九法이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의정부의 贊成으로 있어 四輔에 어진이 얻은 것이 기쁘다. 무릇 직무에 임하여 정성을 다하므로 일을 맡길 수 있어 이에 경에게 삼도 체찰사의 임무를 맡기노니, 경은 위로는 나라의 大計를 위하고, 아래로는 여론을 採納하여 가깝고 작은 功을 구하지 말고 모름지기 떳떳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

458)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7월 16일 乙丑.

459)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7월 22일 辛未.

460)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7월 25일 甲戌.

461)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6일 乙酉; 20일 己亥.

462)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6일 乙酉.

463)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20일 己亥.

464)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25일 甲辰.

우라. 백성을 부역시키는 일이 重難함을 생각하며, 또한 옛것을 고치는 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더구나 漕轉이 어려운 것은 실로 국가의 병폐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利害가 있는 점을 연구하고, 功利의 나뉘음을 계산하라. 이런 일은 경과 같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가 해내겠는가. 가서 便否를 자세히 살펴서 事由를 갖추어 陳奏하라. 내 그 아름다운 계책을 받아 들어서 큰 공적을 이루고자 한다. 아아, 漕運이 길을 얻으면 백성은 永世의 편의를 힘입을 것이고, 지키고 防禦하는 것이 方策이 있으면 나라는 長城을 쌓는 것처럼 견고함을 누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에 敎示하는 것이니 자세히 알기 바란다.” ...465)

이 하교문은 지제교(知製敎) 오세창(吳世昌)이 중종의 명을 받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고흥산에 대한 인식을 반증하고 있으며, 당연히 중종의 검토를 받아 고흥산에게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흥산에 대해서 청렴 검소한 것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온화 상냥한 것으로 남을 접대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는 주도면밀 할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재주가 너그럽고 크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더욱이 고흥산은 나라를 내집같이 근심하여 충성되고 간절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부지런하며 수고하여 애씀이 국가에 현저하다고 하였다.

고형산은 불기(不器), 즉 크고 작은 직업에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그릇이라는 명성이 있으며, 모나거나 둥근 일에도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병조 판서의 직책을 맡아서는 구법(九法)이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의정부 찬성(贊成)으로 있어 사보(四輔)에 어진이 얻은 바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⁴⁶⁶⁾

고형산에게 삼도체찰사의 임무를 맡기면서, 위로는 나라의 큰 계획을 위하고, 아래로는 여론을 받아들여 가깝고 작을 공(功)을 구하지 말고 모름지기 떳떳하

465)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25일 甲辰.

466) 구법(九法)은 『서경(書經)』 홍범(洪範)편에 나오는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법칙, 즉 오행(五行)·오기(五紀)·오사(五事)·팔정(八政)·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이다. 사보(四輔)는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편에 나오는 것으로, 전후좌우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벼슬로, 좌보(左輔)·우보(右輔)·전의(前疑)·후승(後丞)이다.

고 원대한 계책을 세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부역시키는 일이 중대하고 어려운 것임을 생각하며 옛 것을 고치는 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더구나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조전(漕轉)이 어려운 것은 실로 국가의 병폐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이해(利害)가 있는 점을 연구하고, 공리(功利:공명과 이익)의 나뉘는 계산을 계산하라고 하였다. 또한 고흥산이 가서 편부(便否)를 자세히 살펴서 사유를 갖추어 진주(進奏)하면, 중종이 그 아름다운 계책을 받아 들어서 큰 공적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운(漕運)의 길을 얻으면 백성은 영세(永世)의 편의를 힘입을 것이고, 나라는 장성(長城)을 쌓는 것처럼 견고함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고형산은 삼도체찰사가 되어 하삼도(下三道)인 충청도·전라도·경상도로 떠나기 전에 중국과 금지 물품인 금은(金銀)을 무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여기에서 은(銀)을 채취하는 곳에 관원을 보내서 감독하여 채취하고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國用)에 쓰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⁴⁶⁷⁾ 한편 대간들이 고흥산의 파견을 반대하였지만, 대신들은 하삼도에 체찰사를 보내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고 하여 고흥산의 파견은 그대로 진행되었다.⁴⁶⁸⁾

고형산이 언제 하삼도에 출발하였다가 언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진 않다. 고흥산의 종사관(從事官) 윤지형(尹止衡)이 12월 15일에 전라도에서 있었던 일로 대간의 논박을 받고 사직을 청하고 있고, 고흥산이 12월 28일에 다시 호조 판서(戶曹 判書)에 임명되기 때문에 1521년(중종 16) 9월부터 12월 중순에 하삼도를 다녀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⁴⁶⁹⁾

고형산은 하삼도에 내려갔을 때 경상도 수영(水營)을 동래(東萊) 해운포(海雲浦)로 옮기는 것을 살펴보고 치계(馳啟)하기도 하였다. 즉, 병조에서 정덕(正德) 16년(1521년, 중종 16)에 순찰사(巡察使) 고흥산이 경상도 수영(水營)을 옮기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하고 있다.⁴⁷⁰⁾

467)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27일 丙午.

468)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27일 丙午.

469)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2월 15일 癸巳; 28일 丙午.

470)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2월 12일 辛丑.

고형산이 하삼도에 갔을 때인 1521년 10월 11일 관상감 관관(觀象監 判官) 송사련(宋祀連)·학생(學生) 정상(鄭瑞)이 모반 사건을 고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⁴⁷¹⁾ 송사련은 자신에게 외삼촌과 외사촌에 해당하는 전 좌의정 안당(安瑯)과 그 아들인 안처겸(安處謙)·안처근(安處謹)·안처함(安處誠), 중실 인물인 시산정(詩山正) 이정숙(李正叔) 등을 포함하여, 이들이 먼저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대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중이 윤택하지 않을 경우 중중을 폐출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소위 신사무옥(辛巳誣獄)이 발생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금릉수(金陵守) 이금산(李金山)의 첩자(妾子) 이학년(李鶴年)이 28차례 형장을 받고 공술하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진(金詮)·남곤(南袞)·조계상(曹繼商)·김근사(金謹思)·고형산(高荊山)·장순손(張順孫)·성운(成雲)·이환(李玆)이었다고 하였다.⁴⁷²⁾

이후 고형산은 이학년과 서원정(西原正) 이구(李珣)가 형제간임에는 틀림없으나 연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하삼도에서 올라온 이후로 생각된다.⁴⁷³⁾

7) 호조 판서(戶曹 判書),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 특진관(特進官), 순변사(巡邊使), 비변사(備邊司) 제조(提調) 및 당상(堂上)

1521년(중종 16) 12월 28일 고형산은 다시 호조판서로 제수되었다.⁴⁷⁴⁾ 여덟 번째 장관직이자 호조 판서는 다섯 번째였다. 고형산은 70이 된 해인 1522년(중종 17) 1월 2일 나이가 70이 찬 것 때문에 치사(致仕)⁴⁷⁵⁾하였으나, 중종은 사직

471)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0월 11일 己丑.

472)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0월 17일 乙未. 신사무옥(辛巳誣獄)의 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을 비롯하여 권진·이경숙·이충건·이약수·조광좌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다음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473)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2월 25일 癸卯.

474)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2월 28일 丙午.

475) 치사(致仕)는 《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에 “대부(大夫)는 70에 치사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 말라는 전교를 하면서 궤장(機杖), 즉 팔걸이 의자인 궤(機)와 지팡이(杖)를 하사하였다.⁴⁷⁶⁾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의하면 찬성(贊成) 고흥산, 참찬(參贊) 조원기(趙元紀), 참찬 안윤덕(安潤德), 판서(判書) 임유겸(任由謙), 지사(知事) 이자견(李自堅), 동지(同知) 정수강(丁壽岡), 동지 이맥(李陌) 등이 모두 나이 70에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들이 낙사(洛社)의 옛일에 의거하여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으며, 그 뒤부터 재상이 나이 70이 되면 으레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다.⁴⁷⁷⁾

중종이 궤장을 내리려 하자, 고흥산은 이를 사양하면서 “특별히 신에게 본직(本職)을 제수하여 감격됨을 견딜 수 없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신의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 많고 번잡한 문서들을 잘 보지 못하니, 국사를 그르치게 될까 싶습니다.”고 하여 다시 사직의 뜻을 아뢰었다.

그렇지만 중종은 “경은 일찍이 호조 판서를 지냈는데, 호조는 다른 조(曹)의 예와 같지 않아, 경비를 조달함과 흉년 구제 같은 일들을 일찍이 지내본 사람이 아니면 두루 알지 못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다시 또 전교하여 고흥산의 사직을 불허하였다.⁴⁷⁸⁾

중종이 고흥산에 대한 궤장 하사와 관련하여 사헌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이 70이 됐는데도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궤장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고흥산의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하다고 여길 수 없으므로 궤장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였다.⁴⁷⁹⁾ 『중종실록』에는 이러한 사헌부의 반대 기사 다음에 서로 다른 사신(史臣)의 논평이 2개가 실려 있다.

476)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2일 庚戌. 후에 영사(領事) 남곤(南袞)은 백관들의 녹봉이 부족하자, 고흥산이 호조 판서였을 때 공물(貢物)을 쌀과 바꾸어 사용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중종실록』 권54, 중종 20년 7월 22일 己卯).

477) 『패관잡기』 4. 낙사(洛社)는 낙사기영회(洛社耆英會)로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이 서도유수(西都留守)로 있을 때 부필(富弼)의 집에서 연로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풀어 서로 즐겼던 모임을 말한다.

478)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2일 庚戌. 후에 영사(領事) 남곤(南袞)은 백관들의 녹봉이 부족하자, 고흥산이 호조 판서였을 때 공물(貢物)을 쌀과 바꾸어 사용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중종실록』 권54, 중종 20년 7월 22일 己卯).

479)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 丙辰.

사신은 논한다. 형산은 사람됨이 오직 財利만 힘써 1품까지 올라갔고, 나가거나 들어옴이 큰 관계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있는 것이다.

또 논한다. 형산은 오래 호조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비록 재리를 힘쓰는 병폐는 있었지만, 국가 일에 성실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구득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⁴⁸⁰⁾

첫 번째 사신의 논평은 고흥산의 사람됨이 오직 재물과 이익에만 힘써서 1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나가거나 들어옴이 큰 관계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있는 것이리라고 하였다. 즉 고흥산이 호조 판서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일에 매우 뛰어났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재정과 이익만을 힘써왔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루하고 낮게 보는 관점에서 쓴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영은 호구를 파악하고, 세금 등을 걷어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은 편협한 것이다.

두 번째 사신의 논평 역시 고흥산이 오랫동안 호조 판서로 있으면서 비록 재물과 이익에 힘쓰는 병폐는 있었다고 하여 첫 번째 사신의 논평의 관점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하지만 고흥산이 국가의 일에 성실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구하여 얻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논평에서 말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고흥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성실하게 애쓴 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얻기 쉽지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

중종은 사헌부의 비판에 대해 역시 『경국대전』을 인용하여 ‘나이 70이 되면 마땅히 궤장을 내린다.’고 했다면서 고흥산은 조정이 이미 의지하는 바가 중한 사람이고, 또 찬성을 지냈으니 도로 정지할 수 없다고 하여 궤장을 그대로 하사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480)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 丙辰.

고형산은 다시 호조 판서가 되었지만, 그의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의 임무는 완료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사헌부가 고형산에게 궤장을 수여한 것을 비판했던 같은 날, 고형산은 삼도체찰사로서 '태안(泰安)의 안항량(安恒梁)·의항(蟻項)을 굴착하여 조운선(漕運船)이 통행하도록 한다면 침몰하는 화를 면할 수 있어 만세토록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수군(水軍)을 동원하여 굴착할 것'을 청하여 증중으로부터 윤허를 받았다.⁴⁸¹⁾ 고형산이 충청도 태안의 안항량(안행량(安行梁), 안흥량(安興梁)과 의항(관목, 개목, 개미목)의 형세를 살펴보고 와서 건의한 것이다.⁴⁸²⁾

후에 영의정 장순손(張順孫)은 조운(漕運)과 관련된 일이 언급되면서 고형산이 순찰사(巡察使)로서 지형을 살펴보고 개펄을 뚫었으나,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⁴⁸³⁾ 그런데 당시 고형산의 관직은 순찰사가 아니라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였다. 고형산이 개펄을 뚫었다는 것은 안행량(安行梁)에 새로 수로(水路)를 파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기하는 계획이었는데, 고형산이 맨 먼저 그 계획을 올려 그 기지(基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부 3천 명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완공이 되었으나 끝내지 못한 것을 말한다.⁴⁸⁴⁾

충청도의 안행량은 안흥량(安興梁)으로, 고대부터 조운선(漕運船)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이었다. 이에 1134년(고려 인종 2)에도 태안반도에 인공으로 굴포(堀浦) 운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나 암반 때문에 실패하였다. 고형산 역시 운하를 거의 완성하였으나 암반 때문에 끝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⁵⁾

481) 『증중실록』 권43, 증중 17년 1월 8일 丙辰.

482) 『증중실록』 권82, 증중 31년 9월 27일 己卯.

483) 『증중실록』 권75, 증중 28년 6월 12일 癸未.

484) 『증중실록』 권82, 증중 31년 6월 16일 己亥.

485) 안흥량(安興梁)의 굴포(堀浦) 운하 건설 문제는 1536년(중종 31)과 1584년(선조 17)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증중실록』 권82, 증중 31년 6월 16일 己亥; 『선조실록』 권18, 선조 17년 4월 26일 壬申). 그러나 굴포 운하 건설은 무위로 끝나게 되고 인조 때 굴포 운하 대신에 관목 운하(의항 운하, 개목 운하)를 개통하게 되었다.



〈안흥량과 굴포운하, 판목운하〉 ※지도 재작성 요망

또한 고흥산은 삼도체찰사로 파견되어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경상도의 수로(水路)까지 두루 살펴보았던 것 같다. 고흥산은 뒤에 남해(南海)·거제(巨濟)·진도(珍島) 세 고을의 수로를 지나 보았다며, 배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으니, 관에서 둔 나룻배의 사공으로 하여금 감시하여 사사로의 드나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⁴⁸⁶⁾

486)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24일辛丑.

한편 사헌부에서는 고흥산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비판을 하였다. 즉 고흥산은 몸이 아직도 강건하고 현재 육경(六卿)에 있으니 나이가 늙어 기동할 수 없는 사람의 유가 아니고,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하 처지도 아니라며 궤장을 내리는 일을 정지하라고 하였다.⁴⁸⁷⁾

중종은 사헌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고흥산에게 궤장 내리는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⁴⁸⁸⁾ 이에 영상(領相) 김전(金詮)은 고흥산은 나라 일 하기를 힘써왔고 조정에 선 지 이미 오래인 데다 나이 70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궤장을 내리셔야 한다면서 자신은 대간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좌상(左相) 남곤(南袞) 역시 고흥산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보필하여 변방 일이나 전곡(錢穀) 일 같은 것은 모두 고흥산에게 물어야 하는데, 형산이 만일 치사(致仕)한다면 국가에 지장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진실로 마땅히 궤장을 내려 만류해야 하니, 자신은 대간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우상(右相) 이유청(李惟淸) 역시 고흥산은 마음을 다해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해 왔으므로 마땅히 궤장을 내리야 하니, 대간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⁴⁸⁹⁾ 이를 보면 삼정승들은 고흥산의 공로를 보아 그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간들의 비판과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정승의 뜻은 이와 같았지만, 대간들의 비판이 있자, 고흥산은 궤장을 하사하는 일을 거두고, 자신의 사직을 받아달라는 청을 하게 되었다. 고흥산은 조정에 봉사한지 40년이나 되었다고 하면서도 중종이 궤장을 내리도록 하였을 때 그때 즉시 사양한다고 청하고 싶었지만 임금의 분부가 정년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노쇠한 병이 이미 심하여 일에 임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즉각 사임을 청하고 싶었지만 임금께서 자못 간절하고 지극하게 분부를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흥산은 다시 사직을 청하였다.⁴⁹⁰⁾

487)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1일 己未; 12일 庚申.

488)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2일 庚申.

489)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3일 辛酉.

490)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7일 乙丑.

고형산이 이렇게 궤장을 하사하는 일을 거두고, 자신의 사직을 청하자, 중종은 “대간이 경(卿)의 호조 판서의 소임을 논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궤장 내리는 일을 논계한 것이다. 또한 경의 직위가 비록 삼공(三公)에 이르지 않는 못했지만 노성한 덕망이 있는데 어찌 또 궤장을 사양할 것 있겠는가?”라고 전교하였다. 그렇지만 고형산이 재차 사양하고 사직을 청했지만 윤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형산에게 술을 내렸다.⁴⁹¹⁾

마침내 중종은 호조 판서 고형산에게 궤장을 하사하고,⁴⁹²⁾ 그 교서를 내렸다.

한 나라의 안위는 관계되는 바가 중하여 대신의 去就는 가볍게 할 수 없는 법인데, 어찌 나이를 끌어대어 쉬기를 청하여 한가히 있으며 스스로 편하려 하는가? 卿은 마음가짐이 근신하고 정성스러우며 일에 임함이 충실하고 근간하여 누대의 조정에 내리 베풀하며 종시 태만하지 않았고, 寡德한 나를 보필하게 되면서는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더욱 노력하여, 국가만 생각하고 가사는 잊으므로 이미 당시의 명망을 지니게 되었고 겸손하게 몸을 가져 깊이 옛사람다운 기풍을 체득했었다. 바야흐로 정치를 함께 하며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준례에 구애되어 소청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특별히 궤장을 내려 존대하고 편케하는 뜻을 표하노라. 귀나 눈의 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도 機務를 감당할 수 있는데다가 諮詢는 반드시 耆舊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사로운 심정을 들어주기 어렵노라.⁴⁹³⁾

중종은 고형산이 마음가짐이 근신하고 정성스러우며 일에 임함이 충실하고 근간하여 누대의 조정에서 내리 베풀하며 종시 태만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을 보필하게 되면서는 더욱 노력하여 국가만 생각하고 가사는 잊으므로 이미 당시의 명망을 지니게 되었고, 겸손하게 몸을 가져 깊이 옛 사람다운 기풍을 체득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를 함께 하며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준례에 구애되어 사직의 소청을 들어줄 수 있느냐며, 특별히 궤장을 내려 존대하고 편안케 하는 뜻을 표현

491)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7일 乙丑.

492)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중종 때 찬성 고형산에게 궤장을 하사한 것이 쓰여 있다(『증보문헌비고』 권228, 직관고 15, 부록 賜機杖).

493)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18일 乙未.

다고 하였다. 귀나 눈의 충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 기무(幾務)를 감당할 수 있는데다가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노성한 신하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고흥산이 사직하고 싶은 사사로운 심정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였다.

고형산은 호조 판서뿐만 아니라 특진관(特進官)을 계속 겸하고 있었다. 특진관 고흥산은 말이 줄어들어 마적(馬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흉년 때문에 점마(點馬)를 보내지 않아서 마정(馬政)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 임금이 타는 어승마(御乘馬)를 여진인들이 바치는 것으로 구할 것 등 마정(馬政)과 관련된 의논을 하였다.⁴⁹⁴ 그리고 남해(南海)·거제(巨濟)·진도(珍島)에 유배된 죄인들이 도망가는 폐단과 그 대책,⁴⁹⁵ 경상도 미조항(彌助項)의 진(鎭) 설치와 각 진의 개혁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⁴⁹⁶

그런데 고흥산은 자신이 쌓았던 의주성(義州城)이 무너진 것, 미조항 설치 논의가 부정적인 것,⁴⁹⁷ 경창(京倉)의 곡식을 독촉하여 받아들인 것 등에 있어서 비판을 받자 다시 사직을 청하게 되었다. 고흥산은 안질(眼疾: 눈병)이 있는데다 귀도 어두우며, 지려(志慮)⁴⁹⁸가 쇠퇴하고 다리의 힘이 약해졌으나 치사(致仕)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억지로 벼슬에 있었는데, 근래에 나이가 더욱 늙고 생각이 더욱 졸렬해졌다며 자신이 생각을 잘못하여 공론(公論)에 죄를 얻었으니 직에 있기 미안하다면 감히 사직을 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경(卿)의 나이가 과연 많아졌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경에게 그 직을 제수한 것은 자기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론에 따른 것이고, 호조는 진실로 적임자를 얻기 어려워 경이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산은 재차 사직하였으나 중종은 윤택하지 않았다.⁴⁹⁹

494)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10일 丁亥.

495)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24일 辛丑.

496)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3월 12일 己未.

497) 미조항(彌助項)의 축성에 대해 간원들은 극력 반대하였으나, 후에 왜변(倭變)이 계속되자 처음 고흥산의 주장처럼 축성이 완료되었다(『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2월 12일 辛丑).

498) 지려(志慮)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499)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3월 13일 庚申.

한편 고흥산이 병조 판서였을 때 무사 선발시에 육량전(六兩箭)을 쏘므로 해서 무사들이 팔뚝을 상하는 폐단을 지적하여 그 시행을 개정한 적이 있었다.⁵⁰⁰⁾ 이것이 5~6년 정도 지나면서 또다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즉 무사들이 단지 과녁만을 맞히고 기사(騎射)하는 따위의 기예만 일삼고, 육량전에는 전혀 공력을 들이지 않으므로 강궁(強弓)을 당기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이 많이 급제하게 되고 근력과 응재(雄才)가 있는 사람이 하등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중종은 이러한 비판이 있자 다시 대신들과 상의한 끝에 무과(武科) 및 일체 무재(武才) 시험에 육량전을 전과같이 사용하게 하였다.⁵⁰¹⁾ 그러나 원래 고흥산이 육량전 문제를 지적한 것은 무사들의 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옛 법을 갑자기 고칠 수 없다면서 원래 거리 80보가 아니라 20~30보 가량을 물려서 쏘게 하도록 아뢰는 것이었으며, 중종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고흥산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한 것이었다.⁵⁰²⁾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형조 판서 고흥산은 여러 국정 현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이성(利城)의 역참(驛站) 아전이었던 김말산(金末山)이 그 아내 은덕(恩德)을 구타하여 살해하자 이를 처벌하는 문제, 추자도(楸子島)의 방어 및 일본 사신의 요청을 들어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⁵⁰³⁾

그러던 중 1522년(중종 17) 6월 11일, 왜선(倭船) 12척이 깃발을 세우고 징과 북을 치면서 80여 명이 먼저 하륙(下陸)하여 전라도 신달량(新達梁)에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⁰⁴⁾ 또한 왜선(倭船)들이 더러는 15척, 더러는 10여 척씩 떼를 지어 초도(草島)·보길도(甫吉島)·추자도(楸子島) 등지에 출몰하였다.⁵⁰⁵⁾

500)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3월 8일 己丑.

501)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7일 壬子.

502)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3월 8일 己丑.

503)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22일 丁卯; 29일 甲戌.

504)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1일 丙戌. 왜적(倭賊)은 조선군이 성벽(城壁)을 굳게 단속하고 난사(亂射)하며 또한 포를 쏘자 흩어져 북쪽으로 도망하였다.

505)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4일 己丑. 남도포 만호(南桃浦 萬戶) 박정(朴楨)과 금갑도 만호(金甲島 萬戶) 최자원(崔自源) 등이 노근도(老勤島)에서 왜선 8척을 만나 싸웠는데,

이러한 왜변(倭變)이 발생하자, 병조가 조방장(助防將)을 파견하기 청하였고, 황보겸(皇甫謙)을 전라도 조방장으로 파견하였다.⁵⁰⁶⁾

이에 더해 병조에서는 중신(重臣)을 선발하여 변방의 일을 맡기자고 하였는데, 대신들은 이계맹(李繼孟)과 고흥산을 임명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중중은 자리에 앉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이계맹이 능히 할 것이지만 나가서 싸움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노쇠하여 진두지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강건한 재상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고흥산은 나이가 비록 늙었으나 기운이 아직도 강건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거쳐 중중과 대신들은 고흥산과 심정(沈貞)을 순변사(巡邊使)로 삼기로 하였다.⁵⁰⁷⁾

순변사로 위임된 고흥산과 심정은 각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줄 것을 청하였는데, 고흥산은 자신이 이미 노쇠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작전을 요량하게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만일 싸움이 벌어지는 진영을 중흥해야 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으니 나이 젊은 재상을 대신 보낼 것을 청하였다.

중중은 고흥산과 심정에게 일이 없을 때에는 안에 있으면서 조치해 가고 일이 있을 때에는 나아가서 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신들이 어찌 잘 생각해보지 않고 추천했겠느냐며 지금 왜변이 있으니 경들은 사양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고흥산과 심정은 재차 사양하였는데, 고흥산은 신하된 자의 직분은 마땅히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다가 죽은 다음에야 그만두는 법이나 지금 굳이 사양함은 자신의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일을 그르칠까 싶어서라고 하였다. 특히 자신은 기력이 노쇠하여 쫓아다니며 방어하기에는 진실로 안 될 바가 있다고 하였지만, 중중은 조정이 어찌 경솔하게 추천했겠느냐며 지금 치러 나가는 것도 아니니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⁵⁰⁸⁾

중중의 생각은 사변이 없으면 변방 방어의 계획을 논의하게 하고, 사변이 발생하면 고흥산과 심정이 나가서 적들을 치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순변사 고

신기전(神機箭)과 총통(銃筒)을 쏘아냈고 또한 왜적 5~6명을 명중시키자 왜적들이 물러났다.
506)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1일 丙戌; 15일 庚寅; 16일 辛卯.

507)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9일 甲午.

508)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19일 甲午.

형산과 심정은 한 도(道)씩 나누어 맡은 다음에야 각기 스스로 마음을 한 곳에 써서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도를 나누어 맡기기를 청하여 경상도는 고흥산이 맡고, 전라도는 심정이 맡게 되었다.⁵⁰⁹⁾

1522년(중종 17) 전라도 연안에 왜적들이 침입한 사건은 임시 기구였던 비변사(備邊司)의 기능 강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⁵¹⁰⁾ 순변사로 위임된 고흥산은 정광필(鄭光弼)·장순손(張順孫)·심정 등과 함께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⁵¹¹⁾가 되어 여러 섬을 수색하여 왜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¹²⁾ 또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서 대신들과 왜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일본 사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논의를 하였고,⁵¹³⁾ 비변사 제조로서 전라도에 왜인들의 배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⁵¹⁴⁾

이후에도 고흥산은 왜적 대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여 적왜(賊倭)들이 전라도에 침입한 실제 목적은 경상도에서 충돌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종사관(從事官)을 파견하여 무사들을 뽑아 불의의 사변에 동원하기 위해 대비할 것, 중종이 변방 대비와 관련한 조처를 백성들에게도 선유(宣諭)할 것, 사변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들을 편성하고 나누는 분번(分番)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도의 포작간(鮑作干), 즉 전복을 전문적으로 잡아 진상하던 사람들은 수전(水戰)에 대비해 쇄환하지 말 것 등을 주장하였

50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0일 乙未.

510) 변방 군사 문제의 처리에서 의정부(議政府)와 병조(兵曹)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이들을 압도할 소지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비변사의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가 불거지게 되었다.

511) 비변사는 중종 때부터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부제조(副提調)·낭관(郎官) 등의 관원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의 삼정승이 겸임하기도 하고, 한성부 관윤·공조 판서·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혹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이 겸임하는 등 때에 따라 달랐다. 제조는 2품 이상의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뿐만 아니라 이조·호조·예조·병조의 판서 등이 겸임하였다. 부제조는 정3품으로 군사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부제조 이상은 모두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으로, 이들을 총칭해서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이라고 불렀으며 정원은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사에 정통한 3인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 즉 상임위원회에 임명하여 항상 비변사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512)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2일 丁酉.

513)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4일 己亥.

514)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6일 辛丑.

다.⁵¹⁵⁾

이때 건주위(建州衛)의 동시대구(童時代仇) 등이 만포(滿浦)에 나와서 ‘모린위(毛隣衛)의 추장(酋長) 홀비합(忽非哈) 등이 명나라로부터 압록(鴨綠)의 내지(內地)에 길을 터서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여 이미 명나라의 윤희를 받았더라는 헛소문을 퍼트렸는데, 고흥산은 대신들과 함께 이들이 조선의 의도를 탐지하려는 것이라며 함경도의 병사(兵事)에게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는 논의를 하였다.⁵¹⁶⁾

또 정광필·장순손·고형필 등은 전라도의 변장들을 추고(推考)하기 위해 파견된 어사(御使) 윤세림(尹世霖)을 소환할 것과 방비를 잘 하지 못한 전라도 변장들을 사면하더라도 완전히 추고하여 죄를 결정한 후에 하여 군령(軍令)의 엄중함을 알게 하고 징계될 것이라고 아뢰기도 하였다.⁵¹⁷⁾

앞서 고흥산을 비롯한 비변사 제조들은 여러 섬을 수색하여 왜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전라도에서 왜적을 수색 토벌한 결과 모든 섬에 왜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비변사 당상(備邊司 堂上)이었던 정광필·고형산·심정 등은 방어하는 기구를 해산할 것과 변방의 일은 주무 기관인 병조가 있고, 홍문관이 상소하여 비변사는 없어도 된다고 하였으니 비변사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중종은 “조금만 사변이 있으면 문득 기구를 설치하고 사변이 없으면 금방 없애는 것을 불가하다. 더 설치한 당상(堂上)만 감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비변사 폐지에 반대하였다.⁵¹⁸⁾

비변사 폐지 논의가 불거지고 있을 때, 고흥산은 비변사가 하는 일은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당초 비변사를 설치했을 때는 삼정승이 참여하여 살펴보았는데, 재차 설치할 때는 삼공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삼정승을 참여시킬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⁵¹⁹⁾

또 비변사 당상의 수를 줄이려고 하자, 좌의정 남곤(南袞)과 우의정 이유헌

515)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6일 辛丑.

516)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7월 13일 丁巳; 14일 戊午.

517)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7월 14일 戊午.

518)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8월 8일 辛巳.

519)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8월 8일 辛巳.

(李惟淸)은 정광필(鄭光弼)은 양계(兩界)의 일을 맡은 일이 있고 원수(元帥)를 지냈으므로 1품 재상으로서 지휘 호령하고, 고흥산은 호조 판서로서 변방 창고 곡식의 다소를 알아 군량을 계량하고, 최한홍(崔漢洪)은 무장(武將)으로 변진(邊鎭)의 형세를 두루 아니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 일을 이룰 수 있다며, 비변사 당상인 정광필·최한홍 등의 소임을 혁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좌의정 남곤과 우의정 이유청의 의견에 대해 중종은 무사할 때에는 더 설치한 비변사 당상을 혁파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만약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삼정승이 마땅히 겸임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앞선 고흥산이 삼정승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⁵²⁰⁾

고형산은 또 9월 15일에 동래(東萊)지방 염전(鹽場)에 적왜(賊倭)들이 육지로 올라와 침입하자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진장(鎭將)들에 대해 죄를 묻는 의견에 참여하였고,⁵²¹⁾ 상산부정(常山都正) 이말손(李末孫)과 좌승지(左承旨) 최세절(崔世節)을 심문하는 문제,⁵²²⁾ 여연(閔延)·무창(茂昌) 및 함경북도에 들어와 사는 여진인들을 몰아내는 문제 등도 상의하였다.⁵²³⁾

다음해인 1523년(중종 18) 1월 11일, 고흥산은 지난해에 나이가 차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가 윤허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72세나 되어 귀가 먹고 눈이 어둡다며 다시 사직을 청하였다.⁵²⁴⁾ 특히 고흥산은 호조는 일이 번다한 곳이어서 하루도 휴가를 얻어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자신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일을 그르치게 될까 항시 아뢰고 싶었다며, 근년 이래로 각기병(脚氣病)이 생겨 마음대로 걷지도 못한다며 사직을 청한 것이다.

중종은 “경(卿)이 전일에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사임하려 할 때는 경이 나이

520)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8월 12일 乙酉.

521) 『중종실록』 권46, 중종 17년 9월 20일 癸亥; 21일 甲子.

522) 『중종실록』 권46, 중종 17년 10월 10일 壬午; 13일 乙酉. 이말손(李末孫)은 ‘정원이 막아서 상언(上言)을 들이지 못했다’하고, 정원은 ‘말손이 정원에 온 것을 전혀 몰랐다’하여 서로 허물을 돌려 문제가 되었다(『중종실록』 권46, 중종 17년 10월 16일 戊子).

523) 『중종실록』 권46, 중종 17년 11월 21일 甲寅.

524) 고흥산은 당시 71세로, 이는 실록의 오기(誤記)이거나, 고흥산이 사직을 위해 나이를 한 살 더 많게 얘기한 것일 수 있다.

가 늙어 갑옷을 입으면 달리기가 어려울 듯하기에 윤택했었으나, 지금의 호조는 병조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고, 고흥산이 세 차례를 더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⁵²⁵⁾

고형산은 1520년(중종 15)에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평안도 순변사(巡邊使)로 내려가서 의주성(義州城)을 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의주성이 무너져서 이것을 다시 쌓다가 차사원(差使員) 2명이 연이어서 죽은 일이 발생하자, 고흥산은 여러 비판에 시달리게 되었다. 중종은 조정에서 매양 의주성을 쌓으려 했으나 거행하지 못하다가 전번에 고흥산을 보내 역사를 감독하게 하지는 의논이 있었는데, 마침 중국 사신이 오기 때문에 급속히 쌓았으므로 견고하게 쌓을 수 없었으니, 역사를 잘못했다고 할 만 하다고 지적하였다.⁵²⁶⁾

또 사헌부가 고흥산이 이 문제로 추고(推考)를 당하면서 함사(緘辭)⁵²⁷⁾에 ‘모조리 다 퇴락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꾸며 항거하였다며 대신의 체통을 잃은 것이라며 계속해서 논박하였다. 중종은 사헌부의 논박에 대해 “과연 함사가 잘못된 곳이 있으나 사면의 명령이 있기 전의 일이니 불문에 붙이는 것이 옳다”, “고형산이 힘을 다하여 빨리 쌓느라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지맥(地脈)까지 얼어붙었으니 아무리 고흥산이라 하더라도 어찌 역군의 축고 배고픔으로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찌 고흥산의 허물이겠는가?”, “고형산이 모조리 퇴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일 것이요, 억지로 한 말은 아닐 것이다”며 고흥산에 대한 신임을 표시하면서도 고흥산을 보호하려 하였다.⁵²⁸⁾

그렇지만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려 특별히 조정 의논에 따라 고흥산을 보내어 감독하라 명한 것은 그 역사가 중대하기 때문이었다며, 고흥산이 처음부터

525) 『중종실록』 권46, 중종 18년 1월 11일 癸丑.

526)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2월 8일 己卯. 뒤에 대사헌(大司憲) 김희수(金希壽)는 의주성(義州城)을 쌓는 역사가 마침 중국 사신이 지나는 때에 있었으므로 역사가 급하게 되어 금방 무너진 것을 지적하면서도 위임 받고 나간 고흥산이 힘써 나라 일을 했다는 점을 말하였다(『중종실록』 권54, 중종 20년 7월 4일 辛酉).

527) 함사(緘辭)는 조선시대 관(官)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사람이 관아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 올리는 진술서로 함답(緘答)이라고도 하였다. 즉 글로 죄를 묻은 함문(緘問)에 대한 진술서 또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528)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4월 3일 甲戌; 9일 庚辰; 10일 辛巳.

견고하게 쌓으려 하니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서북 지방의 이른 추위에 행여 일을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독려하였으므로 마침내 아랫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행산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허물을 책임지고 머리 숙여 대죄(待罪)함으로써 조정에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자기를 탄핵하는 것을 꺼리어 과실을 감추려 함문(緘問)에 제대로 자복하지 않았다면 재차 탄핵하였다.

중종은 다시 “고형산은 겨울에 성을 쌓으면서 그 견고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은 죄를 범했고, 함문할 때 바로 승복하지 않았으니 체통을 잃은 듯하나, 성이 쉽게 무너진 것은 아래의 역군들이 힘써 역사를 하지 않은 탓이니 어찌 유독 고행산만의 허물이겠는가? 고행산의 함사는 비록 한 두군데 부당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실정을 진술하고자 한 것이요 법사(法司)를 희롱한 것이 아니니 그 일로 죄를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⁵²⁹⁾

이렇게 고행산이 예전에 쌓았던 의주성의 문제로 계속 논박을 당하자,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신의 나이 이미 71세여서 지기(志氣)가 쇠약해졌는데 요즈음 다시 물론(物論)을 듣고 있으니 비록 상께서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신이 벼슬자리에 있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신의 직을 체직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중종은 “비록 나이가 70이 넘었다지만 어찌 직사(職事)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또 축성(築城)의 일 때문에 논박을 받는 것은 한때의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고 하여 고행산의 사직을 윤택하지 않았다. 고행산이 모두 세 번 아뢰었으나 중종은 모두 따르지 않았다.⁵³⁰⁾

이 사이 고행산은 6진 지역에서 여진인들이 조선인을 약탈하여 매매한 것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였고,⁵³¹⁾ 이후에는 여연·무창에 와서 사는 여진인들을 몰아내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⁵³²⁾

1522년(중종 17)에 이어서 1523년(중종 18)에도 왜적(倭賊)의 침입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즉 왜선(倭船) 1척(隻)이 전라도 남도포(南桃浦) 관할인 초도(草島)

529)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4월 11일 壬午.

530)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4월 13일 甲申.

531)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3월 5일 丙午.

532)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윤4월 1일 辛丑; 5월 18일 丁亥.

및 황해도 풍천(豊川) 경내에 정박하여 조선의 경내를 침입한 것이었다.⁵³³⁾ 그런데 이 왜적은 조선의 전라도와 황해도, 즉 남해(南海)와 서해(西海)를 횡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중종은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을 불러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고흥산·안윤덕·한형운 등은 비변사당상으로서 조방장(助防將)의 과견 및 황해도의 여러 섬을 수색 토벌하는 등의 사목(事目)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³⁴⁾

더욱이 중종은 의정부·병조·비변사·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 등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였다. 여기에서 고흥산은 병선(兵船)의 개조, 오포(烏浦)·축산포(丑山浦)의 축성, 수군(水軍)의 해물 수채(水採), 화량진(花梁鎭)에 조방장(助防將) 과견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왜선이 대양(大洋) 가운데로 나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분명하므로 군사들을 파방(罷防)할 것을 건의하였다.⁵³⁵⁾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경상도 영덕현(盈德縣)의 오포영(烏浦營)이 현 남쪽 17리에 있었는데, 순변사 고흥산이 옛 군영은 바닷길을 볼 수 없다 하여 현 남쪽 15리에 옮겨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쌓았는데, 둘레는 1천 4백 90척, 높이는 9척이라고 하였다.⁵³⁶⁾

또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의 백석포장성(白石浦長城)과 풍안평장성(豊安坪長城) 역시 가정(嘉靖) 계미년(癸未年, 1523년[중종 18])에 순찰사 고흥산이 적 다니는 중요한 길이라 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⁵³⁷⁾

533)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5월 27일 丙申; 6월 1일 庚子.

534)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5월 28일 丁酉.

535)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6월 26일 乙丑.

53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25, 盈德縣 關防 烏浦營. 『대동지지(大東地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오포진(烏浦鎭)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大東地志』 盈德縣 鎭堡; 『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도 19, 관방 7 경상도 寧德).

53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0, 興陽縣 關防 白石浦長城; 豊安坪長城. 백석포장성(白石浦長城)은 현의 남쪽 20리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길이가 1천 6백 11척, 높이가 6척으로 되어 있다. 풍안평장성(豊安坪長城)은 현의 남쪽 22리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길이가 2천 4백 척이고, 높이가 6척으로 되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大東地志』 興陽縣 城池;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도 15, 관방 3 전라도 興陽).

그리고 당시 조선에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가 온 일과 관련하여 사신이 가져온 물품의 무역 문제와 대마도(對馬島)와의 관계 회복 및 무역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신들과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⁵³⁸⁾

앞서 황해도 풍천에 왜선 1척이 조선 경내를 침입하였을 때 왜인 중림(中林)이 사로잡혔는데, 중림을 신문한 결과 이들은 중국 영파(寧波)에서 난동을 일으킨 뒤 도망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⁵³⁹⁾ 또한 중림 외에 다른 표류 일본인들도 사로잡혔는데, 새로 사로잡힌 표류인 망고다라(望古多羅)는 심문 과정에서 자신들이 도망하는 길에 중국인을 끌고 왔으며, 그들을 한 달 전에 조선 연안의 섬에 버린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에 조선은 버려진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히 수색작업을 확대하였고, 결국 외딴 섬에 버려진 중국인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⁵⁴⁰⁾ 그리고 조선에서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명나라에 송환하였는데, 고흥산은 이들의 송환 문제 논의에 참여하여 빨리 중국에 보낼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⁴¹⁾

이후 호조 판서 고흥산은 1523년(중종 18) 8월 5일, 귀가 멀고 눈이 어둡다는 이유로 매우 간절히 사직을 청하였고, 중종은 마침내 그의 사직을 허락하게 되었다.⁵⁴²⁾

8)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 봉상시 제조(奉常寺 提調),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중종이 고흥산의 사직을 허락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호조 판서 직임에 대해서였다. 고흥산은 곧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임명되어 여전히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즉 고흥산의 판중추부사 제수와 관련된 기록은 『중종실록』에는 기

538)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6월 28일 丁卯; 7월 21일 己丑.

539) 1523년 명(明)과의 무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영파(寧波 : 오늘날 浙江省 Ningbo)에서 일본 상인들끼리 벌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소위 ‘영파(寧波)의 난(亂)’이라고 한다.

540)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寧波의 亂’ 관련자 표류인 송환-朝·明·日의 ‘세 가지 시선’, 『역사학보』 224, 2014, 204쪽.

541)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4일 辛丑.

542)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5일 壬寅.

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조 판서를 사임한 직후인 1523년(중종 18) 8월 12일에 그의 직함이 관중추부사로 쓰여 있는 것이다.⁵⁴³⁾

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중1품 관직인데, 중추부는 조선시대 서반(西班)의 중1품 아문(衙門)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중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堂上官)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순찰)의 임무를 맡거나 관찰사(觀察使)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특히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 관중추부사)는 대신 등 고위 관원이 바뀔 때 잠시 임명되는 자리로도 활용되었다. 중추부의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중1품) 2인, 지사(知事, 정2품) 6인, 동지사(同知事, 중2품) 7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당상관) 8인, 그리고 경력(經歷, 중4품) 1인, 도사(都事, 중5품) 1인이 있었다.

고형산은 관중추부사로 대신들과 함께 일본 사신이 요청한 세견선(歲遣船)·세사미(歲賜米)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고,⁵⁴⁴⁾ 대마도(對馬島)에 세견선 5척을 별도로 더 보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⁵⁴⁵⁾ 고형산은 또 문신(文臣) 중1품 이하를 정시(庭試)할 때 당하관(堂下官)들을 대상으로 시관(試官)이 되기도 하였다.⁵⁴⁶⁾

한편 여진인들이 조선의 여연(閔延)·무창(茂昌)에 거주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들을 쫓아내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543)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12일 己酉.

544)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12일 己酉. 세견선(歲遣船)은 조선시대 일본으로부터 교역을 위해 해마다 조선에 도항해 온 선박으로, 1471년(성종 2)에 완성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의하면 세견선의 총수는 112척 내지 126척에 이르게 되었지만, 1510년(중종 5)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일본과의 통교를 단절하였고, 1512년(중종 7)에 다시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어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25척으로 감하기도 하였다. 세사미(歲賜米)는 조선에서 세종 때부터 대마도(對馬島)에 해마다 하사하던 쌀이다.

545)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14일 辛亥.

546)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8월 21일 戊午. 정시(庭試)란 조선시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와 특정 지역의 유생이나 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과거라 할 수 있다. 중종은 문풍(文風) 진작을 위해 정시를 자주 실시하였다. 시관(試官)은 과거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변신(邊臣)이 군사를 내어 내쫓기를 청하자 증중이 조정 신하들에게 논의할 것을 명하였고, 비변사 당상 고흥산 등이 일찌감치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⁴⁷⁾ 여연·무창의 여진인들을 구축(驅逐)하는 것이 결정되자 고흥산은 대신들과 함께 여진인들을 몰아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며,⁵⁴⁸⁾ 함경도 경원(慶源)에 살던 여진인 박산(朴山)의 연좌된 자손을 풀어주는 문제 등을 아뢰기도 하였다.⁵⁴⁹⁾

특히 여연·무창에서 여진인들을 구축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경험을 들어 해가 바뀌는 정월에 실시하고 정월 보름 이전에 군사를 돌릴 것과 함경도는 무창으로부터 내려오고, 평안도는 여연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들어가 양군이 합하여 모두 쫓아내는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⁵⁰⁾

또 고흥산은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을 겸하고 있었다. 고흥산은 비변사당상으로서 여진인들을 구축하기 위한 도로를 파악하려 간 삼수군수(三水郡守) 권훈(權勛)이 제대로 살피고 오지 못하자, 자신이 전에 종사관(從事官)으로 왕래한 적이 있다며 길을 다니지 못할 리가 만무하다고 하면서 권훈을 엄중히 논죄하여 균율을 보일 것을 아뢰기도 하였다.⁵⁵¹⁾

한편 군사를 일으켜 여진인들을 구축하는 사목(事目)을 보면, 고흥산이 주장 하였던 시기와 방법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사를 일으키는 기일은 평안도는 1월 11일(후에 6일로 변경), 함경남도에서는 1월 6일이었으며, 평안도는 여연으로, 함경남도는 무창으로 들어가 여진인들을 쫓아 각각 여진인 김주성합(金主成哈)이 둔친 곳과 김거대(金巨大)가 둔친 곳을 모두 몰아낸 뒤 군사를 돌려 오도록 하였던 것이다.⁵⁵²⁾

547) 『國朝寶鑑』 권20, 증중조 3,癸未 18년.

548) 『증중실록』 권49, 증중 18년 10월 29일 乙丑; 11월 6일 壬申.

549) 『증중실록』 권49, 증중 18년 11월 6일 壬申. 여진인 박산(朴山)이 조선 땅을 출입하고 교통하면서 혼가(婚嫁)하며 폐단을 지은 일이 많이 있었고, 회령부(會寧府)에서 죄를 얻어 형장을 맞다가 죽었는데, 그 연좌된 자손 40여 인이 남방의 남해(南海)·거제(巨濟) 등에 옮겨져 분배되었다.

550) 『증중실록』 권49, 증중 18년 11월 9일 乙亥.

551) 『증중실록』 권49, 증중 18년 11월 26일 壬辰.

552) 『증중실록』 권49, 증중 18년 12월 10일 丙午; 20일 丙辰.

조선군의 여진족 구축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평안도에서 여연으로 들어간 조선군은 큰 패배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여진인들의 침입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 하였다. 판중추부사 고흥산 여진인 구축 이후 조선의 방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면서 조방장(助防將)을 내려 보내도록 건의하였다.⁵⁵³⁾

또 조선에서는 1524년 2월 12일에 우후(虞候) 이장길(李長吉)과 만포첨사(滿浦僉使) 이성언(李誠彦)으로 하여금 1월에 구축할 때 빠졌던 파탕동(波蕩洞)·고도동(古道洞)·여둔동(餘屯洞)의 야인을 쫓아내게 했다.⁵⁵⁴⁾ 이후 고흥산은 역시 여진족 구축 이후 방어를 위한 진보(鎭堡) 설치 및 참전한 장수(將帥)들에 대한 논상, 사로잡은 여진족들의 유배 등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였다.⁵⁵⁵⁾

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여진족들을 쫓아냈지만, 그 성과는 좋지 않았다. 조선군이 물러가자 여진인들이 다시 여연 등지에 돌아와 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고흥산은 비변사 당상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정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대신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⁵⁵⁶⁾

고형산은 이후 북방에 죄인들을 보내 입거(入居)시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문제, 평안도의 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 황해도와 과거 시취(試取) 문제, 함경도의 방어와 관련된 문제, 강도죄(強盜罪)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였다.⁵⁵⁷⁾ 또한 고흥산은 홍숙(洪淑)과 함께 중종이 광릉(光陵)에 친히 참배하러 가자 도성 안을 지키는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기도 하였다.⁵⁵⁸⁾

그리고 고흥산은 이때 제향과 시호를 맡아보던 봉상시(奉常寺) 제조(提調)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에 봉상시 노비의 추환(推還) 문제를 아뢰기도 하였다.⁵⁵⁹⁾ 또 비변사당상으로서 조선에 죄를 지은 구금된 여진인 왕산적하(王山赤下)의

553) 『중종실록』 권50, 중종 19년 1월 20일 乙酉.

554) 중종대 여진 구축(驅逐)에 대해서는 김순남, 「조선 中宗代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74쪽.

555) 『중종실록』 권50, 중종 19년 2월 26일 辛酉.

556) 『중종실록』 권51, 중종 19년 6월 21일 甲寅; 25일 戊午.

557) 『중종실록』 권52, 중종 19년 10월 2일 癸巳; 12월 9일 己亥; 중종 20년 1월 14일 癸酉.

558)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2월 27일 丙辰.

559)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3월 6일 乙丑.

처벌 문제, 여진인 요송고(要送古)를 살해한 김선손(金善孫)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였다.⁵⁶⁰⁾

한편 관중추부사였던 고행산은 칠로계회(七老契會)에 참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된 문인 계회(契會)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만 70세 이상의 원로 사대부로 구성된 기로회(耆老會)·기영회(耆英會)와 동갑이나 관아의 동료들로 이루어진 일반 문인 계회가 있었다. 계회는 주로 산이나 강가에서 열리는 것이 상례이나 경우에 따라서 옥내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이행(李荇)의 시문집인 『용재집(容齋集)』에는 칠로계회도(七老契會圖)와 관련된 칠언고시(七言古詩)가 실려 있는데, 당시 칠로계회는 관중추부사 고행산, 호조 판서 안윤덕(安潤德), 지중추부사 임유겸(任由謙)·조원기(趙元紀)·이자견(李自堅), 동지중추부사 정수강(丁壽岡), 동지돈녕부사 이맥(李陌)이 그 구성원이라고 적혀 있다.⁵⁶¹⁾

1527년(중종 22)년 2월 22일, 고행산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제수되었다.⁵⁶²⁾ 관중추부사(종1품)였던 고행산이 정2품의 지중추부사가 된 것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곤(南袞)이 병이 위중하여 영의정의 자리에서 사임하고 관중추부사가 되었기 때문이다.⁵⁶³⁾ 원래 중추부는 문무 당상관(堂上官)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고, 고위 관원이 바뀔 때 잠시 임명되는 자리로 활용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품계에 맞추어 임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고행산이 지중추부사가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고행산의 죽음이 실려 있는 졸기(卒記)에는 그의 관직이 다시 관중추부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서도 중추부의 관직은 경우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행산은 1528년(중종 23) 11월 20일에 죽었다. 그의 나이 76세였다.⁵⁶⁴⁾ 고행

560) 『중종실록』 권54, 중종 20년 4월 22일 辛亥; 권56, 중종 21년 3월 27일 庚戌.

561) 『容齋集』 권3, 七言古詩 七老契會圖.

562) 『중종실록』 권58, 중종 22년 2월 2일 己酉.

563) 『중종실록』 권58, 중종 22년 1월 5일 癸未; 17일 乙未.

564)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기사(耆社)의 최고령으로 91세에 고행산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장수한 노인들을 언급하면서 익장공(翼莊公) 고행산이 91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다(『林下筆記』 권21, 文獻指掌編 耆閣最高年; 권29, 春明逸史 東國老人). 또 『증보

산은 1480년(성종 1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1483년(성종 14)년 대과(大科)에 급제하였으니, 그가 대과 이후 관직에 있었던 기간만 해도 46년이나 되었다.

『중종실록』에 실려있는 고행산의 줄기를 보면, 관중추부사 고행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종은 “고행산이 죽었다 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別例)로 치부(致賻)⁵⁶⁵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전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고행산의 죽음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사신은 논한다. 고행산은 본관이 橫城이며 대대로 그 고을에 살았는데,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成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常例로 외방의 고을에 除授되었는데 크게 聲績이 있었으며, 만년에는 포부를 펴서 設施한 것이 많았다. 또 邊方의 일에 익숙하여 나라의 重臣이 되었으며, 성품이 勤儉하며 質朴하고 躋치레가 없으며 성심으로 奉公하였다.⁵⁶⁶

즉 사신은 논평하기를, 고행산이 황성에서 대대로 살았으며, 시골의 궁벽한 초야(草野)에 있던 사람이지만 성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후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보통의 예에 따라 외방 고을에 제수되었는데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년에는 포부를 펼쳐서 시설한 것이 많았고, 변방의 일에 익숙하여 중신(重臣)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행산의 성품은 근검하고 소박·순박하며 躋치레가 없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행산이 성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사(耆社)의 항목에 고행산이 91세로 되어 있다(『증보문헌비고』 권215, 직관고 2,耆社). 기사는 조선 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 기로소(耆老所)라고도 하였다. 고행산과 관련된 『임하필기』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들은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565)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 부조를 보내던 일을 말한다.

566) 『중종실록』 권64, 중종 23년 11월 20일 戊午.

Ⅲ. 기묘사화와 고흥산

1494년 연산군은 당시 특권 관료층인 훈구세력과 성종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신진 사림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왕위에 올랐다. 그는 1498년 훈구세력과 결탁해 무오사화를 일으킴으로써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사림파에게 한 차례 큰 타격을 주었고, 1504년에는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 복위문제를 둘러싸고 큰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윤씨의 폐출과 사사에 연관된 윤필상(尹弼商), 이극균(李克均), 성준(成俊), 권주(權柱), 김굉필(金宏弼) 등을 극형에 처하고, 이미 죽은 한치형(韓致亨), 한명회(韓明滄), 정창손(鄭昌孫), 어세겸(魚世謙),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등이 부관참시(剖棺斬屍)되고 그들의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되었다. 또 폐비 윤씨를 복위시켜 왕비로 추송하고 성종묘(成宗廟)에 배사(配祀)하려는 연산군의 뜻에 반대하는 응고 권달수(權達手)·이행(李荇) 등이 처벌을 받았다.

연산군의 폐정은 결국 1506년(연산군 12) 9월 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이른바 중종반정에 의해 종식되었다. 고흥산이 중종반정에 참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고흥산은 연산군 10년(1504) 6월경 함경북도 절도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중종반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종반정이 일어난 연산군 12년(1506년) 9월에는 아마 이미 함경북도 절도사의 보임기간을 마치고 중앙관직에 다시 보임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중종이 즉위한지 3개월이 지난 1506년 12월 고흥산은 “특진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07년 윤1월 30일 고흥산은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고흥산이 반정이라고 하는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큰 신변상 변화없이 그대로 계속 기용된 것은 그가 크게 인맥을 가진 파벌에 속해있지 않았고, 정통 관료로 각종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종 즉위후 바로 함경도 관찰사에 보임된 것은 그가 이미 함경북도

절도사를 지냈고, 군사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519년(중종 14) 11월 발생한 기묘사화와 관련하여 고흥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는 고흥산이 당시 호조판서라는 대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광조 등에 대한 처벌문제를 논의할 때, 중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입시하였을 뿐 그가 기묘사화에 직접 간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대동야승』에

정암(靜庵: 조광조를 말함) 선생이 대사헌으로서 아문에 나가는데, 고흥산(高荊山)이 호조판서였는데 앞서 가면서 공(公: 조광조를 말함)이 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느릿느릿 하였다. 이것은 대개 그의 거드름을 보인 것이다. 선생이, 그를 모시고 가던 아전을 잡아 가두었다가 하루만에 놓아 주므로 사람들이 그 온당한지 않은지를 묻자, 선생이, “그의 행동은 사대부가 길을 양보하는 미풍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니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백부(柏府 사헌부)가 비록 풍속을 단속하는 곳이나 그도 대신이니, 내가 감히 단속할 사람이 아니다. 그 아전을 가둔 것이 지나친 것 같기에 곧 석방한 것이다.” 하였는데, 고흥산이 그 말을 듣고 지극히 옳게 여겼었다.⁵⁶⁷⁾

위 기록에서 보면 고흥산이 대사헌 조광조가 출근하는 길 앞에서 길을 막고 느릿느릿하면서 거드름을 피운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곧은 성격의 조광조는 이를 사대부의 예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과연 고흥산이 출근하는 대사헌 조광조의 앞에 가면서 일부러 느릿느릿하며 거드름을 피웠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실록이나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 고흥산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록 기록을 보면 고흥산은 일관되게 질박하고 꾸밈이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기에 “느릿느릿하며 거드름을 피웠다”고 하는 기록은 믿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567) 『대동야승』 寄齋雜記二/歷朝舊聞二/중종. 「靜庵先生 以大司憲赴衙 高荊山以戶曹判書在先 雖知公在後 而故爲遲遲 蓋示其倨也 先生使拘其陪吏 一日而放之 人有問其當否 先生曰 彼之所爲 大失士大夫讓路之風 誠爲非矣 柏府雖檢飭風俗 彼亦大臣 非我所敢糾正之人 囚其吏 似爲過當 故卽放之 高聞之 極以爲是」

더구나 『대동야승』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조정암전(趙靜庵傳)에는 다소 다른 내용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척언(摭言) … 일찍이 대사헌으로서 아문(衙門)에 출사(出仕)하는 길에서 찬성(贊成) 고흥산(高荊山)을 만났는데, 인사하지 아니하고 지나갔으므로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갈았다. 한(漢) 나라 《사기》를 살펴보니, 소망지(蕭望之)가 어사(御史)가 되어서 의중(意中)에 승상(丞相)을 가볍게 여기고 만나서도 예를 갖추지 않았고, 장탕(張湯)은 어사가 되어서 매양 아침에 정사(政事)를 아뢰기 시작하여 해가 돋은 다음에 파하니, 승상은 자리만 지킬 뿐이고 천하 일은 모두 장탕이 결정하였다. 두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은 비록 같지 아니하나, 거만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하다가 화를 취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군자가 처신하는 데 있어 공경하고 겸손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기초이니 조심하지 않을 것인가.⁵⁶⁸⁾

즉, 이 기록에는 대사헌 조광조가 출근길에 본인보다 높은 관직에 있고 나이도 무려 29세나 많은 고흥산을 지나치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어느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당시 사림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광조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고흥산과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훗날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고흥산의 개인적 불쾌감이 작용한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기묘사화는 훈구대신과 신진사류의 단순한 권력다툼이나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중종반정 후 정상적인 유교정치를 부활, 장려하는 과정에서 신구 정치세력의 정책 갈등, 가치관 대립, 이해관계 대립과 아울러 중종의 왕권 확립에 대한 열망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다.

반정으로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 시기의 폐정을 개혁함과 동시에 쫓겨난 신진사류를 등용해 파괴된 유교적 정치 질서의 회복과 대의 명분과 오류를 존중하는 성리학의 장려에 힘썼다. 이러한 새로운 기운 속에서

568) 『대동야승』 己卯錄補遺 卷上/ 趙靜庵傳. 「摭言 … 嘗以大憲仕衙 道遇贊成高荊山 不禮而過 疾之者切齒 按漢史蕭望之爲御史 意輕丞相 遇之無禮 張湯爲御史 每朝奏事 日听乃罷 丞相充位而已 天下事皆決於湯 二者賢否雖不同 均之倨傲專權而取禍 古今一轍 君子處身持敬 謙遜 享福之基 可不慎哉」

점차 정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조광조 등 신진사류였다. 조광조는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무오사화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하였다. 이 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었으며,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 시작하였다.

과거제 폐단을 혁신하고자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고 많은 신진사류를 등용해 유교정치 구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 도교의 제사를 맡아보는 소격서(昭格署)를 폐지해 미신 타파에 힘쓰고, 향약(鄕約)을 실시해 지방의 상호부조와 미풍양속을 배양하는 데 힘쓰는 한편, 교화에 필요한 『이륜행실(二倫行實)』과 『언해여씨향약(諺解呂氏鄕約)』 등의 서적을 인쇄, 반포하기도 하였다. 그의 지치주의 정치의 업적은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의 이상주의적인 왕도정치는 구현 과정에서 저돌적이고 급진적인 면이 많아 도리어 증오와 질시를 사게 되었다. 게다가 철인군주(哲人君主)의 이상과 이론을 왕에게 역설한 것이 강요의 인상을 주어 왕마저도 그의 도학적 언동에 대해 점차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성리학을 지나치게 숭상한 나머지 고려 이래 장려된 사장(詞章)을 배척, 남근·이행(李荇) 등의 사장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렴 결백과 원리 원칙에 입각한 도학적인 태도는 보수적인 기성 세력을 “소인(小人)”으로 취급함으로써 훈구 재상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당시 반정에 참여한 중신으로서 조광조 등의 탄핵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 원칙에 충실하려 했던 신진사류에게 안이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세력에 대한 비판은 일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광조 등 신진사류에 대한 기성 훈구세력의 불만은 1519년 반정공신 위훈삭제사건(反正功臣僞勳削除事件)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즉 이 사건은 중중 반정공신 가운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으므로 공신호를 박탈해야 한다고 하여,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인의 공신호가 개정되거나 삭제되고 토지와 노비마저 환수한 조치였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李繼孟)도 공신이 너무 많으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이 이미 원로 관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진사류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중역시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진사류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결국 공신에 대한 개정과 삭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물론 조광조 등 신진사류 관료의 정치에 큰 불만을 가진 남곤, 홍경주, 심정 등이 일을 모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진사류에 대한 중중의 불편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당시 신하들과 중중이 나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다.

정광필, 안당, 신상이 아뢰기를, “제재하지 못하였으니 신 등에게 위낙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위에서 말을 다하게 하시므로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었으며, 신 등은 그 언로(言路)가 막힐까 염려하여 감히 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과격하다고 생각하여 그르게 여기신다면 옳겠으나, 이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다고 지칭하여 죄를 주면, 사방의 인심이 들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명시(明時)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친 일이 있기는 하나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 폐단을 바로잡으려다가 또 아랫사람이 다들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잠자코 있게 만들면 그 뒤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언로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일이 크게 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조정이 이미 죄주기를 청하였거니와, 유사(有司)가 추고(推考)하면 그 죄가 절로 드러날 것이다.”하였다.

이에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정이 청하였다.’ 하였으나, 이는 매우 운편치 못합니다. 신 등이 왔을 때에 먼저 와

있던 사람【먼저 와 있던 사람이란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심정(沈貞)·김전(金詮)·고형산(高荊山) 등을 말한다.】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고 시키셨으니 이것은 다 임금의 뜻이다.’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니, 참으로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대내(大內)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아뢰었거니와, 만약에 굳이 조정의 일을 그르쳤다고 한다면 전하께서 호오(好惡)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 등은 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죄주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니 이미 청죄단자(請罪單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고전지(推考傳旨)는 인심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반복하여 아뢰입니다.”하였다.⁵⁶⁹⁾

즉,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광조 등을 죄주는 것이 종종은 조정의 일이 어긋나게 되면 안되기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한 죄를 조정에서 청하였다고 하고,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예조판서 신상(이 건의를 하기 전날까지 이조판서였음)은 조광조 등에게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게 했다고 치칭하여 죄를 주면, 사방의 인심이 듣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조정이 죄주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만약 그들을 조정의 일을 그르쳤다고 하여 죄를 주려면 임금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광필 등의 의견은 죄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왕이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당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던 영의정 정광필조차도 사건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朝廷)에서 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또 훗날 책임 소재도 있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광필 등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종종 역시 조광조 등 신진사류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유교정치에 투철한 그들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죄를 주자고 할 수는 없었고, 또 그것은 반정 초기의 정치적 대의명분과도 배치되는 것이었기에 ”조정(朝廷)의 정사를 어지럽게 했다“는 다소 모호한 죄목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569)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6일(병오).

아무튼 고흥산은 당시 호조판서를 맡고 있으면서 국왕의 패초를 받고 조광조 등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자리에 나갔을 뿐 실제 그 모의에 간여한 일이 없다. 고흥산은 성종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고, 연산군 시기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관료 생활을 지속하였다. 이는 고흥산이 특별한 학맥이나 인맥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청렴한 관료 정신에 투철하고 실무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침이나 특별한 연줄에 의한 승진과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성품이었기에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관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고, 오랜기간 동안 고관을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이다.

고형산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1507년(중종 2)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때 부국강병을 위한 제도개혁을 상소한 바 있으나 정치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현량과(賢良科)의 실시 등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1519년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라고 하는 서술은 고흥산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술이다. 정치 성향이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흥산을 신진사림세력과 대립되는 인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그는 현실적 폐단을 가지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며, 탁상에서 공론을 하기 보다는 실천하는 일을 중시한 관료였다. 조광조 등이 혁신적인 관리등용제도로 도입한 현량과를 반대한 것은 단순히 사림의 정치에 반대하는 보수적 관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량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현량과 시행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실제 행해지는 과정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대거 관료에 진입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흥산이 관료 생활하는 동안 각종 일을 처리하는 성향을 보면 그는 결코 정치적 입장에서 현량과를 반대하였다기 보다 실제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서술이다. 고흥산은 중종반정의 공신이 아니기에 실제 위훈삭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조광조

등 신진사림 관리와 때로 정책적인 논의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국가의 중요 행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로서 자신의 소신에 의한 의한 판단이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한 것은 아니었다. 고흥산은 남곤 등과 조광조 등 신진사림을 죄주는 일에 대해 공모한 일이 없으며, 단지 당시 호조판서를 맡고 있으면서 국왕의 폐초에 응해 입궐하였을 뿐이었다. 훗날 흔히 기묘 삼흉(三凶)이라 하여 남곤, 홍경주, 심정이 거론되고, 선조 때에 와서 남곤은 이미 사망하였지만 삭탈관직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고흥산이 기묘사화와 관련하여 거론된 일은 없다.

IV. 고흥산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조선시대 사관(史官)은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의거한 매우 투철한 기록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왕을 포함한 각 인물에 대한 논평을 매우 엄정하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관직에 있는 인물에 대한 사관의 논평을 보면 그 인물이 당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중종실록에는 고흥산과 관련된 여러 사관(史官)의 논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산의 인물 됴됨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중종 6년(1511) 2월 18일에 사헌부에서는 고흥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죄줄 것을 청하였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전번에, 형조 판서 고흥산이 계모가 연로하므로 해서 귀양(歸養)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도(道)의 감사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제수하시려 하여 승전(承傳)을 받들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대저 감사는, 한 방면을 맡아 지키면서 내치고 등용하는 권리를 가졌으니, 결원을 기다려 제수하여 귀양하게 하는 수령의 유례와는 다릅니다. 하물며 감사의 체임(遞任)은 1년 이후에 있는데, 어찌 감히 미리 승전을 받들겠습니까. 거행하지 마소서. 더구나 형산은 전에 함경감사가 되었을 때, 영중기(營重記)에 붙여 있는 면포(綿布)·어염(魚鹽)·지물(紙物)·계돈(鷄豚) 등 물건을, 사창(社倉)을 설치하려고 호조(戶曹)에 청하였습니다. 호조에서는 조종조 이래로 폐지한 지 벌써 오래니 지금 다시 설치할 수 없다 하여, 붙인 물건으로 양곡을 무역(貿易)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고, 1만 8천여 석을 회계(會計)에 기록하였으나, 거개 유명 무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각 고을 수령이 그 수량을 보충하려면 앞으로 백성에게 부세를 더 거두어야 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근래 조신(朝臣)으로서, 그 도에 사명을 받들어 나갔던 이들도 모두 그 폐를 말하며, 한 도(道)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까지 되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산의 허명(虛名)을 과장하여 기망(欺罔)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소서.”하였다.⁵⁷⁰⁾

570)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18일(기해).

이에 대해 증중은 전교하기를,

“조신으로서, 아버지가 늙어 귀양(歸養)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근처 수령의 결원 있기를 기다려 차견하는 것은 예이지만 고흥산 같은 사람은 귀양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그 도 감사의 결원 있기를 기다려서 차견하게 하였다.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백성에게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니 해조(該曹)에 물어 보겠다. …” 571)

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두 번씩이나 계속 증중에게 고흥산을 처벌할 것을 아뢰었으나 증중은 이를 윤택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의 본심은 더 많이 거두어들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처사를 추술(蠲率)하게 하여 도리어 횡방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양(弘羊)·공근(孔僅)⁵⁷²과 비견되어 취렴하는 신하로 지목되는 데까지 이르니, 당시 의논이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국사에 진심으로 임하는 자 이로부터 해이해지겠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장령(掌令) 안처성(安處誠)이 힘써 주장하여 공박(攻駁)했다.’ 하고, 혹은 ‘이때 문관 서지(徐祉)가 경성판관(鏡城判官)이 되어 고흥산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엮어 만들어 중상하였다.’ 하였다. 서지(徐祉)의 사람됨이 마음 씀씀이가 음험하여 남의 과실 말하기는 좋아하면서 자신의 처신은 조심하지 않으니, 식견 있는 이들이 허황한 사람이라 지목하였으며, 끝내는 시론(時論)에 용납되지 못하였다.⁵⁷³⁾

이 사관의 논평은 사헌부 관리들이 일에 대한 자세한 이해없이, 또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인하여 고흥산을 논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증중반정 이후 유교정치 부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언관들의 영향력이 커져 훈구과 관료들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571) 위와 같음.

572) 홍양의 성은 상(桑), 모두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전후하여 대농승 등 경제 관련 관직에 있으면서 이익에 대한 정밀한 추구로 유명하여 취렴하는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573) 『증중실록』 권13, 증중 6년 2월 18일(기해).

고형산에 대한 언관들의 공박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중종 6년(1511) 6월 29일에는 지평(持平) 안처성(安處誠), 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 등이 다음과 같이 고형산을 논박하였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백성들을 근심하고 원망하게 한 것은 옛날 염철(鹽鐵)의 이익을 독점하던 일보다 더 심하여, 상홍양(桑弘羊)·공근(孔僅)·우문융(宇文融)의 무리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하였다.⁵⁷⁴⁾

이에 대해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 고형산의 한 일이 세세(細碎)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이 본래 근검한 데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일 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계동(李季叟) 등이 함경도에 가서 성보(城堡)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신이 종사관으로 장무(掌務)의 소임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 종사관을 보내어 그 형편을 보려하였는데,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윤장(尹璋)이 가합하다 대답하였더니, 이극균·성준 등이 본래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므로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천거하라.’ 하기에 또 고형산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때 두 정승이 ‘무엇으로 그가 합당함을 아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의 천성이 근검 절실하니 이것이 취할 만하다.’ 하니 ‘근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고형산이 전에 내섬시(內贍寺) 첨정(僉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마시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직접 양조하는 것을 지켜 보았는데, 그때가 한창 더울 때였습니다. 고형산이 전일 견책(譴責)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서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독질하지 못하였으며, 술 맛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성준 등이 말하기를 ‘능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다.’ 하고, 드디어 가자(加資)하

574)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9일(경술).

여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북도에 가서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혹 한식 경의 거리를 걷기도 하니,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이극균 등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걸치레만 하여 남의 훼손(毀譽)을 두려워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며, 지금 양곡을 무역하는 일 또한 무리하게 만들어서 작위(爵位)를 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고흥산이 후에 사복 정(司僕正)이 되었을 적에 시(寺) 중에 말을 기르는 쯤이 매우 많았지만 거의가 도독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습니다. 고흥산이 그 폐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는데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의 크고 작음을 재어 노끈 두 끝에 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뽑아 비교해 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되었으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습니다. 이러므로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강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본성이 근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함경도 병사에 제수되었다가, 갈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내어보냄을 가지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이 그 때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북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계청하여 차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는 일에 공이 많았습니다. 또 양곡을 무역한 일은 육진(六鎭)의 군마가 다 지치고 양곡의 수량이 매우 적어서, 군관·종사(從事)의 무리도 궤향(饋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신이 신윤무(辛允武)에게 물어보니 신윤무의 말이 ‘영중기(營重記)에 붙인 물건 중, 한 고을에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가 있으면 형산이 절반을 감하여 50마리만을 취하였으며, 한 개의 값이 조粟 5되[升]하는 것이면 형산이 감하여 3~4되를 받았으니, 반드시 이것을 말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취렴(聚斂)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한다면 가하겠지만, 종신(終身)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에는 사람을 권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⁵⁷⁵⁾

라고 하니, 안처성(安處誠)이 또 아뢰기를,

“옛날 염철(鹽鐵)·주다(酒茶)를 전매한 자도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흥산이 처음 취렴의 일을 열어 놓았으니, 그 번저감을 예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흥산의 일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들으니 북

575) 위와 같음.

도의 감사(監司)·절도사·수령들이 군사에게 상을 주고 야인(野人)을 접대할 때에는, 영(營)에 쌓아 둔 어물(魚物)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만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다면, 논상(論賞)하고 접대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들으니, 고흥산이 우마(牛馬)와 부정(釜鼎)을 사서 입거(入居)하는 자에게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대로 가하다 하겠지만,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함은 모리(謀利)와 같은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성희안이 다시 아뢰기를,

“고형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입거인(入居人)에게 준 사실은 신도 들었습니다. 고흥산이, 영중(營中)에서 모든 공사(公事)의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고서 수합(收合)하여 께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말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금 반 장의 종이도 훔치지 못하게 하니, 남은 종이가 많았습니다. 종이 한 권(卷)의 값이 쌀 두 말이면 감액하여 한 말로 바꾸어 이것을 아전(衙前) 및 영인(營人)들에게 주어서 소 90여 마리를 사고, 또 부정을 사서 입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함흥부(咸興府) 앞길을 경유하는데, 형산이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거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또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기를 ‘어느 곳인들 우리 임금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준 물건은 공적으로 마련한 것이요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만 들어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면서 반드시 친히 만나 보고 위로하니,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할 만한 일입니다.”⁵⁷⁶⁾

라고 하니, 다시 안처성이 아뢰기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 것은, 모두가 헛된 과장으로 속여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입니다.”하였다. 이에 대해 성희안은, “사람 대우하기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명예를 얻으려는 일이라 한다면 후에 국사를 하는 자 또한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⁵⁷⁷⁾라고 하였다. 이는 고흥산이 허명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관리 감독을 철저히

576) 위와 같음.

577) 위와 같음.

하고, 재정 운영에 관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원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그 재원을 축적해 다른 공적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일간 숙직을 하며 술빚는 것을 감독한 일이나 말을 살피우는 것에 대한 치밀한 관리감독에 관한 일화에서 공직자 고행산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은 안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기록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안처성은 품성(稟性)이 본래 정직하지 못하여 남이 옳다는 것은 그르다 하고 남이 나쁘다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소박하고 우직하여 꾸밈이 없이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고행산(高荊山) 같은 사람, 안처성은 ‘명예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여 배격하였고, 음흉한 반역들을 교묘하게 사주하여 진신(縉紳)들에게 독을 끼친 이극돈(李克墩)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안처성은 그 죄를 벗겨 주려 하여 노기(怒氣)까지 띠고 동렬(同列)들을 비방하였었다. 기신재(忌晨齋)와 소격서(昭格署)는 사림(士林)에서 모두 혁파하려 한 것인데, 간하여 논함을 극력 제지하였고,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신하된 사람으로서 인도할 바가 아닌데, 이세인(李世人)을 조소(嘲笑)하며 훈도(訓導)로 비유하기까지 하여 마침내 그를 파직하였으며, 재집(宰執)들에게 아침하여, 관좌과 녹을 쪼먹는 경연(慶緣)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극력 옹호했다. 벼슬살이를 하는 데에도 태만하고 공경하지 못하여, 주서(注書)가 되어서는 두어 달이나 기사(記事)를 빼먹었고, 경연관(經筵官)이 되어서는 입시(入侍)하는 날 저녁에 술에 취하여 옥서(玉署)³⁴⁵에 자빠졌다가 다음날 아침에 진강(進講)할 글을 한 줄도 읽지 않았다. 또 폐조(廢朝)의 일기(日記)를 수찬(修撰)할 때에는, 안처성이 낭관(郎官)이 되었는데, 그가 사진(仕進)하는 시간이 항상 오후가 되므로, 그 국(局)³⁴⁶에서 안처성이 사진하는 것으로 시간의 조만(早晚)을 알았었다. 그의 소행이 이와 같은데도 물론(勿論)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약 무인(傍若無人)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그가 교만 방종하고 간사하게 아침한다는 이름을 얻은 것이 당연하다.⁵⁷⁸⁾

또 중종 9년(1514) 11월 20일에는 고행산이 대사헌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간원의 건의로 중종은 고행산을 체직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기록하고 있다.

578)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7일(기사).

사신은 논한다. 간원이 고흥산은 강직한 기풍(氣風)이 없어서 사헌부의 장관(長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문식(文飾)은 적었지만 기국(氣局)이 굉위(宏偉)하고 심지(心志)가 견직(堅直)하며,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⁵⁷⁹⁾

이 사신의 논평은 고흥산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비록 질박하고 문식(文飾)이 적었지만 심지가 굳고 일을 처리할 때 굳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대사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관의 논평이 고흥산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장길(李長吉)을 다시 등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이장길에 대한 사신의 논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신은 논한다. 장길은 진사(進士)로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음흉하고 교활하였지만 문필(文筆)에 능하였으므로 당시의 성예(聲譽)를 얻었다. 연산군 때에는 의성(義城)의 수재(守宰)로 있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그물질하여 녹수(綠水)에게 빌붙었으므로, 바로 연방원 부정(聯芳院副正)을 제수받았고 따라서 비길 데 없는 영화를 누렸다. 그 아우 이장근은 재주와 무예를 겸비하였으나 연산군의 버림을 받아 남쪽 지방으로 귀양갔었고, 그의 아내는 창령(昌寧)의 농사(農舍)에 있었는데, 장근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귀양살던 곳에서 도망하였다. 연산군은 그가 난(亂)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장길을 시켜 체포하게 하였으나, 장길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창령으로 달려가서 장근의 집 사람들을 닥달하였다. 그때 온갖 참혹한 짓을 다한 것은 물론 장근의 처를 고을의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분히 여겨 침 뱉고 욕하였다. 반정(反正)한 처음 즉시 내쫓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조판서 고흥산(高荊山)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부하자, 형산은 그의 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의 능력만을 취하여 이 직(職)에 의망(擬望), 제수되었다.⁵⁸⁰⁾ 그래서 공론(公論)이 매우 격분하였다.⁵⁸¹⁾

579)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20일(무인).

580) 당시 이장길은 등용되어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에 임명되었음.

581)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일(을유).

사관은 이장길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 가까운 아우의 집안사람들까지 닥달하는 비행을 저질렀는데, 고행산이 그의 악행을 생각지 않고, 그의 능력만을 취하여 등용의 기회를 열어주어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에 보임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행산은 중종에게,

“대저 양계(兩界)의 군무(軍務)는 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임무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산천의 높고 낮음과 도로가 평탄하고 험함을 몸소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을 어찌 다른 사람을 시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하여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건장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연습을 시키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모든 사업(事業)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구애없이 단지 인기(人器)가 합당하다는 것만으로 불차탁용(不次擢用)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이 근래 양계(兩界)에 갔을 때 비록 높은 데 올라가 관망해야 할 곳이 있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는데야 어찌겠습니까? 이장길(李長吉)은 무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의 재간(才幹)은 훌륭하여 현재로선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그가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랬는데 근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소위를 살펴보니 계책(計策)이 참으로 뛰어났었습니다. 이제 대간이 그의 행실에 그릇된 점이 많다는 것으로 논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인(內人)에게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우 장곤(長坤)을 구제하고 가문(家門)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적에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았었습니다만, 공론(公論)이 저러하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⁵⁸²⁾

라고 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장길의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도 모두 애매하다 하니 그 인물을 폐기(廢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간이 아뢰는 것을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장길이 실제 고행산에게 아부하여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나친 명분보다 실질적인 것을 중시한 고행산의 성품으로 보아 그가 이장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등용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고행산이 이장길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이장길의 능력만을 본 것은 아니었다. 이장길이 연산군

582)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15일(기해).

시기 장녹수에게 빌붙었다는 것도 그 내막을 보면 당시 죄를 받고 있던 아우 이장곤을 살리고 가문(家門)의 화를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고흥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고흥산이 관직에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고형산은 오랜기간 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사무에 두루 밝은 사람이었지만 특히 재정과 군사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관료였다. 이에 사신 논평에 이르기를,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용모가 범상치 않아서 신장(身長)이 8~9척이고 배가 두어 아름답다. 술은 서너 말을 충분히 마시지만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고, 마음가짐이 근검한 데다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훌륭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훌륭한 치적을 쌓아 직분을 잘 수행한다는 칭송이 있었다. 또 그는 변방 산천에 대한 험이(險夷)와 도로의 통불통(通不通)에 대해서도 두루 알고 있었다. 따라서 군량과 군대를 충분히 예비하고 변방을 삼가 굳게 지키자는 것이, 그가 내세우는 지론(持論)이었다.⁵⁸³⁾

라고 하였던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호방함과 직분에 전념하는 근검, 그리고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관료라는 평이다. 고흥산이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관직 생활을 하게 되자, 종종은 특별히 그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기로 하였는데, 사헌부 등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여러 논란 끝에 결과적으로 종종은 고흥산에게 궤장을 하사하며 교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서 조종경(趙宗敬)을 보내 호조판서 고흥산(高荊山)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그 교서(敎書)를 내렸다. “한 나라의 안위는 관계되는 바가 중하여 대신의 거취(去就)는 가볍게 할 수 없는 법인데, 어찌 나이를 끌어대어 쉬기를 청하여 한가히 있으며 스스로 편하려 하는가? 경(卿)은 마음가짐이 근신하고 정성스러우며 일에 임함이 충실하고 근간하여 누대의 조정에 내리 베풀하며 중시 태만하지 않았고, 과덕(寡德)한 나를 보필하게 되면서는

583)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24일(정미).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더욱 노력하여, 국가만 생각하고 가사는 잊으므로 이 미 당시의 명망을 지니게 되었고 겸손하게 몸을 가져 깊이 옛사람다운 기풍을 체득했었다. 바야흐로 정치를 함께 하며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준례에 구애되어 소청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특별히 계장을 내려 존대하고 편케 하는 뜻을 표하노라. 귀나 눈의 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도 기무(機務)를 감당할 수 있는데다가 자순(諮詢)은 반드시 기구(耆舊)⁵⁸⁴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사로운 심정을 들어주기 어렵노라.”⁵⁸⁵

그런데 당시 고흥산에게 계장을 하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에 사관들이 기록한 논평을 보면,

사신은 논한다. 형산은 사람됨이 오직 재리(財利)에 힘써 1품까지 올라갔고, 나가거나 들어오미 큰 관계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있는 것이다.

또 논한다. 형산은 오래 호조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비록 재리에 힘쓰는 병폐는 있었지만, 국가의 일에 지극히 성심으로 일하였은 즉, 쉽게 얻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니,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⁵⁸⁶

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아마 각기 다른 사관의 논평을 실은 듯 한데, 앞의 논평은 다소 부정적인 것이고, 그 뒤의 논평은 고흥산이 국가를 위해 성심으로 일해 온 매우 드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관직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는 말은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흥산이 재리(財利)에 힘쓴 것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세정(稅政)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실무 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유학자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흥산은 특히 재무행정과 군사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관료여서 이와 관련된 직책을 오랜기간 맡았었고, 그 가운데서도 호조 업무에 가장 밝은 관료였다. 아마 조선왕조 시기 전체를 통털어 고흥산만큼 오랜기간 동안 호조판서

584) 노성한 신하를 말함.

585)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18일(을미).

586)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병진).

에 재직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고흥산이 이 업무에 정통하였고, 국왕을 비롯한 주변에서도 그의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고흥산의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대사간 조방언(趙邦彦)이 아뢰기를, “경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중, 양천(陽川) 등 고을은 더욱 그 폐해가 심하지만 창고에 저축된 곡식이 분디 적어서 진구(賑救)하기에 부족합니다. 경창(京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어 진구할 수도 있으나 경창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곤란하게 여기고 있거니와, 그 또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여 진구하게 하는 것도 가합니다.”하고,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늘 풍년이 들 수는 없는 것이고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방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이웃 고을도 덩달아 이를 핑계하여 국채(國債)를 갚지 않기 일썩인 것으로, 이런 풍습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저, 흉년이 들면 으레 변경(邊警)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변이 일어난 뒤에 대신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게 하더라도, 곡식의 저축이 없고서는 손 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나친 흉년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에게 흠어주었던 상환곡(償還穀)을 지체 없이 힘써 걷어들여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명분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이에 임금이 이르기를, “단지 구황(救荒)을 구제하기만 하고 상환곡 수납(收納)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뒷날 구황에 있어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며, 고흥산이 아뢰기를,

“근래 감사(監司)들을 살펴보면, 모두 환상곡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흉년이 들면 번번이 폐농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폐농되지 않은 고을도 모두 환납(還納)하지 않고 있으니, 이 폐단이 매우 큼니다. 전라도는 큰 도(道)입니다만, 그 곳에 저축된 곡식이 일군(一軍)의 90일 군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온갖 방법을 들어 주야로 생각하여 보았지만, 조처할 방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할 일이 있어 군졸들이 들어 닥치더라도, 부자들이 어찌 자진하여 곡식을 실어다 바치려 하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나라에는 반드시 곡식이 저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에게 흠어 준 환상곡을 독촉해 받아들이지는 것은 이를 다른 곳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해 쓰자는 것이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을 살릴 방법으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 백성이 죽이는 이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독촉하여 받아들여도 백성이 반드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⁵⁸⁷⁾

라고 하였다. 고형산은 국가가 아무리 급박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명분없는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원칙대로 수납하는 것에 힘써서 항상 긴급한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었고, 이러한 행정을 위해서는 그간의 관행적인 불법이나 태만한 행정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원칙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방침이 백성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 진 것이며, 오직 재리(財利)에 힘썼다고 하는 평을 받게 된 것이다.

고형산에 대한 사관의 최종 평가는 그의 졸기(卒記)에 대한 사신의 논평이다. 고형산은 중종 23년(1528) 11월에 사거(死去)하였는데,

사신은 논한다. 고형산은 본관이 횡성(橫城)이며 대대로 그 고을에 살았는데,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성종조(成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례(常例)로 외방의 고을에 제수(除授)되었는데 크게 성적(聲績)이 있었으며, 만년에는 포부를 펴서 실시(設施)한 것이 많았다. 또 변방(邊方)의 일에 익숙하여 나라의 중신(重臣)이 되었으며, 성품이 근검(勤儉)하며 질박(質朴)하고 겉치레가 없으며 성심으로 봉공(奉公)하였다.⁵⁸⁸⁾

라고 하였다. 고형산이 “성품이 근검(勤儉)하며 질박(質朴)하고 겉치레가 없으며 성심으로 봉공(奉公)하였다.”라고 한 것은 다른 기사(記事)나 기록에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평으로, 연산군 시대와 중종반정의 격변기를 지나오면서도 큰 비방을 받지 않고 계속 정통 관료로 재임하여 온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587) 『중종실록』 권41, 중종 16년 2월 24일(정미).

588) 『중종실록』 권64, 중종 23년 11월 20일(무오).

V. 고행산 관련 설화 및 일화

○ 고판서와 도깨비전설(생운리)

횡성읍 마산리와 생운리 사이의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는 툭툭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은 물이 빙빙 돌 뿐 아니라 옛날에는 상당히 물이 깊어 옛사람들 이야기로는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풀려도 모자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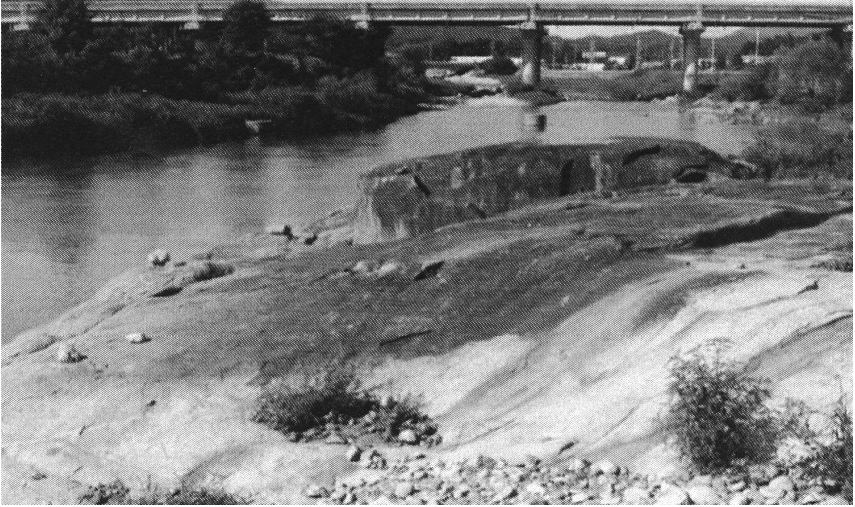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고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마다 이곳을 지나 청룡리 서당으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은 서당 훈장 어른이 하나를 가르치면 서너가지를 알 정도였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바위에 들러 놀다가 잠깐 바위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소년은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숫 조용히 해 고판서께서 주무신다.” “잠을 깨면 큰일 난다”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위를 살펴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전처럼 그렇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횡성의 인물로 꼽히는 고행산이라는 분이였다. 고행산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호조,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런 일이 있던 후 이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이 이 바위에서 잠을 청하자 “예끼 이방이놈!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소년은 커서 이방 밖에 못 지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툭툭바위가 있던 곳에는 지금 다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에 묻히거나 파괴되어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통통바위의 옛 모습(바위가 있는 곳은 생운리 쪽임)



통통바위가 있던 자리 : 통통바위는 하천가에 자리잡은 큰 바위였지만 지금은 교량 공사를 하면서 파괴되거나 땅속에 묻혀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바닥에 일부 드러나 보이는 바위가 통통바위의 일부이다.

○ 솟을묘 전설

횡성에는 고흥산의 조모인 횡성고씨묘에 대해 이른바 “솟을묘” 전설이 전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읍 조곡리 안마을에는 고평서 조모의 솟을묘가 있는데, 고평서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출세를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게 삼현육각을 울리며 금의환향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고평서 조모의 봉분이 갑자기 땅위로 다섯자는 솟아 올랐다고 한다.

이 묘는 횡성읍에서 6번국도를 따라 가다가 마산리 횡성공업사 앞길에서 조곡리 방향으로 들어가 옛 국도(지금 명칭은 한우로)를 따라 가다가 조곡리 성신교회 맞은편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2기의 묘가 자리잡고 있는데, 아래쪽 묘는 고흥산의 만형인 고사민(高思敏)의 묘이며, 위쪽에 있는 묘는 고흥산의 조모인 횡성고씨의 묘이다.

능선의 정상부에 묘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조성된 고사민묘와 단차가 다소 크고, 봉분이 삼각형태의 고식(古式)이어서 아래쪽에서 보면 마치 묘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고흥산이 과거에 급제하여 조상의 묘에 고제(告祭)를 지낼 때, 아마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 마치 묘가 솟아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생긴 것 아닌가 여겨진다.



“솟을묘”로 일컬어지는 횡성고씨묘(뒤쪽 봉분)

○ 고흥산과 강릉 대관령길

강릉과 영서지역을 잇는 대로(大路)인 대관령길 개설과 관련하여 고흥산과 관계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조선왕조 중종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던 고흥산(高荊山)이 관민(官民)을 동원하지 않고 자신이 비용을 내서 지금의 대관령 근방에 길을 넓혀 우마차가 다닐수 있도록 고갯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는 큰 길이어서 백성들은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길이 되었지만, 병자호란(혹은 임진왜란이라고도 함)이 일어나자 주문진으로 상륙한 청나라 군사가 강릉을 거쳐 이 대관령 고갯길을 넘어 한양으로 밀물같이 쳐들어 왔고, 이에 분노한 인조 임금의 대관령 고갯길을 만든 고흥산의 무덤을 파내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흥산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행정 실무에 정통한 관료였기에 대관령길을 넓혀 통행을 편리하게 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훗날 병자호란(혹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문진에 상륙한 청나라 군사가 강릉을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였다는 이야기는 황당한 내용이다. 청나라 군사가 주문진으로 상륙한 일도 없거니와 임진왜란 당시에도 서울이 함락될 때 대관령길은 왜군의 진격로가 아니었다.



○ 고흥산과 김양진의 술 마시기 시합

이기(李璽)⁵⁸⁹⁾가 저술한 『간옹우묵(艮翁疣墨)』이라는 책에는 우찬성 고흥산과 참판 김양진이 술마시는 시합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찬성(贊成) 고흥산은 주량이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당시 참판 김양진(金揚震)이 공의 후배로서 또한 술을 잘 마신다고 동료들에게 이름이 났었다. 공이 함경감사를 지낼 때에 김양진이 순무어사가 되었는데 함경도 도사(都事)가 마침 서울에 올라왔다. 도사가 김양진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어사께서 우리 도에 내려오시면 필시 감사와 더불어 술자리를 한 차례 가지시겠군요?” 하니 김양진이 말하기를, “자네들 그런말 하지 말게. 자네 감사는 좁쌀 막걸리에 익숙해서 맑고 청량한 소주를 대한다면 어찌 여러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대개 공이 황성 산골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놀린 말이었다.

도사가 돌아와 공에게 이 말을 아뢰자 공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김양진이 함경도에 내려가 공과 만나 이내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공이 말하기를, “들으니 그대가 좁쌀 막걸리와 소주에 대해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겨루어보세” 하고는 각자 예에 따라 술잔을 나눈 뒤에 자리를 재촉해 앉고 동자를 시켜 종이에 써서 기록하였다. 김양진은 마흔잔을 마시고 쓰러졌는데, 공은 조금도 술에 취한 기색이 없었다.

공은 마음에 간직한 바가 깊고 원대하며 재간과 국량이 있어서 많은 계책을 내어 처리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시대에 배운 것이 국사(國史)에 모두 실려 있다. 그런데 주량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지금까지 일컬어지지 호걸스러운 선비라 하였다.

- 고흥산은 자가 정숙(靜叔)이며, 황성사람이다. 벼슬은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위열(威烈)이다. 김양진은 자가 백기(伯起)이며, 풍산 사람으로 벼슬은 이조참의를 지냈다.⁵⁹⁰⁾

589) 이기(李璽, 1522~1600)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가의(可依)이다. 호는 송와(松窩), 또는 간옹(艮翁)이다. 장윤(長潤)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질(秩)이다. 아버지는 지란(之蘭)이며, 어머니는 원선(元璿)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시서에 능했다. 생원시에 이어 1555년(명종 1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장령, 수찬, 전한, 직제학, 좌승지, 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화군을 보필하면서 강원도에 내려가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후 부제학, 대사간,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며 지정면에 그의 묘가 있다. 여러 일화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송와잡기(松窩雜記)』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590) 신익철·조용희·이철희 번역, 『간옹우묵(艮翁疣墨)』(李璽 著),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라고 하였다. 고흥산은 술을 즐기는 호방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국가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치밀하게 처리하였다.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앞장서서 시정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자 관료였다. 그가 내섬시(內瞻寺) 첨정(添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마시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자, 고흥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직접 쌀 씻는 것, 술밥 찌는 것,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는 것을 감독하고 술이 익을 때까지 3일간 그 자리에서 숙직을 하며 지켰다고 하는 일화는 그의 공무에 임하는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술을 즐긴 신용개와 고흥산 이야기

『대동야승』의 〈기재잡기〉에는 유난히 술을 즐겼던 두 사람, 고흥산과 신용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문경공(文景公) 신용개(申用溉)와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은 금석 같이 굳은 교분이 있는 사이였다. 문익공이 등대(登對)하였는데 중종이, “경에게 친구가 있느냐?” 라고 물으므로 대답하기를, “신은 친구가 없고 오직 신용개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하였다. 그 후에 문경공 신용개가 입대하였는데, 중종이 또 묻자, “정광필이 신의 친구입니다.” 하니, 상감께서, “경(卿) 두 사람은 ‘지지지우(知己之友)’라고 할 만하도다.”라고 하였다.

기묘년의 변 때에는 문경공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경공이 만약 살아 있었다라면 반드시 가라앉혀 변이 없게 했을 것이다.” 하였고, 문익공도 또한 그가 일찍 죽어 나 혼자 이 변을 당하게 하였다고 한탄하였다.

문경공이 천품이 호탕하고 뛰어나 탁월한 큰 절개가 있었으며, 성격이 술을 좋아하여 때로는 늙은 계집종을 불러 서로 큰 잔을 기울여 취하여 쓰러져야 그만두기도 하였다. 일찍이 국화 8분(盆)을 길렀는데, 한 가을에 활짝 피므로 대청 가운데 들여 놓으니, 높이가 대들보에 닿았다. 공이 그 향기를 좋아하여 끊임 없이 감상하였는데, 하루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좋은 손님이 여덟 분 올 것이니 술과 안주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라.” 하였는데, 해가 저물어도 적적하게 손님이 오지 않았다. 집안 사람들

이 여쭙기를, “벌써 술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자, 공이 “조금만 기다려라.”하였다. 둥근 달이 떠 빛이 대청 안으로 들어와 꽃빛은 난만하고 달빛은 명량하자 공이 그제야 술을 내오라 하며 8개의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좋은 손님들이다.”하고는, 각각 그 앞에 좋은 안주를 차려 놓고 말하기를, “내가 은도배(銀桃杯)에 술을 따르리라.”하고 각각 두 잔씩을 따라 주고 파하였는데, 공도 또한 취하였다.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빠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른히 취하여 돌아갔다.

나는 생각건대 문경공의 행동은 호방하고 시원스러운 데서 출발한 것으로 꽃을 보고 흥이 발동한 것이니, 그 기상이 진실로 치켜세울 만하나, 고흥산은 주량을 채우려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어찌 술이나 마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공유물과 사유물은 구분이 다른 것이니, 문경공은 호걸스럽고 고공은 거칠다 하겠도다.⁵⁹¹⁾

591) <http://db.itkc.or.kr> : 한국고전종합DB의 『대동야승』 기재잡기 참조.

이 “기재잡기”에 실려있는 신용개와 고흥산의 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자인 박동량은 신용개를 호방하면서도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로, 고흥산은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히 고흥산이 아전을 시켜 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공비(公費)로 마련한 술을 마신 것을 다소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리보면 고흥산은 대동한 아래사람들과 두루 나누어 마시는 아량을 가진 질박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관직생활을 하였으면서도 매우 청렴한 관리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박동량의 할아버지인 박소(朴紹)가 조광조와 마찬가지로 김굉필의 제자이고, 조광조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지만 신진사립으로 왕도정치 구현에 힘쓴 인물이며, 기묘사화가 일어난 후에 특세한 김안로 등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다가 과직된 일이 있다는 점에서 기묘사화 당시 대신으로 있던 고흥산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고흥산과 죽궁 개발

고형산은 오랜 관직 생활 동안 특히 재정(財政)과 군사업무에 특출한 재능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가 수많은 제도, 행정 개선을 이룩하여 기여한 바가 크지만 당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활을 새로 개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종 11년(1516) 5월 당시 병조판서였던 고흥산은 중종에게 죽궁(竹弓)을 개발하여 바쳤는데, 이 때 중종에게 말하기를,

“이 활의 세기가 목궁(木弓)보다 갑절이 되어, 화살을 쏘면 80여 보(步)를 더 나갈 수 있으니, 우선 써 보아서 쓸 만하면, 모든 군사가 지니는 활 및 군기시(軍器寺)의 활은 이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이 변방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 각궁(角弓)의 경우는 날이 꺾거나 비가 오면 쉽게 파손되나, 죽궁은 날이 꺾거나 비가 오더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이 이미 시험하였으므로 와서 바칩니다.”⁵⁹²⁾

592) 『중종실록』 권25권, 중종 11년 5월 18일(무술).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증중은 전교하기를,

“이 활을 보니 과연 좋다. 이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이것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 보게 하여, 쓸 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무고(武庫)에 저장하고, 또한 군사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라.”

하였다. 이러한 고행산의 죽궁 개발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각궁의 경우 습도가 높아지면 각궁을 제작할 때 접합제로 사용한 아교풀이 이완되어 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고, 각궁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뿔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해 오는 물소뿔⁵⁹³)이어서, 중국에서는 이를 중요한 군수품으로 취급하여 조선에서 무역하는 거래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필요한 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그 대응으로 우리나라 한우(韓牛)의 뿔⁵⁹⁴)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물소뿔인 흑각(黑角)에 비해 쉽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흑각궁이건 향각궁이건 각궁은 모두 장력이 강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었지만 습기에 약하다는 치명적 단점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군사업무에 정통한 고행산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죽궁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이 죽궁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던 활로 흔히 “사무라이 활”로 널리 알려진 활이었다. 그러나 죽궁이 습기에 강하고 적절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특히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기병이 휴대하기에는 더더욱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성곽 방어나 보병 궁수가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비가 와서 각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단점을 보완하는 용도로도 유용한 점이 있었다.

593) 대개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이 물소뿔을 흑각(黑角)이라고 하였음.

594) 이것은 대개 향각(鄉角)이라고 하였음.

Ⅵ. 고흥산 관련 유적

1. 고흥산묘(高荊山墓)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207-1

유적현황 : 고흥산의 묘는 횡성읍에서 우천면 방향으로 6번국도를 따라 가다가 마산리에서 생운리의 새로 신설된 경강선 횡성역 옆을 지나 생운천을 따라 들어가면 폐교된 덕고초등학교가 그 앞을 지나 가다보면 정암3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망백마을쪽으로 들어가면 사선생비(四先生碑)가 나오며 왼편 길을 따라 곧바로 골짜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오른편에 작은 능선이 나타나는데 이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고흥산의 묘를 비롯하여 총 4기(墓)의 묘(墓)가 위치하고 있는데, 3기의 묘는 거의 같은 구역에 자리하고 있고, 다른 1기는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흥산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묘는 묘비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흥산의 부인 파평윤씨의 묘이며, 그 뒤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묘는 고흥산의 부친인 고사신(高思信)의 묘이다. 묘비에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判義禁府事高公之墓」라고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좌찬성은 고사신에게 증직된 직함이므로 그의 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사신묘에서 위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또다른 묘 1기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고흥산의 모친인 원주이씨의 묘이다. 본래 세워졌던 묘비는 없고, 현재 세워져 있는 묘비는 1975년 10월에 새로 세운 것이다. 묘비에는 「貞敬夫人原州李氏之(墓)」라고 새겨져 있는데, ‘묘(墓)’자는 아래쪽으로 묻혀 보이지 않는다.

고흥산묘에는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과 향로석, 묘비가 있다. 촛대묘역에는 문인석(높이 180cm) 2개, 촛대(높이 195cm) 2개, 석등(높이 190cm)과 墓碑와 상석을 갖추고 있다.



고형산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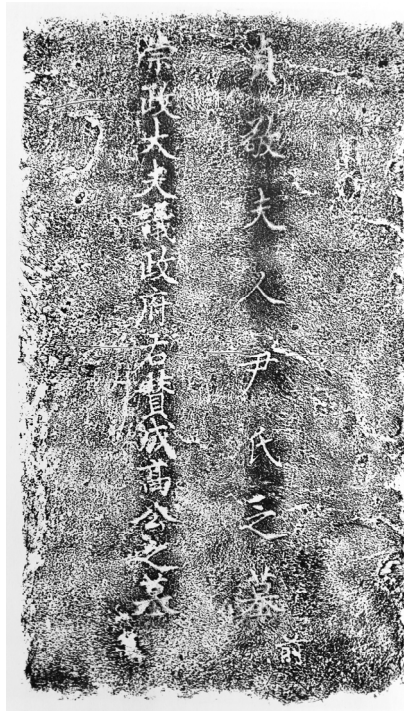
묘비에는 「貞敬夫人尹氏之墓 前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高公之墓 後」라고 새겨져 있고, 비(碑)의 크기는 비신부 가로 56cm, 높이 106cm, 두께 14cm이며, 비대석은 가로 78cm, 너비 56cm, 높이 22cm, 상부 개석부(蓋石部)는 높이 52cm이다. 문인석은 묘를 중심으로 좌측 문인석은 높이 193cm, 몸통 210cm이며, 우측 문인석은 높이 185cm, 몸통 198cm이다. 향로석은 높이 61cm, 상석은 가로 153.5cm, 너비 83cm, 높이 26cm이며, 혼유석은 가로 101cm, 너비 63cm, 높이 10cm였다.



고형산묘



고형산묘 문인석



고형산묘비 탁본(횡성문화원 『橫城金石文大觀』, 2004 참조)



고사신묘비(高思信墓碑) 탁본(횡성문화원, 『橫城金石文大觀』, 2004 참조)

고형산묘에는 본래 높이 190cm 되는 장명등(長明燈)이 상석 앞에 있었으나 2007년경 도난을 당하였다. 문중에서는 이 장명등이 종종이 하사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신고되어 있다.



장명등이 있을 당시 촬영한 고흥산묘(1995년 촬영)

이 묘역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고려시대 인물인 조충(趙冲)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또 망백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사선생비(四先生碑)는 고흥산 집안과도 관련이 있는 유적지이다. 사선생비는 정구(鄭逵), 조린(趙遴), 정곤수(鄭崑壽), 조정립(趙正立) 등 네 사람의 공적을 칭송하여 세운 비석으로써, 숙종 44년(1718) 당시 현감이었던 윤식(尹植), 진사(進士) 이장(李塏)이 건립하였으며, 철종 8년(1857)에 중건하였다. 본래는 공근면 매곡리와 수백리 합수지역에 있던 것을 1922년 황성조씨 문중에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여기에 새긴 네 사람중 은은당(隱隱堂) 조린(趙遴)이 있는데, 조린의 할머니가 바로 고흥산의 딸이다. 그리고 송호(松湖) 조정립은 고흥산의 딸 황성고씨의 증손이 되기에 고흥산에게는 외고손(外高孫)이 된다.

조린(趙遴: 1542~162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황성, 자는 중겸(仲謙), 호는 은은당(隱隱堂)으로 제용감부정 응세(應世)의 아들이다. 선조 1년(1568)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7년 사포서별제를 거쳐 의금부도사, 전생서주부, 사헌부감찰, 연천현감 등을 지냈다.

광해군 6년(1614) 간신들의 권력 농단이 심하고, 폐모론이 일어나 이원익(李元翼), 홍무적(洪茂績) 등이 쫓겨나 유배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원주(原州) 섬강(蟾江) 강가로 낙향하였다. 서울을 떠날 때 배에다 서책과 기르던 학을 싣고 가므로 사람이든 그를 신선처럼 여겼다고 전한다. 1623년 인조반정 뒤 평시서령(平市署令)에 등용되었고 이어 장악원 첨정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 80이 넘었으므로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급되었다. 김효원(金孝元), 이경중(李敬中)과 한동리에 살며 깊이 사귀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평하기를, 김효원은 백옥무진(白玉無塵), 이경중은 설월교휘(雪月交輝), 조린은 춘풍해빙(春風解氷)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고 하였다.

조정립(趙正立 : 1560~161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횡성, 자는 여직(汝直), 호는 송호(松湖)로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진(進)의 아들이다. 선조 22년(1589) 진사가 되고,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박사(博士)에 이르렀으며, 그뒤 전적(典籍), 정언(正言), 예조좌랑(禮曹佐郎), 수찬(修撰), 지평(持平), 보덕(輔德), 사간(司諫), 사인(舍人), 사예(司藝)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수정실록』에 그에 대해, “홍문관 부응교 조정립(趙正立)이 향리에서 상소하여 사직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정립은 깨끗한 절개를 지키면서 조용히 지내려 했을 뿐 영달을 즐기지 않았다. 유영경(柳永慶)이 권력을 훔쳐 잡은 이후로는 시사(時事)가 날로 변하였는데, 그가 끌어들이기 용한 자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염치없는 무리들뿐이었다. 이 때문에 정립은 더욱 벼슬에 뜻이 없어서 여러 번 전한(典翰)과 사인(舍人)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⁵⁹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면서 상소를 올려 상사(喪事)의 법도가 잘 지켜지게 할 것과 양궁(兩宮)⁵⁹⁶⁾에 모두 효성을 다하여 서로 이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공도(公道)와 사문(私門)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

595) 『선조수정실록』 권40, 선조 39년 10월 1일(병신).

596) 여기서 양궁(兩宮)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는 광해군에게는 의붓어머니가 되고, 광해군의 친모는 이미 작고한 공빈김씨(恭嬪金氏)이므로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임.

공도를 환하게 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뢰었다. 이후 응교(應敎), 집의(執義), 사정(司成)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광해군 4년(1612)에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일어나자, 관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김직재의 일당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부득이 직제학에 취임하였으나 곧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정경세, 한백겸(韓百謙)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을 닦았다.



사선생비(四先生碑)

○ 전(傳) 고흥산신도비(高荊山神道碑) 귀부(龜趺)

횡성읍 정암 3리 망백마을 골짜기 안쪽의 서남쪽 작은 개천가에는 고흥산의 신도비 귀부(龜趺)라고 알려진 거북모양 비대석이 1기 있다. 자연석을 대략 거북머리 모양과 몸통의 형태만 갖추도록 거칠게 다듬고 그 위에 비좌공(碑座孔)

파서 비신(碑身)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은 귀부만 남아있고 비신은 찾아 볼 수 없다. 귀부는 길이가 191cm, 높이 52cm, 너비 97cm이며, 비좌공은 길이 65cm, 너비 17cm, 깊이 19cm이다.

이 귀부형 비대석이 고흥산과 연계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0m 되는 지점에 고흥산의 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비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귀부형 비대석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고 본래 이곳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신도비는 보통 묘의 동남쪽 근처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서쪽으로 4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귀부형 비대석이 고흥산묘와 관련된 석물일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근처에 사찰터가 있다고 하므로 그 사찰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다.



전(傳) 고흥산신도비(高荊山神道碑) 귀부(龜趺)

2. 횡성고씨묘(橫城高氏墓)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유적현황 : 횡성읍에서 6번국도를 따라 가다가 마산리 횡성공업사 앞길에서 조곡리 방향으로 들어가 옛 국도(지금 명칭은 한우로)를 따라 가다가 조곡리 성신교회 맞은편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2기의 묘가 자리잡고 있는데, 아래쪽 묘는 고흥산의 만형인 고사민(高思敏)의 묘이며, 위쪽에 있는 묘는 고흥산의 조모인 횡성고씨의 묘이다.

고사민의 묘에는 문인석과 망주석(새로 건립한 것임), 구묘비(舊墓碑)와 신묘비(新墓碑), 그리고 새로 만든 상석이 놓여있다. 구묘비는 마멸되어 글자를 알아 볼 수 없고, 신묘비에는 「贈工曹參判行蔚山郡守濟州高公思敏之墓 配貞夫人 晉州姜氏」라고 새겨져 있다. 상석에도 또한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사민은 자(字)가 행휴(行休), 호가 눌운(訥云)이다.



횡성고씨 묘역(앞쪽 고사민묘, 뒤쪽 횡성고씨묘)



황성고씨묘

황성고씨의 묘에는 문인석 2기와 구묘비(舊墓碑)와 신묘비(新墓碑), 그리고 새로 만든 상석이 놓여있다. 구묘비는 뒤쪽으로 눕혀져 반쯤 땅에 묻혀 있는데, 비신과 개석(蓋石)이 일체형으로 된 전형적인 조선전기의 묘비 형태이며, 비문은 마멸되어 글자를 알아 볼 수 없다. 신묘비는 2009년 5월 14일 제주고씨 화전군과 종중에서 건립한 것으로, 전면에는 「貞夫人橫城高氏之墓」라고 표기되어 있고, 후면에는 황성고씨의 부군(夫君)인 고습(高襲)과 그의 세 아들인 고사민(高思敏), 고사준(高思俊), 고사신(高思信)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있고, 그 아래 줄에는 고습(高襲)의 손자인 고맹손(高孟孫), 고중손(高仲孫), 고달생(高達生), 고향산(高恒山), 고흥산(高荊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고습(高襲)은 제주고씨 화전군과 6세손으로, 조선 태종 때에 선무랑(宣務郎: 종6품 하계) 금성현령겸권농단판관(金城縣令兼勸農團判官)을 지냈으며, 그 다음에 기록한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라고 기재한 것은 아마 고흥산이 중종 16년(1521) 종1품 우찬성으로 승진하면서 추증된 증직인 것으로 여겨진다.

횡성고씨의 묘는 고행산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하자 봉분이 갑자기 솟아올랐다고 하여 “솟을묘”라고 한다. 이 횡성고씨묘 봉분 주변에는 자연석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봉분 기저부의 보호를 위해 돌을 두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고려시대 묘 가운데 즈석봉토분(葦石封土墳)이 있는데 이는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덮고 다시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드는 형식을 말한다. 횡성고씨묘가 발굴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식을 알 수 없지만 즈석봉토분일 가능성도 있다.

VII. 고흥산 관련 사료

○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0일(己卯)

고형산에게 가자하다

… “… 지평 현감(砥平縣監) 고흥산(高荊山)은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그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썼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가자(加資)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다른 예(例)에 의하여 가자(加資)한다면 … 고흥산(高荊山)은 승훈랑(承訓郎)을 제수하여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7일(甲午)

종사관 고흥산에게 삼수에 보를 설치하는 일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피게 하다

성준·이계동 등이 아뢰기를, “지금 종사관 고흥산(高荊山)을 삼수로 보내어 어떤(魚面)·감파(甘坡)·석모로(石毛老)에 축성하도록 하였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어떤은 강내(江內)에 있으니, 축성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감파·석모로리는 거민이 30호에 불과한 데다 또 강외(江外)에 있으며,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들이 모두 들에 나가 있으니 만약 적변을 만나게 되면 보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양리(兩里)의 거민들을 삼수 본진으로 옮겨야 하고 남도 군사로 하여금 또 2보(堡)에 수자리 살도록 하여 괴로움을 겹치게 함은 불가한 일이오니, 형산으로 하여금 2보의 설치에 대한 적당 여부를 다시 살피도록 하소서.”하니, 이를 좇았다.

○ 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1월 20일(乙亥)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

○ 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1월 26일(辛巳)

고형산이 함경도의 일에 대해 아뢰다.

… 장령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경도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변방에 옮긴 인민들을 보니 지극히 영락 쇠진했습니다. 국가에서 백성을 북도로 옮길 때에는 밭갈이할 땅을 골라서 주고서 3년을 한하여 복호(復戶)와 면세를 하여 주니, 위무 구휼하는 도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이 거개가 위무 구휼하여 주지 않으며, 주었다는 전토도 유명무실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니 무엇으로 살 밑천을 삼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감사로 하여금 밭갈이할 만한 전토를 선택하여 주게 하옵소서.”하니, 왕이 좌우 사람들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변방에 옮긴 사람들이 안접(安接)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감사와 수령이 위무 구휼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니, 장령의 아뢴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여러 가지 일을 총결(總決)하니, 어느 겨를에 친히 전토를 선택하여 옮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옛 법을 거듭 밝히고 수령을 신척하여 옮긴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옵소서.”하고, 고흥산이 아뢰기를, “만일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서 그들에게 준 전토가 흑시라도 이름만 그 수효를 채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을 즉시 파출(罷黜)케 명한다면 거의 그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에서는 군사와 백성이 회소하여 예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계축년, 최윤덕(崔潤德)이 서정(西征)할 때에는 평안도 군사가 2만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다만 1만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옮겨간 백성들을 안접하지 못하여 날로 영락 쇠진하여져서 군사가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성을 옮겨 안접하는 시책은 역시 옛 법을 거듭 밝혀야 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부하고 실한 자를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한다면 반드시 원통 억울함이 있겠지만, 범죄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모두 옮겨 살게 한다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에 있으면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보았는데, 홍원(洪原)에서 단천(端川)까지가 남도(南道)가 되고, 길성(吉城)에서 명천(明川)까지가 북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고산(高山)·거산(居山)·수성(輸城) 등의 3대 역(驛)이 있습니다. 남도 병사(兵使)는 북청(北靑)으로 본영(本營)을 삼는데, 만일 삼수(三水)·갑산(甲山)에 적변(賊變)이 있어도 시기에 맞추어 달려가 구원합니다. 그런데 북청에서 갑산까지가 3백 30리요, 그 사이에는 제인관(濟人館)·종포(鍾浦)·웅이(熊耳)·허천(虛川) 등의 역이 있고, 갑산에서 삼수까지가 2백 10리인데, 그 사이에는 적생역(積生驛)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들은 큰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역에 말이 겨우 2~3 필밖에 없습니다. 병사의 행차에는 군관·반

인(伴人) 등 허다한 사람들이 있으니, 말 짐바리가 반드시 많은지라 부득이 남도의 역마(驛馬)를 뽑아 가지고 가는데, 다만 기한에 맞추려고 달리느라 죽는 말이 자못 많으니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제인관·적생 등 역에는 큰길의 예에 의하여 마필(馬匹)을 많이 세우고 우리(郵吏)를 더 두어서, 남도 거산 등 역의 폐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곧은 길의 우역(郵驛)에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 야인(野人)이나 대소 사객(使客)이 왕래할 때에 진상하는 물품의 수송 등으로 마필을 쉴 때가 없습니다. 또 고산역의 폐단으로 말하면, 본영을 함흥(咸興)으로 하고 안변(安邊) 등의 관아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모두 함흥에 바쳐서 서울에 이르게 하는데, 그 왕래에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 나르고 부족하면 혹 소바리로 실어 나르며, 소가 부족하면 남녀가 지고 이고 하여도 지탱하지 못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각역에는 대·중·소에 따라 마필이 원래부터 정하여진 수가 있으며, 이보다 앞서 그 말 수에 따라서 위전(位田)을 주고 공수전(公須田)의 일수(日守)역시 수를 채워 주기 때문에 역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년, 양전(量田)할 때에는 <역이 있는 곳을> 길의 대·중·소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 마필의 유무(有無)만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역로가 날이 갈수록 더욱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에, 병조에서 역로를 회복하는 계책을 아뢰었는데, 함경도의 곧은 길은 큰길의 준례대로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법은 이러하지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이 전에 감사(監司)와 함께 본도의 역로를 회복시킬 계책을 아뢰었는데, 청하옵건대 곧 그대로 시행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의 위전(位田)과 공수전(公須田) 및 일수(日守)는 그 <역로의> 대·중·소에 따라 수에 준하여 주고, 역리가 희소한 곳은 역시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로 충당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병조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상고하여 본 후에 처치하겠다.”하였다. 고흥산이 다시 아뢰기를, “홍백경의 범행은 지극히 중하오니 청하옵건대 그 죄를 깊이 다스리소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 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2월 6일 (庚寅)

장령 고흥산이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를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 장령(掌令)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이 죽으면 수령(守令)은 사(赦)가 있기 전임을 막론하고 파출(罷黜)됩니다. 다만 겸사복(兼司僕)도 사냥할 때 사복시 말을 타며, 여러 사람들도 사냥 그물을 말에 신고 나가는데, 한번 먼 곳으로 나가면 혹 20일까지 되어서야 돌아오매, 그만 <말이> 여위고 지쳐 병이 생기

게 되는데, 아무 죄책을 받지 않고 유독 나누어 기른 각 관아 수령만을 죄 준다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청하읍건대 금후로는 각 고을에 말을 먹이고 기르는 데 조심하지 않아서 죽게 한대든가, 사복사에서 병든 말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러 재상들과 의논하라.”하였다.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윤대(輪對)는 조종조의 고사인데 오래도록 폐지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행하소서.”하였는데,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 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2월 9일(壬辰)

고형산이 사복시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따를 수 없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고형산(高荊山)이 사복시(司僕寺)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좃을 수 없다. 예전 말에 ‘범이 쇠털 같다.’고 하였는데, 어찌 가볍게 옛 범을 고칠 것이겠는가.”하였다.

○ 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4월 6일(己丑)

야인이 함경도 혜산에 살기를 청하므로 고흥산을 보내 실정을 알아보다

야인(野人)이 함경도 혜산(惠山) 등지에 들어와 살기를 청하므로, ... 전교하기를, “저들이 만일 고집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종당에는 필경 부득이 허락하게 될 것이니, 지금 정승들이 아뢴 뜻대로 별도로 조신(朝臣)을 파견해 보내어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아본 후에 처리함이 가하다.”하였다. 성준 등이 아뢰기를, “광흥창수(廣興倉守) 고흥산(高荊山)이 일찍이 그 도의 도사(都事)를 지내어 변방 사정을 잘 알므로 그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3일(乙卯)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 연산군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6일(戊午)

장령 고흥산 등이 장성을 쌓는 등 일을 논계하다

장령 고흥산(高荊山)과 정언 심순문(沈順門)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고흥산이 또 동청례(童淸禮)를 위장(衛將)에 임명함이 불

가하다는 일과 대간과 정조(政曹)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장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수의(收議)하겠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8일(庚申)

고형산 등이 장성을 쌓는 일과 송여해 등이 승진한 것이 불가함을 논계하다

장령 고흥산(高荊山)과 정언 심순문(沈順門)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함과 송여해(宋汝諧)가 일찍이 성종께서 승하하신 날에 혼취(婚娶)한 일로써 죄를 받았으니 지금에 서용(敍用)할 수 없음을 논계하였다. 고흥산(高荊山)은 또, 안진생(安晉生)은 나약한 사람인데도 평해 군수(平海郡守)를 제수하고, 채숙저(蔡叔渚)는 경력도 없으며 익숙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금화 현감(金化縣監)을 제수하고, 이균(李鈞)은 부정(副正)을 제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제용감 정(濟用監正)으로 승진한 것이 불가하다는 일과, 정조(政曹)·대간(臺諫)이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송여해(宋汝諧)·안진생(安晉生)·채숙저(蔡叔渚)·이균(李鈞) 등의 일은 정승에게 의논하라. 나머지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5일(丙戌)

이승건이 고흥산과 어면보를 살펴보고자 했던 일을 아뢰다

… 동지사(同知事)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에 3년 동안 있었으므로 남북(南北) 방수(防戍)의 폐단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새로 어면보(魚面堡)를 설치하고 삼수군(三水郡)에서 어면보까지 새 길을 개통했는데, 그 중간에 5개의 큰 재(嶺)를 넘게 됩니다. 높고 험준하여 발을 붙이기가 어려우므로 군사들이 말을 타거나 짐을 싣고 가려면 살아서 돌아 온 사람이 대개 적으며, 또 어면보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거주하는 백성들이 전연 생활해 갈 수 없으므로 삼수군 백성들이 보(堡)를 옛날의 후주(厚州)에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고흥산(高荊山)과 더불어 그 땅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조정의 명령이 없는 까닭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으니, 삼수 사람들의 등장(等狀)에 의거하여 다시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서 보(堡)를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 ”하였다. …

○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일(癸丑)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에게 삼수에 어떤보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 조사하게 하다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고흥산(高荊山)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권중개(權仲愷)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난번 삼수(三水) 지방의 어면(魚面)·신방구비(神方仇非)에 두 성보(城堡)를 설치한 것은 적군을 방어하기 편리하게 한 것이다. 지금 듣건대 두 성보에서 경유(經由)하는 길이 매우 높고 험준하므로 남쪽 고을 군졸(軍卒)들이 왕래하기가 곤란하여 폐해가 너무도 적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옛 후주(厚州)에 성보를 설치한다면 적군의 통로를 제압할 수가 있으므로 어면보(魚面堡)와 신방구비(神方仇非)는 없어도 된다.’고 한다. 너희들은 갑산 부사 전오륜(全五倫)과 함께 급히 후주(厚州)에 가서 그 형세(形勢)와 이해(利害)를 살펴 보아 그 적의 통로가 많은지 적은지를 자세히 둘러 보며, 그 방어하기 편리하고 유익하기가 어면이나 신방구비보다 나아 반드시 진(鎭)을 이곳에 두고 저 두 성보를 없애야 한다면, 그 토지의 넓고 좁음과 밭은 몇 경(頃)이나 만들 수 있고 사람은 몇 호나 거주할 수 있으며 토병(土兵)은 몇 사람이나 들여 보내야 하고 수졸(戍卒)은 몇 명이나 두어야 할지 헤아려 보며, 삼수군 사람들이 또한 이사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만약 과연 진을 두게 된다면 어면, 신방구비 보가 없이 유독 이 한 진만으로도 요해지(要害地)가 되어 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개록(開錄)하여 급보로 아뢰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40권, 연산 7년 6월 23일(己亥)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사간원 사간으로 삼았다. …

○ 연산군일기 40권, 연산 7년 7월 5일(辛亥)

대사헌 성현과 사간 고흥산이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리다

대사헌 성현(成愼)과 사간 고흥산(高荊山)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큰일을 시작하고 대중을 동원함에 반드시 시세를 살피고 이해(利害)를 헤아리며, 여러 사람의 계책을 모으고 인심에 순응한 뒤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에는 시작할 만한 것이 있고 역사(役事)는 일으킬 만한 것이 있지만, 때가

진실로 이롭지 못하다면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형세가 매우 어렵다면 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이해(利害)가 상관(相關)하면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장성(長城)을 쌓는 일은 홀로 신 등만이 그 불편(不便)함을 말할 뿐 아니라, 시종(侍從)하는 신하들도 모두가 그 불편(不便)함을 말하고, 아래로 온 나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곧 공의(公議)입니다.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대신(大臣) 2~3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의 생각엔 장성(長城)을 축조한다면 거민이 편안히 살 수 있고, 서북(西北) 지방이 영구히 근심이 없을 줄로 여기지만,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신들의 계책과 같이 장성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장(亭障)을 연결하고 봉화불을 조심한 후에야 적군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본도(本道)는 군졸의 수효가 적어 평상시에 읍(邑)과 진(鎭)의 입구(入口)도 오히려 능히 지킬 수 없는데, 어느 사람으로써 국경의 방비에 벌여서 진을 치겠습니까. 또한 성을 쌓는 데 드는 인부는 마땅히 17만 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5도(道)의 토지는 총계 1백 3만 2천 7백 결(結)이니, 만약 8결(結)에 한 명의 인부를 낸다면 13만 4천 3백 23명이 되고, 10결에 한 사람을 낸다면 10만 3천 3백 27명이 되며, 15결(結)에 한 사람을 낸다면 6만 8천 8백 84명이 되고, 20결에 한 사람을 낸다면 5만 1천 6백 65명이 됩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비록 8도 인민을 다 찾아 모아도 오히려 그 수효를 채울 수 없거늘, 하물며 5도이겠습니까. 만약 8결이나 10결에 한 사람을 낸다면, 내는 인부가 너무 많아서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어, 소농가(小農家)는 스스로 농사지를 수 있지만, 중농가는 당연히 2~3명을 내어야 하고, 대농가에서는 4~5명을 내어야 합니다. 대체로 토지의 결복수(結卜數)는 토지의 비옥에 따라 등급을 정하므로, 토지가 비옥하면 그 수량이 많고 토지가 척박하면 그 수량이 적게 됩니다. 하삼도(下三道)는 인구가 조밀해서 한 농부가 받은 토지는 비록 적지만 결복수는 많으며, 강원도·황해도는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한 농부가 받은 토지는 비록 많지만 결복수는 적게 되니, 토지의 비옥은 같지 않아도 인부 내는 것은 다름이 없으므로, 대농가와 소농가가 함께 그 손해를 받게 됩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는 그 길이 매우 먼 까닭에 30일의 노정(路程)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머물러 역사(役事)하는 데 30일과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일씩 해서, 한 인부가 3개월 동안 먹을 양식이 무려 20여 두(斗)가 되며, 한 인부가 가는데 짐을 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배수(倍數)나 되니, 만약 20일의 노정이 넘는다면 그 손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8결·10결에는 인부 내는 것을 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군사를 뽑아서 쓰도록 하신다면 마땅히 7월에 양식을 준비하고 8월에 들어와서 부역을 했어야 되며, 묵은 곡식은 이미 떨어졌고 햇곡식은

나오지 않아서 가난한 백성들은 집안이 텅 비게 되었는데, 무엇으로써 행장(行裝)을 준비하겠습니까. 또 설령 의복을 팔고자 한들, 집집이 모두 그러한데 어디에 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가을버는 논에 있고 아직 수확을 못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해를 마칠 때까지의 양식을 준비하며, 다음 해 봄의 쓰임새를 마련하겠습니까. 또 봄철에 성을 쌓는다면, 인부가 2월에 들어가 삼사월에 부역을 하고 5월에 돌아오게 되니, 농사를 완전히 그만두게 되어 경작과 파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이 모두 손해가 있되 봄철이 더욱 심합니다. 북방은 날씨가 일찍 추워지고 그 추위가 더욱 혹독한데, 남방 사람들은 수토(水土)에 익숙하지 않아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험난한 도로에 굶주림은 몸에 사무치고, 바람과 눈에 부딪쳐 손발이 얼어터질 터이니, 그들이 능히 성을 쌓는 역사를 감당하겠습니까. 오랑캐들의 절발(竊發)은 일정치 않은 것이니, 그들이 틈을 엿보다가 갑자기 오기라도 한다면 짙막한 무기도 갖지 않은 인부들이 장차 무엇으로써 침략하는 오랑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공역의 수고로움과 양식의 소비(消費)는 헤아리지 않고, 또 시세의 쉽지 않음도 생각지 않고는 그저 말하기를 ‘큰일을 이룩하려면 작은 폐단을 돌아볼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한 모퉁이의 근심을 풀고자 하여 사방의 백성들을 시끄럽게 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근심치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 어찌 작은 폐단만이 되겠습니까. 일으킬 수 없는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이를 수 없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요, 백성은 임금의 적자(赤子)입니다. 적자가 살 곳을 잃고 울면서 부모를 사모한다면 부모된 자는 마땅히 거두어서 돌보고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순제(舜帝)는 백성의 생계(生計)를 넉넉하게 했으며, 우왕(禹王)은 백성의 죄짓는 일을 보면 울었으며, 탕왕(湯王)은 곤궁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였으며, 문왕(文王)은 백성을 보기를 자기 몸 아픈 것같이 했다 하여, 전대(前代)의 역사에서 이를 찬미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순제(舜帝)·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의 덕(德)을 가지셨으면서 순제·우왕·탕왕·문왕으로 모범을 삼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얻지 못해도 군주는 오히려 편안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방의 억만 창생(蒼生)들이 그 마음을 편안하게 못가지고 있음이겠습니까. 지난해, 전라도 백성들이 화도(火島)에 성을 쌓을 때, 왕래하는 도로가 매우 가깝고 공역(功役)이 그다지 수고롭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역사(役事)를 꺼려 해서 도망을 쳤다가 벌을 받은 사람이 백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편안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까닭도 없이 머나먼 서북(西北) 지방에 부역을 보내어, 그 일이 10배가 넘고 그 수고도 10배가 넘는다면, 불량한 사람은 장차 반드시 흩어져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비

록은 집안 가족을 모두 죽인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삼포(三浦)의 왜인은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해중(海中)의 여러 섬 오랑캐는 교만하기가 날로 심해서 해변을 몰래 빠져나와 우리 거주민들에게 노략질을 하고 있으니, 남방의 숨은 근심거리가 서북(西北) 지방보다 오히려 심한데, 어찌 백성을 동원하여 이루기 어려운 역사에 가도록 하겠습니까.”하였다.

○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 12월 26일(庚午)

한치형 등이 북방의 일과 고흥산에게 상줄 것을 청하다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부령(富寧)에 진영(鎭營)을 옮겨야 할 일을 고흥산(高荊山)을 보내어 살펴보고 조치하게 하소서. 또 고흥산은 나랏일에 부지런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니, 포상(褒賞)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두 품계(品階)를 더 올려주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8일(辛丑)

함경도에 고흥산을 보내 아전을 없애는 일과 백성들의 폐해를 구제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달하도록 하다

… 한치형(韓致亨) 등이 또 당시의 폐단되는 점을 써서 아뢰기를, “… 함경도는 본래부터 관찰사의 아전(衙前)이 4백 명, 절도사(節度使)의 북도 아전(北道衙前) 6백 명, 남도 아전(南道衙前) 4백 명을 두었는데, 이 숫자 외에도 예차 아전(預差衙前)의 수효가 지나치게 많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종사관(從事官) 고흥산(高荊山)으로 하여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함께 의논하여 예차 아전들은 영구히 없애 버리되,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상의 분부를 받아서 행하게 하소서. 풍문으로 듣건대 ‘경성(鏡城)의 주민(住民)은 8백여 호(戶)인데 병사(兵使)의 아전이 3분의 2를 차지함으로써 관청에서 역사를 백성의 수효가 적어 모든 빈객(賓客)의 지대(支待)를 아전을 시켜 공관(供辦)하게 하니, 그 아전들이 민간에 징수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하여 날로 곤궁해졌다고 합니다. 전일에 이미 이러한 폐단을 상세히 적어 계달(啓達)했는데, 지금 봉행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또한 고흥산(高荊山)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달(啓達)하도록 하소서.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의창(義倉)의 곡식을 수납할 즈음에 문기(文記)를 지우지 않고서 백성들에게 채자 징수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이후로는 곡식을 수납할 때에는 첩자(帖子)를 만들어 주도록 하되, 만약 봉행(奉行)하지 않는다면, 사죄(赦罪) 이전인지 가리지 말고 파출(罷黜)¹⁵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좇았다.

○ 연산군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6일(己酉)

고형산으로 하여금 절도사와 의논하여 수졸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다

경연(經筵)에 남시었다. … 이극균은 아뢰기를, “ … 또 신이 함경도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듣건대 ‘단천(端川)의 쌍청구자(雙淸口子)는 요해지가 아닌데도 지키는 군사가 많다.’고 하니, 국가에서 구자를 설치한 것은 외구(外寇)의 침입을 방어하려는 것인데, 지금 이 구자는 비록 북청(北靑)의 금창기(金倉岐)안에 있지만, 금창기가 갑자기 도둑의 변고를 당하게 되면 쌍청(雙淸)의 병졸이 능히 제때에 구원을 하겠습니까. 고형산(高荊山)이 지금 그 도(道)에 갔으니, 남도(南道)의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편리한가를 살펴서 빨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육진(六鎭)의 수졸(戍卒)은 매양 1개월 만에 교대하게 되므로 갔다가 오는 사이에 매양 열흘이 지나니, 비록 번(番)을 쉰다고 하지만 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 또한 고형산으로 하여금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의논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그들에게 휴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였다. …

○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6일(丁亥)

고형산이 북방의 진에 관해 아뢴 것을 정승들이 의논드리다

전에 고형산(高荊山)이 부령진(富寧鎭)을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에 설치할 일과 쌍청보(雙靑堡)를 금창기(金昌岐)를 물려 배치하는 일로써 아뢰기를, “정승파오달은 땅이 좁고 전결(田結)이 너무 적어 큰 진(鎭)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금창기는 적의 길의 요충(要衝)이므로 성보(城堡)를 옮기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하였다. 정승들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하니,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부령(富寧)과 쌍청(雙靑)에 진(鎭)과 보(堡)를 옮겨 배치할 곳과 산천(山川)의 형세를 일찍이 본 일이 없으니, 편리한지의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만, 고형산의 계본(啓本)과 도형(圖形)으로써 본다면, 그의 소견이 매우 사의(事宜)에 합당하니,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부령과 회령(會寧) 사이를 내왕하는 도로는 적(賊)을 방어하는 땅이 아니고 곧 사냥하는 야인(野人)들이 항시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두 고을 백성들의 전답이 대부분 그 가운데 있으나, 근래에는 모린

위(毛隣衛)의 야인(野人)들이 모두 귀순(歸順)했기 때문에 적의 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 혼단(鬪端)을 열어놓는다면 그 걱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만약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긴다면 경성(鏡城) 등지의 적의 통로가 모두 막혀, 적의 변이 어디서 발생할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 등이 전일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흥산의 말을 듣건대, 정승파오달 근처는 쌓인 눈이 4월이 되어도 오하려 녹지 않으므로 다만 구맥(瞿麥)이나 경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다면 군사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큰 진(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고흥산이 또 말하기를 ‘무산보(茂山堡)를 양영만동(梁永萬洞)의 상단(上端)으로 옮기고, 풍산보(豐山堡)를 삼기(三岐)로 옮기며, 또 회령(會寧)의 토병(土兵)을 나누어다가 다시 하보을하진(下甫乙下鎭)을 설치한다면 부령과 회령의 백성들 경작하는 토지가 모두 내지(內地)에 있게 되고, 또 3진이 서로 연하게 되니 비록 적이 변이 있더라도 앞뒤에서 서로 구원하게 되어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하니, 이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다만 두 보(堡)의 군사와 백성의 수효가 적고, 회령의 군사도 또한 많은 수효를 덜어 낼 수가 없으니, 지금 하삼도(下三道)의 북도(北道)에 입거(入居)시키기로 초정(抄定)한 사람을 수효를 헤아려 나누어 보내, 방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며, 쌍청보(雙靑堡)를 물려서 배치할 일도 또한 계문(啓本)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고형산이 부령진(富寧鎭)을 옮겨서 설치하지는 곳은 유차령(踰車嶺)으로부터 바로 정승파오달까지인데, 그 사이의 토지가 2백 결(結)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정승파오달로부터 남쪽으로 작은 재(小嶺)를 넘으면 평지가 진(鎭)을 설치할 만한데, 그곳으로부터 제봉(祭峰) 앞쪽 1식(息) 가량의 평원(平原)과 또 부령의 본진(本鎭) 사이에 전지(田地)가 많이 있으니, 이것이 신이 말한 곳입니다. 형산(荊山)이 여기를 보지 않고 왔으니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또한 도표를 살펴보건대, 진실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또 부령본진(本鎭)에 원래부터 있는 군사가 4백 74명이니, 소속된 무산보(茂山堡)의 96명을 제하면 옥련(玉連)의 군인까지 합해서 수효가 3백 78명이나 됩니다. 이로써 헤아려 보면, 새로 입거하는 자들이 비록 1백 50호(戶)라 하더라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배설(排設)한 곳이 험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니, 적들이 쉽사리 드나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보내어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쌍청보(雙靑堡)를 물려 배치할 일은 추수하고 나뭇잎이 떨어진 뒤에 절도사(節度使)가 본군(本郡)과 단천 군수(端川郡守)와 함께 진보(鎭堡) 설치할 만한 곳을 살펴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堡)에 부방(赴防)하는 군사의 수효가 적으므로 모름지기 적의 통로(通路)의 요충(要衝)인 험준한 곳에 배설해야만 우리를 보전하고 적을

제어할 것이니, 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이러한 의도(意圖)를 모두 알고서 배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니, 극균(克均)의 의논을 좇았다.

○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6월 21일(辛酉)

정미수가 대간의 논박에 대한 해명을 아뢰다

정미수(鄭眉壽)가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에 고흥산(高荊山)이 성(城) 쌓는 일로 본도(本道)에 갔었는데, 성 쌓은 곳에 민호(民戶)를 뽑아들어야 하는 까닭으로 덕원 부사(德源府使) 최숙경(崔淑卿)과 정평 부사(定平府使) 남효원(南孝元)으로 차사원(差使員)을 삼아 본영(本營)으로 불러 면대하여 부탁하였고, 또한 신이 계집종 18명과 사내종 3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신만이 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전례(前例)가 재상(宰相)이 가족을 거느리고 멀리 관외(關外)로 나가게 되면 사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 정승이 모두 양계(兩界)의 감사를 지냈으니 하문(下問)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흥(咸興)이 피폐한 일은, 신이 부임하기 전에 하옥(河沃)은 관관(判官)으로 해유(解由)를 하고도 오히려 나올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김수영(金秀英)이 관관(判官)인데 미곡(米穀)과 잡물(雜物)이 퍽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형운(韓亨允)과 고흥산이 모두 명을 받고 왕래하였으니, 만약 하문하신다면 두 고을 수령이 본영(本營)에 들어온 이유와 함흥이 피폐했던 까닭을 반드시 신을 위하여 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의 논핵(論劾)은 인물의 현명 여부에 있는데, 신은 진실로 용렬하므로 마땅히 대간의 논박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가자를 개정하여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회보(回報)하겠노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6월 22일(壬戌)

정미수의 일을 대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정미수는 문종(文宗)의 외손이므로 특별히 가자(加資)한 것이다. 미수의 말이 대간(臺諫)과 같지 않으니, 대간에게 물어 보아 아뢰라. 또 한형운(韓亨允)·고형산(高荊山) 등 그전에 감사를 지낸 재상을 불러서 미수의 말을 대질하도록 하라.”하자, 승지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미수의 말로써 대간에게 대질할 것인지 감히 품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말의 근거만 물어 보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6월 22일(壬戌)

고형산이 정미수의 일로 부름을 받고 정상을 아뢰다

… 군자감정(軍資監正) 고형산(高荊山)은 아뢰기를, “경신년에 신이 성 쌓는 일로 함경도에 가서 감사 정미수를 종성(鍾城)에서 보았는데, 덕원 부사 최숙생이 따랐으며, 신 유년에 또 함흥에 갔는데 정평 부사 남효원이 또한 왔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도사(都事)였기 때문에 그 조잔하고 피폐함을 알았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 소생하여 회복된 실상은 신이 다만 지나왔을 뿐이니, 어찌 상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관찰하건대 그다지 처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 7월 17일(丁亥)

축성 도체찰사 성준 등이 북방 축성 등의 일을 아뢰다

축성 도체찰사(築城都體察使) 성준(成俊)과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함흥부(咸興府) 하란(何亂) 북쪽 삼수군(三水郡)의 심방구비보(心方仇非堡)와 어면보(魚面堡) 등지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일과 심방구비보에 성을 쌓는 일과 단천군(端川郡)의 쌍청보(雙淸堡)를 옮겨 배설하는 곳에 축성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의 일은, 평소부터 사무를 잘 알고 있는 종사관(從事官) 고형산(高荊山)을 보내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부령부(富寧府)를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에 옮겨 배설하는 것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이보다 앞서 고형산에게 명하여 자세히 조사하라고 했으니, 금년에는 우선 이를 정지하고, 먼저 오진(五鎭)과 무이(武夷)·유원(柔遠) 등지에 보내어 두루 돌아다니면서 쇠잔하고 피폐한 형편을 조사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 7월 21일(辛卯)

좌의정 성준 등이 북방을 방어하는 군사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아뢰다

좌의정 성준(成俊), 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때로 관원을 파견하기가 어려우니, 고형산(高荊山)을 보낼 때에 부령부를 옮겨 배설하는 것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아울러 조사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 함경도는 본궁(本宮)에 소속된 사람의 본래 정원을 3백 호(戶)로 하고 보인(保人)을 9백 호로 하도록 명하고, 또 여정(餘丁) 1백명을 주어서 본래 정원의 죽는 수효에 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서 군대의 정원에 채우게 했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함경도 22개 읍(邑)의 민가(民家)가 겨우 전라도의 4개 주(州)와 같으므로, 백성은 적는데 수자리는 긴요하니 대단히 허술합니다. 지금 이양(李良)의 말을 듣건대, 삼수(三水)·갑산(甲山)의 이전에 수자리를 서지 않던 곳도 현재는 모두 수자리를 서게 되므로 전에 비해 수자리 서는 곳이 갑절이 된다 하니, 본궁(本宮) 소속의 본래 정원인 3백호 이외에 여정(餘丁) 1백 명은 모두 나누어 주어서 군대의 정원에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앞서, 함경도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명하여 감영(監營)에 소속된 수효 이외의 사람은 전부 뽑아내어서 군대의 정원에 보충하게 했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감사와 병사가 혹시 지체하여 곧 나누어 주지 못했으면 수령들은 반드시 나누어 주는 것을 독촉하지 못할 것이니, 고흥산으로 하여금 거두어 들이게 하되 만약 여전히 역사(役事)를 시키고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감사와 병사를 국문하고, 만약 이미 나누어 주었는데도 역사를 회피하고 한가로이 놀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본도의 수령들은 대개 다 무인(武人)이므로 반드시 법에 어긋난 일이 많을 것이니, 고흥산에게 어사(御史)를 겸하게 해서 규찰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 7월 22일(壬辰)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에게 사헌부 집의를 겸직하게 하다. …

○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2일(辛卯)

부령진을 정승파오달로 옮기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부령진(富寧鎭)을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도록 명령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고흥산이 아뢴 사연으로 살펴보건대, 이른바 진(鎭)을 설치할 곳은 토지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五穀)이 익지 않을 것이니, 적당한 곳이 아닌 듯합니다. 본도(本道)의 형세(形勢)는 신이 전혀 알지 못하니 고흥산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과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宰相)들과 함께 의논하여 좋은 점을 아뢰게 한 후에 정탈(定奪)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고흥산(高荊山)의 계본(啓本)을 살펴보니,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할 것 같지마는, 그러나 문자(文字)

로서는 혹시 미진한 데가 있으므로, 다만 계본에만 의거하여 의논을 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고흥산이 오는 것을 기다려, 편리한가 아닌한가를 맞대어 진술케 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오랫동안 적(賊)이 쳐들어 오는 안팎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이곳은 참으로 요충지(要衝地)입니다. 저들이 만약 귀순(歸順)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서 진(鎭)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이 만약 거칠어지게 되면 부령진(富寧鎭) 이남의 진보(鎭堡)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니, 1, 2년 동안 오곡(五穀)을 심게 하여 그 성숙을 시험해 본다는 의논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목이 울창한데 오곡이 어찌 풍성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의논은 실정에 어두운 것 같습니다. 부령(富寧) 백성들은 옮기는 것을 싫어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할 것이니, 쉽사리 의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이극돈(李克墩)·한사문(韓斯文)·홍자아(洪自阿)·박의영(朴義榮)은 의논드리기를, “신 등은 일찍이 그 곳에 가 보지 못했으므로, 그 곳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함부로 헤아릴 수 없사오나, 다만 이극균(李克均)이 아뢴 바 고흥산(高荊山) 계본(啓本)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진을 설치할 곳은 참으로 적이 쳐들어 오는 요충(要衝)이므로 진을 설치하는 데 적합할 듯합니다. 그러나 형세(形勢)로써 생각하면, 네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령(富寧)의 본 군대와 무산(茂山)·옥련(玉連) 등지의 진보(鎭堡)의 군사 수효는 비록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진을 설치하는 곳이 내지(內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반드시 큰 진 1, 2개소를 설치한 후에야 서로 구조(救助)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새로 입거(入居)한 1백 50호로써 능히 지탱해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어려움이며, 고흥산의 계(啓)한 가운데서 농사지을 수 있는 평탄하고 넓은 땅이 적고 또 모래와 돌이 섞여 있다고 했으니,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흥산도 감히 제 혼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곡을 심어서 그 성숙을 시험하게 하자고 말한 것은, 고흥산의 소견도 또한 반드시 불가하다고 한 것이니 이것이 둘째 어려움이며, 조종조(祖宗朝)에서 새로 오진(五鎭)을 설치할 적에는 모두 두만강(豆滿江)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강(江)으로써 한계를 삼았기 때문에, 국경(國境)을 지키는 데 지금까지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새 진을 설치할 곳은 강의 상류와 하류에 적이 쳐들어오는 길을 막기가 어렵고 또한 큰 강과 큰 산이 험준하게 가로 놓이지도 않았으니 자질구레한 외로운 진으로 어찌 오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종(世宗) 때에도 두 번이나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룩하지 못한 것은,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어려움이며, 지금 육진(六鎭)의 군사 수효가 줄어들었고 민생(民生)이 어려운데, 크게 확장하

여 설치하고자 함은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닐 듯하오니, 이른바 ‘시대의 형편은 쇠약한데 거창스러운 일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어려움이오니, 당분간 육진의 군사 수효가 충실해지고 농사가 계속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5일(癸卯)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이 야인에게 금물을 파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치계하다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고흥산(高荊山)이 치계(馳啓)하기를, “서울의 흥리(興利)하는 사람과 본도(本道) 백성들이, 금물(禁物)을 야인(野人)들에게 몰래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감사(監司)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다른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령(赦免令) 이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죄(重罪)로 논단함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좃았다.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1월 4일(壬申)

고형산을 해주 목사로 삼다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결원이 되어, 이조(吏曹)가 의망(擬望)을 의논하여 아뢰니, 왕이 고흥산(高荊山)에게 써서 내리기를, “이 뒤에 큰 임무를 맡기겠으니, 특별히 두 품계를 올려 제수한다.”하였다.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1월 18일(丙戌)

윤필상 등에게 부령진을 옮기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과평 부원군(坡平府院君)윤필상(尹弼商), 좌의정 이극균(李克均), 우의정 유순(柳詢), 병조 판서 이극돈(李克墩), 참판 한사문(韓斯文), 참의 홍자아(洪自阿), 참지(參知) 박의영(朴義榮), 해주 목사(海州牧使) 고흥산(高荊山) 등을 모아서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고흥산이 의논드리기를, “부령진을 옮겨 배치할 곳을 신이 작년에 직접 가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정승과 오달(政丞波吾達)에는 진(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었습

니다. 정승파오달로부터 홍빈(紅濱)의 하단(下端)인 천파(泉坡)에 이르는 1식(息)거리 안에는 지세(地勢)가 협착하여 진을 설치하는 데 적당하지 않고, 천파로부터 홍빈·제봉(祭峰) 앞에 이르러는 토지가 넓어 10여 리가 평탄하니, 만약 이 곳에 진을 설치하면 신영동(新營洞)·이원형동(李元亨洞)·속초동(束草洞)의 적로(賊路)와 허통동(虛通洞)·최달동(崔達洞) 등지의 적로를 막아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鎭)을 설치할 곳에는 4월에도 쌓인 눈이 녹지 않고, 9월에는 얼음이 벌써 단단하게 얼므로, 신이 두 차례나 왕래하면서 숨옷을 겹쳐 입었으며, 추위가 본부(本府)보다 갑절이 더하여 오곡이 미처 익지 않은 듯했고, 게다가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건대, 중국에서는 방어하는 군졸들에게 의식을 관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만 적로가 긴요한가 않은가를 조사할 뿐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의 방어는 이와 달라서, 성내(城內)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머물면서 방어하고 자신들이 옷과 양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그들의 농사짓기와 방어하기에 양쪽이 다 편리한 곳을 살펴서 진(鎭)을 설치한 후에야 백성들이 생업(生業)에 편안하고, 방어 또한 튼튼할 것이오니,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 진을 옮기려고 하는 곳이 편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산보(茂山堡)에서 풍산보(豐山堡)에 이르는 40리와 풍산보에서 회령진(會寧鎭)에 이르는 60리에는, 그 사이에 방수(防戍)하는 곳이 전혀 없으며, 두 보루(堡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땅과 다니는 길이 모두 외지(外地)에 있으므로 적로가 가깝고 또 지세(地勢)도 험하지 않으며, 검천(檢天) 이하의 강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아인들이 연속해서 왕래하여, 작년 1년 동안에 두세 번이나 사람과 마소를 약탈해 갔으니, 경화(梗化)되는 조짐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만일 때를 지어 일어나서 도둑질을 한다면, 무인지경을 들어오는 것 같이 장애될 것이 없으므로 변고(變故)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만약 무산보를 양영만동(梁永萬洞)과 동량동(東良洞)과의 중앙에 옮기고, 풍산보를 삼기(三岐)근처에 옮기고 또 하거(下車)의 아랫 지방에 다시 옛날의 보루를 세우면, 세 보루의 거리가 20여 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수미(首尾)가 서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고에 응하기가 편리할 것이요, 두 보루에서 농사짓는 논밭이나 다니는 길이 모두 내지(內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지를 수 있는 묵은 토지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토질이 또한 비옥하여 백성들 중에 옮겨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습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유순(柳詢)은 의논드리기를, “진(鎭)을 옮기거나 진을 설치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본도(本道)에 한 번도 왕래하지 못하여 형세를 알지 못하므로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극균과 고흥산의 소견이

갈지 않으므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음에리까? 우선 사신이 돌아오고 무사할 때를 기다려 일의 대체와 시무(時務)를 아는 대신을 보내어 직접 가서 편리 여부를 살펴서 계문(啓聞)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할 곳은 다만 신영동(新營洞)·이원형동(李元亨洞)·속초동(束草洞)·허통동(虛通洞)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경성(鏡城)·명천(明川)·길성(吉城) 등지의 진(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신이 경진년에 적변(賊變)이 처음 일어난 후로부터 적의 환난을 받을 때마다 계책을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요령을 알지 못했는데, 신이 절도사(節度使)가 되었을 때에 성준(成俊)과 함께 허수라(虛水羅)에 가서 안팎의 적로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 비록 허수라·홍빈(紅濱) 등처에 진(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부령에 진을 옮겨 설치한다면, 우리는 요지를 지킬 수 있고 저들은 마음대로 날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고흥산이 말한 홍빈 등지의 토지가 모래와 돌임은 신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고흥산의 소견이 신과 다르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전하께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이계동(李季冬)이 곧 상(喪)을 끝마치게 되오니, 그를 명하여 보내서 무산보와 보을하보(甫乙下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가서 조사하게 하되, 아울러 조사하여 결정하기까지를 명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풍산(豐山)·무산(茂山)의 양쪽 사이를 서로 통하는 길은 통행을 금지할 수 없는데, 하물며 백성들의 농사짓는 토지가 모두 길 바깥에 있음에리까? 절도사(節度使)에게 하유(下諭)하여 통행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극돈(李克墩)·한사문(韓斯文)·홍자아(洪自阿)·박의영(朴義榮)은 의논드리기를, “새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 등이 전일의 의논에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다만 지금 고흥산이 의논한 무산보를 양영만동(梁永萬洞)과 동량동(東良洞)의 중앙에 옮기고, 풍산보를 삼기(三岐) 근처에 옮기고 또 보을하의 옛 보루를 다시 설치하는 일은, 거리를 고르게 하고 구원(救援)에 편리하게 하는 것이니, 이 계획은 그럴 듯합니다. 요즈음 든건대, 부령(富寧)에서 회녕(會寧)에 이르는 큰 도로는, 저 야인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길ियो 우리 백성들이 항상 다니는 길인데, 근일에 절도사가 통행하는 사람이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여 길을 막고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오니, 이것은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므로 아주 불가합니다. 만약 고흥산의 계획에 따른다면 반드시 통행인이 사로잡힐 염려는 없지마는, 그러나 이 또한 폐지하고 설치한 것이니, 제도를 고치는 큰일입니다.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명하여 편리 여부와 이해와 배치해야 할 군인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고 마련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이극균(李克均)의 의논을 좇았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일(辛酉)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에게 가선을 더해 주다

전교하기를,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 고흥산(高荊山)에게 가선(嘉善)을 특가(特加)하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일(辛酉)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이 전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다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 고흥산(高荊山)이 전(箋)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다. 형산은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일어나 힘써 배워서 급제하였으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왕사(王事)에 마음을 다하고 관(官)의 일에 임해서는 자기 집의 일처럼 하여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서, 모든 지낸 직임(職任)에 다 명망과 공적이 있었다. 여러 번 북녘의 구석진 고장에 봉사(奉使)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므로 대신이 천거하여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가 되었었는데, 이제 특별히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높여져 북도로 옮겨 임명되었으므로 사례를 올린 것이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3일(辛亥)

한성부 판윤 민효증이 남도의 행영 및 무산·풍산 등의 보를 옮겨 설치하는 일이 온편하기를 아뢰다

한성부 판윤 민효증(閔孝曾)이, 함경도 절도사 고흥산(高荊山)이 형세를 그린 남도(南道)의 행영(行營) 및 무산(茂山)·풍산(豐山)·혜산(惠山)·옥련(玉蓮) 등의 보(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과 제인(濟人)·종포(終浦) 두 역(驛) 사이에 참(站)을 설치하는 일들이 온편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감사(監司)에서 갈려서 올라올 때에 형산이 신에게 부탁하여 아뢰는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乙卯)

고형산 등이 폐왕의 왕례에 대해 의논하다

… 광세(鄭光世)·허집(許輯)·반우형(潘佑亨)·유응룡(柳應龍)·안윤덕·박영문·김봉(金崙)·신용개(申用溉)·이점(李沾)·홍자아(洪自阿)·유빈(柳濱)·고형산(高荊山)·심광보(沈光輔)·하한문(河漢文)·이운거(李芸租)·민상안(閔祥安)·박의영(朴義

榮)·이굉(李宏)·이세정(李世貞)·최인(崔潏)·송천희(宋千禧)·조계상(曹繼商)·이가신(李可臣)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상장(喪葬) 의식에 왕례(王禮)를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사위 승습(辭位承襲)’으로써 사연을 만들어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나 사부(賜賻)조제(弔祭)하는 천사(天使)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복제(服制)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3일(丁巳)

고형산이 변방 군관의 일에 관해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남북도 절도사가 되어 그 농사를 보았는데,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무거운 부역에 피곤하여 농사에 힘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받은 바 관채(官債)를 상납(償納)하지 못하니, 각진(各鎭) 군수(軍需)가 이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신이 지난 9월에 체임(遞任)되어 올라가서 경성(鏡城) 본영(本營) 군자(軍資)의 곡식 남김 수를 물으니, 겨우 천여 석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지금 병사 신윤무(辛允武)가 갈 때 원래 정하여진 군관(軍官) 15원(員)외에 또 5원을 더 거느리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2월까지 행영(行營)300에 유방(留防)할 때는 부령(富寧) 이북 6진이 번갈아 지공(支供)하고, 2월부터 수자리를 과한 이후, 본영에 유방할 때는 절도사·우후(虞候)·평사(評事) 및 군관·심약(審藥)을 아울러 23원과 반인(伴人)·영리(營吏)·노자(奴子) 등 아울러 32인을 경성(鏡城)의 군자로 지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진에는 도위 군관(都尉軍官)이 있고 또 교수관(教授官)이 있으며, 세 보(堡)의 만호와 그 군관 등도 또한 본진의 군자로 지공합니다. 남이 있는 곡식으로 이들 사람을 지고 한다면 태반이 모자라서, 부득이 남도의 군사가 모두 북도에 가서 유방하니, 이는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그가 계청(啓請)한 군관 5원은 대솔(帶率)하지 말게 하여 비용을 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신이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이 되었을 때 남도의 삼수(三水) 등처 각보(各堡)를 일시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방어의 중요성은 피차가 하나 같은데 다른 보(堡)는 각각 권관(權管) 및 군관 2원을 설치하였고, 별해보(別害堡)에는 군관 2원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그 보의 토병(土兵) 원수는 30여 호이고, 군관 4원의 중

자(從者)도 또한 많으니, 청컨대 다른 예에 의하여 2원을 감해서 경비를 더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본도에 사는 사람은 군관에 임명하지 않은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지난 갑자년에 비로소 본도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수졸(戍卒)은 모두 군관이 본래 알거나 친척붙이가 되는 사람이므로 진장(鎭將)이 군관으로 하여금 적간(擄奸)하게 해도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합니다. 군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호와 첨사(僉使)도 또한 본도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그 관하(管下) 군졸도 모두 본래 알거나 일가붙이여서 능히 검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수졸(戍卒)의 청을 좇아 몰래 돌려 보내기도 하니 방어가 허술합니다. 이는 전문(傳聞)한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본 것입니다. 금후로는 양계(兩界)의 첨사·만호 및 각진·보의 군관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본도 사람을 임명하지 말기를 청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1월 30일(甲戌)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2월 28일(壬寅)

함경도 무산보를 양영만동으로 옮기는 등 일을 고형산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다

조강(朝講)에 남시었다. … 순정이 또 아뢰기를, “함경도 무산보(茂山堡)는 전토가 본래 척박(瘠薄)한데, 근자에는 또 물에 침손(浸損)되어 모두 모래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한 이랑도 갈아 먹을 만한 곳이 없으니, 앞으로 구제할 대책이 없습니다. 무산보 서북쪽으로 10여 리 되는 곳에, 양영만동(梁永萬洞)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살 만합니다. 다만 보(堡)가 안에 있고 마을이 밖에 있으면 이를 수호하여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무산보를 양영만동으로 옮기고, 풍산보(豊山堡) 역시 그 앞 고개로 옮기며, 회령(會寧) 하보을하(下甫乙下) 땅에 또 한 보를 설치하면, 회령에 하보을하를 경유, 풍산·무산을 지나 왕래하는 새길에 옛길보다 매우 편리하고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풍산·무산에는 거민의 경지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건치(建置)하는 연혁(沿革)은 중한 일이니, 멀리 앉아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관찰사와 절도사가 가을이 되면 함께 편리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치계(馳啓)할 것을 고형산(高荊山)이 내려갈 때, 하유(下諭)하심이 어떨까 합니다.”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

○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1일(壬申)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경흥부·무이보 등에 창고 설치를 건의하다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경흥부(慶興府)무이보(撫夷堡), 안변부(安邊府)고산역(高山驛), 북청부(北靑府)제인관(濟人館), 길성현(吉城縣)영동역(嶺東驛) 등이 본읍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흘을 때나 전세(田稅) 받아 들일 때가 되면 밤을 새며 왕래하게 되니, 도적맞을 것이 염려됩니다. 각처에 창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여 주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1월 15일(甲寅)

홍숙이 고흥산의 내수사 장리를 감해줄 것에 대해 아뢰다

… 홍숙(洪淑)은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고흥산(高荊山)이 내수사 장리(長利)를 감해 줄 것을 청하자, 곧 그 문제를 내수사에 내려 별좌(別坐)·서제(書題)를 시켜 계산하게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공사(公事)란 내수사에 맡길 수 없는 것이요, 만약 부득이하다면 유사(有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2월 23일(辛卯)

홍경주가 변방의 일에 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 특진관 홍경주(洪景舟)는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 무이보(撫夷堡)의 인물(人物)을 사로잡아 간 것이 15명이라고 하지마는, 어찌 숨기고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변방의 사무를 중요시한 까닭으로 평사(評事)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렸으니, 지금 신윤무는 과연 죄가 있습니다. 다만 폐조(廢朝) 때는 북도(北道)가 피폐한 때문에 무역한 피물(皮物)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초피(貂皮) 한 장을 바꾸게 되어 소와 말이 거의 다 없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탄 군사가 1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겨우 40~50명만 있을 뿐이니,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더라도 장차 무엇으로 적을 방어하겠습니까? 신윤무는 서울에 있을 적에 상시 이 일을 염려하더니 후에 부임해서는 모든 군사에게 폐가 되는 일은 일체 이를 제거했습니다. 관찰사(觀察使) 고흥산(高荊山) 또한 변방의 사무를 알므로 신윤무와 더불어 힘을 합하여 조치(措置)했습니다. 지금 비록 그 직책을 파면시킨다 해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개체

시키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고, 김극뵘 등도 되풀이하여 논계(論啓)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6월 18일(甲申)

대간이 포폄을 계청한 일로써 고흥산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당(唐)·우(虞)의 출척(黜陟)의 법이 이제 다시는 행해지지 아니하고, 다만 포폄(褒貶)으로 그 현부 득실(賢否得失)을 상고하므로, 조종(祖宗) 이래로 을사년 같은 흉년에도 다 그만두지 않았는데, 이제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그 도가 농사를 그르쳤다 하여 춘·하등(春夏等)의 포폄을 물려서 정하기를 청했으니, 아주 대체(大體)에 어긋납니다. 추고(推考)하고, 바빠 등제(等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이러한 일을 당초에 방계(防啓)하지 않았으니, 이조(吏曹)도 그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한 도의 출척을 맡은 관원이 그 백성에게 폐해가 됨을 안 까닭에 물려 정하려는 것이니, 추성(秋成) 뒤에 등제 하더라도 늦지 않다.”하였다.

○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6월 20일(丙戌)

춘·하등의 전최를 빨리 등제하도록 고흥산에게 하사하다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전에 경(卿)의 계청에 따라 올 춘·하등(春夏等)의 전최(殿最)를 이미 추성 뒤에 등제하게 하였으나, 포폄의 시기가 뚜렷이 법령(法用)에 있으므로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으니, 빨리 등제하여 계문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2일(丙申)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을 유입시키고 당표리를 하사하다

… 희증(希曾)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평안도 변민(邊民)이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가지고 만포(滿浦)로 가서 모물(毛物)을 무역하되, 기탄(忌憚)하는 바 없다 하니, 외이(外夷)와 교통하는 폐단이 두렵습니다. 청컨대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소서. 또 만포 첨사 고자겸(高自謙)은 글을 모르고 또 용렬하니, 어찌 이러한 일을 조치하겠습니까? 청컨대, 가려서 임명하게 하소서.”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변장(邊將)은 모름지기 무재(武才)를 임용하는 것이니, 반드시 문학에 능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

다. 지금 고자겸이 과연 만포(滿浦)에 합당하지 아니한가? 정원이 어찌 듣고 본 바가 없겠는가? 그대로 아뢰라. 또 듣건대,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은 치민(治民)과 방어(防禦)를 매우 잘한다 하니, 그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유임시키고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권장코자 한다. 만약 전례가 있으면 이를 고찰하여 아뢰라.”하니, 회계(回啓)하기를, “고자겸(高自謙)의 사람됨은 그 용모를 보면 온자(醞藉)하고, 또 일찍이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지냈습니다. 만약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였다면 그 조(曹)에서 반드시 차견(差遣)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겸도 또한 보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저 변방의 일을 맡길 때에는 무재(武才)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흥산(高荊山)의 선정은 신 등도 또한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주 목사 이종윤(李從允)을 유임시킬 때에, 그 품계를 올려 주고 또 당표리(唐表裏)를 하사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권장을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고자겸이 만약 실지로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보다 앞서 어찌 내지(內地)의 수령을 하였겠는가? 형산(荊山)을 유임시키고, 당표리(唐表裏)를 하사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2월 10일(癸酉)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보을하보의 복립·무산보의 이설에 관한 일로 장계하다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회령(會寧) 밑에 있었던 보을하(甫乙下) 고보(古堡)의 복립(復立)과 무산보(茂山堡) 이설(移設)에 대한 사실의 전말을 써서 장계(狀啓) 올리기를, “신이 해조(該曹)의 수교(受敎)를 보건대, 신의 아뢴 바의 뜻을 아시고, 또 조정에서도 이미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아서 지난해에 새로운 보기(堡基)를 심정(審定)한 후에, 양보(兩堡)의 백성들이 스스로 장차 살아나갈 도리를 알고 옮길 뜻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양 신행(臣行)하면 신에게 말하기를, ‘보루(堡壘)를 설치하여 방수(防戍)하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양보(兩堡)를 설치한 지역은 연달은 수재(水災)로 인하여 모두 수손(水損)되어서 촌토(寸土)·척지(尺地)라도 경작을 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20여 리나 되는 지역에 출경(出耕)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지키느라 왕래하는데 늦게 나가고 일찍 돌아오게 되니, 어찌 스스로 경종(耕種)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수확의 이익이 이 때문에 충실치 못하므로 드디어 생업을 잃고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반이 넘으니, 지금 이를 이설(移設)하지 아니하면 수 년이 못 되어 실수(失守)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신이 이 말에 따라 그 형세를 보건대, 과연 백성의 말과 같습니다. 수교(受敎)한 후로 지금 2년이 되었는데, 다시는 살피지 않으시니 그 이

유가 무엇입니까? 신이 주야로 헤아려 보아도 오늘의 거조는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 없고, 백성의 노력을 가볍게 쓸 수도 없는 것이며, 또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여 변경의 토지를 개척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적로(賊路)를 차단하여 변병(藩屏)을 공고히 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작도 하고 방수(防戍)도 하면서 민업(民業)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육진(六鎭)의 설치를 상고하여 보건대, 계축년(831)에 회령진(會寧鎭)을 알목하(幹木河)에 설치하고, 또 그 남쪽 20리 지역에 보을하보(甫乙下堡)를 두어 원진(援鎭)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부령진에 이르기까지 20리 사이에 연대(煙臺) 두 곳을 두어, 통행하는 길과 경작하는 전지를 모두 내지(內地)에 두어 지키는데 폐단이 없도록 하였으니, 옛 사람의 설진(設鎭)한 계획이 참으로 그 요체(要諦)를 얻은 것이라, 후인이 이를 고칠 바가 아닙니다. 그 후 경진년에 이르러서는 모신(謀臣)들이 의논을 드러 보을하보(甫乙下堡)를 혁파하고 풍산내지(豐山內地)로 축소 배설(縮排)하여 드디어 조종(祖宗)께서 개척한 땅이 변하여 야인들의 거주하는 마을이 되게 하였습니다. 풍산·무산 두 보(堡)사이에는 다만 하나의 자그마한 산(山)이 막혀 있을 뿐인데, 야인들은 이 산 하나마저 사냥과 방목을 하는 곳이라 하여, 피아(彼我)의 경계도 없이 서로 왕래하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술년 이전에는 양보(兩堡)의 사람과 가축을 몇 번씩 잡아다 죽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처음 보을하보(甫乙下堡)를 폐지한 것은 적수(賊藪)를 멀리하고 적로(賊路)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도적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옛사람의 이른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면 도적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풍산(豐山)을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어느 곳으로 피하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건치(建置)와 연혁(沿革)은 국가의 대사이며, 안토중천(安土重遷)은 백성들의 상정(常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아야 할 일을 말지 않으면 백성이 원망을 일으키고, 말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잊어 버리거든, 하물며 지금 양보(兩堡)를 이설하는 것과 보을하보(甫乙下堡)를 다시 세우는 일은 민정에서 나온 것이니, 천사(遷徙)의 괴로움은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대의(大義)와 두 가지 큰 이익이 있으니, 선조(先祖)의 옛 경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대의(大義)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을 배제하게 됨은 첫째 큰 이익이며, 경작과 방수(防戍)의 양편(兩便)을 얻게 됨은 둘째의 큰 이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도는 조종(祖宗)께서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땅으로서 국가를 위하여는 동·검(潼劍)838과 같은 요처이니, 성곽(城廓)의 견고하게, 군수(軍需)를 비축하고, 군사훈련하는 것을 다른 도(道)의 백 배로 한 연후라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군수가 넉넉지 못하고 사마(士馬)가 정예하지 못하며 군기가 단련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세

가지 폐단이 있는데도 때를 놓쳐서 도모하지 아니하면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 대신들이 마땅히 친히 보고 의논을 드려 조치해야 할 때입니다. 신이 듣건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눈으로 보지 않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합당하게 조치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큰일이겠습니까? 만약 폐조(廢朝)의 잔폐(殘弊)한 나머지 중신(重臣)을 보내어 다시 살피게 한다든가 군인을 동원하여 성을 쌓는 역사가 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낱 그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3보(堡)에 성을 쌓는 역사를 비록 일시에 아울러 거행한다 해도 그 역사에 드는 군인은 많아야 8~9천 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역사하는 날도 수십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신(重臣)이 올 때 거느리는 군관 5~6인과 종사관(從事官) 2~3명을 지공(支供)하는 일은, 일도(一道)의 힘을 기울여 거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나는 역(驛)과 기숙하는 관사에 지공하는 비용도 1~2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한두 가지 폐를 염려하여 만세몽리(萬世蒙利)의 대사를 폐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오래도록 북방(北方)에 있으면서 야인(野人)들의 정상을 익히 보았는데, 그들은 비록 부자(父子) 사이라도 한번 혐의로 틈이 있게 되면, 원수(仇讎)와 다름없이 잔해(殘害)를 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이(利)로써 결탁을 하였다가 그 이가 다하면 반목(反目)하는 자들이니, 날마다 천금(千金)을 소비한다 해도 그 마음을 복종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밖으로는 회수(懷綏)의 혜택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무비(武備)의 계책을 닦아, 우리 수졸(戍卒)로 하여금 추위하는 자는 옷을 얻고 주린 자는 먹을 것을 얻도록 하면, 비록 수역(戍役)의 괴로움이 있다 해도 항상 굳게 지킬 뜻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력은 저절로 강하여져서 저들의 세력이 스스로 굴하도록 하면 변방을 대비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이 급급히 성을 옮기고 보을하보(甫乙下堡)를 복구하려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후에 아된 바의 뜻을 참작하여, 만약 조정의 의논에 합치하면 명년 봄 이후에 대신을 골라 보내어 다시 이보(移堡)할 땅을 살피고, 또 세 가지 폐되는 일을 구핵(究覈)하여 편부(便否)를 마련해서 시급히 조치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5일(戊戌)
함경도 군보의 이설 문제를 의논하다

… 병조가 또 아뢰기를,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아뢰는 바, 각 군보(軍堡)의

이설에 관하여 대신을 파견하여 조치하기를 청하였으니 어떻게 하오리까?”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파견토록 해야 하나, 다만 지난해에 실농(失農)을 하였으므로 혹 불가할 듯하니,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유순(柳詢) 등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비록 실농을 하였다 해도 대사를 위해서는 약간의 폐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으니, 각 군보를 이설하는 일을 지금 만약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대폐(大弊)가 있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는 근년에 와서 인마(人馬)가 조잔하여 방수(防戍)가 튼튼하지 못하므로, 더욱 마땅히 속히 대신을 파견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밑에 있는 야인(野人)에게도 또한 대신(大臣)이 행차할 때 음식물을 보내주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인솔하는 사람을 적게 하여 주현(州縣)의 폐가 없도록 하소서.”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고, 박원종(朴元宗)을 파견하도록 명하였다.

...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18일(辛亥)

군보를 옮기는 일에 고흥산을 추천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유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송일(宋軾)이 가는 때가 바로 농시(農時)를 당하게 되니, 중신(重臣)의 행차가 아무리 간단하게 된다 해도 어찌 폐가 없겠습니까?”하고, 집의 박광영(朴光榮)은 아뢰기를, “풍산(豐山)·무산(茂山) 등 군보(軍堡)를 옮기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이므로, 대신을 보내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고흥산(高荊山)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지금 형산이 절도사(節度使)와 의논하여 조치한다면, 대신이 가 본다 해도 더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을 순찰하는 일은 내 생각에도 또한 폐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오늘 대신에게 수의하니 온편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18일(辛亥)

이보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유순(柳詢)·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보(移堡)하는 일에 대하여 고흥산(高荊山)이 아뢴 것을 보면 조속히 옮기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전림(田霖) 등이 아뢴 대로 한다면 쉽게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대신을 보내어 이양(兩意)의 편부(便否)를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변방의 일

이 중요한데, 약간의 왕래하는 폐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아오지보(阿吾地堡)는 예전에는 강변(江邊)에 있었는데, 이극균(李克均)이 그 편부(便否)를 심사하여 옮긴 것이 곧 오늘의 보입니다. 극균은 변방을 출입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이치(移置)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신이 가면, 본도 감사 및 병사가 같이 그 편부(便否)를 심사하여 계문(啓聞)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명하였다.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22일(乙卯)

사헌부가 체찰사 송일을 함경도에 보내지 말 것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뢰기를, “근래 함경 한 도는 잔폐(殘弊)가 매우 심하니, 지금 체찰사가 간다면 반드시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년 동안은 곡식이 흉년 들어 백성의 궁곤이 많을 터이니, 대신의 행차가 어찌 마땅한 시기이겠습니까? 고흥산(高荊山)은 그 도에 오래 있어 거의 10년이 되었으며, 유담년(柳暉年)도 또한 명장(名將)으로서 변방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그들의 계료(計料)는 반드시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송일(宋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한다 해도 고흥산·유담년 두 사람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산천의 형지(形止)와 적로(賊路)의 요해를 어찌 한 번 보고 두루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고흥산·유담년의 서장(書狀)을 변방의 일을 아는 대신에게 보여 연구 검토하게 하고, 조정에서 취사(取捨)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송철로 하여금 육진(六鎭)을 왕순(往巡)하게 하면, 무릇 대신의 행차가 육진에 들어갈 때 성 밑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모두 와서 보게 되어, 그들을 먹이는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므로 계견(鷄犬)이 남지 않을 것이니 그 폐가 적지 아니합니다. 신이 듣건대, 고흥산도 또한 박원종에게 말하기를, ‘본도는 바야흐로 눈에 막혀 있는데 3월 그믐께 라야 눈이 다 녹을 것이니, 송일(宋軼)의 행차를 마침 그때 하게 되면 농사에 자못 방해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체찰사를 보내지 말도록 청합니다. …”하고, 또 앞의 일을 아뢰었고, 사간원도 또한 이희보(李希輔)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24일(丁巳)

조강에서 송일을 보내지 말기를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이 송일(宋軼)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근자에 변경(邊境)에 근심이 없어 수년 동안 편안하

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일은 편안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송일의 행차는 비록 폐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변방의 일은 가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참찬관 성몽정(成夢井)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경도 평사(評事)가 되어 북방의 일을 대강 아는데, 근자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서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실농(失農)하게 되었으므로 잔폐(殘弊)가 매우 심합니다. 품계가 높은 문신을 택차(擇差)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으로서도 비록 사람을 택차(擇差)한다 해도 백성의 소복(蘇復)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곳 군졸로서 영(營)에 속한 자는 많고 부(府)에 속한 자는 적은데, 대개 영의 사람은 역사가 험하고 부(府)의 사람은 역사가 중하므로 모두 영에 속하고자 하는데, 부의 사람은 대부분이 빈곤하니 비록 소복하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전자 고흥산(高荊山)이 영중(營中)의 입역자(立役者)를 정한 것이 6백여 인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부에 소속시켰습니다. 지금도 영중의 일을 맡긴 사람 이외에는 일체 모두 부에 소속시키고 영에 의탁하지 못하도록 하면 자연히 소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16일(戊申)

보의 이설 문제에 관해 체찰사 송일이 장계하다

체찰사(體察使) 송일(宋軼)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보을하보(浦乙下堡)의 복설(復設) 및 풍산·무산 등 보의 이배(移排) 편부(便否)를 관찰사·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심의하였는데, 이배하고 복설하는 것은 실로 경작과 방수(防戍)에 편익이 됩니다. … 무산 보는 원래 척박한 땅으로 보를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고, 지력도 또한 다하였으며, 게다가 근래에는 잇달아 수재를 입고 밭과 들이 변하여 모래와 돌이 되어, 도무지 경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보의 백성들이 실업한 것은 과연 고흥산(高荊山)이 아뢰 바와 같습니다. 신이 보의 백성을 점열(點閱)하니, 당초 보를 설치할 때 원호수가 87이었는데, 지금까지 유리(流移)한 것이 16, 도망한 것이 30, 물고한 것이 다섯으로, 현존한 것은 38이 되, 그 빈궁한 형상을 보면 웃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집은 현경(懸磬)과 같으니, 하물며 갑주(甲冑)를 갖추고 외모(外侮)를 방어하겠습니까? …”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3일(癸亥)

고형산이 군적의 합당치 못함을 장계하다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장계(狀啓)하기를, “신이 병조(兵曹)에서 수교(受敎)

한 것을 살펴보건대, ‘군적(軍籍)의 마련을 원액(元額)보다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하였는데, 신의 의견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이 계축년 본도의 군적을 고찰해 보건대, 북도(北道)의 길성(吉城) 이북의 무릇 9 고을에는 갑사(甲士) 2천 4백 명, 기병(騎兵)이 3천 2백 40여 명, 보병이 1천 60여 명으로, 보인(保人)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원액이 2만 3천 8백 70인인데, 현재 있는 것은 단지 8천 3백 13인이고 감손(減損)된 것이 1만 5천 5백 50여 인이며, 남도(南道)의 단천(端川) 이남 무릇 13고을의 갑사는 1천, 기병은 3천 2백 88, 보병은 9백 36명으로 보인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원액이 1만 6천 7백 36인인데, 현재 있는 것은 1만 2천 3백 94인이고 감손된 것이 4천 3백 42인입니다. 대체로 병적(兵籍)은 큰 일로서, 만약 병적이 이루어진다면 10여 년 이내에는 한두 가지 폐단 때문에 경솔하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병적을 고치는 때에 있어서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폐조(廢朝) 때에 피폐한 고을의 백성들은 부역에 시달려, 다른 고을로 옮겨가 살고 혹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녀, 도내 각 고을의 현재 있는 인구의 수효는 전날의 안(案)과는 너무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각 고을의 인구 다소를 상고하지 않고 전일의 안대로 충당하여 정한다면, 갑(甲) 고을에선 보인을 채우고(准保)도 오히려 정원 외의 수(旅外)가 있을 것이나, 을(乙) 고을에서는 원액(元額)이 모자라 호수(戶首)도 채우지 못할 것인데 수령들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여 그 수효를 헛늘려 놓는다면, 현재 있는 자도 또한 지당(支當)할 수 없어 종당에는 반드시 수비(守備)를 못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군사란 정병(精兵)에 달린 것이지 수효가 많은 데 달린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마땅히 원액을 감하여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하여, 이름이 병적에 있는 자를 모두 적실하게 한다면 군사가 정해지게 되고 수비가 든든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원액은 곧 조종(祖宗)의 법이라 경솔하게 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전 원액에 구애받지 않고 각 고을의 현재 있는 인구의 수효에 따라, 가령 갑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된 것을 을 고을에서 여정(餘丁)으로 수효를 증가시켜 충당하여 정한다면, 갑 고을의 군액은 비록 전보다 감소되나 을 고을의 군액은 지금보다 수효가 증가되어 본도의 군사가 축나지 않을 듯한데,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부를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는데, 서장(書狀)을 병조로 내려 보냈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4일(甲子)

고형산의 죄주기를 청하나, 용서하다

형조 낭관(刑曹郎官)이 아뢰기를,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이 추분(秋分) 전인데도 법을 어기고 형벌을 집행하였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용서한다.”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8일(戊子)

권민수가 함경도 지세에 대해 아뢰다

… 권민수는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지세(地勢)를 보니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이 벽지 한 모퉁이에 있는데, 설혹 의외의 변이 있게 되면 구불구불한 길이 하나만이 있고, 단천(端川) 등의 고을과도 거리가 너무도 멀어 서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김종서(金宗瑞)가 북쪽 변방을 순찰할 때 지름길을 그 사이에 냈는데 그 때 매우 편리하였다 하며, 그 뒤에 비록 폐색(閉塞)되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옛자리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관찰사(觀察使) 고형산(高荊山)이 또한 가서 그 길의 편리 여부를 보려고 하다가 허리와 다리가 시고 뻑뻑한 것 때문에 못하고 말았으니, 청컨대 변방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물어 보아 옛 길을 다시 내게 된다면 단천 등의 고을과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어염(魚鹽)의 이로움에 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일(辛卯)

고형산이 백성을 입거시키는 일을 청계한 것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함경도 관찰사(觀察使) 고형산(高荊山)이, 명년 가을에 옮기는 백성(徙民)을 입거(入居)시키는 일을 계청(啓請)하였는데, 해조에서 늦다 하여 명년 봄에 입거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워 친히 본 것만 못한 것인데, 고형산은 익히 변방 사정을 잘 알고 백성들의 지원에 따라 이해와 편리 여부를 깊이 헤아려 아뢴 것입니다. 금년의 본도(本道) 농사는 비록 심한 흉년은 아니오나 새로 이사간 사람이나 전부터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게 되면 피차가 모두 공궁하여져 능히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고형산이 아뢴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거할 사람을 이미 4백 호를 뽑았었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과 고단하고 약한 자를 제하고 단지 3백 호만을 뽑을 것입니다. 그 도(道)의 관찰사가 뽑아서 아뢴 수

있을 것이니 따로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록 3백 호가 차지 못하더라도 더 뽑아 그 수를 채우려고 할 것은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입거시키기는 일은, 고흥산이 아뢰는 말이 옳기는 하나 해조에서 명년 봄에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니, 역시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입거시킬 사람을 3백 호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과 종사관을 보내지 말자는 것은 마땅히 체찰사(體察使)에게 물어서 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일(壬辰)

김전이 고흥산 변방의 일을 아뢰다

… 동지사(同知事) 김전(金詮)은 아뢰기를, “… 입거시키기는 일은, 고흥산(高荊山)이 변방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므로 해조(該曹)에서 비록 멀리 헤아려 보아도 형산이 눈으로 본 것만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아뢰는 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조방언은 아뢰기를, “… 또한 올해는 농사가 잘못 되었는데, 입거(入居)시킬 즈음에 길가의 백성들이 모두 그 폐해를 볼 것입니다. 고흥산은 변방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인데, 어찌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적은 대신들이 모두 마땅히 먼저 거행해야 한다 하고, 입거 일은 해조(該曹)에서 또한 이미 의계(議啓)한 것이므로 지금 중도에서 변경할 수 없다.”하였다. …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4일(癸巳)

입거 안접사를 이손에게 겸임시키다

영의정 유순(柳詢)·좌의정 박원종(朴元宗)·우의정 유순정(柳順丁)이 의계(議啓)하기를, “입거 안접사(入居安接使)를 이손(李蓀)에게 겸임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본도(本道)에 행이(行移)하면 관찰사가 알아서 하게 될 것이고 고흥산(高荊山)은 지모(智謀)가 있는 사람이니 이 일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4일(癸巳)

유순·김수동 등이 고흥산의 의견을 내년 가을에 들여보내기를 청하다

유순(柳詢)·김수동(金壽童) … 등이 의논드리기를, “… 또한 입거시키기에 대한 관찰사 고흥산의 의견은 반드시 금년 가을에 들여보내면, 그 집을 짓는 등의 일이 성

(城) 쌓는 일과 함께 거행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내년 가을에 들여보내기를 청한 것입니다. 만약 내년 가을에 들여보낸다면, 그 집 짓는 것을 또한 올 가을에 미리 짓지 아니하여도 되어, 성 쌓는 일을 마친 다음에 민력(民力)의 휴식을 살펴 형편대로 재목을 마련했다가, 봄에 들여보내는 것을 기다려 그들이 스스로 짓도록 하는 것이 폐단이 없게 될 듯합니다. 더구나 육진(六鎭)의 군민(軍民)은 유망(流亡)한 자가 절반이나 되니 만일 변경이 있게 되면 방어할 만한 군사가 없으므로, 백성을 옮겨 변방 채우는 일은 급하게 해야지 완만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그 호수(戶數)도 3백은 오히려 작으니 또한 감할 수 없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5일(甲午)

이손이 백성 이주 일을 아뢰다

… 특진관(特進官) 이손(李蓀)은 아뢰기를, “전자에는 장정이 3명 되는 호(戶)를 표준하여 뽑고 나이 60이상인 자는 뽑지 않았으니, 금번에도 이에 의하여 뽑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황해도와 평안도는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가을에 들여보내더라도 오히려 한겨울이 되기 전에 안접(安接)할 수가 있지만, 북도는 너무나 멀어 만약 추수한 뒤에 들여보낸다면 중로에서 과세(過歲)하게 되어,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백성을 심히 추운 땅에 몰아다가 노약자(老弱者)를 얻어 죽게 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무릇 봄에 들여보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모두 이 점을 염려한 것인데, 고흥산(高荊山)은 조정의 뜻은 모르고 다만 성(城)을 쌓는 역사와 같은 시기에 아울러 거행하고 싶지 않으므로 치계(馳啓)한 것입니다.”하고, 허평(許磻)은 아뢰기를, “변방을 채우려는 일을 실책(失策)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나, 고흥산의 의견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윤9월 27일(丙戌)

삼공이 고흥산의 임임을 아뢰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은 변방 일을 잘 알며, 성 쌓는 일도 끝나지 않았고, 내년 봄에는 백성들을 옮겨 변방을 채워야 하니, 청컨대 갈지 마시고 특히 약을 내려 임임(仍任)시키심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고흥산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형산의 병이 깊고 늙은 어미가 있다.’ 하였기로, 이미 갈도록 명하였는데, 지금 정승이 같지 말자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이조(吏曹)에 묻노라.”하매, 이조가

아뢰기를, “당초에 고흥산은 병이 있고 아버지가 늙었다 하므로 같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변방 일이 긴급하며 중하고, 병은 심중(深重)하지 않으니, 지금 만약 약을 내려 조리(調理)하도록 하면 내년 봄이 되어 일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갈지 말도록 하라.”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약을 지어 고흥산에게 보내되 또한 갈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丙午)

김수동·박원종 등이 아오지 군졸을 경흥에 소속시킬 것 등을 아뢰다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김수동(金壽童)·영의정 박원종(朴元宗)·좌의정 유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교성군(交城君)노공필(盧公弼)·영중추(領中樞) 박안성(朴安性)·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민효증(閔孝曾)·병조 판서 김응기(金應箕)와 지변사(知邊事) 신윤무(辛允武)·박승문(朴承文)·이병정(李秉正)·이양(李良)·유담년(柳聃年) 등이 의논드리기를, “아오지(阿吾知)의 군졸(軍卒)은 원래 경원진(慶源鎭)의 인민으로서 토지를 갈라 부치는 것 역시 경이(輕易)하지 않기 때문에 군졸을 보(堡)에 따라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킬 것을 전일에 의계(議啓)했었습니다. 지금 고흥산(高荊山)이 아된 바에 의하건대, 아오지의 군졸을 당초에 비록 경원 사람들로 충정(充定)한 것이나, 지금 만약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킨다면 경흥(慶興)이 과연 고단하여 약하게 되겠으니, 고흥산이 아된 바에 의하여 군졸과 토지를 아울러 경흥으로 소속시키면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원보(乾元堡)를 오룡초수동(吾弄草水洞)으로 옮겨 설치함이 방수(防戍)에는 편리할 것 같으나, 다만 건원보는 내지(內地)이므로 방수하는 군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강(江) 가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면 모름지기 방수하는 군사를 많이 두어야 하고 또 만호(萬戶)를 두어 관리하도록 한 연후에야 방수하여 수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병졸이 어디서 나게 될 것입니까? 다시 살피고 헤아려서 계문(啓聞)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였다.

○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戊申)

고형산이 임금의 은혜에 대해 글을 올리다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고형산(高荊山)이 올린 사전(謝箋)에, “생각하옵건대, 경영(經營)한 지 12년 동안에 실낱만큼도 도움이라곤 나타난 것이 없으나, 수천 리 밖에

서 고생하는 중에 누차 우로(雨露) 같으신 큰 은택(恩澤)을 받게 되니, 분수를 헤아리매 너무도 과람하여,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갇기가 어렵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쓸 만한 재주가 없고 덕화(德化)를 펼 만한 계책도 없는데, 다행히 일월(日月) 같으신 광화(光華)에 의지하게 되어 외람하게도 한 지방의 위임을 맡았으나 몸은 미약하고 책임은 무거워 매양 복숙(覆餗)의 조롱을 생각하게 되고, 복이 과하매 재앙이 생겨 바로 큰 병에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진실로 정상(情狀)을 꾸며 직책을 사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병을 조리하고 아버이를 봉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책임이 서로 닥치게 될까 두려웠는데 감히 우악(優渥)하신 은혜가 겹쳐 내릴 것을 생각이나 하였으리까? 천금(千金)같은 진귀한 약으로 풍습(風濕)의 미친한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어 여섯 자의 쇠잔한 몸이 살아나는 큰 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건권(纏綿)한 하서(下書)를 받고 보니 마치 성상께서 정녕(丁寧)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으시되, 무능(無能)하여 자리만 지킴을 용서하시고 갈지 말고 그대로 있도록 명하시니, 영화가 바라던 것보다 더하고 은혜가 자못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주상 전하의 덕이 산 사람에게 적시어지고 은택이 죽은 뼈에까지도 미치게 되어 하늘이 덮어 주고 땅이 실어 주듯 하매 요사(夭死)하는 재앙이 없어지고 물산(物産)이 풍부하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인수(仁壽)한 지경에 있는 때를 만나게 되었기에, 드디어 거의 죽어가는 몸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이 감히 더욱 충성과 부지런을 다하고 다시 마음과 지절(志節)을 가다듬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직위에 게으르지 않아 마땅히 사(私)를 뒤로 돌리고 공(公)을 앞세우겠으며, 마음에 태만함이 없이하여, 집을 잇고 나라를 좇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辛未)

야인, 만호 군관에 대한 공궤, 전세 조운 등에 대해 의논하다

함경북도 절도사 최한홍(崔漢洪)이 아뢰기를, “본 성저(城底)야인(野人)을 먹이는데 술과 쌀은 전에 작성한 수대로 제급하고, 조산 만호(造山萬戶) 군관(軍官) 등의 양식은 군자미(軍資米)로 제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북도 각 고을의 군자미가 부족하니, 남도 각 고을 곡식을 점차로 운반하여 변경 방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부원군(府院君) 이상에 수의하라.”하였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성저 야인은 후히 대접한 지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 먹이는 술과 쌀은, 진보(鎭堡)로 자비하게 함이 온당하지 않으니, 전에 작성한 수로 회계에서 제감하여 기록하고 전대로 공궤(供饋)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산보 만호 군관은 군자미로 공궤하지 않고,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무역하여다 쓰기로 법을 정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북도의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못하니, 마상선(尓尙船)으로 남도 곡식을 실어가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우선 많이 하지 말고 조금 시험하여 계문(啓聞)한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하였다. 박원중은 의논드리기를, “사변을 와서 고히는 야인을 공궤하는 술과 쌀 및 조산보 만호 군관의 양곡은, 전과 같이 군자미로 적당량 지급할 것을 다시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다만 남도 각 고을 곡식을 5진(鎭)으로 이송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전일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청한 바와 대개 서로 같으니, 우선 전수(轉輸)를 시험하게 하소서.”하며, 유순정(柳順汀)은 의논드리기를, “성저 야인은 조종조 이래로 후대하였으니, 그 먹이는 술·쌀은 전에 작정한 수대로 회계에서 제감하여 기록함이 마땅합니다. 조산보의 만호와 군관의 양식은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무역해다 쓴 지가 벌써 오래며, 또 조산보의 방수(防戍)는 다른 진보에 비하여 좀 헐하고, 토질이 기름지고, 비워 둔 곳이 많으니, 수자리하고 방어하는 여가에 둔전(屯田)을 개간해도 양곡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니, 군자미를 허비하여 쓸 것이 아닙니다. 6진 사람들이 배에 고기와 미역을 싣고 안변(安邊) 등지로 왕래하며 장사하니, 만일 이 배들이 왕래하는데 없어질 염려가 없다면, 남도 군수품을 북도로 옮기는 데에 무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관찰사로 하여금 시험해서 계문하게 하소서.”하고, 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북도는 폐조(廢朝) 때 피폐한 후에 농사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자(軍資)가 거의 다 되었으니, 적당히 야인 공궤를 준비하는 것은 부득이한 계획입니다. 또, 조산 만호 군관이 소금을 팔아 양식을 대는 것은 예전부터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배로 남도의 쌀을 운반해다가 편하도록 하면서, 북쪽 변경의 군수(軍需)가 넉넉해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였다. 노공필(盧公弼)이 의논드리기를, “최한홍이 아뢴 야인을 먹이는 술·쌀에 관한 일과, 조산 만호 군관을 군자미로 공궤(供饋)하는 일, 남도의 전세(田稅)를 배를 사용하여 수운하는 일은 시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은 본도의 형편을 알지 못하므로 경솔히 의논할 수 없사오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세히 편지 여부를 알아서 계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정미수(鄭眉壽)는 의논드리기를, “성저 야인들이 일이 있어 각 진(鎭)에 출입할 때, 변방 장수들이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것은 저들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감랑한 뜻을 신은 실로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북도의 전세 및 어염(魚鹽) 등 물건으로 군자에 보충하는 수도 또한 적지 않으니, 예전 제도에 의하여 공궤함이 마땅합니다. 조산보는 수군 만호이지만 경원(慶源) 이하 두만강 물가의 울적합(兀狄哈)이 사는 곳과 매우 가까와

서, 방어상 가장 긴요한 땅입니다. 만호 군관의 양곡을 다른 진과 구별할 것이 아닙니다. 남도 곡물을 북관(北官)으로 수입하는 일은 편리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시험해 본 후에 결정하게 하소서.”하며, 박안성(朴安性)은 의논드리기를, “아인은 공계하는 일, 조산보 만호 군관을 공계하는 일, 남도의 군자미를 배로 운반하는 일을 그 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함께 조사해서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하니,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2월 16일(癸卯)

변방의 일로 권연·최삼준의 죄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경흥진 첨사(慶興鎭僉使) 최삼준(崔三俊) 및 우후(虞候) 권연(權然)이 방어에 조심하지 않아 오랑캐(彼虜)가 김석숭(金石崇)의 여자 등 3인을 잡아간 데 대하여, 사유를 갖춰서 치계(馳啓)하였는데, 병조가 아뢰기를, “법률에 의하여 죄를 준다면, 장(杖) 1백에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안(推案)을 보니 저들이 김석숭과 혐의가 있기 때문이며, 실은 변방을 침범한 것이 아니니, 법률대로 함은 과중할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명하여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

○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3월 5일(庚申)

유순정이 고흥산으로 녹둔도의 경작 여부에 관해 치계할 것을 청하다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함흥(咸興)에 입거(入居)한 1백 호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다 합니다. 녹둔도(鹿屯島)190가 비옥(肥沃)하여 경작할 만한데, 송일(宋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후일의 적변(賊變)이 두려우니, 경작을 허가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듣건대, 녹둔도는 적의 길은 물이 깊어 왕래하기 어렵고, 우리 나라 사람이 가서 경작하는 길은 물이 얇아 다니기가 쉽다 합니다. 조산보 만호(造山堡萬戶)로 하여금 그 곳으로 보(堡)를 이설(移設)하게 하여, 경작 수확할 때에 수호하면 적이 요격할 수 없고, 백성은 경종(耕種)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그곳의 험하고 평탄함을 자세히 아니, 청컨대 형산에게 효유하여 조산보를 옮기는 이해와 경종할 때에 수호하는 편리 여부를 심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함이 어떠합니까?”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癸巳)

고형산을 영임하고자 하였으나 새 감사를 이미 차출하다

… 김수동 등이 청하기를, “… 또 야인(野人)이 이 일로 말미암아 변을 일으킬까 염려되므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고형산(高荊山)은 북도의 사정을 잘 알며 야인도 또한 형산을 아니, 아직 영임(仍任)케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모두 가하나, 다만 고형산은 북방에 오래 있었고 몸에 또한 병이 있으며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한 벼슬을 맡길 수 없고, 새 감사(監司)를 이미 차출(差出)하였으니 또한 고칠 수 없다.”하였다. …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丙申)

왜적에 대해 많이 아는 고형산을 영임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고형산(高荊山)은 오랫동안 그 지방을 맡아 적의 정상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맡겨서 북도를 편안하게 하소서.”하였다. … 또 답하기를, “고형산은 병이 있으므로 이미 약을 보내었다. 비록 적정(敵情)을 안다고는 하나 한 사람에게 오래도록 한 도를 맡길 수는 없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양사(兩司)가 또 아뢰니, 형산의 직책은 영임(仍任)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4일(己亥)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21일(乙亥)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이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아뢰다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高荊山)이 왜적을 방비하는 방략을 치계(馳啓)하였는데 그 대략에, “고적을 상고하여 보면 지나간 갑자(甲子) 연간의 왜변 때에 안변(安邊)에서 흡곡(歙谷)까지 세 참 쉴(三息) 거리에 있는 압용(壓戎)·철원(鐵原)·화등(和登)·낭성포(浪城浦) 등처에 혹은 석성(石城), 혹은 토성을 쌓아 방수하고, 봉화(烽火)로 서로 준(準)하여 변을 알리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철원 남쪽 1리 거리에 마암재(馬岩岾)·압용

관(壓戎串)·낭성포재(浪城浦岫) 등 세 곳의 구릉(丘陵)이 바닷가로 뻗어들어가서 바다에 왕래하는 사람이 날날이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연대(烟臺)를 배설하여 밤이면 봉화를 들어 서로 알리고 낮밤으로 후망(候望)하여 변을 알리는 것이 편하고 마땅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덕원(德源)의 신도(薪島)·행도(行島)·연도(連島), 안변(安邊)의 여도(女島), 영흥(永興)의 등도(等島)·말응도(末應島)·대저도(大猪島) 등처에 각 고을의 해채(海採)하는 사람 및 목자(牧子) 등 사는 사람이 심히 많아서, 만일 적변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화를 받을 것이니, 아울러 육지로 나와서 살게 하는 것이 심히 마땅합니다. 해채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왕래하고, 왜구가 침식할 때까지는 척후(斥候)하여 바라보고 반드시 영각(令角) 소리를 기다려서 출입하게 하소서. 1. 안변의 압읍관(押邑館)에서 바라보면 북청(北淸)·홍원(洪原)·함흥(咸興)·정평(定平)·문천(文川)·덕원(德源)·영흥 등 고을의 지면(地面)을 환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통천군(通川郡) 동북으로부터 50여 리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난도(卵島)가 있는데, 둘레가 2백여 리나 되고 해물이 많이 나서 해채하는 사람들이 항상 왕래하니 적변(賊變)이 두렵습니다. 이 섬에 올라가면 이성(利城)·단천(端川)·길성(吉城) 등 고을의 지면이 또한 바라보입니다. 만일 왜구가 여기에 의지하여 순풍을 기다려서 물을 건너오면 홍원 이북(以北)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홍원 이북의 길성 등 각 고을에, 함흥 이남(以南) 각 고을의 예에 따라 연대를 설치하고 수호군을 두어 후망(候望)하게 하소서.”하였다.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자, 영의정 유순(柳詢)이 의논드리기를, “왜놈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반드시 강원도를 지나야 함경(咸鏡) 지경에 이를 것이니 사변이 조석에 염려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만일 새 연대를 많이 설치하고 섬에 사는 백성을 옮겨다가 육지에 살게 하고 하변(下番) 군사를 뽑아서 방수(防戍)를 정하면, 적이 이르기 전에 먼저 지칠 것이니, 아직 초입인 안변의 마암(馬岩)·압읍(壓戎)·낭성(浪城) 세 곳에, 아뢴 바에 의하여 연대를 설치하고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척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해채하는 사람이 영각을 기다려 출입하는 일과 난도(卵島)의 방비하는 일은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5일(己未)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사창법을 써서 구황하자 하나 행해지지 않다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구황(救荒)하는 방략(方略)을 올렸다. “본도의 민속

이 저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용의 소비를 절제하지 않으므로 민간에는 사채놀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한 번만 흉년이 들면 사람이 모두 관창(官倉)에서 구제하기를 바라며, 또 이 도는 치우쳐 있어 길이 멀어서 다른 도에서 곡식을 옮기려 해도 바다나 육지로 수운하기가 모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송(宋)나라 때의 신하 주희(朱熹)가 사창법(社倉法)을 시행하였는데, 효종(孝宗)이 좋게 여겨 그 법을 제로(諸路)에 내리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현(吳賢)이 삼하(三河)에 수령으로 나가서, 또한 사창법을 시행하여 사장(社長)·부장(副長)을 두어 전곡(錢穀)을 맡게 하고, 사민(社民)으로 하여금 상반기(上半)에는 동전(銅錢) 60문(文)을 내고 하반기(下半)에는 곡식 60두(斗)를 내게 하여 사장(社長)의 집에 운반하였다가 작은 흉년이면 우선 진대법(賑貸法)을 행하고, 큰 흉년이면 진제법(賑濟法)을 행하여 반드시 상환(償還)하지는 않습니다. 평시에는 곡식 한 섬의 이자로 3두(斗)를 내고, 돈 백 문(文)에 이자 30문(文)을 냅니다. 신은 청컨대 일체 삼하(三河)의 제도를 따르되 그 저축하는 곡식은 백성에게서 거두지 말고 고을에서 공비(公備)하여 고을마다 많어도 4백 석을 넘기지 않고 적어도 3백 석보다 적지 않게 하고, 경내(境內) 4면(面)에 각각 한 창(倉)을 두어 평시에는 거두었다 흘었다 하고, 흉년에는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고찰하게 하여 균일하게 진대(賑貸)하고, 가을에 수확하면 한 섬마다 이자 3두를 내고, 흉년이 들면 본전만 받아 이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저축한 곡식이 많아서 받는 자가 많으면 출납이 번거로워져서 정(精)하지 못하니, 수량이 천 석에 이른 뒤에는 매 사(社)에 나누어 각각 창고를 세워 받아다 먹는 자로 하여금 먼 길을 오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또 1년에 거두고 나눠주는 수량을 공부(公簿)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자와 본전의 늘고 준 량을 뒤에 상고할 수가 없어 간위(奸僞)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년 춘추에 거두고 나눠 주는 수량을 양창(兩倉)의 예에 의하여 모두 회계에 기록했다가 관찰사가 늘고 준 것을 상고하여 연말에 계문(啓聞)하여 간위를 막게 하소서.”하였다. 명하여 해사(該司)에 내리었는데, 호조에서 우리 나라 민속이 중국과 같지 않아서 시행함에 불편이 있다 하여 일이 결국 행하여지지 않았다.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丙辰)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2일(乙未)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21일(甲辰)

여악의 폐지 여부에 관해 의논드리다

… 고흥산(高荊山)은 의논드리기를, “진풍정 때에 여악이 없을 수 없으니, 이제 만약 개혁하고 진풍정 때에 따로 다른 여악을 쓴다면 그 폐해가 기녀가 있을 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옛날에 기녀를 설치한 것은 수졸(戍卒)로서 아내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신이 오래도록 변방에 있으면서 장사(將士)들의 고통을 자세히 보았는데,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떠나서 이주 먼 지역에 와서 수자리하면서, 빠른 자도 일주년이 되어야 교대하고 오랜 자는 간혹 3~4년에 이릅니다. 나그네의 괴로움이 한둘이 아니건만 집을 잊고 굳게 지키는 것은 오로지 이것으로써 스스로 위로할 뿐인데, 하루 아침에 혁폐하여 기녀가 각기 남편이 있게 되면, 혹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을 어기면서 서로 관계하게 되어 작으면 그 지체(肢體)를 상하고 크면 그 생명을 해칠 것이니, 한갓 풍화(風化)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방어(防禦)가 이것으로 인하여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녀를 혁폐하는 것이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다만 피해를 더할 뿐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여악을 권의(權宜)에 따라 예대로 두되 서울에서는 다만 진풍정에만 사용하고 정전(正殿)에는 쓰지 않으며, 지방에서는 큰 고을에는 그대로 두고 잔읍(殘邑)에는 혁폐하며, 또 금령을 세워서 욕정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당(便當)할 것 같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27일(庚戌)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高荊山)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5일(丁巳)

고형산이 죄를 속받는 방법을 정하자 하니 전례대로 편의에 따라 하게 하다

형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등이 아뢰기를, “가동 수금(家童囚禁)의 법이 《대전(大

典》과 《속록(續錄)》에 실려 있는데, 혹은 인정(人丁)을 가둔다고 하고, 혹은 그 대가(代價)를 징수한다고 하니, 어느 것을 따를 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하나로 귀결되게 하소서.”하였다. 영의정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빛 받는 것을 일체 금하고 반드시 인정을 가둔다면, 인정이 없는 자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폐해가 도리어 대가를 거두는 것보다 무겁게 되니, 전례대로 그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대가를 징수하거나 가동(家童)을 수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8일(庚申)

말을 옮기고 수졸을 쉬게 하고자 아뢰다

… 특진관 고행산이 아뢰기를, “은성(穩城)의 사도(沙島)에는 초목이 무성하지 않아서 말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사도의 말을 옮겨다가 홍원관(洪原串)에 방목하며, 사변(徙邊)된 사람들을 나누어 무산(茂山)·풍산(豐山)·보을하보(甫乙下堡)에 들여보내고 수졸(戍卒)을 쉬게 하소서.”하니, 상이 고행산이 아뢴 일을 해조(該曹)에 하문(下問)하였다.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5일(丁卯)

이장길에 관해 의논드리니 서용하게 하다

이장길(李長吉)의 아내가 상언(上言)하여 남편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니, 【장길이 폐조 때에 내인(內人)에게 붙었었는데, 이때에 와서 폐출(廢出)되었다.】 상이 ‘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라.’ 명하였다. 김수동·유순정·노공필·김응기·신용개·이점·박열·안윤덕(安潤德)·고형산 등이 의논드리기를, “장길의 아내가 상언한 사연을 보니, 그의 첩 양금(楊今)이 폐조 때에 대내에 뽑혀 들어갔으며, 아우 장곤(長坤)은 멀리 외방에 귀양갔다 했습니다. 또 내관(內官) 금은(金銀)이 아뢴 말에는 ‘네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 말이 있습니다. 【폐주가 이장길을 차비문(差備門) 밖에 불러서 묻기를 ‘네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때 금은(金銀)이 그 전명(傳命)을 맡았으므로, 이렇게 아뢴 것이라고 한다.】 장길이 노비와 재산을 뇌물로 주고 빈 것은 다만 화(禍)를 면하고자 한 것뿐이고, 벼슬을 구할 겨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장길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3일(乙亥)

희안이 북도의 말과 관련하여 아뢰다

… 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고흥산(高荊山)에게서 들으니, 북도의 한 고을 군사로서 말을 갖고 있는 자가 20인이 못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변이라도 갑자기 일어난다면 어떻게 서울에서 멀리 제어하겠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여 맡겨야 하겠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21일(癸卯)

유순정 · 성희안이 고흥산과 의논하여 북도의 야인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뢰다

유순정 · 성희안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들으니, 북도의 성저 야인(城底野人) 망합(莽合)은 본래 거세고 사나우며 그의 무리도 많습니다. 야인들이 서울에 가려고 하나 망합만이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이 의심스러우니, 고흥산(高荊山)과 같이 의논하여 비어(備禦)의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26일(戊申)

유순정 · 성희안 · 고흥산 등이 함경도 군사의 고통을 덜어 주는 방안을 아뢰다

좌의정 유순정 · 우의정 성희안 · 형조 판서 고흥산 등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군사(軍士)는 본래 적고 방어하는 일은 긴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단천(端川) 이하의 남도(南道)에 예속(隸屬)된 군현(郡縣)의 당번(當番) 각색 군사들을, 겨울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북도에 부방(赴防)하게 하여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대저 얼음이 얼면 부방하는 일이 긴(緊)하고, 얼음이 풀어지면 일이 헐(歇)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방어하는 일이 헐할 때에는 마땅히 해엄(解嚴)해서 남도의 군사를 풀어 농업에 취업(就業)하게 하여 그 힘을 쉬게 했다가, 가을에 방어하는 일이 긴요하게 된 때에는 봄 · 여름에 풀어 주었던 군사들과 아울러 방어하게 한다면 공사(公私)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옳게 여기었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18일(己巳)

고형산 등이 대간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안당(安瑯) · 정언 최중연(崔重演)이, 구수영의 일을 아뢰고, 지사(知事) 신용개(申用溉)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 · 참찬관 김세필(金世弼)이 또한 대

간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였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18일(己巳)

고형산 등이 수영의 일을 의논드리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구수영의 죄는 대간과 시종이 같은 말로 극론하니, 속히 청납하소서.”하고, 김수동(金壽童)·유순정·성희안(成希顔)·정미수(鄭眉壽)·강혼(姜渾)·이계남(李季男)·이손(李蓀)·고형산·신용개는 의논드리기를, “수영의 이름이 훈록에 있다 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한다 하시니, 신 등이 위의 뜻을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간·시종이 논집한 지 이미 오래니, 궤히 공론을 따르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 다.”하였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1월 26일(丁丑)

사민도망과 관련하여 수령을 치죄하는 법을 엄히 밝힐 것을 청하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사민(徙民)의 도망이 5구(口) 이상 되는 고을 수령(守令)을 치죄(治罪)하는 법을 엄히 밝힐 것을 청하였고,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사민만이 아니라 정속(定屬)의 도망한 자 또한 많은데, 수령들이 보고하고 찾아 내지 않습니다. 그 법을 엄히 밝히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거행하지 않는다면 엄히 밝힌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하였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일(癸未)

김수동 등이 강탑의 위치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김수동·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권균(權鈞)·강혼(姜渾)·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신용개·정광필(鄭光弼)·이점(李坵)·박열(朴說)·안윤덕(安潤德)·고형산(高荊山)·안당(安瑯)·홍숙(洪淑)·성몽정(成夢井)·이계맹(李繼孟) 등이 의논드리기를, “본조(本朝)의 《시학의(視學儀)》에는, 강탑(講榻)을 어좌의 서쪽에 설치하여 남향하는데, 이것은 강할 때 이어(移御)하는 좌석인 것 같습니다만, 예문에는 승강(陞降)하는 절차가 없고, 또 《문헌통고(文獻通考)》 황태자 시학의(皇太子視學儀)에는 ‘황태자의 좌석을 동벽(東壁)에 설치하여 서향하고, 강탑은 북벽에 설치하여 남향하며, 태부(太傅)·소부(少傅)의 좌석은 서북쪽에 설치하여 남

향한다.’ 했습니다. 태자 시학(視學)에는 황제는 참여하지 않는데, 태부·소부의 좌석과 강답이 모두 북벽에 있으니, 강답이 어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만일 강답으로 경전(經典)을 두는 기구를 삼는다면, 안(案)이라 할 것이지 답이라 할 수 없고, 또 예문에도 경전을 두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일 강관이 강서(講書)할 때 강하는 서적을 두는 서안(書案)이라 한다면 그 서안을 남향하여서는 안됩니다. 강답의 설치하는 신 등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답 설치에 관한 글은 《개원례제(開元禮制)》에 보이는데, 본조의 《오례의(五禮儀)》는 모두 《개원례》에 의거하여 찬정(撰定)하였습니다. 송조(宋朝)나 대명 황제의 《시학의》에는 모두 강답 설치에 관한 글이 없으니, 이제 이 시학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아직 설치하지 말고, 명나라 서울에 가는 인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오게 함이 온편하겠습니다. 다만 본조 《시학의》에는, 서안(書案)만 있고 경전 두는 안(案)은 없으니, 대명 《시학의》에 의하여 경안(經案)을 어좌 왼쪽에 설치하고 경전을 두었다가 강서관(講書官)에게 나누어 주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1일(乙酉)

형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여 계모를 봉양하고자 아뢰다

형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계모의 나이가 79세나 되어 쇠질(衰疾)이 점점 더하고, 신도 병이 있으니, 사직하고 돌아가 봉양하면서 병을 조심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어미가 있는 근처의 관찰사에 결원이 있으면 차견(差遣)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8일(己亥)

헌부가 형조 판서 고흥산과 경상 절도사 황형을 탄핵하니 전교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전번에, 형조 판서 고흥산이 계모가 연로하므로 해서 귀양(歸養)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도(道)의 감사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제수하시려 하여 승전(承傳)을 받들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대저 감사는, 한 방편을 맡아 지키면서 내치고 등용하는 권리를 가졌으니, 결원을 기다려 제수하여 귀양하게 하는 수령의 유례와는 다릅니다. 하물며 감사의 체임(遞任)은 1년 이후에 있는데, 어찌 감히 미리 승전을 받들겠습니까. 거행하지 마소서. 더구나 형산은 전에 함경 감사가 되었을 때, 영중기(營重記)에 붙여 있는 면포(綿布)·어염(魚鹽)·지물(紙物)·계돈(鷄豚) 등 물건을,

사창(社倉)을 설치하려고 호조(戶曹)에 청하였습니다. 호조에서는 조종조 이래로 폐지한 지 벌써 오래니 지금 다시 설치할 수 없다 하여, 불인 물건으로 양곡을 무역(貿易)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고, 1만 8천여 석을 회계(會計)에 기록하였으나, 거개 유명 무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각 고을 수령이 그 수량을 보충하려면 앞으로 백성에게 부세를 더 거두어야 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근래 조신(朝臣)으로서, 그 도에 사명을 받들어 나갔던 이들도 모두 그 폐를 말하며, 한 도(道)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까지 되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산의 허명(虛名)을 과장하여 기망(欺罔)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신으로서, 아버지가 늙어 귀양(歸養)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근처 수령의 결원 있기를 기다려 차견하는 것은 예이지만 고흥산 같은 사람은 귀양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그 도 감사의 결원 있기를 기다려서 차견하게 하였다.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백성에게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니 해조(該曹)에 물어 보겠다.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의 본심은 더 많이 거두어들여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처사를 추술(麤率)하게 하여 도리어 횡방을 당한 것이다. 그런 데도 홍양(弘羊)·공근(孔僅)과 비견되어 취렴하는 신하로 지목되는 데까지 이르니, 당시 의논이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국사에 진심하는 자 이로부터 해이해지겠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장령(掌令) 안처성(安處誠)이 힘써 주장하여 공박(攻駁)했다.’ 하고, 혹은 ‘이때 문관 서지(徐祉)가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되어 고흥산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엮어 만들어 증상하였다.’ 하였다. 서지(徐祉)의 사람됨이 용심이 음험하여 남의 과실 말하기는 좋아하면서 자신의 처신은 조심하지 않으니, 식견 있는 이들이 허황한 사람이라 지목하였으며, 끝내는 시론(時論)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19일(庚子)

우부승지 김세필에게 고흥산의 일로 전교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세필(金世弼)에게 전교하기를, “고흥산(高荊山)이 양곡을 무역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한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됨은 얼마이며 민간에 폐해가 됨은 얼마인가? 이 뜻으로 아울러 물으라.”하니, 김세필이 회계(回啓)하기를, “당초에 고흥산이, 영중(營中)에 있는 것으로 사창(社倉)을 만들려 하였으니, 반드시 저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에 도움을 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민원을 일으킴이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다면 매우 그릅니다. 그러나 호조에서는 양곡의 수량만을 알 뿐이지 어찌

그 현실이야 알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폐해의 유무를 본도에 치서(馳書)하여 묻고, 우선 양곡 바치는 것은 정지하게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0일(辛丑)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고형산은 지금 추문하고 있으니, 끝내는 반드시 법으로 죄를 정하게 될 것인데, 어찌 출사(出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형관(刑官)의 사무는 매우 긴요하며 오래 비워둘 수 없는데이겠습니까. 속히 그 직을 가소서. 형산이 양곡을 무역한다 하면서 그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늘여 민원을 일으킨 것은, 조정이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반드시 그 도에 하문한 후에 정지시킬 것이 아닙니다.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1일(壬寅)

대간이 고흥산·황형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고흥산·황형의 일을 아뢰고, … 두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5일(丙午)

대사헌 안당 등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안당(安瑯)·헌납(獻納) 성세창(成世昌)이, 고흥산(高荊山) 등의 일을 아뢰었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6일(丁未)

고형산·황형의 일을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윤희인(尹希仁)·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이, 고흥산(高荊山)·황형(黃衡)의 체임을 청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고형산이 과연 허무한 물건으로 백성에게서 양곡을 무역하였다면 매우 그르다. 그러나 한 방면의 소임을 맡아 나가서,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였으랴겠는가. 더구나 지금 우선 양곡 무역을 정지하였으니, 그 도(道)에 물어본 후에야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하자,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영중기(營重記)에 붙인 물건을 각 고을 수령이 모두 스스로

쓰고 미처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병사가 갈려 올 때에 그 유무를 물으면 수령이 ‘있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수량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고흥산의 일은 저 곳에 공문을 보내어 그 허실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저 그 도에는 군량이 크게 모자라 군용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전에도 조정에서 역시 이 일을 염려하여 계책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끝내 마땅한 대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도의 군관(軍官)들이 적당히 양감(量減)하고, 혹은 스스로 양료(糧料)를 준비하였습니다. 고흥산은, 본래 국사에 진력하는 자이지만, 이런 양곡 무역의 일은 과연 그롭니다. 다른 일로 살펴보면, 백성을 무휼(撫恤)하는 데 반드시 마음을 다했고, 국사에 반드시 힘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저곳에 유시(諭示)를 내리셔서 그 허실을 물으셨으니, 과연 실제 수량과 같으면 전대로 기록하고, 만일 실제 수량이 아니라면 감액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래 북도가 해마다 흉황(凶荒)이므로 양곡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좀 풍년이 들면 양곡 무역이 매우 쉽겠습니다. 그 본심을 케어본다면 끝내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어찌 이것으로 체임(遞任)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7일(戊申)

지평 이빈 등이 고흥산·황형·상궁 족친의 일·유모와 신노비 소생의 일에 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이빈(李蘋)·정언 권번(權玼)이, 고흥산(高荊山)·황형(黃衡)의 일과 상궁(尙宮) 족친의 일 및 유모와 신노비 소생은 분급하지 말라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2월 29일(庚戌)

지평 안처성 등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백성들을 근심하고 원망하게 한 것은 옛날 염철(鹽鐵)의 이익을 독점하던 일보다 더 심하여, 상홍양(桑弘羊)·공근(孔僅)·우문융(宇文融)의 무리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하고, 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과 함께 사언을 같이하여, 고흥산·황형(黃衡)·상궁 족친(尙宮族親), 유모·신노비 등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유모와 신노비에 관한 일은, 모두들 억울한 일이 많다 하오니, 다시 의논해서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고흥산의 한 일이 세쇄(細碎)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이 본래 근검한

데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까. 전일 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계동(李季叟) 등이 함경도에 가서 성보(城堡)를 설치하고 길을 낼 때, 신이 종사관으로 장무(掌務)의 소임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 종사관을 보내어 그 형편을 보려하였는데,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신에게 물으므로 신이 윤장(尹璋)이 가합하다 대답하였더니, 극균·성준 등이 본래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므로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천거하라.’ 하기에 또 고흥산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때 두 정승이 ‘무엇으로 그가 합당함을 아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의 천성이 근검 절실하니 이것이 취할 만하다.’ 하니 ‘근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고형산이 전에 내섬 첨정(內贖僉正)이 되었을 때, 술 10여 섬을 걸렀는데, 양조의 소임을 맡은 자가 훔쳐 먹고는 물을 많이 섞어서 술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政院)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이러한 폐단을 알고 친히 양조하는 것을 지켜 보았는데, 그때가 한창 성서(盛署)였습니다. 고흥산이 전일 견책(譴責)당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우물가에 앉아 쌀 씻는 것을 감시하고, 또 부엌에 앉아 친히 술밥 찌는 것을 감시하고서 술밥을 식혀 누룩을 섞어 독에 넣은 후, 다시 연이어 3일 간을 숙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하였으며, 술 맛이 향그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의 근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성준 등이 말하기를 ‘능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으니, 과연 쉽지 않은 일이다.’ 하고, 드디어 가자(加資)하여 종사관을 삼아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형산이 북도에 가서 지형을 살펴 길을 닦을 때 흑한식 경의 거리를 걷기도 하니, 그 도의 인민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들 어렵게 여겼으며, 성준·이극균 등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걸치레만 하여 남의 훼손(毀譽)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위가 아니며, 지금 양곡을 무역할 일 또한 무리하게 만들어서 작위(爵位)를 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고흥산이 후에 사복 정(司僕正)이 되었을 적에 시(寺) 중에 말을 기르는 룡이 매우 많았지만 거의가 도둑을 맞아 말이 살찌지 못하였습니다. 고흥산이 그 폐단을 알고 자신이 직접 말을 사육하였는데 말이 한껏 배부른 후에 노끈으로 말의 배 둘레의 크고 작음을 재어 노끈 두 끝에 표를 하여 상자 속에 간직하였다가 수시로 뽑아 비교해 보고, 만일 둘레가 감소되었으면, 반드시 말 기르는 자를 형장으로 때렸습니다. 이러므로 두어 달이 못 되어 말이 모두 살찌고 건강해졌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본성이 근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함경도 병사에 제수되었다가, 갈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내어보냄을 가지고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이 그 때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북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계청하여 차견하였으며, 부임한 후에는 일에 공이 많았습니다. 또 양곡을 무역

한 일은 육진(六鎭)의 군마가 다 지치고 양곡의 수량이 매우 적어서, 군관·종사(從事)의 무리도 궤향(饋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책을 낸 것입니다. 신이 신윤무(辛允武)에게 물어보니 신윤무의 말이 ‘영중기(營重記)에 붙인 물건 중, 한 고을에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가 있으면 형산이 절반을 감하여 50마리만을 취하였으며, 한 개의 값이 조粟 5되(升)하는 것이면 형산이 감하여 3~4되를 받았으니, 반드시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취렴(聚斂)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의 착오된 일로 논한다면 가하겠지만, 종신(終身)의 허물로 삼는다면 뒷날에는 사람을 권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안처성(安處誠)이 또 아뢰기를, “옛날 염철(鹽鐵)·주다(酒茶)를 전매한 자도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흥산이 처음 취렴의 일을 열어 놓았으니, 그 번저감을 예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흥산의 일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들으니 북도의 감사(監司)·절도사·수령들이 군사에게 상을 주고 야인(野人)을 접대할 때에는, 영(營)에 쌓아 둔 어물(魚物)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만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다면, 논상(論賞)하고 접대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들으니, 고흥산이 우마(牛馬)와 부정(釜鼎)을 사서 입거(入居)하는 자에게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대로 가하다 하겠지만, 어물로 양곡을 무역하여 회계에 기록함은 모리(謀利)와 같은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우마와 부정을 사서 입거인(入居人)에게 준 사실은 신도 들었습니다. 고흥산이, 영중(營中)에서 모든 공사(公事)의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고서 수합(收合)하여 궤에 넣고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하고, 말아 간직하는 자로 하여금 반 장의 종이도 훔치지 못하게 하니, 남은 종이가 많았습니다. 종이 한 권(卷)의 값이 쌀 두 말이면 감액하여 한 말로 바꾸어 이것을 아전(衙前) 및 영인(營人)들에게 주어서 소 90여 마리를 사고, 또 부정을 사서 입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함흥부(咸興府) 앞길을 경유하는데, 형산이 길가의 집에 앉아 있다가 입거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또 안정하여 살라는 뜻으로 위로하기를 ‘어느 곳인들 우리 임금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물건은 공공하게 마련한 것이요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면서 반드시 친히 만나 보고 위로하니, 본디 그런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할 만한 일입니다.”하니, 안처성이 아뢰기를, “어물로 양곡을 무역한 것은, 모두가 헛된 과장으로 속여서 명예를 얻으려는 것입니다.”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사람 대우하기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명예를 얻으려는 일이라 한다면 후에 국사를 하는 자 또한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 하였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일(辛亥)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황형·고형산(高荊山)·육한(陸閑) 및 박씨 죽친을 종량(從良)하는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일(壬子)

고형산의 일을 아뢰니 윤휴하지 않다

… 이어 황형(黃衡)·고형산(高荊山) 및 박씨의 죽친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휴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3일(癸丑)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황형·고형산·박씨 죽친을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휴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4일(甲寅)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황형·고형산 및 박씨 죽친 종량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고,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휴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5일(乙卯)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차자를 올리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차자(筭子)를 올렸는데, 대략, “… 고흥산(高荊山)은 본래 학식이 없지만 당로자의 칭찬을 받아 한 방면의 소임을 제수하게까

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죽한 줄을 모르고 군자(軍資)를 보충한다 빙자하고 은밀히 자기의 공을 삼으며, 문부만을 빙거 삼아 빈 이름을 실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기 창자와 닭·돼지에게까지 모두 값을 정하여 백성의 재물을 닦아 들이니, 그 횡령(橫斂)으로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상홍양(桑弘羊)·공근(孔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재리(財利)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그 생각하는 바가 먼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산이 한 번 이(利)의 문을 열어 놓으니, 그 실마리는 미미하지만 그 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그를 물리치시기에 여유를 두지 않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를 추관(秋官)의 우두머리에 있게 하시니, 이것은 신 등의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7일(丁巳)

대간이 고흥산의 일과 박씨 종친의 종량하는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고흥산(高荊山) 및 박씨 종친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8일(戊午)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고흥산(高荊山)의 일을 아뢰었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2일(壬戌)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고흥산·신봉로(申奉廬) 등의 일을 아뢰었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5일(乙丑)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고흥산(高荊山)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7일(丁卯)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18일(戊辰)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었다. …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0일(庚午)

대간이 고흥산의 곡식 무역한 일에 대해 아뢰니 전교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곡식을 무역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한 일은 함경도에 물어서 알아본 뒤에 처치하겠으므로 아직 미루어둡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3월 21일(辛未)

영사 유순이 대간의 논계 불허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 영사(領事) 유순(柳詢)이 아뢰기를, “… 지금 대간(臺諫)이 수십 일 동안 논계(論啓)하는데도 하나도 윤휴를 얻지 못하니, 신은 위에서 궤히 이행하여야 할 데에 궤히 이행하지 않음이 아닌가 합니다. 고흥산은 위에서 대신이라 하여 중히 여겨 곧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상궁 죽친의 천역 면제하는 일 같은 것은 법을 어기고 사사일에 간여하였는데도 대간이 공론으로 아뢰니, 망설이실 것이 아니라 곧 궤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까.”하고, 장령 안처성(安處誠)과 헌납 성세창(成世昌)이 또한 천역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휴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1일(庚子)

유순정이 고흥산의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아뢰다

…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형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근래 논박을 받고 출사하지 않으므로 일의 적체(積滯)가 많은데 북도에서의 회계(回啓)를 기다린다면 일을 폐함이 적지 않습니다. 참판 또한 침구(針灸) 치료로 말미를 받아 집무하지 않으니, 옥송 형결(獄訟刑決)의 지체가 적지 않습니다. 조속히 처치하소서.”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1일(庚子)

시강관 김극핍 등이 고흥산의 체차를 청하니 답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극핍(金克愾)·설경(說經) 유돈(柳墩) 등이 형조 판서(刑曹判書) 고흥산이 출사하지 않아 정체(停滯)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아침에 정승의 계주(啓奏)로 비로소 들었다. 가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일(庚戌)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의 양곡 무역한 일은, 지금 함경 감사 윤순(尹珣)의 서장(書狀)을 보면, 수령(守令)이 보고한 것만 믿고 중기(重記)를 상고하지 않아 앞뒤가 도착(倒錯)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음이 심합니다. 추문(推問)하소서.”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5일(甲寅)

삼포왜란과 관련하여 고흥산이 의논드리다

명하여, 경외(京外)에 머물러 둔 왜인을 돌려 보내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 고흥산(高荊山)은 의논드리기를, “전후에 온 왜가 만일, 삼포(三浦)에서 난을 일으킨 것을 알고 반간(反間)할 뜻이 있어 우리의 허실을 엿보려 하였다면, 마땅히 곧 베어야지 유치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포 왜인이 우리 나라를 배반하려던 것을 모르고 통신사로 왔던 것이라면, 2년간이나 오래 구류하였으니, 의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각도 군현에 나누어 두었다가 우리의 허실을 안 뒤에는, 화친을 청하며 돌려주기를 구하더라도 가볍게 하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붕중이 올라 온 뒤에 그의 말을 들어 보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전의 수의(收議)한 것을 재량하여 시행하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乙丑)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9일(甲午)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도내의 성 쌓기에 대한 방법을 보고하다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치계(馳啓)하였다. “도내(道內)의 강릉진(江陵鎭)·삼척진(三陟鎭)·동포(同浦)·울진포(蔚珍浦)·대포(大浦) 등 다섯 진포(鎭浦)의 성 쌓는 일은, 이미 지난 기유년에 수교(受敎)하여 당번한 유방 정병(留防正兵) 및 당령 수군(當領水軍)으로 하여금 돌을 주워 모으게 하였는데, 삼척진은 지난 경오년에 민호(民戶)에서 역군을 내어다 쌓았고, 그 나머지 네 진포의 돌 모은 상황을 직접 살펴보건대, 군인(軍人)들이 쓰지 못하는 돌을 수만 채워 추워 모았으나, 수령이나 첨사(僉使)·만호(萬戶)들이 자기가 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연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 수효만 떠벌려 놓았습니다. 이리다가는 백년이 되더라도 필연코 일이 이루어질 기한이 없을 것이니, 그 중에 모은 돌이 조금 많은 강릉 성을 올봄부터 시작하되, 본 고을의 부사(府使)나 판관(判官)으로 체차사원(體差使員)을 정하고 본진(本鎭)의 당번한 유방 군사(留防軍士) 및 삼척진의 유방 군사로 쌓게 한 뒤에, 풍년을 기다렸다가 공역(功役)의 경중을 분간하여 적당하게 군사를 내어 쌓기를 끝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각포(各浦)의 것도 또한 위의 예에 의해서 각기 첨사·만호가 돌을 주워 모아 쌓도록 하되, 그 근간함과 태만함을 고찰해서 축성 사목(築城事目)에 의해 권면 징계하도록 병조에 명을 내려 처리하소서.”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24일(己亥)

한홍이 오랑캐와 관련하여 아뢰다

… 한홍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오랑캐들(胡)을 먹이는 곡식이, 회령(會寧)은 1년에 90석이고 종성(鍾城)은 50석이었는데, 지난번에 고흥산(高荊山)이 계문하여 일체 모두 감했습니다. 무릇 저들로서 우리 인물(人物)을 쇄환(刷還)하거나 체탐(體探)에 공 있는 자를 상경(上京)시키는 것은 제한(制限)된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용맹스럽고 건장(健壯)한 사람들이 매우 많으나, 주장(主將)들이 술과 음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접대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변방에 보고하는 일들에 있어서 혹시 방해로움이 있게 될까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큰일이니 마땅히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5월 14일(丁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백성의 쌓인 불합리성을 말하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고흥산(高荊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이 상고하건대 《시경(詩經)》에 ‘창고를 짓고 노적을 쌓고 마른 양식을 썬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네 용병(戎兵)을 다스려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했으니, 이 두 가지를 행하면 나라가 부요하고 군사가 강할 것입니다. 어찌 양식이 떨어짐을 걱정하며 밖의 침입을 걱정하겠습니까. 자고로 천하와 국가를 가진 자가 다 이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홍범(洪範)》의 팔정(八政)에는 식화(食貨)로 으뜸을 삼았고 주관(周官)의 설직(設職)에는 사마(司馬)로 중함을 삼았으니, 그 도를 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신에게 글을 내려 군수(軍需)와 병기(兵器)의 중함을 효유(曉諭)하시니, 그 군국의 일을 굵어 염려하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엿드려 교유를 받고 너무 감격한지라 이 못한 충심을 다해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하겠으나, 오래 폐지하였던 일을 갑자기 변하기 어려워서, 신이 무슨 방법을 써야 저축을 넉넉히 하고 병기를 만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양식은 백성의 하늘이다.’ 하였거니와, 병(兵)은 백성에서 나오나 백성은 또한 농사일도 합니다. 이리므로 옛날 제왕이, 군수(軍需)를 충실히 하려면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도록 하였고, 군사를 정예롭게 만들려면 태평하여도 위태함을 잊지 않아 미리 사졸을 양성했습니다. 신이 보건대 이 도는, 근년에 흉년이 들어 공사간 모두가 어려우니 어떻게 저축을 늘릴 것이며, 군읍이 피폐하고 백성이 궁핍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병기를 수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본도의 병기가 수선되지 못하고 군자(軍資)가 충실하지 못한 이유를 진달한 뒤에, 각 고을의 폐단을 말씀드리겠으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각 고을의 병적에 붙여 있는 제색 원군(諸色元軍)이 겨우 2천 7백 18인데, 그 중에서 활을 당길 수 있는 군사는 별시위(別侍衛)뿐이요, 기타의 군사로 말하면 정군(正軍)은 모두 몸이 나약하고 가세 역시 빈궁하니, 어떻게 병기를 갖추어서 변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인(保人)은 더욱 가난하니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병졸이 정예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거니와 관고(官庫)에 간직된 군기까지도 태평으로 인해 녹슬어 버렸습니다. 신은 주야로 걱정하여 보수하기를 재촉하고 있으나, 어교(魚膠)가 본도의 소산이 아니라 공사간에 장만하기 어려워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영동(嶺東) 각 고을은 모두 바다에 연했으므로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적을 막아내겠습니까. 또 영동은, 남쪽으로 평해군(平海郡)에서 북쪽으로 흡곡현(歙谷縣)까지 사이가 8백 53리 떨어졌으며,

그 사이에 있는 9고을에 사는 백성이 4천 8백 8호이고 전답은 5천 5백 52결인데, 국곡(國穀)의 금년 춘등(春等)의 회계에 실린 것은, 군사별창(軍資別倉)에 현재 있는 쌀이 모두 1만 7천 3백 55석(碩)이고 민간에 빌려 준 것散在이 1만 3천 2백 85석 10두이며,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皮雜穀)이 모두 2만 3천 3백 82석이고 민간에 빌려 준 것이 4만 6천 9백 11석 5두입니다. 영서(嶺西)는, 남쪽으로 정선군(旌善郡)에서 북으로 이천현(伊川縣)까지 역시 서로 8백 26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17 고을에 사는 백성이 9천 4백 12호이고 전답은 1만 6천 3백 32결인데, 국곡은 양창(兩倉)에 현재 있는 쌀이 모두 1만 5천 58석이고 빌려 준 것이 6천 7백 89석 8두이며,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은 모두 5만 4천 56석이고 흩어져 있는 것이 5만 3천 3백 14석 6두입니다. 토지가 넓지 않은 것은 아닌데 민호와 전결(田結)이 이와 같이 적으며, 창고에 남은 곡식 숫자가 날로 감축되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은 더욱 불어나니, 백성을 구제하고 군사 먹일 양식을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으므로 일시에 죄다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영서 각 고을은, 비와 가뭄이 때맞추지는 못하였으나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이 반반이므로 이주 흉년은 아닙니다만, 영동 각 고을은 수전이 비록 많으나 토민(土民)이 수종(水種)을 힘쓰지 않고 묘종(苗種)에 전력하는데, 한재·수재·풍재가 때없이 발작하여 이묘(移苗)의 시기를 잃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풍년이 한 번이면 흉년은 열 번이나 되어, 국곡이 창고에는 적고 백성에게 빌려준 것이 많습니다. 구황(救荒)할 방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나, 군수(軍需)의 비축은 영동이 가장 시급한데, 하물며 왜적이 이미 영남(嶺南)을 어지럽혔으니 어느 때 영동에 도발할지 모르는데이겠습니까. 조치의 편부를 고로(古老)와 수군(水軍)에게 물으니, 그들의 말이 '40년 전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와 고성(高城)의 유점사(楡岾寺)를 중창할 때, 중·소 맹선(中小孟船)으로 경상도의 미면(米麵)과 철물(鐵物)을 운반하여 쓰던 일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옛날 수로(水路)가 곧 지금의 수로인데 어찌 옛날에는 통하고 지금은 통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경상도 미곡 2만여 석을 특명으로 조운(漕運)하여 본도 연해 아홉 고을에 분치(分置)하기를, 황해도와 평안도 적로(賊路)의 각 고을에 운반하던 예와 같이하여 불우(不虞)에 대비케 하소서. 또, 물산(物產)은 성쇠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많이 나는 것이 여기에는 적게 나기도 하며, 여기에는 적게 나는 것이 저기에는 많이 나기도 하는 것인데, 각사(各司)에 바치는 약재(藥材) 및 잡물(雜物)이 혹은 본읍의 소산이 아닌 것이 공안(貢案)에 실렸으니, 이 어찌 상정(詳定)할 때 소산 여부를 상고하지 않고 분정하였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수시로 성쇠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비록 흥왕하였으나 지금은 흥왕하지 못한데도 그대로 정하므로

백성이 사서 바치게 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본도 각읍의 지금 나는 물건을 다시 조사해 고쳐 정하고 바치기 편리하게 하여 그 폐단을 더소서. 또, 때에 맞추어 산림(山林)을 벌채하면 그 재목을 다 쓸 수 없는 것인데, 폐조 때에 수변(水邊) 근처에 있는 쓸 만한 재목은 다 작별하여 하나도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공안에 실린 재목과 판자를 구해낼 만한 곳이 없거니와, 비록 궁벽한 골짜기에서 얻는다 해도 인력이 모자라는 자는 쉽게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강(京江)에서 사서 바치므로 그 폐가 적지 않거늘, 하물며 귀후서(歸厚署)가 사들일 가포(價布)를 백성에게 나눠 주고 판자 바치기를 독촉하는데이겠습니까. 또 강이 먼 궁벽한 골짜기에서의 재목 벌채는 어려우므로, 혹 경강에서 무역해 바치는데 그 관가(官價)에 비해 10배가 넘으니, 이름은 무역이라 하나 백성은 실로 해를 받습니다. 재목은 궁실을 짓는 것이라 폐할 수 없고, 관곽은 죽은 이를 장례하는 것이라 역시 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백성의 죽음에 저마다 그 판자를 얻어 해골을 묻는 것은 은택(仁)이 지극히 흠족합니다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되 산 자가 먼저 병드니 이는 산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죽은 사람 대우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재목을 바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지만 판자를 무역하는 폐단은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구례에 의하여 귀후서의 노속(奴屬)에게 값을 주어 재목이 있는 곳에 보내어 민원(民願)에 따라 화매(和賣)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둘 다 온전하게 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인물은 성쇠가 있으므로 전에 성하던 곳이 뒤에 쇠하기도 하고 전에 쇠하던 곳이 뒤에 성하기도 합니다. 각읍에서 기인(其人)을 분정할 처음에 이 읍의 향리(鄕吏)가 전성할 때였으면 많이 정하고, 저 읍이 쇠잔할 때였으면 적게 정하였는데, 그 뒤에 전성함이 변하여 쇠잔해지고 쇠잔함이 변하여 전성해졌는데도, 기인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기 때문에, 매년 다달이 정하여 보낼 때 남아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도망친 서리를 찾아내어 채웁니다. 이 때문에 신역을 꺾하면, 그 사(司)의 하복(下僕)으로 대역하는데 역가(役價)가 매우 많고 남아 있는 자도 궁하여 스스로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 자의 역가를 아울러 일가에게서 거두고 일가가 없으면 절린(切隣)에게서 거두므로, 일가와 절린도 지탱하기가 어려워 역시 도망합니다. 기인 때문에 평민도 그 해를 입으니 폐단을 장차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인의 정액(定額)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신은 바라건대,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예와 같이하여 식년(式年)을 정하고 각도 각읍의 현재 신역(身役)하는 향리의 다소를 자세히 점검한 다음 이리저리 옮겨 골고루 배정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선상(選上)한 노비와 각사(各司)의 조례(皂隸)·나장(羅將)과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은, 스스로 번(番)을 서지 않고 죄다 경인(京人)이 대립(代立)하되 그 값을 모두 거두는데, 월

리(月利)로 하면 번가(番價) 1필(匹)에 1필을 더 거두므로, 궁하여 스스로 장만해 내지 못하면 그 일가와 절린에게서 거두기까지 하니, 일가와 절린도 궁하여 도망쳐 열 집에 아홉이 비어 마을이 쓸쓸합니다. 그 함부로 거두는 법을 거듭 밝혀 통절히 징계하였으되, 오히려 기탄없이 하다가 그 폐가 이런 극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다시 별다른 과조(科條)를 세운 다음에 법으로 엄히 다스려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하소서. 또, 해마다 원일(元日)에 제읍의 수리(首吏)가 꺾문 밖에 나아가 숙배(肅拜)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예절이거니와, 다만 속현(屬縣)도 다 본읍의 예에 의해 올려보내니, 그 부읍(附邑)의 주민은 많아도 10여 호에 지나지 않고 향리(鄉吏) 역시 3~4인에 지나지 않으며, 몹시 잔폐한 고을은 1호의 백성도 없고 1인의 아전도 없는데도 고을이라는 명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읍의 아전으로 숫자를 채워 보내며, 예부(禮部)에 들이는 지지(地紙)와 수색(酬索)하는 물건을 모두 백성에게 받아내어 마련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본도 제읍의 속현은 수참(隨參)하지 말도록 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흡곡(歙谷)은 땅이 험착하고 백성이 적어 소복(蘇服)시킬 계책을 베풀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구려(高句麗) 때는 비곡현(比谷縣)이라 불렀고, 신라(新羅) 때는 습계(習蹊)로 고쳐 금양군(金壤郡)에 붙였고, 고려(高麗) 때는 지금 이름으로 고쳐 그대로 금양군에 붙였다가 고종(高宗) 때에 현령(縣令)을 두었는데, 본조(本朝)가 그대로 인수(因襲)하였으니, 금양군은 곧 지금의 통천(通川)입니다. 시대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은 고금의 통한 이치라 이 고을이 군현(郡縣)에 들기는 하였으나, 너무 잔폐하여 모든 공물(貢物) 및 진상(進上)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다 바치니, 그 형세를 보건대 40년이 못가서 반드시 폐기될 것입니다. 기왕 폐기될 것이라면 백성이 다 흩어지기 전에 옛날 그대로 도로 통천에 붙여서 양읍(兩邑)이 다 충실하게 하소서. 또, 인제(麟蹄)·낭천(狼川) 양읍은 피폐하기가 흡곡과 다름없는데, 비록 고을 이름은 있으나 오히려 포실한 부락만 못합니다. 낭천은 하삼도(下三道)에서 함경(咸鏡)으로 통행하는 노변에 있고, 인제는 영동으로 통행하는 직로(直路)에 있어, 모두 폐치(廢置)할 수 없습니다. 춘천(春川)의 속현 기린(麒麟)은 본부와의 거리가 1백 40여 리인데, 낭천·양구(楊口)·인제 세 고을이 가로막아서 본부와 지경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인제와 가장 가까우니, 이를 만약 인제에 붙인다면 인제 사람은 소복될 수 있으나, 춘천은 중앙에 위치하여 사객(使客)이 빈번하되 본부의 사방경이 그렇게 넓지 못하니, 만약 기린을 떼어 내면 몇 해 안 가서 역시 잔읍(殘邑)이 될 것이니, 어찌 동쪽을 떼어 내어 서쪽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낭천은 토지가 메마르지만 약간 경작할 만한 땅이 있으니, 만약 하삼도(下三道)의 입거인(入居人) 백여 호를 뽑아다가 채운다면 낭천 백성도 소복될 수 있겠습니까만, 안

정된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요, 또한 경상(慶尙)·전라(全羅) 양도는 땅이 해도(海島)에 가까운지라, 도이(島夷)가 해를 끼치고 있어 지금 수자리 사는 백성을 이 고장에 뽑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양구현(楊口縣)은, 고려 때는 양구(楊溝)라 불러 춘주(春州)에 부속했다가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낭천 감무(狼川監務)가 겸해 다스렸으니, 이는 옛날 낭천 속현으로 사객이 왕래하는 요로가 아닙니다. 이 고을을 혁파하여 둘로 나눠 서남은 인제에 붙이고 동북은 낭천에 붙이면 양읍은 폐지되기까지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군현의 연혁(沿革)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니 어찌 소신의 아뢰는 바로 건치(建置)를 경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널리 중의를 모으셔서 신충(宸衷)으로 재결하소서. 백성의 소원(所願)은 무궁하나 신의 진달은 여기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폐단에는 경중이 있고 구제에는 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에 긴요한 방물(方物)을 신자로서 경감하여 주기를 호소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재목은 국용에 긴절한 것이니 일시에 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의 것을 덜어 아래에 보태주는 것은 어진 정사의 미루어 미칩이요,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드는 것은 성인의 용단인 것입니다. 신이 외람되어 방면(方面)을 지켜 한 도의 걱정을 나누고 있으니, 의당 하정(下情)을 상달하고 상덕(上德)을 선양해야 되는데, 귀로는 쌓인 폐단을 듣고 눈으로는 당시 어려움을 보면서도, 만약 진상과 국용에 관계된다 하여 신충(宸聰)에 우러러 아뢰지 않으면, 백성의 쌓인 폐단은 구제할 때가 없을 것이고 많은 생민이 곤궁에 이를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열거한 폐단을 조정에 수의(收議)하여, 없애지 않는 폐단이 없고 고치지 않는 병통이 없게 하시면, 참으로 역역(力役)이 줄어 민력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민력이 넉넉하면 농사에 힘써 양식이 풍족할 것이요, 양식이 풍족하면 병기를 수선하여 사졸이 강할 것이요, 사졸이 강하면 백성이 신임하고 적에게 달려 갈 것이니, 어찌 군수(軍需)의 부족과 병기가 수선되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윤5월 23일(丙申)

성희안이 조운과 관련하여 아뢰다

… 성희안이 아뢰기를, “… 경상도 조운(漕運)의 편부(便否)는, 해조(該曹)가 경상·강원·함경 세 도의 도사(都事)를 시켜 간심(看審)하려 하는데, 도사가 나이 젊고 경험 없는 사람 같으면, 해변 고로(故老)에게 묻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수로(水路)가 험악하여 조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끝내 전수(轉輸)할 계획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안당(安塘)과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은 왕

사(王事)에 힘을 다하고 사체를 갖추어 오는 사람들이니, 두 도 관찰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 하여 편리 여부를 친히 살펴보고, 같이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면, 반드시 해변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경주(慶州) 이상 여섯 고을의 군량이 3~4만 석은 될 수 있으니, 우선 조운하여 들여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 조운(漕運)을 간심(看審)하고 전마(戰馬)를 들여보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辛亥)

우의정 성희안이 북도 백성들이 기근에 식량 수송의 방책을 말하다

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북도(北道) 백성들이 기근(飢饉)에 시달리고 사졸(士卒)은 모두 부황(浮黃)이 났다 합니다. 대저 사세가 위급하게 되면,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식량 수송의 방책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지게 하면 줄지에 해내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은 검소하고 착실한 사람이니 큰일이나 큰 의논도 죽히 담당하여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전운사(轉運使)의 직(職)에 있었으니, 고흥산을 본직(本職)을 같고 이 직을 제배(除拜)하여 식량을 수송하는 일을 관장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김협(金協)의 말을 듣고서 내가 매우 진념(軫念)하였는데, 경의 아뢴 말이 매우 마땅하다. 해사로 하여금 다시 시행할 만한 계책을 만들게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7일(己巳)

대간이 안처성·안지의 일을 가지고 재차 아뢰다

대간이 안처성(安處誠)·안지(安智)의 일을 가지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안처성은 품성(稟性)이 본래 정직하지 못하여 남이 옳다는 것은 그르다 하고 남이 나쁘다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소박하고 우직하여 꾸밈이 없이 나라일에 마음을 다하는 고흥산(高荊山) 같은 사람을, 안처성은 ‘명예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여 배격하였고, 음흉한 반역들을 교묘하게 사주하여 진신(縉紳)들에게 독을 끼친 이극돈(李克墩)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안처성은 그 죄를 벗겨 주려 하여 노기(怒氣)까지 띠고 동렬(同列)들을 비방하였었다. ...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7일(己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 등이 조운이 어렵다고 치계하자 대신들이 의계하다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경상도 관찰사 안당(安塘)이 동장(同狀)으로 치계(馳啓)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일에 내린 분부에 따라, 항해(航海)의 편부를 시험하려고 흥해(興海)에서 영해(寧海)까지 여러 날 배를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풍파를 만나게 되면 의자하여 정박할 섬이 없고, 또 선체(船體)가 작고 든든하지 못하여 조운(漕運)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수의(收議)하게 하니, 대신들이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고흥산 등이 아뢰는 것을 보면 조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함경도 백성은 조운이 아니고서는 살릴 도리가 없으니, 풍파가 험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온갖 계획으로 조치하여 기어코 조운하여야 하는데, 다만 지금 있는 배들이 모두 조운에 합당하지 못하니, 이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고흥산을 시급히 올라오게 하여, 해조(該曹)와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9일(辛未)

고형산을 불러 조운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자 아뢰다

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 이어 아뢰기를, “... 또 듣건대, 고흥산(高荊山)이 어제 들어왔다 하니, 청컨대 즉시 함께 불러서 조운(漕運)에 대한 일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뢰는 대로 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일(癸酉)

전운사 고흥산이 함경도에 곡식을 옮기는 방법을 건의하다

전운사(轉運使) 고흥산(高荊山)이 아뢰었다. “신이 전운하는 일의 승전(承傳)을 보건대 단지 해운(海運)뿐인데, 해운으로 말하면 올해 안에 미처 배를 만들 수 없고, 또 바다가 험악하니 어떻게 전운하겠습니까. 함경도 일이 이미 급박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도내의 창고에 있는 곡물을 모두 계산하여 보니 58만 석뿐이었는데, 한 해의 종자는 거의 14~15만 석이나 됩니다. 58만 석 곡식을 해마다 민간에 분산하여 주었는데, 흉년이 여러 해 들었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하여 도내의 창고가 거의 비었으니, 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농사가 만일 함경도와 같았더라면 도민을 구제할 겨를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곡식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강원도는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신은 육지로 수송하여 점차 들여보냈으면 합니다. 강원도 창고에 있는 곡식은 신이 단지 그 문서만 보았을 뿐, 실지 수효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양(淮陽) 쌀 1천 9백 석을 안변(安邊) 본부(本府)로 옮기고, 금성(金城) 쌀 1천 3백 석을 안변의 고산역(高山驛) 창고 【창고는 곧 형산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계문(啓聞)하여 세운 것이다.】로 옮기며, 고성(高城) 쌀 6백 석과 통천(通川) 쌀 2백 석, 흙곡(歙谷) 쌀 50석을 안변의 학포현(鶴浦縣)으로 옮긴다면, 점차로 함경도 경계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뢰 단자(單子)에 거리의 원근(遠近)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회양의 곡식을 안변에 옮기려면, 고산역에서 하룻밤 지내면 안변에 도달할 수 있고, 금성 곡식을 고산역 창고에 옮기려면, 은계역(銀溪驛)에서 하룻밤 새우면 고산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고성·통천·흙곡 등 고을의 곡식도 하루나 이틀 밤 새우면 학포(鶴浦)에 도달하니, 두 차례로 나누어 수송하면 편당할 것 같습니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8일(己卯)

내년 원일부터 모든 고을의 옛 현리들은 진봉에 참여하지 말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내년 원일(元日)부터 각도(各道)의 모든 고을에 소속된 옛 현리(縣吏)들은 진봉(進奉)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는데, 고흥산(高荊山)이 전에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있을 때 폐단을 아뢰었으므로 이런 분부가 있었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13일(甲申)

병조가 강원도에 강릉성의 기초와 돌 모으는 일이 끝났음을 아뢰다

병조(兵曹)가 아뢰었다. “강원도는, 함경도의 사정이 급박한 것 때문에 육지로는 군량을 수송하고, 또 바야흐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만약 함경도에 일이 있게 되면, 강원도는 반드시 큰 일(大役)이 생길 것입니다. 금년에 강원도의 농사가 다소 잘 되었으므로 중론(衆論)이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성을 쌓아야 한다고 하나, 듣건대 고흥산(高荊山)이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에 강릉성의 기초를 이미 닦았고, 장대석(牆臺石)과 돌 모으는 등의 일도 이미 거의 다 끝냈다 하니, 종사관을 보내지 마소서.”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16일(丁亥)

전운사 고흥산이 함경도민에게 줄 곡식을 육지로 운반해야 될 이유를 말하다

전운사(轉運使) 고흥산이 아뢰기를, “함경도 백성이 근래에 양맥(兩麥)을 먹으며 겨우 연명하여, 모맥(牟麥)이 다하게 되면 굶어 죽을 것이 틀림없는데, 수로(水路)로 곡식을 운반하려면 내년 4~5월 무렵에야 수송하게 될 것 같아 그 전에 먹을 것이 곤란하겠으니, 신이 반복하여 상량(商量)하건대, 부득이 육로로 운반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상 좌도는 성을 쌓는 일이 있는데, 신의 생각에는 우선 이 역사를 면제하고, 수량을 계산하여 민정(民丁)을 징발하되, 한 사람에게 쌀 한 섬 씩을 맡기면, 군사가 1천 명이면 쌀도 1천 석이 되고, 군사가 1만 명이면 쌀도 그 수와 같을 것이며, 큰 역사를 면하고 곡식을 운반하므로 백성도 원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육로로 운송하면 오는 9월 무렵에는 북쪽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죽게 된 사람들을 구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고형산의 말이 매우 옳으니, 해사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6일(丁酉)

이자건을 전운사로 임명하다

이자건(李自健)을 전운사(轉運使)로 삼았다. 【고형산(高荊山)이 계모의 상사를 당해 서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4일(乙巳)

유순정이 쌀을 운반함에 육로와 수로의 차이를 비교하여 말하다

유순정(柳順汀)이 의논드리기를, “성 쌓는 일은 정지했고, 또 역부(役夫)들은 이미 쌀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당(安塘)이 조운(漕運)을 어렵게 여겨, 우선 그 선척(船隻)의 수효를 감하여 편리 여부를 시험한 뒤에 더 만들려고 하는데, 신 등도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육로(陸路)로 수송하는 고통이 조운하는 것보다도 심합니다. 지금 만드는 조운할 배가 1백 척인데, 배 하나가 쌀 백 석을 실을 만하니, 배 백 척으로 한 차례 운반하는 것이 만 석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수보다 감한다면 그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일에 고흥산이 안당과 같이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험한 때와 운순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와서 말하기를 ‘4월에서 6월까지의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가 고요하여 조운할 수 있으나, 입추(立秋) 뒤에는 바람이 세어 할 수 없다.’고 하였

습니다. 그렇다면 조운할 시기가 겨우 석 달인데, 지금 배의 수를 감하였다가 그 때가 되어 조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뒤에 배를 더 만든다면, 어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함경도는 토지가 좁아 비록 풍년이 들어도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많지 않아 군수(軍需)가 항상 부족한 것이 걱정인데, 더구나 지금은 흉년이 계속되어 전의 저축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만약 제때에 곡식을 옮기지 못한다면 백성들을 살릴 계책이 없을 뿐 아니라, 변방의 수비도 어렵게 됩니다. 이번의 이 조운은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나, 이번 일로 인해 수로(水路)가 통하게 된다면 만세토록 이익이 될 것입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작은 손해는 헤아리지 않는 것이니, 지금 큰일을 거행함에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어코 성공하기를 기할 것이요, 미리 헛 소비만 하고 효과없을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경상 감사 안당이, 복도 조운의 편리 여부를 장계하였기 때문에 이 의논이 있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8월 25일(丙寅)

고형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하도록 하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이 계모(繼母)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횡성(橫城)에서 병을 얻었으니, 바라건대 약물(藥物)을 내리고 또 개소(開素)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8월 8일(癸卯)

정광필이 변수와 관련하여 아뢰다

…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 … 신이 병조에서 일을 볼 때 변수(邊脩)가 일을 감당할 만하여 수사(水使)에 천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형산(高荊山)이 함경도의 어사가 되었을 때 변수는 그 도의 병사였는데, 이극균(李克鈞)과 성준(成俊)이 다 형산에게 말하기를 ‘변수의 범행을 그대가 상세히 탐문하여 오라.’고 하였으니, 변수는 과연 탐오한 위인이라 임용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

○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9월 14일(癸酉)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高荊山)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0월 1일(庚寅)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0월 13일(壬寅)

고형산이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서계하다

이전에 병조(兵曹)에 명하여 문신(文臣)과 무신(武臣) 중에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14명을 뽑게 했는데 각기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다. …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은 서계하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은 병기를 단련하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그 요령은 유사(有司)에 그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나라에는 국도(國都)에서부터 군현(郡縣)에 이르기까지 군창(軍倉)을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대비하게 하는데, 해당 관사(官司)와 감사들도 모두 함부로 꺼내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 군수를 중시(重視)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흉년이 들어 별창(別倉)의 곡식만으로는 흉년(凶年)을 구제하는 데에 모자라니, 군창의 곡식까지 아울러 진대(賑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말아 지키는 관리가 범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데다가 곡식을 수납(收納)하고 방산(放散)할 때 제멋대로 남용(濫用)하여 창고가 텅비게까지 되었습니다. 교대(交代)할 때의 해유(解由)는 문안(文案)만을 갖추어 두므로, 해당 관청에서는 헛되이 그 문서상의 수량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본도(本道)의 도사(都事)에 명하여 교대할 때의 전후(前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번고(反庫)하여 위에 계문(啓聞)하도록 해당관청에서 그 모자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난 뒤에 해유를 주도록 한다면, 간사한 술책이 행할 수가 없게 되고 군국(軍國)의 수용이 허모(虛耗)할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병기(兵器)의 단련되지 않은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되었습니다. 활은 활줄을 당길 수 없고 화살은 모두 깃이 떨어지고 피지(皮紙)로 만든 갑옷은 별레가 파손(破損)하여 쓸 수가 없고 쇠 갑옷은 꿰는 끈이 끊어지고 떨어졌으니, 일이 위급한 경우가 있으면 장차 무엇을 사용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外方) 각 고을의 군기(軍器)는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친히 쓸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낱낱이 점고(點考)하게 하고, 그 수효를 자세히 알고 난 뒤에 그 보수(補修)할 기일(期日)을 정하여 잘 단련하게 하며, 경관(京官)을 뽑아 보내어 남김없이 검사하도록 하되 혹시 보수하는 일에 힘쓰지 않은 자에게는 군령(軍令)으로써 논죄(論罪)하고, 단련하는 일에 힘쓴 사람은 공을 헤아려 상을 주어서 권장한다면, 병기는 잘 단련될 것입니다. 신(臣)이 전에 북방(北方)에 1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진(六鎭)의 각 고을의 공부(貢賦)와 차역(差役)은 내지(內地)의 번다(繁多)한 것과는 다릅니다. 방어(防禦)가 비록 긴급하지만, 각기 본진(本鎭)의 토병(土兵)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작(耕作)하고 한편으로는 수비(守備)하고 있어 양식을 지고서 왕래하는 폐단이 없게 되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군민(軍民)을 소복(蘇復)하는 것이 다른 고을보다는 자못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유망(流亡)이 서로 잇달며 쇠잔하고 피폐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진장(鎭將)이 된 사람들이 오로지 궁마(弓馬)에만 일삼고 민사(民事)는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갈이하고 수호(守護)하는 힘을 덜게 하려고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오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을 다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일로 인하여 거처를 잃은 사람이 자못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이웃 진(鎭)의 장수와 더불어 놀면서 과녁을 쏠 때는 관탕(觀祭)이라고 일컫고는 군수(軍需)가 있고 없는 것은 헤아리지 않고서 이를 진흙이나 모래처럼 마구 써 버립니다. 또 따로 관속(官屬)이 없으므로 군사를 아전(衙前)이라 일컬어 제멋대로 부리고 있으며 보인(保人)도 또한 한정(閑丁)이라 일컬어 각기 신역(身役)을 정하니, 호수(戶首)와 보인(保人)이 동시에 모두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징수(徵收)하는 것이 한도가 없어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수용(需用)과 제가 살기 위한 비용까지도 모두 전결(田結)에 따르는 것이라 하고는 많은 수량을 바치게 하니, 가난하고 쇠잔한 백성이 능히 갖추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형장(刑杖)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는데, 어느 겨를에 병기를 단련하여 전쟁의 방비를 튼튼하게 할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육진이 소복되는 동안에는 문신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고 조행(操行)이 남보다 뛰어나고 인품(人品)과 기국(器局)이 알맞은 사람일 경우, 관직 품계(品階)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말고 발탁하여 장관(長官)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씻어버리고 역역(力役)을 관대히 하게 하면 민력(民力)이 여유가 있게 되고 사람들은 믿는 데가 있어서 적군(敵軍)과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야인(野人)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비록 행위는 짐승과 같지만 그 마음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기(神奇)합니다. 그들이 잠깐 신하로 복종하다가 문득

배반하는 것은 오로지 장수가 그 책임자인가 아닌가에 달렸습니다. 대저 장수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어루만지고 통어(統御)하는 것이 올바르게 된다면, 다만 우리 백성만이 편안히 지내게 될 뿐 아니라 저들도 마음속으로 진실로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이니, 조두(弔斗)의 경보(警報)와 연진(煙塵)의 일어남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임무는 관계된 바가 매우 크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수령을 제수(除授)할 때에는 청렴하고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진력할 사람을 정밀히 가려 뽑아서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의 징수를 절도 있게 하고, 형옥(刑獄)의 송사(訟事)가 지체되지 않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평소부터 축적(蓄積)한 바탕이 있게 되면 어찌 군수(軍需)의 넉넉하지 못함과 병기(兵器)의 단련되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른바 그 요령은 유사(有司)에 그 책임자를 얻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0월 21일(庚戌)

대신들이 의논하여 무신들이 올린 변방 방비책에 관해 서계하다

대신(大臣)들이 의논하여 서계(書啓)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변방을 방비하는 좋은 계책을 살펴보건대, 고흥산(高荊山)의 북도(北道) 육진(六鎭)의 장관(長官)은 문신(文臣)으로 교차시켜야 한다는 … 일은 시행할 만한 듯하오나,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0월 25일(甲寅)

호조 판서 고흥산 등이 각사가 축낸 잡물을 추정하도록 아뢰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참판(參判) 이유청(李惟淸)이 각사(各司)가 축낸 잡물(雜物)을 서계(書啓)하기를, “미면(米麵)·잡곡(雜穀)이 모두 5만 7천 5백여 석(石)이고, 사라(紗羅)·능단(綾段)이 모두 2백 50여 필(匹)이고, 포화(布貨)가 3만 4천 6백 40여 필이고, 철(鐵)이 14만 1천 2백 90여 근이고, 지지(紙地)가 5만 1백 70여 권(卷)이나 됩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일 번고(反庫)할 때에 그 축낸 것을 징수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은 까닭으로, 더욱 두려워하거나 꺼리지를 아니해서 축낸 것이 이와 같으니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관리들에게 모두 추정(追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군사창(軍資倉)·광흥창(廣興倉) 두 창고는 번고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번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전의 관리들에게 추정한다면, 삼공(三公)과 육경도 모두 징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 마땅히 조정에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14일(壬申)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1월 20일(戊寅)

간원에서 대사헌 고형산을 논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고형산(高荊山)은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대사헌은 체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간원이 고형산은 강직한 기풍(氣風)이 없어서 사헌부의 장관(長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문식(文飾)은 적지마는 기국(氣局)이 광위(宏偉)하고 심지(心志)가 견직(堅直)하며,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2월 9일(丁酉)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高荊山)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2월 16일(甲辰)

사정전에서 대신들을 인견하여 홍문관에서 상소한 문제들을 논의하다

상이 부원군(府院君) 송일·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 판서 강혼(姜渾)·우찬성 신용개·좌참찬 장순손(張順孫)·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이점(李沾)·병조 판서 김전·공조 판서 고형산·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자건(李自健)·우참찬(右參贊) 이계맹을 부르라고 명했다.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고 이에 이르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지금의 폐단에 꼭 맞는데, 그 상소에 ‘부서(簿書)를 기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일은 재상도 오히려 이를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사(吏事)357)는 처리하면서 학문은 힘쓰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학문이 진실로 근본이 되지마는, 관리의 직무를 처리하는 것도 또한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존경각의 화재로 마땅히 피전 감선(避殿減膳)하고 문묘(文廟)에 친히 제사지내는 것도 역시

옳은 일이지마는 일의 형세가 이미 늦었으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하매, … 고흥산은 아뢰기를, “지금의 학자는 과연 모두가 그 근본을 힘쓰지 않고 다만 사장(詞章)의 말절(末節)에만 구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소학(小學)에 들어가 고, 15세가 된 후에야 대학(大學)에 들어가게 되니 배우는 데는 차례가 있고 행하는 데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성취하기가 쉬워서 모두가 쓸모 있는 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옛날의 소학·대학의 법에 의거하여 학생을 가르친다면 옛날의 방법에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2월 27일(乙卯)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上)이 친히 정사를 하여, 고흥산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2월 4일(壬辰)

고형산이 함경도 피곡과 둔전, 농군, 정병에 관해 아뢰다

… 호조 판서 고흥산은 아뢰기를, “신이 오랫동안 함경도에 있어서 그 도의 일을 좀 압니다. 그 도에서 군량으로 하는 피곡(皮穀)이 모두 90여 만 섬인데 지금 회계의 수량을 보면 다만 30여 만 섬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군량을 계산하면 1~2개월 사용할 것도 못됩니다. 둔전은 과연 상책이 되겠습니까. 홍원(洪原)·경성에 모두 둔전하는 곳이 있지만 농군(農軍)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병조로 하여금 그 도의 유진(留鎭)하는 정병(正兵)중에서 뽑아 정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멀리 생각만하여서는 정병의 실제 수효를 정확히 알지 못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그 도에 공문을 보내어 그 허실(虛實)을 알아서 처리하게 하소서. 다른 도에서 이전하는 폐해가 매우 크니, 부득이 본도에서 양곡 저장하는 계책을 하여야 할 것인즉, 모름지기 금년 중에 하게 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2월 8일(丙申)

정광필·고형산 등이 북방 방비책을 의계하다

… 정광필·김응기·신용개·고형산·한형운·이장생·김극성·이세웅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북계(北界)의 군사와 말이 잔폐하고, 군량과 군수가 다 떨어진 것이 지극

히 염려되니, 양곡을 바치고 면천·면역하는 일은 임시로 시급에 대처하는 것인 만큼 시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양천(良賤)의 법이 매우 엄하니, 절박한 폐해가 있지 않으면 면천의 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외방에 사는 공사천 중에서 면역하고 싶어하는 자와, 죄를 짓고 분배(分配)된 자 중에서 강상(綱常)에 관계된 자 및 입거인(入居人)을 제외하고는 죄를 면하고 싶어하는 자는 납속(納粟)하는 것을 허가하되, 그 다소에 따라 면역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본도가 극히 잔폐(殘弊)하니 따로 중신을 보내어 중도에 유주(留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조치하면 그 폐해가 도리어 많을 것이니, 관찰사·절도사에게 전임시켜 전보다 더욱 잘 조치해서 사기(事機)를 잃지 말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의주는 지금 무사하지만 근일 명나라의 일을 보면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거하는 일은 정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함경도의 군호(軍戶)가 매우 쇠잔하니, 회령(會寧) 등 진(鎭)에 따라 남방 백성 50여 호를 뽑아 입거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북도의 인민이 야인과 호시(互市)하여 소·말을 파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금단(禁斷)하려 하여 따로 문신을 보내는 것은 역시 폐해가 있습니다. 근래 평사(評事)에 임명하는 자는 으레 관직과 품질이 서로 맞는 사람으로 의망, 제수하므로 소임에 불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관직·품질을 물론하고, 강명 과의(剛明果毅)하고 품질이 높은 문신을 선택하여 보내서 변방 계획에 찬조하고 비위(非違)의 일을 살펴 검찰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본도에 마필이 희소하니 본도 및 경기도 목장과 사복시 등의 탈 만한 말 3백 필을 택해서 제급(題給)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도내에 무재(武才)는 있으나 말이 없는 군사들에게 재주를 시험하여 나누어 주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2권, 중종 10년 2월 14일(壬寅)

호조 판서 고흥산 등이 함경도의 군량 확보책을 아뢰다

호조 판서 고흥산·참판 한형윤(韓亨允)·참의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함경도 각 고을의 국고 미곡이 장차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1년 간의 소용이 수입의 배나 되니 앞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신해년의 북정(北征) 때에 4만 명의 군사가 10일 간 사용한 것이 6만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고(留庫)한 양곡이 이렇게 허망하고 또 인근인 황해·평안·강원도 같은 곳의 저장한 군자 또한 넉넉하지 못하니, 변방에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리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속(粟)을 얻을 수 없으니, 납속하고 은을 캐게 하여 군수를 보충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군수

가 이렇게 부족하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2월 15일(癸卯)

대신들이 낙안군을 강등할 것을 아뢰다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교성군(交城君)노공필(盧公弼)·형조 판서 강흔(姜渾)·우찬성 신용개·좌참찬 장순손·호조 판서 고흥산·지중추부사 유담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낙안군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일은 조정이 모두 경동(驚動)하니 고을을 혁파함이 가합니다. 다만 도성(都城)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리까? 강호(降號)함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전지(傳旨)를 지어 정부에 내리라.”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2월 22일(庚戌)

대신들이 망합의 일을 논의하다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 판서 강흔·병조 판서 신용개·우찬성 장순손(張順孫)·이조 판서 박열(朴說)·우참찬 이계맹·지중추부사 안윤덕·유담년·호조 판서 고흥산·공조 판서 안당·한성부 관윤 이자건·병조 참판 이장생·형조 참판 유미·풍창군(豊昌君)심형(沈亨)·계림군(鷄林君)최한홍(崔漢洪)·청양군(菁陽君)유계종(柳繼宗)·병조 참의 김극성·판결사 윤은보(尹殷輔)·예조 정랑 반석평(潘碩淸) 등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의견으로서는 망합이 오면 금부에 가두고, 이빈(李蘋)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으로 그 죄를 설명하고 추문한 후에 남방 외딴 섬에 거처하게 하고, 황형(黃衡)이 북도에 가서 오랑캐의 실정을 보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일(己未)

고형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장례를 준비시키다

정광필을 삼도감 총호사(三都監總護使)로 삼고, 병조 판서 신용개·예조 판서 김전·우참찬 이계맹을 빈전 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 삼고, 군기시 정 이위(李偉)·상의원 정 윤세호(尹世豪)·사복시 정 성운(成雲)·이조 정랑 소세양(蘇世讓)·예조 정랑 반석

평(潘碩粹) · 호조 좌랑 신승조(申承澡)를 낭청(郎廳)으로, 우찬성 장순손 · 이조 판서 박열 · 호조 판서 고흥산을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삼고, 제용감 정(濟用監正) 유인귀(柳仁貴) · 내자시 정(內資寺正) 김굉 ·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조호(曹浩) · 의정부 사인 성세창(成世昌) · 홍문관 부응고 홍언필(洪彦弼) · 선교감 첨정 이기(李芑) · 공조 정랑 이원화(李元和) · 예조 좌랑 정응린(鄭應麟) 등을 낭청으로, 지중추부사 안윤덕(安潤德) · 유담년(柳聃年) · 남곤을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사재감 정(司宰監正) 구지신(具之愼) · 종부시 정(宗簿寺正) 윤세림(尹世霖) · 선공감 부정 이번(李蕃) · 내섬시 부정 박기수(朴期壽) · 사재감 부정 박담손(朴聃孫) ·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 이은(李鬮) · 병조 정랑 임추(任樞) · 형조 정랑 이만손(李萬孫) · 신한(申翰) · 승문원 교리 연구령(延九齡) 등을 낭청으로 삼았다.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8일(乙丑)

대신들이 망합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정광필 · 김응기 · 신용개 · 장순손 · 김전 · 고흥산 · 안윤덕 · 이자건 · 이계명 · 유담년 · 최한홍 · 유미 · 이장생 · 김극립 · 김극성 · 이세웅 등이 아뢰기를, “망합은 궤정에서 무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 또한 매우 패만(悻慢)하니, 이는 무지한 아인에 비할 일이 아니며 그 마음이 흉악하고 간사합니다. 국가에서 공이 조금 있다 하여 높은 관작을 주고, 내조(來朝)할 때마다 특별히 후사(厚賜)로 대우하기를 다른 오랑개와 달리하였으니, 의당 은혜에 감격하여 성심으로 갚으려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교만 방자하여 어떻게까지 되었습니다. 만약 한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그 무례함을 힐책하고 용서하여 보냈다면 국가의 처리가 잘 되었을 것이고 그자 역시 원한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아 가두었으니, 놓아 보내더라도 그 분한이 반드시 조금도 풀리지 않을 것인즉 어찌 그가 은혜를 생각하여 성심으로 순응할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만일 은혜를 생각하여 성심으로 순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방에서 말쟁을 일으키고 심처(深處)의 종족 · 부락들을 유인하여 각진(各鎭)을 침범할 것이니, 그 화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족류가 망합을 위하여 보복할 것을 염려하지만, 망합이 제 스스로가 원망하여 반(叛)하는 것과 같이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의 대소(大小)가 이러합니다. 북방의 군마가 잔쾌하고 군량의 수요가 궁핍하며 방비가 어렵다 하여 놓아 보내는 것은 형세 또한 불가합니다. 대저 이적을 대우하는 도리는 권도가 있고 기회가 있어, 그때의 형세를 보아서 할 것이요, 한결같이 제왕의 한결

같이 제왕의 포용하는 도량으로만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그 부자를 함께 외딴 섬에 두어 둬야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하고, 남곤·성몽정·김석철·이세인·정광국(鄭光國) 등의 의논도 같았다. …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15일(壬申)

대신들이 장사 기일과 시호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다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 판서 강훈·병조 판서 신용개·우찬성 장순손·예조 판서 김전·이조 판서 박열·호조 판서 고흥산·한성부 판윤 이자건·우참찬 이계맹·예조 참판 성몽정·형조 참판 유미·병조 참판 이상생·공조 참판 김국립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하교하시기를 ‘대행 왕비의 장례 기일이 매우 촉박하니, 정리와 사실이 다르다.’ 하셨습니다. 신 등이 예문에 어긋나는 일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술가(術家)들이 모두 말하기를 ‘윤 4월 초4일 만이 장례를 할 수 있고 다른 길일이 없으며 5~6월에는 전혀 쓸만한 날이 없다.’고 하는데, 만일 7월에 이르게 된다면 벌써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풍수(風水)의 설을 쓰지 않는다면 그만입니다만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있고 국가에서도 관직을 두고 직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쓰지 말자고 아뢰겠습니까? 이번의 장례 기일은 과연 예문에 맞지 않고 정리로도 또한 차마 할 수 없습니다만 길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날로 택하여 아뢰었습니다. 시호를 의논하는 일은, 만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평생의 행장(行狀)으로 의논하여 정합니다. 그러자 지존의 지위에 있어서는 본디 이런 사례에 의하여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 행실을 상고하지 않고 조정에서 들은 공의(公議)를 가지고 바로 정하였는데, 이 또한 뜻이 있어서입니다. 대행 왕비는 내외에 과실이 없고, 성덕(聖德)이 지극히 중하시니, 비록 대내에서 내보낸 행적을 보지 않더라도 조정에서 모두 그 실지의 덕을 알기 때문에 이미 좋은 시호를 더하여 올렸으니, 다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4일(辛酉)

고형산이 산릉에 설치했던 싸리 햇불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뢰다

고형산(高荊山)이 이르기를, “신이 산릉(山陵)에 설치한 싸리 햇불과 가가(假家)를 보니 모두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경기 백성들이 공진(供進)한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집을 지은 나무로서 건축재(建築材)가 될 만한 것은 선공감(繕工監)에서 쓰

게 하고, 그 나머지 잡목은 희릉(禧陵)의 땀나무로 사용하게 하고, 햇불감의 싸리묶음은 사재감(司宰監)에 들여보내어 외공(外貢)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전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백성의 힘으로 만든 물건을 쓰고, 일이 끝난 뒤에는 조정의 경대부(卿大夫)들이 사사로 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이 한 폐습(弊習)을 이루고 있었는데, 고형산이 홀로 그것을 그르게 여겨 미리 처리하는 방법을 주청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근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리를 주밀(周密)하게 하여 나라의 비용을 아끼고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미세한 일이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일이 많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뇌실재상(牢實宰相)이라 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7일(甲子)

대신들이 상복의 예제와 5월 졸곡이 합당함을 아뢰다

정광필·김응기·신용개·고형산·이계맹·안당·성몽정이 의논드리기를, “신 등이 《오례의》를 보니 과연 ‘갓은 흰 것을 쓴다.’는 글이 있으니, 이에 따라 해야 할 것 같으나, 다만 검은 모자와 검은 띠 차림에 백립을 쓰는 것은 사체(事體)에 어긋나는 것 같고, 백립은 또 중원(中原)의 제도가 아니니, 한갓 고사(故事)만을 지킬 것은 아닙니다. 사체가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므로 성종조(成宗朝)에 온 조정이 함께 의논하여 이 제도로 개정할 것이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종조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칠우제(七虞祭)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여 졸곡(卒哭)하는 것이 고례(古禮)이니 반드시 5개월의 기한을 다 채워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희 왕후의 상례를 특히 중하게 하였으나, 졸곡은 60~70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졸곡은 이번 상의 일수(日數)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졸곡을 물려 행한 예제는 없었습니다. 또 이제 고례를 다 따를 수는 없는데 어찌 졸곡만을 반드시 예문에 실려 있는대로 좃을 수 있겠습니까? 예문(禮文)에 이른 ‘졸곡을 물려서 행한다.’ 한 것은 사대부(士大夫)가 친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한집안에서 행하는 예제(禮制)에 그렇다는 것이요, 또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에도 실려 있지 않으니 준행(遵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방(外方)의 수령들은 반드시 기한에 당하여 최복을 벗는 것인데, 지금 만약 졸곡을 물려 행한다면 사체가 전도될 것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예문이 다를지라도 사세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하고, 유순·송일·노공필 등의 의논도 같았다. … 정광필·김응기·신용개·고형산·이계맹·안당(安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급(韓倂)의 범장죄안(犯贓罪案)의 정상이 애매하다는 것은 신 등도 들었습니다. 전일에 본부(本府)의 사람 또한 그의 무죄를 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국문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죄(大罪)로서 이미 스스로 복죄(服罪)하였으니, 만약 고쳐서 분간(分揀)한다면 한급(韓倂)과 같은 무리들이 반드시 어지럽게 상언(上言)할 것이니 이런 단서(端緒)를 열어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일에 본부(本府)의 유생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上京)하니, 한급이 몰래 후하게 대우하고 그의 무죄를 상소 진술하게 하였다. 이에 박원충(朴元忠) 등이 박수량(朴守良)의 이름으로 소두(疏頭)를 삼아 허위 소를 올렸다. 이때에 이르러 그의 모(母)가 상언(上言)하였으므로 수의(收議)한 것이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溉)·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안당(安瑯) 등이 또 의논드리기를, “전일에 망합(莽哈)이 온갖 말을 다 하였으나, 가볍게 그 말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7일(甲子)

정광필이 사치가 지나친 집들을 적발하여 철거할 것을 주청하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산릉(山陵)에 있으면서 들으니, 사헌부가 가옥의 제도를 넘어서 참람하게 지은 집들을 지적하여 아뢰고 법에 의거하여 철거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즉시 윤허하셨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랫사람들이 법제를 불고(不顧)하고 참람되게 제도에 지나친 집을 지은 것은 매우 옳지 않는 일로서 법령상 당연히 할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다만 반정 이후에 새로 지은 가옥에서 혹은 10년, 혹은 7~8년이 되도록 모두 편안히 살았으며, 또 제한을 넘은 것은 1~2칸 혹은 3~4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어야 할 집의 총계는 2백 80여채나 된다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모두 할어버린다면 인심이 소요(騷擾)할 것입니다. 집을 철거한다는 말은 전부터 듣기 싫어하는 것이니, 제도를 크게 지나친 자만을 적발하여 철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신의 집 칸수(間數)도 또한 40칸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법사(法司)가 적발하지 않은 것은 아마 집이 낮고 더러우며 고대(高大)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적발된 집들이 철거된다면, 신의 집도 제도를 지나친 칸수는 자진 철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진실로 신이 아뢰 수 없는 것이지만 벼슬이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으면서 말해야 할 나라 일을 듣고도 피험만 하여 아뢰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감히 아뢰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오늘 의득(議得)한 재상들에게 문의하

라.”하였다. 이때 대신들이 모두 제도를 지나치는 일에 관계되었는데, 오직 고흥산과 안당만이 관계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도를 지나친 가옥을 사헌부가 적발하여 철거를 주청한 것은 그 뜻이 지당합니다. 다만 들으니 마땅히 철거해야 할 것이 2백 80여 호에 이른다고 하는데, 폐조(廢朝)에서 가옥을 철거할 때에 인심이 매우 소요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지극히 심한 자만 적발하여 철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이 의논을 올리는데 어찌 감히 구차하게 남의 입을 두려워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단 말인가? 뒤에 안당(安瑯)이 집을 짓는데 돌기등을 사용하여 매우 굉장하였으니, 청렴하고 검소하기란 참으로 어렵구나!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8일(甲午)

고형산 등이 나라의 비용을 덜게 할 것을 아뢰다

… 전일에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등이 아뢰기를, “지금 나라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비용을 덜게 하소서.”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유순·정광필·김응기·호조 판서 고흥산·참판 한형윤(韓亨允)·참의 이맥(李陌) 등이 생감(省減)할 수 있는 것 17조를 의논하여 조목별로 아뢰었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6일(辛酉)

《경국대전》의 천처첩자녀조를 경정하는 것을 논의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조의 대소원인(大小員人) 밑의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깎아 버린 것이 좋고 나쁨을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김전·이계맹·유담년·한형윤·유미·정광국·서극철이 의논드리기를, “성종조에 《대전(大典)》을 경정(更定)할 때에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넣어서 기록하여 반강(頒降)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또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급양민 세 자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깎아버렸습니다. 그때의 의논이 매우 상세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신용개·박열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빼고 보태어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폐해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말류(末流)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양인(良人)되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천인(賤人)이 양민에게 시집가고 장가 들어서 낳은 자식을 모두 천인으로 삼으니,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군액(軍額)이 모자라라고 줄어드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인이 공사천(公私賤)에 장가들어 낳은 자식이, 대소 관원(大小官員)의 첩의 소생으로 면천(免賤)하는 자와 그 높고 낮은 신분이 무엇이 그다지 동떨어지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구애되어 그들에게 양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급양민 세 자를 옛 조문에 첨가 기록하여 양인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율문(律文)에는 양천(良賤)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법을 주로 하는 것은, 그 노(奴)로 하여금 양녀(良女)에게 장가들게 하여 그 소생을 점유(占有)해서 자기에게 소속(所屬)되게 하려는 것이니, 양인이 줄어드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인 것으로, 다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율문을 밝혀서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였다. 안당(安塘)·고형산(高荊山)·성몽정(成夢井)·심정(沈貞)·이장곤(李長坤)·이장생(李長生)·이세응(李世應)·이맥(李陌)·이빈(李蘋)·유인숙(柳仁淑)·김구(金絳)·윤자임(尹自任)·기준(奇遵) 등의 의논은 신용개 등의 의논과 같고, 권균(權鈞)·장순손(張順孫)·조원기(趙元紀)·홍언필(洪彦弼)·이언호(李彦浩)·임추(任樞)·민수천(閔壽千)·이청(李清)·임권(任權) 등의 의논은 유순 등의 의논과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7일(壬申)

정부·육조·한성부·홍문관을 불러 《후속록》, 저화의 사용 등을 의논하게 하다

정부(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홍문관(弘文館)을 궐정에 모이게 하여, 《후속록(後續錄)》을 쓰지 않을 일과, 저화(楮貨)·전폐(錢幣)를 사용할 일과, 겸춘추(兼春秋)의 인원을 거주서(假注書)로 삼는 일과, 개성부의 관원이 민가에 옮겨 기숙(寄宿)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궁각(弓角)을 몰래 사들이는 일의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속록》·저화에 관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정부와 해조(該曹)가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응·이세인·이맥·서극철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국폐조(國幣條)에 ‘포화(布貨)와 저화(楮貨)를 통용한다.’ 하고, 주에 말하기를 ‘모든 징속(徵贖)에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가매(價買)의 주(註)에는 ‘모든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저화로써 가격의 표준을 삼되,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화는 다만 월세(月稅)로만 수납하여 국고에 간직하고, 속전(贖錢)을 징수할 때나 사고

파는 데에는 모두 행용하지 않고 오로지 면포(綿布)만 사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간교한 무리가 온갖 방법으로 이득(利得)을 엿보아 면포의 직조(織造)가 점점 거칠고 나쁘게 되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쌀과 베는 백성의 의식(衣食)입니다. 모든 화폐는 모름지기 의식의 자료가 되는 것 외에 따로 유통하는 제도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재용(財用)이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역대에 통용하였으나 경중과 대소가 대(代)마다 제도가 각기 달라서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도 또한 일찍이 시용(試用)하다가 도로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저화라면 관인(官印)을 찍어서 발행하니 위조나 쪼개서 쓰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또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이제 거둬 통용하는 것을 밝힐 뿐, 새 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파는 경우에 포화와 반반씩 사용하면 추포(麤布)를 금단(禁斷)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경외(京外)의 속전 징수나 사고 파는 데에는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게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저화로 악포(惡布)의 값을 결정하게 하여, 그 값을 백성에게 주고 베를 사들여 관에 바치기를, 양계 방수군(防戎軍)의 납의(納衣)와 같이 하여 편의한 대로 사용하고, 또 저화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악포를 매수(買收)하게 하고, 백성의 추포 직조(織造)를 금지하여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내는 선상노(選上奴)의 가포(價布)는 비록 형조에서 검찰(檢察)하고 있으나 대개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베의 행용이 더욱 심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금후로는 각 고을에서는 사שמ시(司瞻寺)에 보내게 하고, 사שמ시에서 각 관사(官司)에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하였다. …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인·이택·서극철 등은 아뢰기를, “《후속록(後續錄)》에 실려 있는 조문(條文)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니 남아 있는 조문이 적으며, 그리고 뒤에 받은 수교(受敎)도 또한 많아서 다시 《속전(續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간의 아뢰 바에 따라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수교라 일컬어 행용(行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조원기·김안로·이언호·임추·민수천·유인숙·이청·임권·기준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5일(庚辰)

대신들이 보병의 입번, 수령의 사관 겸직하는 일 등을 의논드리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

계명·유담년·안당·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보병(步兵)을 8번(番)으로 나누어, 2개월은 입번(立番)하고 14개월은 하번(下番)으로 하는데, 그 입번내(立番內)에 사후사령(伺候使令)이나 영선(營繕)에 부역하는 등의 일은 그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합니다. 만약 나누어 10번으로 한다면 입번이 성기어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보병은 오로지 역사에만 종사하고 있어서 군장(軍裝)을 갖추지 않은 자가 오래입니다. 지금 만약 다른 군졸들의 예에 따라 입직하게 한다면 군장을 마련하는 사이에 반드시 매우 곤폐(困弊)할 것이니, 사세가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후사령을, 보병을 제거하고 차비노(差備奴)로써 대신한다면 선상노(選上奴)를 더 선정할 수밖에 없으니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번상(番上)하는 선상노비는 해조가 예에 따라 기일의 3개월 전에 지방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을 사서 세우는 자가 그 대가인 배를 창졸간에 마련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일의 6개월 전에 번의 차례를 정하여 미리 그 시기를 알게 한다면 거의 폐단없이 갖추어 바칠 수 있어서 줄지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관(外官)에게 사관(史官)의 직을 겸대(兼帶)시키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없던 법입니다. 그러나 도내(道內)에 사필(史筆)을 잡고 시비(是非)를 적는 자가 있으면 악(惡)을 하는 자가 공론을 두려워하여 거의 금하여 그칠 것이니, 지금 각도의 도사(都事)·수령 중에서 1~2원을 골라서 사관직을 겸대시킴이 좋겠습니다. 도망한 노비라고 거짓 일건고 다투어 송사하는 자는 60년을 한계로 하여 그 이전의 것은 청리(聽理)하는 것을 허용(許容)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법이 섰으니 마땅히 법으로 끊어서 시행할 것이지만, 만약 법이 정해진 이전까지 아울러 소급하여 그 일을 바로잡는다면 한갓 일이 매우 번거롭고 요란할 뿐 아니라 또한 법을 사용하는 규례(規例)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각도에 어사를 나눠 보내어 백성들의 고막(痼瘼)을 순문(巡問)하고 수령들을 규찰하는 것은 또한 좋은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보고 듣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더구나 감사(監司)를 믿고 맡겨서 관리의 출척(黜陟)과 백성들을 자무(字撫)³⁰⁷하는 임무를 규정하여 놓고 만약 또 다른 어사를 보낸다면 감사를 신임(信任)한다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며, 각 고을에서 지공(支供)하는 폐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바에 따라 시행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5일(庚辰)

대신들이 악포를 금지하고 저화의 통용, 직전의 전세 폐단을 의논하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한형윤(韓亨允)·심정·유미(柳澗)·이장곤(李長坤)·이장생(李長生)·이세인(李世仁)·이맥(李陌)·서극철(徐克哲)이 의논드리기를, “법이 서면 폐가 생기는 것은 고금을 통한 근심임은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민생(民生)이 일용(日用)하는 의식(衣食) 이외에 반드시 화폐(貨幣)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 파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초(國初)에 전폐(錢幣)와 저화(楮貨)의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그 뒤에 전폐를 혁파하고 저화를 사용하였는데, 《대전(大典)》에 기재하여 만세통행(萬世通行)의 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어 행용(行用)되지 않는 것은 폐단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습속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용한다면 다만 옛법을 거듭 밝힐 뿐이요 새로 법 조문을 세우는 예와는 다릅니다. 더구나 사섬시(司贍寺)에는 저화가 소용없이 쌓여 있으니 내다 팔아서 통용한다면, 금지하기 어려운 악포(惡布)를 거두어들이고 무용의 저화를 훔쳐 주기에 족하며, 또 이 악포를 사용하여 납의(納衣)에 충당한다면 또한 무익한 것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경중을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지극히 편익(便益)하겠습니까. 또 국초(國初)에 직전(職田)의 전세(田稅)를 다 경작자(耕作)로 하여금 직(職)에 있는 자의 집에 바치게 하였더니, 농민이 침어(侵漁)를 당하여 괴로움을 받는 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여 창사(倉司)로 하여금 받아들여서 나눠 주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습니다. 지금 선상(選上)의 폐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일에 비록 법을 세워 감찰(監察)로 하여금 감납(監納)하게 하였으나, 선상된 자가 스스로 신역(身役)의 대가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서 일을 간편하게 하고 자 하여 직접 대립(代立)하는 사람에게 교부(交付)하니 감찰이 미처 검거(檢舉)하지 못하고, 법도 또한 따라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사섬시에 수송하여 각사(各司)에 나눠 준다면, 선상가(選上價)가 가벼워져 준비하기도 쉬우며, 침어(侵漁)와 남징(濫徵)하는 폐단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5일(庚辰)

대신들이 노비의 소송에 대한을 정하는 일을 논의하다

… 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무릇 쟁송이란 비록 승소(勝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행을 바라서 힘써 교활하고 간사한 일을 행하니, 간사함과 거짓이 날로 불어나서 관리가

번거롭고 분요(紛擾)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송을 끝내는 기한이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종조(祖宗朝) 정유년 대한(丁酉年大限)의 예를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기한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3일(戊子)

호조 판서 고흥산이 함경도의 공적 불납자 처벌에 관해 아뢰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공적이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은 함경도가 더욱 심합니다. 만약 재촉하여 징수하지 않으면 고의로 포탈하여 견감(鑄減)을 기다릴 것인데 그렇다고 양계(兩界)의 인물을 타도(他道)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주(移住)하는 것은 비록 하루의 노정(路程)이라도 반드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니, 본도의 내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육진(六鎭)에 들여보내는 것도 또한 벌이므로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마련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7일(壬辰)

대신들이 주장합 등을 경계하여 변에 대비할 것을 아뢰다

영의정 유순·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좌찬성 장순손·우찬성 김전·우참찬 남곤·교성군(交城君)노공필·병조 판서 신용개·참판 이장생·참의 이세용·참지 서극철(徐克哲)·호조 판서 고흥산·공조 판서 유담년·한성부 좌윤 김석철(金錫哲)·전라도 절도사 최한홍(崔漢洪)·겸사복장(兼司僕將) 전오륜(全五倫)·형조 참판 유미(柳澗)·공조 참판 이장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황형이 아뢴 사연을 보건대, 주장합(住張哈)이 보복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킬 계획이라 함은 헛말이 아닌 듯하고, 울적합(兀狄哈)이 종성(鍾城) 등처에 이르러 오래 머무르다가 돌아갔다는 것은 그 형적이 또한 몹시 의심스러우니, 방비할 일을 다시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내(道內) 군졸을 장약(壯弱)과 노건(駑健)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합번(合番)하여 나누어 방비하면, 적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지칠 것이니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그 가운데 효건(驍健)한 자를 뽑아서 합번하게 하고, 또 별군관(別軍官) 50인을 뽑아 보내어 앞서 보낸, 교체하여야 할 자와 더불어 눈이 깊기 전에 함께 협력하여 방비하게 하고, 또 남도 정로위(南道定虜衛)로 서울에 상번(上番)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들어가 방비하게 하는 것도 또한 족히 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령진(富寧鎭)은 비록 각 진보(鎭堡)의

중앙이나, 주장(主將)이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오래 머물러 변을 기다리면, 한갓 오랑캐들의 정세를 경요(驚擾)시킬 뿐만 아니라 본진(本鎭)에도 폐단이 있을 것이니, 주장에게 하유(下諭)하여 형세를 살펴서 적당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북방을 침구한다고 성언(聲言)하고 남방의 허를 찌를 수도 있어 오랑캐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남도의 방비도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서 파견한 별군관 30인 가운데 교체시켜야 할 자 11인도 교체시키지 말고 지금 파견한 자와 협력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壬子)

대사간 이행이 사옹원에서 어전을 청한 것을 논핵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이행(李荇)이 아뢰기를, “지금 사옹원(司饗院) 계목(啓目)을 보건대, 고흥산이 어전(漁箭)세우기를 청하였다 하니 매우 잘못입니다. 지금 비록 어전을 워더라도 큰물을 만나면 무너져 터질 것이 틀림없으니, 무너지는 대로 다시 워으면 민폐가 어찌 적겠습니까? 조그마한 국름(國廩)만 생각하고 백성의 폐는 계교하지 않는 것이니, 매우 대신(大臣)의 계책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워었다더라도 곧 바로 철거하면, 백성이 거의 상께서 하신 바가 아닌 줄 알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옹원 공사(公事)를 보건대, 천신(薦新)할 일이 있어서 금년에 시험하고자 그리한 것이다. 지금 이미 워었는데 또 철거하게 하면 폐단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27일 壬子 3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호조 판서 고흥산이 대간의 논핵으로 사직을 청하다

호조 판서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되어, 은구어(銀口魚)357)는 진상(進上)뿐만 아니라 천신에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알고, 고기를 잡을 때 시험삼아 어전을 워고자 도제조(都提調)와 상의하여 아뢰었는데, 대간이 죄를 신에게 돌리니 신은 행공(行公)하기 미안하여 피험(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피험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2일(丙寅)

대신들이 박상 등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교성군(交城君)노공필(盧公弼)·병조 판서 신용개(申用溉)·공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조 판서 안당(安塘)·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한성부 좌윤 김석철(金錫哲)·이조 참판 심정(沈貞)·형조 참판 유미(柳澗)·병조 참판 이장생(李長生)·호조 참의 이맥(李陌)·병조 참의 이세응(李世應)·공조 참의 서극철(徐克哲)·형조 참의 박호겸(朴好謙)이 아뢰기를, “지금 박상 등의 상소를 보건대, 지극히 광패(狂悖)하여 마땅히 죄를 더해야 합니다만, 이미 구언하고 이제 또 죄를 더하면 언로에 방해가 있습니다. 제왕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말이 비록 망령되어 쓸 만하지 않더라도 죄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품은 바를 다 아뢰는 것이니, 비록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여 버려두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24일(戊寅)

대신들이 박상 등을 풀어줄 것을 아뢰다

… 영사 정광필(鄭光弼)·특진관 고흥산(高荊山)과 성몽정(成夢井)·지사 신용개(申用溉)·설경 임권(任權)이 박상 등을 죄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힘껏 개진하였으나, 상이 좃지 않았다. …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4일(丁卯)

특진관 고흥산이 적전을 경작하는 데에 따른 폐해를 아뢰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동서 적전(東西籍田)의 경작인(耕作人)은 다 근처에 사는 자가 아니어서, 두세 참 길의 먼 데로부터 오므로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반드시 남의 힘을 빌어서 경작하는 까닭에 백성이 지탱하지 못하고 다 달아나려 한다고 합니다. 적전에서 수확하는 것을 다 자성(稔盛)에 쓴다면 그 폐해물을 헤아려서는 안 되나, 자성에 쓰는 것은 1천여 석(石)에 지나지 않고 잡용(雜用)이 매우 많으니, 자성에 드는 수를 헤아려서 근처 사람을 시켜 경작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병작(并作)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도 백성의 폐해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전의 폐해는 뒤에 의논하겠다.”하였다. …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21일(甲戌)

대신들이 남북도에 인구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다

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溉)·김전(金詮)·고형산(高荊山)·이장근(李長坤)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정광필이 아뢰는 뜻을 보면, 남도(南道)·북도(北道)의 흠어져 옮겨가는 자는 다 가멸한 집이 아니므로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여 흠어져서 옮겨가니 이제 회령(會寧)으로 옮겨 보내더라도 안정해서 살 수 없을 것이며, 또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당초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 등은 남도·북도의 흠어져 옮겨가는 자는 각각 본관(本官)으로 쇄환(刷還)하고, 하삼도(下三道)에서 입거하는 사람을 회령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6일(戊子)

고형산이 말장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말장의 일은 대간이 아뢰 바가 사체(事體)에 지극히 합당합니다. 신이 전에 봉상 부정(奉常副正)으로 있을 때에 정광필(鄭光弼)도 봉사(奉事)로 있어서 그 정결하지 않은 폐단을 알므로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말장은 예전대로 관원을 시켜 감독하여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9일(辛卯)

저화 사용 문제, 자재를 중국에 보내는 문제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우의정(右議政) 김응기(金應箕)·좌참찬(左參贊) 이계맹(李繼孟)·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형산(高荊山)·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열(朴說) 등이 저화(楮貨)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간원(諫院)이 아뢰는 뜻은 ‘저화를 시치(時直)에 따라서 쓰면 《대전(大典)》의 법이 훼손된다는 것이나, 신 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면포(常綿布)의 시치가 4두(斗)이면 정면포(正綿布)의 값은 그것의 갑절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에는 정포(正布) 1필(匹)은 저화 80장(張)에 준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대전》의 뜻을 훼손한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잘 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수교에 본디 법사로 하여금 규검(糾檢)하도록 한 것이니, 이제 당초에 수교한 뜻을 따라 법사에게 승전

(承傳)을 받들어 규범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추포(麤布)는 내년 3월 이후에 금단(禁斷)해야 할 것이니, 3월 이전에는 추포 2필(匹)을 정포(正布) 1필에 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듣건대, 한성부(漢城府)에서는 지금부터 심하게 금단한다 하는데, 이 또한 당초 수교한 뜻에 어긋나니, 수교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9일(辛卯)

홍문관과 사옹원 간의 불화에 대해 아뢰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전에 진배(進排)하였던 백기(白器)를 홍문관에 내리매, 그것이 다 깨진 물건이므로 사옹원(司饗院) 사람이 반드시 바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홍문관이 원리(院吏)를 잡아서 매를 때렸더니, 그 원(院)의 제조(提調)가 낭관(郎官)을 보내어 홍문관을 죄줄 것을 청하였다고 하니, 지금 놀랍습니다. 대저 홍문관은 다른 관사(官司)와는 달라서, 내려 주는 물건을 원의 관원이 또한 친히 감독해서 관(館)에 들여놓아야 할 터인데, 승정원(承政院)의 감결(甘結)을 보니 해당 관사가 받아가라고 하여 홍문관까지도 보통 예(例)로 말하였으니, 정원(政院)이 또한 잘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사옹원의 관원이 친히 살펴보지 않으므로 하인이 나쁜 그릇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거니와, 전에 진배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죄다 깨진 것이겠습니까? 홍문관이 그 서리(胥吏)를 때려린 것은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특별한 예(禮)로 대우하고 조정(朝廷)도 다 존중하여 대우하는 것은 그들이 경연관(經筵官)이기 때문인데, 사옹원이 어찌 죄를 청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근래 듣지 못한 바입니다. 제조 고흥산(高荊山)을 내리시면 헌부(憲府)가 추핵(推覈)하겠습니다. 도제조 운수군(雲水君)은 1품인 종친(宗親)이므로 추핵을 계청(啓請)합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처음에는 전에 진배하였던 사기(沙器)인 줄 몰라서 중간에서 술수를 써서 바꾼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서리를 때려린 것이고, 사옹원 제조는 위에서 내린 물건을 받는데 원리(院吏)를 치죄(治罪)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아뢴 것이니, 모두 다른 뜻이 없는 일이다. 다른 뜻이 없는 일로 어찌 1품인 종친을 추고 할 수 있겠는가? 권순이 수토선을 왜선으로 생각하고 진고한 것이니 이는 추고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전라도의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동요하게 한 일에 있어서는 추고해야 한다. 권승의 계본을 늦게 가져온 사람은 병조로 하여금 추고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왜변(倭變)에 관한 계본이 잇달아 왔고, 병조는 그것을 상세히 살핀 뒤에야 회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늦어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9일(辛丑)

공서린(孔瑞麟)이 어진이를 현명하게 등용해야 한다고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이장생은 주의(注擬)할 때에 사정(私情)을 썼으니 죄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흥훈의 일은 잔단 듯하기는 하나, 반드시 현능(賢能)하고 공로가 있고 나서야 승천(陞遷)할 만합니다. 임금은 한 나라 신민(臣民)을 다스리는 어른이면서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임자로서 늘 선(善)을 쓰고 악(惡)을 물리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이 생각이 늦추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안당(安瑯)이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쓰기를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이 하여 어진 자는 높여서 쓰고 어질지 못한 자는 제거하고자 힘쓰며, 전례만을 따르지 않고 어진 자인 줄 알기만 하면 자격에 구애없이 썼으므로, 처음에는 각별하게 건의한 일 【박상·김정(金淨)·송흠(宋欽) 등을 대간으로 주의(注擬)하였다.】이 있었으니, 이는 마음쓰는 것이 공정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당(瑯)에게 붙지 않는 자는 다들 그를 그르게 여기고 대신도 더러 그르게 여기고 상계서도 마땅치 않게 여기시니, 이 때문에 안당도 스스로 제 성심을 다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천리마(千里馬)를 사서 산 천리마를 오게 한다.’ 하였거니와, 사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아서, 그 중에서 쓸 만한 자를 쓰면 이미 쓴자보다 어진 자는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올 것입니다. 근래 변방의 직임을 맡긴 자는 거의 모두 무반(武班) 사람인데, 그들의 하는 것이 하나같이 사납고 백성을 침학(侵虐)할 뿐이므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피국(彼國) 【야인(野人)의 땅이다.】으로 들어간 변방 백성들이 피지(彼地)를 불국(佛國)이라 하니, 대개 거기서는 부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문신(文臣)을 판관(判官)으로 차임(差任)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나, 남을 보좌(補佐)하는 벼슬이므로 제 뜻을 스스로 행할 수 없고, 혹 상득(相得)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일을 서로 도와 나가지 못합니다. 고흥산(高荊山)이 폐단을 아뢴 것은 신의 뜻과 같은데, 대개 제 뜻을 단행(斷行)해낼 자를 차임해 보내고자 하는 것이니, 신이 일찍이 그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혹 자금(資級)이 모자라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더라도 차임해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저 사람을 쓸 때에, 보통 사람이면 자격에 따라서 차차로 올려써야 하겠으나, 어질어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자격에만 따라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저 이는 다 백성과 국가를 위한 생각이고, 벼슬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사로이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상계서는 부당하다 하시니, 신은 아마도 상계서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지극히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개탄하는 바가 있습니

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은 어진이를 쓰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마음을 가져야 워낙 마땅하나, 인물은 알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름이 아직 드러나지 않으면 전조의 주의(注擬)에 따라 쓰는데, 어찌 어진 사람을 죄다 쓸 수 있겠는가? 북도(北道)는 문신·무신을 섞어 차임하여야 마땅하다. 어찌 판관(判官)뿐이라! 부사(府使)도 문신을 차임해 보내야 마땅하다. 다만 전에 주의할 때에 ‘이기(李芑)는 직차(職次)가 상당하나 그 밝은 혹은 감당할 만하더라도 자금이 모자란다.’ 하였으므로, 내가 ‘감당할 만한 자로 어느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를 말하였을 뿐이고 다른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하였다. …

○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25일(丁未)

이조에 병조 판서에 고흥산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전교하다

이조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용개(申用溉)가 병으로 사직하였으니, 변방의 일을 아는 자로 갈음하여야 할 것인데, 고흥산(高荊山)이 북방의 일을 갖추 안다. 호조(戶曹)가 중하기는 하나 그 직임에 이미 오래 있었으니, 형산을 주의(注擬)하는 것이 마땅하다.”하매, 이조가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주의하되 아뢰기를, “방금 경비(經費)의 일이 매우 중한데, 변방의 군수(軍需)가 지극히 적습니다. 고흥산이 호조를 맡아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그 직임에 힘을 다하니, 빨리 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신의 뜻일 뿐 아니라 조정의 의논입니다. 호조의 일이 병조보다 중하니, 갈지 마소서.”하였으나, 상이 고흥산에게 낙점(落點)하고 전교하기를, “고형산이 직사(職事)에 부지런함을 내가 모르지는 않으나, 형산이 당하관(堂下官)이던 때부터 여러 번 북방의 일을 맡아서 병사(兵事)에 갖추 익숙하므로 제수하는 것이다.”하였다.

○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25일(丁未)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6일(丁巳)

활쏘기 경연에 참가할 인원을 아뢰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내일 내가 춘당대(春塘臺)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하겠으니 활쏘기에 참

여하는 인원을 속히 써서 아뢰도록 하라.”【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일찍이 경연에서 이 일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는 것이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8일(己未)

고형산에게 문관들이 학문에 힘쓸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사관(射官) 장흠(張屹) 등 10인이 시를 지어 올리니, 병조 판서 고흥산에게 전교하기를, “무예는 마땅히 관사(觀射)·시사(試射)로써 권면하고 장려하는 방법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불가불 학문은 해야 하는데 무관들이 각기 아랫사람 가르치느라라고 학문에 힘쓰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힘쓰도록 권면해야 한다.”하였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1일(壬申)

김양진의 상소에 고흥산도 지당하다고 아뢰다

… 김양진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에 갔을 때 들으니 ‘왜변이 있는 후로 도내(道內)의 군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번(番)을 갈아 부방(赴防)하였던 바 지금은 3번으로 나누어 교대하는데, 만약 왕래하기에 멀지 않은 곳이라면 크게 고달프지 않지만 상도(上道) 사람인 경우에는 도로가 매우 멀어서 양식을 싸고 제구를 갖추어 왕복(往復)하게 되므로, 인마(人馬)가 함께 지쳐 지탱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도리(道里)의 원근과 방어가 긴하고 긴하지 않은 곳을 분간하여 방어가 그다지 긴하지 않은 곳이면 참작하여 조절(調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고흥산은 아뢰기를, “김양진은 아뢴 바가 지당합니다. 군사들이 정장(呈狀)하여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모두 이 일인데, 상변(上番)한 후에 또 다시 부방할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군관(別軍官)의 가설(加設)은 경오년에 왜변이 있는 뒤로 시작된 것입니다. 신이 호조를 맡았을 때에 군량을 온갖 방법으로 조치(措置)하였어도 먹는 사람이 많아서 늘 부족함을 걱정하였으므로, 별군관 방어가 긴한 곳인지 아닌지를 관찰하여, 긴하지 않은 곳은 양감(量減)할 것을 근일 아뢰려 하였으나 아직 못하였습니다. 가설 군관이 미편(未便)하다는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가를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들으니, 남방의 가설군관(加設軍官)에 관한 일은 사람마다 모두 미편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구(倭寇)가 침식(寢息)되었다고 하지만 방어에 대한 일을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된다. 백성의 폐단을 헤아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방어하는 일도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4일(乙亥)

대신들이 공신전의 수세, 종친의 실직수여, 체아직 등의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유순·정광필·김응기·권균·신용개·김전·고형산·이계맹·남곤·김석철·유미·이자견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드리기를, “큰 죄를 범하고도 도망쳐 피한 자는 매우 가증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그 처자를 가두면 이는 처자로 하여금 독납(督納)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정리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또 조종조에서도 하지 않았던 바이니 특별히 새법을 세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폐습을 바꾸려고 그 가부를 묻는 것이요 나의 뜻도 반드시 가두려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 또 병조가 체아직(遞兒職)을 감하는 일로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에 ‘대졸(隊卒)·팽배(彭排)는 사만(仕滿) 8천 80일이면 거관(去官)하고 종6품의 실직을 준다.’ 했고, 인사자(仍仕者)에게 실직을 준다는 법이 없는데, 병조가 인사자의 호소에 따라 거관하는 자에게는 직을 주고 남은 체아를 인사자에게 준 것은 해조(該曹)가 한때의 전교를 받고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거관인(去官人)에게만 주고 그 남은 체아는 인사자에 주지 말고 또 다른 데에도 전용(轉用)하지 말아서, 국가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과거(科擧)에서 글을 강받을 때에 장막으로서 막는 일은 과연 지극히 공평한 것 같으나 그 시행이 어렵고, 또 유생을 장막 밖에 앉게 하면 혹 술책을 쓸 염려가 없지 않으며, 그 금지를 반드시 대간에게 맡겨야 하겠으나 대간도 정수(定數)가 있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형세가 곤란합니다. 무신(武臣)을 널리 뽑는 일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가려 재능에 따라 임용하려는 것이고 본디 병조의 소임이며, 미리 뽑아 두었다가 그때 그때 쓰는 것도 모두 병조의 일이니,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己丑)

고형산이 활 쏘는 폐단을 아뢰다

… 특진관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근일 도시(都試)에서 취재(取才)한 무사를 보니, 궁력(弓力)이 있는 자가 거의 없고 또 모물(毛物)로 팔 등을 찔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육량(六兩) 【화살 이름이다.】 을 쏘므로 해서 팔뚝을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육량의 원근(遠近)을 계산하여 무사를 뽑으므로 무사들이 자기의 궁력을 억지로 강하게 하여 멀리 가게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원력(元力)이 부족한 자라도 모두 굳센 활을 억지로 당겨 그 힘을 더하게 되므로 마침내 팔뚝을 상하여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순경(李

舜卿)·성순동(成順叀)·황형(黃衡)·최한홍(崔漢洪) 등은 젊었을 때에는 궁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들이 다 대각(大角)이라고 일컬었으나, 강한 것만을 너무 숭상하고 멀리 쏘기만을 힘썼으므로 팔의 힘이 많이 상하여 지금은 도리어 약한 활도 능히 당기지 못하며 순경은 이로 인하여 죽었으니 궁력을 숭상하지 못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지방(李之芳)·유담년(柳聃年) 같은 사람은 원기가 왕성하고 팔 힘이 비록 강하고, 궁력을 숭상하지 않았으므로 팔뚝이 상하지 않아 만년(晩年)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잘 쏩니다. 이로 보건대 만약 육량의 법으로 무사를 시험하면 한갓 팔뚝만 상하게 할 뿐이니, 이 법은 혁파하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그러나 구법(舊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육량(六兩)의 원래 보수(步數) 80보 외에 20보나 30보 가량을 몰려서 쏘게 하여 한도를 넘은 것이 매우 멀더라도 그 점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면 《대전》의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강한 활을 당겨 팔뚝을 상하게 하는 폐단을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라.”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무사가 강한 활을 당김으로 인하여 팔뚝을 상하는 것은 과연 고흥산의 아뢰고 같습니다. 육량의 원표(元標) 외에 20보를 더하여 표준을 삼고, 표준을 넘어간 화살의 보수(步數)를 점수에 넣지 않음으로써 그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하니, 상이 좃았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2일(癸亥)

한급의 어머니가 아들의 원통함을 상서하니 그 처리에 대해 논의하다

한급(韓汲)의 어머니가 상서(上書)하여 아들 급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강릉(江陵) 유생이 상소하여 급이 죄없음을 호소했었으나, 【한급은 전에 강릉 부사로 있다가, 탐장(貪贓)의 죄로 녹안(錄案)하고 금고된 사람이다.】 그때 의논하는 대신들이 모두 지금 만약 다시 변경한다면 뒤에 반드시 이를 본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하므로 드디어 다시 고치지 않은 것인데, 과연 애매하다면 비록 이미 녹안(錄案)했다더라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의 상언에 ‘고형산(高荊山)·황맹헌(黃孟獻)·이세응(李世應)이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불러 들은 말을 물려보라.’고 했었다.”하니, 고흥산 등이 아뢰기를, “강릉에 갔다가 우연히 동년(同年) 친구와 만나 이야기할 즈음에 ‘전 부사 한급이 관청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는데, 탐장(貪贓)이란 누명을 쓰게 되어 정리(情理)에 애매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하자, 전교하기를, “이는 한때의 소문만이 아니라, 곧 전에 왔다갔다하면서 모두들 애매하다고 말

하는 사람이 있음을 들었다. 임금으로서 이미 그 애매함을 알았으므로 신원(伸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일 대신들에게 수의하라.”하였다. …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7일(戊辰)

함북 절도사 황형이 주장합 등이 역모를 꾀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상언하다

함경북도 절도사 황형(黃衡)이 치계(馳啓)하기를, “망합(莽哈)의 친아우인 주장합(住張哈) 등이, 망합이 절도(絶島)에 유배되어 돌아오지 못한 일 때문에 성저(城底)에서 가산과 잡물(雜物)을 모두 깊은 곳으로 옮겨 놓고, 진장(鎭將)이 두세 차례나 불러들여도 교묘하게 말을 하여 오지 않는데, 속임수를 헤아리기 어렵기에, 제반 방어하는 일을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하였다. 정부 및 부원군(府院君)·병조 당상을 명소(命召)하여 의논하도록 하니,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유순·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교성군(交城君)노공필(盧公弼)·좌찬성 신용개·우찬성 김전(金詮)·병조 판서 고흥산·우참찬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황형이 아뢰는 말을 보건대, 주장합이 순종하지 않는 실정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部)의 야인들이 주장합의 말을 잘 순종하여 들으며 힘을 합쳐 작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랑개의 실정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방비하는 일을 경홀히 할 수 없으나, 다만 이제 한창 농사철이어서 합번(合番)하여 방수(防戍)를 서게 되면, 농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적이 오지도 않아서 우리의 힘이 먼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니니, 황형으로 오랑개 실정을 밀탐(密探)하여 사세를 헤아려 요량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하였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7일(戊辰)

대신들이 대마 도주의 서계에 회답할 내용을 논의하다

예조 판서 및 대신을 명초(命招)하여, 서계에 대해 회답할 말을 의논하게 하니,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권균·신용개·고형산·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대마도주의 서계에 가연조기가 도착질하게 될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것을, 예조로 하여금 답서하기를 ‘변장(邊將)이 보고에 의해 족하(足下)가 특사를 보내 보고해왔음을 알았는데, 족하가 우리 국가의 후한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이래야 한다. 이미 사유를 갖추어 전계(轉啓)했다. 다만 여러 곳 왜인으로 우리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귀도(貴島)를 경유하게 되는데, 비록 가연조기가 도착질을 업삼아 한다지만, 어찌 귀도를 지나쳐 우리 국경을 침범해 올 수 있겠는가? 족하가 금단하기 여하에 달린 일이다. 만일 혹

시라도 사세가 금단할 수 없다면 도장(島將)에게 서신을 보내 함께 공격하여 섬멸시키
이 또한 족하의 성의에 달렸으니, 나는 능히 도적을 금단할 수 없다 하거나, 나는 능히
간계를 막을 수 없다 하여, 족하의 충간(忠懇)한 성의에 흠이 되도록 하지 말라.’ 하였으
면 합니다.”하니, 의논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4월 17일(戊辰)

대신들에게 무인들을 추천하도록 명하니 고흥산이 답하다

대신들에게 쓸 만한 무인(武人)을 추천하도록 하니, 대신들이 육조의 판서들도 또한
추천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병조 판서 고흥산이 초계(抄啓)하기를, “쓸만한 사람으론,
지금 통정(通政)으로 있는 사람이 7~8인이고, 2품 이상으로 있는 사람이 4~5인입니
다.”하고, 또한 관직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나이 젊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의
유를 대(隊)로 나누어 관사(觀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0일(庚寅)

헌부가 고흥산 등이 올린 추안에 대해 아뢰니 전교하다

… 헌부가 이어서 고흥산(高荊山)·환맹헌(黃孟獻)·윤세림(尹世霖)·유관(柳灌)·김
공망(金公望) 등의 추안(推案)에 판부(判付)한 사연 때문에 아뢰기를, “한급(韓汲)의 일
은, 당초에 사건(事干)을 이미 살피고서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허문하지 말아야 하는
데, 그 상언(上言)에 아무아무에게 물으면 알 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형산 등에게 물으
시니 과연 상언의 뜻과 맞았으나, 형산 등이 당초에 한급의 지난 일을 알아보지 않고
다만 이야기하는 사이에 들은 것인데, 어찌 그것이 사정(私情)을 끼고 감싸는 말인 줄
몰랐으리까마는, 나라의 법을 헤아리지 않고서 ‘들은 바가 그러하다.’고 말하여 상의 뜻
에 맞추어 아뢰었으니, 지극히 주무(綱繆)합니다. 이 때문에 추고하여 아뢰었는데, 판부
의 말씀에 ‘들은 바를 곧게 아뢰었는데도 추론(推論)하면 신하의 곧지 않은 길을 연다.’
하셨으나, 이제 과연 그렇게 하면 도리어 간사하게 아첨하는 길을 열게 되니, 버려두지
말고 끝까지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산 등이, 위에서 아직 들
은 바가 없는데도 먼저 스스로 급의 애매한 정상을 아뢰어 다시 분간(分揀)하기를 청하
였다면 추고할 만하나, 위에서 이미 물었으면 신하로서는 들은 대로 아뢰어야 하며, 그
말이 ‘어쩌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들었으나 사실은 모른다.’ 하였는데, 이제 헌부가 추고
하자는 뜻을 알 수 없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인가? 숨겨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그것이 곧 곧지 않은 길을 여는 것인데, 이제 이른바 간사하게 아침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는 것은 내가 모르겠다.”하매, 다시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제 죄를 모면 하려는 자가 다들 이 예를 따라 진소(陳訴)할 터인데, 죄다 궤정(闕庭)에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1일(辛卯)

조강에서 고흥산의 일과, 기우제 지내는 문제와 장리와 기신재 등의 일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곧 전의 일을 아뢰었다. 장령(掌令)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한급은 본디 강릉에 사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유생이 제 애매함을 말하여 상언한 것을 알고서 고흥산 등에게 하문하시기를 청하였겠습니까? 이는 주무(綱繆)인 듯하며, 이 사람들이 부실한 소문을 가지고 죄다 상언의 사연과 같다고 아뢰었으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긴 것이며 죄인과 서로 어울려서 위를 속인 듯하니, 이것이 곧 간사하게 아침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므로 추고해서 제 잘못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고, 영사 김응기도 다시 분간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6일(丙申)

사변 때에 함경도와 변방의 군량을 보급하는 문제와 악포를 저화와 바꾸어 주는 문제를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방유령(方有寧)·지평 김인손(金麟孫)이 기신재·장리의 일을 아뢰고, 영사 신용개도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외(京外)의 결단하기 어려운 옥수(獄囚)는, 하유(下諭)하여 외방은 이미 치계하게 하였거니와, 경옥(京獄)의 죄수도 초계(抄啓)하게 하여 대신과 의논해야 하겠다. 입거(入居)할 사람을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변방을 채우는 일은 폐지할 수 없기는 하나 억지로 입거시키면 억울함도 많을 것이니, 미처 들어가지 않은 자는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장차 농사를 보고 추성(秋成)을 기다려서 보낼 것이나, 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권민수(權敏手)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사변이 있으면 군량이 아주 없는데도 국가에서는 일찍이 염려하지 않았습시다. 이제 고흥산이 그 도의 일을 잘 아니 하문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량을 수로(水路)로 날라가는 일을 굳게 지켜 마지않아서, 많은 수량을 안변(安邊)·영흥(永興) 등 고을로 옮겨

들여보내면 또한 구황(救荒)할 수 있거니와, 경상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은 워낙 많지 않으나, 전라도의 연변 각 고을은 국곡(國穀)을 많이 저축하였으니, 옮겨서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실농(失農)하여 있으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날라 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널리 물어서 처치해야 합니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고흥산이 아뢰기를, “이미 함경도로 옮겨 들어간 경상도의 곡식은 2만 5천여 석입니다. 별부방 군사(別赴防軍士)가 들어가면 자신 및 노(奴) 1구(口)가 국곡을 먹어야 하고, 그 도의 유방 군사(留防軍士)가 먹는 미두(米豆)가 무려 7천여 석인데, 본도에서 바치는 것은 5천 석뿐입니다. 달리 시행할 만한 방법이 없으므로, 남방의 곡식을 옮겨 들여가고자 하였더니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에 신이 수로를 거치고자 시험하니, 과연 2만 5천여 석을 옮겨 들여갈 수 있었습니다. 경중의 금군(禁軍)은 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을 합계하여 6백 명뿐인데, 만호(萬戶)·첨사(僉使)·권관(權管) 및 별부방(別赴防)이 되는 자가 많이 있으므로, 남방이나 북방에 사변이 있으면 경군(京軍)을 내어보낼 수 없으니, 장수가 혼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로위(定虜衛)에 소속되고자 하여 무역진성(無役陳省)을 올린 자가 5백여 인인데, 이들은 다 정병이므로, 만약에 죄다 정로위에 소속시켜 번상(番上)하지 말게 하여 다만 양식을 가지고 본도에 부방하도록 한다면, 별부방의 폐단을 덜고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따라서 줄고 금군도 충실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세 가지 이익이 됩니다. 이번에 정로위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다 군적(軍籍)에서 빠져서 혹 업유(業儒)라 칭하고 혹 향교(鄕校)에 소속되어 있으나, 한량(閑良)으로 있더라도 부방을 면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정로위에 소속되어 관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들을 버려두면 반드시 본관(本官)의 역(役)을 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한가히 놀 것이며, 정로위에 소속시키면 더 회피하지 않고, 사변이 있으면 소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과연 채용해야 하겠다.”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전라도·경상도 등은, 경오년 왜변(倭變) 때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매양 부방시킬 수 없으니 전례대로 근신하여 방비하게 하고, 그 번상(番上)할 만한 자를 번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그 도(道) 사람을 정로위에 채우면 별군관(別軍官)은 없어도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도 피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취재(取才)한 자 3백 인을 다 구전(口傳)하소서.”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외방의 군사 중에는 절호(絶戶)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정로위로 삼는다면, 어느 사람들로 절호를 채우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계(兩界)의 병사(兵使)·군관(軍官)·별군관(別軍官) 등은, 무재(武才)가 뛰어난 자

를 자주 들여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주 보낼 수 없으나, 변방의 직무가 매우 괴로워서 한 사람을 자주 보내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고르게 들여보내야 한다.”하매, 특진관 김석철(金錫哲)도 형산이 아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악포(惡布)를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도 민간에서 오히려 쓰므로 금지하지 못하는데, 가난한 백성으로서 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그 베를 돌려주기는 하나, 죄를 다스려서 징속(徵贖)하는 것이 매우 중하므로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오승 면포(五升綿布)가 유행되기까지는 다만 악포를 속공(屬公)하고 징속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민수가 아뢰기를, “처음 의논할 때에 《대명률(大明律)》을 쓰지 않고서 장 일백(杖一百)으로 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태오십(笞五十)으로 정하였으니,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법대로 짜지 않은 것을 입관(入官)하는 것은 곧 《대명률》이니, 그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은 25척(尺)에 준(準)하여 쓰고 매우 추악한 것은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다스리지 않고서 악포를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거니와, 속공하면 절로 없어질 것이다.”하매, 참찬관(參贊官)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백성에게 있는 악포를 일체 사شم시(司贖寺)에 바치게 하여 저화(楮貨)로 바꾸어 주고, 그 베를 혹 수졸(戍卒)의 납의(納衣)에 쓰면, 악포는 절로 없어지고 저화도 통용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악포를 자원해서 바치는 자에게는 저화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를 입법(立法)하면 되겠으나, 죄를 범하였으므로 속공하면서 바꾸어 주는 것은 온편치 않고, 악포를 돌려주면 악포가 없어지지 않으니, 다만 속공하게 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로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악포와 정포(正布)를 백성이 다 가졌는데 악포를 쓰는 자를 죄로 다스린다면 옳겠으나, 가난한 백성이 다만 악포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데 매양 수속(收贖)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매, 용개도 민수가 아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체 속공하면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그 중에서 매우 심한 것만 속공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선상(選上)이 흔히 악포를 가지고 올라오므로 7월 이후로는 이미 정면포(正綿布)를 쓰도록 하였으니, 이 베가 온 뒤에는 정포·악포를 분간하여 상교(上敎)대로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기한을 물리면 또다시 그러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으니 모름지기 획일(劃一)한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한을 물리는 일은 내 생각에도 온편치 못하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상교는, 입거(入居)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적지 않다 하여서이겠으나,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갔을 때에 입거하는 사람 3백 7호(戶)를 한꺼번에 들여보냈는데, 그때 윤은보(尹殷

輔)가 안접 종사관(安接從事官)이었습니다. 이는 가을철이라 미리 집을 짓고 솔과 농우(農牛)를 관급(官給)하여도 혹 안접(安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주(義州)로 입거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농사에 틈이 나는 때에 들여보내서 집을 짓는 따위 일을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입거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니, 새로 뽑혀서 입거하는 사람은 아직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하였다. 김인손(金麟孫)이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 【곧 추쇄 입거 경차관(推刷入居敬差官)이다.】 이 팔도로 내려가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써야 하므로, 형장을 받을 자 2~3백 인이 늘 관문(官門)에 모여서 물러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폐농하는 자가 많은데, 더구나 추쇄는 해를 다하도록 마치지 못할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묻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7일(丁酉)

대신을 인견하고 입거를 파하는 것, 변방의 방비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유순(柳璠)·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한성 판윤 윤순·이조 판서 안당·호조 판서 이계맹·병조 판서 고흥산·우참찬 남곤·형조 판서 이상곤 등을 인견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입거(入居)는 반드시 백성의 원망이 있게 되고, 요즈음 날씨를 보건대 백성이 실농할 것이므로 올해에는 들여보낼 수 없을 터이니, 권도(權道)로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쇄의 일은, 처음 의논할 때에 어느 재상이 ‘사람이 장하(杖下)에 많이 죽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허황하게 불려서 말을 만든 것일 것입니다. 팔도의 추쇄가 이제 이미 끝나 가는데, 이제 만약에 정파(停罷)하면 뒤에 다시 해야할 것이니, 그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경중(京中)에는 이제 형장(刑杖)을 받는 자가 없거니와, 외방의 경차관한테는 남형(濫刑)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계맹·응기·안당이 다들 정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추쇄 때문에 형장을 쓰는데, 이 때문에 재변을 부른 듯하니 신은 우선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정사(政事)는 고식(姑息)으로 해서 안 됩니다. 추쇄의 일은 지금 정파하더라도 뒤에 아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끝나게 되었으니 정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비록 백성의 원망때문에 정파한다고는 하나, 뒷날 추쇄할 때에는 어찌 특히 백성의 원망이 없겠습니까?”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분명히 은정(隱丁)한 자는 부득이 형추(刑推)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반드시 형장을 쓰겠습니까?”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추쇄에 쓰

는 형장은 도둑을 형추하는 예(例)와는 같지 않아서 그 용형(用刑)이 매우 가볍다 하니, 반드시 백성의 원망이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형장을 지나치게 쓰는 것은 금해야 하나, 추쇄는 파하지 않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의 분명한 은루(隱漏)는 형장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장하에 많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헛되게 과장한 말입니다.”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백성의 억울함이 어찌 추쇄에 있겠습니까? 파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형산도 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입거의 일은 넉넉히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변을 부를 만하니, 이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을 한정해서 입거하지 않는다면 파할 만하겠으나, 부득이 몇 해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면, 이제 비록 권파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더라도, 다른 해에 가서 들여보낼 때에 그 원망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니, 고식하는 정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참으로 남곤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성(城)도 아직 다 쌓지 못하였으니, 입거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식하는 일은 과연 부당하나 이제 재변이 있는데 입거와 추쇄가 다 큰일이니, 백성의 원망이 있을 듯하므로 정파하고자 하거니와, 폐단이 있다면야 어찌 뒷날에 다시 그 폐단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지금의 폐단을 덜지 않으랴!”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입거는 추쇄의 예와는 다릅니다. 입거를 면하려고 목을 매어 죽는 자가 워낙 많으니 그 억울함을 알 만하거니와, 입거는 우선 정파하여 풍년이 들거든 들여보내야 합니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가뭇이 이토록 심하니, 소방(疏放)해야 합니다. 폐조에서 죄를 지은 자는 다 무지한 상인(常人)이니 유식한 사대부의 예와는 다르며, 이제 이미 10여 년을 지냈으니, 그 죄의 경중을 가려서 혹 양이(量移)하여 천은(天恩)을 보이면 그 사람의 기쁨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그때 폐단을 만든 자 중에서 사죄(死罪)인 자는 죽었으니, 도류(徒流)된 자는 다 사죄가 아닙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니, 은전(恩典)을 보여야 합니다. 상인이 때를 타서 폐단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악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차마 죽일 수 없으므로 도류로 논하였으나, 이번에 소결하는 것이 지당합니다.”하였다. 응기가 아뢰기를, “죄를 범하고 입거하는 것은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이니 가벼이 놓아줄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은 놓아 줄 만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워낙 옳지 않으나, 폐조 때에 폐단을 만든 자는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서 죄주었으니, 이는 용서할 만하다.”하매, 유순이 아뢰기를, “그때 폐단을 만든 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서 죄를 정하였을 뿐, 죄를 분간하여 정한 것이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조에서 죄를 지은 사람 중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

을 것이나, 그 경중을 가리기도 어려우니 모두 소방해야 마땅하다.”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의주에서 떠난 백성을 쇄환(刷還)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백성이 떠나는 것은 다 수령이 잘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길을 잃은 것이니, 어찌 떠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쇄환하면 그 사람의 원망이 입자와 다를 것이 없으며 괴롭혀 마지않으면 중국 및 피지(彼地)로 도망해 들어갈 것이니, 만약에 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목 절목(字牧節目)을 만들어야 합니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떠난 백성을 쇄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 신이 이장곤과 그것을 의논하였습니다. 피처(彼處)의 백성이 비록 많이 받아들여 살게 하였어도 다 숨기므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더라도 쉽게 추쇄할 수 없으며, 수령이 이미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는 국가에서 자기의 죄를 다스릴 것을 두려워하여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니, 이제 만약에 수령들에게 하유하기를 ‘백성 중에 떠난 자가 있더라도 죄주지 않고 또 수령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여, 그 떠난 백성의 수를 잘 알아서 쇄환한 뒤에 돌볼 방도를 마련하면, 그 사람들도 생업에 안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므로 쇄환하여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그 달아난 자도 멀리 가지 않고 다 가까운 고을에 있거니와, 알고서 받아들여 살게 한 수령은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육진(六鎭)의 인물은 도망하기 쉬운데 궁시(弓矢)만 믿고 어느 곳에 투숙(投宿)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그 백성에 도망하는 자가 많으며, 이것을 예사로 여기므로 군액이 날로 줄어갑니다. 신이 그 도의 감사(監司)로 있을 때에 통기(統紀)의 법을 만들어 마을마다 통기 한 사람을 두고 통기 안에서 도망한 자가 있게 되면 통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달아나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이 법이 과연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밝혀서 거행하면 괜찮을 듯합니다.”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강변(江邊)사람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흔히 내지(內地)로 도망해 들어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내지에서 도망한 백성이 강변으로 나가는 것은 금할 것이 없으나, 강변 백성이 내지로 도망해 들어오면 그 수령을 죄주고 내지에서는 내지의 수령을 죄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이식(李軾)이 아뢴 일을 정부(政府)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식이 변방의 일을 아뢰었는데, 이날 의논하였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이식이 ‘피인(彼人)들이 강변에 막(幕)을 지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 헐어 버리면 이 때문에 원한을 맺을까 염려되나, 변란을 일으킬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이 군사의 보인(保人)을 빼앗아 관속으로 차지하므로, 가난한 군사가 지탱해 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러한 수령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평안(平安) 한 도의 방어는 무릇 아홉 군데이며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긴요한데, 군사의 보인

을 빼앗아 관속으로 차지하거니와, 이는 예전에 없던 폐단이니, 진실로 매우 금해야 합니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함경도에서는 장정을 세어서 어염(魚鹽)을 거두되 그 고기(魚)를 정어(丁魚)라 하고 그 소금(鹽)을 정염(丁鹽)이라 하는데, 이 폐단이 더욱 심하니, 또한 매우 금해야 합니다. 의주(義州)의 강 건너편에 중국 사람이 많이 와서 막을 꾸몄고, 함경도혜산(惠山)의 건너편에도 막을 지은 곳이 많이 있는데, 헐어 버릴 수는 없으나, 삼가 엄하게 방비해야 하겠습니까.”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무릇 공사(公事)는 유사(有司)에 붙여야 하며, 낱낱이 친히 결단하셔서 안 됩니다.”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양계에서 모물(毛物)을 진상하는 데에 폐단이 있습니다. 산정간(山丁干)이라는 자는 혹 말 한 필도 품질 좋은 초피(貂皮) 한 장과 바꾸므로, 지탱해 내지 못하여 도망가는 자가 많습니다. 산정간도 군사의 봉족(奉足)인데, 봉족이 도망가면 그 바꾸야 할 가죽을 다 호수(戶首)에게서 거두므로, 그 호수들이 도리어 봉족이 있는 것을 꺼립니다. 신은 진상하는 모물을 몇 해에 한하여 견감(鑄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응기가 아뢰기를, “신이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였을 때에 보니, 저축된 모물이 매우 많았으니 한 두해에 한하여 견감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의원(上의원)의 초피는 저축이 많다고는 하나, 좀먹은 것이 또한 많다. 유사(有司)에 말하여, 감할 만하면 감하겠다.”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상의원(上의원)에 바치는 양모(羊毛)도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좀먹으면 쓸 수 없으며, 변방 고을의 양을 기르지 않는 곳에서 다 양모를 거두어들이니, 이것도 덜어야 합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양 먹이 및 국마(國馬)의 먹이가 다 경비(經費)에 들므로 또한 매우 폐단이 있으니, 이것도 감해야 합니다.”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사양염(飼羊鹽) 및 죽미(粥米)를 다 회계(會計)에서 감하나, 백성이 어찌 양을 먹이겠습니까? 다 스스로 먹어 없앵니다.”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양계(兩界)는 아주 멀어서 조정의 언론이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백성 중에 강포(強暴)한 자가 있으면 수령이 형장(刑杖)을 써서 제거하기에만 힘써서 잔포(殘暴)가 풍속을 이루니, 백성이 떠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각별히 금령(禁令)을 신명(申明)하여 국가에서 불쌍히 여겨 돌보는 뜻을 보이소서.”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신은 평안도의 경계에 다녀온 적이 없으므로 의주(義州) 등의 진(鎭)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듣건대 우리 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데, 검동도(黔同島)는 압록강가에 있어 우리 나라 지경에 바짝 가까와서, 시초(柴草) 따위 물건을 이 섬에서 많이 힘입는데, 요즘은 중국 사람이 소다방평(小多方坪)에 와서 살면서 밭을 일군 곳이 많다고 하니, 우리 나라로서의 계획은 우리 백성을 시켜 먼저 일구어 저들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 나라의 땅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주는 나라의 문호(門戶)이므로 관방(關防)을 조

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새로 쌓는 성은 일을 시작한 것이 이미 오래나 일을 하다말다 하여, 지난해의 일꾼이 1만 2천여 명인데도 쌓은 것은 2천 14척(尺)뿐이고 아직 쌓지 않은 것이 1천여 척이니, 언제나 다 쌓을지 모릅니다. 이제 쌓아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하나, 흉년이 들면 어찌 일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풍년이 들거든 쌓아야 합니다.”하였다. 응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검동도는 강 건너에 있으니, 일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주의 변방 백성은 파사도(婆娑島)·소다방평에 와서 사는 자와 아주 가까우므로, 우리 백성이 일이 고되면 도망해 들어갈 것이 염려되니,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각별히 더 돌보게 해야 합니다.”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강계(疆界)로 말하면 압록 이남이 우리 나라 지경인데, 검동도는 압록강 가운데에 있으므로, 요동(遼東)에서 와서 파사보(婆娑堡)를 지키며 적강(狄江) 북쪽 땅을 일구는 자가 이 섬을 아울러 일구고자 하면 우리 나라 사람은 다투어 차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경(赴京)하는 사행(使行)에는 사리를 아는 재상(宰相) 및 일을 아는 통사(通事)를 가려서, 요동에 가거든 대인(大人)에게는 직접 묻기 어렵더라도 진무배(鎭撫輩)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적강 북쪽에서 밭을 일구는 일은 대인이 아는 것인가? 이 땅은 예전에 적인(賊人)이 왕래하며 작란하던 길인데, 이제 이 섬에서 경작하면 흠어져 사는 농민이 노략당할까 두려우니, 후환(後患)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여, 이것으로 요동 사람의 의향을 알아서 처치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바로 유순과 같습니다. 다만, 중국 사람이 가까운 곳에 바짝 붙어 살면 우리 나라 백성 중에 도망해 들어갈 자가 없지 않고, 또한 혹 서로 사결(殺決) 것이니, 단속하는 일을 백배 더해야 합니다.”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중국이 평안하지 못하여 시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장차 군사가 일어날 형세라 합니다. 이제 또 강상(江上)에서 나발을 부는 중국 군사가 있으나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고, 그 중에서 화살을 쏘아 강을 넘기는 것은 강의 너비를 헤아리는 것인 듯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 이제 소다방평 근처에 집을 지은 자는 부역을 도피하여 흠어져 온 자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사변이 있으면 혹 때도득이 되어 우리 지경으로 마구 들어올 터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부경(赴京)할 때에 탕참(湯站) 사람을 보고 중국 사람이 강변에 흠어져 사는 까닭을 물으니 ‘전에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엄밀하여 적로(賊路)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주 없었으나, 이제는 조정이 실정(失政)하여 변장(邊將)이 금하지 않으므로, 금주위(金州衛)의 군사(軍士)의 여정(餘丁)이 수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는데, 땅이 기름지고 해마다 풍작(豐作)이 되어 와서 사는 자가 점점 많으나, 만약에 관에서

금하면 곧 내지로 철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이 강변에 흠어져 사는 것은 우리 지경에 침입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사는 곳이 바로 적로에 당하여 있으므로, 한 번 적변(賊變)을 만나면 절로 머물러 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과연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예전부터 중국이 요란하면 우리 나라의 서쪽 변방도 반드시 해(害)를 받아왔으므로 성 쌓는 일이 경한 것은 아니나, 농사가 부실하니 해조(該曹)와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여야 하겠다.”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당번(當番)한 정병(正兵) 및 배를 타는 군사는 본디 집에 있을 수 없는 자이니, 겨울·여름을 물론하고 명년까지 쌓으면 끝낼 수 있는 형세입니다.”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서방의 수령은 더욱 가려서 보내어 나라의 문호를 굳혀야 합니다.” 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8일(戊戌)

병조 판서 고흥산이 와서 죽궁을 바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이 와서 죽궁(竹弓)을 바치고 아뢰기를, “이 활의 세기가 목궁(木弓)보다 갑절이 되어, 살을 쏘면 80여 보(步)를 지날 수 있으니, 우선 써 보아서 쓸 만하면, 모든 군사가 지니는 활 및 군기시(軍器寺)의 활은 이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이 변방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 각궁(角弓) 같으면 흠비(雨)때에 쉽게 파손되나, 대(竹)는 흠비를 당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이 이미 시험하였으므로 와서 바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활을 보니 과연 좋다. 이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이것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 보게 하여, 쓸 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무고(武庫)에 저장하고, 또한 군사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9일(己亥)

폐조 때의 죄인을 소방하는 일을 논의하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죄인을 소방하는 일을 상 앞에 자리하여 의논하라고 시키셨으나 상 앞에서는 뜻을 펴지 못할 듯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부표(付標)하여 계하(啓下)하시면 밖에서 의논하더라도 미진(未盡)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여느 때에의 작은 일일지라도 친히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는 큰일이니 가타부타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그 의논을 친히 들은 들 뭐 안 될 것이 있으랴.”하였다. 상이 부원군(府院君) 유순(柳詢)·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김응기(金應箕)·우

의정 신용개(申用溉)·진천군(晉川君)강혼(姜渾)·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윤순(尹珣)·좌찬성(左贊成) 박열(朴說)·예조 판서(禮曹判書) 권균(權鈞)·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장근(李長坤)·우참찬(右參贊) 남곤(南袞)·연성군(燕城君)김준손(金俊孫) 등을 인견(引見)하여 죄인의 명목(名目)을 재상(宰相)들에게 펴 보이매, 유순이 아뢰기를, “폐조에서 폐단을 지은 사람들의 죄는 당초에 마련하지 않고서 정죄(定罪)하고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혹 모호한 데가 있을 듯 하므로, 신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초록(抄錄)된 것을 보니 쉽사리 놓아 줄 수 없을 듯합니다.”하였다. 【무릇 도(徒)·유(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된 자를 합계하면 5~6백여 인인데, 그 중에서 소방에 낄 수 있는 자는 1백 50여 인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 추론(推論)하지 않고서 정죄하였으므로 나는 경중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정원(政院)이 안 된다고 하므로 의논해서 처치하고자 한 것이다.”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노(奴)로서 그 주인을 능욕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때 노로서 주인을 능욕하고 천인(賤人)으로서 귀인(貴人)을 능욕한 자는 이제까지 목숨을 늘여 온 것만도 족한데 이제 만약에 용서한다면 재변을 만나서 하늘에 응답하는 뜻에 어그러집니다.”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전비(田非)·녹수(綠水) 【다 폐주(廢主)가 총애하던 계집이다.】의 겨레붙이가 아니라면 다 용서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전파(傳播)된 일을 친히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어찌 들을 수도 없으랴? 그러나 이제 와서 살피기는 매우 어려우니, 용서한다면 죄다 용서해야 옳을 듯하다.”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그때 함경도에서 보니,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전비·녹수의 노(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하고, 모두 함께 아뢰기를, “그때에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이러한 유(類)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나라를 어지럽힌 자를 형벌하는 데에는 중전(重典)을 쓰는 것이니, 성인의 형벌은 때에 따라 중하고 경한 것인데, 그때의 극죄(極罪)가 어찌 무죄(無罪)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매우 형정(刑政)에 합당하지 않으니, 더러 애매한 자가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재변을 만났으니, 그 중에서 현저하지 않은 자는 용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하였다. 모두 함께 아뢰기를, “김공저(金公著)로 말하면, 대신(大臣)을 모해(謀害)한 죄로 처자(妻子)가 다 좌죄(坐罪)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종사(宗社)를 모위(謨危)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그때 추관(推官)들이 청한 죄를 다들 지나치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저는 처음에는 중대한 죄에 관계되었다가 마

침내는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논하였으니, 다만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정죄하였으며, 처자도 연좌(緣坐)시킨 것은 과연 애매하다.”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그때의 추관들의 뜻도 각각 달랐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현저한 것이 아니면 이제 용서해야 한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김종필(金宗弼)은 박수균(朴壽均)의 노(奴)를 때리다가 죽었으므로 죽이려고 죽인 것보다는 덜하니, 죄가 중한 듯하기는 하나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필의 죄는 용서해야 하겠으나, 제 집을 비우고 도망해 숨어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우 옳지 않고 그 뜻이 곧지 않으니, 용서할 수 없을 듯하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체(事體)를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어찌 뜻이 있었겠습니까?”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처음에 도망해 숨은 것은 과연 그러나, 마침내 스스로 나타났으니 용서할 만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사(朝士)가 긴하지 않은 죄 때문에 도망하기까지 한 것은 매우 그러나, 원죄(元罪)는 과연 긴한 것이 아니다.”하였다. …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에 감할 만한 것을 서계(書啓)하여 감하였습시다. 지금 백성이 공채를 내는 것이 오래되던 상은(上恩)을 바랄 것이므로 매양 감할 수는 없으나, 그 정상은 가없으니 거두어들이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고, 해마다 조금씩 장만하여 바치게 해야 합니다.”하였다. …

○ 증중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0일(庚子)

참찬관 이자화가 각사의 조례·나장·선상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고 아뢰다

주장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요즈음 대신의 아뢰에 따라 각사(各司)의 조례(皂隸)·나장(羅將)·선상(選上)을 재량하여 줄이고자 하나, 신은 가벼이 재량하여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장은 아울러서 3번(番)으로 나누어 번갈아 입역(立役)하므로, 만약에 그 수를 줄이면 현존하는 입역자가 적어지나, 관원들은 이미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대로 부릴 것입니다. 선상으로서 각차비(各差備)·근수(跟隨)를 삼는 것을 《대전(大典)》에서 상고하니, 과연 분정(分定)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도, “조례·나장은 감할 수 없으나 선상은 감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조례·나장은 죽어서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역(身役)을 견디지 못하여 타관(他官)으로 도피하는 것이니, 신은 그 꺾번(闕番)한 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꺾한 것을 채우도록 독촉할 것 없이, 서서히 충립(充立)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해서 처치하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7일(丁未)

조강에서 기신재·장리·연은전 혁파·무인을 거용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이원간(李元幹)·헌납(獻納) 조한필(曹漢弼)이 전의 일을 논하고, 기사관(記事官) 이홍간(李弘幹)도 기신재(忌辰齋)·장리(長利) 등의 일을 말하고 또 아뢰기를, “국가의 사전(祀典)에 한 가지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신이 전에 현릉(顯陵)의 대축(大祝)으로서 그 축문(祝文)을 보니, 문종(文宗)께 효손(孝孫)이라 칭하지 않고 다만 사왕(嗣王)이라 칭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운(天胤)이 아닌 바가 아니고 똑같은 조종(祖宗)이니, 사왕이 마땅히 손(孫)이라 칭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계통(系統)을 이었으므로 이미 예종(睿宗)께서는 손이라 칭하면서 문종께만은 손이라 칭하지 않았으니, 신은 예문(禮文)을 모르나, 다만 평일에 늘 미안하다고 생각하여 왔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당초 연은전(延恩殿)을 설치한 것은 의묘(懿廟)께서 종묘(宗廟)에 아직 부제(祔祭)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한 것인데, 이제는 의묘께서 이미 종묘에 부제되었는데도 오히려 연은전을 설치하여 두니, 신은 그럴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대저, 이미 종묘에 부제하였으니, 또 마땅히 문소전(文昭殿)에 동부(同祔)하여야 인정(人情)과 예문에 합당하고 양전(兩殿)에 공상(供上)하는 폐단도 덜게 됩니다. 이 일도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하였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이는 정론(正論)이니 아뢴 것이 옳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한 일은 알 수 없으나, 다만 문종께서는 예종께서 계통을 이으신 것과는 다른데, 이 뜻은 상께서 아실 터이고, 이제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연은전의 일은 과연 이미 종묘에 부제하였는데 종묘가 중하고 문소전은 경하므로 마땅히 문소전에 부제해야 하나, 덕종(德宗)께서는 계통을 이으신 임금이 아니니 의묘에 부제하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종묘에 부제하는 까닭은, 성종께서 지성(至誠)으로 태묘(太廟)에 부제하려 하셔서, 그때의 대신들이 순종해서 한 것이며, 중국 사람들도 ‘다만 그 정(情)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할 것이니, 이 일을 상세히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제 또한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조종조의 일을 죄다 고치기는 어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신재의 일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면, 세종(世宗)께서 차마 갑자기 바꿀 수 없다 하셨으니, 이제 가변이 고칠 수 없다. 예문(禮文)의 일은 그때의 조정이 어찌 우연하게 생각해서 정하였겠는가?”하매, 특진관(特進官)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 당초에 기신재를 설치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신이 전에 기신재의 대축(大祝)이 되어서 보건대, 제사 전에 먼저 중(僧)에게 밥을 먹이는

데 상당(上堂)이니 중당(中堂)이니 하당(下堂)이니 하는 명칭이 있고, 중에게 먹이는 일이 끝난 뒤에야 어실(御室)에 제사하므로, 제사는 정시(定時)가 없어 이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니 이것은 실로 좌도(左道)의 가장 심한 것입니다. 또 장리(長利)라는 이름은 국가에서 없애야 할 것이니, 한갓 조종조의 일이라 하여 고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한필이 아뢰기를, “예문으로 말하면, 종묘가 정례(正禮)에 맞고 문소전·연은전은 정례가 아니므로, 사론(士論)이 그것을 불가하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만약에 기신재가 조종께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신하로서 어찌 감히 아뢰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에서 바꾸지 않은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인데, 이제 어찌 갑자기 고칠 수 있겠는가?”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기신재 따위 일은 종묘의 예(禮)와는 같지 않으므로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는 다만 인심과 풍속이 전조(前朝)의 폐습을 바꾸지 못하여 이제껏 구습을 좇는 것이니, 종묘의 예를 고치는 것과는 아주 같지 않습니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훈련원(訓練院)의 참외관(參外官)은 유록(有祿)·무록(無祿)을 합해서 8원(員)이나, 권지 봉사(權知奉事)는 한정할 수가 없어서 현재 종사(從仕)하는 자가 38인이나 되는데, 처음 출신(出身)하고서부터 한 번도 녹(祿)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5년 남짓이 되어야 거관(去官)되며, 그런 뒤에야 비로소 녹을 받으므로, 무인(武人)의 종사가 역시 어려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각사(各司)의 공장이에게도 능식(廩食)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따로 녹관(祿官)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많이 군직(軍職)의 높은 품등(品等)을 받으니, 이 높은 품등의 녹을 낮추어 갈라서 녹료(祿料)를 만들어서 훈련 권지(訓練權知)에게 주어서, 한 해에 한 번이라도 녹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신이 보건대, 무인은 나이 스물 네댓에 출신하여 거관하기에 이르면 마흔에 가까운데도 오히려 녹을 얻지 못하니, 가엾은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녹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는 것은 과연 가엾으나, 이는 새로 설치한 일이 아니라 그 유래가 오래며, 서반(西班)의 재상(宰相)으로 말하면 죄다 중추부(中樞府)의 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혹 군직에 붙이기도 하여 그 녹의 품등을 낮추게 되니, 온편치 못한 듯하다.”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유사(儒士)는 훈도(訓導)·교수(教授)가 되더라도 종신토록 자급(資級)을 가질 수 있으나, 무사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전함(前銜)에 있던 자가 95인이고 권지가 된 자가 38인데, 그 말단에 있는 자는 스스로 이르기를 ‘열 서너 해 뒤에야 거관될 수 있는데 능록(廩祿)과 근수(跟隨)가 없이 서울에 머무르기가 매우 괴롭다.’ 하니, 정상이 가엾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무인을 거용(擧用)하라는 뜻을 병조에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변방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인을 쓸 것인데, 평시에는 이렇게 대우하니 과연 가엾다. 그러나 이는 설립(設立)한 법이 본디 이러

한 것이 아니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이조(吏曹)가 늘 서반 사람을 쓰지 않으므로, 신은 유감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대저 《대전》의 법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중한 일이니, 근일 이를테면 훈련원이 참외관을 도목(都目)때에 1원을 더 거관하는 것을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형산이 아뢰 바와 같이 10년이 되어도 조용(調用)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매우 침체되기는 하나 조종의 법을 이제 죄다 고쳐서는 안 되고, 다만 권지가 되어서 침체되어 있는 자를 병조가 때때로 아뢰면, 시사(試射)하도록 명하시어 수시로 거관시켜서 장려(獎勵)하되 구법(舊法)은 고칠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의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으나, 그 정상으로 보면 역시 녹을 줄 만하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요즘 보건대, 번상(番上)하는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기정병(騎正兵)이 4부(部)로 나뉘어 입번(入番)하면 마땅히 9일을 쉴 터이나, 1부는 5백 인뿐인데 각처의 차비(差備)가 될 자는 1천 7백 37인이므로 4부를 합하여 입번하거니와, 번상하는 갑사는 7~8백 인뿐입니다. 이는 전라·경상 두 도에 별부방(別赴防) 및 유방(留防)하는 군사가 많이 있는데도 시위(侍衛)하는 군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부방도 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지금 내 금위(內禁衛)는 실차(實差)가 1백 90인, 예차(預差)가 2백 인, 가예차(假預差)가 1백 인이나, 1번(番)에 50~60인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별부방의 군사 및 권관(權管)·만호(萬戶)입니다. 이 때문에 금군(禁軍)이 매우 적어서, 만약에 변방의 사변이 있으면 장수가 금군을 거느리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먼저 시위를 갖추어서 사변이 있으면 뽑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전함 무신(前衛武臣)을 섞어 써서 첨사(僉使)나 만호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사(京師)는 근본이다. 남방에 있는 군사는 남방에서만 무예(武藝)를 쓸 수 있고 북방에 있는 군사도 이와 같으나, 만약에 경사에 많이 있으면 남방과 북방에 아울러 쓸 수 있다.”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30일(庚戌)

정부·예조 등에 전교하고, 학교의 진흥과 변방의 방비·둔전의 설치·야인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상이 선정전(宣政殿)의 추녀 밑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예조 판서 권균·좌찬성 김전·우찬성 박열·병조 판서 고흥산·좌참찬 이자건·공조 판서 유담년·우참찬 남곤·형조 판서 이장곤·좌윤(左尹) 김석철(金錫哲)·병조 참판 유미(柳澗)·이조 참판 송천희(宋千禧)·해양군(海陽君)윤희평(尹熙平)·가

원군(嘉原君)이장생(李長生)을 인견하였다. … 광필이 아뢰기를, “돈후(敦厚)한 사람은 등용하고 경박한 자는 내쳐야 하는데 성실하여 꾸밈이 없는 자가 등용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무신을 쓰지 않는 뜻은 신이 전에 아뢰었거니와 이는 다름 아니라 무신을 쓸 자리가 많지 않아서 겨우 도총부(都摠府)·훈련원(訓鍊院)·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무인은 병조가 다만 그 내력에 따라서 쓸 뿐이고, 그 돈후와 경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하고, 천희가 아뢰기를, “경박한 사람 중에도 혹 직사(職事)에 능한 사람이 있고, 돈후한 사람 중에도 혹 행사(行事)에 어두운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워낙 어렵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가 무신을 많이 쓰지 않으니 이는 옳지 않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북도 병사(北道兵使)의 계본에는 ‘주장합(住張哈)이, 거질이(巨叱耳)가 장성(長城)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허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으나, 신은 거질이 과연 장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합은 거질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러는 것이니, 거질이 장성에 들어오더라도 잡아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잡아서 준다면, 성저인(城底人)이 다 우리 나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장합이 우리 나라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우리 나라는 그것을 억제하여야 하며, 지금 억제하더라도 어찌 문득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망합(莽哈)의 노(奴)가 와서 고할 때에 변장(邊將)이 그를 시켜서 주장합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합의 죄가 매우 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남내(南乃)·거질을 거론하느냐? 너희가 장차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답해야지 답하는 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보건대, 야인은 서로 침노하는 일이 있으면 방비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이제 거질이 도피하여 장성에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 숨으면, 주장합은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들어오도록 허가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장합이 거질을 쫓아서 장성에 들어오면 용서없이 막아야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주장합이 이제까지 제 형 망합의 아내를 얻어 살지 않는 까닭은 망합이 살아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며, 그 뜻은 실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듯합니다. 이제 계본을 보건대 답한 말이 없었으니, 답할 말을 지어서 변장에게 일러야 합니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변장이 ‘어찌하여 장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어야 될 터인데, 이제 답한 말이 없습니다.”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주장합이 매양 함부로 거스르는 말을 하고서 피지(彼地)로 옮겨 들어갔는데 이것은 망합이 살아 돌아올까 염려하여 겉으로 보복할 생각이 있는 듯이 한 것이고, 또 허세로 우리 나라를 겁나게 하는 것이니, 장성에 들어온 거질을 잡아서 주면 바로

그 술수 가운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한 뜻을 따져 물어야 하는데, 진장(鎭將)을 시켜 깊이 책문(責問)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또 감히 우리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장군이 아뢰기를, “만약에 거질을 쫓아서 우리 장성에 들어오면 문죄(問罪)해야 할 것이고,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호인(胡人)이 공격당하면 처자를 거느리고 장성에 와서 의탁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 거질이는 우리 나라에 복속(服屬)한 자이니, 만약에 잡아서 주장합에게 준다면 육진(六鎭)의 호인이 다 이반(離反)할 것입니다.”하고, 곧 아뢰기를, “신은 황형(黃衡)이 【형은 그때 북도 병사(北道兵使)였다.】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해(利害)가 판연한 것이니 잡아서 주지 말아야 마땅하고 또한 여쭙 것도 없는 일입니다.”하였다. 희평이 아뢰기를, “거질이는 공이 큰 자입니다. 남내는 검천(檢天)에 살면서 거질이와 혼인한 집인데, 남내가 거질이에게 사람을 보내오매 거질이가 밤에 회령에 달려와서 고하였으니, 그 공이 작지 않으므로 신이 그때에 ‘논상(論賞)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거질이가 피해 와서 장성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에 일이 급하게 되면 반드시 관(館)에 의탁해 올 것입니다. 관에 살게 할 수 없다면 올라와서 향화(向化)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유미가 아뢰기를, “신이 병사로 있을 때에, 속고내(速古乃)가 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매, 수은두(愁隱豆)가 도망해 와서 관에 들어와 상경(上京)을 청하므로, 신이 조정(朝廷)에 품신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수은두가 속고내에게 침해당하였습니다. 전오륜(全五倫)이 종성 부사(鍾城府使)가 되어, 제 아버지께 무례하였다 하여 쫓아냈었는데, 최한홍(崔漢洪)이 병사로 있던 신미년 2월에 속고내가 군사를 모아 침범하려 하였으나, 어느 체탐인(體探人)이 그것을 알았으므로 군사를 돌려서 갔습니다. 신이 병사로 있을 때에 속고내가 또 군사를 모아서 오매, 거질이가 진고(進告)하므로, 신이 전 오륜을 시켜 말하기를 ‘네가 까닭없이 와서 인축(人畜)을 약탈해 가려 하니 문죄하겠다.’ 하였고, 거질이가 다시 탐문하여 와서 고하기를 ‘속고내가 군사 50여 명을 모아서 온다.’ 하므로, 신이 또 시켜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너희 일을 가지고 감히 우리 나라를 시끄럽히느냐? 이렇게 하면 신해년과 같이 조치하겠다.’ 하니, 드디어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주장합이 남내를 침범하여 거질이가 도망하여 관에 오면, 올라와서 서울에 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잡아서 주장합에게 주면, 성저(城底)의 피인(彼人)들이 다들 ‘사변을 고한 자도 이렇게 된다.’ 하고 다 이반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변을 고한 자를 잡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변방의 일을 대신이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이 변방의 일을 안다면 어찌 감히 조치하지 않겠습니까? 강변의 초목을 베는 일이나 둔전

(屯田)을 만드는 일 등은 변장이 해야 할 일이니, 변장이 계문(啓聞)하면 조정에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응기가 아뢰기를, “이식(李軾)이 계문한 ‘압록강 건너편의 달재(獐子)가 사냥한다 하고 머물러 있다.’는 일은 오늘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의 일은, 예전에는 이극균(李克均)과 같은 자가 있어서 자기 임무로 여겼거니와, 변방의 일은 모름지기 일이 없을 때에 미리 조치해야 한다.”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극균은 변방의 일을 갖추 알았었으나, 이제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옛말에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변방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장차 큰일을 맡기려면 먼저 변방의 일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니, 중신(重臣)을 보내어 변방의 일에 두루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둔전(屯田)의 일로 말하면, 신이 전에 호조 판서로 있을 때 마련한 것은, 평안도안주(安州)의 둔전에서 나는 것이 1만 5백여 석(石), 인산(麟山)의 둔전에서 나는 것이 9천 석이고, 도정한 쌀이 1천 50여 석이며, 함경도에 현재 저축되어 있는 곡식은 도합 90만여 석인데 민간에 산재해 있는 것이 60만여 석입니다. 전에 경상도의 저곡(儲穀) 2만 5천여 석을 함경도에 옮겨 들여갔는데, 그 뒤에 이것으로 흉년을 구제하였습니다. 만약에 변방의 사변이 있으면 그 옥을 앗아서 받을 수는 없고, 군사를 움직이려면 하도(下道)의 곡식을 날라가기는 어려우니, 그 농군 얼마로 어디에 둔전을 설치할 것인지를 헤아려서 군량(軍糧)을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이 북도(北道)의 일을 갖추 아는 까닭에,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홍원(洪原)·정평(定平) 등에 밭을 일구게 하였는데, 홍원에서는 4백여 석을 거두고 정평에서는 2백여 석을 거둡니다. 신은 이것도 안주·인산의 둔전의 전례와 같이 논상(論賞)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도장기(長鬐) 등에는 배를 운행하기 어려우므로 조운(漕運)하지 못하고, 다만 영덕(盈德) 등의 곡식을 거의 다 함경도에 옮겨 들여갑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는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잡미(雜米)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신은 본도(本道)에 둔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옛사람은 방수(防守)하면서 한편으로 경작하여 사람과 말이 다 둔전에 의뢰하였으니, 둔전을 만들기에 힘쓰도록 감사가 배사(拜辭)할 때에 일러 보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만약에 함경도에서 군사를 움직이게 되면 하삼도(下三道)의 곡식을 날라다가 써야 할터인데, 삼도에 저장된 것은 1만의 군사가 1숙(宿)에 먹을 것도 안 됩니다. 신해년의 북정(北征) 때에 2만의 병마(兵馬)를 징발하였는데, 산료(散料)가 1만석이었고 1숙에 먹는 것이 쌀 8백 석에 콩 1천 2백 석이었으나, 지금은 어찌 이와 같이 넉넉하겠습니까? 국가에 사변이 생기면 군사는 그래도 조발(調發)할 수 있겠으나, 군량은 미처 날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함경도의

곡식은 민간에 많이 산재해 있어 그 수를 허장(虛張)한 것이니, 이는 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에는 군사와 인마(人馬)를 아울러 한 해에 먹는 것이 7천여 석이었으나, 지금은 또 별부방(別赴防)의 군사가 있으므로, 한 해에 먹는 것이 1만여 석입니다. 함경도 감사가 머지 않아 갈릴 것이니, 새 감사가 내려갈 때에 군량을 조치하도록 일러 보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을 아는 자가 조정에 많이 있다. 그러나 문무 재상(文武宰相)으로 하여금 변방의 일을 더욱 익숙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매, 답년이 아뢰기를, “조치하는 방도로는 인재를 얻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거니와, 지금 육진의 수령이 능히 절약해 써서 저축한다면, 아마도 군량이 있게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인재를 얻지 못하면 능히 절약해 하지 못할 것이니, 인재를 얻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하였다. 자건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마땅합니다. 신이 보건대, 성종조에는 늘 무신을 탁용(擢用)하여, 무신 한 사람을 오래 승지(承旨)로 제수(除授)하여 권려(勸勵)하게 하였고, 또 북정 때에 성종께서 이계동(李季叟)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고 ‘이는 장래의 장수이다.’ 하셨습니다. 이제도 명망이 중한 당하관(堂下官)을 탁용하여 명망을 더 얻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병조가 무인을 등용하는 것을 보니 과연 예전과 같지 않다. 하루아침에 죄다 등용할 수는 없더라도, 인망에 맞는 자는 미리 탁용해야 한다. 성종조에는 대사헌이 된 자까지 있다.”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둔전은 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록강 건너편의 나무를 베는 일은,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입시(入侍)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장군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로부터 삼수(三水)·갑산(甲山)·여연(閔延)·무창(茂昌)에 이르는 곳들은, 세조조 때에 수호(守護)하기 어렵게 되어 각보(各堡)를 내지로 옮겨 설치하였는데, 그 사이에 큰 산과 긴 골짜기가 있어서 초목이 무성하여 우러러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이극군이 나무를 벨 때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마마동(麻麻洞)·주과리동(朱坡梨洞)으로부터 내려오며 강변의 벨 만한 곳과 만포(滿浦) 강변의 의심할 만한 곳은 이미 죄다 베었으므로, 산과 들에 초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산리(高山里) 근처에 아직 베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변장(邊將)이 자의로 벨 수는 없을 것이니, 병사에게 하유(下諭)하여 멀리 척후(斥候)할 수 있도록 베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전에는 야인이 건너편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였었는데, 기미년·경신년 사이에 야인 중에 고기잡다가 변방을 노략한 자가 있었으므로, 유순정(柳順正)이 병사로 있을 때에 계청(啓請)하기를 ‘하룻길 이내로 가까이 오는 야인은 도적으로 논하소서.’ 하니, 그 뒤로는 야인이 감히 변방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경오년에 병사로 있을 때 산속에 가보니

간간이 막(幕)을 꾸민 곳이 있고 혹 떼지어 고기를 잡으므로, 도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교활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또 이산(理山) 건너편에 와서 사는 자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듣지 않으려 하기에, 신이 크게 죄를 다스리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신이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불며 병위(兵威)를 크게 벌여 나아가니 다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막을 불사르고 그 그물을 나무에 걸어두고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면 병세(兵勢)를 크게 벌여서 구박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때문에 변방의 말썽이 생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형산(荊山)이 아뢰기를, “이미 이식(李軾)으로 하여금 폐(廢)의 정상을 살펴 치계(馳啓)하게 하였으니, 그 회계를 보고서 철거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하고, 석철이 아뢰기를, “와서 막을 꾸민 자를 금하지 않으면, 강물의 깊고 얕은 곳을 알아서 노략질하게 될 것이며, 농민이 흩어져 있을 때에 덮쳐서 사로잡아 갈지도 모릅니다. 유순정이 병사로 있을 때에는 일식정(一息程)안에 막을 꾸미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그 막을 불살랐으나, 그 뒤 여윤철(呂允哲)이 병사로 있을 때에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윤철을 대신하여 병사가 되어서는 만포(滿浦)의 야인에게 말하기를 ‘너 회가 여기에 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니 도적으로 논하겠다.’ 하니, 그때부터 막을 꾸미지 못하였는데, 요즘 이식의 계본을 보면 과연 많이 막을 꾸몄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과연 인재를 얻기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병사가 처리해야 할 일이다. 변방의 조치에 관한 일은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이 각각 생각을 아뢰면 내가 대신에게 묻겠다.”하였다. …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8일(戊辰)

대신들이 입거리·소양개 등을 처형하여 야인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입거리·소양개 등이 초사(招辭)가 황형의 계본(啓本)과 대개 같으므로 달리 더 추국할 뜻이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조율(照律)해야 할 것인지, 대신에게 논의해야 할 것인지, 부관(府官)에게 물으라.”하매, 회계(回啓)하기를, “도둑질하다가 사로잡힌 성저 오도리(城底吾都里)를 전에는 변장(邊將)이 그 곳에서 추고(推考)하여, 명백하면 스스로 처치하였고, 사로잡아 올려 보내서 조율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나, 수의(收議)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부(政府)에 의논하라.”하매, 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김전(金詮)·박열·고형산(高荊山)·이자건(李自健)·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당초 입거리 등이

사로잡혔을 때에 변장이 가두어 두고 계품(啓稟)하여 변경 땅에서 시(尸)해야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전해 보내어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장성(長城)을 넘어와 인축(人畜)을 약탈한 죄를 다 복초(服招)하였으니 전형(典刑)에 의하여 처치하여 오진(五鎭)에 전수(傳首)하되, 변장을 시켜 성 밑에 사는 피인(彼人)을 모아서 모두 함께 보게 하여 국법을 두려워 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습니다. 이 뒤로는 모든 난을 일으킨 야인을 울려 보내지 말고, 으레 다 가두어 두고 치계(馳啓)하도록 아울러 변장에게 이르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5일(甲申)

정부 및 육조를 명소하고 신주를 만들고 내일 추향 대제 때에 친제할 것을 의논하다

정부(政府) 및 육조 판서(六曹判書) · 관윤(判尹)을 명소(命召)하고 전교하기를,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신위(神位)를 아직 찾지 못하였고, 또 찾더라도 반드시 더러운 곳에 계실 것이며, 선왕(先王) · 선후(先后)가 계신 앞에 오래도록 지방(紙榜)을 쓰니 이것도 미안하며, 추향 대제(秋享大祭) 때에 지방을 쓰는 것은 더욱 미안하니, 오늘 새 신주를 만들고 내일 추향 대제 때에 친제(親祭)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날을 가려서 친제할 것인가? 육사를 다 보고 옛 신주가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 친제해야 할 것인가?”하였다. 정광필(鄭光弼) · 권균(權鈞) ·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상께서는 한 나라의 신(神)과 백성의 주인이시고 또 웃전(上殿)이 계시므로, 오래 소복하시는 것은 미안합니다. 또, 열성(列聖)의 신위가 압존(壓尊)하므로 지방으로 제사할 수 없는데, 더구나 대제에 지방을 쓰는 것은 더욱 미안합니다. 고사(古史)를 보면, 이렛 동안 소복하는 것이 또한 극수(極數)이니, 빨리 별제(別祭)를 거행하는 것이 지당하나, 치제(致齋)하지 않고서 제사를 행할 수는 없는데, 헌관(獻官)들이 이미 향축(香祝)을 받아 갔고, 오늘은 또 이미 형옥(刑獄)의 일을 청단(聽斷)하셨으므로, 내일 친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니, 뒷날 따로 길일(吉日)을 가려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신용개(申用溉) · 유순(柳詢) · 박열(朴說) · 윤순(尹珣) · 고흥산(高荊山) · 이자건(李自健) · 안당(安塘) · 남곤(南袞) · 송천희(宋千禧) · 조계상(曹繼商)이 의논드리기를, “신어(神馭)를 아직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정(聖情)이 무궁하시겠으나, 또한 예(禮)로 절제(節制)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위로 태묘를 이어받고 또 자전(慈殿)을 받드셨으므로 여러 날 동안 소복하는 것이 실로 미안함은 참으로 상유(上諭)와 같으니, 새 신주를 빨리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주를 세우는 의례(儀禮)는 반드시 사유(事由)를 먼저 고한 뒤에 행해

야 하므로, 내일의 제사에는 이미 미칠 수 없으니, 대제 뒤에 길일을 따로 가려서 행하고 소복을 그만두는 것이 정(情)과 예(禮)에 맞을 것입니다.”하였다. 김응기(金應箕)·유담년(柳聃年)이 의논드리기를, “신위판(神位版)을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초엿새날 대제 때에 새 신주를 만들어서 친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반드시 따로 날을 가려서 친제한다면 이달 열 이튿날이 제삿날이므로 거행할 수 있으나, 신주를 만드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하니, 광필 등의 의논을 채용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4일(癸巳)

북도의 사천을 남도의 공천으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북방의 일이 날로 허술해지므로, 대신(大臣)이 북도(北道)의 사천(私賤)을 남도의 공천(公賤)으로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리마는, 내 생각에는 북도에 노비(奴婢)를 두고자 하는 자도 혹 있는데 모두 바꾸게 하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의논할 재상(宰相)에게 말하라.”하매, 김전(金詮)·박열(朴說)·윤순(尹璣)·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안당(安瑯)·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함경도는 인물이 조잔(凋殘)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바빠 조치해야 합니다. 그 폐단의 근원은 오로지 수령이 그 백성을 침탈하여 의지해 살아 갈 수 없게 하고, 간사한 무리가 따라서 사리(私利)를 취하는 기회로 삼아서 피어다가 전매(轉賣)하는 등 꺼리는 바가 없이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임(受任)한 인원, 이를테면 수령·첨사(僉使)·만호(萬戶)로부터 군관(軍官)까지도 제 노비라고 속여서 데려오는 자가 자못 많으므로 방어하는 군졸이 날로 조폐해지니, 추쇄(推刷)하여 다른 도(道)의 공천으로 대급(代給)하자는 것도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본도의 사천은 다 가난하여 가멸진 집이 열 가운데에서 한둘도 못되므로 주인 집의 공역(貢役)도 지탱하지 못하니, 하루아침에 군역(軍役)으로 정하면 창을 메고 방수(防戍)하러 나가 사력을 다하여 외환(外患)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주장(主將)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유리(流離)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공천과 사천을 바꿀 때에 간교하게 속이는 일이 마구 생겨서, 가난한 자를 가멸지다 하고 연약한 자를 건장하다고 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利)가 사가(私家)로 돌아가서 국가에도 마참내 두 가지를 잃는 우환이 있게 될 것이 참으로 염려됩니다. 신 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찾아 모아, 그 중에서 문기(文記)가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모두 속공(屬公)하게 하고 또 금조(禁條)를 세워, 이제부터 모든 본도에 사는

노비에 대해서는 본주(本主)가 공물(貢物)만 거두고 마음대로 다른 고장으로 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미 낸 자는 기한을 정하여 해사(該司) 및 소재 관사(所在官司)에 천적(賤籍)을 바칠 수 있게 하되, 상고하여 맞추어 보아 기한이 지나서 맞지 않는 자는 문권(文券)이 명백하더라도 모두 속공하고 죄주며, 또 양민(良民)을 노비라고 속인 자는 자수(自首)할 수 있게 하여 죄를 면해 주면, 사천(私賤)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폐단이 없고 다 본도의 백성이 되어, 급한 사변을 당하면 군오(軍伍)에 들지 않았더라도 군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 김전 등의 의논을 채용하였다.

○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5일(甲辰)

제향을 맡은 관원을 문신으로 차임하는 문제와, 과거 실시, 제언에 관한 일 등을 논의하다

… 상이 이르기를, “천거된 사람은 먼저 경직에 시험해 보고, 변장(邊將) 자리가 비거든 적당히 그 자리를 채워 차임하도록 하라.”하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문신 중에서 이빈(李蘋) 같은 자도 탁용(擢用)할 만합니다. 검열(檢閱) 유용근(柳庸謹)은 신급계(新及第)이기는 하나, 인물이 범상치 않고 나이도 젊지 않으니, 이상곤(李長坤)의 전례처럼 평사(評事)를 탁수(擢授)해야 합니다.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신변(申弁)은 나이가 이미 마흔 남짓한데 장재(將才)가 있으니, 미처 늙기 전에 변방의 판관(判官)으로 초서해야 합니다.”하였다. … 또, 강무장(講武場)의 긴요하지 않은 곳에 백성이 들어가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강무장에 농사짓게 하고자 하시는 뜻은 지극히 이름답습니다. 먼 곳에 있어서 강무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일구기에 마땅한 땅은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백성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긴요한 곳과 긴요하지 않은 곳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상세하게 마련한 뒤에 백성에게 농사짓기를 허가해야 합니다.”하였다. … 또, 금년의 전조(田租)와 왕년의 공채(公債)를 감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계맹이 아뢰기를, “군사를 움직인 뒤라면 전조를 감할 만하나, 지금 전조를 감한다면 국용(國用)이 부족하므로 안될 듯합니다.”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백성의 고통을 묻고 전조를 감하는 것은 다 임금의 훌륭한 일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는 국용이 매우 적으니 금년의 전조는 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왕년의 공채는 감면할 수 있겠으나, 공채

는 다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저축해서 흉황(凶荒)에 대비하는 것이니, 만약에 저축이 적으내 혹 흉황을 당하면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환납(還納)하지 않은 자는 다 토호(土豪)이니, 이제 만약에 감면한다면 호강(豪強)한 자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하였다. 박열이 아뢰기를, “전조를 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국용이 매우 적고 백관(百官)의 봉록(俸祿)도 모자라니, 금년의 전조는 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왕년의 공채를 감하면 백성이 실혜(實惠)를 받을 것입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수령이 해유(解由)를 내고자 하여 공채를 독촉해 거두느라고, 왕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다 근년으로 옮겨 기록하므로, 이제 감해 주더라도 백성은 실혜를 입지 못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받아 먹은 뒤에 죽었거나 도망하여 일족(一族)·절린(切隣)에게서 거두는 것이라면, 특별히 감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4일(癸丑)

병조 판서 고흥산이 정로위의 인원을 늘여 상번 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번상 군사(番上軍士)가 하루도 휴식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리합니다. 즉 별부방 군사(別赴防軍士)는 예전에 없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번(助番)이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정병(正兵)·갑사(甲士)로서 양궐(兩闕)을 나누어 지키는 자와 오경에 순찰하는 자의 숫자가 무릇 1천 6백 54명인데, 1부(部)의 소속이 6백여 인이라, 입번 군사가 이 때문에 휴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국가에서 4부를 설치한 것은 9일을 휴식하는 기간으로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1부만이 남았으므로 휴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팔도의 상번 군사는 무릇 4만 1천 1백 51인이고, 별부방이 1만 1천 8백 59인이고, 원유방(元留防)이 5만 4천 4백 1인이며, 내금위(內禁衛)는 5백 인인데, 2백 20인이 별부방으로 나갑니다. 지난 번에 신이 정로위(定虜衛)를 증원하기를 역청하였는데, 정로위에 인원이 많으면 금군(禁軍)은 외방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경중(京中)에 있다가 사변이 생길 때에는 장수가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조정에 마침 이의(異議)가 있어 5백 인만 증원하였는데, 요사이 정로위에 취재(取才)된 자는 7백여 인인데도 단지 5백 인만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차출되지 않은 군사는, 청로대(淸路隊)·팔팽배(八彭排)가 4천 2백 인이요, 파적위(破敵衛)가 1천 4백 32인이며, 대졸(隊卒)이 2천 2백 27인입니다. 그래서 별시위(別侍衛) 1천 5백 인이 지금은 2천 1백 인인데도 번상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군사로서

평안도로 부방(赴防)하는 자들이 무척 고달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로위 50구(口)를 돌려서 부방케 하였습니다. 황해도 군사의 상변에 관한 일은 이미 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아뢰지는 못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7일(丙辰)

대신을 인견하고 재변을 당하여 구황하는 일과, 헌부의 화살 쏜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유순(柳洵)·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예조 판서 권균·병조 판서 고흥산·호조 판서 이계맹·좌참찬 이자건(李自健)·이조 판서 송천희·집의 김양진【상이 장관(長官)을 입참(入參)하게 하였으나 대사헌 남곤은 당초에 제수한 뜻과 달랐기 때문에 집의가 들어갔다.】등을 인견(引見)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국광은 과연 10여 차례 형장을 맞았으니, 명견만 추고해야 하겠다.”하고, 이어 작은 쪽지에 써서 보이기를, “헌부의 문에 활을 쏘아 맞힌 일은, 당초에 추문하려 하였으나, 그때 문소전의 큰 변이 있어서 추고하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그 후에 간원이 여러 날을 두고 추고하기를 청하였고, 이제 헌부가 또 피험하며 추고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하였다. … 형산(荊山)과 자건(自健)은 아뢰기를, “헌부가 서계한 것은 반드시 의심이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근거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더욱 의심스러운 자를 다시 추려서 추고함이 어떻습니까? 비록 대옥이긴 하지만 이는 풍속(風俗)에 관계되는 것이요 또 이미 서계까지 하였으니, 그대로 버려두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6일(乙亥)

대신들이 원묘의 변고에 관련한 죄인을 형신하도록 청하다

좌의정 김응기가 의논드리기를, “광복(廣福)과 억천(億千)은 입번인(入番人)으로서 근신하지 못하였으니 죄를 받음이 옳고, 국광(國光)과 명견(命堅)은 죄가 없으니 추국하지 말고 놓아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우의정 신용개는 의논드리기를, “일이 이미 중대하고 또 형적(形迹)도 있으니, 명견·국광을 한 두차례 더 형신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부원군 참찬(參贊)·육경(六卿)·판윤(判尹)·대간(臺諫)·승정원·홍문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판윤 윤순(尹璠)·병조 판서 고흥산·공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 의논드리기를, “명견은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부상한 이

유를 명백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나갔다는 사실은 가족들의 공초(供招)에서 나왔는데 간 곳을 숨기고 자복(自服)하지 않습니다. 일이 중대하니 의옥(疑獄)이라 해서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광의 일은 명견에 비하면 약간 의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丙子)

고형산이 수도할 것과 변방의 위기에 대해 아뢰다

… 특진관 고형산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구황(救荒)도 어렵거니와 방어가 또한 매우 허소(虛疎)합니다. 강변에 만약 식량이 떨어지면 내지(內地) 백성들 역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들건대 안주(安州)의 둔전은 황폐하고 소출이 없다 하니, 군량에 관한 일은 달리 조치함이 마땅합니다. 군인이 만약 굶주린다면 숫자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은 미리 감사에게 유시해서 조치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들건대 경상·전라 양도의 수군(水軍)은 도망간 자가 반이 넘고 죽은 자도 많은데, 연해(沿海)의 수령들이 힘써 검핵(檢覈)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많이 세가(勢家)로 들어가고 또 수사(水使)가 없어서 방어(防禦)가 매우 허소합니다. 신이 김양진(金楊震)이 내려갈 때 그로 하여금 이를 검거(檢擧)할 것을 청했습니다. 또 각포(各浦)의 궤군(鬪軍)에 대해서는 수령에게 문책하지 않고 만호(萬戶)에게만 문책하기 때문에, 수령은 비록 집에 가 있는 궤군을 안다 해도 그를 내보내기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집에 가는 궤군을 수령이 찾아서 보내지 않으면 수령을 죄주고 또 수령이 이미 찾아 내보냈는데도 만호가 안검(案檢)하지 않으면 만호를 죄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에서 왜선을 수도(搜討)할 때에 죽은 자가 10여 인이었으니 이 수도는 장수의 과실이였다. 대저 우리 나라 사람은 배 부리는 일이 장기가 아니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만약 수도하지 않는다면 왜인은 스스로 제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라 사람은 해채(海採)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평상시에 방어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다가 수도하는 것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선을 잡을 때 수십 척이 전법(戰法)대로 정제(整齊)해서 수도한다면 안 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경상 우도의 수영(水營)은 전라 좌도와 서로 닿아 있는데, 조정에서 조치를 잘못하고 재상들의 의론 역시 일정하지 않아서, 한결같이 중요하지 않은 땅에다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기 때문에 군사가 쓸 틈이 없는 것입니다. 팔도의 군사가 모두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 만약에 사변이 나면 어쩔 수 없이 한번

군사(下番軍士)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금위(內禁衛)는 그 수가 본래 5백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자는 3백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외방에 있어서, 시위(侍衛)가 또한 매우 허소합니다. 후손이 끊어진 군사에 대해서는 한량(閑良)으로서 장년(壯年)인 자를 보태어 충원하면 군사를 휴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항상 군사를 쉬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법을 몰라서 군사가 휴식할 시기가 없으니 마땅히 대신과 의논해서 조치하겠다.”하였다. 용개가 아되기를, “한정(閑丁) 역시 적어서 군사가 쉴 수 없고, 쉬게 할 방도도 없습니다. 외방에는 업유(業儒)라고 칭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 호강자(豪强者)는 수령이라도 충군(充軍)시킬 수가 없으므로 군액(軍額)은 날로 적어집니다. 여러 모로 헤아려 보았으나 좋은 방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하고, 형산이 아되기를, “신이 군안(軍案)을 보니 팽배(彭排)와 대졸(隊卒)로서 충원되지 못한 자가 70인이요, 갑사(甲士)가 1만 4천 8백 인이고, 별시위(別侍衛)도 충원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력을 휴식시키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설진(設鎭)하는 일과, 중신(重臣)을 보내어 조치하는 일과, 군력을 휴식케 할 방책 등은 대신 등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대간이 말한 바 ‘한형운은 명교(名敎)에 죄를 얻었는데도 부실하게 추고하여 이미 육조의 벼슬을 지냈다.’ 하였는데 이제 진퇴(進退)에 결함이 있으니 대신에게 물어 본 뒤에 결정하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일(己卯)

경상·전라 접경지에 진을 설치할 일과 군졸을 휴식하게 할 방책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정원이 아되기를, “전일에 경연에서 고흥산이 아뢰, 경상·전라 접경지에 진(鎭)을 설치할 일과 군졸을 휴식하게 할 방책에 대한 일은 형산이 대신에게 물을 것을 청하였으니, 오늘 아울러 물어봄이 어떠하리까?”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일찍이 평안도 장계에 ‘탕참 지휘(湯站指揮)가 보고하기를’ 오랑개가 장차 탕참에 입구하려 하니, 만약 변고 발생이면 와서 구원해 주기를 청한다.”하였는데 이것을 정부와 병조에 의논한 것이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일(己卯)

압록강 상·하류의 방비와 경상도 좌우 수영을 옮기는 일을 의논하다

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좌찬성 김전·우찬성 박열·병조 판서 고흥산·좌참찬 이자건·병조 참판 유미 등이 의논드리기를, “탕참 지휘(湯站指揮)는 제멋대로 외국

에 구원을 청할 수 없는 일이고 그가 비록 다시 요동(遼東)의 이자(移咨)624)를 보내 이를 청탁한다 해도 역시 그 사청(私請)을 받아들여서 국경 밖으로 출병(出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또 와서 말을 한다면 그에게 ‘우리 국법(國法)에는, 비록 경내(境內)라 할지라도 변고가 나면 반드시 국왕에게 취품(取稟)을 해야만 발병을 할 수가 있다. 변장(邊將)은 다만 국경을 잘 지키는 뿐이다. 또 압록강 상·하류(上下流)는 모두 뱃길을 끊어서 방수(防戍)를 튼튼히 하고, 단지 배 2척을 가지고 가까스로 통신사(通信使)가 왕래를 할 뿐이니, 만약 대군이 강을 건너게 되면 2척으로서는 쉽사리 건널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주는 탕참과 60여 리(里)나 떨어져 있으니 반드시 구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사유를 갖추어 취품은 해야 하겠는데, 우리 서울이 멀어서 왕래하는 동안에 시기를 놓칠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하고 또 요동의 이자(移咨)에 대해서도 이러한 뜻으로 대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들이 근경(近境)을 노략질 하겠다고 떠드는데 그들의 계략은 측량할 수 없으니, 강 연안의 각진에서는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하고 아울러 절도사에게 유시해서 엄히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경상도의 좌우 수영(左右水營)을 옮기는 일은 매우 중대하니, 뒷날 중신을 보내어 그 편부(便否)를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辛巳)
 군량 소송과 오랑캐의 진위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정광필·김응기·신용개·김전·박열·이자건·고형산·유미(柳澗)·유담년·김석철(金錫哲)을 불러 탕참 구원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 형산은 아뢰기를, “병사(兵事)는 군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도의 군사는 무릇 7천이요, 황해도가 5~6천인데, 타도(他道)에서 이곳으로 부방(赴防)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요동에서 흑시라도 조정(朝廷)에 말을 해서 청병(請兵)을 해 온다면 부득이 군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대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군무는 지극히 중요한 일인데도, 관찰사·절도사는 항상 위계가 낮은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조정에서 무겁게 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하고, … 유미는 아뢰기를, “대저 임기 응변(臨機應變)은 또한 날래고 용감한 군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전일에 형산이 아뢴 바 정로위(定虜衛)를 가설(加設)하자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하고, 석철은 아뢰기를, “정로위는 실로 정병(精兵)이니 마땅히 가설해야 합니다.”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정로위를 두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 일이지만, 다른 군사는 모두 봉족(奉足)

이 있는데, 여기에만 없으니 이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의 소식은 진위(眞僞)를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군사를 요청하면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군량 또한 수송을 해야 할 것이니, 군졸과 군량을 미리미리 정비함이 옳을 것이다.”하였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0일(戊子)

중국에서 청병해 올 것을 대비하여 정병을 뽑으라고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에 전교하기를, “중국에서 성식이 있으니 군졸과 군량을 미리 조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청병(請兵)을 해오면 부득이 타도의 군사를 뽑아 보내야 할 것이다. 취재 군사(取才軍士)와 한량(閑良)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병(精兵)일 것이니 모두 정밀하게 뽑도록 하라.”하매, 판서 고흥산이 아뢰기를,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뽑아 보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서 보인 추장(秋揚)641과 무과 초시 및 이번의 별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청병을 해 오다면 평안도·황해도 군사는 당연히 뽑아 보내야 하겠지만 그외에 경중 군사(京中軍士)까지 모두 보낸다면 시위(侍衛)가 부족할 것이니, 경기(京畿)·충청(忠淸)의 군사 가운데서 뽑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3일(辛卯)

병조를 명소하여 조병하는 일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다

… 정부와 병조를 명소(命召)하여 조병(調兵)하는 제반 일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니, 정광필·김응기·신용개·고형산·유미(柳澗)와 순변사(巡邊使) 유담년이 의계(議啓)하기를, “종사관(從事官) 2명, 군관(軍官) 4명과 군사 6천 명은 본도(本道)에서 5천 명, 황해도에서 1천 명을 내도록 하고, 원군관(元軍官) 1백 명, 위장(衛將) 30명과 파진군(破陣軍) 30명은 본도에서 10명을 내도록 하소서.”하고, 광필 등이 이어 아뢰기를,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 이지방(李之芳)·미전 첨사(美錢僉使) 김석형(金碩亨)은, 장수 되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쪽으로 쳐들어가는 길을 아오니 그들을 체직하여 서울에 있도록 하였다가 만일 일이 있게 되면 즉각 출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25일(癸卯)

평안도의 군량과 군사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병조 판서와 순변사가 아뢰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과 순변사 유담년이 아뢰었다. “평안도의 군량과 군사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하니, 사망자 이외의 현재 있는 사람 및 형편을 하서(下書)하여 물으소서.”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17일(乙丑)

수군을 보강하는 문제, 맹선 문제, 인물의 출척 문제를 논의하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대범, 화기를 손상하여 재변을 부르게 됨은, 인심이 원망하고 시름하기 때문입니다. 외방의 수군(水軍)은 신역(身役)이 매우 과중한 데도 봉족(奉足)이 없어 힘을 펼 수 없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맹선(大猛船)과 중맹선은 배 하나에 타는 수군이 더러는 50여 명까지 되기 때문에 수군은 교대할 때가 없으니, 이제부터 이 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소맹선만 사용한다면, 부리기가 경쾌하고 탈 수군 또한 많지 않아, 번을 나누어 쉴 수 있을 듯합니다.”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형산의 말이 비록 합당하기는 하나 대맹선과 중맹선이 조종(祖宗) 때부터 있었음은 뜻한 바가 있었으니 없앨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들이 아끼고 돌본 후에야 백성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백성의 고혈(膏血)을 굶어다 남 섬기기를 잘하는 자가 있으니, 통업하게 다스린다면 백성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바야흐로 서사(署事)하지만, 단지 육조의 공사만 보고 인물을 진퇴하는 일은 하지 않는데, 인물의 출척(黜陟)도 또한 해야 한다.”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무릇 누가 조그마한 과실(過失)만 있어도 모조리 폄출(貶黜)한다면, 이 역시 불가합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근래에 인심이 간사하여 궤방함과 칭찬함이 올바르지 못하고 옳음과 그름이 뒤바뀌게 되는데, 감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갑자기 출척함은 불가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0일(戊辰)

어사를 보내는 문제, 물건을 역매하는 등 문제를 논의하다

… 형산이 아뢰기를, “치부한 대로 일체 임용함은 매우 불가하고 마땅히 가려서 써야 합니다.”하였다. … 형산이 아뢰기를, “요사이 백성이 지극히 곤궁함은 반드시 법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사를 보내 규찰함이 백성에게 편

리하여 백성들이 반드시 혜택을 입을 듯합니다마는, 다만 이미 감사가 있는데 또한 어사를 보냄은 사체에 불가합니다.”하였다. … 형산이 아뢰기를, “오래 유임하려는 사람들을 해조(該曹)가 미처 알지 못할 것이나, 알면 마땅히 구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하였다. … 형산이 아뢰기를, “각 관사(官司)가 저화로 저자에서 물건을 억매(抑買)하지만 저자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비록 이미 법이 세워졌지만 하나도 사섬시(司贖寺)에 사려고 오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성균관에서만 평소 이것으로 시탄(柴炭)을 산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통용되지 못할 듯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2일(庚午)

노산과 폐주의 후손을 세움이 합당한지와 시골 풍습에 관해 의논하다

선정전에 나아가 정광필·김응기·신용개·권균(權鈞)·김전(金詮)·윤순(尹璠)·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안당(安瑯) 등을 연방하여, 노산과 폐주의 후손을 세움이 합당한지 가부를 의논하도록 하니, … 형산이 아뢰기를, “일이 매우 중대하니 널리 옛법례를 고찰하여 의거할 데가 있는 다음에 해야 하고 한갓 한때의 말에 따라 경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산 일은 선왕 때에 이미 후손을 세우지 않았음은 반드시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 형산이 아뢰기를, “시골 풍습이 완악해진 지 오래니, 마땅히 징계하여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풍속과 관계되는 일이어서 단지 그 사람만 죄준은 불가하니, 유향(留鄉)·품관(品官)들도 마땅히 죄주어 악을 징계해야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9일(丁丑)

연산·노산의 후손 세우는 일과 친문을 의논하다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여 연산·노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 권균(權鈞)·강혼(姜渾)·김전(金詮)·윤순(尹璠)·윤금손(尹金孫)·김준손(金俊孫)·이점(李楨)·고형산(高荊山)·임유겸(任由謙)·황맹헌(黃孟獻)·조계상(曹繼商)·이자견(李自堅)은 모두들 후손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 윤금손(尹金孫)이 아뢰기를, “친문 일은 단지 조심스럽게 인시(人時)를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월과 성신의 변에는 제왕이 마땅히 공포수성(恐懼修省)하여 감히 경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건대, 조종조에서는 나이 젊은 문신(文臣)을 가려 그 뜻을 강구케 하였더니 이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리나 명과 같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 많으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종조로부터 해왔고 《대전》에 실려 있으니, 모두 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점(李帖)·고형산·이자견(李自堅)의 의견도 또한 그러하였는데, 상이 이르기 를, “지리·음양(陰陽) 같은 일은 잡된 일이겠지만, 천문은 매우 긴요한 것이니 폐할 수 없다.”하였다. …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19일(丙申)

대신들이 관례의 중요성과 노산과 연산을 위해 후손을 세우는 문제를 아뢰다

정광필·김응기·신용개·권균(權鈞)·장순손(張順孫)·김진(金詮)·안당(安瑯)·남곤이 의논드리기를, “관례(冠禮)는 예문에 실려 있고 옛사람들이 중히 여기던 것인데, 우리 나라 시속이 특히 거행하지 않으니 사대부들로 하여금 예문대로 거행하게 함이 지당합니다.”하고, 조계상(曹繼商)·이자견(李自堅)의 의논도 같았으며, 김준손(金俊孫)·이점(李帖)·이자견(李自健)·홍숙(洪淑)·임유겸(任由謙)·송천희(宋千喜)·성몽정(成夢井)·유미(柳澗)·한세환(韓世桓)·조원기(趙元紀)·윤순(尹珣)·윤금손(尹金孫)·고형산·황맹헌(黃孟獻) 등은 모두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윤순·윤금손·고형산·황맹헌이 의논드리기를, “노산과 연산의 후손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신 등이 전일에 이미 아뢰었는데, 다만 그 집들이 후손 없는 사대부의 예에 의해 복제(服制)가 없는 세울 만한 사람으로 후손을 삼는다면, 방해로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7권, 중종 11년 12월 19일(乙丑)

명주보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다

의정부·육조·시종(侍從)·대간·한성부가 모두 모여 의논하였다. 윤순(尹珣)·윤금손(尹金孫)·고형산(高荊山)이 의논드리기를, “명주보(縹緗)에 쓰인 글자로 추문한다면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이니 정부가 아뢴 대로 함이 어떠하리까?”하였다. …

○ 중종실록 27권, 중종 11년 12월 25일(辛未)

병조 판서 고형산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고 사직하다
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면서도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

하여 두세 차례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한미(寒微)한 가문에서 발신(發身)하였지만 변방 계책에 유능하여 오래 북방(北方)을 진수(鎭守)했는데, 오랑캐들이 다투어 자기 자식 이름을 ‘고형산’이라고 했었다. 사람됨이 학식은 없으나 처신이 간소하고 검박했으며,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 자못 많았다.

○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1월 8일(甲申)

백성의 폐단을 아뢰다

… 영의정 정광필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 노비신공(奴婢身貢)이 미납(未納)한 것을 일족(一族)에게 분담시켜 받을 때, 늘 바치는 면포(綿布)를 마련하지 못하므로 모두 추포(麤布)로 갑절을 받았었는데, 고흥산이 호조 판서가 되어 모두 본색(本色)대로 도로 받게 하여 지금 10년이 되도록 끊임없이 받기를 독촉하므로 이로 인해 백성의 폐단이 막심하니, 해사(該司)에 물으시어 백성이 침해(侵害)받지 않도록 하소서.” 하였다. …

○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甲午)

부원군 유운이 관소에서 친영하도록 의논드리니, 따르다

부원군(府院君)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천자는 친영하는 의식이 없는 법인데, 우리 나라가 비록 천자의 예는 아니지만 이웃 나라와의 혼인이 없기 때문에 《오례의》에 그 예법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유(先儒)들의 의논을 보건대, 모두 ‘천자는 마땅히 관소에서 친영해야 한다.’ 하였으니, 금번에도 역시 관소에서 친영하심이 합당합니다.”하고, 송일(宋軾)·남곤(南袞)·조계상(曹繼商)·최숙생(崔淑生)·정수강(丁壽崗)의 의논도 같았으며, 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溉)·권균(權鈞)·김전(金詮)·윤순(尹瑀)·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은 의논드리기를, “《오례의》는 곧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입니다. 더구나 태상(太上)은 대적이 없는 법이어서, 친히 왕후의 집까지 가는 것은 옛적에도 행한 분이 있지 않습니다. 《가례(嘉禮)》에 실린대로 육례(六禮)를 다 갖추되, 면복 차림으로 사자를 명하여 보내고, 봉영(奉迎)하는 백관들이 대궐까지 호종(扈從)하고 오면, 전하께서 면복 차림으로 읍(扨)하고 인도하여 섬들로 올라가신다면 이 또한 응례가 되는데, 어찌 꼭 궁벽한 골목까지 가서 맞이하여야만 예를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까?”하였는데, 상이 유순의 의논대로 하였다.

○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辛丑)

정난 공신으로 죽은 사람 및 육경에 오른 사람의 가자는 고칠 것이 없다고 전교하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좌찬성 김전·병조 판서 고흥산·형조 판서 윤금손·좌참찬 이계맹·이조 판서 남곤 등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정난 공신 중에 죽은 사람의 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미 육경이나 아경(亞卿)에 끼인 사람도 그의 가자를 뒤쫓아 회수해야 하며 음관(蔭官)의 가자도 개정해야 할 것인지 모두들 의논하여 아뢰어라.”하였다. …

○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9일(甲寅)

대신들이 왕실의 법제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다

김전·윤금손·고형산·안당이 의논드리기를, “임금을 삼대(三代) 이전의 임금으로 인도해야 함은 신 등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옛 예대로 하려고만 하여 당시의 형편에 맞지 않으면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리라 여깁니다. 또한 임금은 대적이 없어 왕후의 집에 친히 가는 예가 없는 법이니, 선왕(先王)의 법제를 준수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5월 14일(戊子)

직제학 이자 등이 이어가 있는데도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한 관리들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직제학(直提學) 이자(李紆) 등이 아뢰기를, “이제 자전께서 미령하시니, 의약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중한 일인데도 도제조(都提調) 유순(柳洵)이 병으로 나오지 않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그 직책을 대행하게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왕자군(王子君)이 문안을 드리고 물러가는 것은 자못 지친(至親)의 의(義)가 없는 것이니, 마땅히 곁에서 시약하고 밤에도 유숙하는 것이 예절에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께서 피어하시고 상께서도 유숙하시니 일이 매우 중난(重難)하여 대소 신민(臣民)은 모두 안심할 수가 없으니 삼공 육경은 다 여기서 서명을 기다려야 하며 비록 밤이라 해도 물러갈 수 없고, 또한 그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공 등을 보니 아침에 물러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이는 대신의 예절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은 이어하시는 여러 절차를 다 알아서 관장해야 하는데

도 뜬질을 칭탁하여 나오지 않았고, 예조 판서 권균은 이미 이어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어제 침구를 시작하였으며, 강혼(姜渾)은 도총관(都摠管)으로서 시위하고 와서도 일없는 사람처럼 퇴가(退家)하였다가 저녁에야 왔으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강(紀綱)을 규찰하는 일이 근래에 매우 해이해져서 여론이 있는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제 사헌부의 관원도 곧장 물러난 채로 검찰(檢察)을 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불가한 일이고, 사간원은 본래 5원(員)인데 3원이 어제 동시에 침구하고 1원은 병을 고하였습니다. 평시에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런 때이겠습니까? 기강이 해이한 것은 요즘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기회가 있기에 감히 아뢰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의 제조(內醫提調)와 왕자군의 직숙(直宿)은 아뢰 뜻이 마땅하다. 삼공이 문안하고 물러간 것은, 대개 문안이라 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라 자유로 해도 되지만 밤에까지 자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하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조와 예조의 판서는 전에 이미 말미를 얻었으니, 이어에 관한 말을 들은 뒤에 침구를 한 것이 아니다. 강혼은 추문(推問)해야 하고 양사(兩司)도 재직할 수 없다.”하였다.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5월 17일(辛卯)

간원이 이어하시던 날 마음대로 물러난 대신들을 체직하도록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미령하시어 상의 근심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니, 대소 신료(臣僚)는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이어하실 때에 시위하는 일들은 병조(兵曹)가 도맡아 검거하는데, 판서 고흥산(高荊山)은 말미 얻었다는 것을 핑계로 하관(下官)에게 맡긴 채 나오지 않아, 또한 신하의 예를 잃었으니 추고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시위하라는 명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대신이 물러가서 자고 온 것이요, 저녁에서 시숙(侍宿)하는 일은 반드시 명(命)이 있을 뒤라야 그리하는 것이니 대신의 죄가 아니다. 다만 이런 때에는 무릇 군무(軍務)에 관한 일을 대신된 사람이 병조와 함께 의논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니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신이 ‘대간을 자주 체직하면 그 직책이 가볍게 된다.’ 한 그 말에 어찌만 뜻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가벼이 추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론이 이와 같다면 대신도 마땅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권균·고형산이 말미를 받아 침구(針灸)를 한 것은 다 부득이한 일이었으니, 어찌 별 뜻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간원이 다시 아뢰기를, “ … 권균과 고흥산은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자전께서

이어하신 뒤에 나도 나가 자면서 시약하기에 먹을 겨를도 없었으니 소루한 일이 필시 많았을 것이다. 허둥지둥하는 동안 상하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힘써 조치하고 보도(輔導)하여 잘못을 살피서 적발한 뒤라야 대신의 직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다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니 추고할 수 없다. 나머지도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일(乙巳)

해가 미초 삼각에 이르러서야 일식하다

해가 내편법(內篇法)의 시각을 지나도록 일식하지 않더니, 외편법(外篇法)의 시각인 미초 삼각(未初三刻)에 이르러서야 일식하였다. 일관(日官)이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변고가 있음을 아뢰고, 사향(司香)도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향안(香案)앞에 부복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서는 또 부복하였다가 물러갔다. 이에 남쪽 계단에 있는 북을 울리니 동서(東西)에 있는 북도 따라 울렸는데, 오래되어 향로의 연기가 꺼지자 사향이 또 향을 올렸다. 연기가 꺼지면 사향 2인이 오르내리며 향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기를 모두 아홉 번 하였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동쪽 계단 위에 시립(侍立)하였다가, 서쪽 햇빛이 차휘(遮暉)아래로 들어 어의(御衣)를 비추려 하는 것을 보고 좌랑(佐郎)을 시켜 승지에게 말하여 전개(轉啓)하기를, “자리에 햇빛이 비추려 하니 사약(司鑪)으로 하여금 급히 차휘를 치게 하소서.”하니, ‘치지 말라’ 전교하였다. 신초 삼각(申初三刻)에 이르러 해가 다시 등글어지니 임금이 드디어 대내로 돌아왔다. …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8일(壬子)

야인 금주성개가 미언천에 와서 사는 것을 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함경·평안 양도의 관찰사가 온하위(溫下衛)의 야인 금주성개(金主成介)가 여연(閔延) 건너편 미언천(未彦川)에 와서 사는 일을 치계하므로, 정부와 병조 및 변사(邊事)를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김응기·신용개·김전(金銓)·고형산(高荊山)·유미(柳湄)·김석철(金錫哲)·윤희평(尹熙平)이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들이 우리 국경 가까이 살면서 점차 불어나는 것은 국가에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주성개가 들어와 사는 땅과 도로의 형세는 우리의 방어(防禦)가 미치는 곳이 아니니, 그들을 몰아내려 해도 반드시 영(命)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산지도 이미 6년이나 되어서 적로(賊路)의 지형을 그들은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만약 회

유(懷柔)하지 않고 일체 내쫓아 버린다면, 그곳이 이미 우리 땅이 아닌 만큼 그들을 승복시킬 만한 구실은 없이 단지 국위(國威)만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兩道)의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본 고장이 아닌데 우리 국경에 바짝 붙어 사는 것은 법으로 금해야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았으니 반드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아직 그냥 살게 하면서 너희들의 소행을 살피겠다. 앞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하거나 다른 도적이 와서 근경(近境)을 시끄럽게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도 아울러 몰아내어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임금이 삼공의 의논을 따랐다.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27일(辛未)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병으로 세 번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대신이 변방의 일을 잘 안다 하여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다.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28일 壬申

최세절로 하여 만포에서 야인 탐문을 하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등이 정청(政廳)에서 아뢰기를, “만포(滿浦)는 곧 심처야인(深處野人)이 왕래하는 곳이라 그들의 정황을 탐문하는 일이 더욱 중한데, 근자에 탐문한 사변(事變)을 상세히 계문(啓聞)하지 못한 것은 필시 식견과 문장이 짧은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극균(李克均)이 이 소임을 맡아본 일이 있었으니, 이제 문신(文臣) 가운데 재간(才幹)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자급(資級)을 따지지 않고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매, 곧 최세절(崔世節)·반석평(潘碩桴)·유옥(柳沃)을 의망하니 최세절에 낙점(落點)하고 ‘초삼자(超三資)’라고 어서(御書)하였다. …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6일(庚辰)

군사 통섭이 없어 정로위에 입적시켜 통제할 것을 의논드리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김응기(金應箕)·우의정 신용개(申用溉)·우찬성 김전(金詮)·지중추부사 안윤덕(安潤德)·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좌참찬 이계맹(李繼

孟)·호조 판서 안당(安瑯)을 불러 보고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일어나는 재변은 이미 우연한 것이 아니지만, 평안도 일대의 일이 더욱 급하기에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하매, … 고흥산(高荊山)은 아뢰기를, “무릇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취재 군사(取才軍士)는 경중(京中)과 양계(兩界)의 인원을 총계하면 도합 1만 2천여 인이 되며, 정로위(定虜衛)에서 취재(取才)한 사람이 또 7백여 인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모두 통섭(統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흩어진 채 기율이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도 군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계에서 취재한 사람들은 한액(限額)에 구애되어서, 구전(口傳)을 얻지 못한 채 서울에 있으면서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이들을 정로위에 입적시켜서 기율이 있게 하면 통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0일(甲申)

상국의 제명과 관련하여 권도를 따를 것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좌찬성 김전(金詮)·예조 판서 권균(權鈞)·한성부윤 윤순(尹珣)·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호조 판서 안당(安瑯)·이조 판서 남곤(南袞)·집의 유관(柳灌)·장령 정순봉(鄭順朋)과 소세양·지평(持平) 이우(李佑)와 한충·대사간 이언호(李彦浩)·사간 최명창(崔命昌)·헌납 민수원(閔壽元)·정언 허위(許渭)·부제학 이자(李紆)·전한 김경(金淨)·응교 김희수(金希壽)·교리 윤자임(尹自任)과 이청(李清)·부교리 조광조(趙光祖)·부수찬 기준(奇遵)·정자 박윤경(朴潤卿)과 안처순(安處順) 등이 명을 받들어 주청(奏請)에 관한 일을 회의하였다. 두 정승은 이에 관한 건의(建議)가 당초 자신들에게서 나왔으므로 말하지 않고, 권균·김전·윤순·고형산·안당은 의논드리기를, “국모(國母)로서 제명(帝命)이 없다는 것은 경례(經禮)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도(西道)에 모두 흉년이 들었는데 상국(上國)의 사신이 와서 제명을 전한다면 그 치다꺼리와 대접을 그 일대에서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즉위하실 때에 고명(誥命)을 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권도(權道)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 같기도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15일(己丑)

대신들이 주청사를 한꺼번에 보낼 것을 아뢰니 따르다

김전(金詮)·윤순(尹珣)·고형산(高荊山)·안당(安瑯)·이유청(李惟淸)이 의논드리

기를, “평안·황해 양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공사(公私)가 모두 어렵고 백성들은 장차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구제할 방책이 없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엔 왕비 책봉하는 대사를 상국에 주문(奏聞)하는 것은 이를 비록 늦출 수는 없다 해도 양사(兩使)가 한꺼번에 가게 되면 일로(一路)에서 공궤하는 폐가 얼마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대의(大義)에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하고, 대간과 홍문관의 의논도 같으니, ‘의논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일(丙午)

달자의 일에 대비함을 아뢰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황해도 군사로 평안도에 가서 방수하는 자의 체대(遞代)가 잦아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하므로 가까운 고을의 사람으로 방수하게 했으나, 전년부터는 달자(獐子)가 군사를 점점 많이 모아 가니, 이 때문에 황해도에서도 부방(赴防)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제 동거우합(童居于哈) 【오랑캐의 이름이다. 의리를 사모하여 우리와 서로 교통하는 자이다.】 의 말을 듣건대 ‘근일에는 인마(人馬)가 함께 지쳐서 거사(舉事)할 수 없으니, 얼음이 언 뒤에 다시 거사할 것이다 하더라.’ 하니, 저들의 말이 공하(恐嚇)인 듯하기는 하나 얼음이 언 뒤의 일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계의 정로위 취재자(定虜衛取才者)를 더 구전(口傳)하여 미리 계획(規劃)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달자의 일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일이 있기 전에 도모해야 하리라.”하였다.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5일(戊申)

묘현·절의 등의 일을 군신에게 연방하다

상이 묘현(廟見)·절의(節義) 등의 일을 군신(群臣)에게 연방하였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묘현의 일은, 신 등이 당초의 의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위낙 거행해야 할 예(禮)이나, 친영(親迎)도 우리 나라에서는 행하지 않던 것을 행하였는데, 행한 뒤에 마땅하다고도 하고 마땅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용례(隆禮)를 아래에 보이는 것이니 무방합니다. 이 묘현으로 말하면, 당(唐)·송(宋)에서 이미 행하였다고는 하나 예전과 지금은 마땅한 것이 다르며, 우리 나라는 남부(男夫)의 예도(禮度)도 소활(疏濶)한데 부인(婦人)의 예도는 맞게 할 수 있을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또 되도록 간실(簡實)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부녀(婦女)의 종자(從者)가 많

지 않겠습니까? 고례를 행하려 하다가 지금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 선왕(先王)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절의의 일은, 국가에서 원기(元氣)를 배양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길재(吉再)·정몽주(鄭夢周)는 선왕조(先王朝)에서도 포장(褒獎)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근래 폐기하고서 수거(修擧)하지 않으므로 신명(申明)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좋은 뜻입니다.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의 일로 말하면, 당대에는 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젊은 유사(儒士)가 이것을 말하면, 상께서는 그런 줄 알고 마실 뿐이요, 절의가 가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도의 일은, 신상(申鏞)에게 이야기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나, 신상(申鏞)도 범상한 사람이 아니므로 저들을 접대하는 일과 변방의 방비에 관한 일들은 다 그 마음으로 처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하고, 우의정 신용개(申用溉)·좌찬성 김전(金詮)·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좌참찬 이계맹(李繼孟)·호조 판서 안당(安瑬)·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세환(韓世桓)·예조 참판 조계상(曹繼商)·병조 참판 유미(柳湄)·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한성부 좌윤 윤희평(尹熙平)·이조 참판 김극필(金克愾)·한성부 우윤 이자화(李自華)·공조 참판 방유령(方有寧)·공조 참의 정광국(鄭光國)·호조 참의 박소영(朴召榮)·병조 참의 서극철(徐克哲)·참지(參知) 박호겸(朴好謙) 등의 계사(啓辭)도 같았다. …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9일(壬子)

대신들이 정몽주 문묘 종사, 김굉필 등의 문묘 종사에 관해 의논드리다

정부(政府)·육조 장관(六曹長官)·대간·홍문관을 명소(命召)하여 정몽주·김굉필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광필·신용개·김전·고형산·이계맹·안당·조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우리 나라의 이학(理學)의 시조입니다. 서울에 오부 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외방(外方)에 향교(鄉校)를 둔 것이 다 그의 기획(規畫)이며, 당시에 상제(喪制)가 크게 무너졌는데 가묘(家廟)를 세우고 삼년상(三年喪)을 행하였으니 사문(斯文)에 대한 그의 공이 큼니다. 또 왕씨(王氏)의 말기에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 늙음(凜然)하였던 이는 오직 이 한 사람뿐입니다. 문묘에 종사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도 역조(歷朝)에서 빠뜨렸으나, 어찌 스스로 위신(僞辛)을 섬겼으므로 큰 흠이 있다 하여 그리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굉필은 학행(學行)이 독실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추복(推服)받았으나, 성경(聖經)을 드러내고 사도(斯道)를 도운 것이 사공(事功)에 나타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릇 사전(祀典)에 실린 것을 가벼이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

습니다.”하였다. … 정광필·신용개·김전·고형산·이계맹·안당·조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굉필·정여창은 학술이 순정(醇正)하고 천리(踐履)가 독실하여 한때의 학자들이 함께 추복(推服)하였는데, 폐조(廢朝)에서 김종직(金宗直)의 문도(門徒)라 하여 죄를 입었으므로 당시에 그 무고(無辜)함을 민망히 여겨 관례에 따라 증작(贈爵)하고 이미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드물게 나는 바이므로 관례에 따라 증작하는 것으로는 특이함을 표창하기에 부족하니, 더 증작하고 그 아내에게 해마다 관곡(官穀)을 내리고 다시 자손을 녹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정광필·신용개·김전·고형산·이계맹·안당·조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심원(深源)은 선견지명이 있어 소인이 나라를 그르칠 것을 염려하여, 분연히 사친(私親)을 돌보지 않고 임사홍(林士洪)이 간사하여 조정(朝政)을 어지럽히는 꼬투리를 힘써 밝히매, 성묘(成廟)께서 빨리 임사홍을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으나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간사를 환히 알지는 못하였는데, 폐조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친 것이 모두 심원이 생각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심원 부자가 집을 잇고 나라를 위하였으나 모두 임사홍의 손에 빠져 마침내 큰 화(禍)를 입으니 국인(國人)이 슬퍼하였습니다. 그 충의(忠義)가 가하니, 더 증작하고 정려(旌闡)하고 그 후손을 녹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癸亥)

대신들이 금은의 유출 방지책 등에 관해 의논하다

정광필·신용개·고형산·남곤·한세환(韓世桓)이 의논드리기를, “금은을 몰래 가져가는 것에 대한 금령(禁令)은 이미 더할 수 없이 상세하고도 엄중한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경(赴京)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짐의 수에는 본디 법에 따른 정한(程限)이 있으니, 사(使)와 서장관(書狀官)을 시켜 본인이 본디 가져갈 수 있었던 물건과 중국에서 준 물건을 점검하고서 산 것은 수에 맞추어 헤아려 보아, 과당(過當)한 물건은 모두 관에 몰수하고 죄를 다스려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게 하면, 중한 법을 쓰지 않더라도 절로 외람하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장관은 일행을 검찰하므로 그 직임이 중한데 으레 감찰(監察)을 차출하여 보내므로, 직질(職秩)이 낮고 경력도 적어서 단속할 때에 흔히 소홀하게 되니, 요즘에 금령을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정관(質正官)은 전에 선발을 거쳤으므로 일에 익숙한 사람이 많으니, 이 뒤로는 감찰 중에 마침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질정관에게 어사직(御史職)을 겸대(兼帶)

시켜서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 사체(事體)가 엄중하여 전일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릇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상언(上言)하여 진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어진 정치이나, 근년에 간사한 마음으로 협잡하는 무리가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억울한 말을 만들어서 진소하여 마지않는 것도 매우 어지러워서 치도(治道)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릇 형륙(刑戮)이 자신 또는 부자(父子)에 미치거나 적첩(嫡妾)·양친(良賤)을 분간하는 등 정리(情理)가 절박한 것은 세 번의 정소(呈訴)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밖의 사송(詞訟)은 두 번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丙子)

폐조 때 귀양 간 자들을 방면하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 이윽고 영의정 정광필 등을 인견하여, 무뢰배(無賴輩)로서 폐조 때에 권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지었다가 원방(遠方)으로 귀양간 자들을 댄먼저 의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귀양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거니와, 유식한 자일지라도 폐조의 난정(亂政) 때에는 역시 꺼림없이 폐단을 짓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이 어리석은 무리이겠습니까? 범한 일도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니 방면하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다 사죄(死罪)에서 감사(減死)되었으므로 혹 적몰(籍沒)된 자도 있으니, 어찌 폐단을 지은 자와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 중에 노(奴)로서 제 주인을 엮어매고 족류(族類)를 모해(謀害)한 자가 있는데, 다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이니 가볍게 방면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그 경중을 상고하자면 의거할 데가 없으니, 좌우에게 물어서 처치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경중을 분간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니 다 방면하여도 괜찮겠다.”하였다. 우의정 신용개가 아뢰기를, “당시에 죄를 얻은 사람은 경중 또한 반드시 알맞지는 않아서 혹 죄명(罪名)을 정하지 않고 죄를 정한 자도 있고, 그 죄명을 적지 않고서 후일에 상고하기로 한 자도 있습니다. 과연 노로서 주인을 엮어맨 자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방면할 수 없겠으나, 그 밖의 무식한 자라면 죄를 입은 지 이제 12년이 되었으니 방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의(衆議)를 취해서 처치해야 합니다.”하고, 예조 판서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과연 그때에는 소문에 따라서 죄주었으므로 혹 죄가 있어도 죄를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며, 또 지금 죄명이 없으면 그 경중을 상고해야 하겠으나, 특은(特恩)을 베푼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체 방면해야 합니다.”하고, 좌찬성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라도 귀양간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으니 너그러운 법을 써야 합니다.”하고,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이 일은 분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때에 가산(家産)을 적몰당한 자는 거의 다 중죄(重罪)여서 해조(該曹)에도 반드시 적몰에 관한 문안이 있을 것이므로 의거할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륜(彝倫)을 무너뜨린 자는 상사(常赦)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죄를 입은 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범한 죄의 경중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으나, 사실을 추문(推問)하지 않고 또 그 죄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적몰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니, 죄다 놓아 주어야 마땅하다.”하였다. … 또 내관(內官) 박인손(朴仁孫)의 일 【박인손은 전에 이어소(移御所) 동구(洞口)의 군사 지키는 곳에서, 말을 탄 채로 들어가다가 도리어 말리는 군사를 때렸다.】을 논하였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그때 신(臣)이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로서 늘 이어소에 있었으나 들은 일이 없으며, 가승지(假承旨) 이맥(李陌)도 이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어느날 보니, 내관 박경례(朴敬禮)가 평소에 병이 있으므로 말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데 지키는 군사가 말리니 박경례가 채찍으로 때리고는 바로 들어오다가 신을 보고 놀라서 말에서 내리다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박경례를 박인손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오래 전의 일이므로 확실하게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하고,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박인손을 추핵(推劾)하였는데, 말을 타고 바로 들어간 것으로 말하면 의심없이 확실하나, 군사를 때린 것은 다소 의심이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일은 물어 볼 만한 사건인(事干人)이 없으나, 승지(承旨)·사관(史官)은 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이제 이미 죄를 입었으니, 놓아 주는 것이 어떠한가?”하매,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은 그 일을 모르나 이미 정죄(定罪)하였으니 놓아 주어도 괜찮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정죄할 때에 사건인을 추문(推問)하지 않았으니, 이제 놓아 주어야 하겠다.”하였다. …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폐조(廢朝) 때에 폐단을 지어 정속(定屬)된 사람들이 범한 죄의 경중은 형조를 시켜 상고하여 아뢰게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 경중을 분간해야 하겠으나, 당초에 이미 소문에 따라 죄를 정하였으니 이제 그 정상을 따져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5일(丁丑)

함경도, 제주도, 평안도 등 문제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다

… 또 역적 이시애(李施愛)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난역(亂逆)의 연좌에 대해서는 본디 국법이 있고, 또 이것은 조종조(祖宗朝)의 일이므로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듯하니 가벼이 놓아 줄 수 없다.”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과연 조종조의 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종조에서 거의 다 소방(疏放)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입니다.”하고,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관찰사였으므로 북도의 인정을 아는데, 북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제껏 이시애를 옳게 여기니, 지금 경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좌우의 뜻이 다 경중을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니 의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논할 것 없다.”하였다. 또 역적 이과(李顒)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참으로 반역하였다면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정묘년의 일이므로 내가 친히 아는데 워낙 큰 죄였다. 동생은 놓아 줄 수 없으나, 삼촌 같은 사람들은 함께 의논할 만하다.”하매, 신용개가 아뢰기를, “이과의 일은 반역한 것이 지극합니다. 다만 변변치 못한 마음은 가졌으나 일에는 드러나지 않았고, 난을 일으키려 꾀했다는 날 이과는 아버지의 무덤에 있었다고 하므로,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기 바라는 물론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추관(推官)이 이제는 다 없으니 그 경중을 물을 수는 없으나, 삼촌 같은 무리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아랫사람으로서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역란(逆亂)에도 경중이 있고, 옛 제왕의 도리로 논하면 죄가 서로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재단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하고,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잡아오던 날에 아버지의 무덤에 있었다고 하였다면 이것은 말이 변변치 못한 것에 불과하니, 상께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하고, 정광필·신용개가 같은 말로 아뢰기를, “마음만 가졌더라도 그 죄가 큼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생과 삼촌은 역시 차이가 있으니, 삼촌은 놓아 줄 만하다.”하매, 유운(柳雲)이 아뢰기를, “이과의 삼촌은 이미 놓아 주었으니, 손유(孫洧)의 삼촌도 이과의 삼촌과 같은 예로 처리하리까?” 【손유는 이과와 같은 때에 함께 죄를 입은 것이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가 같으면, 같은 때에 함께 죄를 입은 사람은 모두 놓아 주라.”하였다. … 또 김종서(金宗瑞)·이석정(李石貞)·송석동(宋石洞)·안호인(安好仁)·정유(鄭惟)·봉석주(奉石柱) 등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정해년보다 오랜 일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다 조종조의 일이니 분간할 수 없을 듯하다.”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 중에서 살아 있는 자는 얼마 없고, 그 자손 중에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한 자가 있으면 이미 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

통(許通)되지 못한 자는 먼 곳에 귀양하고 매우 미열(迷劣)하여 진소하지 못한 자들뿐입니다.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상고할 빙거가 없습니다.”하고, 정광필·고형산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이제 60여 년이 된 일이니 의논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래되었으니 의논할 수 없다.”하였다. … 또 정건(鄭鍵)이 진(鎭)을 버리고 제 집으로 미리 돌아간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변방 진에 관한 일이므로 중시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제 마음대로 진을 떠났으니 아주 그럽니다.”하고, 좌우가 다 아뢰기를, “이런 일은 꼬투리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 때문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까닭없이 마음대로 돌아왔는가? 참으로 병을 앓았다면 용서해도 될 듯싶다.”하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병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릴까봐 나온 것입니다.”하고, 신용개(申用溉)가 아뢰기를, “판관(判官)도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저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런 일은 꼬투리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이미 매우 피폐하니, 새 목사(牧使)를 빨리 부임시키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제주는 왕화(王化)가 잘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그 사람들이 마치 오랑캐와 같으니, 반드시 어진 목사를 얻어야 그 백성이 생업에 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건(鄭鍵)은 본디 추고해야 하겠으나, 병이 있다면 절로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추고할 것까지야 없지 않겠는가?”하매, 좌우가 다 아뢰기를, “마음대로 대진(大鎭)을 떠난 것은 매우 옳지 않은데, 이런 일을 너그러이 용서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관례가 될 것이니, 꼬투리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추고를 마치도록 하라.”하였다. …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요즈음 평안도의 계본(啓本)을 보니 ‘달자(獐子)가 「조선이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게 하였다.」 한다.’ 하였습시다. 근거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까닭은 우리 변방을 침노하려고 꾀하는 것인데, 지금 그에 대한 조치에 뜻을 두지 않으면 괜찮겠습니까?”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 적(賊)이 말썽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침노할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본도(本道)의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을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지금 신칙(申勅)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그 도에는 예전에 용맹한 군사가 없었고, 근래로 초출(抄出)하여 분방(分防)하나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 적이 ‘얼음이 언 뒤에는 군사를 보내어 지게 한 원수를 갚겠다.’ 하니, 국가의 방어에 관한 조치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 재변(災變)이 잇달고 평안도의 성식(聲息)이 끊이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변방의 말썽이 있을 듯하며 퇴(虜)의 정상도 보장할 수 없으니, 방어에 관한 조치를 각별히 하도록 하라.”하였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정은

부(鄭殷富)는 수사(水使)로 재임할 때에 상(喪)을 당하였다가 이제 상을 벗고서 임관하였으나, 신이 듣기로는감사(監司)에게 정사(呈辭)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재(武才)가 있는 쓸만한 사람이며, 지금 무반(武班)의 통정(通政)과 2품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정은부에게 하서(下書)하시어 불러와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은부는 본시 무재가 있으니 불러와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서 한산한 자리에 있는 자가 또 있으면 역시 불러서 써야 한다.”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이순(李珣)이라는 자는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정사하고 돌아갔으나, 그 계모(繼母)의 나이가 많지 않으니, 이 사람도 불러서 써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은 서반(西班)의 상당한 벼슬에 서용하도록 하라.”하매,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계종(申繼宗)도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거전(居殿)하였으므로 2년이 지나서 서용(敍用)해야 하겠으나, 이 사람도 서반(西班)의 벼슬에 쓸 만합니다. 지금 위장(衛將)들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게 되어도 모두가 궁시(弓矢)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들이며, 혹 문신(文臣)이 있고 남행(南行)도 있으나 다 늙었으므로 이런 사람들은 급한 일에 위낙 보탬이 없으니, 일이 없을 때에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19일(辛卯)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0일(壬辰)

고형산이 사직을 청하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전대간이 이성언(李誠彦)에게 죄를 주도록 힘껏 청하지 않은 것은 과연 잘못인데, 양팽손이 그것을 공박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양팽손을 잡고, 또 홍문관이 아뢰에 따라 대간을 죄다 가셨습니다. 전일 연방(延訪) 때에 신도 ‘정언의 소(疏)가 지나치기는 하나 죄주기를 청하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된다.’ 하였으므로 신의 생각은 전대간과 서로 같으니, 반드시 후대간과 맞지 않을 것이며, 또 재질이 못나서 풍헌(風憲)의 장(長)에 합당하지 않으니 사직시켜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논박받은 대간은 재직할 수 없으므로 간 것이요, 이성언을 죄주기를 청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다. 신대간의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니 맞지 않으리라고 미리 생각할 수 없다. 경(卿)이 어찌 풍헌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사직하지 말라.”하매, 네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1일(癸巳)

대간에서 고흥산을 논핵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대사헌 고흥산(高荊山)은 대의(臺議)와 맞지 않으므로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니, 빨리 갈아 주소서.”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형산이 이미 대간의 의논에 화합하지 않는다면 갈아야 하리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癸丑)

헌부가 고흥산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것을 추고하자고 아뢰다

헌부가, 고흥산(高荊山)이 관비(官婢)를 사첩(私妾)으로 삼은 것을 추고하자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소방(疏放)하기 전에 있는 일인데 또한 추고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甲寅)

헌부가 고흥산을 추국하고 군령을 범한 지한생·윤홍상·한사개를 죄주라고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소방(疏放)은 일시의 특은(特恩)이요 사례(赦例)가 아닙니다. 고흥산은 유식한 재상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말로 답함(答緘)하고 관비를 돌려보낼 뜻은 조금도 없으니, 깊이 캐서 추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고형산의 일은 공범자를 이미 대신에게 물었으니, 마땅히 물어보아야 하리라. …”하였다.

○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丙辰)

검상 유돈이 삼공의 뜻으로, 고흥산은 이미 소방하였으니 추국하지 말라고 아뢰다

검상(檢詳) 유돈(柳墩)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고형산 등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일은 전에 이미 소방(疏放)하였으니, 그만두어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헌부에 말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5일(乙卯)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0일(己卯)

대신들이 의논하여 17일에 수축을 마치고 19일쯤 친행하기를 아뢰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신용개(申用溉), 예조 판서 권균(權鈞), 좌찬성 김진(金諡), 좌참찬 고형산(高荊山), 우참찬 최숙생(崔淑生), 예조 참판 조계상(曹繼商), 참의(參議) 이성동(李成童)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간의 아뢰 바는 신 등이 이미 들었습니다. 당초에 성상께서 지성으로 즉시 친제하려 하였으나, 신 등이 어찌 차마 태연히 2식경(息頃)이나 되는 험한 진흙길을 배행(陪行)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또한 친제하고자 하시나 공사를 시작하여 사토(沙土)와 모든 공구(工具)가 능묘에 있습니다. 만약 친제한다면 반드시 모든 잡물(雜物)을 다시 옮겨야 할 터이며 따라서 소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의도가 이미 수축이 끝난 뒤에 친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늘에 계시는 영령(英靈)도 반드시 살피실 것입니다. 17일에 수축을 마치면 19일쯤 친행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2일(辛卯)

대사헌 고형산과 정언 김공예를 체직하도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고형산(高荊山)은 헌장(憲長)에 합당하지 못하고, 정언(正言) 김공예(金公藝)는 배향관(陪享官)으로 재숙(齋宿)하지 않고도 그 이유를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체직하소서.”하니, 【이날 형산(荊山)이 대사헌이 되었다.】 ‘모두 체직하라.’ 답하였다.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6일(乙未)

정로위 폐단에 대해 아뢰다

… 영사 신용개가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매양 정로위(定虜衛)를 더 설정하고자 하여 그 당시 군사의 보솔이 될 자를 모두 정로위로 만들었는데 이 또한 매우 불가합니다. 그 후에는 함경도(咸鏡道) 사람으로 정로위가 되고자 하는

자를 허락해 주자고 하였으며, 별군(別軍)을 보내지 않아도 군사가 넉넉하다 하여 처음에는 1천 명을 정하고 후에 또 5백 명을 첨가하였으니, 이 역시 불가합니다.”하고, 정언(正言) 최산두(崔山斗)는 아뢰기를, “정로위를 설치한 후부터는 사람들이 다투어 붙고자 하였는데 모두 역(役)이 없다고 합니다. 전일에 조사의 보솔이 될 자가 모두 정로위가 되므로 정병(正兵)·갑사(甲士)로서 보솔을 둔 자는 겨우 10에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병액(兵額)을 허장(虛張)하는 것이나 실은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庚戌)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4일(壬申)

대신들이 희우의 변고를 당하여 대제를 지내는 절차를 논의하다

강훈(姜渾)·장순손(張順孫)·안당(安瑯)·고형산(高荊山)·이유청(李惟淸)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태묘(太廟)에 제사를 올리려 할 때 이와 같이 희우의 변고가 있었습니니다. 《예기(禮記)》를 상고하건대 ‘제우(帝牛)가 불길하면 직우(稷牛)로 대처한다.’ 한 그 주석에 ‘제우가 불길하여 혹 죽는다면 직우로 대용한다.’ 하였고, 그 직(稷)에 제사하는 소는 임시 별도로 취택한 소를 썼으니, 옛날에 희생(犧牲)의 변고가 있어도 제사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사시(四時)의 대향(大享)은 정해진 행사라 능침(陵寢)·원묘(原廟)도 같은 날 제사를 지내니, 내일의 행사는 물릴 수 없습니다. 재변을 만나 경구(警懼)한다는 사유의 제문을 지어 몸소 경의(敬意)를 펴고, 또 끝없는 뜻으로 특별히 친제(親祭)를 행하여 다 하지 못한 경의를 펴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8일(丙子)

승건의 관작을 추탈하고 이심을 녹용하지 말기를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 이심(李諶)은 곧 승건(承健)의 아들인데, 승건이 폐조 때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부임해 가는 도중 단천(端川) 마곡역(麻谷驛)에 도착하여 그 벽상에 이종준(李宗準)이 써서 붙인 이사중송당개시(李師中送唐介

詩)에 시대를 개탄한 뜻이 있음을 보고, 승건은 폐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그것을 뜯어다 알리려 하니, 고흥산(高荊山)이 그때 도사(都事)로서 굳이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치계(馳啓)하였습니다. 폐주는 그것을 보고 노하여 중준뿐만 아니라 무풍정(茂豊正)의 여섯 부자를 일시에 배었으며, 무오년에 일어난 사림의 화가 끝내 종사(宗社)를 망치게 할 지경이었으니, 처음 아뢰는 자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유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의 유이다.】 그것을 확대시킨 자는 승건입니다. 소인의 후예를 어떻게 녹용(錄用)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승건의 관작을 추탈(追奪)하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소서. … ”하였다. …

○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5일(癸巳)

궁각·서책 이외의 것은 무역하지 말라고 전교하고, 천거로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궁각(弓角)·서책(書冊)·약재(藥材)야 어쩔 수 없이 상국(上國)에서 사들여야 하지만, 그 외에는 토산(土產)이 있으니 사들일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무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사(通事)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방자히 횡행한다. 그 근원을 막아 폐단을 없애고자 하니 해조(該曹) 및 정부(政府)에 물으라. 우리 나라가 사용하는 의장(儀章)에 당물(唐物)을 많이 사용하니 장차 어떤 물건으로 대처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또 이희용(李希雍)의 정국 공신(靖國功臣) 사적에 대한 가부도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진천군(晉川君)강혼(姜渾),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진(金詮), 좌참찬 유담년(柳聃年), 우참찬 최숙생(崔淑生),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참판 이자견(李自堅), 참의 김굉(金砮)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나라에서 쓰는 의장에서 양산(涼傘)·연식(輦飾) 같은 것은 향주(鄉紬)로 물들여서 쓸 수 없고, 어복(御服)의 곤룡포(袞龍袍)와 갑용의 초단(綃段)도 향직(鄉織)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하나 우리나라 실로는 짤 수 없으니, 부득이 중조(中朝)로부터 그 실을 무역해야 합니다. 또 주렴(珠簾)을 꾸미는 실과 장책(粧冊)하는 실은 향사(鄉絲)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석선필단(席繕匹段) 역시 면주(綿紬)로 대용할 수 있으나, 향사는 백성에게 분정한 뒤에 쓸 수 있으니, 이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어찌 통사의 작폐로 인해 어복(御服)을 폐지하겠습니까. 대용할 수 있는 실은 그만두더라도 직조사(織組絲)는 중조로부터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표리(表裏)의 상사(賞賜)만은 지금 모두 토산물을 쓸 수 있으니, 부질없이 중조로부터 무역할 것은 없습니다. 요는 나라에 저축된 단필(段匹)을 참작하고 해조(該曹)

로 하여금 가감하여 무역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신하로서 하찮은 공로로 훈적(勳籍)에 올랐더라도 일단 오른 이상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대죄(大罪)가 아니라면 어찌 함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공신을 삭적(削籍)하지는 의논이 당대에 나오니, 추개(追改)하지는 의논이 없는 세대는 없으나, 이렇게 하고서야 백성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이회옹의 일이 비록 윤장(尹璋)과 같으나,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하고, 장순손·남곤·안당·고형산·유담년·최숙생의 의논도 같았다. … 강혼(姜渾)·장순손(張順孫)·김전(金詮)·남곤(南袞)·고형산(高荊山)·이유청(李惟淸)·손주(孫澍)는 의논드리기를, “천거로 인재를 뽑는 것은 그 명칭은 좋으나 그 실지를 궁구하면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재행(才行)을 겸비한 사람은 대개 적은데, 혹은 행실은 고상하나 재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재주는 좋으나 행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재행으로 천거하고 뒤에 문예로 뽑는다면 그 사이에 본의를 잃는 일이 많아, 행실이 고상한 자가 모두 합격하기를 기필할 수 없을 것이며, 덕행을 앞세우고 문예를 뒤로 하려는 본의에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송조(宋朝)의 정 명도(程明道)·주 문공(朱文公)은 공(孔)·맹(孟) 이후 도통(道統)을 전한 분인데 모두 과거를 거쳐 출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인재를 얻는 것이 어찌 한(漢)나라 때의 효렴과(孝廉科)·현량과(賢良科)만 못하겠습니까? 수(隋)나라 이후 역대로 과거를 폐하지 아니한 것은 까닭이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천거된 사람은 다 녹용하고 있고, 그 중에 재행이 겸비한 사람은 스스로 유사(有司)의 시험에 나와 과목(科目)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별도로 한 가지 과목을 세워 옛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7일(乙巳)

《대명회전》에 기록된 태조의 피무에 관한 일로 조정 신료들이 모여 숙의하다

재신(宰臣)과 육조 당상 및 홍문관·대간에 명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수록된 우리 태조(太祖)의 피무(被誣)에 관한 일을 변정(辨正)하여 주달(奏達)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권정(闕庭)에서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鄭光弼)·이손(李孫)·장순손(張順孫)·김전(金詮)·남곤(南袞)·안당(安瑯)·고형산(高荊山)·이자건(李自健)·홍숙(洪淑)·유담년(柳聃年)·이유청(李惟淸)·심정(沈貞)·조원기(趙元紀)·조계상(曹繼商)·황맹헌(黃孟獻)·손주(孫澍)·이자건(李自堅)·윤희평(尹熙平)·김극필(金克幅)·박광영(朴光榮)·김굉(金砮)·조방언(趙邦彦)·윤은필(尹殷弼)이 의논드리기를, “선조(先祖)

가 무고 당하는 것을 보고서 시급히 씻어 버리고자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말(顛末)을 개진(開陳)하여 명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해야 합니다. 허락하여 개정해 줄는지의 여부는 꼭 기약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잘못 전해진 것을 소상하게 알게는 될 것이니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5일(癸丑)

지진에 관해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있는 지진은 실로 막대한 변괴라 내가 대신들을 불러 보고자 하니 시종(侍從)은 그들을 부르라.”하였다. … 이때에 밤이 이미 2경(更)이었으므로 대신이 모두 유문(留門)으로 나갔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광화문(光化門) 밖에 모여서 면대(面對)하기를 청하니, 곧 유문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대사헌 고흥산(高荊山)·대사간 공서린(孔瑞麟) 등이 입시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지진은 보통 변괴가 아닌지라, 처음부터 매우 놀라운 나머지 곧 대신을 불러서 물어보았거니와, 대간이 합사하여 와 있다 하기에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여 이제 소대(召對)하는 것이다.”하매, 고흥산이 아뢰기를, “오늘의 지진은 고로(古老)들도 모두 평생에 들어 보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중(司中)의 뜻은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하면 이런 재변(災變)이 생기는 것이다 하고, 상께서는 군자(君子)를 부르고 소인(小人)을 물리치려 하니 또한 지극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인이 다 물러가지 아니하고, 몰래 화심(禍心)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5일(癸丑)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乙卯)

호조에 고흥산을 추천하다

… 상이 이르기를, “지도는 본래 고요한 것인데 흔들렸으니 고요한 것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는 말은 옳다. 어제 대신을 만나서 물어보니, 혹 말하기를 ‘조정이 화목하면

만민이 화목하고, 민심이 화목하면 천지의 화기(和氣)가 응하는 것이다.’ 하니, 재변에 응답하는 일은 진실로 인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병상(兵象)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나는 유담년(柳暉年)이 병조 판서를 맡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문신(文臣)에는 고흥산(高荊山)·이장곤(李長坤)이 있고 무신(武臣)에는 유담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호조 판서의 직임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연소(年少)한 신하들이 재리(財利)를 속무(俗務)라 하여 말하지 않지마는 재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조의 직임이 가장 중한데, 고흥산을 대사헌으로 바꾼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미편한 줄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사(兩司)가 김극필을 논하여 호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니 이 사람이 과연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극필도 인물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조의 직임에는 고흥산(高荊山)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안당(安瑯)이 아뢰기를, “김극필의 위인에 대해서는 신이 오랫동안 함께 벼슬을 하였거니와 그의 재기(才器)는 불가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소장(所長)이 있는 것이니, 호조의 직임은 반드시 고흥산처럼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乙卯)

장순손의 탄핵 문제로 의논하다

대간에 전교하기를, “이제 대신의 말을 들으니 모두 장순손(張順孫)이 그렇게 음험한 줄은 모른다고 한다. 내 생각에도 순손이 벼슬을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사리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였겠는가 한다. 더구나 그는 폐조(廢朝) 때 거의 죽을 뻔한 화(禍)를 겪어서 자신이 참담한 일을 당하였고, 반정(反正) 이후에는 지위가 아상(亞相)에까지 이르렀는데 무슨 한되는 일이 있어서 사림(士林)을 해하려 하겠느냐? 그러나 순손은 변방의 일을 모르며 또 남에게 말을 들었으니, 직을 갈아서 허물을 알고 스스로 누우치게 함이 옳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사(兩司)의 장관이 친히 아뢰게 하라.” 하며, 대사헌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장순손이 음험한 마음을 가지고 사류(士類)를 배함(排陷)코자 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재변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실로 군자·소인의 소장(消長)이 기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상차(上劄)하여 논하였으니, 이 일은 결코 대신에게 물어본 뒤에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이 비록

그를 가리켜 소인(小人)이라고 명백히 배척하지는 않았지마는 그 뜻은 신 등이 아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그를 먼 곳으로 쫓아내소서. 뒷날 그가 허물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것은 논할 일이 아닙니다. 조계상은 말하기를 ‘임금이 옛일을 사모하므로 소인들이 옛일을 끝어다가 그 뜻에 영합하니 허위가 풍조를 이루었다.’ 하였는데, 이 한마디는 실로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실덕(失德)하는 일이 계속될 때에 신하가 그 뜻에 영합(迎合)한다면 이는 실로 소인이겠지마는 상께서 옛날 제왕의 치덕(治德)에 뜻을 두고 계시는데, 신하가 이에 영합(迎合)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을 승순(承順)하는 것이니, 무엇이 불가해서 ‘소인’이라는 말까지 합니까? 이는 그가 우선 상의 마음을 현혹시키어 상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시는 마음을 막은 연후에 한때의 사군자를 배합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흉칙스런 계략이 이미 언어 사이에 드러나고 말았으니 역시 먼 곳으로 쫓아냄이 마땅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丁巳)

조계상과 장순손 등의 일을 아뢰나 윤택하지 않다

… 대사헌 고흥산(高荊山)과 대사간 공서린(孔瑞麟)이 합사(合司)하여 장순손·조계상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계상은 파직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하고, 부제학 조광조 등이 조계상·장순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역시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丁巳)

장순손과 조계상을 유지광과 임사홍에 비유하며 탄핵하는 고흥산 등의 상차

고형산(高荊山) 등이 또 상차(上筮)하기를, “신 등이 들건대 ‘그 형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그림자를 살펴야 한다.’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일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일이 이미 나타난 뒤에야 무엇을 다시 기다립니까? 이제 장순손과 조계상의 간흉(奸兇)한 정상을 전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고서도 흑단안을 내리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쟁신(諍臣)과 시종(侍從)이 연방 글을 올려 공격을 하니 그의 간흉한 정상은 이미 예감(睿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하께서는 더욱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는 곧 전하께서 간인(奸人)들의 술책에 젖어든 지 오래되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날 말하는 이들을 조금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전에 분별하지 못하시고 또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간흉들이 근거를 잡고 임금은 고

립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세히 아시면서도 진퇴(進退)를 어렵게 여기시고 잠잠한 채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곧 곽공(郭公)이 멸망한 길을 그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그대로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임금은 직사(職事)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명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을 구별해서 진퇴케 하는 것이 그 직사이니, 그 진퇴할 바를 알진대 마땅히 그 기미를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미가 보이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시다가 그들이 점점 불어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들 될 것입니다. 천길 제방의 독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흉물을 아주 멀리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어 틈을 보아 준동하여 그 술책을 부리게 되면, 전하께서 어찌 스스로 성명(聖明)을 보존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나라를 망치고 어지럽게 한 자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신 등이 늘 멀리서 끌어다가 비유하지 않고 매양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의 일을 가지고 거듭 논변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와 여러 신하들이 다 함께 목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살필 일을 살피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에 경계하지 않으시며,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여 기미를 놓치게 되면, 흉모(兇謀)는 더욱 방자하고 간술(奸術)은 날로 드러나서 그의 권세를 거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조만간에 화란(禍亂)이 일어나 조정의 신하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易)》에서는 ‘분시지상(獮豕之象)을 중히 여겼고, 《서경(書經)》에서는 ‘거사지계(去邪之戒)를 신중히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흉물을 죄주는 법을 바로하심으로써, 군자는 믿을 데가 있고 소인은 두려운 것이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 모두 찬축할 수 없다.”하였다.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丁巳)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2일(庚申)

사졸을 휴양시켜 변방을 강구해야 함을 아뢰다

...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이번의 재변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조(刑曹)의 옥수(獄囚)가 80여 인이나 되는데, 상께서 석방하

라고 명하시었지만 유사(有司)는 법을 지키므로 남김없이 석방할 수가 없는 것이니, 대신과 의논해서 해사(該司)로 하여금 사정을 참작하여 녹계(錄啓)하게 해서 특별히 석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또한 병상(兵象)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이니, 변방에 지금은 비록 일이 없지마는 난리가 어느 때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졸(士卒)들을 휴양시키는 일을 미리미리 강구하고 조처해야 합니다. 형벌을 신중히 하고 변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해도 다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강구하는 바가 없다면 어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과연 그렇다. 말만 하고 실지가 없으면 안 된다.”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8일(丙寅)

각도 감사의 체기에 관해 의논드리다

정광필 등이 일곱 가지 일에 관하여 의논을 드렸다. 첫째 의논은 각도(各道) 감사(監司)의 체기(遞期)에 관한 것이다. 정광필 · 신용개 · 안당 · 남곤 · 고흥산(高荊山) · 홍숙(洪淑) · 유담년(柳聃年) · 이장곤(李長坤) · 이유청(李惟淸) · 최숙생(崔淑生) · 조원기(趙元紀) 등이 의논드리기를, “양계(兩界) 이외의 감사 임기를 일기(一期)로 하는 법은 선왕(先王)의 법으로서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큰 실효(實效)가 없었다 해도 폐가 있다는 말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를 재기(再期)로 정한다면 반드시 본영(本營)을 두고 가족을 거느리게 해야 하는데, 만약 적합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폐가 현재보다 도리어 심할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 법을 세운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 안 가서 다시 폐하고 말았으니, 어찌 보는 바가 없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구법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하고, 김정(金淨) · 김안로(金安老) 등은 의논드리기를, “양계 감사를 재기(再期)로 하는 예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정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9일(丁丑)

죄수들을 분간하도록 하고, 의주 목사를 가선대부인 사람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 좌의정 신용개(申用溉) · 우의정 안당(安瑯) · 이조 판서 이장곤(李長坤) · 판윤 홍숙(洪淑) ·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 우참찬 최숙생(崔淑生) · 형조 판서 이유청(李惟淸) · 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 · 좌윤 황맹헌(黃孟獻) · 이조 참판

김정(金淨)·참의 김안로(金安老)·호조 참의 김굉(金礪)·형조 참의 윤은필(尹殷弼), 그리고 대사헌 이자(李耜)·집의 유인숙(柳仁淑)·장령 정사룡(鄭士龍), 민수천(閔壽千)·지평 임권(任權) 등에게 명하여, 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에 있는 의심스런 죄수들을 분간하여 처리하는 일 및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으레 가선 대부(嘉善大夫)인 사람으로 제수하는 일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6일(甲申)

대신들이 주청 문서의 필삭을 의논하여 입계하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安瑯)·남양군(南陽君)홍경주(洪景舟)·판중추부사 김전(金詮)·예조 판서 남곤(南袞)·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형조 판서 이유청(李惟淸)·화천군(花川君)심정(沈貞)·우참찬 최숙생(崔淑生)·예조 참판 손주(孫澍)·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대사헌 이자(李耜)·이조 참판 김정(金淨)·이조 참의 김안로(金安老)·병조 참지 조방언(趙邦彦)·호조 참의 김굉(金礪)·홍문관 부제학 조광조(趙光祖)·형조 참의 윤은필(尹殷弼)·대사간 공서린(孔瑞麟)·직제학 정충량(鄭忠樑)·집의 유인숙(柳仁淑)·사간 신광한(申光漢)·장령 정사룡(鄭士龍), 민수천(閔壽千)·부응고 민수원(閔壽元)·교리 윤자임(尹自任)·헌납 유용근(柳庸謹)·지평 김식(金湜), 임권(任權)·부교리 기준(奇遵), 장옥(張玉)·정언 이희민(李希閔)·정자 이인(李認) 등이 대궐 뜰에 모여서 주청 문서(奏請文書)에 필삭(筆削)할 부분을 의논하였는데, 김전·남곤·심정·최숙생·이자·김안로·김정 등이 그 일을 실제로 주관하여, 장황한 곳은 깎기도 하고 모자라는 곳은 보충하기도 하였다. …

○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8일(丙戌)

함경도 관찰사 손중돈이 주장합의 변란을 보고하여 삼공 및 대신들이 의논하여 의계하다

함경도 관찰사 손중돈(孫仲墩)이 장계(狀啓)하기를, “주장합(住張哈)이란 자가 그의 형(兄) 망합(莽哈)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성저(城底)의 오도리(吾道里) 1명을 쏘아 죽이고 7명을 사로잡아 갔으며, 또 지난번에 망합과 함께 상경(上京)하였던 파리혁(把里革) 등을 체포하여 다그치기를 ‘죄없는 우리 형님을 내가 어찌 조선(朝鮮)에 참소해서 구류(拘留)시켜 놓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는 등 불손한 말이 많은데, 형세가 장차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주장합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기는 하나, 그의 형과 관련된 말을 하면서 우리 나라를 능범(凌犯)하는 언사가 많으니 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삼공(三公) 및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소서.”하였다. 정광필·신용개·안당·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지사 황형(黃衡)·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좌윤 최한홍(崔漢洪)·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공조 참판 윤희평(尹熙平)·참지 조방언(趙邦彦)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신 등이 생각하건대 주장합이 반드시 큰 일을 일으킬 것인데, 그보다 앞서 성저(城底) 야인(野人)들을 위압해서 그들의 하는 짓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나라의 병력이 넉넉하면 그 죄를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는데, 지금은 군병(軍兵)이 매우 넉넉지 못하니 다른 계책은 낼 수가 없습니다. 신병사(新兵使)로 하여금 주장합을 불려서 엄하게 꾸짖고 달래는 것이 마땅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장합이 의심을 품고 나오려 하지 않거든, 성저 야인을 시켜 주장합이 있는 곳에 가서 달래보게 하되, 그들의 정황을 세세히 탐지한 다음 그들과 문답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서 치계(馳啓)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그러나 윤희평의 뜻은 조정에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엄하게 문책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신 등의 의론이 너무 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곧바로 ‘조정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너희들의 하는 짓을 알면 반드시 문책을 할 것이니, 너희들이 만약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 부득이 조정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7일(甲申)

속고내가 변경을 침범한 죄로 사로잡을 것을 아뢰다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좌참찬 조원기·지중추 황형·이조 판서 이장곤·호조 판서 고흥산·병조 판서 유담년·공조 참판 윤희평(尹熙平)·한성 우윤(漢城右尹) 최한홍(崔漢洪)·호군(護軍) 조윤손(曹潤孫) 등이 의논드리기를, “제왕(帝王)의 도로 말하면 이는 기모(奇謀)입니다만, 삼대 이후로는 한결같이 왕도(王道)로 헤서는 되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속고내를 사로잡으면 주장합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변방을 진함하여 복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속고내가 들어 온 곳은 본디 우리 땅으로 압록강(鴨綠江) 안쪽입니다. 매양 변장에게 엄하게 방비하여 해이(解弛)하지 말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렀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만약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변경을 침범

한 죄로 논하겠다.’고 일렀는데, 속고내가 지금 들어와 사냥하니, 이 거사는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30일(丁酉)

소격서의 혁파를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 등이 세 차례나 아뢰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우찬성 최숙생·좌참찬 조원기·예조 판서 이계맹·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병조 판서 유담년·이조 판서 이장근·형조 판서 이유청 등이 소격서를 혁파해야 한다는 뜻으로 세 차례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9월 15일(壬子)

사정전에 나아가 유생 최계성 등 3인을 강하고 정광필 등에게 《대학》을 강론하게 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유생 최계성(崔繼成) 등 3인을 강(講)하고, 이어서 입시 재상(入侍宰相) 정광필 등에게 《대학(大學)》을 강론하게 하였다. 정광필이, “여기서 말한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머물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경(敬)에 머물고,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慈)에 머물고,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孝)에 머물고, 나라 사람과 사귄다는 신(信)에 머문다.’ 등의 말은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말인데, 임금에게만 반드시 ‘인(仁)’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고는 부제학 조광조를 지목하며, “부제학 등이 자세히 말하십시오.”하니, 조광조가 아뢰기를, “남의 임금이 되어서 인에 머문다는 것은 임금 혼자만이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이란 천지(天地)가 만물을 낳는 이치로서 끊임없이 낳고 낳아서 가장 긴절한 것입니다. 임금은 천하에 임금 노릇하고 일국을 다스리므로 인덕(仁德)을 체득하여 만물이 각각 그 본성을 얻게 한 뒤에라야 천지에 동참(同參)할 수가 있습니다. 인(仁)은 사덕(四德)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도(仁道)를 다 실행하게 되면 예(禮)·의(義)·지(智) 세 가지는 자연 그 속에 다 있게 됩니다.”하고, … 고흥산은, “임금의 도는 만물을 내는 것을 주재하므로 ‘인에 머물렀다.’ 한 것이며, 또 각각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문왕(文王)의 덕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요, 임금이 홀로 인(仁)을 행할 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1월 8일(甲辰)

대신들이 군액의 감축 문제 등을 아뢰다

정광필·신용개·안당·이계맹·최숙생·고형산·유담년·이장곤·조원기·김안국·손주(孫澍)·최한홍(崔漢洪)·김당(金瑯)·윤희평(尹熙平)·김극핍(金克愾)·김극성(金克成)·문근(文瑾)·김근사(金謹思)·홍경립(洪景霖)·김굉(金矼)·조방언(趙邦彦)·이성동(李成童)·공서린 등이 의논드리기를, “군액(軍額)을 감하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의 각년(各年) 군액의 증감(增減)한 수를 자세히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무학(武學)은 서울은 훈련원(訓練院)에서 가르치고, 또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나누어서 교훈을 받게 하고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외방에도 다 설치하면 한갓 군역(軍役)을 도피하는 자의 소굴만 되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습니다. 정로위(定虜衛)는 새로 설치한 군이요, 갑사(甲士)도 원액(元額) 이외에 많은 수효를 더 정하였으므로 모든 군액이 충정(充定)되지 못하는 것은 다 이 까닭입니다. 이제 정로위를 갑사의 수효에 넣어 계산하고, 재주가 변변찮은 갑사는 도태하여 기정병(騎正兵)의 여러 보솔(保率)에 충정(充定)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이익이 되겠습니다. 보병(步兵)을 군역(軍役)이 있는 곳에 정속하지 말라는 일은 팽배(彭排)·대졸(隊卒)의 수가 본디 넉넉하지 않고 또 아직 충정하지 못한 수효가 많으므로 형세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폐조 때에 군역(軍役)이 괴로워서 토지를 판 사람에게 그 토지를 모두 돌려주게 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도로 빼앗는 것도 우리 도망하게 하는 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10년 전의 일을 일체 돌려주게 하면 소요가 없지 않을 것이니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일(丁酉)

호조의 일이 많은데 건강이 나빠서 사직하겠다는 호조 판서 고형산이 아뢰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호조의 일이 몹시 많아 하루 이틀만 좌기(坐起)하지 않아도 일이 많이 적체(積滯)됩니다. 신은 근래 안질을 앓고 또 건삼증(蹇澁症)이 심해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귀도 먹었습니다. 신이 이 직을 맡은 지 전후 6년이나 되어 이제 이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재사(再辭)까지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2월 2일(丙寅)

안당과 고흥산이 평안도 관찰사 신상을 유임하기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우의정 안당(安瑯)과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는 경제(經遞)할 수 없다는 뜻을 정부가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상(申鏞)은 어진이니 판윤으로 승질(陞秩)해도 되지만, 양계(兩界) 관찰사는 만 2년이 되어야 바꾸는 것은 대개 중히 여겨서인데, 근래 지레 체임하는 일이 많으니 중히 여기는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평안도는 연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듣건대 신상은 구황을 잘한다는데, 새로운 관찰사는 부임하여 그 도의 일을 잘 안 다음에야 비로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보내고 맞이하느라 오가는 데에 또한 폐가 없겠습니까? 평양은 저축이 결핍하여 지난해 이전(移轉)한 미(米)로 수요에 공급한다 하니, 금번 가족을 데리고 올라올 적에는 반드시 그 곡식을 백성에게 양식으로 줄 것입니다. 청컨대 승질하여서 그대로 잠시 본직에 있도록 하소서. 전에 정광필(鄭光弼)이 함경 감사가 되었다가 경제되어 오는 동안 구황하지 못해 죽은 자가 1천 3백 45호(戶)였으니,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니다.”

하니, 상이 당(瑯) 등을 인견하자, 당 등이 신상은 경제해서 안 된다는 뜻을 힘껏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체직되었다가 환임(還任)한다면 정령(政令)이 번다해진다.” 하며, 당 등은 간절히 거듭 아뢰기를 그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새로운 관찰사가 한결같이 옛 규정을 준수하면 신상이 갈리더라도 된다.”하였다.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2월 7일(辛未)

고형산이 피인을 접대하는 함경도에서 여악을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외방의 여기(女妓)는 없애도록 명했지만 함경도는 거진(巨鎭)인데 피인(彼人)을 접대할 때, 그 음식물은 오히려 저희들 집에서 마련한 것만도 못하지만 기악(妓樂)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함을 좋아하여 와서 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지한 무리들이라 조정의 본의는 모르고 기악이 없는 것을 가지고 대우하는 것이 소홀하다 하여 향모(向慕)하는 마음이 해이해질까 걱정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악은 모조리 없애야 마땅하지만 내연에서 대신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득이 그대로 두는 것이다. 어찌 피인을 위해 고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여악으로 저들을 대우하려 하는 것이 어찌 가하겠는가?”하였다.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4일(丁巳)

주청사를 다시 보내는 일, 관리 임명 때의 선제, 영흥 판관의 혁파 등 여러 가지를 의논하다

영의정 정광필 · 좌의정 신용개 · 우의정 안당 · 예조 판서 이계맹 · 좌참찬 이장곤 · 호조 판서 고형산 · 공조 판서 김극휼 · 우참찬 김안국 · 이조 판서 신상 · 예조 참판 권벌 · 참의 박호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주청사(奏請使)를 다시 보내는 일 및 관리를 임명할 때의 선제(宣制), 문화(文化) · 봉산(鳳山) · 재령(載寧) 등의 고을의 읍을 이배(移排)하는 일,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 영흥 판관(永興判官)을 혁파하는 일, 마전(麻田) · 적성(積城)을 합병(合併)하는 일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7일(庚午)

사왕의 일에 대해 다시 주청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정광필 · 신용개 · 안당 · 이계맹 · 이장곤(李長坤) · 고형산(高荊山) · 김안국(金安國) · 김극휼(金克愾) · 권벌(權穰) · 김당(金瑄) · 최한홍(崔漢洪) · 박영(朴英) · 김식(金滉) · 최산두(崔山斗) · 양팽손(梁彭孫) · 이인(李認) 등이 의논드리기를, “다시 주청하는 것이 온편하지 않다는 뜻을 신 등이 전에도 이미 상의하여 의계(議啓)하였습니다. 이제 남곤(南袞) 등의 말을 들어보고 또 예부(禮部)의 복본(覆本) 및 칙서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여 보니, 주청한 바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대개는 다 준허를 받은 것이며, 칙서에 두 가지 일을 각각 거론하지 않은 것이 비록 미진한 것 같기는 하나 이 때문에 다 준허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다시 주청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朝廷)140이 한 가지 일은 준허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칙서에 준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말하였을 것인데 칙서에는 그런 말이 없으며, 또 예부의 복본에도 ‘그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다 준허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미진하다고 여겨 다시 주청한다면, 사리(事理)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 등은 다시 주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8일(辛未)

사왕의 일에 대해 다시 주청하는 일의 편부를 묻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예조 판서 이계맹·우찬성 이장곤·호조 판서 고흥산·우참찬 김안국·이조 판서 신상(申鑄)·대사헌 김정·부제학 조광조·대사간 윤은필 등을 인견하고 주청하는 일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 형산은 아뢰기를, “이른바 ‘특별히 주청한 바를 준허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일을 아울러 준허한 것 같으니, 다시 분변(分辨)하고자 하는 것은 감히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辛卯)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흥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辛卯)

고형산을 병조 판서로 이배하는데 대해 삼공이 반대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이배(移拜)한다 하는데, 이제 호조는 구황(救荒)하는 일이 긴급한데다가 국용(國用) 또한 고갈되었습니다. 형산이 바야흐로 조처(措處)에 힘쓰고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을 체수(遞授)하면 허소한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장곤(李長坤)은 변방 일을 잘 아니 병조에 합당하고, 이계맹은 비록 몸소 변방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군사(軍事)의 기무(機務)를 자못 잘 아니 또한 병조 판서에 합당합니다. 청컨대 형산을 호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따랐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1일(癸巳)

수군을 나누는 문제로 의논하다

유생(儒生)들이 전강(殿講)을 받는데, 신용개·안당·남곤(南袞)·이장곤(李長坤)·고형산(高荊山)·한세환(韓世桓)·이자(李耜)·조광조(趙光祖) 등이 입시하였다. … 세환이 수군(水軍)을 나누어 4번(番)으로 만들기를 청하니, 장곤(長坤)이 아뢰기를, “편리할 것입니다.”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시끄럽게 될까 싶습니다.”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경솔하게 해서 안 됩니다.”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한정(閑丁)들을 찾아 내어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상도는 땅이 넓어 감사 하나

가 도내의 사정을 두루 알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좌도·우도로 나누어 감사 두 사람을 두고, 그 소임에 오래 있도록 해야 한다.”하니, 용개가 아뢰기를, “이 일은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나누어야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7일(己亥)

영사 안당이 이계맹은 병조 판서에 합당하고, 김식은 사유에 합당하다고 아뢰다

…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이장곤·이계맹·고형산 두어 사람 뿐입니다. 형산은 호조 판서가 되었는데 호조는 사무가 제일 긴요하여 형산이 매우 소임에 합당하므로 변동할 수가 없으니, 만일 계맹을 체직한다면 부득이 장곤을 차임(差任)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부에 궐원(闕員)이 많아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대신이 장곤과 계맹 두 사람을 추천하였으나, 다만 정부에 궐원이 많기 때문에 계맹으로 병조 판서를 삼은 것이다. 고형산은 양계(兩界)의 사정을 아니 병조 판서에 합당하고, 호조 판서는 계맹도 할 수 있다.”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형산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의 뜻도 그러한데, 지금 이미 시종(侍從)이 되었으니 추후에 이 말대로 임용함이 가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19일(辛亥)

감사를 오래 말도록 하는 일과 여악을 폐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신용개·남곤·이계맹·고형산·신상(申鏞)이 의논드리기를, “감사를 오래 말도록 하는 법은 선왕 때에 일찍이 시험삼아 시행하다가, 그 뒤 양계(兩界) 이외의 육도(六道)는 모두 한 임기만 말기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큰 폐단이 있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선왕 때 개혁한 본의를 따져보지 않고 갑자기 경장(更張)하기로 의논하니, 좋은 교화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단이 먼저 백성에게 미칠까 싶습니다. 또한 개혁할 즈음에는 반드시 조치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어, 감영(監營) 안의 지공(支供) 및 아전(衙前)을 두는 일 등으로 폐단이 없을 수 없고, 관찰사 된 사람이 부지런하게 두루 순행하지 않고 본영(本營)에만 많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를 알 수 없게 되어 그 폐단이 도리어 지금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근년에는 또한 흉년이 잇달고 재해가 거듭 생겨 굶주려 죽는 백성이 많으니, 이런 때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성헌(成憲) 지키기를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해야 하고, 관제(官制)를 고침은 그 시기가 아닌 듯싶습니다. 경상·전라 두 도를 좌우도로 나누는 일은, 신 등은 또한 전대로 둬서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경상도는

면적이 넓으므로 나누는 것도 또한 무방할 듯하지만, 전라도는 토지의 넓이와 군읍(郡邑)의 수가 경상도에 비하면 좁고 적어 나누기가 불편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1일(癸丑)

경연관을 소대하고, 관찰사를 오래 맡기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경연관을 소대(召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법제를 마땅히 준수해야 하나,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하니, 만일 적임자만 구한다면 이로도 족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하매, 시독관 송호지(宋好智)가 아뢰기를, “육조의 판서들을 오래 맡긴다면 한 관사(官司) 속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호조 판서 고행산이 유독 오래 맡기 때문에 온 관사의 일을 잘 아니, 이로 본다면, 형조의 옥송(獄訟)은 더욱 오래 맡겨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조도 오히려 이러한데 더구나 방백(方伯)의 소임이겠습니까?”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30일(壬戌)

신연의 일은 끝까지 추국해야 한다고 신용개 등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윤은필(尹殷弼)·장령 기준(奇遵)이 전의 일을 논하니, 상이 영사 신용개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신연의 일을 대신들의 뜻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그의 추안을 보건대 과연 소루했습니다.”하고, 지사 남곤은 아뢰기를, “사건의 전말을 신이 미처 듣지 못하였지만, 강간을 화간으로 한 것은 과연 잘못이니, 사정을 썼는지 여부를 마땅히 신연을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정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가 바야흐로 추문하는데, 내가 현재까지 추문한 대로 조율(照律)하도록 명했다.”하매, 특진관 고행산이 아뢰기를, “추문을 끝낸 다음 죄를 결정한다면 연이 과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부(姦婦)가 공술한 말에 조금도 강간이란 말은 없었으나 신연이 과연 잘못된 것이니, 지금 의논함은 죄를 더해야 할지의 여부를 의논하려는 것이다.”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신연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겠느냐고 여기십니까만 이는 염치를 장려하는 아름다운 뜻이니, 만일 끝까지 추문하여 사정 쓴 것을 알고 죄준다면 그도 또한 달가운 마음으로 죄를 받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끝까지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14일(丙子)

대신들이 옮겨와 사는 피인들의 일에 관해 의논하다

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우찬성 이장곤(李長坤)·병조 판서 이계맹(李繼孟)·지변사(知邊事) 황형(黃衡)고형산·우참찬 이자(李紆)·병조 참판 박영(朴英)·참의 김근사(金謹思)·참지 성운(成雲) 등이, 옮겨와 사는 피인(彼人)들의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지금 윤희평(尹熙平)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여연(閔延) 지방의 강변(江邊)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특히 김주성가(金主成可)의 족친만이 아니라, 다른 부락이 서로 이끌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90여 호나 되도록 많고, 강(江) 안으로 옮겨 들어와 여연의 옛성 곁에서 사는 사람들이 20호로서, 하나의 큰 부락을 이루어 장차 양계(兩界)의 큰 폐해(弊害)가 될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내쫓아 밭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다만 주성가(主成可) 등이 와서 산 지 이미 오래이고, 또한 전일에 거주를 허용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갑자기 내쫓는다면 원성과 분심이 생길까 싶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함경남도 군관(軍官)을 보내 주성가를 타이러 때 피인(彼人) 하나가 강 안에서 거주하므로, 여연성(閔延城)군관이 함부로 강 안에 들어온 것으로 죄를 따지며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족속도 편히 거접(居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자, 주성가 등이 ‘삼가 분부대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함부로 강 안으로 들어와 옛성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20호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로써 죄를 따진다면, 주성가가 비록 내쫓음을 당하더라도 그다지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절도사로 하여금 다시 군관을 보내 ‘함부로 강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다.’는 것으로 주성가를 책망하고 ‘본토(本土)가 아니면서 함부로 변방 가까이 나와 우리 지경에서 어렵(漁獵)한다.’는 것으로 뒤따라 나와 강 밖에 거주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서, 이어 말해주기를 ‘너희들을 전에 이미 타일렸는데도 오히려 즉각 떠나지 않으니 마땅히 명령 거역한 것을 따져 죄주어야 하지만, 너희들이 벼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즉각 떠나기 어려울까 싶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곡식이 곧 익게 되어 이제는 시일을 정하여 수확할 수 있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만약 즉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크게 징계하겠다. 이래서 약속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만일 전과 같이 한다면 죄가 너희들에게 있어 후회해야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한다면 피인들이 스스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철수하여 돌아갈 계책을 하게 될 것이니, 군관을 보내어 엄한 말로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 정상을 탐지하여 치계(馳啓)하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해서 시행해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壬寅)

경기의 수해에 대해 호조의 처리 방법을 묻고 양전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京畿)의 수해가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더러 매몰되고 전답이 모두 손상되었는데, 호조(戶曹)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하매,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경기는 해마다 흉년 들다가 이번에 또 이러하니 백성이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 싶습니다. 또한 신이 자세히 생각해보건대 양전(量田)하는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하지 않았는데, 이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양전하는 일은 농사가 흉년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양전에 상정(詳定)해야 할 일이 있으니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에 보고하여 의논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7일(戊申)

종자법과 치재할 때의 복색 및 《가례》와 《오례의주》가 합치되게 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우의정 안당·예조 판서 남근·우찬성 이장근(李長坤)·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조 판서 신상(申鎰)·우참찬 이자(李耜)·형조 판서 김정(金淨)·예조 참판 최명창(崔命昌)·참의 박호(朴壕)를 명소(命召)하여, 종자법(宗子法)과 치재(致齋)할 때의 복색(服色), 친림(親臨)하여 문병(問病)하고 청정(聽政)하는 것 및 《가례(家禮)》와 《오례의주(五禮儀注)》가 합치되게 하는 일 등을 의논하게 하니, 안당이 아뢰기를,

“오늘 의논할 것은 모두 예문(禮文)에 관한 일이니 관각 당상(館閣堂上) 권균(權鈞)·김전(金銓)도 명소하여 의논에 참여하도록 하소서.”하고, 한충(韓忠)은 아뢰기를, “오늘 의 의논은 국가와 관계가 지극한 것이니, 대간·홍문관도 아울러 명소하여 함께 의논하도록 하소서.”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일(壬戌)

정몽주·이존오·김굉필·정여창의 사당 세우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상이 좌우에게 명하여 정몽주·이존오·김굉필·정여창에게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안당(安瑒)이 아뢰기를, “전

일에 임제광(林霽光)이 윤대(輪對)에서 아뢰는 충신·의사(義士)에게 제사하는 일을 예조(禮曹)가 바야흐로 의논하여 뽑고 있으니 다 뽑기를 기다린 다음 다시 사당 세우는 일을 의논함이 어떠하리까?”하고, 예조 판서 남곤은 아뢰기를, “삼국(三國) 이래의 충신·의사가 과연 많아 모두 사당을 세워 제사하기가 진실로 어렵기 때문에 뽑아서 아뢰는 다음 의논하여 정하려 합니다.”하였다. 호조 판서 고흥산은 아뢰기를, “이 일은 매우 중한데 어찌 한 사람이 아뢰는 대로 법을 정하고 사당을 세우겠습니까? 뽑아서 아뢰기를 기다려다 의논하여 정함이 온당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7일(戊寅)

진법을 강받는데 선전관들이 대답하지 못함을 말하고 이장곤 등을 불러 다시 강론하게 하다

승지를 불러 분부하기를, “어제 진법을 강받자 선전관들이 모두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평소에 강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고, 이어 이장곤(李長坤)·황형(黃衡)·안윤덕(安潤德)·고형산(高荊山)·유담년(柳聃年)·최한홍(崔漢洪)·정은부(鄭殷富)·이장생(李長生)·김석철(金錫哲) 등의 이름을 쓰며 이르기를, “오늘 병가(兵家)들의 방략(方略)을 강론하고 싶으니 즉시 불러라.”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6일(丁亥)

탈옥한 죄수를 잡은 자에 논상하는 일을 논의하다

…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탈옥한 죄수를 잡은 사람에게 논상(論賞)하는 일은 형조가 마땅히 전교(傳敎)받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평 군수(加平郡守)는 서민(庶民)의 예가 아니니 베[布]로 상줄 수 없습니다.”하고, 당은 아뢰기를, “향표리(鄉表裏)로 주면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가(賞加)함은 불가하고 향표리로 상주면 가할 듯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8일(己丑)

성절사 호송군과 절도사에 유명원을 추천하다

평안도 관찰사 허굉(許礪)이 치계(馳啓)하기를, “성절사(聖節使)의 호송군이 돌아올 때에 길에서 달자(獐子) 1천여 명과 마주쳐, 우리 군사 10여 명 및 말 30여 필이 사로잡

했다 합니다.”하니, 즉시 정승 및 병조와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 들을 불러 인견하고 이르기를, “평안도가 치계한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만일 이렇다면 북경(北京)에 가기도 어려울 것이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염려된다.”하였다. … 고흥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절도사가 지금 병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니, 시행할 모든 일을 누가 능히 조치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지금 2품인 사람으로 하여금 즉각 달려가 절도사와 함께 의논해서 처치하도록 함이 어떻겠는가?”하니, 좌우에서 모두 ‘안 됩니다.’ 하였고, 장군이 아뢰기를, “잘 아는 사람 하나를 가려 단기(單騎)로 달려가서 하유(下諭)하게 함이 어떠하리까?”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유영원(柳榮元)이 함당합니다.”하매, 좌우에서 ‘함당합니다.’ 하므로, 부르도록 명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병사(兵使)가 병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 가겠습니까?”하자, 장군이 아뢰기를, “유영원이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고 가니 능히 처리해 가겠지만, 정주 목사(定州牧使) 오보(吳堡) 또한 조치해 갈 수 있으니 아울러 하유하심이 어떠하리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절도사가 있으니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호령하게 할 수는 없다. 절도사가 비록 아프다 하더라도 호령은 시행하게 될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29일(庚寅)
호송군이 사로잡힌 일에 관해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의논한 호송군(護送軍)이 사로잡힌 일은 말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사은사(謝恩使)가 돌아올 때에 맞이하여 호송하는 일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함이 어떠하겠는가?”하매,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사은사가 들고서 반드시 시급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하였고, 상이 이르기를, “요격(邀擊)하는 일을 어제 의논하여 이미 결정하였는데 ‘그 적들이 먼저 무도한 짓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를 들어 죄를 성토(聲討)한다면 적들이 감히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 말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하매,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그 적들의 사세를 보건대, 중원에서 얻는 이(利)가 다 되면 반드시 우리 땅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7일(丁亥)

고형산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나 윤택하지 않고, 구황의 계책을 아뢰니 인견하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병 때문에 사직하여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음에, 형산이 구황(救荒)의 계책을 아뢰니 임금의 인견하여 순문(詢問)하였다.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壬辰)

고형산·신상·김정 등이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조 판서 신상(申鏞)·형조 판서 김정(金淨)·호조 참판 김당(金瑄)·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병조 참의(兵曹參議) 김근사(金謹思)·형조 참의(刑曹參議) 윤희인(尹希仁)·이조 참판 윤은보(尹殷輔)·형조 참판 유운(柳雲)·예조 참판 최명창(崔命昌)·병조 참지(兵曹參知) 성운(成雲)·예조 참의(禮曹參議) 윤은필(尹殷弼)·이조 참의(吏曹參議) 정충량(鄭忠樑) 등이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육조의 당상(堂上)과 대신(大臣)은 다 입대(入對)를 허가한다.”하였다. 입대하여 정광필 등이 각각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신의 개정은 예전에 없던 일이다. 다만 정난 공신(定難功臣)은 과연 상하가 환히 아는 일므로 고쳤으나, 이는 기록된 지 오래니 고칠 수 없다.”하였다.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乙巳)

직속하던 윤자임 등이 하옥되고 이자·김정·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게 하다

밤 2고(鼓) 금중(禁中)이 소요하므로,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공서린(孔瑞麟)·주서(注書) 안정(安珽)·검열(檢閱) 이구(李構) 【모두 정원(政院)에 직속(直宿)했었다.】 등이 허둥지둥 나가 보니, 연추문(延秋門)615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門卒)들이 정돈해 서 있었고, 근정전(勤政殿)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의(靑衣)의 군졸들이 전폐(殿陛) 아래 좌우로 옹립(擁立)하여 있었다. 윤자임 등이 밀어제치고 들어가 곧 바로 경연청(經筵廳)으로 가니 함문(閤門)의 안팎에 다 등불을 벌여 밝혔고, 함문 밖에는 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전(金詮)·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병조 참지(兵曹參知) 성운(成雲)이 앉아 있었다. 윤자임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공(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하니, 이장곤 등이 답하기를, “대내(大內)에서 표신(標信)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하였다. 【《정원일기(政院日記)》에는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홍경주·남곤·김전·정광필을 비밀히 불렀고 이장곤·안당(安瑯)은 뒤에 도착하였는데, 조광조(趙光祖) 등을 조옥(詔獄)에 내릴 것을 의논하였다.”하였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어찌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서 표신을 냈는가?”하고, 곧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계(入啓)하고자 하였다. 승전색 신순강(辛順強)이 곧 나와서 성운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이 승지가 되었으니 곧 들어가 전교를 들으시오.”하니, 윤자임이 외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하였으나, 성운이 곧

일어나 들어가려 하니, 윤자임이 성운에게 외치기를, “승지가 되었더라도 어찌 사관(史官)이 없이 입대(入對)할 수 있겠소?”하고, 주서 안정(安珽)을 시켜 성운을 말리게 하였다. 심정이 말하기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소.”하고, 드디어 성운의 띠를 잡고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성운이 심정의 팔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5~6인이 심정을 밀어냈다. 얼마 안 지나서 성운이 도로 나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에 내리라.”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승정원(承政院)에 직숙(直宿)하던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공서린(孔瑞麟)·주서(注書) 안정(安珽)·한림(翰林)이구(李構) 및 홍문관(弘文館)에 직숙하던 응교(應教) 기준(奇遵)·부수찬(副修撰) 심달원(沈達源)이었다. 윤자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금부(禁府)에 명하여 우참찬(右參贊) 이자(李紆)·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정(金淨)·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絀)·대사성(大司成) 김식(金滉)·도승지(都承旨) 유인숙(柳仁淑)·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동부승지(同副承旨) 박훈(朴薰)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이후로는 사관(史官)이 참여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乙巳)

대신들이 조광조 등의 죄를 아뢰다

금부(禁府)의 당상(堂上)들을 비현합(丕顯閣)에 불렀다. 정광필·안당·김전·남곤·이장곤·홍숙(洪淑)·성운·채세영·권예·심사순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고 전지(推考傳旨)를 기초(起草)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광필·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전·예조 판서(禮曹判書) 남곤·우찬성(右贊成) 이장곤·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흥산·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손주(孫澍)·병조 참판(兵曹參判) 방유령(方有寧)·참의(參議) 김근사·참지(參知) 성운·호조 참의(戶曹參議) 윤희인(尹希仁)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趙光祖) 등을 보건대, 서로 봉당(朋黨)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國勢)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朝廷)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하고 다니며 중족(重足)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유사(有司)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바루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丙午)

비현합에 나가 시사하다

비현합(丕顯閭)에 나아가 시사(視事)하였다. 【15일 밤 2경(更)에 나아가 밤을 세웠다. 정광필 · 안당 · 홍경주 · 남곤 · 이장곤 · 고흥산 · 한세환 · 홍숙 · 심정 · 신상(申鏞) · 이유허(李惟清) · 손주(孫澍) · 방유령(方有寧) · 윤희인(尹希仁) · 김근사와 함께 경연청(經筵廳)에 있었다.】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丙午)

정광필 등이 고흥산 등의 죄주기가 부당함을 아뢰다

…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정이 청하였다.’ 하셨으나,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신 등이 왔을 때에 먼저 와 있던 사람 【먼저 와 있던 사람이란 홍경주(洪景舟) · 남곤(南袞) · 심정(沈貞) · 김전(金詮) · 고흥산(高荊山) 등을 말한다.】 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고 시키셨으니 이것은 다 임금의 뜻이다.’ 하였는데, 임금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니, 참으로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대내(大內)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아뢰었거니와, 만약에 굳이 조정의 일을 그르쳤다고 한다면 임금께서 호오(好惡)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 등은 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죄주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니 이미 청죄 단자(請罪單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추고 전지(推考傳旨)는 인심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하여 아뢰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丙午)

남곤이 병으로 물러가고 고흥산을 대사헌으로, 윤희인을 대사간으로 삼다

이조 판서 남곤(南袞)이 병 때문에 물러가니, 명하여 고흥산(高荊山)을 대사헌으로, 윤희인(尹希仁)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丙午)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다시 불러드리다

… 정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대간은 과연 놀러 있을 수 없겠으나, 홍문관의 경우는 복직(復職)을 명하신다면 어찌 행공(行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형산(高荊山)은 후중(厚重)하여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마땅하나, 지금 사방에 흉년 들고 경기(京畿)가 더욱 심한데 구황(救荒)에 관한 모든 일을 고형산이 오로지 맡았으므로, 대사헌의 직임이 중하기를 하나 호조(戶曹)의 일도 중하니, 고형산을 도로 호조에 놀려 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는 놀려 있도록 하라. 홍문관은 갈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0일(庚午)

유관이 조광조의 일에 대해 아뢰다

… 집의(執義)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조옥(詔獄)은 지극히 엄숙해야 하는 것인데 죄인을 추국(推鞠)할 때에 부도한 말을 내게 하였으니 김전의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으나 동좌(同坐)한 사람들이 기강이 있었다면 죄인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임금께서 총애하여 차서를 뛰어넘어 벼슬을 주셨으므로 교만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조광조가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예결(詣闕)할 때에, 고형산(高荊山)이 길에서 앞서 갔는데 【그때 고형산은 호조 판서(戶曹判書)였다.】 조광조가 자기보다 앞서 가는 것을 노여워하여 서리(胥吏)를 시켜 고형산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보다 앞서 가는가? 내 전도인(前導人)을 말 뒤에 세우고 가니 매우 매물하다. 배리(陪吏)를 가두고 판서를 함문(緘問)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직 그만두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하였습니 다. 사람들이 다 성인으로 여긴다 하는 조광조가 남에게 저렇게 교만하였는데 더구나 그 아래 무리이겠습니까!’ 하였다. …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4일(甲戌)

재변과 관련하여 고형산이 아뢰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분부하였다. “대신과 면대하여 의논하고자 한다. 밤이 깊는데 일을 논의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겠으나, 이미 와 있으니 면대하겠다. 대신들은 대간이 아뢰는 것과 유생의 상소를 자세히 보고 나서 들어오라.” 이윽고 정광필·김

전·남곤·고형산·황형·홍숙·이유청·신상 등이 입대(入對)하였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재변이 아주 놀라왔는데, 지난달에 일변(日變)이 또 있었고, 그믐날에는 또 천둥하고 사람이 벼락에 맞았다. 근일 대간도 인물을 많이 논핵하여 저들 【조광조 등을 가리킨다.】과 같이 죄주기를 바라고 유생들도 상소하였다. 다른 일은 그만두더라도 재변이 더욱 두렵다.”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나서 가뭄과 서리·우박의 재변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대저 인심이 화평하고서야 천지의 화(和)도 응하는 것입니다. 조광조 등이 조정에 있을 때에 인심이 불화하였으므로 재변이 저러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지금의 재변도 인심의 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丙午)

고형산을 병조 판서로 삼다

… 상이 이르기를, “고형산(高荊山)은 병조에 매우 합당하지만, 호조(戶曹)의 일이 긴급하여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하므로 어렵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고형산(高荊山)을 오래도록 호조에 둘 수야 있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상께서 2품 가운데의 사람을 헤아려보신다면 어찌 가당(可當)한 사람이 없겠습니까?”하니, 상이 승지(承旨) 윤은필(尹殷弼)에게 이르기를, “어제 권균을 병조 판서에 임명시키라고 전교하였었는데, 오늘 들으니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한다. 그러니 호조 판서 고형산을 병조 판서로, 한세환(韓世桓)을 호조 판서로 삼고, 권균은 찬성(贊成)에 임명시키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丙午)

강원에서 고형산을 구황의 일로 인하여 체직시키지 않도록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경기도·황해도·강원도 등을 구황(救荒)하는 일에 대하여, 호조 판서 고형산이 방금 조치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체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하니, 비답하기를, “고형산은 호조에 매우 합당한 자이나 단 병조에 가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침에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호조에 관하여는 한세환(韓世桓) 역시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이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도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丙午)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1일(庚戌)

대신들이 재변, 소격서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 · 관중추부사 김전(金詮) · 좌의정 남곤(南袞) · 우의정 이유청(李惟淸) · 공조 판서 황형(黃衡) · 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 형조 판서 홍숙(洪淑) · 좌참찬 유담년(柳聃年) · 호조 판서 한세환(韓世桓) · 이조 판서 심정(沈貞) · 예조 판서 신상(申鏞) · 판윤(判尹) 한형윤(韓亨允)이 부름을 받들고 오니, 상(上)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근래 해의 재변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신과 의논하고자 한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응하여야 하겠는가?”하였다. … 고형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재변에 대하여 근신하는 방법은 몸을 삼가 덕을 닦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성경(誠敬)이 가장 중대합니다. 정성스러움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하였다. … 고형산은 아뢰기를, “소격서에서 제사(祭祀)하는 일은 좌도(左道)요 비례(非禮)입니다.”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戶曹)에 있을 적에 권파(權罷)한 봉록을 계산하여 보니, 1년 간의 숫자가 자못 1천여 석(石)이 넘었습니다. 무릇 육시 칠감(六寺七監)의 정(正)에 결원(闕員)이 많은 것은 부정(副正)으로서 계자(階資)없이 오른 자를 혁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래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는데, 신이 성종조의 일을 두루 상고하여 보니, 지금의 축적된 숫자가 그때의 배(倍)가 됩니다만, 모두 명목만 있을 뿐 실제는 없습니다.”하였다. …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대장(大將)으로는 황형(黃衡) · 유담년(柳聃年)이 있으나 비장(裨將)은 한 사람도 가당한 자가 없으니 말하기에도 한심스럽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을 남쪽 지방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으로 많이 차임(差任)하였는데 이는 미편한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조에서 차임하지 말도록 하라.”하매, 고형산이 아뢰기를, “박영(朴英)이 지금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있는데, 절도사에 가합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13일(壬申)

수군의 번을 나누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수군(水軍)의 번(番)을 나누는 일은 갑론을박(申論乙駁)하여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자, 남근이 유미(柳湏) 등을 돌아보며 묻기를, “3번(番)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는 것이 가하겠습니까?”하니, 유미(柳湏)가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는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반드시 부족할 것입니다.”하고, 고흥산(高荊山)은 말하기를, “3번으로 나누는 것이 가합니다만, 오직 경상도·전라도 2도만은 곤란합니다.”하고, 정광필(鄭光弼)은 말하기를,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어 군사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권의(權宜)로 1선(船)을 감하는 것도 온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이에 동의(同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 등처는 그 도의 원정(願情)에 따라 이미 3번으로 나누었으며 경기(京畿) 또한 그러합니다만, 경상도·전라도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한 곳인데, 3번으로 나누면 군사가 부족합니다. 한나라의 일이 각기 달라서는 안 되겠으나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누었으니, 구장(舊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5일(甲申)

평안도의 방비책 등에 관해 아뢰다

…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은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인물이 부족하여 군액(軍額)이 매우 적으므로 보인(保人)이 모두 결원(缺員)되어 있습니다. 듣건대 정로위(定虜衛)를 설치할 적에 업유(業儒)로서 글을 읽었다고 불린 자들은 모두 즐겨 이에 편입되었습니다.”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정로위의 설치가 심히 합당한 것은 위급을 당하여 쓰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 너무 많게 되면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정병(正兵) 10인이 정로위 1인을 당할 수 없으며, 급히 써야 할 경우에는 정로위를 정병인 호수(戶首)로 충당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정로위의 숫자는 1천 5백 인을 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많게 되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하고, 고흥산은 아뢰기를, “양계(兩界)에는 업유가 배출되는 데 따라 정하여야 하지만, 다른 도(道)의 경우에는 이 숫자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고흥산이 또 아뢰기를, “불행이 변이 있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의주성(義州城)을 속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마땅히 흉년을 계교할 것 없이 쌓아야 하며, 관찰사도 이에 대하여 검거(檢擧)해야 합니다. 이는 나라의 문정(門庭)에 관한 일이니 피인(彼人)들이 보는바 지역에는 반드시 장려(壯麗)하게 쌓아야 합니다.”하고, 동지사 신상(申鎭)은 아뢰기를, “만약 군사들을 부려서 쌓는다면 비록

10년이 걸려도 쌓을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민정(民丁)을 초발(抄發)한다면 쉽게 쌓을 수 있을 것이니, 재상(宰相)을 보내어 독역(督役)하게 하여야 합니다. 돌을 채굴하여 오는 곳이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모두 물을 건너가서 돌을 가져와야 하므로 물이 동결(凍結)된 뒤라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두세 번 밖에 못합니다.”하였다. 고흥산은 아뢰기를, “대저 우리 나라의 일은 말하는 자가 너무 많으므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백성이 어찌 즐겨 하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쌓게 한다면 1개월도 안 걸릴 것입니다.”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금년에라도 풍년이 들면 또한 해야 합니다.”하고, 고흥산은 아뢰기를, “돌과 성의 척수(尺數)를 계산, 기일을 정하여 독축(督築)하되 아무이무는 오늘 1척을 쌓고 내일 2척을 쌓게 하여, 계속 이렇게 독역(督役)한다면 하기 쉬울 것입니다. 단 이곳에는 돌이 없습니다만 돌은 산의 뼈이니, 산을 파서 돌을 켜게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18일(丙午)

북방 방비와 세자의 관례에 관해 논의하다

전강(殿講)에서 문신(文臣)들에게 한어(漢語)와 이문(吏文)을 이습(肄習)시켰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재변이 중첩해서 발생하니 그 원인을 모르겠다.”하매, …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은 아뢰기를, “근래의 재이(災異)는 비단 지진 뿐만이 아니고 일월 성신(日月星辰)의 변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칠 줄을 모르니, 이는 필시 병란(兵亂)의 조짐일 것입니다. 인사(人事)에 있어서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방 경비가 지금처럼 심하게 해이해진 때는 없으니, 만약 서북 지방에 변고라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여연(閩延)·무창(茂昌) 등지에 조치할 일은 부득이 결빙(結氷) 뒤에 탐심(探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북 변방의 각진(各鎭)에서도 먼저 긴밀히 수비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연·무창에 살고 있는 야인은 추방하지 않을 수 없으나 추방한다면 반드시 사단(事端)을 일으킬 것이니, 여러 가지 방비할 일들을 먼저 조치해야 한다.”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지금은 무비(武備)만이 해이할 뿐만 아니라 저축 또한 넉넉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하였다. 고흥산은 아뢰기를, “저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땅은 사냥이나 농사짓기에 편한 때문입니다. 와서 산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우리 군사 또한 깊숙이 들어가 탐색하지 못하여, 저들이 반드시 틈을 타서 산천의 좁고 평탄함과 도로의 멀고, 가까움 등 우리

나라 지리를 엿보았을 것이니, 우리가 만약 구축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왕래하며 사단을 만들게 되어 환란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군사를 정제(整齊)하고 군광과 마소 먹이를 저축한 뒤에라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구축할 때는 우리 군사가 반드시 저들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므로, 군량을 많이 싣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사태의 변화에 따라 방어할 일을 먼저 조처함이 가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0일(丁卯)

호인 방어에 관한 일과 토병을 보완하는 일을 병조에 조치시키라 명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영의정(領議政) 김전(金詮)·좌의정(左議政) 남근(南袞)·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예조 판서(禮曹判書) 권균(權鈞)·좌참찬(左參贊) 유담년(柳聃年)·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공조 판서(工曹判書) 황형(黃衡)·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숙(洪淑)·호조 판서(戶曹判書) 한세환(韓世桓)·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정(沈貞)·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우참찬(右參贊) 김구급(金克楛)·병조 참판(兵曹參判) 방유령(方有寧)·지변사(知邊事) 윤희평(尹熙平)·오보(吳堡)·김석철(金錫哲) 등이 의논드리기를, “저들의 언서가 오만하고 마음대로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 위낙 군사를 일으켜서 정토해야 마땅하나, 우리 일에 있어서도 먼저 닦아진 뒤라야 됩니다. 만약에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조치하지 않고서 망령되어 구축하는 군사를 일으킨다면, 뒷날의 우환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전보다 백 배로 닦은 뒤에 농사가 풍년 드는 것을 보고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토병(土兵)이 단약(單弱)하다 하니,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일과 토병을 보완하는 일을 병조에 조치시키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의논이 마땅하다. 이런 일은 신중히 하는 것이 옳다. 병조에 조치시키라.”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0일(丁丑)

병조 판서 고흥산에게 군비를 정제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도록 당부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을 명소(命召)하여 분부하기를, “무릇 병관(兵官)을 두는 까닭은 군무(軍務)의 중한 일을 반드시 먼저 구획(規劃)하고 처치하여 급하게 변이 있으면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즈음 중국과 우리 변방에 말썽이 일어날 조짐이 없지 않은데, 뜻밖에 변이 생기면 토병(土兵)을 쓸 수 있기는 하나 경군(京

軍)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군비(軍備)를 정제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해야 하니, 습진(習陣) 때의 대장(大將)과 부장(部將) 등은 문신(文臣)·무신(武臣)을 가리지 말고 정하게 뽑아서 의망(擬望)하여 미리 진법(陣法)을 익히고 변에 응하는 법을 익혀서 뒷날 임기(臨機)하여 천거해 쓸 밑거리로 삼도록 하라. 또 군사는 반드시 말이 있어야 변에 임하여 쓸 수 있는데, 지금 군사가 된 자는 군장(軍裝)은 대강 갖추었으나 기마(騎馬)·복마(卜馬)는 모두 없으므로, 일이 있을 때를 당하면 반드시 남의 말을 빼앗아서 갈 것이며, 경오년의 왜변(倭變) 때를 보면 군사에게 말이 없었으니, 습진(習陣)한 뒤에는 점고(點考)하되, 미리 효유(曉諭)하여 각각 말을 장만하여 마치 헤아릴 수 없는 변이 조석에 다가와 있는 듯이 하도록 하라. 또 전에는 습진할 때에 의례 소각(小角)을 붙였는데,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소각의 소리는 멀리 들리지 못하므로 대각(大角)을 붙기를 청한다.’ 하였으므로, 그 뒤로는 이 전례를 따라 썼으나, 진서(陣書)에 실려 있는 것에 어그러지니, 이제 진법에 따라 소각을 부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도 그 뜻을 알므로 바야흐로 시취(試取)합니다. 성종(成宗)조(朝)의 고사(故事)에 따라 시사(試射)하여 당상(堂上)으로 올려서 장수의 직임을 예비하며, 당번 군사는 도총부(都摠府)와 병조(兵曹)의 당상 각각 1원(員)이 교외(郊外)에서 때를 정하지 말고 점검하며, 당번 군사의 기마·복마에 관한 법이 법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근래 헤아린 지 이미 오래이므로, 기일을 정해서 점검하면 소요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기한을 너그럽게 하여 점검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5일(壬午)

특진관 고흥산이 풍산 등에 중신을 보내어 형세를 조치하게 하기를 청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臣)이 접때 풍산(豊山)·불하(豊下)·무산(茂山) 등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그 형세를 조치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폐단이 있다 하여 좃지 않았는데, 신은 작은 폐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육진(六鎭) 중에서 풍산·불하가 부강하여 백 년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 순변사(巡邊使) 등 사신을 지금도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兩界)의 일은 귀로만 듣고 멀리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소 가서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사명(使命)은 폐단이 있는 듯하더라도 이런 일에 작은 폐단을 생각해서는 안 되니, 재상(宰相)을 보내어 순변(巡邊)시켜야 한다.”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26일(癸未)

김식 등을 수포하기 위하여 선전관을 보내고 대신 등이 수포 절목 등을 마련하여 아뢰다

영의정(領議政) 김전(金詮)·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좌찬성(左贊成) 홍경주(洪景舟)·우찬성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공조 판서(工曹判書) 황형(黃衡)을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송세충(宋世忠)의 서장(書狀)을 보니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유용검(柳用儉)이 칠원(漆原) 아내(衙內)를 수색하였으나 김식을 잡지 못하고, 하정(河琿) 만을 잡아서 영산 현감(靈山縣監) 성희문(成希文)에게 맡기고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였는데, 희문이 잘 지키지 않아서 하정을 한밤에 달아나게 하였다.’ 하니, 성희문을 빨리 잡아와야 한다.” 하였다. … 상이, 언사를 출납할 즈음에 혹 새어 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대신과 고흥산·황형 등을 불러서 다 비현합(丕顯閣)에 들어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전 등이 비현합이 좁다 하여 경연청(經筵廳)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고 대신 등이 입대(入對)하였다. … 황형(黃衡)·고형산(高荊山) 등이 보낼 만한 무사(武士) 유영원(柳榮元)·조승성(曹承晟)·지한중(池漢宗)·조수천(趙壽千)·정연종(鄭連宗)·이광영(李光榮)을 뽑아서 아뢰니, 각각 군관을 거느리고 각도로 나뉘어 가서 끝까지 수색하라고 명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0일(丁亥)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이증을 국문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수인(囚人)을 국문(鞫問)하였다. … 삼공(三公)이 이증을 형신(刑訊)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장(杖)을 9도(度) 치니, 이증이 외치기를, “뭇은 것을 풀고 매를 그쳐 주소서. 그러면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곧 뭇은 것을 풀어 주게 하고 물으니, 이증이 아뢰기를, “김식이 늘 제거하려는 뜻을 말하므로 신이 ‘나도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다만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 김식이 ‘하정과 모의하여 먼저 익명서를 만들어 투입해서 인심을 의혹시키고, 또 조정에 있는 재상(宰相), 이를테면 고흥산(高荊山)·이장곤(李長坤)·유담년(柳聃年)·박영(朴英)이 우도 절도사(右道節度使) 김극성(金克成) 등에게 격문(檄文)을 전하여 그 마음을 경동(驚動)시킨 뒤에 경상도의 백정(白丁)과 전라도의 떼도둑을 거느리고 일어나, 한때를 기하여 여러 사람들과 재상들에게 격문을 전하여 내응(內應)하게 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 또 미리 성명하기를 「군사가 전라도에서 왔다.」 하되 격문에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모성(某姓) 모인(某人)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거짓 칭하면 어찌 쉽지 않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찌 참여하여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다만 후원이 될 뿐이다. 내가 다시 뜻을 얻어 반거(盤據)하면 네게도 좋을 것이다.’ 하므로, 신이 ‘한 사람을 시켜서 두루 일깨울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김식이 ‘덕순이 맡을 수 있다. 경중의 재상에게는 먼저 익명서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신이 중간에서 임금을 옹폐한 간신을 제거하면 선비들에게도 어찌 이롭지 않겠느냐?’ 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5월 8일(乙未)

이유청·고형산 등에게 이승손이 고한 5인을 조치하여 수포해야 하겠다 이르다

이유청(李惟淸)·고형산(高荊山)·황형(黃衡)을 명소(命召)하여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조치하여 수포해야 하겠다.”하매, 황형이 아뢰기를, “이 무리가 그 변변치 못한 마음으로 어찌 어둠을 타고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청컨대 민회창(閔懷昌)을 서쪽 길로 보내고 허상(許桑)을 동쪽 길로 보내어, 서쪽은 삼각산(三角山)으로부터, 동쪽은 우이동으로부터 들어가 힘을 다해 수포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소서.”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5월 15일(壬寅)

함경도 거산 찰방으로 무신을 차송하는 등 문제를 아뢰다

… 상이 이르기를, “감사(監司)도 위낙 중하나 학교는 더욱 중하니, 세필을 성균관 동지(成均館同知)로 가도록 하라. 문(文)과 무(武)의 일은 모두 폐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근자에 병무(兵務)가 해이하니 병조(兵曹)는 힘쓰라.”하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요즈음 습진(習陣)에서 보니 군사는 2천여 명인데 기병(騎兵)은 다 파리하여 부실합니다. 신이 듣건대 여수(旅帥)들이 약속하기를 ‘군영(軍營)에 들어가 붙여 있는 자가 있거든 별주고, 살찌고 튼튼한 말을 끌고 와서 점고(點考)받는 자가 있거든 별주자.’ 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 무리를 많이 만들어 본조(本曹)가 죄다 죄줄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니, 인심이 황당하기가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신이 이미 그 가운데에서 더욱 심한 자를 가려내어 형조(刑曹)에 이문(移文)하여 죄주게 하였습니다.”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여수와 대정(隊正)으로서 도망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함경도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무신(武臣)을 차송(差送)하는 까닭은 방어

가 긴요하기 때문인데, 요즈음은 문신을 차송하나 민폐가 줄어드는 것은 알 수 없으니, 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무신을 차송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에게 물으라.”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5월 21일(戊申)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5월 26일(癸丑)

양계의 군량, 군자 문제 등을 아뢰다

… 특진관(特進官)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양계(兩界)의 군량(軍糧)은 예비하여 뜻밖의 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데, 안주(安州) 둔전(屯田)의 곡식이 오래 묵어 썩으니, 이것을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다가 방아를 찧어 들여가서 불시(不時)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량이 늘 준비되지 않으면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비변사(備邊司)와 의논해서 해야 하리라.”하매, 이윽청이 아뢰기를, “삼도(三道)【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곡식보다도 본도의 곡식을 나르는 것이 낫습니다.”하고, 고흥산이 아뢰기를, “사شم시(司瞻寺)의 면포(綿布)로 곡식을 사서 군자(軍資)를 보태는 것도 한 가지 방도입니다. 또 국채(國債)가 민간에 흠어져 있는데 도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더욱 염려됩니다.”하고, 이윽청이 아뢰기를, “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것도 권의(權宜)의 일입니다.”하고, 고흥산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허갈(虛竭)한 때에는 본디 이와 같은 권의의 일이 있었거니와, 군자가 충족되어야 김주성합(金朱成哈)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4일(庚申)

평안도 안주의 곡식 문제 등을 아뢰다

… 병조 판서 고흥산이 아뢰기를, “평안도 안주(安州)의 곡식을 나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저 강변(江邊)의 곡식이 근래 더욱 모자라니 뜻밖의 변이 있으면 어떻게 군사를 돕겠습니까? 평시에 편안함에 따라 즐겨 나르지 않으면

사변이 있을 때에 나르려 하더라도 그 폐단이 백배나 더할 것입니다.”하고, 김석철이 아뢰기를, “군량(軍糧)이 많이 저축되면 불시의 변에 응할 수 있으므로, 군사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미리 나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니, 드디어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는데, 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날라 들어가는 것이 떳떳합니다.”하니, 상이 ‘그러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5일(辛酉)

계복 때에 대신에게 각각 그 미진한 데를 말하게 하고 기준은 올문대로 하라 명하다

계복(啓覆)을 들었다. 상이 이르기를, “계복 때에 대신(大臣)을 입참(入參)시키는 까닭은 각각 그 미진한 데를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품은 뜻을 죄다 말하라.”하매, 우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망명은 유식한 자가 할 일이 아니며, 더구나 부모가 있는 자는 더욱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식은 늙은 어미를 버리고 하정은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서 망명하였으니 어찌 신자(臣子)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기준·김정은 그 어미를 보러갔다 하니, 뜻은 가없으나 망명한 사상(事狀)은 명백합니다.”하고, 공조 판서 황형(黃衡)이 아뢰기를,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대저 형살(刑殺)·은유(恩宥)가 분명해야 인심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올문(律文)이 이미 그러하니 법을 굽혀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올문이 분명하므로, 법을 넘어서 아뢰미 있을 수 없으니, 상께서 짐작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1일(丁卯)

입직한 군사를 모으니 갑주가 없는 군사가 많아 벌을 논하다

상이 용복(戎服) 차림으로 사정문(思政門) 밖에 나아가 첩고(疊鼓)하니 위장(衛將)들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상이 이르기를, “갑주(甲冑)가 없는 군사가 많으니, 적오라. 군사는 갑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미처 알지 못하겠으나 각소(各所)의 위장은 알 터인데 갖추지 않았으니, 불러서 물으라.”하매, 위장이 아뢰기를, “근년에는 이 일이 행한 지가 이미 오래으므로 신 등은 다 무슨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니다.”하였는데,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첩고는 요즘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것인데, 장수들이 다 몰랐다고 하니 그 죄는 따져야 합니다.”하니, 상이 ‘물으라.’ 하였다. 상이 대내(大內)로 돌아간 뒤에 고흥산이 아뢰기를, “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에 본디 받은 갑주가 있으면 이런 때에 입

어야 할 터인데 입지 않았으니, 모두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미처 오지 않은 도총부의 낭관(郎官)도 추고(推考)해야 마땅하다.”하매, 좌승지(左承旨) 박호(朴壕)가 아뢰기를, “각소의 부장(部將)도 갑주를 갖추지 않았으니, 위장을 죄주는 율(律)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6일(壬申)

이항이 기마·복마를 장만하여 군영에서 기르는 문제로 아뢰다

… 이항이 아뢰기를, “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됩니다. 군사가 군영(軍營)에서 말을 기르는 것은 법이니 더욱 밝혀서 행하는 것이 워낙 마땅하나, 근년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곡식을 먹지 못하므로 군사가 양식을 장만하여 상번(上番)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더구나 기마(騎馬)·복마(卜馬)를 장만하여 군영에서 기르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고법(古法)이라 하여 강제로 시키면 군사가 날로 곤궁할 뿐 아니라, 또 점고(點考)에 빠져 형조(刑曹)로 옮겨 죄를 결단하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맞다가 숨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갓 그 법을 시행하되 인정과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하는 것이니, 짐작해서 그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을 더욱 밝히면 과연 경(卿)의 말과 같이 폐해가 있을 듯하나, 근래 군정(軍政)이 헤이한데 작은 폐단에 얽매여 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말을 장만하는 자가 있겠는가?”하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이항의 말은 매우 마땅하나 병조(兵曹)가 경중을 짐작해서 해야 합니다.”하고,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이항의 말이 당연합니다. 근래 민심이 스스로 편한 것을 좋아하여, 적은 법을 세우더라도 다 좃지 않으려 합니다. 군사 중에 이따금 말을 장만하는 자가 있으나, 그 여수(旅帥)·대정(隊正)은 ‘말을 장만한 자는 적고 말이 없는 자가 많거니와, 대개 같다면 낱날이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다들 점고에 빠지는 것이 옳다.’ 하니, 그 계책을 쓰는 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7일(癸酉)

대신들이 수인 김정(金淨)의 망명으로 율을 갖고 의논하다

계복(啓覆)을 들었다. 승지 윤은필(尹殷弼)이 의금부(義禁府)의 수인(囚人) 김정(金淨)의 초복(初覆)을 아뢰었는데 망명(亡命)한 일이었다. 계(啓)가 끝나고서 영의정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김정이 처음에는 도망하였으나 도로 배소(配所)에 이르렀고 명을

받들어 잡아왔으므로 그 정상을 구명하면 망명이 아닌 듯한데, 모반조(謀叛條)의 ‘산택(山澤)으로 도피하며 추환(追喚)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율하였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죄(死罪)를 결단하는 데에는 정률(正律)을 앞세워야 하거니와, 이미 조율하였는데 온편치 못하다 하여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하매, 다 함께 아뢰기를, “법에 맞을 만한 율(律)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 율로 조준(照準)한 것입니다.”하고, 예조 판서 권균(權均)이 아뢰기를, “형록(刑戮)의 일은 신중히 해야 하는데 율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니 다시 잘 살펴야 합니다.”하고, 병조 판서 고흥산이 아뢰기를, “죄를 논하자면 용서할 수 없고 율을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므로, 신하가 감히 의논할 것이 아니니 상께서 재단하셔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율에 죄에 맞거든 정리(情理)와 법리(法理)를 참작하여 오르내리면 될 것이며, 율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더라도 사죄(死罪)를 감면하면 될 것이다. 빨리 여러 대신을 불러서 다시 의논하라.”하였다. …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11일(丙寅)

대신들에게 여악을 다시 두는 것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 · 영의정(領議政) 김전(金詮) · 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 ·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 · 좌찬성(左贊成) 홍경주(洪景舟) · 우찬성(右贊成) 이계맹(李繼孟) · 좌참찬(左參贊) 유담년(柳暹年) · 예조 판서(禮曹判書) 권균(權鈞) ·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 · 공조 판서(工曹判書) 황형(黃衡) · 호조 판서(戶曹判書) 한세환(韓世桓) · 이조 판서 심정(沈貞) ·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극휼(金克福) ·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 등을 명소(命召)하여, 여악을 다시 두는 것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8월 25일(庚辰)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1일(丙午)

의주의 성 쌓는 문제로 고흥산을 보낼 여부를 의논하다

영의정 김전(金詮) · 좌의정 남곤(南袞) · 우의정 이유청(李惟淸) · 우찬성 이계맹(李繼孟) · 좌참찬 유담년(柳聃年) · 예조 판서 권균(權鈞) ·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 참의(參議) 김호(金瑚) · 첨지(僉知) 공서린(孔瑞麟) 등을 명소(命召)하여 의주(義州)에서 성을 쌓는 일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김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의 성자(城子)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므로 보기에 매우 불가한데, 더구나 그곳은 중국의 경계이고 또 피인(彼人)이 경계를 잇대어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미루고 쌓지 않을 수 없으니 작은 폐단을 헤아리지 말고 쌓아야 합니다. 또 평안도의 올해 농사는 지금까지 손해를 입었다는 신보가 없거니와 올해에 쌓지 않으면 내년을 점치기 어려우니 결단코 그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양계(兩界)의 순심(巡審)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대신을 가려 보내어 가서 성을 쌓을 터를 보고 이어서 변진(邊鎭)의 허실(虛實)을 순심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을 쌓는 군사로 말하면, 당번 보졸(步卒)과 두 영(營)의 아리(衙吏)를 시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모자라면 또 연호군(煙戶軍)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지위가 낮은 젊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신을 보내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뢴 뜻이 매우 마땅하다.”하매, 정부(政府)가 또 아뢰기를, “고형산이 함경도의 형세를 환히 알거니와, 평안도의 형세도 알게 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을 보내면 민폐를 없앨 수 있고 공역(功役)도 성취될 것입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고형산을 보내야 하겠으나, 병조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버려 둘 수 없으니, 나는 삼공(三公) 줄에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한다. 도독을 추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김전 등이 또 아뢰기를, “고형산은 병사(兵事)에 익숙하여 성을 쌓는 일도 일찍부터 하니,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조치를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공이 갈 수는 있겠으나 쌓기를 끝낼 때까지 머물러 기다릴 수 없으니, 신 등은 형산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산이 계속 머물러서 성을 쌓는 공역을 마치게 하려는가? 그러면 본직(本職)은 같아야 한다. 병조는 임무가 중하고 일이 번거롭고 바쁘므로 재상(宰相) 가운데에도 말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겠으나 형산만 못하다. 나는 안윤덕(安潤德)이 변방의 일을 맡을 만하다고 생각 한다. 윤덕은 전에 평안도의 일을 살핀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을 보내려 한다.”하매, 김전 등이 아뢰기를, “안윤덕이 할 만하나 고흥산만 못하고 형산이 가더라도 본직을 갈 것은 없습니다. 병조의 일은 참판(參判) · 참의(參議)가 있으니 사무를 보지 않게 버려두

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직을 갈지 않는다면 보낼 수 있다.”하였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1일(丙午)

특진관 고흥산이 의주에 성을 쌓는 일로 평안도의 형세를 친히 가서 보고자 함을 아뢰다

주장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의주에서 성을 쌓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올해 농사가 어떠한지 모르겠다. 잘 여물지 못하였다면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하매,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근년 이래로 해마다 잇따라 농사를 가르쳐서 군민(軍民)이 곡식을 먹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농사를 가르쳤다는 신보가 없으므로 쌓기를 계청(啓請)하였습니다. 또 내년에 중국 사신이 오는 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성을 쌓는 일은 미처 성취하지 못할 듯하나, 신이 친히 가서 보고 그 형세에 따라 피하고자 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3일(戊申)

대신들을 명소하여 성을 쌓는 일이 온편한지를 묻다

영의정 김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예조 판서 권균(權鈞)·우찬성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좌참찬 유담년(柳聃年)을 명소하여 성을 쌓는 일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은 늘 이 성이 쌓아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데, 이곳은 피인(彼人)과 경계를 잇대었을 뿐 아니고 또 중국의 경계이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곤 등이 본 것은 4천여 척이고 황형 등이 본 것은 7천여 척인데, 이런 공역(功役)쯤이야 어찌 성취하기 어렵겠습니까? 다만 든건대 의주부터 1식(息)안에서는 돌 한 덩이도 볼 수 없다 하니 그렇다면 공역이 쉽게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부리는 것은 당령 수군(當領水軍)과 당번 보졸(當番步卒)과 두 영(營)의 아리(衙吏)뿐이므로 합하여도 2~3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1식 안에 돌 한 덩이도 없는 것을 보면 이 군사로는 그 공역을 성취할 수 없고, 군사 2~3만을 쓰고서야 공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고 전해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니, 신이 친히 가서 보고 나서야 어렵고 쉬운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곤 등이 대신을 보내기를 청한 까닭은 지위가 낮은 종사관을 보내면 그 도의 감사가 그 백성을 우선 편안하게 하고자 하여 반드시 종사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역이 성취되지 않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반드시 성을 쌓고 나서야 변방을 순심한다면, 지금은 따뜻하여 가는 철이 아니므로 아마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원진(柔遠鎭)의 산성(山城)은 무너져서 온전하지 않으므로 쓸 데가 없으니 이 돌을 가져다가 쌓을 수 있겠으나, 이는 옛 관방(關防)인데 허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양계를 순변(巡邊)하는 대신(大臣) 【삼공(三公)을 가리킨다.】 중에서 한 사람이 친히 가서 순심한 뒤에야 뒷날 변방의 일을 계획할 때에 특별히 피하는 것이 남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고형산이 늘 대신이 변방의 일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였다. 고형산이 아뢰기를, “군기(軍機)에 관한 일을 한번 그르치면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삼공과 정부(政府)의 동서벽(東西壁)이다 변방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선대 조정에서는 한명회(韓明滄) 등이 변경(邊境)에 드나들되 금년에 가서 보고 명년에 또 가서 보고하였으니, 이것은 변방의 일을 중하게 여겨서 작은 폐단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대신이 가더라도 한 고을에 오래 머물 수 없는데 폐해가 어찌 크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소신이 전에 함경도 감사가 되고 그때 송일(宋軼)이 순변사(巡邊使)로 갔었는데, 신이 송일을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만 대접하였으니 무슨 폐해가 있겠습니까? 또 유담년(柳聃年)이 그때 절도사(節度使)였으니 신이 송일을 대접한 일을 죄다 압니다. 대신이 변진(邊鎭)의 형세를 모르면 변방의 일을 헤아려 획책할 때에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4일(己酉)

대사헌 홍숙을 불러 고형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다

대사헌 홍숙(洪淑)을 명소(命召)하여 고형산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일렀으나 홍숙이 처음과 같이 중지하도록 다시 아뢰었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4일(己酉)

고형산에게 의복·초피견·화살 등의 물품을 내리다

고형산에게 의복·초피견(貂披肩)·화살 등의 물품을 내렸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5일(庚戌)

평안도의 농사가 그르쳤다고 하니 고행산을 보내는 의논을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고행산을 보내는 의논은 이미 정해졌으나, 그 도의 감사가 농사를 그르쳤다고 아뢰었으니 어찌 처리해야 할는지 이 뜻을 사관(史官)을 보내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5일(庚戌)

대사헌 홍숙이 고행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대사헌 홍숙이 고행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며 아뢰기를, “그곳의 백성에게 장차 어육(魚肉)이 되는 환난(患難)이 있을까 염려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5일(庚戌)

삼공이 고행산을 시켜 우선 본도의 재해의 실상을 살피게 하기를 청하다

삼공(三公)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평안도의 농사가 부실하여 과연 굶주리게 된다면 위낙 시굴 거영(時舉擧羸)571)해서는 안 되겠으나, 의주(義州)는 나라의 서문(西門)으로 방비가 허술하게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번번이 흉년이 들어 역사를 일으키기 어렵다 하여 미처 수선하지 않는 것은, 요해(要害)를 두어 나라를 지키는 도리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이제 또 농사를 그르쳤다 하여 그 역사를 그만둔다면 허술한 방비가 보완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고행산을 시켜 본도(本道)의 재해의 실상을 살피게 하여 재상이 심하여 백성이 굶주리거든 순변만 한 뒤에 올라오게 하고 심하지 않거든 적당하게 백성을 징발하여 다 쌓게 하여 전에 의논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의 의논은 그르다. 재해의 경중은 허평의 서장(書狀)에 갖추 적혀 있으므로 다시 살필 것도 없으며, 고행산이 가더라도 농사의 재해 실상은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니 어찌 그리 말이 어그러지는가?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시기가 맞지 않는 때에 역사를 일으켜 성을 쌓았다가, 이듬해에 곧 죄다 무너져서 본도의 차사원(差使員)을 시켜 고쳐 쌓게 하면 민력만 피폐할 것이다. 또 성은 넓으나 안이 비었으니,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누가 함께 지키겠는가? 옛 성이 무너졌으므로 식자는 이를 염려하거나와 홍숙이 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6일(辛亥)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본조의 일이 허술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벼슬을 갈아 주기를 청하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평안도 감사가 농사를 그르쳤다고 치계(馳啓)했다 하며, 대간도 고집하여 논계(論啓)하여 신의 행지(行止)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농사를 매우 그르쳤다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옳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경(卿)은 가지 않을 수 없다.”하매, 고흥산이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 오래 있으면 본조(本曹)의 일이 많이 허술해질 것이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본직(本職)은 갈 수 없다. 외방에 오래 있더라도 어찌 두세 달을 넘겠는가?”하였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7일(壬子)

고형산에게 오늘 떠날 만하면 떠나도록 하라 전교하다

고형산(高荊山)에게 전교하였다. “성을 쌓는 일은 이미 그 도에 일러서 예비하게 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당초에 오늘 보내려 하였는데 대간이 논집하므로 보내지 못하였으나 오늘 떠날 만하면 떠나도록 하라.”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8일(癸丑)

집의 남세준·지평 황사우 등이 고흥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지평(持平) 황사우(黃士佑)·정언(正言) 한승정(韓承貞)·김탁(金鐸) 등이 문과 시장(文科試場)으로부터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고흥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29일(甲寅)

대사간 조방언 등이 대신들이 고흥산을 굳이 보내기를 청한 잘못을 아뢰다

대사간(大司諫) 조방언(趙邦彦)·장령(掌令) 채소권(蔡紹權) 등이 문과 시장으로부터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고형산을 보내는 일을 대간이 바야흐로 논집하여 마지않는데 대신들이 굳이 보내기를 청하는 것은 대간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매우 잘못입니다. 재직(在職)하는 것이 온편치 못하나, 강경 시관(講經試官)으로 곧 배사(拜辭)해야

하므로 갑자기 사직하지 못하오니 다시 의논하여 와서 아뢰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성을 쌓을 기일이 가까와 왔으므로 대신들이 재촉하여 보내기를 청한 것이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그때 지론(持論)한 자는 다들 조광조(趙光祖) 등이 대간이었을 때에 반드시 조정(朝廷)에 대례(大禮)가 있을 때를 인연해서 사직(辭職)하므로 대례가 여러 번 멈추어졌던 것을 크게 여긴 까닭에 이제 대간이 사직하려 하나 별시(別試)의 시장에 들어간다 하여 사직하지 않으니 또한 사습(士習)이 떨치지 못한 것이 보인다. 대간과 대신이 시비를 다투는데, 대신이 굳이 자기 의논을 펴느라고 꾀박하여 고흥산을 보내니, 이것은 대간이 대신에게 굴욕당한 것이다. 대간으로서 굳이 사직하여 조정의 기강을 떨쳐야 할 터인데 어찌 시장에 마음을 쓰는가? 이때부터 사습이 시들어서 다시는 기절(氣節)이 없었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6일(庚申)

대사헌 홍숙 등이 대신들이 대간을 업신여겼다 하여 다스리기를 청하다

대사헌 홍숙(洪淑) · 대사간 조방언(趙邦彦) ·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 · 사간(司諫) 정백봉(鄭百朋) · 장령(掌令) 정응린(鄭應麟) · 채소권(蔡紹權) · 헌납(獻納) 허관(許寬) · 지평(持平) 황사우(黃士佑) · 김공예(金公藝) · 정언(正言) 한승정(韓承貞) · 김탁(金鐸) 등이 아뢰기를, “일전에 고흥산을 보내어 성을 쌓게 할 때, 신 등은 그 도가 농사를 가르쳤고 중국 사신의 행차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감히 대신을 보내어 성을 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뢰었는데, 이제 들건대 형산이 내일 떠날 것이라 합니다. 대간이 바야흐로 불가하다 고집하는데 어찌 결연히 보내야 마땅하겠습니까? 형산도 결연히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께서는 정원(政院)을 시켜 형산에게 신 등이 아뢴 뜻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보내려 하신 것이 아닐 것인데, 대신들이 감히 보내기를 청하였으니 대간을 업신여기는 것이 심합니다. 예로부터 대간이 바야흐로 아뢰는데 대신이 감히 청하여 자기 소견이 수행되기를 바란 일로는 이처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대간의 직임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닦지 못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이처럼 경멸받고 스스로 공기(公器)를 욕되게 하였으니, 대신의 비위를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 등의 벼슬도 같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간이라는 것은 임금이 너그럽이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인데, 대신이 이 꼬투리를 연다면 뒷폐단이 작지 않을 듯하니, 대신의 잘못을 께히 다스려서 사기(士氣)를 배양하소서.”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으며, 다시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21일(乙亥)

고형산으로 하여금 군인의 수가 적거든 역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민폐가 없도록 힘쓰게 하다

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니, ‘군인이 2만 인이 못 된다 하니, 이 수를 채우려면 부득이 10일정(十日程)이 되는 곳의 군인을 징발하여 반 달 동안 일을 시켜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소요할 폐단이 없지 않으므로 성 쌓는 일을 줄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땅한 듯하나 당초에 징발한 군인 1만 3천 중에서 아직 역사에 나아가지 않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그러므로 고형산(高荊山)이 2만을 맞추어 뽑으려는 것입니다. 또 계본에 못사람을 크게 징발하여 백성을 지치게 한다.’ 하였으나, 고형산이 어찌 생각없이 못사람을 징발하여 백성을 지치게 하겠습니까? 형산이 이미 내려갔으니, 감사는 함께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요 이런 계본을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계본을 베껴서 형산에게 내려 보내어 군인의 수가 적거든 역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민폐가 없도록 힘쓰게 하고, 또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형산과 함께 의논하고 살피게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27일(辛巳)

의주에서 성을 쌓고 있는 일로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다

… 상이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나라의 근본이 먼저 지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그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당초에 대신이 굳이 칭한 뜻은 의주의 관방(關防)이 긴요한 것을 중시한 것이었다. 또 고형산(高荊山)의 서장에 ‘날씨가 일찍 추워지면 역사를 성취하지 못할 듯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날씨가 추우면 일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그 도의 민폐가 매우 많으니, 지금 고형산에게 돌아오라고 명해야 하겠는데 어떠한가?”하였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고형산은 대신입니다. 이미 내려가서 그 일을 주관하니, 성취할 만하면 성취하고 할 수 없으면 스스로 올라올 것인데, 이제 문득 돌아오라고 명하시면 일을 성취할 만하더라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황사우가 아뢰기를, “허굉의 서장을 보면 그 도의 폐해가 매우 염려된다 하고, 고형산의 서장을 보면 그 폐해가 심하지는 않다 하여, 두 사람의 서장의 뜻이 서로 어그러지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굉은 스스로 한 도의 주인이므로 백성을 돌보는 일을 급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 서장이 그러한 것이다.”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허굉의 서장을 보면 한 도의 폐해가 아주 염려된다 하였으나,

고형산은 어린 사람과는 다른데, 그 도의 폐해가 심하다면 어찌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1월 13일(丁卯)

평안도 순변사 고형산이 의주의 성을 쌓은 것과 그 방어의 상황에 대해 아뢰다

평안도 순변사(平安道巡邊使) 고형산(高荊山)이 복명(復命)하니,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의주(義州)의 성(城)을 오래도록 쌓지 못했었는데 이제 쌓았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방어(防禦)의 상황은 어떤가?”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가서 보니, 돌이 15리(里)쯤에 있었으므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겨 감사(監司)로 하여금 역군(役軍)을 동원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곳 사람이 모두들 ‘우리 조부(祖父) 적부터 쌓으려고 했었으나 쌓지 못했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감사·병사(兵使)는 모두 어렵게 여겼고 차사원(差使員) 등도 역시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래도 쌓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마침 일기(日氣)가 따뜻하여 겨우 25일 만에 역사를 끝냈습니다. 역사를 잘 감독하지 않은 수령(守令)은 바로 태천현감(泰川縣監) 윤희조(尹希祖)·영유현령(永柔縣令) 이창령(李昌齡)·영변관관(寧邊判官) 서자통(徐自通)이었으며, 의주 목사(義州牧使) 이기(李芑)는 신의 뜻을 체념(體念)하여 힘을 다해 감독했습니다. 그리하여 강변(江邊)이 모두 튼튼하게 완비(完備)되어 함경도의 경우처럼 허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적(敵)들이 노략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관(權管)을 닦할 것이 아닌 것이,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마다 모두 보(堡)를 설치하여 놓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형세가 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사(節度使) 역시 이 폐단을 알고는 있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주(安州)는 험요(險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일 급박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믿을 만한 곳이므로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못하니 깊이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토군(土軍)들이 제일 싫어 하는 것은 보첩(堡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보첩 안의 거처하는 곳을 볼 것 같으면 벽에 흙을 바른 집이 없이 모두 하루만 묵어가는 곳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황해도 군사의 번(番)을 드물게 해주는 일에 관해서는 신이 독단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監司)·병사(兵使)에게 문의했으나 그들의 의논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논을 하나로 결정하게 했으나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올라왔습니다. 또 상토진(上土鎭)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오만진(五萬鎭)은 상토진과의 거리가 30리인데 그 사이가 텅 비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모두 이곳을 통하여 왕래하고 있으니 본성(本城)을 물려서 쌓고 민호(民戶)를 더 들여보낸다면 함경도와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되어 반드시 당당한 형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신들과 이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소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성품이 순박 정직하고 근검(勤儉)하여 남의 비방을 감수하면서 나라 일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전곡(錢穀)과 군병(軍兵)을 다스리는 재능이 더욱 뛰어났었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1월 16일(庚午)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였으나 돈유하고 윤택하지 않다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병들었고 또 직책에 오래 있었다는 것으로 사직(辭職)하였으나 돈유(敦諭)(695)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1월 21일(乙亥)

대신들이 관방이 긴급하지 않은 진보의 혁파에 대해 의논하다

영추부사 정광필 · 영의정 김전 · 좌의정 남곤 · 우의정 이유청 · 좌찬성 홍경주 · 우찬성 이계맹 · 좌참찬 유담년 · 병조 판서 고흥산 · 병조 참판 방유령 · 병조 참의 김호(金瑚) · 병조 참지(兵曹參知) 공서린(孔瑞麟) · 지변사(知邊事) 황형(黃衡)·유미(柳湄)·윤희평(尹希平)·안윤덕(安潤德)·심순경(沈順經)이 관방(關防)이 긴급하지 않은 진보(鎭堡)를 혁파하는 데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황형 이하는 모두 안 된다고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 진보를 설치한 것은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래도록 태평 세월을 누렸고 도적도 침구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진보(鎭堡)를 무익하다 하여 혁파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체 혁파하여 버린다면 뒷날 도적이 침구하여 올 경우 막기 어려운 화(禍)를 당하게 되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하였다. 형산도 좌중에 앉아 있었으나 이 의논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은 채 좌우의 의논만 볼 뿐이었다. 김전(金詮)이 말하기를, “혁파한 뒤에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소? 다행히 걱정이 없게 된다면 모르지만 만일 적변(賊變)이 일어나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혁파하자고 건의한 사람을 허물하게 될 것이오.” 하니, 모두들 감히 의논하지 못한 채 저녁 때가 되도록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뢰기를, “각 진보(鎭堡)를 혁파하는 일과 만호(萬戶)를 신설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다시 천천히 생각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2월 1일(乙酉)

지평 김공예·헌납 허관이 이곤·남세웅·이장길의 일을 논했으나 윤택치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김공예(金公藝)·헌납(獻納) 허관(許寬)이 이곤(李坤)·남세웅(南世雄)·이장길(李長吉)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장길은 진사(進士)로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음흉하고 교활하였지만 문필(文筆)에 능하였으므로 당시의 성예(聲譽)를 얻었다. 연산군 때에는 의성(義城)의 수재(守宰)로 있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그물질하여 녹수(綠水)에게 빌붙었으므로, 바로 연방원 부정(聯芳院副正)을 제수받았고 따라서 비길 데 없는 뾰를 누렸다. 그 아우 이장곤은 재주와 무예를 겸비하였으나 연산군의 버림을 받아 남쪽 지방으로 귀양갔었고 그의 아내는 창령(昌寧)의 농사(農舍)에 있었는데, 장곤이 죽임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귀양살던 곳에서 도망하였다. 연산군은 그가 난(亂)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장길을 시켜 체포하게 하였으나, 장길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창령으로 달려가서 장곤의 집 사람들을 닥달하였다. 그때 온갖 참혹한 짓을 다한 것은 물론 장곤의 처를 고을의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여 침 뱉고 욕하였다. 반정(反正)한 처음 즉시 내쫓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부하자 형산은 그의 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의 능력만을 취하여 이 직(職)에 의망(擬望), 제수되었다. 그래서 공론(公論)이 매우 격분하였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2월 15일(己亥)

주강에서 특진관 고흥산이 장수 선발과 별등포 등지의 둔전 설치 등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르기를, “명나라 사신이 거쳐오는 일로(一路)의 각 고을에는 군사(軍士)와 무기(軍器) 등의 일에 대하여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하매,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으로 적의 침략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 군사에 관한 일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장수에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황형·유담년 등 몇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황형은 죽었고 유담년은 비록 살아 있으나 병이 있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당상관 가운데는 역시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모두 외임(外任)에 나가 있습니다. 근래 국가가 태평을 누린 지 오래어서 군무(軍務)가 해이해졌습니다. 모름지기 장수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군졸들이 우러러 볼 데가 있게 하고 따라서 모든 기무(機務)를 위임해야 합니다. 급박한 일을 당했을 적에 갑자기 적임자를 선발하여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장(儒將) 가운데 대사(大事)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이장곤(李長坤) 한 사람뿐인데 병 때문에 직(職)에서 물러나 집에 가 있고, 그 다음 당상관 가운데 적격자는 3~4인뿐입니다만 당하관(堂下官)이라고 어찌 적격자가 없겠습니까? 대저 힘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대응하는 것과는 그 효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이 전일 평안도 종사관(平安道從事官)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장성(長城) 쌓는 일에 대하여 의논할 적에 모두들 ‘반드시 20만 명이 있어야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팔도(八道)의 백성을 전부 징발해도 일을 완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지형을 상세히 살펴보니 일을 완성시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적격자가 절도사(節度使)에 임명된다면 성 쌓는 일을 잘 조처할 것이고 아울러 백성도 폐(弊)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의 군량(軍糧)은 내지(內地) 각 고을의 용정미(春正米)를 희천(熙川)·귀성(龜城) 등 고을에 모았다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고을에서 실어나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안도에서도 5~6일 길이므로 군량을 가져오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 뜻은 관찰사 허굉(許磻)이 이미 아뢰었습니다. 강계(江界)의 둔전(屯田)은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아뢰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곳의 백성을 다 구휼할 수가 없습니다. 벌등포(伐登浦) 등처에는 농사지를 만만 빈 땅이 많으니 호조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개간(開墾)하게 한다면, 둔전 2천여 경(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산(理山)·강계(江界) 등 백성들의 식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내외(內外)에서 실어나르는 폐단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토보(上土堡)는 멀리 떨어져 외로이 있으므로 방어(防禦)하는 일이 긴급합니다. 이곳은 우선적으로 완비해야 될 지역인데도 군사와 성 쌓는 일 등이 모두 완비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적격자를 얻어 맡겨야 할 것이요 법(法)에 따라 임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대신(大臣) 등과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런 등등의 일은 해사(該司)와 대신이 합의(合議)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근래 장수의 재목이 과연 부족하다. 황형이 갑자기 죽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장곤 역시 병을 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쓸 만한 무신 당상(武臣堂上)이 내지(內地)의 수령으로 보임된 자가 많은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이다. 장수에 합당한 사람을 미리 선발하여 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하였다. 형산

이 아뢰기를, “무신은 김수담(金粹潭)·조현범(趙賢範)뿐인데 이미 내지의 수령으로 나가 있고 문신에는 반석평(潘碩枰)·최세절(崔世節)·김세준(金世準)·이기(李芑) 등이 모두 무재(武才)가 있습니다. 이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무재가 쓰일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자못 무사(武事)에 관하여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대저 양계(兩界)의 군무(軍務)는 노인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임무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산천의 높고 낮음과 도로가 평탄하고 험함을 몸소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을 어찌 다른 사람을 시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하여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건장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연습을 시키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모든 사업(事業)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구애없이 단지 인기(人器)가 합당하다는 것만으로 불차탁용(不次擢用)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이 근래 양계(兩界)에 갔을 때 비록 높은 데 올라가 관망해야 할 곳이 있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는데야 어찌겠습니까? 이장길(李長吉)은 무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의 재간(才幹)은 훌륭하여 현재로선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그가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온 지 오래인데 근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소위를 살펴보니 계책(計策)이 참으로 뛰어났었습니다. 이제 대간이 그의 행실에 그릇된 점이 많다는 것으로 논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인(內人)에게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우 장군(長坤)을 구제하고 가문(家門)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적에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았었습니다만, 공론(公論)이 저러하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길의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도 모두 애매하다 하니 그 인물을 폐기(廢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간이 아뢴 것을 윤택하지 않은 것이다.”하였다.

○ 증종실록 41권, 증종 15년 12월 16일(庚子)

무신 당상으로서 내지의 수령으로 모입된 자를 초출해 경직에 차임하는 것 등에 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경연에서 고형산이 ‘무신 당상(武臣堂上)의 숫자가 적어서 뜻밖의 변을 당하게 되면 전담시켜 위임할 사람이 없으니, 무신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당상관에 임명하여 미리 인망(人望)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옳다. 습진(習陣)할 때에 일상오위(一廂五衛)의 법을 실행하려 해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 하물며 변경(邊警)이 있게 되면 누가 능히 장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하관을 당상으로 올린다 해도 그 사세로 보아 많이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 무신 당상으로서 내지의 수령으로 모입된 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출(抄出)하여 경직(京職)에 옮겨 차임하게 함으로써 뒷날 불시에 쓰게 될 때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장길의 일은 그가 전일 소를 올려 발명(發明)하였다. 그때 삼공(三公)·육경(六卿)에게 수의하였더니, 모두 그가 빌붙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우 장곤(長坤)을 구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용한 것인데 대간이 ‘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아울러 정부에 물으라.”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3일(丙寅)

병조 판서 고흥산이 당령 수군을 산대의 일에 사역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관해 아뢰다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辭職)을 네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자, 형산이 이어 아뢰기를, “어제 경기 관찰사가 와서 아뢰는 것을 인하여 당령 수군(當領水軍)은 산대(山臺)의 일에 사역시키지 말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산대 역사에는 동서(東西)에 각각 1천 8백 명씩의 인부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제 유위(留衛) 군사가 5백 명뿐이니 어떻게 나누어 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곳에 수리할 일이 매우 많음은 물론, 전관(箭串)018)의 목장(牧場)도 지난해에 홍수로 인하여 전부 무너졌으므로 이제 수개(修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인부도 부족하니 당령수군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어제 해조(該曹)에 물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경기(京畿)가 잔폐하였기 때문에 즉시 아뢰 대로 윤택한 것이다. 무릇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일 외에 각처의 영선(營繕)은 일체 정파(停罷)함으로써 경기 당령 수군의 초발(抄發) 숫자를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고흥산이 아뢰기를, “산대의 일은 본조(本曹)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역군(役軍)의 숫자를 억측할 수가 없으니,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과 군기서 제조(軍器寺提調)에게 물어 그 숫자를 짐작하여 정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4일(丁卯)

군기시 도제조 정광필 등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산대 역부의 숫자에 대해 아뢰다

군기시 도제조(軍器寺都提調) 정광필(鄭光弼) 등과 금부 당상 권균(權鈞) 등이 병조 판서 고흥산과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대(山臺) 역부(役夫)의 숫자에 대하여 전례

를 상고하여 보니 본디 정해진 액수(額數)는 없었습니다. 1천 8백 명을 내주기도 하고 1천 5백 명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 숫자 속에는 경기의 당령수군을 8백 명이나 혹은 7백 명씩을 넣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당령 수군을 7~8백 명을 써서 일을 완성 하였었으니, 이제 이 숫자에 의거하여 병조(兵曹)로 하여금 짐작해서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2월 5일(戊子)

사헌부가 차자를 올려 김호를 체직하고 김호를 비호한 대신의 잘못을 견책하기를 청하다

사헌부가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김호(金瑚)는 본디 무식한 일개 무부(武夫)입니다. 갑자기 높은 벼슬에 오르자 망령되어 스스로 뽐내면서 상관(上官)을 무시하고 낭관(郎官)을 불신하였습니다. 게다가 몸가짐이 패려(悻戾)하고 처사(處事)가 잘못되었으므로 물의(物議)가 흉흉한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신 등이 여러 날 그의 직(職)을 갈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매양 분부하시기를 ‘인물을 진퇴(進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셨습니다. 신 등도 어려운 것인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입니다. … 그런데, 지금의 대신들은 공론(公論)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경악(經軀)에서 논사(論思)할 즈음에 대간이 인물을 논핵(論劾)하면 번번이 자기의 사견만을 내세워 왜곡된 말로 비호하는가 하면 억지로 구제하기에만 급급한데, 우의정 이유청이 그 중 특별히 더 심합니다. … 게다가 김호의 사람됨은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되어 열병(閱兵)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일만 가지고 헛되이 기려 체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력 진달하는 한편, 고흥산(高荊山)을 사주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찬동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흥산 역시 그들의 의논에 부화뇌동, 동료로 구하기 위해 대간의 말을 저지하기에 힘썼으니, 임금을 도(道)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대신의 도리에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근(遠近)이 이 사실을 알고 경악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 신 등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언로(言路)를 넓히시고 빨리 김호의 직(職)을 가는 것은 물론, 대신의 잘못을 견책하시어 공론을 통쾌하게 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2월 8일(辛卯)

우의정 이유청이 대간으로부터 논박 받은 일로 사직을 청하다

우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 유청이 또 아뢰기를, “이장길(李長吉)은 신에게도 육촌손(六寸孫)이니, 그 사람의 가부(可否)를 논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부에 참여한 것은 상피(相避)가 없기 때문이었고 또 인물도 쓸만하였으므로 경연(經筵)에서 의논할 즈음에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기를 ‘임금의 말은 실같이 가늘더라도 그 말이 신민(臣民)들의 귀에 들어 갈 때는 동아줄처럼 굵어지는 것이므로 임금은 실없는 말을 앓는 것인데, 장길(長吉)을 서용하라는 정식 수교(受敎)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명에 의하여 서용하였으면 분부가 있었던 것과 같으니 갈 필요가 없으며, 박지화(朴枝華)에 대해서는 그가 신임 관원을 침학(侵虐)한 것은 큰 죄가 아니니 역시 서용하여야 하며, 이명(李滄)에 대해서는 도사(都事)로 있다가 체직되어 왔으니 수령에 임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김호(金瑚)에 대해서는 모두들 쓸만하다고 하고 또 열병(閱兵)할 때 그의 재기(才技)를 알았으며 따라서 고흥산(高荊山)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의 인물 됴됨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을 뿐, 평소에 고흥산과 의논한 일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또 그날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은 실로 공론(公論)에 의하여 논하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잘못 듣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인물이 매우 아깝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신이 늙고 우매한 소치이니 사직시켜 주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2월 24일(丁未)

백성에게 주었던 상환곡을 걷어들일 것을 아뢰다

…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늘 풍년이 들 수는 없는 것이고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방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이웃 고을도 덩달아 이를 핑계하여 국채(國債)를 갚지 않기 일썩인 것으로, 이런 풍습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저, 흉년이 들면 으레 변경(邊警)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변이 일어난 뒤에 대신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게 하더라도, 곡식의 저축이 없고서는 손 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나친 흉년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에게 흠어주었던 상환곡(償還穀)을 지체 없이 힘써 걷어들여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명분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단지 구황(救荒)을 구제하기만 하고 상환곡 수납(收納)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뒷날 구황에 있어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매, 고흥산이 아뢰기를, “근래 감사(監司)들을 살펴보면, 모두 환상곡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흉년이 들면 번번이 폐농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폐농되지 않은 고을도 모두 환납(還納)하지 않고 있으니, 이 폐단이 매우 큼니다. 전라도는 큰 도(道)입니다만, 그 곳에 저축된 곡식이 일군(一軍)의 90일 군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온갖 방법을 들어 주야로 생각하여 보았지만, 조처할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할 일이 있어 군졸들이 들이 닥치더라도, 부자들이 어찌 자진하여 곡식을 실어다 바치려 하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나라에는 반드시 곡식이 저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에게 흠어 준 환상곡을 독촉해 받아들여자는 것은 이를 다른 곳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해 쓰자는 것이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을 살릴 방법으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 백성이 죽이는 이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독촉하여 받아들여도 백성이 반드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 사신은 논한다. 고흥산은 용모가 범상치 않아서 신장(身長)이 8~9척이고 배가 두어 아름이나 된다. 술은 서너 말을 충분히 마시지만 조금도 취한 적이 없었고, 마음가짐이 근검한 데다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훌륭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적(政績)을 쌓아 직분을 잘 수행한다는 칭송이 있었다. 또 그는, 변방 산천에 대한 험이(險夷)와 도로의 통불통(通不通)에 대해서도 두루 알고 있었다. 따라서 군량과 군대를 충분히 예비하고 변방을 삼가 굳게 지키자는 것이, 그가 내세우는 지론(持論)이었다.

○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3월 26일(戊寅)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이 많아 사직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이 많아서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직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5월 18일(己巳)

진현품에 관한 일로 삼공과 논하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노병(老病)으로 사직하니 윤택하지 않았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5월 24일(乙亥)

칙서 중의 일로 사신을 보내어 주문하는 것에 관해 대신들과 논하다

정광필(鄭光弼)·김전(金詮)·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홍경주(洪景舟)·이계맹(李繼孟)·심정(沈貞)·고형산(高荊山)·이행(李荇)·임유겸(任由謙)·김극뽕(金克桴)·한세환(韓世桓)·이빈(李蘋)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의 처음 생각은 칙서 중의 일의 시행 여부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우리 나라에서 문득 애서를 가져다 보이니 도리어 우리 나라가 반드시 이것을 빙자해서 굳이 막을 것이라 생각하여, 처치하는 권한이 오로지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지 않게 될까 해서 저렇게 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드럽고 좋은 말로 두 사신에게 이르기를 ‘황제 칙서의 일을 어찌 감히 위월(違越)할 생각을 가지겠는가? 또 대신들이 본국을 위하여 매사를 근간히 하지 않음이 없고, 칙서의 일을 시행하고 그만두는 것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감히 대인을 통하지 않고 주문(奏聞)할 계획을 하겠는가? 황제 칙서는 감히 어길 수 없는 것이므로 어린 고자를 지금 여러 도(道)에서 뽑고 있으며, 여자 뽑는 일은 갑자기 애서가 있으니 대인이 돌아가도 대답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신들이 본국을 위하여 처치하여 줄 것을 믿는다.’ 하며 한결같이 언사로 중히 대우하여 그 노여움을 풀어 준 후에 천천히 도모함이 가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주청하려 하면 따로 중신(重臣)을 보내어야 하겠으니 그 폐해가 적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로 효유하여 명나라 사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함이 편리하겠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5월 26일(丁丑)

여자 뽑는 일 등에 관해 대신들과 논하다

김전(金詮)·남곤·홍경주·이계맹(李繼孟)·고형산(高荊山)·임유겸(任由謙)·심정·이행(李荇)·이빈(李蘋)이 의논드리기를, “신 등이 처음 의논에는, 선제가 이미 승하하고 또 유조(遺詔)가 있으니 칙서 중의 여자 뽑는 일을 반드시 강제로 할 것이 아니므로 전일 의계(議啓)에서 권도를 따라 설명하면 거의 그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두 사신을 보면 반복 무상하여 조석으로 말을 달리하니 이치로 효유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빙자하여 우리 나라를 능멸 모욕하니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굴하고 겸손함을 꺼리고 싫어하여 바로 명나라 조정에 주청하면 명나라 사신의 노여움을 더욱 격동시킬 뿐입니다. 칙사가 사관에 있는데 서로 항쟁함은 사대(事大)하는 체모에 어그러집니다. 더구나 여자·고자를 뽑아가는 일은 전에도 이미

그 예가 있었으니 지금 면제를 청하는 이유를 들기가 어렵고, 반드시 인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선은 은인(隱忍)하면서 천천히 형세를 보다가 그 뜻을 끝내 돌릴 수 없게 된 후에 형편 따라 조치함이 어떨까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2일(壬午)

삼공 이하 대신들이 입시해 여자 뽑는 일로 주문하는 일 등에 관해 논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조 판서 홍경주(洪景舟)·우찬성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한성 판윤(漢城判尹) 임유겸(任由謙)·호조 판서 한세환(韓世桓)·형조 판서 김극휼(金克愾)·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형윤(韓亨允)·우참찬 이행(李荇)·호조 참판 이계상(曹繼尙)·한성 우윤 유미(柳湄)·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형조 참판 이항(李沆)·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이빈(李蘋)·예조 참의 이성동(李成童)·도승지 윤희인(尹希仁)·우승지 김희수(金希壽)·홍문관 부제학 윤은필(尹殷弼)·전한(典翰) 임추(任樞)·응교(應教) 채침(蔡忱)·부응교 정백봉(鄭百朋)·교리(校理) 박윤경(朴潤卿)·표빙(表憑)·수찬(修撰) 심사순(沈思順)·박사(博士) 정세호(鄭世虎)·기사관(記事官) 강현(姜顯)·이기(李夔)·송순(宋純)이 입시하였다. … 형산(荊山)은 아뢰기를, “주문은 근거가 없는 일이니 다만 유조에 의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거를 삼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해설하더라도 명나라 사신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역명(逆命)이라고 하여 말을 한다면 일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여자를 뽑아 들여보낸 일은 예전에도 있었으니 할 수 없게 되면 그 말대로 하여도 가하겠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13일(癸巳)

병조 판서 고흥산이 왜적에게 배들이 부서진 일과 관련해 김양필 등을 추고할 것 등을 아뢰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지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운(李耘)의 계본(啓本)을 보면 겨우 두세 달 사이에 해상을 다니는 배가 왜적을 만나 7척이나 부서졌고 배에 탔던 사람 중에 사상자도 많습니다. 다만 그곳이 병진(兵鎭)과 멀리 떨어져 임기응변으로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라우도 수사(全羅右道水使)는 오로지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둔 것인데, 지금 수사 김양필(金良弼)과 달랑 만호(達梁萬戶) 정위

(鄭偉) 등이 평상시에 변방 일을 조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양필·정위 등을 잡아다 추고하여 그 계으름을 경계하고, 또 병사(兵事)에 익숙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임명해 보냄이 어떨까 합니다.”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15일(乙未)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니 좃지 않다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본직(本職)을 차지한 지 벌써 4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위(非違)가 실로 많았습니다. 5~6개월 지나면 신의 나이 70이 다 됩니다. 중기(重器)에 흠을 남긴 후에 물러간다면 거취(去就)의 도에 어그러지고 사체에도 손실이 많으므로 감히 사퇴합니다.”하였으나 좃지 않았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15일(乙未)

우찬성 고흥산이 사직하기를 아뢰다

이계맹(李繼孟)을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으로, 고흥산을 우찬성으로, 장순손(張順孫)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우찬성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조정에 있는 지 39년에 조금도 공적이 없는데 감히 본분(本分)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관작에 초탁(超擢)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만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이 외람되게 차서를 뛰어 임용되었으니 실로 황공함이 더할 뿐입니다. 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 물론(物論)이 있을 것이니 스스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조정에 있는 지 이미 오래나 어찌 이상(貳相)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인기(人器)와 직차(職次)가 서로 합당하기 때문에 초천(超遷)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20일(庚子)

승지를 사신에게 보내 사실을 알리고 22일에 영위하겠다고 전할 것을 전교하다

김전(金詮)·이계맹·고형산·심정(沈貞)이 의논드리기를, “대신이 좋하면 반드시 조

회와 저자를 정지하니 그것은 시종(始終)의 은혜를 온전히 하는 일인데 연락(宴樂)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승지를 명나라 사신에게 보내어 대신이 졸하여 전하께서 슬퍼서 미리 가서 위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리면 어찌 자기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라 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옳다. 승지 윤희인(尹希仁)을 명나라 사신에게 보내어 알리기를 ‘영위연(迎慰宴)은 가볍게 진퇴(進退)할 수 없는 일이니 오늘 친히 와서 영위할 것인데 대신이 졸하였음을 듣고 예절에 있어 나올 수가 없다. 오는 22일에 영위하겠다.’고 해야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25일(乙巳)

대신들이 명나라 사신을 염려해 도감 낭관의 본직을 꺾고 잉임 시킬 것을 아뢰다

영의정 김전·좌찬성 이계맹·우찬성 고흥산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은, 도감 낭관을 일시에 모두 체직시키면 명나라 사신이 반드시 놀랄 것이므로 본직을 꺾아 낮추고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마침 가차(加資)해 달라는 청이 있는데 일 또한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낭관이 죄를 얻는 것을 애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신이 노여워할 것을 걱정해서입니다. 신 등이 어찌 법에 당연히 그래야 함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저들은 조사(朝士)도 아니고 성질 또한 편벽되고 급하여 내일 연회를 베풀 때 만일 분함을 품고 오지 않는다면 체면을 손상시킴이 또한 심합니다.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곧바로 말한다면, 저들도 당초 도중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고 우리나라에서 거애(擧哀)한다는 말을 듣고는 노하여 ‘우리들을 친하 죄인으로 만든다.’고까지 하였는데, 이 말을 들으면 더욱 노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 아침 동의(同議)하여 계달(啓達)했으나 임금께서는 부당하다고 하교하셨으니, 이제 또 여러 번 아뢰기가 심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신 등의 뜻을 모두 아뢰지 않는 것도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여러 번 아뢰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8일(丁巳)

왜적, 만호 등의 일로 대신들이 의논드리다

… 좌의정 남곤·우찬성 고흥산·우참찬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왜적이 제주(濟州) 근처를 범했으면 몰랐다는 것이 가하거니와 이러한 곳은 【추자도를 치칭한다.】 주장(主將)이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곳입니다. 지금 양필 등의 소를 보건대, 그들의 말대로 라면 추자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왜적은 이 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왕

래하니, 척후를 삼가고 비어(備禦)를 엄히 했다가 돌아가는 길을 끊는다면, 어찌 이러한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래 수삼 개월 사이에 왜적을 만나 자주 패하였으니 그곳의 방어가 해이해졌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금지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수로(水路) 또한 막힐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 등은 끝내 그 죄를 완전히 풀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호의 일을 정부는 모두 ‘만호는 한결같이 주장의 호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그 소의 말이 과연 옳다.’ 하고, 형산만은 ‘추자도는 멀어서 관섭할 수 없다지만 그들이 지나는 곳이 실상 관장하는 곳 안에 있으니 결단코 무죄로 할 수 없다.’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16일(乙丑)

요동 자문의 등초의 내용 회답하는 일 등에 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최세진에게 명하여 요동 자문(遼東咨文)의 등초(謄草)를 읽게 했다. ‘사람은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人口不必用之]’라는 말에 이르러 세진이 아뢰기를, “이 말은 환관이나 여자를 반드시 뽑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된다면 김의(金義) 등이 죄를 받지 않겠는가?”하매, 세진이 아뢰기를, “이제 자문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의 등은 죄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갔다. 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좌찬성 이계맹(李繼孟)·우찬성 고흥산(高荊山)·좌참찬 심정(沈貞)·우참찬 이행(李荇)·호조 판서 한세환(韓世桓)·예조 판서 신상(申鏞)·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형조 판서 김극휼(金克愾)·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임유겸(任由謙)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온 자문이 우리나라에 심히 관계가 있으니 장차 어떻게 조치해야겠느냐?”하였다. ... 남곤은 아뢰기를, “전번에 온 자문은 김의(金義) 등을 치죄(治罪)하려고 비밀히 요동(遼東)에 명령하여 법에 따라 칼을 씌워 보내도록 하라고 했는데, 성지(聖旨)는 단지 속히 돌아오게만 하였으니, 명나라 사신이 만약 보려 한다면 의당 보여야 합니다.”하고, 장순손·고형산 등은 아뢰기를, “그 자문이 오면 보여 주어 야겠지만 이 등서(謄書)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자문은 우리나라를 이처럼 책하였는데 아울러 명나라 사신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22일(辛未)

대신들이 사신을 보내 성절을 진하하는 일로 의논드리다

정광필(鄭光弼) · 김전(金詮) · 남곤(南袞) · 이계맹(李繼孟) · 고흥산(高荊山) · 임유겸(任由謙) · 한세환(韓世桓) · 심정(沈貞) · 이행(李荇) · 한효원(韓效元)이 의논드리기를, “전일에 명나라 사신이 거느린 두목(頭目)이 말하기를 성절이 4월에 있다고 하였고, 우리 나라의 통사(通事) 노계손(魯繼孫) 등도 요동에서 들으니 또한 4월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온 요동 사람 홍은은 8월 10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전해들은 데서 나온 말이니 헛말인지 적실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은의 말이 과연 정확한 것이라면 절일(節日)과의 시간은 2순(旬)도 못됩니다. 비록 밤을 세워 달려갈지라도 반밖에 못 미칠 것이니, 기일을 지난 뒤에 절일을 축하하는 것도 예(禮)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일시(日時)를 적실하게 안 뒤에 예(例)에 따라 진하하는 것이 실로 예(禮)에 맞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7월 25일(甲戌)

신 도감 낭관 허순에게 가자하는 일로 정부 동서벽에게 수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신 도감 낭관(新都監郎官) 허순(許淳)에게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는 일을 일찍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였는데, 대간의 논집으로 인하여 대신들에게 수의하였으나 대신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좌상(左相)의 의논에 따라,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인사행정이 있으면 마땅히 제수하겠다.’ 하였다. 이제 마침 정사가 있는데, 대간이 아직도 논집을 그치지 않으니 매우 난처하다. 즉시 사관(史官)을 나눠 보내서 정부 동서벽(東西壁)에게 수의하라.”하였다. 그때 마침 영의정 김전 · 좌의정 남곤 · 좌찬성 이계맹 · 우찬성 고흥산 · 좌참찬 심정 · 우참찬 이행(李荇) · 호조 판서 한세환 · 한성부 판윤 임유겸 · 형조 판서 김극필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장차 계사(啓事)하려고 하였으므로 【명나라 사신이 각궁(角弓)을 보냈으므로 가서 사례하기 위하여 왔다.】 그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6일(乙酉)

대신들이 사신의 대강을 수송해 보내도록 의논드리다

정광필 · 김전 · 남곤 · 권균 · 이계맹 · 고흥산 · 임유겸 · 한세환 · 김극필 · 이행이 의

논드리기를, “명나라 사신의 대강(擡杠)을 수송하는 것은 진실로 단서를 열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만약 버리고 간다면 뒷날의 처치가 또한 어렵습니다. 설사 중국 사신이 그 처치를 말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나라에 부탁하여 수송하게 할 것입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이미 명나라 사신이 많은 물화(物貨)를 갖고 온 것을 알고 있으니, 그가 돌아갈 때에 행탁(行囊)이 또한 많을 것도 반드시 미리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나라에 유치해 두고 간다면 아마 중국 조정에서도 물의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갈 때에 실어 보내는 것이 편이할 것 같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의 대강군(擡杠軍)이 다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온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듭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의 의논이 이미 이와 같으니 다만 그 종말을 기다려 볼 뿐이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6일(乙酉)

대신들이 각도에 재상 경차관을 파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따르다

김전·남곤·고형산·이행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재상 경차관 보내는 것을 사간원이 불가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법령에 실려 있는 것인데 어찌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평안도·황해도로 말하면 명나라 사신이 지나갈 때에 폐해를 입는 것이 가장 큰데 이 양계(兩界)는 비록 명나라 사신의 폐해가 없더라도 오히려 조세(租稅)를 반감(半減)해야 하니 재상 경차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른 도에는 보내야 합니다. 만약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보낸다면 다만 그 잘못된 것만을 추구하고 그 실상은 답사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경차관을 보내서 그 실지 상태를 답험하게 해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재상 경차관의 일은 어제 사간원이 아뢰었는데, 이것은 백성의 폐해를 염려하여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에 따라 보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6일(乙酉)

사복시 제조 정광필 등이 전라도·함경도에 점마 경차관을 파견하기를 청하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정광필·고형산이 아뢰기를, “사복시에 간직하고 있는 마적(馬籍)이 본도에서 보내는 마적과 매번 서로 어긋나곤 합니다. 다만 황원관(黃原串)에서 잃어버린 마필(馬匹)은 지금 추고(推考)하고 있으나, 신 등은 점마(點馬)를 보내서 그 실지를 답험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마정(馬政)은

마땅히 가장 상세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유사(有司)에게 묻고자 하였는데, 유사의 말이 이와 같으니 점마를 보내야 하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0일(己亥)

대신들이 명나라 사신들의 물화의 수송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다

정광필(鄭光弼)·김전(金詮)·남곤(南袞)·고형산(高荊山)·한세환(韓世桓)·심정(沈貞)·이행(李荇)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비록 서장(書狀)을 반송사(伴送使)에 내려보내더라도 명나라 사신이 이미 강을 건너갔다면 사세(事勢)가 미치지 못할 것이나, 만약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반송사로 하여금 명나라 사신에게 고하기를 ‘대인(大人)이 이미 많은 물화(物貨)을 갖고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다 국경에 버리고 간다면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하는 이가 많을 것이니 일행(一行)이 갖고 가는 것만 못하다.’ 하고 말하여도 만약 버리고 간다면, 다시 말하기를 ‘대인(大人)의 물화를 본국이 도리상 사사로이 받을 수 없으니 마땅히 요동(遼東)으로 수송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가 버려 둔 짐바리(卜駟)가 있다면 반송사가 의주 목사(義州牧使)와 더불어 같이 살펴서 봉하여 기록해 두고는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0일(己亥)

김전·남곤이 전라도의 조운에 편리하도록 땅을 개척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김전·남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라도의 조선(漕船)이 번번이 안흥량(安興梁)에서 전복(顛覆)됩니다. 그 근처에 편리한 땅이 있어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개척하여 조운(漕運)에 편리하고자 한지가 오래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서는 대신을 보내서 편부(便否)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개척이 어렵다고 하므로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고형산(高荊山)이 목장 이설(牧場移設)의 일로 충청도에 가니, 아울러 그 개척의 편부도 살펴보았다가 민력(民力)이 유족(裕足)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4일(癸卯)

안당 등의 일로 대신들과 논하다

김전·남곤·고형산·심정·이행(李衍)이, 어제 대간이 올린 차자(筴子)에 대하여 수의할 일로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오늘 의논할 일은 매우 중대하다. 안당은 본래 국사(國事)에 부지런한 재상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판서로 재임(在任)하였는데 판서 때에야 어찌 잘못된 일이 있었겠느냐? 다만 판서를 지낸 뒤부터 과연 과오가 많았으니, 그 판서 이후의 자급(資級)에 대하여는 오히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운(柳雲) 등도 과연 또한 과오가 많다. 그러므로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기에 과람한 가자(加資)를 삭탈하고자 할 뿐이었다. 대저 의논이 결정된 뒤에 어지럽게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피(相避)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의계(議啓)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또 대간의 차자에 말하기를 ‘유운의 일은, 상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없다.’ 하였으나, 이 어찌 참으로 상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는 말이겠는가? 자세히 생각하고 헤아려 중정(中正)을 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5일(甲辰)

삼도 체찰사 고형산에게 봉강을 굳게 지키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 고형산에게 하교하였다. “봉강(封疆)을 굳게 지키는 일은 비록 산과 계곡의 험난함이 있을지라도 형세를 살펴서 정하는 것은 반드시 밝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힘입어야 한다. 진실로 진수(鎭守)하는 곳이 그 요충(要衝)을 잃는다면 급변(急變)이 있을 때에 수어(守禦)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의 남도(南道)는 바다의 한 구역에 접해 있다. 여러 진영(鎭營)이 비록 바둑처럼 벌여 있다고 하나 도적의 길은 정해 있지 않으며, 배치된 변장(邊將)이 어찌 다 훌륭한 장수이랴? 그래서 방어하는 방법이 소루(疏漏)하기도 하다. 근간에는 무뢰배들이 있어서 뜻밖의 환란을 많이 당하는데 저들은 험난한 도서(島嶼)를 의지하고 간편한 배를 이용하여 우리의 변민(邊民)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고 우리의 공물(貢物)과 세곡(稅穀)을 강탈해 가곤 한다. 불은 처음 일어날 때에 잡지 않으면 기세가 크게 번지게 되어 끄기가 어려운 것이다. 생각건대, 경(卿)은 청렴 검소한 것으로 몸을 다스리고, 온화 간이한 것으로 남을 접대 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는 주도 면밀하고, 국량(局量)은 너그럽고 크다. 나라를 내집같이 근심하여 충성되고 간절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부지런하고 노고(勞苦)함이 국가에 현저하다. 크고 작은 직임에 불기(不器)의 명성(名聲)이 있으며, 모나거나 등근 일에도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간이 있다. 오랫동안 병조 판서의 직책을 맡아서서 구법(九法)이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는 의정

부의 찬성(贊成)으로 있어 사보(四輔)에 어진이 얻은 것이 기쁘다. 무릇 직무에 임하여 정성을 다하므로 일을 맡길 수 있어 이에 경에게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의 임무를 맡기노니, 경은 위로는 나라의 대계(大計)를 위하고, 아래로는 여론을 채납(採納)하여 가깝고 작은 공(功)을 구하지 말고 모름지기 떳떳하고 원대한 계책을 세우라. 백성을 부역시키는 일이 중난(重難)함을 생각하며, 또한 옛것을 고치는 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더구나 조전(漕轉)이 어려운 것은 실로 국가의 병폐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이해(利害)가 있는 점을 연구하고, 공리(功利)의 나뉘름 계산하라. 이런 일은 경과 같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해내겠는가. 가서 편부(便否)를 자세히 살펴서 사유(事由)를 갖추어 진주(陳奏)하라. 내 그 아름다운 계책을 받아 들어서 큰 공적을 이루고자 한다. 아아, 조운(漕運)이 길을 얻으면 백성은 영세(永世)의 편의를 힘입을 것이고, 지키고 방어(防禦)하는 것이 방책(方策)이 있으면 나라는 장성(長城)을 쌓는 것처럼 견고함을 누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에 교시(教示)하는 것이니 자세히 알기 바란다.”

【지제교(知製教) 오세창(吳世昌)이 지었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7일(丙午)

은을 채취해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에 쓰는 것 등에 관해 논하다

… 지평(持平) 김섬(金銛)이 아뢰기를, “들으니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에 금은(金銀)을 많이 갖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종조에서 주청(奏請)하여 금은을 공상(貢上)하는 일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중국 조정이 명나라 사신의 행장 속에 금은을 싸가지고 간 것을 안다면 조종조의 주청이 다 허위로 돌아갈 것이니 후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고자 하였다. 들으니 부사(副使)의 짐의 수가 자못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증여한 포목(布木)이 많았으나 그것으로 모두 금제품(禁制品)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금은도 또한 갖고 갔다면 반드시 후폐(後弊)가 염려된다. 마땅히 김형석(金亨錫)의 옥사(獄事)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처치해야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고형산이 아뢰기를, “금물(禁物)을 교역한 자는 김형석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천(端川)에서 생산되는 연광(鉛鑛)을 취련(吹鍊)하여 은을 만들기 때문에 은 값이 매우 저렴하였는데 지금은 전보다 점차 비싸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북경으로 가는 통사(通事)들이 많이 갖고 가서 중국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은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실로 우리 나라의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단천에 은(銀)이 생산되는 곳은 관(官)이 지정한

곳뿐이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선왕(先王)의 제도에 산림천택(山林川澤)을 비록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였으나, 또한 엄금(嚴禁)하여 씹씀이를 절약하였으니 아마 생산에 한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은을 산출(產出)하는 각처의 공천(公賤)으로 하여금 채취(採取)해서 공(貢)으로 바치게 하여 불시(不時)의 수요(需要)에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항상 이 일을 계청(啓請)하고자 하였으나, 말하는 사람이 재리(財利)를 말한다고 비난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주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원을 보내서 감독하여 채취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國用)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남곤은 아뢰기를, “고형산이 말한 것을 해조(該曹)에 문의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은을 생산하는 곳이 한 곳만은 아니라 합니다.”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마땅히 미리 조치하였다가 유용(有用)한 때를 기다려서 쓰기에 대비한다면 또한 민폐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조치하지 않고 일이 급한 때를 당하여 갑자기 채취해서 쓰게 한다면 백성이 폐를 입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이의 금방 절목(禁防節目)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7일(丙午)

대신의 헌의에 따라 하삼도에 체찰사를 보내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고 전교하다

영의정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하삼도(下三道)는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의 예(例)와는 다르며, 금년의 농사도 조금 잘 되었습니다. 또 들으니 추자도(楸子島) 근처에는 왜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알지 못하는 자가 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진(鎭)을 옮겨서 설치한다면 수호(守護)하기도 또한 쉽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진들을 이설(移設)하는 등의 일도 다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자세히 살펴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민폐와 같은 것은 비록 명나라 사신의 행차가 아닐지라도 이같은 폐는 항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형산은 비록 이름이 대신이지만 그의 행차가 폐가 있는 데에 미치지지는 않을 것이니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좌의정 남곤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당장 변방의 사변(事變)을 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일이 허술하고 더딘 것을 어찌 용허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대신을 보내어 자세히 살펴서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록 명나라 사신이 오면 백성들이 폐를 입는다고 하나 다만 평안도·황해도 등의 도가 홀로 그 폐를 입을 뿐이고 하삼도는 폐가 미치지 않습니다. 또 비록 명나라 사신의 행차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민폐는 반드시 많이 있으니 대신을 보낸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만약 명년이 되면 명나라 사신이 또 나올 것이고, 군적(軍籍)을 고치는 일, 전지를 측량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 일을 겸하여 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은 하삼도의 농사도 조금 잘 되었으니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좌참찬 심정과 우참찬 이행(李荇)은 의논드리기를, “이것이 비록 국가의 중대한 일이지는 하나, 대간(臺諫)이 논계(論啓)하였으니 마땅히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폐가 있고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바가 어떠냐에 있을 뿐이다. 또 명년에도 풍년이 들 것인지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 대신의 헌의(獻議)에 따라 보내는 것이 좋겠다.”하고, 이어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이제 마땅히 대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며, 그리고 명년에 풍년이 든다는 것도 기필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진(鑛)을 이설하는 것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다 중대하니 체찰사가 가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7일(乙未)

이학년이 공술하다

이학년(李鶴年)을 스물 여덟 차례 형장 신문하니 공술하기를, “금년 7월 24일에 강령정(康翎正)을 발인(發引)한다는 말을 듣고, 신이 안처겸(安處謙)·권진(權鎭)과 함께 권전의 집에서 잤었는데, 아침 식사 뒤에 시산정(詩山正)이 사람을 보내 권전을 청하기에 신도 따라갔었고 처경도 역시 왔습니다. 신 등 네 사람이 술을 마시며 함께 이야기 하는데, 시산정이 ‘요사이 대간(臺諫)이 사류(士類)들을 배척하는데, 두서너 사람만 제거해 버린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반문하기를 ‘가사 제거한다 하더라도 나중 일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가?’ 하니, 시산정이 ‘이왕의 일을 상께서도 역시 후회하니 이제 만약 제거해버린다면 반드시 신 등이 한 일을 반갑게 여기실 것이다.’ 하기에 신이 ‘좋다. 이 일을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나를 부른다면 마땅히 가서 참여하겠다.’ 했었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전(金詮)·남곤(南袞)·조계상(曹繼商)·김근사(金謹思)·고형산(高荊山)·장순손(張順孫)·성운(成雲)·이환(李玆)이었는데, 시산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제거한 다음 마땅히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야 하고, 만일 윤택하지 않는다면 폐출하고 마땅히 문종(文宗)의 후손을 세워야 하나, 문종이 후손이 없으므로 내가 마땅히 이어받겠는데, 이는 세조(世祖)가 나라를 차지함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하였다. 그의 공술한 말을 입계(入啓)하자, 전교하기를, “이 초사(招辭)는 차마 볼 수 없다. 개국(開國)한 이래 이처럼 심한 일이 없었으니, 대신들도 반드시 차마 보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2월 15일(癸巳)

윤지형이 사직을 아뢰니 체직시키다

장령 윤지형(尹止衡)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 체찰사(全羅道體察使) 고흥산(高荊山)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해남(海南)에 갔을 때에, 겸사복(兼司僕) 최자문(崔子文)이 뒤쫓아와 고흥산을 뵈게 되자 형산이 ‘자네는 해남 사람이어서 제도(諸島)의 도둑이 왕래하는 길을 알 것이니 나를 위해 지시를 하라.’ 하였고, 형산이 또 화순(和順)에서 좋은 역마(驛馬)를 구득하자, 어승(御乘)에 합당하겠다 하여 자문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어제 대간(臺諫)의 의논이 ‘자문은 해남 사람으로서 말미(受由)를 받지 않고 내려갔기에 이미 조목(條目)을 받았다.’ 했고, 또, 대간의 의논이 ‘해남 사람들이 수영(水營)을 옮기려 한 지 오래인데, 이번에 자문에게 뇌물을 많이 주며 옮겨주기를 청했다.’ 합니다. 형산이 자문의 소청을 들어주어 옮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진(鎭) 옮기는 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신이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일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대간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일이 있게 되면 사제가 서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고하기를, “아뢴 말 뜻을 보건대, 진실로 형산 등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사로이 자문(子文)을 시킨 일에 대하여 만일 헌부가 자문을 추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산이 시킨 일이라고 하게 되겠지만, 종사관이 나에게 시킨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같이 앉아 추문할 수 없을 것이니, 체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2월 25일(癸卯)

정옥형이 수의하여 와서 이장곤·서원정의 일을 아뢰다

사인 정옥형(丁玉亨)이 수의(收議)하여 와서 아뢰기를, “이장곤(李長坤)의 일을, 정부의 의논이 모두 과중하다 했고, 좌상이 또한 ‘전일 경연(經筵)에서 대간이 이장곤의 실수 및 정죄(定罪)하는 일을 아뢰기를 모두 과중하게 하기 때문에, 신이 아뢴 말이 있는 것은, 성상의 뜻에 짐작해서 들으시도록 하려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고, 옥형이 또 서원정(西原正) 이구(李珣)의 일을 아뢰기를, “영상·좌상의 의논이 ‘이학년(李鶴年)이 비록 《선원록(璿源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珣)와 형제간임은 틀림없으니, 연좌(緣坐)할 수 없습니다.’ 했고, 우상 및 찬성 이계맹(李繼孟)과 고흥산(高荊山)의 의논은 ‘학년이 누차 상언(上言)하여 《선원록》에 등록해 주기를 청했는데도 관(官)이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미 구의 동생이 아닌데, 도리어 연좌되는 때에 형제간으로 논함은, 법을

쓰는 뜻에 있어서 한결같이 되지 못할 듯하다.’ 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장곤의 일은 알았다. 서원정의 일은 영상과 좌상의 의논대로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2월 28일(丙午)

고형산·김인경·허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형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김인경(金仁慶)을 광천위(光川尉)로, 허굉(許矼)을 겸 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로, 김안로(金安老)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2일(庚戌)

고형산이 사직을 청하니 윤휘치 아니하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나이가 70이 찬 것 때문에 치사(致仕)하니, ‘사직하지 말라.’ 전교하고, 이어 췌杖(几杖)을 내리도록 하므로 형산이 사양하기를, “특별히 신에게 본직(本職)을 제수하여 감격됨을 견딜 수 없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신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 호변한 문서들을 잘 보지 못하니, 국사를 그르치게 될까 싶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일찍이 호조 판서를 지냈는데, 호조는 다른 조(曹)의 예와 같지 않아, 경비를 조달함과 흉년 구제 같은 일들을 일찍이 지내본 사람이 아니면 두루 알지 못하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8일(丙辰)

대신들과 성 쌓는 문제로 의논하다

… 사간 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성 쌓는 일을 이제는 우선 그 역사를 정지하여 백성의 힘이 피게 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려 한다.”하였다. 장령 어득강(魚得江)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의논하시더라도 반드시 농번기 전에 쌓게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이 정언 심사손(沈思遜)에게 듣건대 ‘전일에 고형산(高荊山)이 감독하여 쌓을 때 역사 독촉이 엄하고 급했기 때문에, 기초가 하나도 튼튼하게 되지 못하여 두어달이 되지 않아 곧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형산이 지금 돌아와 이 자리에 입시(入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 담당을 이렇게 하면서 감히 직사(職事)를 맡들겠습니까? 그 때에 분담하여 감독하던 수령들은 또한 이미 파직되었는데, 형산만은 그런 문책을 받지 않았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남곤은 아뢰기를, “신 등이 백성에게 모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주(義州)의 옛 성은 매우 좁아 주민들이 절반은 성 밖에서 사니, 만일 의외의 일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찌할 것입니까? 지금 수축(修築)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너진 돌들이 반드시 하나도 없이 흩어질 것이니,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시 쌓을 준비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갓 조그마한 폐단만 생각하여 시급히 수축하지 않음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여연(閔延)·무창(茂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감히 날뛰지 않지만, 앞으로는 장차 우리 변방을 엿보게 될 것이니, 그런다면 의주를 장차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는 농사가 조금 풍년들었고 다행히 변방에도 또한 일이 없으니, 이 때에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 쌓는 것은 중한 일이어서 부득이 해야 하니, 작은 폐단은 해아릴 것이 없다.”하였다. …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8일(丙辰)

헌부에서 고흥산에게 내린 궤장은 거두기를 아뢰다

… 헌부가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이 나이가 70이 차서 치사(致仕)하기 때문에 특별히 궤장(几杖)을 내리시게 되는데, 《대전(大典)》에 ‘나이 70이 됐는데도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궤장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흥산이 비록 나이는 70이 됐지만, 어찌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하다고 여겨 특별히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근력이 아직도 남았다고 여기신다면, 다만 마땅히敦諭(敦諭)하여 보낼 뿐입니다. 형산이 일찍이 찬성(贊成)이 되었을 적에 물론(物論)이 합당하지 못하게 여겨 바야흐로 논계(論啓)하려 했었는데, 마침 판서로 전임되었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니, 궤장을 내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형산은 사람됨이 오직 재리(財利)만 힘써 1품까지 올라갔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큰 관계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있는 것이다. 또 논한다. 형산은 오래 호조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비록 재리를 힘쓰는 병폐는 있었지만, 국가 일에 성실스러운 점에 있어서는 매우 구득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 전교하기를, “고형산의 일은 《대전》에 ‘나이 70이 되면 마땅히 궤장을 내린다.’ 했다. 지금 형산은 조정이 이미 의지하는 바가 중한 사람이고 또 이미 찬성을 지냈으니, 도로 정지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8일(丙辰)

고형산이 태안의 안항량·의항을 굴착토록 아뢰다

삼도 제찰사(三道體察使) 고형산이 아뢰기를, “태안(泰安)의 안항량(安恒梁)·의항(蟻項)을 굴착하여 조운선(漕運船)이 통행하도록 한다면 침몰하는 화를 면할 수 있어 만세토록 이(利)를 누리게 될 것이니, 수군(水軍)을 동원하여 굴착하기 바랍니다.”하고, 호조가 아뢴 대로 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11일(己未)

대간이 고형산·이손에게 내린 궤장을 거두기를 아뢰다

… 헌부가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은 몸이 아직도 강강(康強)하고 현재 육경(六卿)으로 있으니 나이가 늙어 기동할 수 없는 사람의 유가 아니고, 또한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한 처지인지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전일에 이손(李蓀)에게도 또한 궤장을 내렸었는데, 이는 매우 온당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나이 늙은 것 때문에 으레 사람마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12일(庚申)

고형산에게 궤장을 주는 문제로 대신들이 반대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장령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 고형산은 몸이 아직도 강강하고 그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한 처지인지를 신은 모르겠으니, 궤장(几杖)을 준례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쉽사리 이 사람에게 주어 버린다면, 뒷날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당 주어야 할 사람은 송(宋)나라 때에도 문언박(文彦博)과 부필(富弼)같은 사람인 연후에야 해당될 수 있었으니, 진실로 쉽사리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12일(庚申)

고형산·양재 찰방·밀양 명칭복구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전교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고형산(高荊山)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는 일과 양재 찰방 일을, 정부 낭관(郎官)을 불러 대신의 의논을 거두어 아뢰도록 하고 밀양(密陽)의 명칭을 복구하는 일은 서서히 대신들이 대궐 뜰에 모일 때를 기다렸다 의논하도록 하라.”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13일(辛酉)

김전·남곤·이윤청이 고흥산에게 궤장을 내림과 양채 찰방에 관해 아래다

영상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고형산은 나라 일 하기를 힘써왔고 조정에 선 지 이미 오래인 데다 나이 70이 찼으므로 마땅히 궤장을 내리셔야 하니, 신은 대간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좌상 남곤이 아뢰기를, “고형산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보필(輔弼)하여 변방 일이나 전곡(錢穀) 일 같은 것은 모두 형산에게 물어야 하는데, 형산이 만일 치사(致仕)한다면 국가에 지장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진실로 마땅히 궤장을 내려 만류해야 하니, 신은 대간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상 이윤청(李惟淸)은 아뢰기를, “고형산은 마음을 다해 봉공(奉公)하였으므로 마땅히 궤장을 내려야 하니, 대간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3권, 중종 17년 1월 17일(乙丑)

고형산이 궤장에 대한 일과 사직을 청하니 윤택치 않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조정에서 모신 지 지금 40년이나 되어 세상을 살아온 지 이미 오래이지만, 자질이 용렬하여 조금도 국가에 도움됨이 없는데 치사(致仕)할 날에 당하여 특별히 궤장(几杖)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대범 궤장은 오직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중한 사람이라야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때 즉시 사양한다고 청하고 싶었지만 상께서 분부가 정녕하시기 때문에 감격되어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대간(臺諫)이 과연 내림이 부당하다고 논계(論啓)하였음은, 신이 용렬함을 조정이 환히 아는 바이기 때문이니 공론은 덮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은 노쇠(老衰)한 병이 이미 심하여 일에 임해 망매(茫昧)합니다. 호조는 중한 자리이어서 한 가지 일의 처리도 조금만 기미를 놓치게 되면 국가의 손실이 매우 많을 것이기에 즉각 사임을 청하고 싶었지만, 상께서 분부를 자못 간절하고 지극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감히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울러 사직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경(卿)의 호조 판서의 소임을 논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궤장 내리는 일을 논계한 것이다. 또한 경의 직위(職位)가 비록 삼공(三公)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노성한 덕망이 있는데 어찌 또 궤장을 사양할 것 있겠는가?”하매, 형산이 재차 사양했으나 윤택치 않고 이어 술을 내렸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10일(丁亥)

고형산이 마정에 대해 아뢰다

… 특진관 고형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성종조의 마적(馬籍)을 고찰해보면 그 수효가 4만여 마리나 되었었는데, 지금은 겨우 2만여 마리인데다가 또한 쓸만한 말이 없습니다. 근래에 진상(進上)하는 것도 명색이 없는 말이고,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있는 말이 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되었으니 그 수효를 수정(修整)해야 합니다. 근래에 농사가 흉년이기 때문에 짐마를 보내지 않았는데, 마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이 때 문입니다.” 하였다. … 형산은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 일찍이 보견대, 종친(宗親)들이 타는 말도 살지고 장대할 뿐만 아니라 모두 색마(色馬)였는데, 지금은 어승마(御乘馬)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저 야인(野人)들의 말이 성질이 순하고 또한 몸집이 크니, 만일 공상(貢上)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어승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18일(乙未)

고형산에게 궤장과 교서를 내리다

주서 조종경(趙宗敬)을 보내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그 교서(敎書)를 내렸다. “한 나라의 안위는 관계되는 바가 중하여 대신의 거취(去就)는 가볍게 할 수 없는 법인데, 어찌 나이를 끌어대어 쉬기를 청하여 한가히 있으며 스스로 편하려 하는가? 경(卿)은 마음가짐이 근신하고 정성스러우며 일에 임함이 충실하고 근간하여 누대의 조정에 내리 베풀하며 종시 태만하지 않았고, 과덕(寡德)한 나를 보필하게 되면서는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더욱 노력하여, 국가만 생각하고 가시는 잊으므로 이미 당시의 명망을 지니게 되었고 겸손하게 몸을 가져 깊이 옛사람다운 기풍을 체득했다. 바야흐로 정치를 함께 하며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준례에 구애되어 소청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특별히 궤장을 내려 존대하고 편케 하는 뜻을 표하노라. 귀나 눈의 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도 기무(機務)를 감당할 수 있는데다가 자순(諮詢)은 반드시 기구(耆舊)063)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사로운 심정을 들어주기 어렵노라.”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24일(辛丑)

고형산이 남해·거제·진도에 유배된 죄인들이 도망가는 폐단을 아뢰다

조계(朝啓)를 들었다.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무릇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유배(流配)되는 사람은 반드시 남해(南海)·거제(巨濟)·진도(珍島) 세 고을에 배속(配屬)되는데, 요사이는 도로 도망가는 폐단이 많이 생기니, 이는 관문의 금단이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인(彼人)들이 그 땅으로 유배되는 사람이 많으니, 만일 관문의 금단을 엄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망쳐 나오게 되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세 고을의 수로(水路)를 지나보건대, 배가 아니면 결코 건널 수 없었으니 마땅히 진부(津夫)로 하여금 감시하여 사사로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고을은 땅이 박하고 제한이 있어 새로 옮겨간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도피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돌보아주어 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24일(辛丑)

호조가 고흥산의 말로 절목을 마련코자 하니 윤희치 않다

전교하기를, “고형산이 아뢰는 일을 해사(該司)에 말해주라.”하매, 호조가 절목(節目)을 마련하기 청하니, 전교하기를, “은 가족이 옮기게 된 사람이라면 이고 지고서 처자를 대동하게 되어 실정이 가없겠지만, 영속(永屬)한 사람이라면 모두 죄가 중한 자들이다. 유배(流配)하는 것은 그 죄악을 징계하려는 것인데, 어찌 따로 돌보아주는 조목을 들 것이 있겠는가? 형산(荊山)이 계복이 끝난 다음에 우연히 말끝에 따라 아뢰는 일이다.”하였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12일(己未)

대신들이 변방의 일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고려사절요》를 진강(進講)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때문에 ‘곡식을 받고 관직을 제수했다.’ 했는데, 필시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일 것이나 이는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임금이 된 사람은 마땅히 군수(軍需)를 예비하여 의외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듣건대 서북도(四北道)의 군자(軍資)가 부실하다고 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하였다. 특진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근년에 농사가 흉년 들어 서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군자가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옛적 한(漢)나라 때에도 납속(納粟)으로 관직을 제수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부득이하여 한 것이요 좋은 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둔전(屯田)을 많이 두고 또 한 속포(贖布)로 곡식을 사들이기도 하여 재물을 마련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점차로 허비되었으니 이번

마땅히 그런 제도를 거듭 밝혀야 됩니다.”하였다. 특진관 한효원(韓效元)은 아뢰기를, “... 계맹(繼孟)이 아뢰 곡식을 사들이는 일은 더욱 마땅히 유의해야 하는데, 고흥산(高荊山)이 함경 감사로 있을 때 어염(魚鹽) 등의 물품을 가지고 민간의 곡식을 값을 낮추어 사들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치 못하게 여겼었습니다. 수령된 사람들이 쓸데없이 문부(文簿)만 가지고 숫자를 과장해 놓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병사(兵事)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더욱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하였다. ... 계맹이 아뢰기를, “상소의 뜻은 과연 지당하고 변장(邊將)들이 공을 세우려다 일을 저지른다는 말은 더욱 지당하나, 미조항(彌助項)의 진(鎭)설치는 대신들이 건의한 지 이미 오래고 전번에 장순손(張順孫)도 가하다고 말했으며, 이번에 또 대신이 직접 형세를 살폈기 때문에 의논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경상도 각 진(各鎭)의 개혁(改革)에 관한 일은 경솔하게 거행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남도(南道)의 영(營)을 북청(北靑)에 둔 것은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를 제어하려 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영변(寧邊)의 진도 내지(內地)에 있는 것이니 이로써 헤아려본다면 남방 영(營)의 진을 옮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고 행영(行營)을 설치하여 외진(外鎭)으로 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전일에 의주(義州)의 성을 겨울철에 쌓았는데 쌓자마자 무너져 버려, 백성만 수고롭게 하고 공효가 없게 된 것은 과연 아뢰 말과 같으나, 방어를 설치하는 일은 역시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고형산이 옮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옮기려 한 것인데, 과연 장수가 선량하지 못하고 사졸이 혼란되어 있지 못하다면 형세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13일(庚申)

고형산이 사직을 아뢰니 윤휴치지 않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안질(眼疾)이 있는데다 귀도 어두우며, 지려(志慮)가 쇠퇴되고 다리의 힘이 약해졌으나 치사(致仕)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억지고 벼슬에 있었는데, 근래에는 나이 더욱 늙고 생각이 더욱 졸렬해졌습니다. 성(城)을 쌓고 진(鎭)을 설치한 것과 경창(京倉)의 곡식을 받아들이는 일들에 있어 모두 신이 생각을 잘못하여 공론에 죄를 얻었으니 직에 있기 미안하여 감히 사직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나이 과연 많아졌다. 그러나 특별히 경에게 그 직을 제수한 것은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론에 따른 것이다. 호조는 진실로 적임자를 얻기 어려워 경이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하매,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휴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7일(壬子)

무예 시험시 육량에 대해 《대전》 대로 하게 하다

… 특진관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무예(武藝)를 시작할 때, 육량(六兩)을 단지 1백 보(步)로만 한정하고 더 넘어가는 것은 써주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이 많이 급제하게 되고 근력과 웅재(雄才)있는 사람이 도리어 하등이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재능에 따라 사람을 뽑으려 하면서도 도리어 인재를 버리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매우 불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 전일에 고흥산(高荊山)이 병조 판서 때 ‘과거 때 육량(六兩)의 분수(分數)를 쓰기 때문에 무사들이 서로 강궁을 쓰기를 숭상하여 팔을 상하게 된다.’ 하면서 황형(黃衡)·최한홍(崔漢洪)을 들어 증거까지 대며 아뢰어 개정했습니다. … 지금 웅재(雄才)를 얻으려면 과거 때에 육량 시험을 반드시 조종(祖宗) 때의 좋은 법대로 한 다음에야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량 일은 전일의 경연(經筵)에서도 역시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정원으로 하여금 고찰해보니, 형산이 의논하여 고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한 지 오래 되었기에 즉시 고치지 않았는데, 지금 재상 및 시종(侍從)이 또한 이렇게 말을 하니, 《대전》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하였다. …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7일(壬子)

무과 및 무재 시험에 육량을 전대로 획수를 사용케 하다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육량의 일에 대해서는 지난날 고흥산(高荊山)의 의논에 의해 규정을 개정했었는데, 지금 경연에 입시(入侍)한 재상과 시종들이 여러 번 그 불가함을 말하니 《대전》대로 시행함이 어떠하겠는가?”하매, 정광필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당초에 팔이 상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분수(分數)를 헤아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시험보여 뽑을 때에 웅재(雄才)있는 사람이 도리어 약한 자의 아래 있게되어 요행을 노리게 되는 폐단이 많으니, 《대전》대로 시행함이 매우 합당합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무과(武科) 및 일체 무재 시험에 육량을 전대로 획수(畫數)를 사용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2일(丁卯)

김말산이 아내를 살해함에 사정을 들어 사형을 감하다

계복(啓覆)을 들었다. 이성(利城) 역참(驛站)의 아전인 죄수 김말산(金末山)이 그의 아내 은덕(恩德)을 구타하여 죽게 한 죄인데, 상이 돌아보며 묻기를,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매, 영사 권균(權鈞)·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예조 판서 홍숙(洪淑)·우참찬 이행(李荇)·지중추부사 조원기(趙元紀)·동지경연사 김근사(金謹思)·형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좌윤(左尹) 민상안(閔祥安)·장령 유중익(兪仲翼) 등이 모두 아뢰기를, “그 아내가 지아버리를 배반하고 도망갔으므로 지아버리가 술에 취한 김에 구타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리(情理)에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사형을 감함이 가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9일(甲戌)

대신들이 추자도 왜변과 객인을 대우하는 문제로 의논드리다

… 정광필·남곤·이유청·권균·장순손·이계맹·고형산·홍숙·심정·안윤덕·임유겸·이행·이항·방유령·박호는 의논드리기를, “추자도는 수로(水路)가 워낙 멀어 진(鎭)을 설치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제주로 왕래하는 길목에서 누차 왜변이 발생하여 장차 막히게 되겠으므로 방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근처의 무목(武木)에 있는 수륙군(水陸軍)들의 수를 헤아려 뽑아내어 순환(循還)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토벌하여 후환을 끊어버리도록 하되, 병조가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또 객인(客人)들을 대우하는 일은, 상관(上官) 등이 스스로 자진(自盡)하고 싶다 하고, 말이 또한 불공(不恭)합니다. 국가에서 불행히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뒷날에 한없이 요청하게 된다면, 장차는 다 들어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기미가 될, 처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마땅히 선위사(宣慰使) 등 제인(諸人)들로 하여금 옛 약조를 해약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해주고 또한 음식을 권하도록 하여, 그들의 뜻을 관망하다가 2~3개월을 기다려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예조 당상을 보내어 그와 같이 말을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주 사람들이 살해된 일을 객인들에게 말해줌이 합당할 듯 합니다마는 사세를 보아 말해줌이 가합니다.”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9일(甲午)

대신들이이 순변사 임명에 대해 의논드리다

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좌찬성 이계맹(李繼孟)·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좌참찬 심정(沈貞)·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지중추부사 한형윤(韓亨允)이 의계(議啓)하기를, “병조가 중신(重臣)을 가려 변방의 일을 맡기자고 한 일은, 이계맹과 고흥산으로 차임(差任)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자리에 앉아서 작전 계획을 마련하기는 계맹이 능히 할 것이나, 나가서 싸움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 이미 노쇠하여 진두 지휘하지는 못할 듯하다. 고흥산은 나이 비록 늙었으나 기운이 아직도 강건(強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니, 계맹 대신 다른 강건한 재상으로 서계(書啓)하고, 정승 한 사람은 또한 비변사(備邊司)를 겸임해야 한다.” 하였다. … 장순손이 아뢰기를, “고형산과 심정을 순변사(巡邊使)라고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토병(土兵) 일은 마땅히 순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알았다.’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9일(甲午)

순변사 고흥산과 심정이 변방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다

순변사 고흥산이 아뢰기를, “이번에 변방의 일을 신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데, 나이 이미 노쇠하여, 다행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며 작전을 요량하게 한다면 그래도 혹 해결 수 있지만 만일 전진(戰陣)을 종횡(縱橫)해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군국(軍國) 대사(大事)의 사기(事機)를 그르침은 작은 일이 아니니, 나이 젊은 재상으로 대신 보내기 바랍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한 사람으로 서울에서 성장했는데, 변방의 모든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변방 일을 아는 사람으로 대신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9일(甲午)

고형산·심정이 순변사를 재차 사양하다

고형산(高荊山)·심정(沈貞)에게 전교하기를, “경(卿)들은 순변사(巡邊使)가 되었으니, 일이 없을 적에는 안에 있으면서 조치해 가고 일이 있을 적에는 나아가서 치면 될 것이다. 대신들이 어찌 잘 생각해보지 않고 추천하였겠는가?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도 구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지금은 왜변(倭變)이 있으니 경들이 사양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형산이 재차 사양하기를, “신자(臣子)의 직분은 마땅히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다가 죽는 다음에야 그만두는 법이나, 지금 굳이 사양함은 신의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일을 그르칠까 싶어서입니다. 옛사람은 나이 70이 넘어서도 오히려

장수가 된 일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있지 않았습디다. 신이 양계(兩界) 및 남쪽 지방의 지형을 일찍이 대강 답사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기력이 노쇠하여 쫓아 다니며 방어하기에는 진실로 안 될 바가 있습니다.”하였다. 심정이 재차 사양하기를, “신이 성상의 지중한 은덕을 입었기에 죽도록 힘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생각해 왔습디다마는, 이번의 이 일에 당해서는 신의 재간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무릇 군사 기밀 같은 일들은 신이 아는 바가 없는데다가, 또한 80노모가 있어 조석(朝夕) 사이의 일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불행히도 나갔다가 대고(大故)가 있게 된다면, 이 역시 민망스러운 일이니, 다시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시어 변방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대신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이 어찌 경솔하게 추천했겠는가? 더구나 지금 치러 나가는 것도 아니니 사양하지 말라.”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0일(乙未)

영중추부사 정광필이 비변사직을 사양하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어제 신을 비변사(備邊司)에 참여시켰는데, 신은 젊어서부터 무예(武藝)를 해보지 않았고, 변방 일도 듣고 본 것이 없습니다. 일이 있는 날에는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게 될까 싶으니, 다시 변방 일 아는 사람을 찾아 대신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대신들이 남쪽 지방을 잘 아는 재상이라고 가려서 추천한 것이다. 설혹 사변이 있게 되더라도 고흥산과 심정이 의당 나가서 치게 될 것이고, 경(卿)은 마땅히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으며 삼공(三公)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치해갈 것인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라.” 하매, 광필이 재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0일(乙未)

순변사 고흥산·심정이 한 도씩 나누어 맡겨 달라고 아뢰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심정이 아뢰기를, “한 도(道)씩 나누어 맡은 다음에야 각기 스스로 전심(專心)하여 조치하게 되고, 그중에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또한 듣고 보고 하여 해가게 될 것이니, 도를 나누어 맡기기 바랍니다.”하니, 경상도는 고흥산이 맡고 전라도는 심정이 맡도록 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2일(丁酉)

대신들이 왜적들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비변사 제조 정광필(鄭光弼)·장순손(張順孫)·고형산(高荊山)·심정(沈貞)·안윤덕(安潤德)·한형운(韓亨允)이 아뢰기를, “이번의 적왜(賊倭)들 일은 중론(衆論)이 각각 달라, 더러는 ‘적왜들이 내닷에 변방을 침범하였으므로 줌도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마땅히 그 도(道)의 군사들을 뽑고,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를 가려서 보내 방어하도록 한다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더러는 ‘적왜들이 한갓 가만히 포작간(鮑作干)들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섬에 머물러 있으며 소굴(巢窟)을 만들고, 또한 진(鎭)을 침범하므로 제주(濟州)와의 길이 장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목포(木浦)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제도(諸島)를 수색 토벌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 땅을 소굴로 삼아 제주와의 길이 끊어지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단지 진만 지키면서 방어할 뿐이어서는 안 되고 수색하여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곧 큰 일이니 삼공(三公)들과 함께 의논하기 바랍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4일(己亥)

대신들이 일본 사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의논드리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영창 부원군 권균(權鈞)·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좌찬성 이계맹(李繼孟)·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예조 판서 홍숙(洪淑)·좌참찬 심정(沈貞)·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한성부 판윤 임유겸(任由謙)·좌윤 민상안(閔祥安)·우참찬 이행(李荇)·형조 판서 이행(李沆)·참판 조계상(曹繼商)·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공조 참판 손중돈(孫仲墩)·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성운(成雲)·참의 이세정(李世貞)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더러는 ‘마땅히 견제하는 계책을 쓰면서 미미한 일은 들어주어야 한다.’ 하고, 더러는 ‘이런 기회에 당해서는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니 ‘비록 소소한 일을 들어주더라도 한없는 욕심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그들의 술책에 빠질 것같아 들어줄 수 없다.’고들 했으니, 이뒤로는 객사(客使)에게 말해주기를 국론(國論)이 이미 결정되어 들어줄 수 없다.’고 함이 합당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말이 지당하니, 이대로 일본 사신에게 말해줍시다.”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6일(辛丑)

전라도에 왜인들의 배가 나타났다는 보고에 대해 의논하다

비변사 제조 정광필(鄭光弼)·고형산(高荊山)·심정(沈貞)·안윤덕(安潤德)·한형운(韓亨允)이 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바라건대 삼공(三公)들을 불러 함께 의논하고, 전 전라우도 수사 이종인(李宗仁)도 명소(命召)하여 함께 의논함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또한 이번의 적왜(賊倭)들이 비록 전라도에만 나타났으나 또한 경상도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게 될까 싶으니, 별군관 10명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종인은 주장(主將)으로서 죄입은 사람들을 검거(檢擧)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옛사람이 ‘공을 세우면 스스로 속죄(贖罪)된다.’ 했으니, 종인이 남쪽 지방 형세를 잘 알므로 마땅히 군관(軍官)을 정밀하게 가리어 주어서 보내되, 만일 공을 세운다면 서용(敍用)해야 한다.”하매, 아뢰기를, “종인의 죄가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전함(前銜)대로 장수가 된다면 장졸(將卒)들의 사이에 또한 위엄이 없게 될 것이니, 비록 낮은 품계(品階)로라도 제수하여 보냄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종인은 군직(軍職)을 부여하여 보냄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당초에 왜변(倭變) 때문에 죄를 입었었는데, 또한 왜변 때문에 직을 제수한다면 물론(物論)이 일게 될까싶다. 또한 당상의 의장(儀章)이 있으므로 비록 직을 제수하지 않더라도 또한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니, 삼공(三公)들과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6일(辛丑)

사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인견하고 왜적의 방비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 침하(簾下)에 나아가, 정광필·남곤·이유청·장순손·고형산·심정·안윤덕·한형운을 인견(引見)하였다. … 형산은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 순변사(巡邊使)가 되었을 적에 남쪽 지방의 형세를 보건대, 경상우도가 대마도(對馬島)와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적왜들이 전라도에 침범한 것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호남에서 힘을 빼게 해놓은 뒤 실지 속셈은 영남에서 충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건대 종사관(從事官)을 전라도에 보내어 도내의 조치해야 할 일을 살피게 하고, 한편으로는 조정의 뜻을 선유(宣諭)하여 우리 백성들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하였다. 광필은 아뢰기를, “만일 조정의 뜻을 선유하려면, 내신(內臣)을 보내 선유함은 가할 듯하나, 종사관을 보낸다면 도리어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전라도의 변방 일을 신에게 부여하였기에, 신이 낮이나 밤이나 생각해 보느라 감히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데, 요사이 태백(太白)이 주현(晝見)하니, 이는 곧 전쟁이 일어날 형상입니다. 신은, 왜인(倭人)들이 하루아침에 크게 출동하여 오게 된다면, 우리 군사의 기세가 고단해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신 등이 치러 갔다가 동원할 군사가 없을까 싶으니, 종사관을 보내 그 도의 무사들을 뽑아 불의의 동원에 대비하게 하기 바랍니다. 신이 고흥산과 함께 이 일을 의논했는데, 중의(衆議)가 모두 부당하게 여깁니다.”하였다. 형산은 아뢰기를, “종사관을 보내 군졸(軍卒)을 점검하고 변방 일들을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날 순변사가 내려갔을 적에 군졸이 많은지 적은지, 용맹스러운지 겁내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만일 종사관을 보내 군졸을 뽑아내게 한다면, 병사(兵使)가 반드시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심정은 아뢰기를, “비록 종사관이 뽑은 군사라 하더라도 어찌 병사가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천변(天變)이 있으니, 큰 일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번의 변은 반드시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적의 형세를 보면서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종사관을 보내 쓸데없는 군사는 도태하고 정예한 군사로 간추리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가덕도(加德島)는 곧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왜구(倭寇) 통로의 요충(要衝)이어서, 왜인들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미조항(彌助項)을 거쳐 전라도로 향하게 되는데, 이번의 적왜(賊倭)들은 경상우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고 단지 평산포(平山浦)에서만 보았으니, 적들이 반드시 가만히 나와, 영남이 변방 방비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였다가 공허한 틈을 타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하였다. … 형산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 연해(沿海)에 거주하는 민가가 많이 있으므로, 만일 몰래 도둑질하려는 적왜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여기에서 약탈해 가게 되는데, 이번의 적왜들은 여기를 놓아두고 대낮에 변방을 침범하니, 이는 그들의 저의가 작지 않은 일입니다.”하였다. … 형산은 아뢰기를, “사변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는다면, 뽑은 군사들을 장번(長番)으로 부방(赴防)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보솔(保率)이 없어서도 안 되니, 분번 및 공역(供億)하는 일을 마련해야 합니다.”하였다. … 심정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남도(南道) 연해변에 와서 살며 없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 하여 살아가는데, 제주 목사 이운(李耘)의 계청(啓請)에 따라 감독하여 쇄환(刷還)하도록 하자 중도에서 도망했었습니다. 【곧 김유월(金六月) 등이다.】 이번엔 또 70여 명을 쇄환하다가 제주의 길이 막혀 현재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종인(李宗仁)에게 물어보니 ‘포작간들은 수전(水戰)을 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니, 바라건대 포작간 70명을 도로 머물러 두어 수전 때의 사용에 대비하되, 이뒤부터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쇄환하게 함이 어떠하리까?”하였다. 남곤은 아뢰기를, “포

작간들은 와서 산 지 5년이 넘는 사람은 본래 쇠환하지 않았지만, 만일 수전에 사용하기를 편리하게 여겨서 법을 세워 쇠환하지 말도록 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제주 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포작간들을 쇠환할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14일(戊午)

대신들이 동시대구 등의 보고에 대해 아뢰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좌참찬(左參贊) 심정(沈貞)·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지중추부사 한형윤(韓亨允)·동지중추부사 최한홍(崔漢洪)·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참의 박호(朴壕)·참지 홍언필(洪彦弼)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신 등이 동시대구 등의 보고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압록강 건너편에 사는 자에게 유인되어 우리 나라의 의도를 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중국에서 이와 같은 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포 진장(滿浦鎭將)은 그 사계(詐計)를 헤아리지 못하고 약한 말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병사(兵使)의 아뢰 바가 빈틈없는 계책일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왕래하는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서 다시 병사의 말로써 엄격하게 답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또 이 뜻을 회령(會寧)에 알려서 홀비합에게 ‘네가 중국에 왕래할 때는 어느 길을 따르느냐.’ 물어보게 해서 그의 말을 듣는다면 동시대구가 한 말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도(南北道)에 효유하여 처치하게 되는 뜻을 미리 알게 하소서.”하니 ‘아뢰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14일(戊午)

정광필·장순손·고형산 등이 윤세림이 맡은 추고와 전라도 변장이 처리한 일에 대해 아뢰다

정광필·장순손·고형산 등이 아뢰었다. “윤세림(尹世霖)이 맡은 추고(推考)의 일이 모두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지금 그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의 일은 비록 작으나 율(律)에 있어서는 모두 한 죄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라도 변장(邊將)이 처리한 일은 모두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완전히 추고해서 죄를 결정하게 한 다음에 상의 사유하는 은전을 입게 하더라도 그는 군령(軍令)이 엄중함을 알고 징계될 것입니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8일(辛巳)

대신들이 비변사를 없애자고 아뢰다

비변사 당상 정광필·고형산·심정·안윤덕·최한홍(崔漢洪) 등이 아뢰기를, “전라도에서 왜적을 수색 토벌한 결과 모든 섬에 왜적이 없다 하니, 청컨대 방어하는 기구를 해산하소서. 또 변방의 일은 주무기관인 병조(兵曹)가 있습니다. 홍문관이 상소하여 비변사는 없어도 된다고 하였으니 비변사를 없애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조금만 사변이 있으면 문득 기구를 설치하고 사변이 없으면 금방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 더 설치한 당상(堂上)만 감하는 것이 옳다.”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권(李蕝)의 일은 이안세(李安世)의 일과 같은데, 이안세는 벌써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만일 추고한다면 마땅히 동일한 말로 추고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그를 잡아오는 것이 옳은가? 신상(申鏞)이 주장(主將)이 되었으니, 좌우 병사(左右兵使)는 바로 좌우 대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장이 만일 호령을 낸다면 반드시 직접 부탁해야 옳을 것인데 도리어 행이(行移)하였으니, 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소루하다. 그의 실수가 매우 크니 또한 잡아와서 추고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아울러 비변사에 물으라.”하였다.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이권의 죄는 이안세와 같으니 잡아와서 추고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신상의 일은 그가 만일 장흥(長興) 등처에 있었다면 두 변방은 다 거리가 멀므로 면대해서 부탁할 수가 없으니, 이안세와 이권과는 처지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권과 이안세를 잡아왔는데 또 감사를 체포한다면 도내가 소요할 것이니, 신상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인 듯합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물어보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지당하다. 신상은 주장으로서 사체만을 잃은 것이니 마땅히 삼공에게 물어보아야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8일(辛巳)

고형산·안윤덕이 비변사의 일에 삼공이 참여하기를 청하다

고형산·안윤덕이 아뢰기를, “비변사가 하는 일은 모두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때문에 당초 비변사를 설치하고는 삼공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일을 보살피게 하였는데, 그후 재차 설치할 때에는 삼공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임기 응변할 일이 있을 때 만일 문서를 갖추어 정부에 보고한다면 반드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니 청컨대 삼공으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신상이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추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잡아와서 추고하는 것이 옳은가? 또 비변

사가 삼공과 함께 참여하기를 청하니 아울러 삼공에게 의논하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12일(乙酉)

남곤·이유청이 정광필·최한홍을 혁파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아뢰다

… 남곤·이유청이 재차 아뢰기를, “신 등은 병사(兵事)를 익히지 못했지만, 정광필(鄭光弼)은 양계(兩界)의 일을 맡은 일이 있고 또 일찍이 원수(元帥)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광필은 1품 재상으로 지휘 호령하고, 고흥산(高荊山)은 호조 판서로 변방 창고 곡식의 다소를 알아 군량을 계량하고, 최한홍(崔漢洪)은 무장(武將)으로 변진(邊鎭)의 형세를 두루 아니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운 뒤에야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정광필·최한홍 등의 소임을 혁파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니, 그들로 하여금 병사를 참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이 비변사를 혁파하자고 청한 것은 어찌 우연한 생각에서 말한 것이겠는가? 무사할 때에는 더 설치한 당상(堂上)은 혁파하는 것이 가하니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삼공이 마땅히 겸임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9월 21일(甲子)

대신들이 경상좌도의 수사·우후·진장들에게 왜적방비에 대한 죄를 묻자고 의계하다

김전·남곤·이유청·이계맹·고형산·심정(沈貞)·한형운(韓亨允)·이행(李荇)·박호(朴壕)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왜적(倭賊)들이 육지에 내려와 진장(鎭將)들을 위협하고 살해하였습니다. 당초에 망보기를 조심해서 하지 않아 그들이 오는 줄도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추격하여 잡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서 모욕을 받아 태만함이 막심했으니, 바라건대 좌도(左道)의 수사(水使) 및 우후(虞候)와 각 포구(浦口)의 진장들을 잡아다가 추고(推考)하도록 하되, 좌도의 병사(兵使)와 우후 등은 그 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으로 하여금 추고하여 죄를 징계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또 백성을 성 안으로 옮기는 일은 시끄럽게 되어 한갓 생업(生業)만 잃게 될 것 같습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0일(壬午)

대신들이 방언·말손의 일로 의논하다

… 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판윤 한형운(韓亨允)·형조 판서 김극핍(金克愾)·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이 의계(議啓)하기를, “최세절(崔世節)이 조방언(趙邦彦)에게 말하기를 ‘기일(忌日)이기 때문에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했다는데, 방언이 아뢰는 말에는 세절이 말한 ‘기일’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언에게 하문(下問)해 보시되 만일 ‘세절이 「기일이기 때문에 사진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하게 된다면, 더욱 의심스러울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승지들은 연곡(輦轂)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감히 위를 속이겠습니까? 만일 말손이 혐오(嫌惡)를 품고 승지들을 무함(誣陷)하려 한 것이라면 말손의 일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승지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면 또한 큰 관계가 있는 일인데, 무릇 옥사(獄事)는 반드시 중요한 대목이 있는 법이므로 이 두 가닥을 물어본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리라 여깁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3일(乙酉)

대신들이 이말손의 사건에 대해 정원과 말손을 끝까지 추국해야 한다고 아뢰다

영의정 김전·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李惟淸)·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형조 판서 김극핍(金克愾)·판윤 한형운(韓亨允)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이번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큰데도 잘잘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일에 대사헌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만일 조방언(趙邦彦)과 최세절(崔世節)에게 물어본다면 잘잘못이 저절로 구분될 것이다.’ 한 것이고, 이미 두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하는 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일 하문하실 때 두 사람을 옥에 내려 귀결이 나도록 추국하여 따지기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추국하여 따져보아도 이처럼 틀리니 끝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원이 성상을 속인 것이나 이말손(李末孫)이 정원을 무함한 것은, 그 조짐이 모두 치란(治亂)에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퍼지는 것을 싫어하여 둘 다 버려둔다면, 시비가 몽롱(朦朧)해져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금부로 하여금 성운이 아뢰는 말에 의해 끝까지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하였다. …

○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1월 12일(甲寅)

대신들이 여연·무창의 야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의논드리다

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한성부 관윤 한형윤(韓亨允)·우참찬 이행(李荇)·계림군(雞林君) 최한홍(崔漢洪)·청성군(靑城君) 심순경(沈順經)·한성부 우윤 유미(柳湄)·병조 참의 홍언필(洪彦弼) 등이 의논해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일은 한두 번 의논한 것이 아니요, 본도의 병사(兵使)가 그들이 와서 사는 의도를 탐문하고 속히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효유한 일도 자주 있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야인(野人)의 답사(答辭)는 점점 오만 불손해졌습니다. 금년 봄에 신 등에게 명하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셨는데, 전교에 ‘마땅히 안을 닦은 뒤에야 밖을 제어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신 등은 이 전교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탄복하였습니다. 무릇 제왕(帝王)이 변경을 개척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신 등은 다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본도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후 와서 사는 삼위(三衛) 사람이 매년 2백여 호나 되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후주(候州)에 사는 자는 삼수진(三水鎭)과 접해 있고 상토(上土)에 사는 자는 강계(江界)에 접근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끝내는 서북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흘비합(忽非哈)은 바로 회령(會寧)의 화근인데 그가 그 땅에 와서 살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함경북도의 야인도 장차 서로 이끌어 와서 끝내는 서북의 큰 걱정거리가 되리라는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몰아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겨울이 반이나 지났고 명년 봄은 농사일이 비뻔 뿐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일을 미처 조처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명년 가을과 겨울의 여름에 군사를 일으켜 몰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근래는 방비가 소루할 뿐더러 군량이 다되고 병기가 정예하지 못합니다. 만일 큰일을 거행하자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 본도와 비변사로 하여금 미리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중종실록 46권, 중종 18년 1월 11일(癸丑)

호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을 청하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사직하기를, “신이 지난해에 치사(致仕)하기를 청하다가 윤택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72세가 되어 귀가 먹고 눈이 어둡습니다. 호조는 곧 일이

번다한 곳이어서 하루도 휴가를 얻어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신의 병은 말할 것이 못하고 국가 일을 그르치게 될까 싶어 항시 아뢰고 싶었는데, 요사이 자전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근년 이래로 각기병(脚氣病)이 생겨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이 전일에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사면하려 할 때는 경이 나이가 늙어 갑옷을 입으면 달리기가 어려울 듯하기에 윤택했었으나, 지금의 호조는 병조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하며,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8일(己卯)

의주 성 쌓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라는 전교를 내리다

… 전교하기를, “… 의주성(義州城)의 일은 차사원(差使員) 2인이 연이어 죽은 것으로, 살피건대 과연 백성의 폐해가 없지 않다. 다만 조정에서 매양 그곳에 성을 쌓으려 했으나 거행하지 못하다가 전번에 고흥산(高荊山)을 보내 역사(役事)를 감독케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중국 사신이 오기 때문에 급속히 쌓았으므로 견고하게 쌓을 수가 없었으니, 역사를 잘못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곳은 곧 국가의 중요한 요새이니 성을 쌓아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의 작은 폐해를 불쌍히 여겨 큰 국방의 일을 경홀히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유사(有司)의 공사(公事)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 일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나 역시 독단할 수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3월 5일(丙午)

김굉필의 처자에게 계속 세사미를 주도록 하다

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허(李惟清)·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예조 판서 홍숙(洪淑)·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판윤(判尹) 한형운(韓亨允)·우참찬(右參贊) 이행(李荇)·이조 판서 이항(李沆)·형조 판서 조계상(曹繼商)·형조 참판 성운(成雲)·참의(參議) 권희맹(權希孟)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야인으로 우리 나라 인물(人物)을 약탈해다가 매매하는 자에게는 일체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법령에 나타나 있으니 지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다시 가볍게 고친다면 저들이 필시 범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 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다만 근일 성저 야인(城底野人)이 박산(朴山)의 족류(族類)를 이배(移配)한 것 때문에

원한을 많이 품고 언사(言辭)에까지 드러났으니, 뜻밖의 변이라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무릇 범죄한 아인을 조금도 너그름이 없이 한결같이 중형을 가한다면 그들의 노여움이 더욱 격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만든 후에 범법한 아인이 매우 많았으나 아직 한 사람도 법에 따라 처벌된 자가 없었는데, 유독 지금 원한과 노여움이 극도에 달한 때에 그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하려 하여 전에 쓰지 않던 형벌을 갑자기 시행한다면 아인들이 보고 듣기에 어찌 해괴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지개(加乙之介) 등은 특별히 말감(未減)하여 결장(決杖)하고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로 사형을 용서한다는 뜻을 유시(諭示)하게 함이 어떠하리까?”하니, ‘아뢰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3일(甲戌)

고형산을 추고하고자 하였으나 사명이 있기 전의 일이라 전교하다

… 헌부가 인하여 고형산(高荊山)을 추고하는 공사(公事)로 아뢰기를, “의주의 성이 퇴락한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고형산이 명을 받들고 추고(推考)할 때, 말을 꾸며 항거하였으니 대신의 체통을 크게 잃은 것이어서 지극히 미편합니다.”하였다. … 전교하기를, “고형산의 함사(緘辭)를 보니 과연 잘못된 곳이 있다. 그러나 사명(赦命)이 있기 전의 일이니 불문에 붙이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9일(庚辰)

진위사의 무역을 금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의주의 성은 처음 견고하게 쌓지 않아서 빨리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퇴락한 형상을 감사(監司) 등이 바른대로 계달(啓達)하지 않고 숨긴 채 수축(修築)한다 칭했기 때문에 신 등이 계청하여 승전(承傳)을 받들어 추고하였는데, 그때 고형산은 다 퇴락하지 않았다고 함답(緘答)하였습니다. 유담년은 자신이 방면(方面)의 책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도내를 총괄하여 다스려야 하는데도 도리어 말하기를 ‘병사(兵使)가 이미 계문(啓聞)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된 자는 마땅히 실수를 자복(自服)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항거하니 매우 부당합니다. 장순손(張順孫)·방유령(方有寧) 등은 성을 쌓는 일의 완급(緩急)을 생각하지 않고 명령되어 스스로 계청(啓請)하여 역군을 많이 동원하였으니 실수한 바가 매우 큼니다. 그래서 본부(本府)에서 추고할 때에, 그가 처음 말을 꾸며 함답한 내용 가운데서 착오된 곳을 지적해 내어 다시 함문하였던

니 ‘한 번 역군으로 동원된 백성은 곧바로 지쳐버렸는데 멀어서 미처 이를 헤아리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대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을 부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이에 ‘지칠 줄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니, 이는 대신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청컨대 상께서 이 공사(公事)를 보시고 그 죄에 따라 다스리소서.” 【세 재상(宰相)을 추고(推考)한 공사(公事)를 아울러 아뢰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조정의 의논이 ‘모름지기 중국 사신이 오기 전에 빨리 마쳐야 한다.’ 하기에 고흥산(高荊山)이 힘을 다하여 빨리 쌓느라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지맥(地脈)까지 얼어붙었으니 아무리 고흥산이라 하더라도 어찌 역군의 춤과 배고픔으로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어찌 고흥산의 허물뿐이겠는가? 더구나 이 일은 이미 사유(敎育)를 거쳤으니 말할 게 있겠는가? 유담년이 갔을 당초에는 성이 모두 퇴락하지는 않았는데 그후 점차 퇴락하여 거의 무너진 것이니 죄줄 수 없다. 또 병조 당상(兵曹堂上)의 함사(緘辭)에는 옳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해조(該曹)에서는 다만 본도(本道) 감사의 계본(啓本)에 의해 공사(公事)를 계하(啓下)하는 것이 예(例)이다. … ”하였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10일(辛巳)

고형산과 유담년을 죄로 다스리지 않도록 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신 등이 고흥산을 죄주어야 한다는 것은 쌓은 성이 굳지 않은 문제나 사유(敎育)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이 모조리 퇴락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함사(緘辭)에 ‘모조리 퇴락하지 않았다.’고 꾸며 항거하였으니 대신의 체모를 잃은 것입니다. 유담년은 한 도(道)를 맡아 다스리면서 곧바로 계달(啓達)하지 않고 역군을 징발하여 역사를 독려한 실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즉시 승복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청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고형산이 모조리 퇴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일 것이요, 직접 보고 역지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유담년이 병사(兵使)에게 위임한 채 스스로 자세히 갖추어 계문(啓聞)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사유 이전에 있었던 것이니 다만 추문(推問)할 일이지 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하였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11일(壬午)

헌부가 차자를 올려 견고하게 성을 쌓지 못한 고흥산을 죄주기를 청하다

헌부가 차자(笥子) 올리기를, “ … 의주(義州)의 성 쌓는 일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자세히 헤아려 의논하였으나 감히 경솔하게 쌓지 못한 지가 거의 1백여 년이었는데, 지난 경진년에 특별히 조정 의논에 따라 고흥산을 보내어 감독하라 명하신 것은 그 역사가 중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흥산이 처음부터 견고하게 쌓으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서북 지방의 이른 추위에 행여 일을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독려하였으므로 마침내 아랫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겨를이 없었고 돌을 채울 겨를도 없이, 바둑알이나 계란을 포개듯 겨우 형상만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정에서는 뛰어난 공로라고 서로 경하(慶賀)하였으며 전하께서도 그것이 반드시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년도 채 못되어 얼음이 녹듯이 기왓장이 깨지듯 무너져 한 자도 남지 않게 되어 다시 큰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한 도의 백성을 잔상(殘傷)시켰으니, 이렇듯 공효(功效)에만 급급하여 일에 임하여 조심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흥산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허물을 책임지고 머리 숙여 대죄(待罪)함으로써 조정에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도의 감사(監司)된 자도 마땅히 성의 퇴락 형상과 중역(重役)의 고통을 자세히 기록, 분명하게 치계(馳啓)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렸어야 옳았으며, 해조(該曹)에서도 마땅히 사목(事目)을 조사하고 성의 퇴락 형상을 물어 감축원(監築員)의 죄를 정하여 상계 아뢰으로써 일의 시말(始末)을 일목 요연하게 했다면 형산의 잘못이 비록 법으로 논죄하여야 하더라도 아주 크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상의 관용(寬容)이 비록 사은(私恩)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뜻에 가까운 것이었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성실로 대우하는 뜻에 있어 두 가지를 거의 온전히 하여 훼손됨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형산은 남이 자기를 탄핵하는 것을 꺼리어 과실을 감추었습니다. 성이 모조리 퇴락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는데도 승전(承傳)의 함문(緘問)에조차 자복하지 않았으니, 대신으로서 바른 도리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였다. 전교하기를, “ … 이제 고흥산(高荊山)은 겨울에 성을 쌓으면서 그 견고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은 죄를 범했고, 함문(緘問)할 때 바로 승복하지 않았으니 체통을 잃은 듯하나, 성이 쉽게 무너진 것은 아래 역군들이 힘써 역사를 하지 않은 탓이니 어찌 유독 고흥산만의 허물이겠는가? 병조(兵曹) 관리(官吏)의 함사(緘辭)는 비록 한두 군데 부당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실정을 진술하고자 한 것이요 법사를 희롱한 것이 아니니 그 일로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 ”하였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13일(甲申)

호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호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신의 나이 이미 71세여서 지기(志氣)가 쇠약해졌는데 요즈음 다시 물론(物論)을 듣고 있으니 비록 상께서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신이 벼슬자리에 있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신의 직을 체직하여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나이 70이 넘었다지만 어찌 직사(職事)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또 축성(築城)의 일 때문에 논박을 받는 것은 한때의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모두 세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윤4월 1일(辛丑)

고형산 등이 변방의 일을 논의하다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고흥산(高荊山)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 병사(平安道兵使) 이지방(李之芳)이 계문(啓聞)한 여연(閔延)·무창(茂昌)에 와 사는 야인(野人)들을 몰아내는 일에 대하여 본사(本司)에서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변방의 중요한 일로 국가의 이해가 달린 문제여서 신 등이 감히 독단으로 의논할 수 없으니, 청컨대 전처럼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본사의 당상들은 모두 대신이니 일마다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할 필요는 없다. 편의(便宜)한 방책을 마련해서 공사(公事)로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에서 스스로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하였다. 고흥산 등이 또 아뢰기를, “군사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정에 있으면서 변방 일을 모의하면 비록 자세히 한다 해도 진장(鎭將)이 친히 그 이해를 살피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경솔하게 변방의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전교를 들었으니 신 등이 감히 어길 수는 없으나, 변장(邊將)이 재삼 쫓아내자는 뜻으로 청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듣건대 온화위(溫火衛) 야인으로 우리 땅에 와 사는 자들은 형세가 아주 번성하여, 함경도(咸鏡道) 육진(六鎭)의 야인들도 모두 옮겨 오려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만포진(滿浦鎭) 건너편에 와 사는 자들도 처음에는 5~6가구였으므로 그들의 집을 불태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뒤 또 와서 사는 자가 지금은 거의 20여 호나 되니, 그 형세가 반드시 삼수(三水)에서 의주(義州) 등의 진(鎭)에까지 많이 옮겨와서 곳곳에 퍼져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끝내는 변관(邊關)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장 등이 어찌 이해를 자세하게 헤아리지 않고 계문했겠습니까? 신 등도 지난번 의논드릴 때 비록 변방의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오늘 다시 들은 것이 있어

서 그 의논을 달리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일 야인이 와서 시는 것을 방치하고 끝내 쫓아내지 않으려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성하기 전에 도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풍저수(豐儲守)이환(李荊)이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으로서 본도로 떠나려 하니, 청컨대 대신들과 의정(議定)하여 진장(鎭將)에게 면대하여 당부할 일이 있으면 이환으로 하여금 비밀히 전하게 할 것이요, 번거롭게 문첩(文牒)을 만들어 아랫사람들이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本司)에서 공사(公事)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였다가 정부에서 만일 쫓아내는게 불가하다 할 경우, 말이란 쉽게 퍼지는 것이어서 저 야인들이 만일 그 의논을 듣는다면 더욱 기탄 없이 줄지어 와서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조정의 의논 역시 쫓아내는 게 마땅하다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일은 과연 가벼운 일이 아니다. 쫓아내자니 어렵고 쫓아내지 않으면 끝내 제거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변방의 큰 걱정거리이다. 만일 경 등이 마음대로 의논하지 못하겠거든 아뢰는 대로 즉시 대신들과 의정(議定)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영의정(領議政) 남곤·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흥산(高荊山)·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공조 판서(工曹判書) 안윤덕(安潤德)·한성 판윤(漢城判尹) 한형운(韓亨允)·우참찬(右參贊) 이행(李荇)·병조 참판(兵曹參判) 방유령(方有寧)·참의(參議) 홍언필(洪彦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여언·무창에 들어와 시는 야인을 몰아내는 일에 대하여는 전에도 재삼 의논했으나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어떤 이는 ‘쫓아내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때 정부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변방의 일을 모른 것은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큰 일로 가볍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안도의 형편을 보건대 유담년(柳聃年)·이지방(李之芳) 등은 용장(庸將)이 아니어서 병가(兵家)의 이해를 자세히 알지만 일 벌리기는 좋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의 계본(啓本)에 매양 ‘지금 만일 쫓아낸다면 화를 받는 것이 작다.’ 하였고,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성언(李誠彦)은 유자(儒者)인데도 역시 쫓아내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저들의 형세와 편의를 자세히 알아서 뒷일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신 등이 들은 바와 직접 본 사람들의 의논이 혹 다르기도 하지만 일거에 쫓아내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일은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아뢰입니다. 또 본도(本道) 사람들이 병사의 계본(啓本)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몰라 발 뒤꿈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쫓아내는 게 마땅하다고 하유(下諭)해야 할 터인데도 끝내 하지 않는다면 변장(邊將)의 마음이 헤이해질 뿐만 아니라 야인들이 들으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게 됩니다. 비변사 당상이 ‘공

문(公文)을 왕래시켜 아랫사람들이 일의 기미(機微)를 알게 해서 안 된다.’ 한 말은 옳습니다. 이제 이환(李筵)이 본도로 내려가니, 조정의 뜻을 은밀히 이지방(李之芳) 등에게 전하기를 ‘다시 그 곳의 인심과 군세(軍勢)의 편리 여부, 용병(用兵)의 쉽고 어려움을 살펴 자세히 치계(馳啓)하되 도내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라.’ 하면 야인들에게 누설될 염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비변사와 병조 등으로 하여금 사건(事件)을 마련하여 이환에게 부송, 회계(回啓)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사(兵使)는 변방의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기 때문에 매양 쫓아내자고 말하는데, 쫓아내는 게 마땅한가 아닌가는 조정에서 먼 앞날의 이해를 따져 정해야 한다. 변방의 일을 벌리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야 한다. 이환은 범인(凡人)이 아니니, 아뢴 대로 사건을 마련해 부송하여 그 회보(回報)를 기다린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게 옳다.” 하였다.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8일(丁亥)

풍년들기를 기다려 야인을 치기로 하다

… 영종추부사 정광필 · 영의정 남곤 · 좌의정 이유청 · 우의정 권균 ·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 병조 판서 홍숙(洪淑) · 판윤(判尹) 한형윤(韓亨允) · 좌참찬 이행(李衍) · 우참찬 이항(李沆) 및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 김석철(金錫哲) 등이 의계하기를, “신 등이 계본(啓本) 및 비망기(備忘記)를 보았고, 전에도 누차 성상의 본부를 듣건대, 마땅히 내정(內政)을 닦고서 외적(外敵)을 물리쳐야 했는데, 지금 내정을 닦지 못하고서 먼저 외적 물리치는 방도를 거행함은 과연 불가한 일이나 이지방(李之芳)의 계본을 보건대 ‘우리 나라를 경멸하고 언사가 공손하지 못하다.’ 했으나, 이런데도 처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약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크게 출동할 수는 없으니 우선 이성언(李誠彦)의 상소대로, 조명간(趙明干) 등 38가구(家口)를 세 길로 나누어 쫓아낸다면 반드시 크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무리들의 괴수를 불러서 ‘너희들이 오래 있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차례차례 모두 쫓아내겠다.’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만일 물러가지 않는다면 뒷날 크게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군사를 쓰지 않았기에 지금 비록 크게 군사를 일으킨다면 장졸(將卒)들이 화목할지를 기필할 수 없으니, 우선 한쪽에서만 시험해 본다면 공력을 적게 들이면서 나라 위신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변방에서의 작전(作戰)은 마땅히 대중들과 의논해야 하

고 독자적으로 결단해서는 안된다. 그곳의 일을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나, 지금 이환(李蕡)이 올린 도면을 보건대, 그들이 우리 지경에서 경작(耕作)하고 있어 피지게 될까 싶으니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성언의 상소에 5천 명의 군사를 사용하였으면 했는데 그 군사를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고단한 군사를 출동하였다가 혹 불리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가 위신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몰아낼 시기를 언제라고 정해놓는다면 그 도(道) 백성들이, 지금 흉년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큰 일을 하는가 할 것이고, 더구나 모든 일을 조치하려면 반드시 사명(使命)이 빈번하게 될 것이어서 경솔하게 출동할 수 없는 일이니, 마땅히 추후에 다시 의논하여 거사(擧事)해야 한다.”하였다. …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8일(丁酉)

고형산 등이 동의사목을 계하다

… 전교하기를, “지난해에는 왜노가 회령포에 침구하였고 지금은 또 풍천 경내에 침범하였으니, 모두 일본 사신이 나오는 때를 틈탄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동·서로 충격(衝擊)하여 우리 나라를 공동(恐動)시키려는 것으로, 그 변사(變詐)스러움을 헤아릴 수 없으니 장수를 보내어 체포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도 하나, 다만 황해도는 본디부터 왜적이 왕래하던 지역이 아니니만큼, 만일 왜적인 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장수를 보낸다면 공연히 역로(驛路)에만 폐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 지금 듣건대, 대신들의 계(啓)가 지극히 마땅하니 일체를 계대로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본도(本道)의 감사는 곧 통정관(通政官)이니 장수도 통정관으로 보내야만 절제(節制)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장 비변사 당상(堂上)을 불러 함께 의논하고 변방의 보고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군관(軍官) 등도 모름지기 선택하여야 한다.”하였다. 비변사 당상 고형산(高荊山)·안윤덕(安潤德)·한형윤(韓亨允) 등이 명을 받고 와서 동의 사목(同議事目)을 다음과 같이 계하였다. “1. 조방장(助防將)은 김철수(金鐵壽)로 하고, 군관(軍官) 5명, 파진군(破陣軍) 2명, 화포(火炮) 등 여러 기구를 완비할 것. 1. 본도에 번상(番上)하는 정로위(定虜衛) 26인을 보내어 방수하게 할 것. 1. 도내(道內)의 무재(武才)있는 수령이 소관 군졸을 뽑아서 요해처(要害處)를 방수(防守)할 것. 1. 도내의 무재 있는 군사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려 방수하게 할 것. 1. 제도(諸道)를 수색 토벌할 때에 해주(海州)·용진(甕津)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작(鮑作)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병선(兵船)에 나누어 태울 것.” 이어 아뢰기를, “이밖에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일은 병조에서 또한

뒤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지에 다시 하서(下書)하여 효유하기를 ‘처음에는 망(望)을 잘보지 못하여 그만 왜노로 하여금 깊이 서해(西海)의 경계까지 들어가게 해서 지극히 놀랍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삼가 그 망을 잘 보아서 그들을 요격(邀擊)하여 포획하라.’ 한다면, 변장(邊將) 등이 반드시 경각심을 더 가질 것이요, 방비하는 일도 반드시 엄격하게 조치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김철수에게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가 변보(變報)를 듣는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삼도(三道)에 하유할 일은 아된 대로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乙丑)

의정부·병조·비변사의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을 인견하여 병선의 제도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병조, 비변사의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宰相) 등이 모두 대궐로 나아가니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 고흥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있을 때에 선척을 개조하는 일로 의논하다가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황해도·평안도의 병선은 경쾌하지 못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전라도는 비록 맹선이 있으나 모두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육지에 매여진 채 부패하여 썩을 뿐이요, 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비거도선(鼻居刀船)입니다. 그러나 맹선을 설치한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 나라의 조운(漕運)에는 모두 맹선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체 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소의 3등급이 있으니 마땅히 그 숫자를 짐작하여 맹선이 4척이면 그 가운데 2척은 경쾌한 병선으로 개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해 왜적이 침구하여 왔을 적에도 경쾌한 배가 있었다면 그들을 포획(捕獲)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하였다. 홍숙은 아뢰기를, “고형산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각도에 물어본 결과 모두 맹선이 없어서는 불가하다고 하므로, 맹선의 반을 감하여 병선으로 만들 일로 병조가 이미 수교(受教)하였습니다.”하고, … 형산(荊山)이 아뢰기를, “이미 배를 타본 사람은 당연히 알 것이니, 유담년·조윤손은 반드시 편부에 관하여 알 것입니다.”하였다. 윤손(潤孫)은 아뢰기를, “신이 경상좌우도 병수사(慶尙左右道兵水使)를 연임(連任)할 적에 제포(諸浦)의 대맹선·소맹선을 보니 과연 군인을 많이 실을 수 있었으나 그 선체가 경쾌하지 못하여 바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대로 운용(運用)할 수가 없어 패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거도선은 경쾌하여 비록 사나운 바람을 만나도 쉽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좌도(左道)에도 많이 있었지

만 우도(右道)에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하였다. … 고흥산은 아뢰기를, “성(城)을 쌓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 둘러본 바 여러 곳은 모두 다 쌓았는데, 단지 오폭(烏浦)·축산포(丑山浦)만이 아직 쌓지 못하였으니, 병조(兵曹)에 분부하여 검거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수군에 대한 일은, 이것이 곧 근본인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기도·황해도의 경우 소금을 굶고 해물(海物)을 수채(水採)하는 것을 모두 수군이 하고 있으므로 하루도 진(鎭)에 있을 때가 없는데, 또 경기도의 수군은 부득이 서울의 역사(役事)에까지 부역(赴役)합니다. 물선(物膳)에 관한 일 또한 중대한데 각포의 수군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김극성(金克成)은 아뢰기를, “수군이 바치는 물선은 스스로 수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사서 바치므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하고, 고흥산은 아뢰기를, “수군에 대한 일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바를 기록하여 역사하는 곳의 경중을 헤아려 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다. … 남곤은 아뢰기를, “경기도·황해도에 병수사(兵水使)를 다시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 등이 이미 의논하였습시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량(花梁)이 거진(巨鎭)이므로 예전에도 수사가 있었으니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이 그래도 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해도의 경우에는 결단코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영진(營鎭)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영(營)을 설치한다면 영에 소속될 사람이 없는데, 이 인원을 충차(充差)하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니 경솔하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량첨사(花梁僉使)를 쓸만한 사람으로 택차(擇差)한다면 따로 수사(水使)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였다. 형산(荊山)은 아뢰기를, “화량 첨사는 비록 택차하여 보내더라도 첨사라는 칭호가 있으면 각포(各浦)를 검거(檢擧)할 수 없으니, 칭호를 조방장이라 하여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포핍(褒貶)하게 함으로써 각포를 검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 남곤이 아뢰기를, “하문(下閔)하신 파방(罷防)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 등의 생각은 왜선이 대양(大洋) 가운데로 나왔다가 본토(本土)를 향하여 돌아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파방하고 돌아온 뒤에 허술함을 이용하여 다시 노략질할지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방장 및 군관을 접대하는 폐단이 반드시 클 것이니 관찰사가 있는 곳에 글을 내려 방어에 관한 제반 일을 헤이하게 하지 말도록 효유(曉諭)하소서. 그리고 조방장 등으로 하여금 이달을 기한(期限)으로 유방(留防)하게 하고 다음 달에는 파방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고흥산은 아뢰기를, “왜선이 황해도·경기도에 나타났을 적에 포획하지 못하여 이미 충청도·전라도를 지나갔으니, 왜적들은 본디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침구

하지 못하고 본토로 돌아간 것이 분명하니 속히 파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아뢰 바가 매우 지당하다. 마땅히 본도 관찰사에게 효유(曉諭)하여 이달을 기한으로 유방(留防)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8일(丁卯)

일본과의 무역은 폐할 수 없으나 모두 공적인 무역은 허용할 수 없다고 이르다

… 남곤은 아뢰기를, “고형산(高荊山)이 ‘왜인(倭人)이 가지고 온 금·은·용뇌(龍腦) 등의 물건을 사적(私的)으로 무역(貿易)하지 않고 모두 공적으로 무역하려 하니, 그렇게 하자면 비록 경상도의 면포(綿布)를 다 끌어내어도 살 수가 없다.’ 하였습시다. 그러나 이는 일본 국왕이 보낸 것이니,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교린(交隣)의 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허화(許和)하여 달리는 청을 들어주지 않고 또 무역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린은 신의가 중요한 것으로 마땅히 후하게 접대하여야 하니, 무역하는 일은 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두 공적으로 무역한다면 내년에 또 와서 요구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21일(己丑)

대신들이 대마도의 일로 의논하여 아뢰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형산·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병조 판서 홍숙(洪淑)·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운(韓亨允)·좌참찬(左參贊) 이행(李荇)·형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예조 판서 윤은보(尹殷輔)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대마도(對馬島)를 위하여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구례(舊例)와 같이 대우하여 줄 것을 청하면서 ‘성순(盛順)은 귀국(貴國)에 불충(不忠)하였기 때문에 귀국에서 구례를 감(減)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장(盛長)은 귀국을 위하여 성순을 죽였으니, 마땅히 구례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합니다.’는 것으로 핑계삼아 강력하게 청하여 마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순의 존망(存亡)이 우리 나라의 이해(利害)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미 그들에게 말하였는데도 이제 또 이런 뜻으로 다시 말하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저들의 말을 일체 따르지 않는다면 저들이 다시 반드시 서운해 할 것이니, 지난해의 예(例)에 의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미두(米豆) 및 잡물(雜物) 가운데 수목(數目)을 양감(量減)하여 급여(給與)함으로써 조금쯤 그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이어 말하기를 ‘임신년의 조약

(條約)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은 것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대마도 또한 모름지기 굳게 이 조약을 지켜야 화호(和好)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 동요되면 다시 무엇을 지키겠는가? 이제 대마도에 대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는 또한 국왕(國王)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져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선위사(宣慰使)를 시켜 중용히 말하게 하면서 그들의 뜻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4일(辛丑)

중국과 왜인의 처치에 대해 논의하다

상(上)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고,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우의정(右議政) 권균(權鈞)·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흥산(高荊山)·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공조 판서(工曹判書) 안윤덕(安潤德)·판윤(判尹) 한형운(韓亨允)·좌참찬(左參贊) 이행(李荇)·우참찬(右參贊) 이항(李沆)·형조 판서(刑曹判書) 조계상(曹繼商)·이조 판서(吏曹判書) 김극성(金克成)·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은보(尹殷輔)가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과 왜인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가?”하매, … 고흥산·한형운 등이 아뢰기를, “왜인을 중국 사람과 아울러 중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일에 있어서 순할 것이니, 빨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이달 안에 들여보내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5일(壬寅)

호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이 귀가 멀고 눈이 어둡다 하여 매우 간절히 사직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12일(己酉)

일본이 세견선·세사미를 정한 일과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鈞)·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장순손(張順孫)·고형산(高荊山)·병조 판서 홍숙(洪淑)·호조 판서 김극림(金克愐)·좌참찬 이행(李荇)·우참찬 이항(李沆)·형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 판서 김극성(金克成)·예조 판서 윤은보(尹殷輔) 등에게 명하여, 일본 사신이 세견선(歲遣船)·

세사미(歲賜米)를 청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삼공(三公)이 의논 아뢰기를, “예전부터 제왕(帝王)이 외이(外夷)를 흔히 세폐(歲幣)로 기미(羈縻)한 까닭은, 대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에 힘쓰자면 쓰는 것이 많더라도 계교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對馬島)의 일로 두 번 사자(使者)를 보내어 청하기를 마지 않으며, 또 성중(盛重)이 걸오(架鷲)하나 버젓이 청하지 않고 일악 동당(一鸚東堂)을 남몰래 시켜서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제 간절한 뜻을 진술하였으므로 역시 굴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이때에 조금 그 소원을 들어 주지 않으면 뒤에 허락하려 하더라도 마땅한 때가 없을 듯합니다. 이제 일악에게 ‘약조 안의 일은 결코 고칠 수 없으나, 귀국은 성장(盛長)이 성순(盛順)을 죽인 것을 본국에 충성한 것으로 여기니, 과연 충성이 있다면 가사히 여기고 권장할 일인데, 더구나 인호(隣好)하는 사이에 그 청을 거듭 여기겠는가? 특별히 세견선 외에 5척을 별사(別賜)하여 새 도주(島主)를 포상(褒賞)하고 아울러 이 뒤에도 힘쓰기를 바라거니와, 처음 먹은 마음을 더욱 힘써야 이번 허락해 준 것을 길이 받을 수 있다.’ 하고, 이어서 예문관(藝文館)을 시켜 서계(書契)안에 이 뜻을 아울러 적게 하여 일악이 돌아갈 때 부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장순손·고형산·홍숙·김극필·이행 등이 아뢰기를, “지난해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자를 보내어, 성장이 성순을 죽인 것을 공(功)이라 하여 대마도를 예전처럼 대우하여 주기를 바랐으나, 조정에서 전의 약조에 의거하여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의 서계로 말미암아 세견선과 세사미를 허락하면 전의 약조가 이미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니, 저들이 다시 삼포(三浦)에 살기를 청하면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그 꼬투리를 끊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14일(辛亥)

대마도에 별사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대마도(對馬島)에 배 5척을 별사(別賜)하는 일은 대신의 의논이 같지 않으므로 면대(面對)하여 의논하겠으니,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과 한성부(漢城府)의 우윤(右尹) 이상을 부르라.” 하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갔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도 약조는 가변이 고칠 수 없고, 전년의 예대로 쌀·콩을 내려 위로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고,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장순손·고형산이 아뢴 것이 마땅합니다. 전년에 일본국이 사자를 보내어와서 청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약조를 근거로 삼아 고집하고 들어 주지 않았더니 저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답하기에

도 순하였습니다. 이제 꼬투리를 열어 무너뜨리면 삼포에 와서 살기를 청하더라도 답할 수 없는데, 더구나 제주(諸酋)의 배와 도주(島主) 자체(子弟)의 배와 대관(代官)이 전에는 많이 왕래하다가 임신년에 약조를 세운 뒤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에리가? 이 사람들이 약조를 무너뜨렸다는 말을 들으면 조그마한 공(功)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무슨 말로 거절하고 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약조가 한번 무너지면 관계 되는 일이 가볍지 않으니, 신은 다른 일로 위로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전에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있을 때에도 이를 아뢰었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21일(戊午)

문신 종1품 이하를 정시하다

문신(文臣) 종1품 이하를 정시(庭試)하였다.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동정(東庭)에서, 당하관(堂下官)은 서정(西庭)에서, 동정은 상원관등 한식추천(上元觀燈寒食鞦韆)이라는 글제의 칠언 율시(七言律詩)와 곡강상춘 십팔학사야연(曲江賞春十八學士夜宴)이라는 글제의 오언 율시(五言律詩)로, 서정은 상이연군신 추석완월(上巳宴群臣秋夕翫月)이라는 글제의 칠언 율시와 중앙상국 납전영설(重陽賞菊臘前詠雪)이란 글제의 오언 율시로 시험하였는데, 어제(御題)였으며, 동정은 이유허(李惟清)·장순손(張順孫)·임유겸(任由謙)을 시관(試官)으로, 서정은 권균(權鈞)·고형산(高荊山)·이행(李荇)을 시관으로 삼았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0월 29일(乙丑)

대신들이 야인 쫓는 일에 대해 계하다

남곤(南袞)·이유허(李惟清)·권균(勸鈞)·이행(李荇)·고형산(高荊山)·홍숙(洪淑)·안윤덕(安潤德)·유담년(柳聃年)·김극휼(金克幅)·한형운(韓亨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지령괴에서만 쫓아내고 여연·무창에서도 아울러 쫓아내지 않는 일은 조정이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안도는 지령괴·여연부터 쫓아내고, 함경 남도는 무창부터 쫓아내는데, 이렇게 하면 다 그 야인의 소굴로 들어갈 것이니, 조정이 지령괴만 쫓아내더라도 모두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후(虞候) 이장길(李長吉)도 이 뜻을 알고 갔으니, 그 회계(回啓)를 기다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도 병사(南道兵使) 반석평(潘碩桴)에게 진퇴하는 기일을 평안도와 의논하여 함께 쫓아내도록 비변사가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그 회계를 기다려야 조치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아직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굉이 아뢰 다른 일들은 가능합니다. 병사는 전혀 모른다는 것으로 말하면, 감사(監司)가 병사를 잘 안다면 다른 장수를 따로 보낼 것이 없겠으나, 자헌(資憲) 한 사람을 보내어 강계(江界) 만포(滿浦)에 가서 머물고 이지방과 함께 호령하지는 말게 하여 원병(援兵)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이지방은 3년 동안 이 도에서 모든 군려(軍旅)의 일을 이미 기획(規畫)하고 처치하였을 것이니, 다시 다른 장수를 시켜 서로 주장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6일(壬申)

대신들이 박산의 연좌와 군관의 파견에 대해 의논하다

영중추부사 정광필·영의정 남균·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판중추부사 고흥산·우찬성 이행·공조 판서 안윤덕·병조 판서 홍숙·호조 판서 김극필·한성부 판윤 한형윤·우참찬(右參贊) 이항·지중추부사 조운손·김식·최최·한홍 등이 아뢰기를, “경원(慶源) 땅에 사는 야인(野人) 박산(朴山)이 내지(內地)에 출입하면서 교통하고 혼가(婚嫁)하며 폐단을 지은 일이 많이 있는데 회령부(會寧府)에서 죄를 얻어 형장을 맞다가 죽었으며, 그 자손은 남해(南海)·거제(巨濟) 등에 분배되었습니다. 박산은 이미 죄가 있으므로 워낙 죽어 마땅하지만, 그 연좌된 자손 거의 40여 인이 다 남방으로 옮겨졌으니, 이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도 이것은 범외(法外)의 일인데, 더구나 야인을 어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경원의 야인들이 이때문에 늘 울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 공손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 합니다. 병사(兵使)도 이 뜻을 알므로 그 서장(書狀)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미 죄를 정하였는데 이제 도로 놓아 주면 정령(政令)이 어지러운 듯하겠으나, 그들의 분한(忿恨)이 이러하니, 한때의 권의(權宜)로 병사의 서장에 따라 특별히 명하여 놓아 주어 돌려보낸다는 뜻을 병조(兵曹)를 시켜 야인에게 효유(曉諭)하여 분한 마음을 풀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두 도(道)에 지금 바야흐로 일이 있으니, 육진(六鎭)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분하게 여기는 일이 있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극성(金克成)이 아뢰 ‘야인을 쫓아낼 때에 평안·함경 두 도의 군사가 나누어 맡아서 쫓아낼 것인데 남도(南道)로부터 들어가는 자는 무창(茂昌)까지 가고 평안도로부터 들어가는 자는 여연(閔延)까지 가서 두 길의 거리를 고르게 할 것을 의논을 정하고 내려가야 한다.’는 뜻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형세를 두 도에서 계문(啓聞)하기를 기다려서 그 의논을 정해야겠으며, 또 그 위아래 끝만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 둔락(屯落)을 죄다

쫓아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고흥산이 아퇴기를, “양계(兩界)에 사는 사람으로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가 된 자는 그 도로의 형세를 알 것이므로 이미 군관(軍官)으로 정하였는데 응원군이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을 쫓을 곳에 바로 보내고, 김극성이 계청한 군관은 각별히 뽑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 고흥산이 아퇴기를, “그 도에 사는 사람을 부장으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게 하면 물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부장 10인은 이미 다 출신(出身)한 조관(朝官)으로 정하였거니와, 본도에 사는 내금위·겸사복을 부장으로 삼으면 그가 거느릴 사람이 다 그의 족속인데 어떻게 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부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금위·겸사복을 김극성에게 주어 내려가서 마땅하게 부리도록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하였다. … 고흥산에게 전교하기를, “변방의 일을 허술하지 않게 하려 하고, 또 한 도에 역로의 폐해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가 살펴 생각하여 아뢰었으니, 군관을 따로 정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9일(乙亥)

대신들이 군사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다

영원 군수(寧遠郡守) 김기손(金麒孫)이 평안도 병사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왔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순변사(巡邊使) 조운손(曹閔孫)을 인견(引見)하는데,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우의정(右議政) 권균(權鈞)·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흥산(高荊山)·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공조 판서(工曹判書) 안운덕(安潤德)·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담년(柳聃年)·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극휼(金克愾)·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극성(金克成)·도승지(都承旨) 김희수(金希壽)·좌승지(左承旨) 김말문(金末文)·우승지(右承旨) 김극개(金克愷)·우부승지(右副承旨) 윤인경(尹仁鏡)·동부승지(同副承旨) 소세량(蘇世良)·기사관(記事官) 안사인(安士彦)·가주서(假注書) 김광준(金光準)·기사관 김미(金臺)·김언(金瀆) 등이 입시(入侍)하고, 김기손도 참입(參入)하였다. 김기손이 병사 이지방(李之芳)의 뜻으로 아퇴기를, “여연(閔延)·무창(茂昌)에 와서 사는 야인을 이제 쫓아내더라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뜻이 없다면 내년에 반드시 다시 와서 살 것인데,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쫓아내기 어렵고 뿌리를 아주 끊는 방략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신이 조정의 처치와 비변사(備邊司)의 의논을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지방의 생각은, 성식(聲息)을 듣고 보기 위해서라고 전하여 그 추장(酋

長)을 불러 데리고 들어가 쫓아내고, 양군(兩軍)이 일제히 여연에 이르렀다가 돌아올 때 당초에 말을 공손하지 않게 한 죄를 따져 목을 베고, 나머지 무리에게 ‘너희도 죄다 없애야 하겠으나, 위협에 못이겨 따라와서 살므로 특별히 죽이지 않으니, 이뒤로는 어떻게 와서 살지 말도록 하라.’ 하면,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대저 뒤의 풍속이 폐망한 땅에서는 다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이것은 병가(兵家)의 궤도(詭道)입니다. 지난 신해년에도 불러와서 마참내 많이 죽었는데, 그 뒤로는 검선(檢善) 등지의 사람을 불러도 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그러나 그 추장을 불러서 군사 앞에 데리고 가면 그가 거느리는 아랫사람들은 감히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다 쫓아낸 뒤에는 죄를 따지고 놓아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그곳의 얼음을 보니 물 밑부터 먼저 얼어 한추위가 되어야 단단해지니, 빨리 하게 하더라도 형세가 역시 어렵습니다. 올해는 입춘(立春)이 12월 보름 뒤에 있으니, 날씨가 일찍이 따뜻해져서 얼음도 쉽게 녹겠으나, 정월 보름 이전에 군사를 돌려오면 얼음이 미처 녹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12월에 들어갔었는데, 눈이 깊어 풀이 묻혀서 말을 먹이기 어려웠으니, 부득이 세후(歲後)에 해야 합니다.”하였다. … 고흥산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무창(茂昌)으로부터 내려오고, 평안도는 여연(閔延)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들어가 양군이 합하여 죄다 쫓아내야 옳겠습니다. 처음 의논하기는 아래 끝만을 쫓아내기로 하였으나, 이제 사체를 보니 부득이 죄다 쫓아내야 하겠으며, 여연 이하에 와서 사는 자들은 형세가 더욱 강성하고 말도 공손하지 않으니 쫓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지엄만을 제어하면 사체가 온편치 못하니 죄다 쫓아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6일(壬辰)

고형산 등이 권훈의 일을 의논하다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고흥산(高荊山) · 홍숙(洪淑) · 안윤덕(安潤德) · 유담년(柳聃年) · 한형윤(韓亨允)이 아뢰기를, “이제 함경 남도 병사(咸鏡南道兵使)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도로와 거사 기일을 상의하기 위하여 군관(軍官) 한포(韓捕)를 보내어 평안도 병사에게 다녀오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왕래하여 상의한 일을 거론한 것이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권훈(權勳)을 시켜 가서 도로를 살피게 하였으나 수로(水路) · 육로(陸路)가 모두 험하므로 가서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병사가 권훈의 일을 짐작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처음에 병사가 권훈을 시켜 군사 1백 명을 거느리고 들

어가 살피게 하였는데도 서너 사람만을 보내고 스스로 가서 살피지 않고 겨우 보산(甫山)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왔으면, 군율(軍律)에 따라 논단(論斷)해야 할 터인데 추문(推問)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 고흥산(高荊山)이 전에 종사관(從事官)으로 그곳을 왕래하였는데, 길을 다니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남도 병사 반석평(潘碩桴)의 서장(書狀)에 "권훈이 수로로 들어가자니 얼음이 굳지 않고, 산길로 들어가자니 험악해서 들어가 살피지 못하였다." 하였다.】 모든 일이 늦추어지는 것이 다 권훈 때문이니, 엄중히 논죄하여 군율을 보이소서. 그러면 호령이 엄해질 것입니다. 삼수 군수(三水郡守)는 내려간 군관 중에 직차(職次)가 상당한 자가 많이 있으니, 그 중에서 차출하여 조사(朝辭)를 그만두고 부임하게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무릇 정토(征討)는 조정의 의논과 묘당(廟堂)의 계획이 정해진 뒤에 장수를 보내야 하며, 장수를 보낸 뒤에는 그 사이의 모든 군기(軍機)를 오로지 주장(主將)에게 맡길 따름입니다. 이제 순변사(巡邊使)가 이미 떠났고 군사를 낼 날도 다가왔는데, 전일 상계서 '군관 중에 떠나지 않은 자가 있거든 아직 보내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군사를 일으킬 기일이 다만 30일 남았는데 이처럼 우유부단하면 모든 일이 다 해이할 것입니다. 또 후주(厚州)·보산(甫山) 등은 다 신이 전에 들러 보았는데, 땅이 다 넓은 들이므로 눈이 깊지 않으면 마초(馬草)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이 내려갔을 때에 마침 눈이 서너 자 내려서 풀 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보산은 풀 끝도 눈 위보다 길었습니다. 대저 저들이 길이 험해서 쫓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돌아갈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눈이 깊으면 보산의 넓은 들에 진을 치고 그 정병(精兵)을 뽑아 들여보내고서 진(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시켜 내지(內地)를 왕래하며 마초와 식량을 나르게 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제 이미 장수를 보냈는데 군관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성취되지 않고 사체도 온당치 못할 것입니다. 또 권훈의 벼슬을 오늘 정사(政事)에서 갈아서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군관 우예손(禹禮孫)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 사람을 시켜 길을 곱잡아 내려가서 조정이 쫓는 일을 의정(議定)하였으므로 중지할 수 없다는 뜻을 순변사에게 하유(下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기를 조치하는 일이 해이할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권훈의 죄는 워낙 중하나, 이제 죄를 다스리면 안 될 일이 있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은 나와 같았는데, 대간(臺諫)과 비변사(備邊司)의 뜻이 이와 같으니, 이제 대신을 불러 인견(引見)하여 의논해야 하겠다."하였다.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6일(壬辰)

대신들과 권훈의 일을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고,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좌의정(左議政) 권균(權鈞)·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흥산(高荊山)·우찬성(右贊成) 이행(李荇)·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공조 판서(工曹判書) 안윤덕(安潤德)·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담년(柳聃年)·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극휼(金克福)·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우참찬(右參贊) 이항(李沆)·승지(承旨) 윤인경(尹仁鏡)·가주서(假注書) 김광준(金光準)·기사관(記事官) 이억손(李億孫)·김언(金澆)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권훈(權勳)의 일은, 병사(兵使)가 정하여 보내면 곧 가야 할 것인데 이처럼 영을 어겼으니 죄는 워낙 무거우니, 이미 들어가 살펴서 그 도로의 형세를 죄다 안다면 부득이 길을 이는 자를 데리고 들어가 쫓아내야 하겠으므로 군사를 돌이켜 오기를 기다려 죄를 다스릴 것을 전일 아뢰었습니다마는, 이제 비변사(備邊司)가 아뢴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득이 국법을 보여야 군졸들도 다 마음을 쓸 것이니, 이는 쫓아내는 일만을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병이 있어서 가지 못하였다면 모르겠으나, 편안히 제 고을에 앉아서 병사의 영을 따르지 않았으니, 이러한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호령이 행해지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중률(重律)로 다스려 군졸들에게 보여야 군령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고흥산이 아뢰기를, “병사에게도 죄가 없을 수 없으나, 다 죄주면 큰일을 임해서 옳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정벌은 조정이 이미 의논을 정하여 장수를 보냈으면 모든 일을 다 장수에게 맡길 따름입니다. 또 이제 군병을 초발(抄發)할 즈음에 떠나지 않은 군관을 아직 머물리고 보내지 말라는 명이 계시면, 변방에 있는 사람이 듣고 쫓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늦출 것입니다. 삼수(三水)·갑산(甲山)·고산리(高山里) 등은 다 진을 칠 수 있으며, 변방의 일을 아는 유담년 같은 사람도 보산(浦山) 등은 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2월 20일(丙辰)

대신들이 군사 일으키는 기일을 계하다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우의정(右議政) 권균(權鈞)·좌찬성(左贊成) 이행(李荇)·우찬성(右贊成) 이항(李沆)·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형산(高荊山) ·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 · 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운덕(安潤德)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담년(柳聃年) ·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 등이 의논 아뢰기를, “남도는 가까우므로 쫓을 둔(屯)에 먼저 이르고 서도는 멀므로 쫓을 둔에 미처 이르지 못하면, 아마도 되를 만나서 죄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기에 관한 호령은 가볍게 자주 고칠 수 없으니 전에 보낸 이공장(李公樞) · 한봉(韓鵬)이 가져간 사목(事目)대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1월 20일(乙酉)

대신들이 야인 쫓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 · 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 · 우의정(右議政) 권균(權鈞) · 판중추부사(板中樞府使) 고형산(高荊山) ·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 · 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운덕(安潤德)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담년(柳聃年) ·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이 아뢰기를, “이제 조방장(助防將) 등을 보내면 야인을 쫓는 시기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쫓은 뒤에도 방비할 일이 있으니,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함(李菡) 등이 다쳤으니, 일을 아는 의원(醫員) 한 사람을 가려 보내어 약을 가져가서 구완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그렇다.’하고 이어서 사정전(思政殿)048)으로 나가 남곤 등을 인견하였다. …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전후의 서장(書狀)을 보면, 죽거나 다친 수도 같지 않습니다. 동타시합(童他時哈)이 사는 곳은 만포(滿浦)에서 20여 리 떨어져 있으니, 이동아(李童兒)와 서로 통하고 노략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지방이 미처 나오지 못하였을 때에 군진(軍陣)이 빈 틈을 타서 노략질할 것입니다. 이제 조방장을 보내면, 이지방이 나오기 전에 미처 가지 못하겠으나, 이번엔 쫓고 나서 변방의 우환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 내려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 고형산이 아뢰기를, “왕래하는 저들은 다 강계(江界) 고을을 시켜 연향(宴享)하므로, 강계 고을이 몹시 피폐하여 마침내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쫓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므로 이제는 쫓거니와, 어찌 이런 뜻밖의 사변이 있을 줄 생각하였겠습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2월 26일(辛酉)

대신들과 악포의 일과, 진의 설치, 이성언의 논상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남곤 ·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형산(高荊

山)·좌찬성(左贊成) 이행(李荇)·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윤덕(安潤德)·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담년(柳聃年)·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우참찬(右參贊) 이항(李抗)·호조 참판(戶曹參判) 홍경립(洪景霖)·병조 참판(兵曹參判) 박호(朴壕)·호조 참의(戶曹參議) 유희저(柳希渚) 등이 회의하여 【18일에, 대간이 아된 악포(惡布)의 일과 순변사(巡邊使) 조운손(曹閔孫)이 아된 진(鎭)을 설치하고 성을 쌓는 일을 의득(義得)하게 하였으므로 회의하였다.】 아뢰기를, “악포의 일은 과연 그러합니다. 가난한 백성이 한두 필을 가지고 저자에 가서 현범(見犯)하면 이미 속(贖)하고 나서 또 죄주므로 참으로 가없으니 금하지 말아야 마땅할 듯하나, 국가에서 이미 이 법을 정하였는데도 가멸한 상인은 전혀 받들어 행하지 않고 감히 법을 무릅쓰고 기회를 타서 이익을 노립니다. 대저 국가의 현법(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구차히 한때의 정상에 따라 곧 고치는데, 이 때문에 아래에서 행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법을 고친다면 뒤에 다시는 금할 수 없을 것이니, 전일에 이미 정한 법규에 따라 매우 금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악포를 많이 쌓아둔 자로는 가멸한 상인의 집만 한 것이 없으므로, 먼저 이 무리를 다스려 뿌리를 아주 끊고서야 가난한 백성이 얻는 배(布)도 질로 좋아질 것이니, 신칙(申飭)하여 일체 금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운손(曹閔孫)이 청한 후주(厚州)에 진을 설치하고 어면(魚面)·신방(神方)·구비(仇非)·동구비(童仇非) 등에 보(堡)를 새로 세우자는 일은, 전에도 이런 의논이 있었으나, 근래 군사를 일으켜 야인을 쫓는 일로 군사가 지쳤으므로 해야 할 일이지는 하나 할 수 없는 형세이니, 뒤에 다른 일이 있을 때에 따로 중신(重臣) 한 사람을 보내어 온편 한지를 살피게 해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삼수(三水)의 읍성(邑城)을 물려 쌓는 일과 갑산(甲山) 등의 변방에 채운 사람 중에서 도망한 자를 쇠환(刷還)하는 일은 다 거행해야 하니, 비변사(備邊司)를 시켜 의논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군사(軍資)를 옮기는 일은 해야 하겠습니까마는, 경상도·강원도의 바다에 연한 고을들에 저축이 거의 없고, 또 조선(漕船)이 없는데 이제 군사를 내어 만들자면 그 비용이 매우 크니 우선 남도(南道)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변이 있으면 창고에 남겨둔 곡식도 없어서는 안 되니 적당히 헤아려서 날라 보고 남도의 저축이 부족하거든 강원도·경상도의 곡식을 차차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고형산(高荊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성언(李誠彦)의 계본(啓本)에, 사로잡혔던 우리 나라 사람이 도망해 돌아올 때에 다시 저들에게 사로잡혔는데 이성언이 달려가서 빼앗아 왔다 하였으니, 그 공을 논상(論賞)할 만합니다. 이성언은 또 세 부락의 야인을 쫓을 때에 참획(斬獲)한 공이 많이 있으니,

또한 상격(賞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병사(兵使)의 계본에, 사로잡은 야인 30명은 내지(內地)에 나누어 유배하기를 청하고 야인 원수이라(元愁伊羅)는 허공교(虛空橋)에서 노략질한 일을 이미 승복하였으니 형벌에 처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그 논상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그 계본에 말한 일을 이제 대신들을 시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

○ 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6월 21일(甲寅)

비변사 당상들이 이장길을 논상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다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고흥산·안운덕·한형운·병조 판서 홍숙·참판 박호(朴壕)가 아뢰기를, “평안도 병사(平安道兵使) 조운손의 계본(啓本)에, 우후 이장길(李長吉)이 시변령(時蕃嶺)에 들어온 야인을 잡아 베었다 하고 또 저들이 여연(閔延)에 돌아와 산다 하였는데, 이 일을 전일 전교하여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베는 일은 이장길이 수교(受敎)의 법에 따라 한 것입니다. 대저 군기(軍機)에 관한 일은 법을 쓴 자에게 상이 있어야 하고 법을 쓰지 않은 자에게 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 일은 한결같이 수교에 따라 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例)를 내어 꼬투리를 여는 처음이니 상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변방(邊方)의 공훈(功勳)은 일이 중대하고, 당초 조정에서 이 일을 의정(議定)할 때에 논상(論賞)에 관한 의논이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여쭙니다. 또 와서 살던 저들을 국가에서 이미 군사를 일으켜서 구축(驅逐)하였는데, 그 뒤에 들어와서 밭을 갈고 집을 짓는 것을 버려두고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일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감히 여쭙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저들을 잡아 베는 일은, 유사(有司)가 수교하여 행이(行移)하였고 이장길이 수교에 따라 한 것인데, 문득 논공(論功)하면 공을 바라고 함부로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 염려된다. 적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 인물을 약탈하므로 서로 접전하여 잡아 베었다면 그 공을 논해야 하겠으나, 이장길은 논상할 수 없을 듯하다. 또 저들이 여연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은, 변장(邊將)이 조정의 처지를 기다릴 것 없이 먼저 방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면 좋겠으나, 이제 바야흐로 백성의 힘이 지친 때이므로 군사를 자주 움직여서 저들이 들어오는 대로 쫓을 수 없으니, 내 생각으로는 아직은 늦추고서 그 형세를 보아 천천히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해야겠다. 오는 25일은 대비전(大妃殿)의 탄일(誕日)이므로 재추(宰樞)가 예궐(詣闕)해야 할 것이니, 그때에 정부·비변사·병조가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 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6월 25일(戊午)

대신들이 변방 군사들의 일에 대해 건의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좌참찬 유담년·우참찬 이항·판증추부사 고흥산·병조 판서 홍숙·호조 판서 안윤덕·한성부 판윤 한형윤·병조 참판 박호·참의 반석평이 의논 아뢰기를, “평안도 병사 조운손의 계본을 보건대 구축(驅逐)한 뒤에 야인(野人)이 여연(閭延) 등에 다시 들어와 밭을 갈고 집을 지었다 하니 이것은 저들이 우리 병위(兵威)를 두려워하지 않고 깔보는 마음을 가져서 그럴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을 붙이고 농사를 지어 생업에 안정하도록 놓아두면, 뒷날에는 타일러 내보내기 어려워져서 반드시 병력에 의지하여 군사를 노고하게 하기 까지 하고서야 쫓을 수 있을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안심하고 붙여 살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일 비변사(備邊司)가 본도(本道)의 병사(兵使)의 계본으로 말미암아 공사(公事)로 하여, 병사에게 행이(行移)하기를 ‘저들의 농작물이 성숙하거든 사람을 시켜 짓밟아버리라.’ 하였는데 병사 조운손이 또 치계(馳啓)하기를 ‘바야흐로 매우 덥고 물도 불어서 거행하기 어려우므로 가을 농사가 성숙하거든 거행하기를 청한다.’ 하였으니, 저들이 경작하는 화곡(禾穀)은 병사를 시켜 가을이 되거든 사람을 보내어 짓밟아버리게 하는 것이 옳겠으며, 지금은 병사를 시켜 날썬 군사를 뽑아 자성(慈城) 땅으로 들여보내어 저들이 경작하는 것을 막되 벨 만하면 배고 형세가 어려우면 수풀에 숨었다가 저들이 경작하지 못하도록 괴롭혀서 그 이익을 잃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전일 이미 진장(鎭將)을 시켜 저들에게 타이르기를 ‘우리 경계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도적으로 논한다.’ 하였는데도 지금 이처럼 다시 왔으니, 다시 비변사로 하여금 행이하여 진장을 시켜 저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국가에서 반드시 변장(邊將)을 죄주고 너희들도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니 빨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시 타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저들이 다시 와서 사는 것을 변장은 저들이 집까지 짓고서야 비로소 알았으니 변장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변방(邊方)의 일이 헤이해진 것은 없으나 여러 가지로 조치하여 저들이 와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소서. 또 시번수(時蕃水)에 들어온 저들을 참수(斬首)한 일에 대하여 상께서 논상(論賞)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부하셨는데, 이것은 실로 변방의 공훈을 즐기지 않으시는 뜻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장수라면 상사(賞賜)를 바라지 않겠는데, 사졸은 힘을 다하여 잡았을 것이니, 이번에 공이 있는 사람을 병사를 시켜 등제(等第)하여 치계하게 하여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장속물(贓贖物)로 상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뒤에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이지방(李之芳)이 여러번 치계하기를 ‘저들의 집을 불살라 없애더라도 뒤에 다시 올 것이니 엄히 정제하여 대비하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도 그러할 것이 염려되므로 이미 조정과 함께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니, 저들이 다시 와서 살 것이라는 뜻을 상하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날썬 군사를 뽑아서 들여보내어 수풀에 숨었다가 저격하는 일은 한두 번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밤낮으로 늘 그렇게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저들도 피를 내어서 대비할 것이므로 도리어 욕을 당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변장을 시켜 저들에게 ‘전일 국가에서 너희들을 쫓기만 하고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도리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와서 살면 죄다 멸망당할 것이니 빨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타이르고 그래도 나가지 않거든 한두 해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일으켜서 치는 것이 옳겠다. 군사를 뽑아서 저격하는 방책은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변장에게 하유하는 일은, 변장이 전혀 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변장에게 책망하는 도리가 그러하여야 하니 ‘변방의 일에 헤이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힘을 다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하유하라. 또 논상하는 일은, 적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서 노략하므로 쫓아가서 빼앗거나 접전(接戰)하여 이겼다면 논상해야 하겠으나, 이 일은 조정이 이미 의논을 정하여 한계를 세우게 하고 한계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다 베게 하였으므로 이장길(李長吉) 등이 이 하유(下諭)에 따라서 한 것이니 이것은 그 직장(職掌)이 당연히 할 일이므로 상주지 맡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아랫사람에게 상준다면 그 장수만을 상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이제 상주더라도 장속물을 쓸 것이고 작질(爵秩)로 하는 것이 아니니, 궁전(弓箭)따위 물건을 그 장수에게도 아울러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의논하라.”하였다. …

○ 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일(癸巳)

내지로 이사한 의주 백성을 다시 복귀시키다

… 고형산(高荊山)이 의논 아뢰기를, “전에 내지로 이사한 의주 백성이 거의 7백여 호나 되므로 쇄환(刷還)하라는 영을 이미 내렸으나 반 넘게 아직도 본업에 복귀하지 않았고, 구축(驅逐)때에 도망한 자와 축성(築城) 때에 부역에서 빠진 자도 많으니, 우선 이 사람들을 옮겨서 죽은 사람의 수를 채우면, 반드시 육도의 백성을 뽑지 않아도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중지할 수 없으니, 관찰사를 시켜 죄의 경중에 따라 상세히 살펴서 뽑아 들여보내게 하면, 육도의 백성이 소오하지 않을 듯합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9일(己亥)

대신들이 여제·파방·회례연·입거 등에 대해 아뢰다

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권균(權鈞) 【이상은 삼공(三公)이다.】·고형산(高荊山)·안윤덕(安潤德)·유담년(柳聃年)·한형운(韓亨允) 【이상은 비변사(備邊司)이다.】·이행(李荇)·홍숙(洪淑) 【찬성(贊成)이다.】·이항(李沆) 【참찬(參贊)이다.】·김석철(金錫哲)·심순경(沈順徑)·이지방(李之芳)·이사균(李思鈞) 【이상은 비변사(備邊司)이다.】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여역(癘疫)에 관한 일은, 신들이 조보(朝報)를 보고 매우 놀랐으나, 그치게 할 방도를 생각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문종조(文宗朝)에 제문(祭文)을 친히 지어 치제(致祭)한 뒤에 병이 과연 그쳤으나,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황해도 극성(棘城)에서 홍건적(紅巾賊)이 많이 패망(敗亡)하였는데, 이 때문에 황주(黃州)·봉산(鳳山) 등에서 사람이 많이 병들어 죽었다 하여 문종(文宗)께서 제문을 친히 지어 치제하였습니다. 이번 평안도의 병은 균졸이 패망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역이 치성하여 각 고을에 두루 번진 것이니, 신들은 제사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역의 기(氣)는 겨울이 되면 그쳐야 마땅한데 지금도 아직 치성하니, 참으로 재변입니다. 특별히 제문을 지어 조관(朝官)을 보내어 중앙에서 여제(厲祭)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제사를 베푸는 것은 재변을 물리치는 일에 가까우니, 모든 일이 정리(正理)에 맞은 뒤에야 백성에게 보일 수 있는데, 여제라면 사전(祀典)에 뚜렷하게 실려 있으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방면의 백성이 이토록 많이 죽으므로 조정(朝廷)에서 이미 수성(修省)하기는 하나, 회례연(會禮宴)도 멈추어 수성하고 공구(恐懼)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과거에 관한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조금이라도 외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파방(罷榜)하는 것이 규례이나, 황해도의 감시(監試)는 같은 날에 시취(試取)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도의 유생(儒生)이 미처 다시 가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전일 하문하셨을 때에 신들이 다시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서얼이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문을 들어갈 때에 잘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시장(試場) 안에서 외람한 일이 아닙니다. 파방은 중대한 일이니, 지금 다시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입거(入居)할 사람의 기한을 늦추는 일은 과연 평안도에서 사람이 바야흐로 죽는데 지금 다른 도의 백성을 재촉하여 입거시키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하나, 국령(國令)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시 일러서 기한을 늦춘다면 옳지 않을 듯합니다. 평안도의 여역이 그치지 않을 형세라면 추곡(秋穀)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서 옮겨 들여보내고, 조금 덜해진다면 봄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

러서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제 들건대, 전라도에서 입거할 사람을 바야흐로 뽑아 보낸다 하는데, 다 뽑기를 기다리자면 봄이 되어야 할 것이니, 그때에 가서 입거시키도록 해조(該曹)를 시켜 짐작해서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산(善山)에서 여악(女樂)을 설립한 일은 신들이 아직 상세히 듣지 못하였으나, 해조(該曹)의 공사(公事)가 없는데 마음대로 설립하였다면,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평안도 감사의 계본(啓本)에 ‘의주(義州)에서 성을 쌓을 때에 도망한 군사를 받아들여 붙여 살게 한 자를 받은 입거시켰으나 받은 아직 다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죄다 뽑아 들여보낸다면 소란할 듯하니,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자는 곡식을 바치고 죄를 속(贖)하게 하여 군자(軍資)에 보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같은 죄로 받은 이미 입거하였으면 속을 거두어 군자에 보태는 것이 국용(國用)에 보탬이 되더라도 사체에 있어서 온편치 못할 듯하니, 한결같이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함경 남도 병사 최한홍(崔漢洪)의 계본에 ‘적생역(積生驛)에 행영(行營)을 두어 방수(防戍)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변방의 일을 아는 자는 다 ‘이곳은 지세(地勢)가 마땅하다.’ 하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큰 진(鎭)을 둔다면 영노비(營奴婢)가 나가 있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별해보(別害堡) 땅에 고을을 두는 일은, 신들도 함경도에는 사람이 적으므로 아전(衙前)·관노비(官奴婢)가 나가 있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고을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하나, 여연(閔延)·무창(茂昌)에서 이곳을 거쳐 함흥(咸興)에 이르는 길이 매우 가까운데, 행여 여연 등에 적변(賊變)이 있으면 별해보 땅이 매우 외로우니, 혹 토병(土兵)으로 지키거나 입거시켜서 성을 더 쌓아 지키도록 해사(該司)를 시켜 공사(公事)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 중종실록 52권, 중종 20년 1월 14일(癸酉)

대신들이 절도죄에 단근 경면하는 법에 대해 아뢰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흥산(高荊山)·예조 판서(禮曹判書) 장순손(張順孫)·우참성(右贊成) 홍숙(洪淑)·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운덕(安潤德)·병조 판서(兵曹判書) 유담년(柳聃年)·우참찬(右參贊) 김극필(金克愾)·형조 판서(刑曹判書) 조계상(曹繼商)·공조 판서(工曹判書) 임유겸(任由謙)·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운(韓亨允)이 의논 아뢰기를, “강도의 죄는 그 율문(律文)이 참형(斬刑)에 처하게 되어 있어도 범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단근 경면(斷筋黥面)하는 법을 배풀더라도 어찌 절도가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을 세우지 않더

라도 괜찮겠습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12일(辛丑)

병조가 경상도 수영 이전 및 함경도 진보 연혁에 대해 논의케 할 것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경상도 수영(水營)을 동래(東萊) 해운포(海雲浦)로 옮기는 일을 정덕(正德) 16년에 순찰사(巡察使) 고흥산(高荊山)이 살펴보고 치계(馳啓)하므로, 그때에 본조(本曹)가 미조항(彌助項)의 성을 다 쌓은 다음에 옮겨 설치하자고 청했었는데, 이번 에 이미 다 쌓았으므로 옮겨 설치하는 일을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니,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기 바랍니다. 또 함경도의 진보(鎭堡) 연혁(沿革) 일을 비변사(備邊司)와 함께 의논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수영을 옮기는 일은 정부에 보고하고, 진보의 연혁 일은 비변사와 함께 의논함이 가하다.”하였다.

○ 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27일(丙辰)

행행할 때의 여러 대장들 천망에 대하여 묻다

행행(行幸)할 때의 제장(諸將) 천망(薦望)을 내리며 일렀다. “《대전(大典)》에 ‘무릇 행행할 때는 유도 대장(留都大將) 세 사람이 세 곳으로 나누어 둔(屯)을 치되 날마다 진(陣)을 바꾼다.’ 했는데, 이번 행행은 단지 이틀 동안 뿐이니 진을 바꿀 것이 없다. 다만 유도 대장 천망을 병조가 한 사람만 의망(擬望)했다. 그러나 부득이 두 사람을 차임(差任)해야 하니 【고형산(高荊山)과 홍숙(洪淑)이다.】 두 장수로 하여금 대궐 안에 나누어 둔을 치되, 한 장수는 건춘문(建春門)에서 근정문(勤政門)까지 진을 치도록 해야 한다. 대장을 이미 두 사람 차임하기로 하였으니 종사관(從事官)도 다시 네 사람을 의망해야 하고, 궁성(宮城)의 각 문마다 출신(出身)한 무방(武班)의 조관(朝官) 두 사람을 수문장(守門將)으로 삼아야 한다. 또 무릇 입직(入直)하는 군사들을 병조·도총부(都摠府)와 유도 대장들이 일체로 단속하여, 길을 비워놓지 말도록 해야 한다.”

○ 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6일(乙丑)

봉상시 노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임을 논하다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 정광필(鄭光弼)과 고흥산(高荊山)이 와서 아뢰기를, “봉상시는 곧 제향(祭享)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노비(奴婢)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보게 되면,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으레 기필코 추환(推還)했습니다. 신 등이 새로 세운 법을 자세히 살필 수 없어, 해조(該曹)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아뢰며 감히 대죄(待罪)합니다.”하였
다. …

○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4월 22일(辛亥)

여러 신하들이 야인 왕산적하의 처결 문제를 의논드리다

남곤(南袞) · 이유청(李惟淸) · 권균(權鈞) · 홍숙(洪淑) · 고흥산(高荊山) · 윤은보(尹殷輔) · 안운덕(安潤德) · 유담년(柳聃年) · 김극휼(金克愾) · 한형운(韓亨允) · 이항(李沆) · 황맹헌(黃孟獻) · 김석철(金錫哲) · 이세응(李世應) · 조옥곤(趙玉崐) · 성운(成雲) · 이위(李偉) · 반석평(潘碩枰)이 의논드리기를, “왕산적하는 본디 이산(梨山)에서 오래 살던 도적으로서, 기미년 무렵에 서쪽 국경의 각 진보(鎭堡)에서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여 해독이 점점 심했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변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중난하게 여겨 꼭 참고 토벌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쇠환함으로 말미암아 본심을 고쳐 의리를 사모하도록 용납해주며, 사관(舍館)에서의 접대 등 모든 일은 특별히 여러 추장(酋長)들보다도 후하게 하여, 계급을 뛰어 2품의 직을 제수하고 하사(下賜)도 후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각성하고 감격해야 할 것인데, 본토(本土)에 돌아가게 되자 몰래 화심(禍心)을 품고 서쪽 오랑캐들이 쫓겨나 원망하게 되는 틈을 타, 여러 번 들어주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변장(邊將)들을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천(儉天) 등지의 귀순(歸順)한 오랑캐들을 속여서 유인하는 한편 조정에서 살도록 한 것처럼 명령을 위조하여, 여러 오랑캐 집단을 선동하여 우익(羽翼)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운정평(雲井坪)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는 여러 오랑캐들을 불러모았다가 변방을 침범하여 분을 풀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에 그의 죄를 성토(聲討)하여 현록(顯戮)하지 않는다면, 한갓 운정평에 와서 집결하고 있는 오랑캐들이 본토(本土)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왕산적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오랑캐들로서 왕산적하의 생사(生死)를 보아 거취(去就)를 결정하려는 자들도 반드시 굳게 뭉치고 해산(解散)하지 않아, 혹 다른 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계획은 끝까지 이 오랑캐를 신문하여 그의 흉계를 알아낸 다음, 전후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여러 오랑캐들이 보는 곳에서 일일이 그의 죄상을 열거하며 통쾌하게 그의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걸어 위엄을 보이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오랑캐들을 불러 타이르기를 ‘간사한 자의 술책에 현혹되어 금단하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으니, 마땅히 너희

들도 모두 죄를 다스려야 하나, 다만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기에 단지 간사한 자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는 것이니 전에 살던 데로 돌아가라.’ 하고 이어 후히 음식을 먹여 들여보내되, 만일 그 중에 식량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금·장·쌀·콩을 헤아려서 주어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사기(事機)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4일(辛酉)

김희수가 성 쌓았던 과정을 아뢰다

… 김희수가 아뢰기를, “지난날에 조정이 의주(義州)를 큰 곳으로 여겨 넓게 성을 쌓아 중요한 관방(關防)으로 만들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큰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 쌓는 역사가 마침 두 중국 사신이 지나는 때에 있었으므로 처음 쌓을 적의 것은 마치 산자(果子)를 포개놓은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금방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임받고 나간 사람 【고형산(高荊山)이다.】 이 힘써 나라 일을 했고 조정에서도 기필코 쌓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도(本道) 감사가 곧 무너지게 된 뜻을 계문(啓聞)하지 않고, 바로 수축(修築)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수축도 몹시 추울 적에 역사를 일으켰고 그 지방에는 돌이 없기 때문에 압록강 얼음 위로 호지(胡地)의 돌을 실어다가 특별히 쌓았었습니다. … ”하였다. …

○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22일(己卯)

조세 감면에 대해 논의하다

…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 … 또 근년에는 백관들의 녹봉도 부족하므로, 고형산(高荊山)이 호조 판서 때 공물(貢物)을 쌀과 바꾸어 사용했었으니, 만일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경비가 부족하여 나라 모양이 되지 못할 듯싶습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3월 27일(庚戌)

비변사 당사 고형산·안윤덕 등이 김선손을 다시 추문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 당사(備邊司堂上) 고형산(高荊山)·안윤덕(安潤德)·한형윤(韓亨允)·허굉(許礪)과 병조 판서 김극필(金克幅)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김선손(金善孫)이 오랑캐 요송고(要送古)를 살해한 일을 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신들의 생각에 평안

도 관찰사의 계본(啓本)과 심사손(沈思遜)의 계문(啓聞)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다만 김선손이 오랑캐를 벤 것이 오래 전입니다. 가사 요송고가 비록 옛보다가 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궁하여 따지기 어려울 듯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역시 피인(彼人)들의 말대로 요송고가 도적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 김선손을 추문(推問)하여 김선손이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 피인들이 이를 빙자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김선손이 실정을 자복하지 않고 형장 아래 죽게 된다면 강변(江邊)을 지키는 사졸(士卒)들이 반드시 모두 의욕을 잃고 기가 죽어 적진으로 달려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일 요송고가 죄없이 죽었다 하여 요송고의 처자에게 물품을 보내 원망을 풀어주기로 한다면, 그들의 한없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될까 싶습니다. 또 이런 일의 발달을 열어 놓는다면, 다음에는 비록 참으로 옛보다 잡힌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장차 이를 빙자하여 그들의 술책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전번에 신들이 공사(公事)를 만들었는데 계하(啓下)했고, 또한 이번처럼 공을 세워 상을 바라는 폐단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변장(邊將)들로 하여금 금단하여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벌써 이첩(移牒)했습니다. 그런데 만포 첨사(滿浦僉使) 심사손이 이처럼 여러 차례 신보(申報)한 것은, 반드시 야인(野人)들이 김새를 알고 속이는 말을 곧이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송고의 일은 이미 오래된 것인데 이제야 비로소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니, 신들은 김선손을 다시 추문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전일에 활과 화살을 상으로 줄 때도 신들이 삼공(三公)과 함께 의논했었고 감히 함부로 아뢰지 않았었으니, 삼공에게 수의(收議)하기 바랍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일(己酉)

고형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고형산(高荊山)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임명하였다. …

○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7일(甲戌)

비용을 줄이려고 시위가 허술해지는 폐단을 아뢰다

… 영사(領事) 심정(沈貞)은 아뢰기를, “… 근래 흉년 때문에 고형산(高荊山)이 판서(判書)로 있을 적에 공궤(供饋)의 비용을 줄이려고 시위가 허술해지는 폐단은 우려하지 않은 채 5번을 7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7일(辛丑)

심정이 고흥산은 병조 판서에 적합하고 호조 판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 신은 체임되어 와서 경관직(京官職)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담년(柳暎年)과 고흥산(高荊山)은 다 선진(先進)이었는데, 시의(時議)가 담년은 병조 판서에 적합하지 않고 형산은 호조 판서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하였다.

○ 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8일(庚戌)

허굉이 삼자도에 대해 아뢰다

… 허굉(許碻)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로 있을 때에 낭미(狼尾) 진상에 대한 폐단이 작지 않음을 보고, 지난해에 기한을 정해 견감(鑄減)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도(平安道)의 낭미 또한 국용(國用)에는 긴급하지 않은 물품이니, 역시 기한을 정하여 견감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도(道)의 방물(方物)인 삼도자(三刀子)는 사슴뿔로 장식하므로 그 폐단 또한 작지 않습니다. 함경도의 삼도자도 처음에는 사슴뿔로 장식했었으나, 고흥산(高荊山)이 감사로 있을 때 계청하여 낫쇠(豆鋤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안도의 삼도자는 낫쇠로 장식하도록 하여 민폐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일렀다. “이는 자질구레한 물품이다. 그러나 민간에 폐가 된다면 편의대로 하여 민폐를 없애야 한다.”

○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7일(丙子)

모화관에서 순변사 허굉의 전송하는 잔치를 하게 하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를 전송하는 잔치는 국가의 일정한 규정이 있지만, 순변사(巡邊使)에게 내리는 잔치는 곧 한때의 특별한 은전(恩典)입니다. 전일에 고흥산(高荊山)이 순변사로 내려갈 적에도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하는 잔치를 차리려다가, 바야흐로 무과(武科) 시험을 보이기 때문에 홍제원(弘濟院)에서 차렸었습니다. 이번에 허굉(許碻)이 떠날 적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전교하였다. “모화관에서 잔치를 내려야 한다.”

○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8일(丙寅)

정광필이 정로위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정광필이 아뢰기를, “ … 또 정로위의 설립은 신과 유순정(柳順汀)이 한 것입니다. 서얼(庶孽)과 평민 중에서 재주가 있는 자가 감사가 되지 못하고 쓸데없이 집에 있으므로 신들이 인재를 버려두지 않게 하려고 따로 정로위를 둔 것인데 그 뒤에 고흥산(高荊山)이 판서(判書)였을 때에 서얼인 사람은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감사가 되어야 할 자도 다 정로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정로위의 무리도 많으나 다 봉족이 없는데 군사를 쓸 일이 있으면 정로위를 기용하여 보내게 될 것이거니와 그렇게 되면 정로위가 된 자가 반드시 ‘봉족이 없다.’ 할 것이니 그 봉족은 어떻게 채워 줄 수 있겠습니까. 서얼이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한 일에 대하여 신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설립한 뜻을 모르고서 서얼은 다 될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얼이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한 일은 그 법을 세운 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뒤에 과거불 사람은 반드시 정로위에 소속된 뒤에야 과거보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한 것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戊午)

고형산의 죽음을 슬퍼하다

전교하였다. “고형산(高荊山)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이다.】이 죽었다 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別例)로 치부(致賻)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사신은 논한다. 고형산은 본관이 횡성(橫城)이며 대대로 그 고을에 살았는데,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성종조(成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례(常例)로 외방의 고을에 제수(除授)되었는데 크게 성적(聲績)이 있었으며, 만년에는 포부를 펴서 설시(設施)한 것이 많았다. 또 변방(邊方)의 일에 익숙하여 나라의 중신(重臣)이 되었으며, 성품이 근검(勤儉)하며 질박(質朴)하고 겉치레가 없으며 성심으로 봉공(奉公)하였다.

○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9월 20일(乙丑)

군령에 대해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군령(軍令)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으니, 종친(宗親)이 무예(武藝)를 시험할 때에 참석했던 정승 【장순손임.】과 병조 당상을 명초(命招)하라.”하고, 이어 전교하

기를, “… 첩고(疊鼓)는 급히 장사(將士)들을 모으는 것인데, 전에 고흥산(高荊山)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에는 종일 첩고를 쳤으나 장사들이 당황하여 몸둘바를 잃고 모여 설 장소를 몰랐으니, 이것은 비록 《대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평시에 연습하지 않은 소치이다. …”하였다. …

○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6월 12일(癸未)

장순손이 조운의 일을 논의하다

영의정 장순손이 의논드리기를, “이귀령(李龜齡)이 아뢰 조운(漕運)의 일은, 안행도(安行渡)를 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신도 전에 이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흥산(高荊山)도 순찰사(巡察使)로서 또한 지형을 살펴보고 개펄을 봤었으나,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4월 29일(癸丑)

무신들에게 진법을 강론하게 하다

김근사에게 전교하기를, “평상시 군대를 교열(敎閱)할 때는 오행 진법(五行陣法)만 사용하였다. 이따라서 무사들이 오행 진법 외에는 모두를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으니 장사진(長蛇陣)·학익진(鶴翼陣)·어린진(魚鱗陣)·조운진(鳥雲陣)·언월진(偃月陣)·각월진(却月陣) 등과 같은 진들은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경과 조운손(曹閔孫)·윤임(尹任) 등이 함께 탐전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활을 쏘는 무신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진법을 강론하게 하라. 저번에 고흥산(高荊山)이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도 일찍이 진법을 강론하였으니, 이것은 예부터 있던 예이다.”하였다. …

○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6월 16일(己亥)

대신들이 조운과 관련하여 서계하다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찬성 유보(柳溥), 우찬성 심언경(沈彦慶), 좌참찬 조운손(曹閔孫), 호조 판서 소세양(蘇世讓), 참판 반석평(潘碩桴)이 서계(書啓)하였다. “… 그리고 안행량 수로로 조운(漕運)하기 어렵다는 것은 예부터 큰 걱정이었으므로, 새로 수로를 파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기하는 계획은 벌써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고흥산(高荊山)이 맨 먼저 그 계획을

올려 그 기지(基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부 3천 명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완공이 되었으나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부터 일을 세우고 계획을 짰다가도 마침내 유의(遊議)에 동요되고 참소와 비방에 저지되어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 가서 갑자기 폐기되는 것은 모두 이리해서입니다. … ”하였다. …

○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9월 27일(己卯)

삼공이 안행량 공사의 추진에 대해 의논드리다

좌상과 우상이 아뢰기를, “안행량(安行梁)의 일은, 전일 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합좌(合坐)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영상은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미 함께 의논했습니다. 굴포(掘浦)는 전조(前朝) 때 왕강(王康)이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의항(蟻項)은 아조(我朝)의 고흥산(高荊山)이 전에 형세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영상이 전에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일찍이 이곳을 조사하였으나 신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이현(李兪)의 말을 들으니, 의항은 공역(功役)도 적게 들고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는 세 곳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로가 험한 곳이란 군데 있고 길이가 3백 리나 빠져 있다고 하니, 그 득실이 이와 같습니다. 굴포를 판다면 수로가 가까와져서 전라도의 첫머리와 연하여지므로 조운(漕運)이 이곳을 경유하여 곧바로 올 수 있고, 경상도의 조운도 이 곳을 경유하여 옮겨 올 수 있으니, 이곳을 굴착한다면 참으로 만세토록 무궁한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왕강이 파지 못하였다고 하나 전조의 해이한 기강에다가 연약한 군졸로 어떻게 이러한 큰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아조의 재상들이 순심(巡審)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하는 말로는, 그때 각각 사정(私情)에 끌려서 공도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5백여 리나 되는 땅이라도 굴착하는데, 이 굴포는 육지와 습지(濕地)가 함께 이어져 물을 건너는 곳은 겨우 20리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마음이 깊지 못하여 큰일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1년간의 조선(漕船)·상선의 폐몰과 사람이 빠져 죽은 일 등을 계산해 보면 그 경비가 거만(巨萬)에 이르러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노는 인력을 부역(夫役)하게 한다면, 설사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나라에 손해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큰일을 이현의 말만 듣고 결단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도 경솔한 듯하고 일도 무게가 없으니, 부득이 조정의 중신을 보내어 그 형세를 살펴본 뒤에 조처하게 하소서. 전에 고흥산이 호조 판서로서 이 일을 살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호조가 전담해야 합니다. 호조 판서 소세양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한 다음 의항이나 굴포 중에 공역(功役)의 다소와 득실을 모두 상세히 심리(審理)하여 굴착할 만한 곳은 정하여야 합니다. 충청 감사 윤안인(尹安仁)은 처음에 직접 보았고 지금도 아직 본도에 유임하고 있는 중이니, 이제 세양을 보내어 안인과 함께 살펴보게 하여야 합니다. 출기 전에 속히 보내어 그곳을 살피고 온 뒤에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겠 습니다.”하니, 전교하였다. “안행량의 일은 아뢴 바가 마땅하다. 소세양이 살펴보고 올 라온 다음 의논하여 정하겠다.”

○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11월 27일(己卯)

병조가 수군 회복 계책에 대한 의논을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었다. “수군(水軍)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계책에 대해 전일 조운손(曹閔孫)이 2번(番)으로 나누어 군역(軍役)을 세워야 한다고 아뢰었는데, 고흥산(高荊山)이 순찰할 때에 2번을 4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 고역이 2번으로 하던 때보다 더 심각하니, 보인(保人)을 더 주거나 아니면 수군의 자체 중에서 다른 역(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본역(本役)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고 합니다. 이 2번과 4번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팔도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 등처에 물으니, 연혁(沿革)에 대한 논의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독단할 수 없으니 의정부와 의논하소서.”

○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7월 11일(丙子)

전운사를 추천할 것을 아뢰다

삼공이 아뢰기를, “... 지난 임신년에 백성들에게 납곡을 권유할 때에 전운사(輔運使) 【고형산(高荊山).】를 차출하여 경상도의 곡식을 함경도로 조운(漕運)하였는데 그 방책에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로(一路)에 소요된 폐가 없었고, 군량도 결핍되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명망과 직위가 높은 사람을 차출하여 전운사로 삼고 임신년에 운반 하던 것처럼 군량을 수송하면 군량이 넉넉하게 될 것이니, 민간에게 납곡을 권유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삼공이 병조 당상·호조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임신년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을 전운사로 임명하여 경상도에서 조운하게 하였으므로 군량이 넉넉하였었으니, 지금도 근검하고 일을 주관할 만한 사람을 차출하여 전운사를 삼으면 군량이 고갈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7월 13일(戊寅)

고형산이 전운사에 제수하였던 일을 아뢰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육진(六鎭)은 서울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감사(監司)의 이목도 미치지 못하여 탐오스런 관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많이 있어도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기탄없이 작폐하는 일이 매우 극심합니다. … 또 지난 임신년 군량을 조운할 때, 고형산(高荊山)이 강원도 감사였는데 조운의 임무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감사를 특별히 체직시켜 전운사에 제수하였습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1일(癸卯)

변방의 장수에 채동을 임명해 줄 것을 아뢰다

… 특진관 이기(李芑)가 아뢰기를, “ … 전에 고형산(高荊山)이 시위(侍衛)가 허술하다 하여 내금위(內禁衛)외에 별도로 정로위(定虜衛)를 세웠기 때문에 군적이 많아지고 보인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병사(兵使)였을 때 번을 서지 않고 도망치는 자가 있어도 괴롭히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돌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변방의 장수는 반드시 채동(祭彤)과 같은 자를 가려서 임명해야 군졸의 일이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 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 1월 20일(辛丑)

변방의 소임을 임형수에게 맡길 것을 아뢰다

…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 … 지난날에 유순정(柳順汀)과 고형산(高荊山)은 모두 문관이었지만 매양 두 변방의 소임을 맡기었고 지금은 또한 임형수(林亨秀)를 회령 판관(會寧判官)으로 삼은 것은, 단지 불법을 범한 변장(邊將)들을 조심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오래 변방 요새(要塞)에 있으면 변방 일을 잘 알게 되어 뒷날 중한 소임을 제수(除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였다.

○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28일(甲子)

순변사·축성사에게 연회를 베풀도록 전교하다

… 전교하였다. “나도 조종 때의 옛일을 보았는데, 혹 서정(西征)하거나 북정(北征)한 때에는 조종께서 친히 잔을 잡아 권하고 보내신 일은 있으나, 근년에는 고형산(高荊

山)·심언광(沈彦光)이 또한 순변사(巡邊使)·경변사(警邊使)로 평안도에 다녀왔어도 맞이하여 위로하는 예(禮)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전에 없던 일을 굳이 거행한다면 과연 물정에 맞을는지 모르겠다. 다만 아뢴 뜻으로 생각하면, 이제처럼 남방에 성식(聲息)이 없지 않을 때에 산 넘고 물 건너 다녀왔으므로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마땅하겠으니, 순변사·축성사(築城使)에 특별히 잔치를 베풀는 것을 승전(承傳)을 받들도록 하라.”

○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11월 25일(戊寅)

주강에서 윤사익이 흉년에 수입을 헤아려 지출할 것을 아뢰다

상이 주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윤사익(尹思翼)이 아뢰었다. “... 신이 전일 호조 정랑으로 있을 때 고흥산(高荊山)은 판서로 있었습니다. 그때 가뭄이 들자 고흥산은 ‘너무 가뭄어 곡식이 없으니 어떻게 백성을 구제한다 말인가?’ 하며 걱정하기에, 소신이 ‘각 고을은 양주(楊州)·여주(驪州)를 본받아야 한다. 4만 석(石)의 곡식이 있다.’ 하니, 고흥산은 ‘어찌 1~2만 석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는가.’ 하였습니다....”하였다.

○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4월 14일(壬子)

영천 군수 이면공이 부세를 맡은 신하에게 실제대로 장부에 기록하기를 아뢰다

영천 군수(榮川郡守) 이면공(李勉兢)이 상소하여 병폐를 진달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 신이 듣건대 중종조(中宗朝)에 고흥산(高荊山)이 영동(嶺東) 감사로 나가서 토지가 척박하고 전답이 황폐되었다고 실상을 갖추어 아뢰어 기경(起耕)에 따라 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읍의 복사(覆沙) 피해는 자못 영동(嶺東)과 비할 바가 아니니, 삼가 원하건대 특별히 부세를 맡은 신하에게 명하여 본도(本道)에 행회(行會)하여 실제대로 장부에 기록하게 하소서. ... ” 하였다. ...

○ 국조보감 제19권, 중종조 2, 12년(정축)

6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소복(素服)과 오대(烏帶) 차림으로 인정전 섬뜰에 나아가 구식(救食)하였다. 병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천막을 쳐서 햇빛을 가리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해가 다시 등글어져서야 안으로 돌아왔다. 이때 상이 뜻을 확고히 가지고 다스림을 구하여 고례(古禮)를 힘써 행하였다. 그래서 온종일 구식하며

단정히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신하들이 모두 감복하였는데, 굳게 정해진 그 지기(志氣)는 학문에서 터득한 것이 많았다.

○ 국조보감 제20권, 중종조 3, 18년(계미)

12월.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李之芳) 등에게 명하여 여연(閔延)의 야인(野人)을 내쫓게 하였다. 이에 앞서 야인 김아(金阿), 송가(宋可) 등이 부령(富寧)으로부터 여연, 무창(茂昌)으로 옮겨와 살면서 땅을 개간하고 성책(城柵)을 설치하여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형세가 되었다. 변신(邊臣)이 군사를 내어 내쫓기를 청하자 상이 조정 신하에게 논의할 것을 명하였는데, 비변사 당상 고흥산(高荊山) 등이 일찌감치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이장곤 전(李長坤傳)

… 공이 남곤과 함께 홍경주를 따라 들어가니, 겸 공조판서 김전·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이 이미 입궐하였고 도총관(都摠管) 심정·참지 성운(成雲)은 각기 입직했던 곳에서 왔다. 합문(閣) 바깥 남소(南所)에 촛불을 벌여 놓고 앉았는데, 위졸(衛卒)들이 전(殿) 트락에 에워서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임금에게 출어(出御)하기를 청하고, 또 내고(內庫)에 있는 병기를 전 트락에 벌여 놓도록 하였다. 홍경주가 남곤과 함께 차자(筵子)를 받들고 입대(入對)하였는데, 그 글에, “정광필(鄭光弼)·홍경주·김전·남곤·이장곤(李長坤)·고형산·홍숙(洪淑)·심정·손주(孫澍)·방유녕(方有寧)·윤희인(尹希仁)·김근사(金謹思)·성운들은 앞드려 보건대, 조광조(趙光祖) 등이 서로 당패를 만들어서, 자기 패에 아부하는 자는 인진(引進)하고 자기 패와 다른 자는 배척하여, 명성과 위세를 서로 돕고 권세 있는 요직에 응거하여 임금을 속이고 사의(私意)를 행하여 꺼림이 없습니다. 후진을 유인하여 속이고 과격한 것이 습속이 되어서 젊은 사람이 어른을 업신여기고 천한 사람이 귀한 이를 업신여겨서, 나라 형세가 거꾸로 되고 조정 정사가 나날이 글러지게 하였습니다. 조정에 있는 자가 속으로는 분한을 품었으나,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 행동하며 발을 모아 쉽니다. 사제가 이에 이르렀으니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유사(有司)에게 하부(下付)하여, 그들의 죄를 밝혀 바루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

○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김정 전(金淨傳)

… 11월 15일에 신무문(神武門)을 열기를 청한 다음 김전(金銓)·고형산(高荊山)을 꺾어서 오게 하고 이장곤(李長坤)을 협박해 불렀다. …

○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조정암 전(趙靜庵傳)

… 일찍이 대사헌으로서 아문(衙門)에 출사(出仕)하는 길에서 찬성(贊成) 고형산(高荊山)을 만났는데, 인사하지 아니하고 지나갔으므로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갈았다. …

○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윤자임 전(尹自任傳)

… 정원에 돌아와서 좌승지 및 주서·한림과 함께 합문(閣門 대궐 속문) 밖에 나아가니 김전(金銓)·이장곤(李長坤)·고형산(高荊山)·심정(沈貞)·성운(成雲)이 촛불을 켜고 모여 앉아 있었다. …

○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구화사적(構禍事蹟)

… 이에 고형산(高荊山)·홍숙(洪淑)·손주(孫澍)·방유녕(方有寧)·윤희인(尹希仁)·김근사(金謹思)·성운(成雲) 등이 비밀리 약속한 기일에 모이기로 하였다. … 15일 초저녁에 홍경주·김전(金銓)·남곤·이장곤·고형산이 신무문 밖에 모이었고, 이미 대궐에 들어간 도총관(都摠官) 심정과 참지(參知) 성운이 직무 보는 곳으로부터 와서 합치어 함께 합문(閣門) 밖에 앉아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기를, “신 광필·경주·곤(袞)·장곤·형산·홍숙(洪淑)·정(貞)·주(澍)·유녕(有寧)·희인(希仁)·근사(謹思)·운(雲) 등은 엎드려 살피건대 조광조가 서로 봉당을 만들어 자기에게 붙는 사람은 진급 시키고 자기와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하여 명성과 위세가 서로 붙쫓고, 권세와 요직을 모조리 차지하여 임금을 속이고 개인적인 행동만 하여 돌아보고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후진들을 유인하여 공정하지 못하고 과격한 것으로 습성을 만들어 젊은이로서 어른을 능멸하며 천한 자로서 귀한 사람을 무시하게 하여 나라 형세가 전도되고 조정 정사가 날마다 클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는 분함과 탄식함을 품었으나 그 세력의 강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결눈질이나 하고 다니며 두려워 발을 모으고 설 뿐입니다. 자세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청컨대 유사(攸司)에게 회부시켜 그 죄를 명백하게 밝혀 주소서.” 하였다.

...

또 지금의 의논하는 자가 위협당하여 복종한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뜻에 따라서 북문(北門)으로 들어간 재상들은 오히려 괴수와 위협당하여 복종한 자를 분간하려 하니, 슬프다, 붙잡은 무리들이 실은 더 심한 짓을 하였으니, 당초에 고변할 때에 비록 그 간사한 피가 이미 궁중에서 용납되었다 하더라도 김전·고형산·홍숙·손주가 없었다면 공사를 청탁하여 간악한 피를 이루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 가리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원(李潁)·세정(世貞)이 없었다면 선비의 공론이라고 말하여 죄를 더할 수 없었을 것이요, 또 이빈·채침·조침이 아니었다면 폐거리를 만들어 세력을 차지하고 사대부들을 해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화매(禍媒), 남곤전(南袞傳)

... 11월 15일에, 판의금 겸 병조판서 이장곤(李長坤)·홍경주(洪景舟)·김전(金銓)·고형산(高荊山)을 피어 초저녁에 북문으로 들어가서 정원(政院)을 속이고 비밀리 아뢰어 당화를 구성하였으니, 모두 남곤이 주장한 것이었다. ...

○ 기재잡기 2(寄齋雜記二), 역대 조정의 옛 이야기 2[歷朝舊聞二], 중중

... 정암 선생이 대사헌으로서 아문에 나가는데, 고형산(高荊山)이 호조 판서로서 앞에 서서 공이 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느릿느릿 하였다. 이것은 대개 그의 거드림을 보인 것이다. 선생이, 그를 모시고 가던 아전을 잡아 가두었다가 하루만에 놓아 주므로 사람들이 그 온당한지 않은지를 묻자, 선생이, “그의 행동은 사대부가 길을 양보하는 미풍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니 참으로 잘못이다. 백부(柏府 사헌부)가 비록 풍속을 단속하는 것이나 그도 대신이니, 내가 감히 단속할 사람이 아니다. 그 아전을 가둔 것이 지나친 것 같기에 곧 석방한 것이다.” 하였는데, 고형산이 그 말을 듣고 지극히 옳게 여겼다. ...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후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 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삐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나는 생각건대 문경공의 행동은 호방하고 시원스러운 데서 출발한 것으로 꽃을 보고 흥이 발동한 것이니, 그 기상이 진실로 치켜세울 만하나, 고흥산은 주량을 채우려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어찌 술이나 마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공유물과 사유물은 구분이 다른 것이니, 문경공은 호걸스럽고 고공은 거칠다 하겠다.

○ 대산집 제47권, 비(碑), 우찬성 금헌 이공 묘비명 병서(右贊成琴軒李公墓碑銘 并序)

… 공은 홍경주, 김전(金詮), 고흥산(高荊山)을 따라 궐문 밖에 이르렀다. …

○ 대산집 제49권, 행장(行狀), 우찬성 금헌 이 선생 행장(右贊成琴軒李先生行狀)

… 11월에 공이 병조 판서로서 판의금부사를 겸직하였다. 남곤(南袞)이 공이 없는 틈을 엿보아 세 번이나 명함을 두고 갔는데, 15일 저녁에 남곤이 급히 편지를 보내, 나라에 큰일이 발생했으니 말을 타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공이 황급히 말을 달려 그의 집에 이르자 남곤이 말하기를, “판서 홍경주(洪景舟)가 밀지(密旨)를 받들고 신무문(神武門) 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여, 공은 홍경주, 김전(金詮), 고흥산(高荊山)을 따라 입궐하였다. …

○ 동각 잡기 상(東閣雜記上), 본조선원보록(本朝審源寶錄)

기묘년 11월 15일 밤 2경(二更)에 비밀 전교를 내려, 신무문(神武門)을 열고 여러 재상(宰相)들을 불러 들이면서 승정원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숙직하던 승지 윤자임(尹自

任)과 공서린(孔瑞麟), 주서 안정(安珽), 검열(檢閱) 이구(李構) 등이 들고 함문(閤門) 밖으로 달려가 보니, 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 공조 판서 김전(金詮), 예조 판서 남곤, 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 호조 판서 고흥산(高荊山), 화산군(花山君) 심정(沈貞), 병조 참지(兵曹參知) 성운(成雲) 등이 촛불을 밝히고 앉았고, 군사들이 둘러싸고 서 있었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5권, 경상도(慶尙道), 영덕현(盈德縣)/《대동지지(大東地志)》

… 【관방】 오포영(烏浦營) 현 남쪽 17리에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 1 인이 있다. 『신증』 현 남쪽 13리에 있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高荊山)이 옛 군영은 바닷길을 내다 볼 수 없다 하여 여기에 옮겨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쌓았으니, 둘레는 1천 4백 90척, 높이는 9척이다. …

… 【진보】 혁처(革處) 오포진(烏浦鎭) 남쪽으로 17리이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高荊山)이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현 남쪽 13리로 옮겼다. 중종조(中宗朝)에 축성(築城)하였다. 둘레는 1천 4백 90척이며, 수군만호(水軍萬戶)를 설치하고 후에 고쳤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전라도(全羅道), 흥양현(興陽縣)/《대동지지(大東地志)》

… 【관방】 … 백석포장성(白石浦長城) 현의 남쪽 20리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길이가 1천 6백 11척이요, 높이가 6척이다. 풍안평장성(豐安坪長城) 현의 남쪽 22리에 있고 돌로 쌓았다. 길이가 2천 4백 척이고, 높이가 6척이다. 이상 두 성은 가정(嘉靖) 계미년에 순찰사(巡察使) 고흥산(高荊山)이 적이 다니는 중요한 길이라 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쌓은 것이다. …

… 【성지】 백석포 장성(白石浦長城) 길이는 1천 6백 11척이다. 풍안평장성(豐安坪長城) 길이는 4백 척이며, 위의 두 성은 중종(中宗) 18년에 순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적을 막는 요해(要害)지로 여겨서 쌓았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권, 강원도(江原道), 횡성현(橫城縣)

… 【인물】 … 『신증』 고흥산(高荊山)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성품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오랫동안 군(軍)의 병사(兵事)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 직임(職任)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3권, 평안도(平安道), 의주목(義州牧)

… 【성곽】 주성(州城) 둘로 쌓았는데, 둘레가 1만 4천 83척, 높이가 12척이고, 안에는 40군대의 우물이 있다. 『신증』 금상(今上) 15년에 옛 성이 좁으므로 고흥산(高荊山)을 보내어 편리 여부를 두루 살피게 하고 드디어 터를 닦고 고쳐 쌓았는데, 둘레가 2만 7천 5백 31척, 높이가 12척이고, 동·남·서·북에 모두 문이 있고, 문에는 옹성(擁城)이 있고, 성안에는 한 개의 못과 43개의 우물이 있다. …

○ 연려실기술 제7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왕비 신씨(愼氏)의 폐위와 복위의 본말

… 조강(朝講)에서 영사 정광필, 지중추부사 신용개(申用溉), 설경(說經) 임권(任權),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성몽정(成夢井) 등이 박상 등을 죄줄 수 없다는 뜻을 힘써 말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 연려실기술 제7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기묘년의 화의 근원

… 대사헌 조광조가 길에서 찬성 고흥산(高荊山)을 만났는데 예(禮)하지 않고 지나가니,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이를 갈았다. 《당적보》

조광조가 대사헌으로서 관아에 나가는데 호조 판서 고흥산이 앞에 있었다. 비록 조광조가 뒤에 있는 것을 알았으나 일부러 느릿느릿하였으니, 대개 그 거만함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조광조가 배종(陪從)한 아전을 가두었다가 하루만에 놓아주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이 온당한지의 여부를 묻자 조광조가 말하기를, “그의 소행이 사대부가 길을 양보하는 풍습에 크게 어긋났으니 진실로 잘못이다. 헌부에서 비록 풍속을 단속하는 책임이 있으나 그는 충신이므로 내가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요, 그 아전을 가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기에 즉시 풀어준 것뿐이다.” 하였다. 고흥산도 이 말을 듣고 또한 옳다고 했다. 《기재잡기(寄齋雜記)》 …

○ 연려실기술 제7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기묘사화(己卯士禍)

… 그때 남곤과 심정은 고흥산(高荊山)·홍숙(洪淑)·손주(孫澍)·방유녕(方有寧)·윤희인(尹希仁)·김근사(金謹思)·성운(成雲) 등과 밀약하며 모이기로 기약하였는데, 성운이 시간보다 먼저 입직하였다. 성운은 그때 먼저 입직할 약속을 받았다. 뒤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가 심언광(沈彦光)에게 쫓겨나 경상 감사가 되었다. 하루는 대낮에 가위 놀러 났을 잃었는데, 기괴한 형상을 한 머리와 팔다리 없는 귀신들이 좌우에 죽 늘어서 있자 놀라서 헛소리를 하며 눈을 감고 떠보지 못한 채 10여 일 만에 죽었다. 이경(二更)에 남양군(南陽君) 홍경주, 공조 판서 김전(金詮), 예조 판서 남곤, 병조 판서 이장곤, 호조 판서 고흥산 등이 합문 밖에 모였고, 도총관 심정과 병조 참지 성운이 직소에서 나와 모였다. 임금이 편전에 나오자 홍경주가 서계를 가지고 입대하기를, “신 정광필·홍경주·김전·남곤·이장곤·고형산·홍숙·심정·손주·방유녕·윤희인·김근사·성운 등이 보니, 조광조 등이 봉당을 지어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자는 진출시키고 자기와 달리하는 자는 배척하여, 세력으로 서로 어울리고 중요한 자리에 도사리고 앉아 임금을 속이고 사심을 부려 기탄함이 없고, 후진들을 꺾어 과격한 습관을 길러 젊은이로 어른을 누르고 천한 이로 귀한 이를 누르게 하여 국세를 기울어지게 하고 조정의 일을 날로 그릇되게 하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는 분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으나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결눈질하며 다니고 발을 포개고 서 있습니다. 사세가 이러하니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유사(有司)에게 붙여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또 빨리 명을 내려 승정원과 홍문관에 입직한 관원들을 잡아 가두도록 청하였다. 이때에야 정원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뒤에 의논하는 자가, ‘위험하여 따른 자는 치죄하지 말라.’는 의리에 따라서 북문(北門)의 일을 꾸민 정승에 대해 오히려 그 주범과 종범(從犯)을 구별하려 하니, 아,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이 너무 심한 경우이다. 당초 고변(告變)할 적에 비록 그들의 간사한 계교가 이미 대궐에 통했다 하더라도, 김전(金詮), 고흥산(高荊山), 홍숙(洪淑)이 없었다면 공론(公論)이라 칭탁하고 속임수를 써서 임금의 밝음을 가리기 어려웠을 것이며, 만일 황계옥(黃季沃)과 윤세정(尹世貞)이 없었다면 선비들의 공론이라고 말하여 죄를 줄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이빈(李潁), 이항(李沆), 채침(蔡忱) 대사헌, 조침(趙琛) 참판이 없었다면 당을 지어 세력을 가지고 벼슬아치들을 해치지 못했을 것이다. …

○ **연려실기술 제9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중종조의 상신(相臣)**

… 고흥산(高荊山)은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남보다 배를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주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고 입을 닫는 법이 없이 먹었으며, 술은 더욱 한량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 아래 관속에게, “내일은 내 아는 사람이 외직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마땅히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고 술

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 하였다. 이튿날 거마를 재촉하여 가보니 과연 관문 밖에 장막을 치고 술 세 동이와 안주 한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형산이 자리에 앉자 한 관속이 바깥 와서 고하기를, “오늘은 대포 만호(大浦萬戶)만 부임하였는데, 대궐에 하직하고는 동대문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하니, 형산이 말하기를, “그는 내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이렇듯 속인단 말이나.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목이 마르니 한 대접을 마셔보리라.” 하고 드디어 한 동이를 비웠다. 그 다음에 또 녹사(錄事)·서리들로 더불어 대작해서 한 동이를 다 마시고, 한 동이만이 남았다. 이에 형산이 말하기를, “또 어떻게 주인에게 권하지 않는단 말이나.” 하고 관문 첫째 기둥에서부터 시작하여 잔을 들어 기둥들에게 권하면서 서로 수작하는 것같이 하니 세 동이가 모두 비었다. 그런 뒤에 비로소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니 돌아갔다. 신공(申公)에게 비교하면 신공은 호걸스럽고 그는 거칠다고 하겠다. 《기재잡기》 …

○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정교전고(政教典故), 혼례(婚禮)붙임 이혼(離婚)

… 송일(宋軼)·남곤(南袞)·조계상(曹繼商)·최숙생(崔淑生)·정수강(丁壽剛)·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溉)·권균(權勻)·김전(金銓)·윤순(尹旬)·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 등은 헌의하기를, “《오례의》는 곧 선왕께서 이루어 놓은 법인데 어찌 반드시 궁벽한 골목에 가셔서 맞이하여야만 예를 다한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 용재집 제3권, 칠언고시(七言古詩)

칠로계회도(七老契會圖) 관중추부사 고흥산(高荊山), 호조 판서 안윤덕(安潤德), 지중추부사 임유겸(任由謙)·조원기(趙元紀)·이자견(李自堅), 동지중추부사 정수강(丁壽剛), 동지돈녕부사 이택(李陌)이 그 구성원이다. …

○ 용주유고 제11권, 서(序), 칠로연회시 서문(七老宴會詩序)

… 성산(星山) 이 참찬의 칠로연회시첩을 통해 광대하고 중후한 시대에 나이와 덕을 향유한 분들이 모두 돈후함을 세우고 문(文)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더욱 볼 수 있다. 그 중 이 참찬공은 일국의 명필로, 서문(序文)과 여러 공의 시편은 모두 참찬공의 필체이니, 모임에서 추종을 받아 사람마다 모두 얻어 보배로 간직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에 그때를 거슬러 계산해 보면 거의 1백 5, 60여 년 전이니 고흥산(高荊山)과 임유겸(任由謙) 두 분의 시가 어찌 남아있겠는가. 용재(容齋 이항(李荇))의 장구가 겨우 잔편만 남아있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

○ 우복집 제18권, 묘갈명(墓碣銘),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 조공 린(趙公遴)의 묘갈명 병서

… 공의 증조는 휘가 철수(哲守)로, 사과(司果)를 지냈다. 증조비 김씨(金氏)는 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의 따님이다. 조고는 휘가 준(俊)으로, 평양부 서윤(平壤府庶尹)을 지냈으며, 조비 고씨(高氏)는 우찬성을 지낸 고흥산(高荊山)의 따님이다. 선고는 휘가 응세(應世)로,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을 지냈는데, 집에 있을 적에는 행의(行誼)로써 소문이 났고, 군읍을 다스리면서는 직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칭해졌다. 비(妣) 노씨(盧氏)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노공좌(盧公佐)의 따님이다. …

○ 일두유집 제2권, 부록(附錄), 포증사전(褒贈祀典)/중종대왕 12년 - 정축(1517)

8월 … 10일에 정광필, 신용개, 김진, 고흥산(高荊山), 이계맹(李繼孟), 안당(安瑯), 조계상(曹繼商)이 의논드리기를 “김굉필과 정여창은 학술이 순정하고 실천이 독실하여 한 시대의 학자들이 함께 추중하여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조 때에 김종직(金宗直)의 문도(門徒)라고 해서 죄를 입었으므로, 당대 사람들이 그 아무 잘못도 없이 죄를 입은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제 전례에 따라 관작을 추증하였고 이미 그 후손을 녹용하라는 명도 내리셨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여러 세대 만에 드물게 나오는 사람들인지라 이들이 죽은 뒤에도 도학(道學)에 뜻을 둔 자들이 아직도 많이들 흠모하고 있으니, 전례에 따른 증직은 이들의 특별함을 표상하기에 부족합니다. 그 관작을 더 추증하고 해마다 그들의 처(妻)에게 능료를 지급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녹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 20일에 정광필, 신용개, 고흥산, 남근(南袞), 한세환(韓世桓)이 의논드리기를 “유신(儒臣) 정여창은 김굉필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서로 함께 절차탁마하여 보탬이 된 것이 고정(考亭 주희(朱熹))이 남헌(南軒 장식(張弼))과 함께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김굉필은 포상하여 장려하고 정여창에게는 그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은전에 흠이 될 듯합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 …

○ 임하필기 제2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기사(耆社)의 최고령

98세에 윤경(尹綱), 97세에 이구원(李久源), 96세에 민성남(閔聲男), 94세에 이진기(李震箕), 김환(金緩), 신경(申綱), 93세에 원혼(元混), 신계영(辛啓榮), 이산두(李山斗), 92세에 송순(宋純), 송찬(宋贊), 황흠(黃欽), 91세에 고흥산(高荊山), 이경(李垆), 박태항(朴泰恒), 90세에 황희(黃喜), 윤금손(尹金孫), 김계도(金繼燾), 윤이지(尹履之), 이광적(李光迪)이 있었다.

○ 임하필기 제29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우리나라의 장수한 노인들

열성공(烈成公) 황수신(黃守身)과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 문강공(文康公) 정제두(鄭齊斗)는 88세를 살았고, 효절공(孝節公) 이현보(李賢輔)와 성안공(成安公) 상진(尙震)은 89세를 살았고, 해은(海恩) 윤이지(尹履之)와 판서 이광적(李光迪), 경헌공(敬獻公) 김사목(金思穆)과 연천(淵泉) 김이양(金履陽)은 90세를 살았고, 현의공(獻懿公) 윤금손(尹金孫)과 익충공(翼忠公) 안윤덕(安潤德), 익장공(翼莊公) 고흥산(高荊山)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경(李垆), 판서 박태(朴泰)는 91세를 살았고,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와 지중추부사 송순(宋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찬(宋贊)과 판서 황흠(黃欽)은 92세를 살았고, 문절공(文節公) 조원기(趙元紀)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원혼(元混), 정헌공(靖憲公) 신계영(辛啓榮)은 93세를 살았고, 지중추부사 이진기(李震箕)는 95세를 살았고, 이맹전(李孟傳)과 문장공(文莊公) 민형남(閔馨男)은 96세를 살았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구원(李久源)은 97세를 살았고, 정희공(靖僖公) 윤경(尹綱)은 98세를 살았다.

○ 패관잡기 제4권, 패관잡기 4

… 중종(中宗) 때에 찬성(贊成) 고흥산(高荊山), 참찬(參贊) 조원기(趙元紀), 참찬 안윤덕(安潤德), 판서(判書) 임유겸(任由謙), 지사(知事) 이자견(李自堅), 동지(同知) 정수강(丁壽岡), 동지 이맥(李陌) 등이 모두 나이 70에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낙사(洛社)의 옛일에 의거하여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 그 뒤부터 재상이 나이 70이 되면 으레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

○ 한강집 제15권, 연보(年譜), 한훤당 김 선생 사우문인록(寒暄堂金先生師友門人錄)/ 이장곤(李長坤)

《기묘보록(己卯補錄)》에 “... 공은 홍경주, 김전(金詮), 고흥산(高荊山)과 함께 신문 밖에 모이고 - 남관은 물러나 있고 들어오지 않았다. - 여러 재상이 이미 입궐하고 도총관(都摠官) 심정(沈貞)과 병조 참지 성운(成雲)도 입직하고 있던 장소에서 와 모였다. ...

○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병자, 8월 5일

홍양현의 군병을 밖으로 내어 쓰지 말 것 등 8조목의 폐단을 진달하는 상소

... 고흥이 폐기되어 인적이 끊기자 장차 적의 소굴이 되매 조종조(祖宗朝) 정통(正統) 6년 신유에 조양 감무(昭陽監務)로 김재(金澤)가 재임할 때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일일이 열거하여 계청함으로써 도로 이 지역에 현(縣)을 설치하였는데, 고흥의 ‘흥(興)’ 자와 조양의 ‘양(陽)’ 자를 합하여 ‘홍양(興陽)’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또 여도, 사도, 발포, 녹도 4개 진을 요충지에 별도로 설치하고 울치(栗峙)에 권관(權管)을 더 설치하여 뜻밖의 우환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 관찰사 고흥산(高荊山) : 고흥산은 1453년에 태어나 중종 때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므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세종 23년 당시의 전라도 관찰사는 금유(琴柔)였다.

○ 국역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2월, 領議政 許積 등이 입사하여 軍國의 機務에 대해 논의함

...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북로(北路)는 누조(累朝)에 걸쳐 중신(重臣)을 따로 보내서 변경의 일을 다스리고 변경의 백성을 위무한 것이 전후로 한 두 번이 아니어서 최윤덕(崔潤德) 이외에도 한명희(韓明禧), 강순(康純), 고흥산(高荊山) 등이 모두 대신과 중신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 ”하였다. ...

○ 서운관지, 書雲觀志 권3, 고사(故事) ②

중종 정축년(丁丑年 1517, 중종 12) 6월 초하룻날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이 소복(素服)·오대(烏帶) 차림으로 인정전(仁政殿)의 계상(階上)에 나아가 구식(救食)하였다. 병

조 판서(兵曹判書) 고흥산(高荊山)이 장막을 쳐서 해를 가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해가 다시 등글어져서야 대대로 돌아왔다. ...

○ 사마방목

- 【시험년도】 성종(成宗) 11 (1480) 식년(式年) 생원(生員)
- 【합격등위】 3등 0055
- 【본인성명】 고흥산(高荊山)
- 【본인 자】 정숙(靜叔)
- 【본인본관】 횡성(橫城)
- 【본인거주】 횡성(橫城)
- 【본인전력】 유학(幼學)
- 【부친성명】 고사신(高思信)
- 【부친품계】 계공랑(啓功郎)
- 【부친관직】 전옥서(典獄署)/승(丞)

○ 국조방목

- 【시험년도】 성종(成宗) 14 (1483) 계묘(癸卯) 식년(式年) 병과(丙科)
- 【합격등위】 병과(丙科) 21위(31/33)
- 【본인성명】 고흥산(高荊山)
- 【본인 자】 정숙(靜叔)
- 【본인본관】 횡성(橫城)
- 【본인거주】 횡성(橫城)
- 【본인전력】 생원(生員)
- 【본인관직】 찬성(贊成)
- 【본인시호】 익평(翼平)
- 【부친성명】 고사신(高思信)
- 【조부성명】 고습(高襲)

○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고 15, 관방 3, 전라도도, 흥양(興陽)

… 【풍안평장성(豐安坪長成)】 :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남쪽 22리에 있다.” 하였다. 중종(中宗) 16년(1521)에 순찰사(巡察使)가 고흥산(高荊山)이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라고 하여 들로 쌓았다. [길이가 2천 4백 척(尺)이고, 높이가 6척(尺)이다.]

[보] 【백석포 장성(白石浦長成)】 :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남쪽 20리에 있는데, 또한 고흥산(高荊山)이 들로 쌓았다.” 하였다. [길이가 1천 6백 11척(尺)이고, 높이가 6척(尺)이다.] …

○ 증보문헌비고 권30, 여지고 18, 관방 6, 평안도, 의주(義州)

【읍성(邑城)】 : 들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6백 44보(步)이고, 높이가 3장(丈)이고, 웅성(甕城)이 19이고, 포루(砲樓)가 10이고, 치첩(雉堞)이 23이다.] 4문(門)이 있고, 안에 우물이 35곳, 못이 4곳 있다. [보] 중종(中宗) 15년(1520)에 고흥산(高荊山)을 보내어 터를 닦고 고쳐서 쌓았는데, 동북쪽의 땅 모양은 높이 솟아 있고, 서남쪽은 낮고 평평하다

○ 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고 19, 관방 7, 경상도, 영덕(盈德)

… 【오포(烏浦)】 : [남쪽 17리에 있으며, 만호진(萬戶鎭)이 있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高荊山)이 옛 군영(軍營)은 해로(海路)를 환하게 내다볼 수 없다 하여 이곳에 옮겨다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성이 있으니, 성곽편(城郭編)을 보라.]

○ 증보문헌비고 권51, 제계고 12, 부록 씨족 6, 고씨, 횡성 고씨(橫城高氏)

시조 고희(高休) [벼슬이 병마사(兵馬使)이었다.]

고용경(高用卿) [참판(參判)에 추증되었으며, 한 파(派)를 이루었다.] 증손 고흥산(高荊山) [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찬성(贊成)이었으며 시호는 위열공(威烈公)이다.]

○ 증보문헌비고 권73, 예고 20, 혼례

… 송길(宋軼) · 남곤(南袞) · 조계상(曹繼商) · 최숙생(崔淑生) · 정수강(鄭壽崗) · 정광필(鄭光弼) · 김응기(金應箕) · 신용개(申用溉) · 권균(權勻) · 김전(金詮) · 윤순(尹珣) ·

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은 의논하기를, “《오례의》는 바로 선왕(先王)께서 만드신 법인데, 어찌 반드시 궁벽한 골목에서 맞이해야만 예를 다한다고 하겠습니까?”하였다. …

○ 증보문헌비고 권215, 직판고 2, 기사(耨社)

기사의 최고년(最高年) [90세 이상] 은 98세 윤경(尹綱), 97세 이구원(李久源), 96세 민형남(閔馨男), 94세 이 진기(李震箕)·김원(金緩)·신경(伸綱), 93세 원혼(元混)·이관(李寬)·신계영(辛啓榮)·이산두(李山斗), 92세 송순(宋純)·송찬(宋贊)·황흠(黃欐)·김재현(金在顯), 91세 고형산(高荊山)·이경(李珢)·박태항(朴泰恒)·김이양(金履陽)·정원용(鄭元容), 90세 황희(黃喜)·윤금손(尹金孫)·김계도(金繼燾)·윤이지(尹履之)·이육(李堉)·이광적(李光迪)·김사목(金思穆)·이효순(李孝淳)·이의익(李宜翼)·허전(許傳)이다.

○ 증보문헌비고 권228, 직판고 15, 부록 사계장

중종(中宗) 원년(1506)에 찬성 박안성(朴安性)에게 궐장을 하사하고, 3년(1508)에 찬성 이손(李蓀)에게 궐장을 하사하고, 5년(1510)에 영중추부사 유순(柳詢)에게 궐장을 하사하고, 9년(1514)에 영중추부사 노공필(盧公弼)에게 궐장을 하사하고, 26년(1531)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 [중종조의 국구이다.]·찬성 고형산(高荊山) [모두 연조(年條)는 상고할 수 없다.]에게 궐장을 하사하였다

○ 증보문헌비고 권241, 직판고 28, 시호 3, 역대 명신 시호 2, 위열(威烈)

고려 태위(太尉) 한난(韓蘭), 시중 김취려(金就礪), 찬성사 전의(全懿), 조선 찬성 고형산(高荊山).

○ 일성록, 정조 16년 입자, 4월 14일

영천 군수(榮川郡守) 이면궁(李勉兢)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상소의 대략에, “ … 신이 삼가 들으니, 중묘조(中廟朝)에 고형산(高荊山)이 영동(嶺東)을 안찰(按察)할 때 토지가 메마르고 전결이 황폐하다는 이유로 장계를 갖추어 상에게 보고하여, 경작하면 그때그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

VIII. 고흥산 연표

1453년(단종 1)

고형산(高荊山) 출생, 자는 정숙(靜叔), 본관은 횡성, 고사신(高思信)의 아들, 조부는 고습(高襲).

1480년(성종 11)

식년(式年) 생원(生員) 급제, 3등.

1483년(성종 14)

식년 병과(丙科) 급제, 21위.

1494년(성종 25)

2월 20일 지평 현감(砥平縣監) 고흥산(高荊山)은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그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쓰다. 승훈랑(承訓郎)으로 제수하다.

1499년(연산 5)

8월 7일 종사관(從事官) 고흥산(高荊山)을 삼수(三水)로 보내어 어면(魚面)·감파(甘坡)·석모로(石毛老)에 축성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삼수에 2보(堡)를 설치하는 일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피게 하다.

1500년(연산 6)

1월 26일 장령(掌令) 고흥산은 북도로 옮겨 간 백성들에게 발갈이할 만한 전토를 선택하여 주기를 청하다. 또 함경도 역로(驛路)의 폐단에 대하여 제안하다.

- 2월 6일 장령 고행산이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를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 2월 9일 고행산이 사복시(司僕寺)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E를 수 없다고 하였다.
- 4월 6일 야인(野人)이 함경도혜산(惠山) 등지에 들어와 살기를 청하므로, 광흥창수(廣興倉守) 고행산이 변방 사정을 잘 알아 보내도록 하였다.
- 7월 3일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으로 제수하다.
- 7월 6일 장령 고행산과 정언 심순문(沈順門)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11월 3일 함경도 경차관(敬差官) 고행산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권중개(權仲愷)에게 삼수(三水) 지방의 어면(魚面)·신방구비(神方仇非)에 두 성보(城堡)가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 조사하게 하다.

1501년(연산 7)

- 6월 23일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으로 제수하다.
- 7월 5일 대사헌 성현(成愼)과 사간 고행산이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린다.
- 12월 26일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고행산이 나랏일에 부지런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니, 포상(褒賞)하기를 청하다.

1502년(연산 8)

- 1월 28일 상정청 당상(詳定廳堂上) 성준(成俊)이가 종사관 고행산으로 하여금 함경도 관찰사,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예차아전(預差衙前)을 영구히 없애버릴 것을 청하고, 고행산으로 하여금 아전들의 민간징수를 조사하여 폐해를 구제할 것을 청하다.
- 5월 16일 고행산이 부령진(富寧鎭)을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에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마는, 금창기(金昌岐)는 적의 길의 요충(要衝)이므로 성보(城堡)를 옮기는 것이 매우 적당함을 아뢰다.

- 6월 22일 군기시정(軍器寺正) 한형운(韓亨允)과 군자감정(軍資監正) 고흥산이 정미수의 일로 부름을 받고 정상을 아뢰다.
- 7월 17일 삼수군(三水郡)의 심방구비보(心方仇非堡)와 어면보(魚面堡) 등지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일과 심방구비보에 성을 쌓는 일과 단천군(端川郡)의 쌍청보(雙淸堡)를 옮겨 배설하는 곳에 축성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의 일을 고흥산(高荊山)을 보내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하다.
- 7월 21일 좌의정 성준(成俊), 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고흥산을 보낼 때 부령부를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 한가 아니한가를 아울러 조사하게 하기를 청하고 고흥산에게 어사(御史)를 겸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 7월 22일 고흥산에게 사헌부 집의를 겸직하게 하다.
- 12월 5일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이 야인에게 금물을 파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치계하다.

1503년(연산 9)

- 1월 4일 고흥산을 해주 목사로 제수하다
- 1월 18일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尹弼商) · 해주 목사(海州牧使) 고흥산 등을 모아서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의논하다.

1504년(연산 10)

- 6월 2일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에게 가선(嘉善)을 더해 주다. 고흥산이 전(箋)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다.
- 7월 23일 함경도 절도사 고흥산이 형세를 그린 남도(南道)의 행영(行營) 및 무산(茂山) · 풍산(豊山) · 혜산(惠山) · 옥련(玉蓮) 등의 보(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과 제인(濟人) · 종포(終浦) 두 역(驛) 사이에 참(站)을 설치하는 일들이 온편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뢰다.

1506년(중종 1)

12월 11일 정광세(鄭光世)·고형산 등이 ‘폐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상장(喪葬) 의식에 왕례(王禮)를 다시 쓸 수가 없다고 의논드리다.

12월 13일 특진관 고형산이 양계(兩界)의 첨사·만호 및 각진·보의 군관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본도 사람을 임명하지 말기를 청하다.

1507년(중종 2)

윤1월 30일 고형산을 함경도 관찰사로 제수하다.

8월 1일 고형산이 경흥부(慶興府)무이보(撫夷堡), 안변부(安邊府)고산역(高山驛), 북청부(北靑府)제인관(濟人館), 길성현(吉城縣)영동역(嶺東驛) 등에 창고 설치를 건의하다.

1508년(중종 3)

6월 18일 대간(臺諫)이 포핍(褒貶)을 계청한 일로써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6월 20일 올 춘·하등(春夏等)의 진취(殿最)를 빨리 등제하도록 고형산에게 하서(下書)하다.

11월 2일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을 유임시키고 당표리(唐表裏)를 하사하다.

12월 10일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高荊山)이 회령(會寧) 밑에 있었던 보을하(甫乙下) 고보(古堡)의 복립(復立)과 무산보(茂山堡) 이설(移設)에 대한 사실의 전말을 써서 장계(狀啓)하다.

1509년(중종 4)

1월 5일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이 각 군보(軍堡)의 이설에 관하여 대신을 파견하여 조치하기를 청하다.

8월 3일 고형산이 군적(軍籍)의 합당치 못함을 장계하다.

8월 4일 형조 낭관(刑曹郎官)이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이 추분전인데도 법을 어기고 형벌을 집행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용서하다.

9월 2일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명년 가을에 옮기는 도민(徒民)을 입거(入居)시키는 일을 계청하다.

윤9월 27일 삼공(三公)이 고흥산의 잉임(仍任)을 아뢰다.

10월 20일 고흥산이 임금의 은혜에 대해 글을 올린다.

12월 16일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경흥진 첨사(慶興鎭僉使) 최삼준(崔三俊) 및 우후(虞候) 권연(權然)이 방어에 조심하지 않아 오랑캐가 김석숭(金石崇)의 여자 등 3인을 잡아간 데 대하여, 사유를 갖춰서 치계(馳啓)하다.

1510년(중종 5)

3월 5일 좌의정 유순정이 고흥산으로 하여금 녹둔도(鹿屯島)의 경작 여부에 관해 치계할 것을 청하다.

4월 11일 함경감사 고흥산을 잉임하다.

5월 21일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아뢰다.

7월 5일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구황(救荒)하는 방략을 올린다.

9월 3일 고흥산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제수하다.

10월 12일 고흥산을 형조 참판으로 제수하다.

10월 27일 고흥산을 형조 판서로 제수하다.

11월 5일 고흥산이 죄를 속받는 방법을 정하자 하니 전례대로 편의에 따라 하게 하다.

11월 15일 김수동·유순정·노공필·김응기·신용개·이점·박열·안윤덕(安潤德)·고형산 등이 이장길(李長吉)의 죄가 없음을 논하였더니 상이 다시 서용(敍用)하다.

12월 26일 좌의정 유순정·우의정 성희안·형조 판서 고흥산 등이 함경도 군사의 고통을 덜어 주는 방안을 아뢰다.

1511년(중종 6)

1월 18일 고흥산 등이 구수영의 일로 아뢰니 전교하여 구수영을 파직하다.

- 1월 26일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이, 사민(徙民)의 도망이 5구(口) 이상 되는 고을 수령(守令)을 치죄(治罪)하는 법을 엄히 밝힐 것을 청하다.
- 2월 2일 김수동·고형산 등이 강탑의 위치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 2월 11일 형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니 전교하다.
- 2월 18일 헌부가 형조 판서 고흥산과 경상 절도사 황형을 탄핵하니 전교하다.
- 2월 19일 우부승지 김세필에게 고흥산의 일로 전교하다.
- 2월 20일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 2월 21일 대간이 고흥산·황형의 일을 아뢰다.
- 2월 25일 대사헌 안당 등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니 의논하다.
- 2월 26일 고흥산·황형의 일을 의논하다.
- 2월 27일 지평(持平) 이빈(李蘋)·정언 권벌(權穰)이, 고흥산(高荊山)·황형(黃衡)의 일과 상궁(尙宮) 죽친의 일 및 유모와 신노비 소생은 분급하지 말라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 3월 1일 대간이 황형·고형산·육한(陸閑) 및 박씨 죽친을 종량(從良)하는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불허하다.
- 3월 2일 사간(司諫) 허굉(許砮)이 황형(黃衡)·고형산(高荊山) 및 박씨의 죽친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불허하다.
- 3월 3일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황형·고형산·박씨 죽친을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불허하다.
- 3월 4일 대간이 황형·고형산 및 박씨 죽친 종량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고,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아울러 불허하다.
- 3월 5일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고 차자(筭子)를 올리니 불허하다.
- 3월 7일 대간이 합사하여 고흥산(高荊山) 및 박씨 죽친 종량하는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불허하다.
- 3월 8일 대간이 고흥산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3월 12일 대간이 고흥산·신봉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3월 15일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 3월 17일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3월 18일 대간이 고흥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 3월 20일 대간이 고흥산의 곡식 무역한 일에 대해 아뢰니 전교하다.
- 3월 21일 영사 유순이 고흥산에 대한 대간의 논계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 4월 21일 시강관(侍講官) 김극휼(金克幅)·설경(說經) 유둔(柳墩) 등이 형조 판서(刑曹判書) 고흥산이 출사하지 않아 정체(停滯)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답하다.
- 5월 1일 대간이 고흥산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 5월 5일 고흥산 등이 경외에 머물러 둔 왜인 문제를 의논하다.
- 11월 19일 고흥산을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하다.

1512년(중종 7)

- 2월 19일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도내의 성 쌓기에 대한 방법을 보고하다.
- 5월 14일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백성의 쌓인 불합리성을 말하다.
- 6월 27일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 등이 항해를 시험한 후 조운하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보고하다.
- 7월 7일 전운사 고흥산이 함경도에 곡식을 옮기는 방법을 건의하다.
- 7월 16일 전운사 고흥산이 함경도민에게 줄 곡식을 육지로 운반해야 될 이유를 말하다.
- 8월 25일 고흥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하도록 하다.

1514년(중조 9)

- 9월 14일 고흥산을 한성부 판윤으로 제수하다.
- 10월 1일 고흥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 10월 13일 호조 판서 고흥산 등 14명의 무신이 변방 방비책을 서계하다. 또 고흥산은 ‘兵鍊食足’을 강조하면서 북방의 鎭將들이 弓馬에만 專事하고 民事를 돌보지 않아서 밭을 갈고 수확물을 거둘 때에 그 백성들이 농사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유망자가 계속 생겨나고 殘弊함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10월 25일 호조 판서 고행산 등이 각사(各司)가 축낸 잡물(雜物)을 추정하도록 아뢰다.
- 11월 14일 고행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하다.
- 11월 20일 간원(諫院)에서 대사헌 고행산을 논핵하다.
- 12월 9일 고행산을 공조 판서로 제수하다.
- 12월 16일 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고행산 등 대신들을 인견하여 홍문관에 서 상소한 문제들을 논의하다.
- 12월 27일 고행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1515년(중종 10)

- 2월 4일 고행산 등이 망합의 일·변방 방비책을 논의하다.
- 2월 14일 호조 판서 고행산 등이 함경도의 군량 확보책을 아뢰다.
- 2월 22일 좌의정 정광필·호조 판서 고행산 등의 대신들이 망합(莽哈)의 일을 논하다.
- 3월 2일 고행산을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제수하여 장례를 준비시키다.
- 3월 8일 정광필·고행산 등이 망합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 3월 15일 정광필·고행산 등이 장사 기일과 시호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다.
- 윤4월 4일 고행산이 산릉에 설치했던 싸리 햇불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뢰다.
- 윤4월 7일 정광필·고행산 등이 상복의 예제와 5월 졸곡이 합당함을 아뢰다.
- 6월 25일 유순·고행산 등이 보병의 입번, 수령의 사관 겸직하는 일 등을 의논드리다. 또 악포를 금지하고 저화(楮貨)의 통용, 직전(職田)의 전세(田稅) 폐단을 의논하다.
- 7월 3일 호조 판서 고행산이 함경도의 공적 불납사 처벌에 관해 아뢰다.
- 7월 7일 영의정 유순·호조 판서 고행산 등이 주장합(住張哈) 등을 경계하여 변에 대비할 것을 아뢰다.
- 7월 27일 호조 판서 고행산이 대간의 논핵으로 사직을 청하다.
- 8월 12일 교성군 노공필·호조 판서 고행산 등이 박상 등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 10월 14일 특진관 고흥산이 적전을 경작하는 데에 따른 폐해를 아뢰다.
- 10월 21일 김응기·고형산 등이 남북도에 인구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다.
- 11월 6일 고흥산이 말장(末醬)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 11월 9일 김응기·고형산 등이 저화(楮貨) 사용 문제, 자제를 중국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1516년(중종 11)

- 1월 25일 이조에 병조 판서에 고흥산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전교하다.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제수하다.
- 2월 24일 유순·고형산 등이 공신전의 수세, 종친의 실직수여, 체아직 등의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 3월 8일 특진관 고흥산이 강한 활을 당겨 팔뚝을 상하게 하는 폐단을 아뢰다.
- 4월 17일 함북 절도사 황형이 주장합 등이 역모를 꾀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상언하자, 유순·고형산 등이 황형으로 하여금 오랑캐 실정을 밀탐하여 사세를 헤아려 요량해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대마 도주의 서계에 회답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상이 대신들에게 쓸 만한 무인을 추천하도록 하자 병조 판서 고흥산이 통정·내금위·겸사복의 사람들을 대(隊)로 나누어 관사(觀射)하기를 청하였다.
- 5월 11일 조강에서 고흥산의 일과, 기우제 지내는 문제와 장리와 기신재 등의 일을 논의하다.
- 5월 16일 고흥산 등이 사변 때에 함경도와 변방의 군량을 보급하는 문제와 악포를 저화와 바꾸어 주는 문제를 논의하다.
- 5월 17일 유순·고형산 등이 대신을 인견하고 입거를 파하는 것, 형장을 지나치게 쓰는 것과 소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5월 18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죽궁을 바치다.
- 5월 19일 유순·고형산 등이 폐조 때의 죄인을 소방하는 일과 입거를 파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5월 27일 조강에서 유관·고형산 등이 기신재(忌辰齋)·장리(長利)·연은전

- (延恩殿), 혁파·무인을 거용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 5월 30일 고흥산 등이 변방의 방비·둔전의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다.
- 6월 18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입거리·소양개 등을 처형하여 야인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아뢰다.
- 7월 5일 신용개·고형산 등이 신주를 만들고 내일 추향 대제 때에 친제(親祭)할 것을 의논하다.
- 7월 14일 김전·고형산 등이 북도의 사천(私賤)을 남도의 공천으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다.
- 8월 4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정로위의 인원을 늘려 상변 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다.
- 8월 27일 고흥산이 평안도의 구황, 전라도의 왜선에 대해 의논하다.
- 9월 1일 김응기·고형산 등이 압록강 상·하류의 방비와 경상도 좌우 수영을 옹기는 일을 의논하다.
- 9월 3일 탕참 구원에 관한 일과 북방의 군량과 군기 점검에 관한 일을 정광필·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 9월 10일 중국에서 청병(請兵)해 올 것을 대비하여 정병을 뽑으라고 병조에 전교하자 판서 고흥산이 아뢰다.
- 9월 25일 평안도의 군량과 군사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병조 판서와 순변사가 아뢰다.
- 10월 20일 생원 진사 중 회강(會講)에 합격한 사람의 서용문제를 정광필·고형산 등과 논의하다.
- 10월 22일 노산과 폐주의 후손을 세움이 합당한지와 창녕현을 혁파함이 가한지를 정광필·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 10월 29일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고 연산·노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권균·고형산 등과 의논하도록 하다.
- 11월 19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관례의 중요성과 노산과 연산을 위해 후손을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다.
- 12월 19일 윤순·고형산 등이 모여 위판을 흠쳐간 죄인의 색출과 처벌에 대해

서 의논드리다.

12월 25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고 사직하다.

1517년(중종 12)

- 3월 19일 유순·고형산 등이 관소에서 친영하도록 의논드리다.
- 3월 26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정난(定難) 공신으로 죽은 사람 및 육경(六卿)에 오른 사람의 가자는 고칠 것이 없다고 전교하다.
- 4월 9일 김전·고형산 등이 《오례의(五禮儀)》에 실리지 않은 예 대신에 예관이 지은 《의주(儀註)》 대로 거행하겠다고 의논하다.
- 5월 17일 간원(諫院)이 이어(移御)하시던 날 마음대로 물러난 고흥산 등 대신들을 체직하도록 아뢰다.
- 6월 8일 야인 금주성개(金主成介)가 미언천(未彦川)에 와서 사는 일을 치계 하므로 정광필·고형산 등이 의논드리다.
- 6월 27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병으로 세 번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대신이 변방의 일을 잘 안다 하여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다.
- 6월 28일 고흥산이 의논드린 대로 최세절(崔世節)로 하여금 만포에서 심처야인(深處野人)의 정황을 탐문하게 하고, 강혼(姜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7월 6일 보고서 재변과 평안도의 일에 관해 정광필·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 7월 10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흉년에 주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다.
- 7월 15일 김전·고형산 등이 주청사를 한꺼번에 보낼 것을 아뢰다.
- 8월 5일 묘현(廟見)·절의(節義) 등의 일을 신용개·고형산 등에게 연방(延訪)하다.
- 8월 9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김광필 등의 문묘 종사에 관해 의논드리다.
- 8월 20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금은의 유출 방지책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의논하다.
- 11월 4일 폐조 때 귀양 간 자들을 방면하는 일에 관해 정광필·고형산 등과

논의하다.

- 11월 5일 폐조 때 귀양 간 자들을 방면하는 일에 관해 정광필·고형산 등과 논의하다.
- 11월 19일 고형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하다.
- 11월 20일 고형산이 사직을 청하다.
- 11월 21일 대간에서 고형산을 논핵하다.
- 12월 12일 헌부가 고형산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것을 추고하자고 아뢰다.
- 12월 13일 헌부가 고형산을 추국하고 균령을 범한 지한생·윤홍상·한사개를 죄주라고 아뢰다.
- 12월 15일 검상 유돈(柳墩)이 삼공의 뜻으로, 고형산은 이미 소방하였으니 추국하지 말라고 아뢰다.

1518년(중종 13)

- 1월 15일 고형산을 좌참찬으로 제수하다.
- 2월 10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의논하여 17일에 수축(修築)을 마치고 19일쯤 친행하기를 아뢰다.
- 2월 22일 대사헌 고형산과 정언 김공예(金公藝)를 체직하도록 청하다.
- 3월 11일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 4월 4일 희우(犧牛)의 변고를 당하여 강흔·고형산 등 대신들이 대제를 지내는 절차를 논의하다.
- 4월 25일 천거(薦舉)로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강흔·고형산 등과 논의하다.
- 5월 7일 《대명회전》에 기록된 태조의 피무(被誣)에 관한 일로 정광필·고형산 등 조정 신료들이 모여 숙의하다.
- 5월 15일 지진으로 인하여 정광필·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고형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제수하다.
- 5월 17일 고형산이 장순손(張順孫)의 탄핵 문제로 의논하다.
- 5월 19일 고형산과 공서린이 합사(合司)하여 장순손·조계상 등의 탄핵하는 일을 아뢰다.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 5월 22일 남곤·고형산이 지진의 재변을 아뢰다.
- 5월 28일 각도 감사의 임기와 교수(教授)·훈도(訓導)의 택차(擇差) 등 일곱 가지 일에 대하여 정광필·고형산 등이 아뢰다.
- 6월 9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죄수들을 분간하도록 하고, 의주 목사를 가선 대부인 사람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 6월 16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주청 문서의 필삭을 의논하여 입계하다.
- 6월 18일 함경도 관찰사 손증돈이 주장합의 변란을 보고하여 삼공(三公) 및 고형산 등 대신들이 의논하여 의계하다.
- 8월 17일 변방의 안정을 지키는 일로 정광필·고형산 등이 아뢰다.
- 8월 30일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를 정광필·고형산 등이 세 차례나 아뢰다.
- 11월 8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군액의 감축과 노비·전세·보충대·공물 문 제 등을 아뢰다.

1519년(중종 14)

- 1월 2일 고형산이 건강이 나빠 사직하겠다고 아뢰다.
- 2월 2일 안당·고형산이 평안도 관찰사 신상(申鏞)을 유임하기를 청하다.
- 2월 7일 특진관 고형산이 피인을 접대하는 함경도에서 여악을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아뢰다.
- 3월 24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모여 주청사(奏請使)를 다시 보내는 일 및 관리를 임명할 때의 선제(宣制), 문화(文化)·봉산(鳳山)·재령(載寧) 등의 고을의 읍을 이배(移排)하는 일,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 영흥 판관(永興判官)을 혁파하는 일, 마전(麻田)·적성(積城)을 합병(合併)하는 일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다.
- 4월 7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사왕(四王)의 일에 대해 다시 주청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 4월 8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사왕의 일에 대해 다시 주청하는 일의 편부(便否)를 묻다.
- 4월 28일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고형산을 병조 판서로 이배하는

- 데 대해 삼공이 반대하다.
- 5월 1일 전장을 치르고, 경상도를 나누는 일과 변방 장수에 신공제가 합당한지를 신용개·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 5월 19일 신용개·고형산 등이 감사를 오래 맡도록 하는 일과 여악을 폐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 5월 30일 신연(申淵)의 일은 끝까지 추국해야 한다고 신용개·고형산 등이 아뢰다.
- 6월 14일 신용개·고형산 등이 대신들이 옮겨와 사는 피인들의 일에 관해 의논하다.
- 7월 11일 상이 경기의 수해에 대해 호조의 처리 방법을 묻고 양전에 대해 고형산과 논의하다.
- 7월 17일 안당·고형산 등이 종자법(宗子法)과 치재(致齋)할 때의 복색(服色), 친림(親臨)하여 문병(問病)하고 청정(聽政)하는 것 및 《가례(家禮)》와 《오례의주(五禮儀注)》가 합치되게 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 8월 1일 안당·고형산 등이 정몽주·이존오·김굉필·정여창에게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의논하다.
- 8월 26일 안당·고형산이 윤희빙의 일과 탈옥한 죄수를 잡은 자에 논상하는 일을 논의하다.
- 8월 28일 성절사 호송군이 돌아오는 길에 달자에게 군사·말을 잃었음을 평안도 관찰사 허굉이 치계하는 일에 대해 안당·고형산 등이 아뢰다.
- 8월 29일 호송군이 사로잡힌 일로 안당·고형산·박수문이 아뢰다.
- 10월 27일 고형산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나 윤희하지 않았다.
- 11월 15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조광조 등의 죄를 아뢰다.
- 11월 16일 고형산을 대사헌으로 삼다.
- 12월 14일 고형산이 조광조 등이 조정에 있을 때에 인심이 불화하였으므로 지금의 재변도 인심의 위구 때문이라 아뢰다.

1520년(중종 15)

- 1월 17일 강원도에서 고흥산을 구황의 일로 인하여 체직시키지 않도록 아뢰다. 고흥산을 병조 판서로 제수하다.
- 2월 13일 수군의 번을 나누는 일에 관해 유미(柳湑)·고형산이 아뢰다.
- 2월 25일 평안도의 방비책 등에 관해 고흥산 등이 아뢰다.
- 3월 18일 북방 방비와 세자의 관례에 관해 고흥산 등이 아뢰다.
- 4월 10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호인 방어에 관한 일과 토병(土兵)을 보완하는 일을 병조에 조치시킬 것을 의논드리다.
- 4월 20일 병조 판서 고흥산에게 군비를 정제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도록 당부하다.
- 4월 25일 특진관 고흥산이 풍산 등에 중신을 보내어 형세를 조치하게 하기를 청하다.
- 5월 8일 이유청·고형산 등에게 이승손이 고한 5인을 조치하여 수포해야 하겠다 이르다.
- 5월 15일 고흥산이 함경도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무신(武臣)을 차송(差送)하는 까닭은 방어가 긴요하기 때문인데, 요즈음은 문신을 차송하나 민폐가 줄어든 것은 알 수 없으므로, 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무신을 차송하게 함을 아뢰다.
- 5월 21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하나 윤희하지 않다.
- 5월 26일 고흥산이 사شم시(司瞻寺)의 면포(綿布)로 곡식을 사서 군자(軍資)를 보태는 것도 한 가지 방도이고, 군자가 충족되어야 김주성합(金朱成哈)을 몰아낼 수 있음을 아뢰다.
- 6월 4일 고흥산이 평안도 안주의 곡식을 사변이 있을 때를 대비해 평시에 나르지 않아서는 안 됨을 아뢰다.
- 6월 16일 이항·고형산이 기마(驕馬)·복마(卜馬)를 장만하여 군영에서 기르는 문제로 아뢰다.
- 8월 11일 정광필·고형산 등에게 여약을 다시 두는 것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다.

- 8월 25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휴하지 않다.
- 윤8월 21일 대신들이 무너진 지 오래인 의주의 성자는 다시 쌓아야 함을 아뢰고 동시에 고흥산을 보내고자 하다. 특진관 고흥산이 의주에 성을 쌓는 일로 평안도의 형세를 친히 가서 보고자 함을 아뢰다.
- 윤8월 23일 김전·고형산 등을 명소하여 성을 쌓는 일이 온편한지를 의논하게 하다.
- 윤8월 24일 대사헌 홍숙을 불러 고흥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다. 고흥산에게 의복·초피견·화살 등의 물품을 내리다.
- 윤8월 25일 평안도의 농사가 그르쳤다고 하니 고흥산을 보내는 의논을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다. 대사헌 홍숙이 고흥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삼공이 고흥산을 시켜 우선 본도의 재해의 실상을 살피게 하기를 청하다.
- 윤8월 26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본조의 일이 허술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벼슬을 갈아 주기를 청하다.
- 윤8월 27일 고흥산에게 오늘 떠날 만하면 떠나도록 하라 전교하다.
- 윤8월 28일 집의 남세준·지평 황사우 등이 고흥산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 윤8월 29일 대사간 조방언 등이 대신들이 고흥산을 굳이 보내기를 청한 잘못을 아뢰다.
- 9월 21일 고흥산으로 하여금 군인의 수가 적거든 역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민폐가 없도록 힘쓰게 하다.
- 11월 13일 평안도 순변사 고흥산이 의주의 성을 쌓은 것과 그 방어의 상황에 대해 아뢰다.
- 11월 16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였으나 돈유하고 윤휴하지 않았다.
- 11월 21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긴급하지 않은 진보(鎭堡)를 혁파하는 데 대하여 의논하다.
- 12월 15일 주장에서 특진관 고흥산이 장수 선발과 벌등포(伐登浦) 등지의 둔전 설치 등에 관해 아뢰다.

1521년(중종 16)

- 1월 13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산대(山臺)의 일에 사역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관해 아뢰다.
- 1월 14일 군기시 도제조 정광필 등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산대 역부의 숫자에 대해 아뢰다.
- 2월 24일 고흥산이 고을의 진구(賑救)와 상환곡의 수납에 관한 일로 아뢰다.
- 3월 26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늙고 병이 많아 사직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 5월 18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노병으로 사직하니 윤택하지 않았다.
- 5월 24일 칙서 중의 일로 사신을 보내어 주문하는 것에 관해 정광필·고형산 등과 논하다.
- 5월 26일 여자 뽑는 일과 사신이 남행할 때 임금이 전송하는 일 등에 관해 김전·고형산 등 대신들과 논하다.
- 6월 2일 김전·고형산 등이 여자 뽑는 일, 주문(奏文)하는 일 등에 관해 논하다.
- 6월 13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왜적에게 배들이 부서진 일과 관련해 김양필 등을 추고할 것 등을 아뢰다.
- 6월 15일 병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니 좇지 않다. 고흥산을 우찬성으로 제수하다.
- 6월 20일 김전·고형산이 승지 윤희인(尹希仁)을 명나라 사신에게 보낼 것을 의논드리다.
- 6월 25일 김전·고형산 등이 명나라 사신을 염려해 도감 낭관의 본직을 깎고 잉임시킬 것을 아뢰다.
- 7월 8일 추자도와 왜적 관련 남곤·고형산이 의논드리다.
- 7월 16일 요동 자문(遼東咨文)의 등초(謄草)의 내용 회답하는 일 등에 관해 김전·고형산과 등과 의논하다.
- 7월 22일 정광필·김전·고형산 등이 사신을 보내 성절을 진하하는 일로 의논드리다.
- 8월 6일 고흥산 등 대신들이 사신의 대강을 수송해 보내도록 의논드리다.

또 각도에 재상 경차관을 파견하기를 청하다.

- 8월 20일 고흥산 등이 명나라 사신들의 물화의 수송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다.
- 8월 24일 안당(安塘) 등의 일로 김전·고형산 등 대신들과 논하다.
- 8월 25일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 고흥산에게 봉강을 굳게 지키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 8월 27일 고흥산 등이 은을 채취해 저장해 두었다가 유용한 때에 쓰는 것 등에 관해 아뢰다.
- 12월 28일 고흥산을 호조 판서로 제수하다.

1522년(중종 17)

- 1월 2일 고흥산이 사직을 청하니 윤희치 아니하다. 이어 궤장(几杖)을 내리도록 하다.
- 1월 8일 헌부에서 고흥산에게 내린 궤장은 거두기를 아뢰다. 고흥산이 태안(泰安)의 안항량(安恒梁)·의항(蟻項)을 굴착토록 아뢰다.
- 1월 11일 대간이 고흥산·이손에게 내린 궤장을 거두기를 아뢰다.
- 1월 12일 장령 표빙(表憑)이 고흥산에게 내린 궤장을 준례대로 줄 수 없다고 아뢰다. 고흥산·양재 찰방·밀양 명칭복구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전교 하다.
- 1월 13일 김전·남곤·이윤청이 고흥산에게 궤장을 내림과 양재 찰방(良才察訪)에 관해 아뢰다.
- 1월 17일 고흥산이 궤장에 대한 일과 사직을 청하니 윤희치 않다.
- 2월 10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마정(馬政)에 대해 아뢰다.
- 2월 18일 고흥산에게 궤장과 교서를 내리다.
- 2월 24일 고흥산이 남해·거제·진도에 유배된 죄인들이 도망가는 폐단을 아뢰다. 호조가 고흥산의 말로 절목(節目)을 마련코자 하니 윤희치 않다.
- 3월 13일 고흥산이 사직을 아뢰니 윤희치 않다.
- 5월 22일 김말산(金末山)이 아내를 살해한 일로 권균·고형산 등과 의논하

여 사형을 감하다.

- 5월 29일 제주로 왕래하는 길목에서 누차 왜변이 발생하므로 수륙군을 늘려 수색하고 토벌하여 후환을 없애도록 정광필·고형산 등이 의논드리다.
- 6월 19일 순변사 고형산과 심정이 변방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다. 고형산·심정이 순변사를 재차 사양하다.
- 6월 20일 순변사 고형산·심정이 한 도씩 나누어 맡겨 달라고 아뢰다.
- 6월 22일 비변사 제조 정광필·장순손·고형산·심정·안윤덕·한형윤이 왜적들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 6월 24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일본 사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의논드리다.
- 6월 26일 전라도에 왜인들의 배가 아나났다는 보고에 대해 정광필·고형산 등이 의논하다. 또 왜적의 방비에 대해 의논하다.
- 7월 14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동시대구(童時代仇) 등의 보고에 대해 아뢰다. 또 윤세립이 맡은 추고(推考)와 전라도 변장(邊將)이 처리한 일에 대해 아뢰다.
- 8월 8일 비변사 당상 정광필·고형산·심정·안윤덕·최한홍 등이 비변사를 없애자고 아뢰다. 또 고형산·안윤덕이 비변사의 일에 삼공이 참여하기를 청하다.
- 9월 21일 김전·고형산 등이 경상좌도의 수사·우후·진장들에게 왜적방비에 대한 죄를 묻자고 의계하다.
- 10월 13일 김전·고형산 등이 이말손의 사건에 대해 정원과 말손을 끝까지 추국해야 한다고 아뢰다.
- 11월 12일 남곤·고형산 등이 여연(閩延)·무창(茂昌)의 아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의논드리다.

1523년(중종 18)

- 1월 11일 호조판서 고형산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을 청하다.

- 4월 10일 고흥산과 유담년을 죄로 다스리지 않도록 하다.
- 4월 11일 헌부가 차자(筓子)를 올려 고흥산·유담년을 죄주기를 청하다.
- 4월 13일 호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윤 4월 1일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고흥산이 변방에 들어와 사는 야인들을 쫓아내는 게 마땅함을 아뢰다.
- 5월 18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야인을 쫓아내야 함을 의계하다.
- 5월 28일 삼도(三道)에 들어온 왜노를 포획하기 위해 비변사 당상 고흥산·안윤덕(安潤德)·한형윤(韓亨允) 등이 명을 받고 와서 동의 사목(同議事目)을 다음과 같이 계하였다. 1) 조방장(助防將)은 김철수(金鐵壽)로 하고, 군관(軍官) 5명, 파진군(破陣軍) 2명, 화포(火砲) 등 여러 기구를 완비할 것. 2) 본도에 번상(番上)하는 정로위(定虜衛) 26인을 보내어 방수하게 할 것. 3) 도내(道內)의 무재(武才) 있는 수령이 소관 군졸을 뽑아서 요해처(要害處)를 방수(防守)할 것. 4) 도내의 무재 있는 군사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려 방수하게 할 것. 5) 제도(諸道)를 수색 토벌할 때에 해주(海州)·옹진(甕津)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작(鮑作)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병선(兵船)에 나누어 태울 것.
- 6월 26일 고흥산이 경상도·전라도 등지의 맹선 일부를 경쾌한 병선으로 개조할 것과 오폭(烏浦)·축산포(丑山浦) 성을 쌓는 등 일을 아뢰다.
- 7월 21일 남곤·고형산 등이 대마도의 일로 의논하여 아뢰다.
- 8월 4일 중국 사람과 왜인의 처치에 대해 남곤·고형산 등과 논의하다.
- 8월 5일 호조 판서 고흥산이 사직하다.
- 8월 12일 장순손·고형산 등이 일본 사신이 세견선(歲遣船)·세사미(歲賜米)를 청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 8월 14일 대마도에 배 5척을 별사(別賜)하는 일에 관해 임신년 약조는 고칠 수 없음을 고흥산 등이 반대하다.
- 10월 29일 남곤·고형산 등이 야인 쫓는 일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다.
- 11월 6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야인 박산의 연좌와 군관의 파견에 대해 의논

하다.

- 11월 9일 남곤·고형산 등이 여연(閔延)·무창(茂昌)에 와서 사는 야인을 쫓아내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일로 의논하다.
- 11월 26일 남곤·고형산 등과 권훈(權勛)의 일을 의논하다.
- 12월 20일 남곤·고형산 등이 군사 일으키는 기일을 계하다.

1524년(중종 19)

- 1월 20일 남곤·고형산 등이 야인 쫓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 2월 26일 남곤·고형산 등과 악포(惡布)의 일과, 진의 설치, 이성언(李誠彦)의 논상 등을 의논하다.
- 6월 21일 비변사 당상 고형산 등이 이장길(李長吉)을 논상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다.
- 6월 25일 남곤·고형산 등이 변방 군사들의 논상과 이수동의 체직을 건의하다.
- 10월 2일 입거(入居) 죄인 차출 방법에 대해 정광필·고형산 등과 의논하다.
- 12월 9일 남곤·고형산 등이 여제(厲祭)·과방(罷榜)·회례연(會禮宴)·입거(入居) 등에 대해 아뢰다.

1525년(중종 20)

- 1월 14일 정광필·고형산 등이 절도죄에 단근 경면하는 법에 대해 아뢰다.
- 3월 6일 봉상시(奉常寺) 노비들은 다른 곳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임을 정광필·고형산이 아뢰다.
- 4월 22일 남곤·고형산 등 신하들이 야인 왕산적하(王山赤下)의 처결 문제를 의논드리다.

1526년(중종 21)

- 3월 27일 비변사 당상 고형산·안윤덕 등이 김선손을 다시 추문할 것을 아뢰다.

1527년(중종 22)

- 2월 2일 고형산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제수하다.

1528년(중종 23)

11월 20일 관중추부사 고흥산 졸. 시호는 위열(威烈) 또는 익평(翼平), 익장(益莊)

(시호: 『증보문헌비고』에는 위열(威烈), 『국조방목』에는 익평(翼平), 『제주고씨 화전군파 대동보』 및 『황성조씨 가첩』에는 익장(益莊)으로 되어 있음)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보감(國朝寶鑑)』
『서운관지(書雲觀志)』
『동사약(東史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일두집(一蠹集)』
『기묘록(己卯錄)』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기묘록속집(己卯錄續集)』
『대산집(大山集)』
『기재잡기(寄齋雜記)』
『패관잡기(稗官雜記)』
『동각잡기(東閣雜記)』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
『학봉전집(鶴峯全集)』
『우복집(愚伏集)』
『용재집(容齋集)』
『한강집(寒岡集)』
『용주유고(龍洲遺稿)』
『임하필기(林下筆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대동윤부군옥(大東韻府群玉)』
『순암복부고(順菴覆瓿稿)』
『대동야승(大東野乘)』
『간옹우묵(良翁疣墨)』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26 - 47)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세촌선생실기(細村先生實紀)』(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 - 가618)
「해동지도(海東地圖)」
「지승(地乘)」
「청구팔역도(靑丘八域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팔도지도(八道地圖)」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제주고씨(濟州高氏) 화전군파(花田君派) 대동보(大同譜)』
『횡성고씨세보(橫城高氏世譜)』
「횡성조씨가첩(橫城趙氏家牒)」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寧波의亂’ 관련자 표류인 송환- 朝·明·日의 ‘세 가지 시선’, 『역사학보』 224, 20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2 -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1995.

김순남,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2009.

김순남, 「조선 中宗代의 북방 野人 驅逐」,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김원각, 『고형산의 상소문』, 전통문화 198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신익철·조용희·이철희 번역, 『간옹우묵(良翁疣墨)』(李璽 著),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유재춘, 「朝鮮前期 行城築造에 관하여」, 『강원사학』 13, 1998.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3.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람과 연구』, 일조각, 1984.

차상찬, 「土禍와 黨爭」, 『개벽』 제71호, 1926.

한성주,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과견에 대하여」, 『만주연구』 14, 2012.

황성문화원, 『橫城金石文大觀』, 2004.

河内良弘, 『明代女眞史の研究』,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同朋舎出版, 1992.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http://cksm.kangwon.ac.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제주고씨 홈페이지(<http://www.jejugo.co.kr/>).

황성고씨 홈페이지(<http://go.hometer.com/>).

조선의 명재상 황성인 고흥산

© 황성문화원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 2018년 1월

발행처 | 강원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 류종수

기획 | 황성문화원

글/취재 | 유재춘, 이흥권, 한성주

출판 | 강원도민일보사

[비매품]

ISBN 코드:

※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